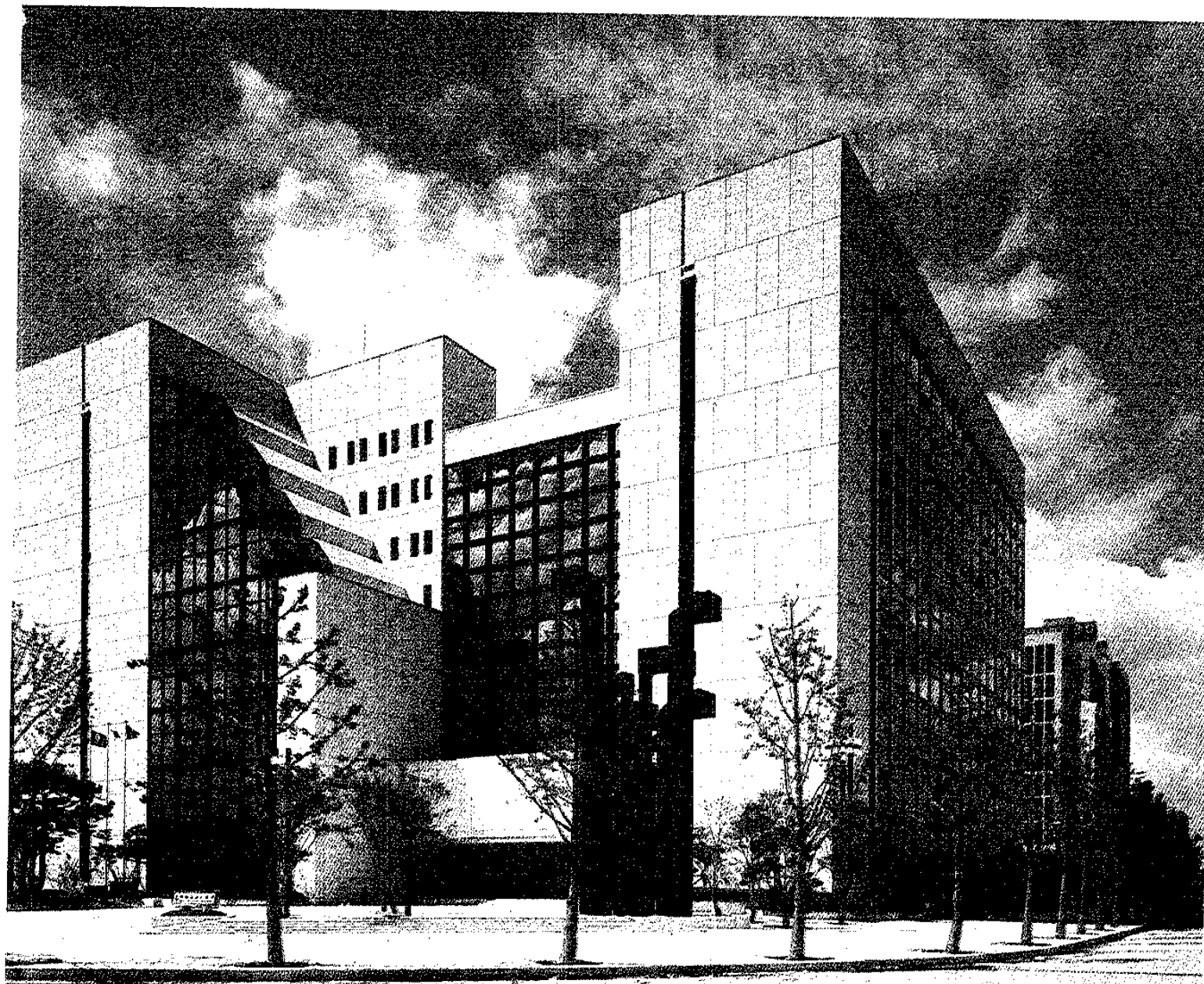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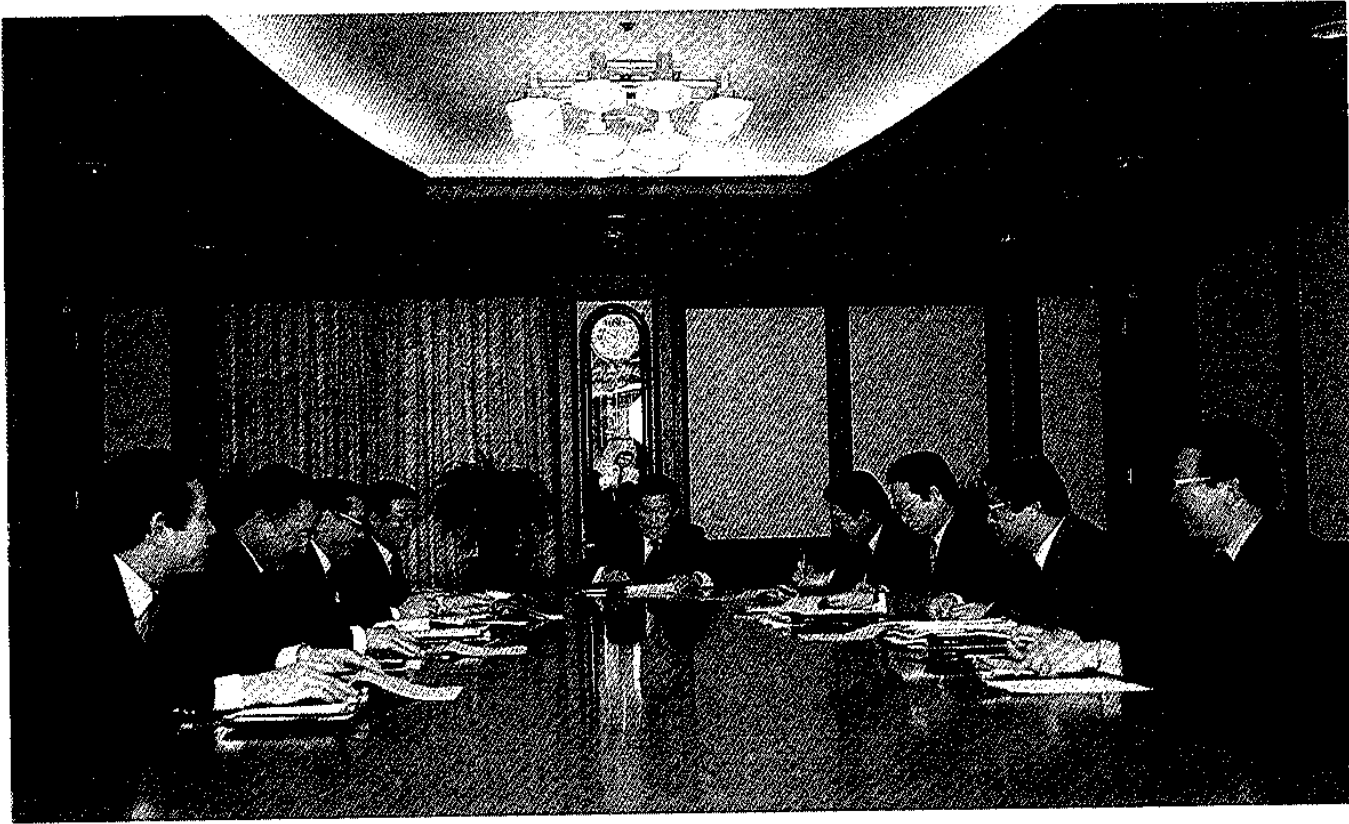


韓國輸出入銀行十年史

◆ 韓國輸出入銀行



韓國輸出入銀行 本店



理 事 會

現 職 任 員



銀行長 柳 惇 佑



専務理事 成 旭 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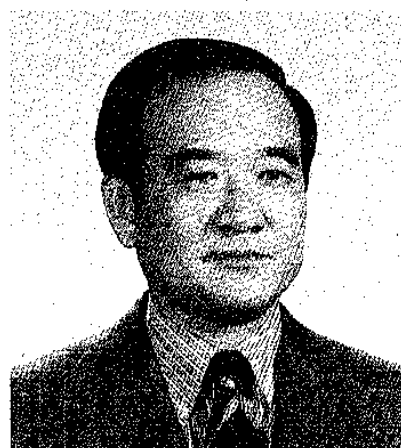


監 事 宋 茂 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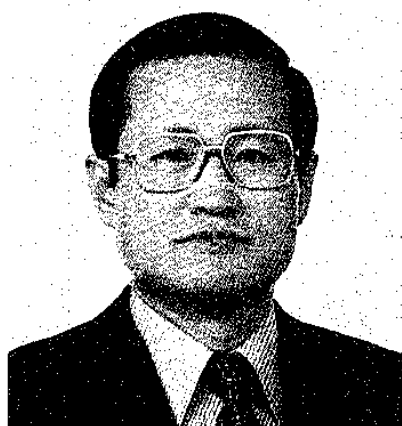
歷代銀行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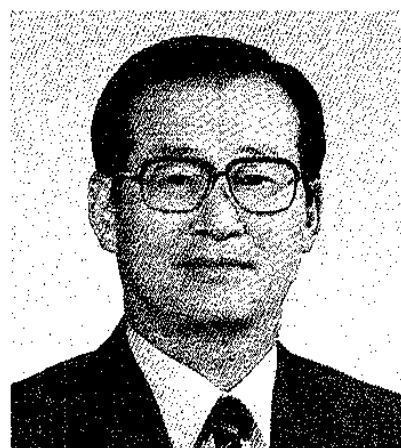
初代 宋 仁 相



二代 梁 潤 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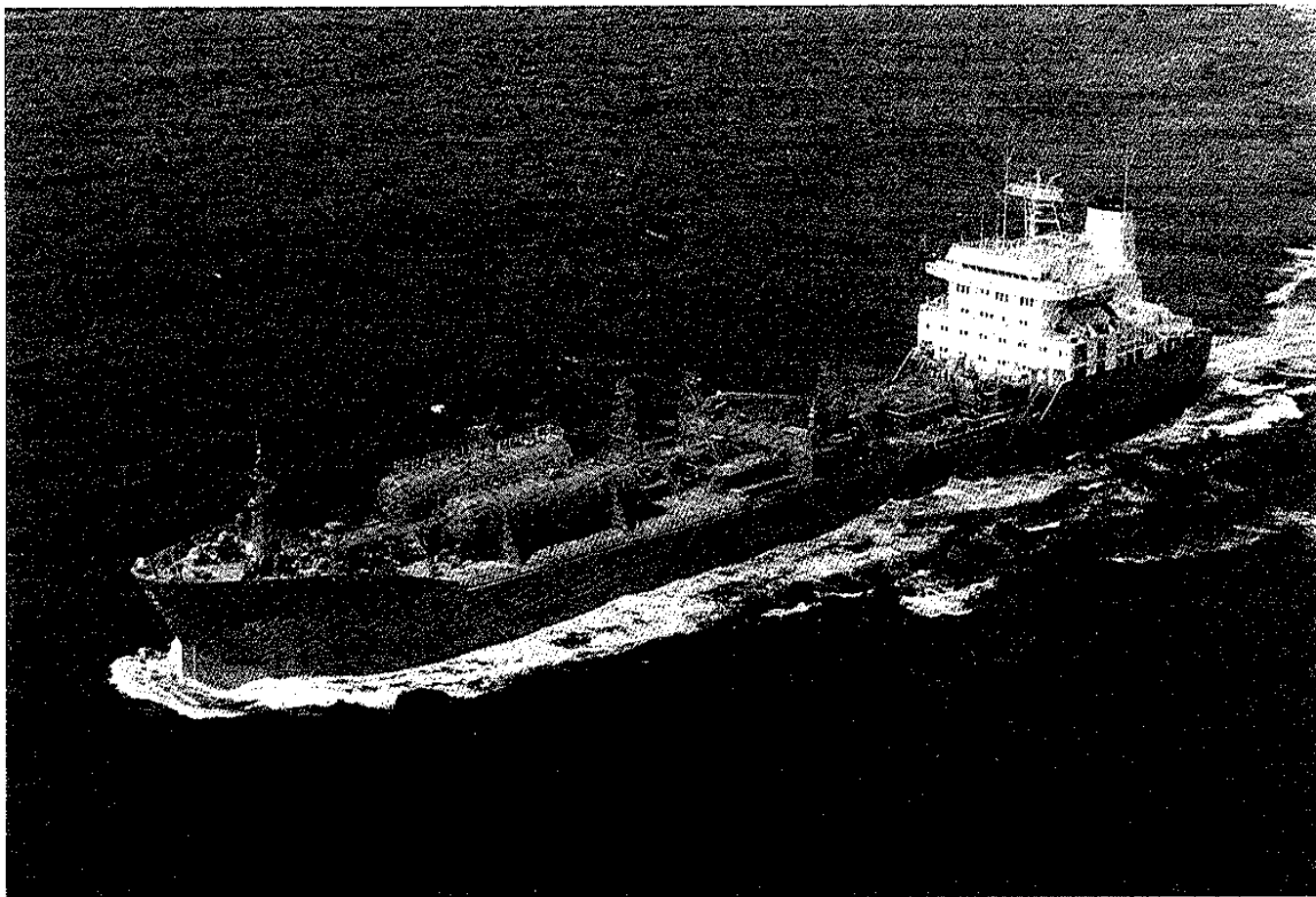
三代 李 泰 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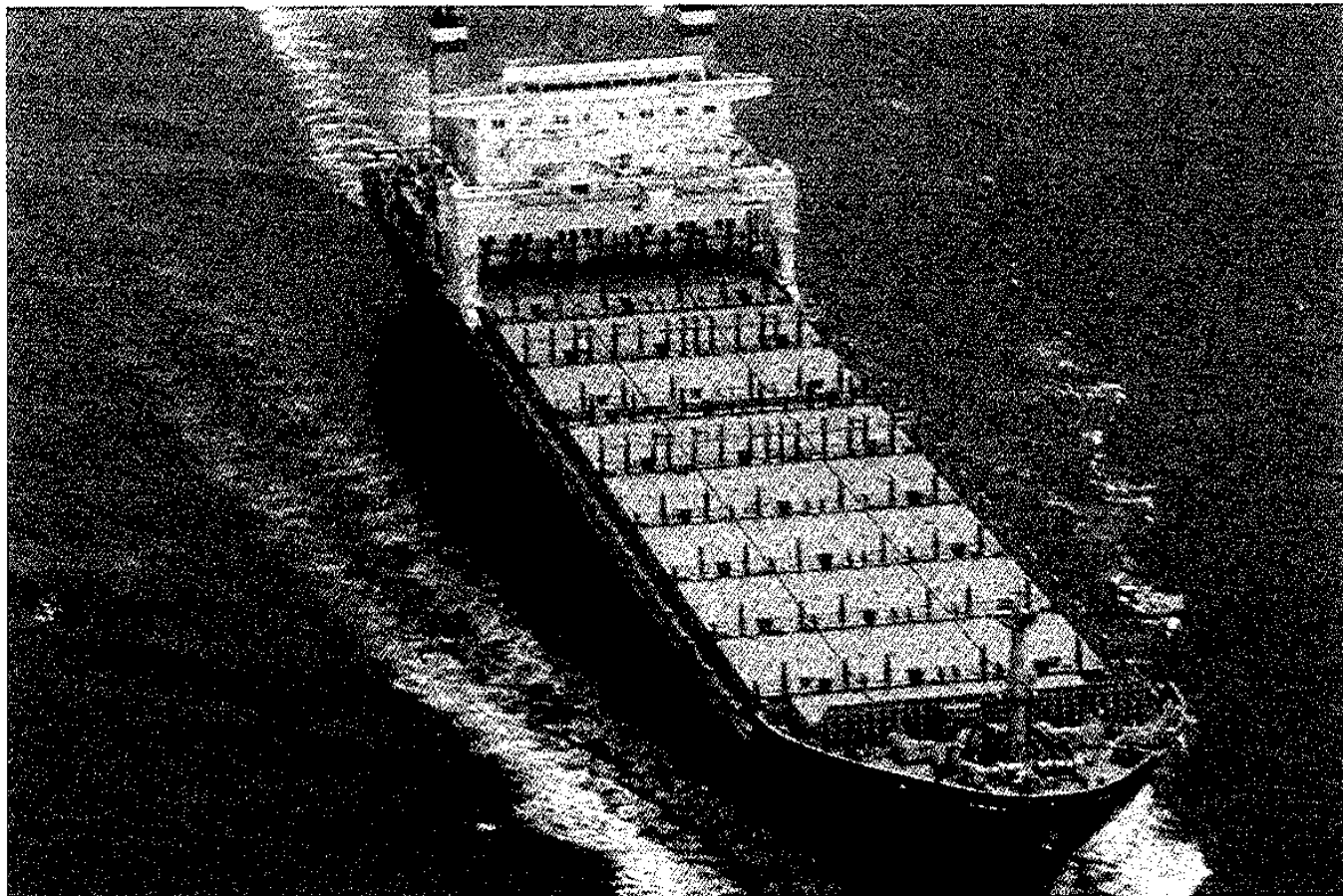
四代 朴 聖 相

輸銀融資支援事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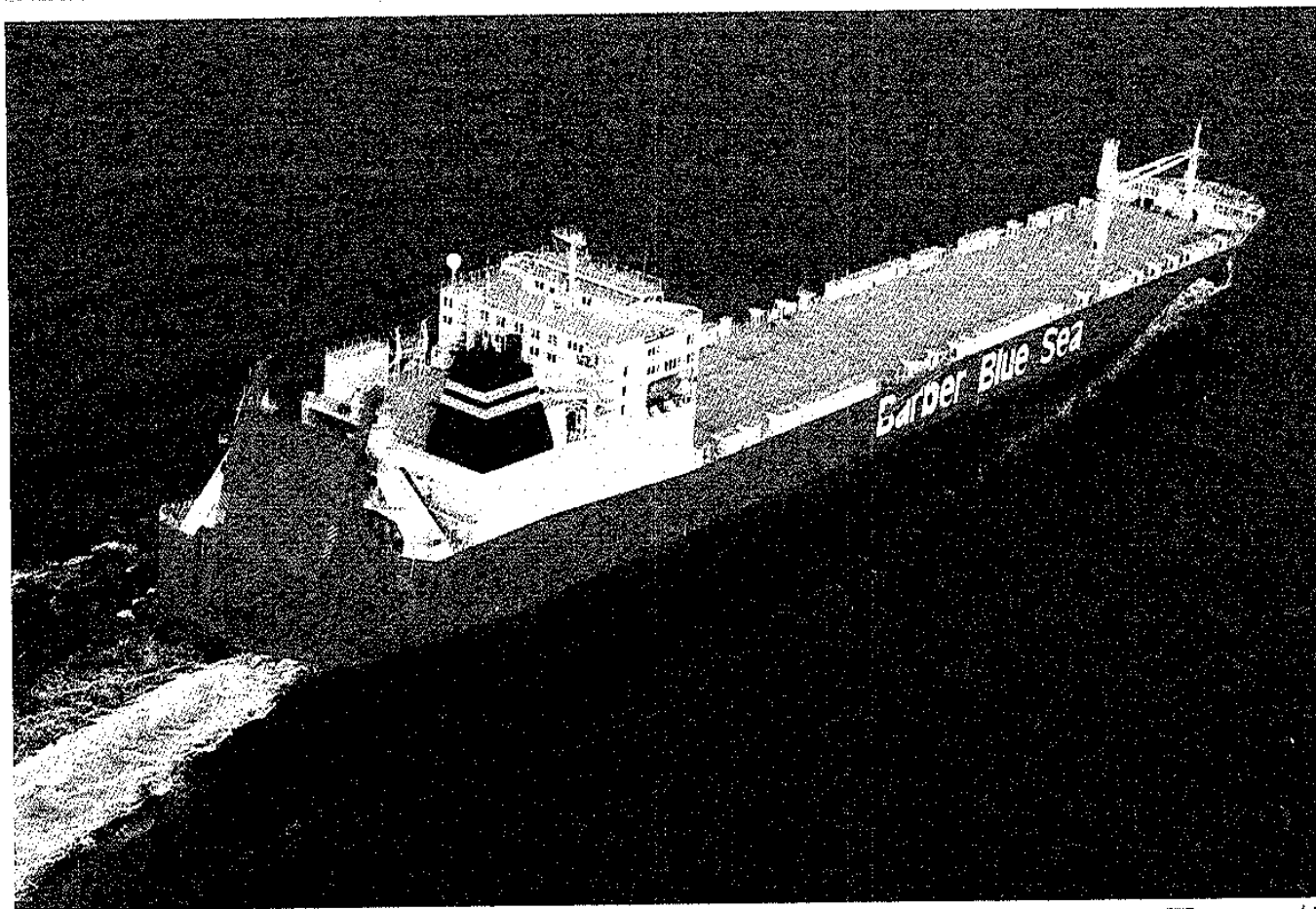
船舶輸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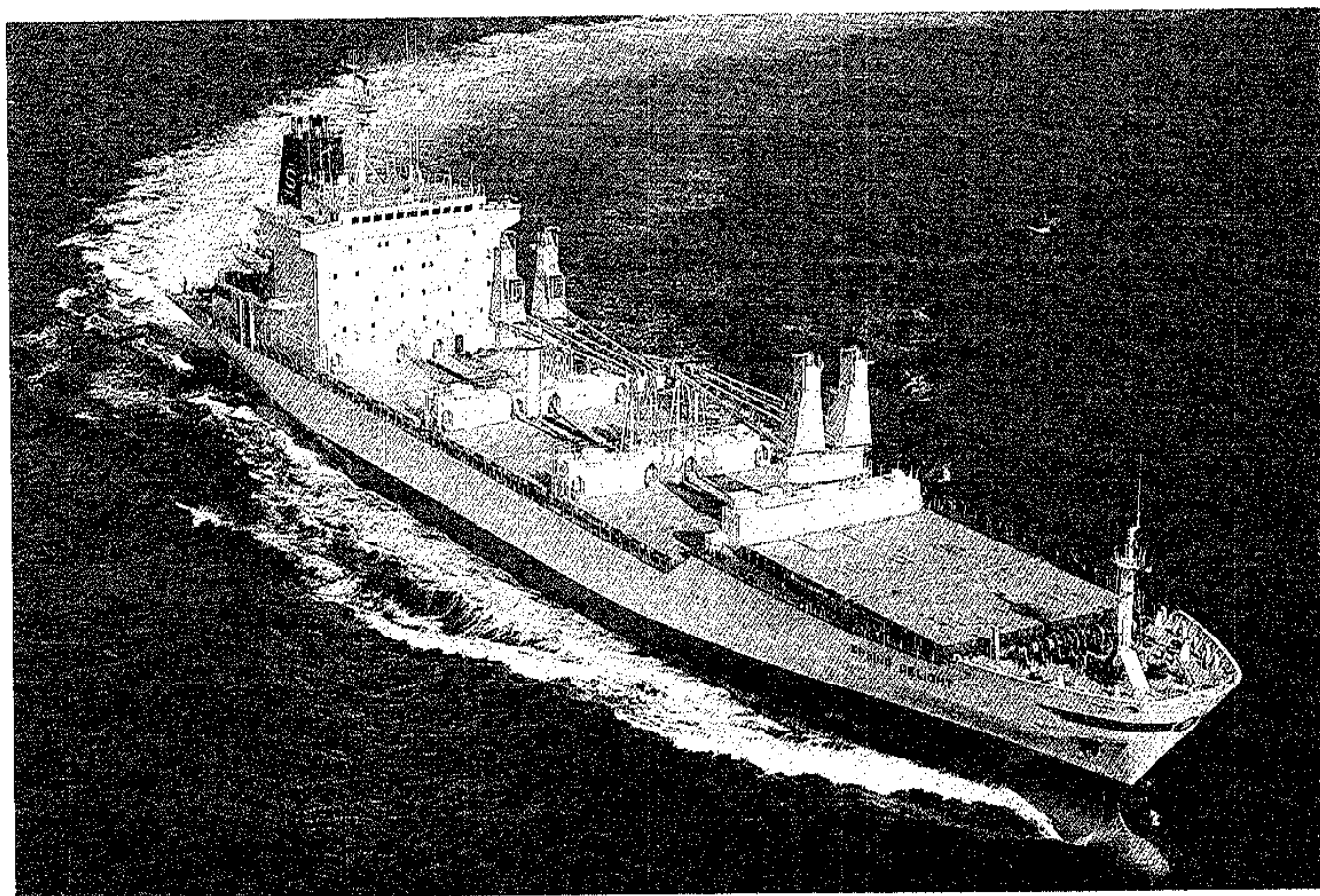
對노르웨이 케미칼 탱커



對西獨 콘테이너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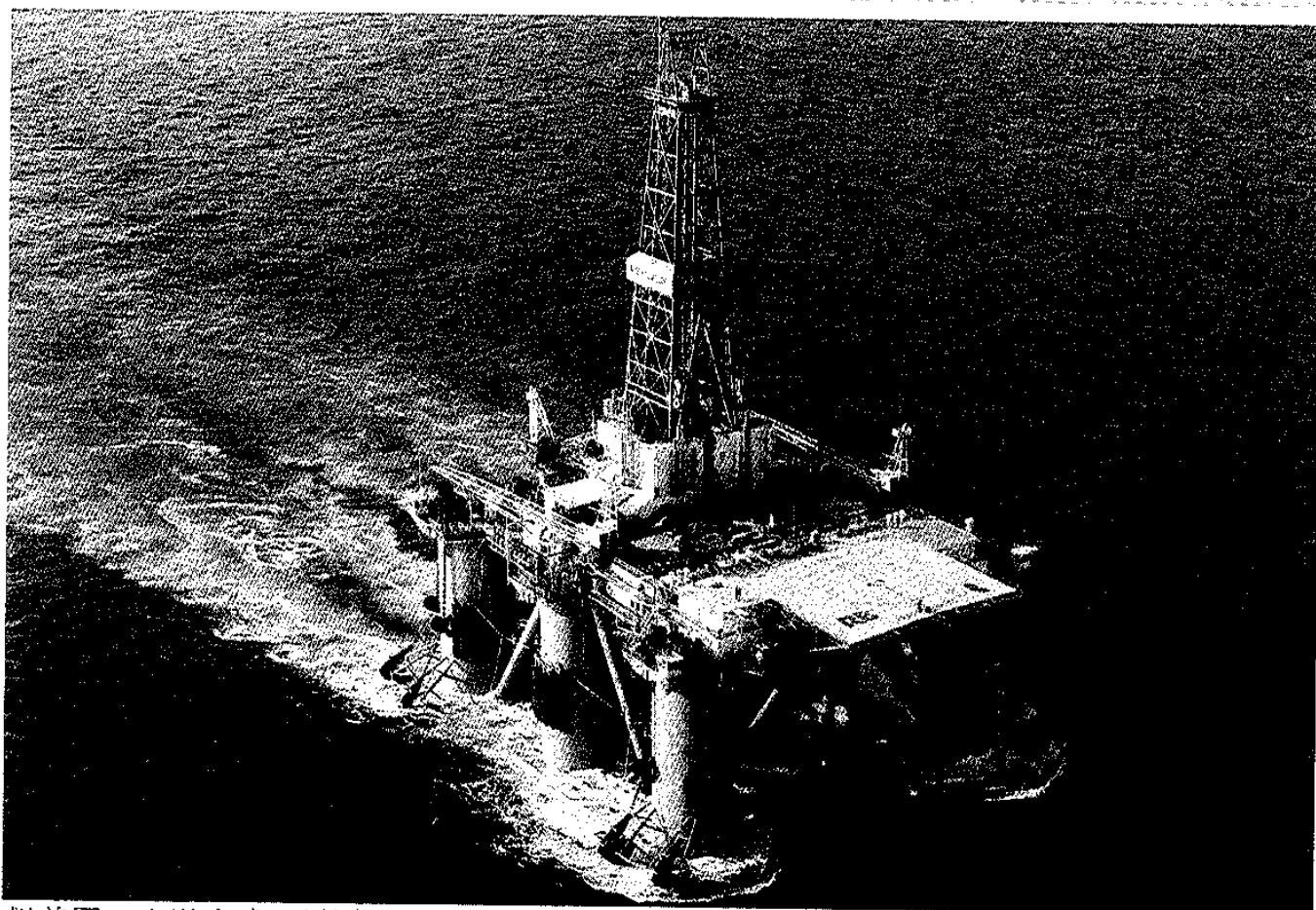


對英國 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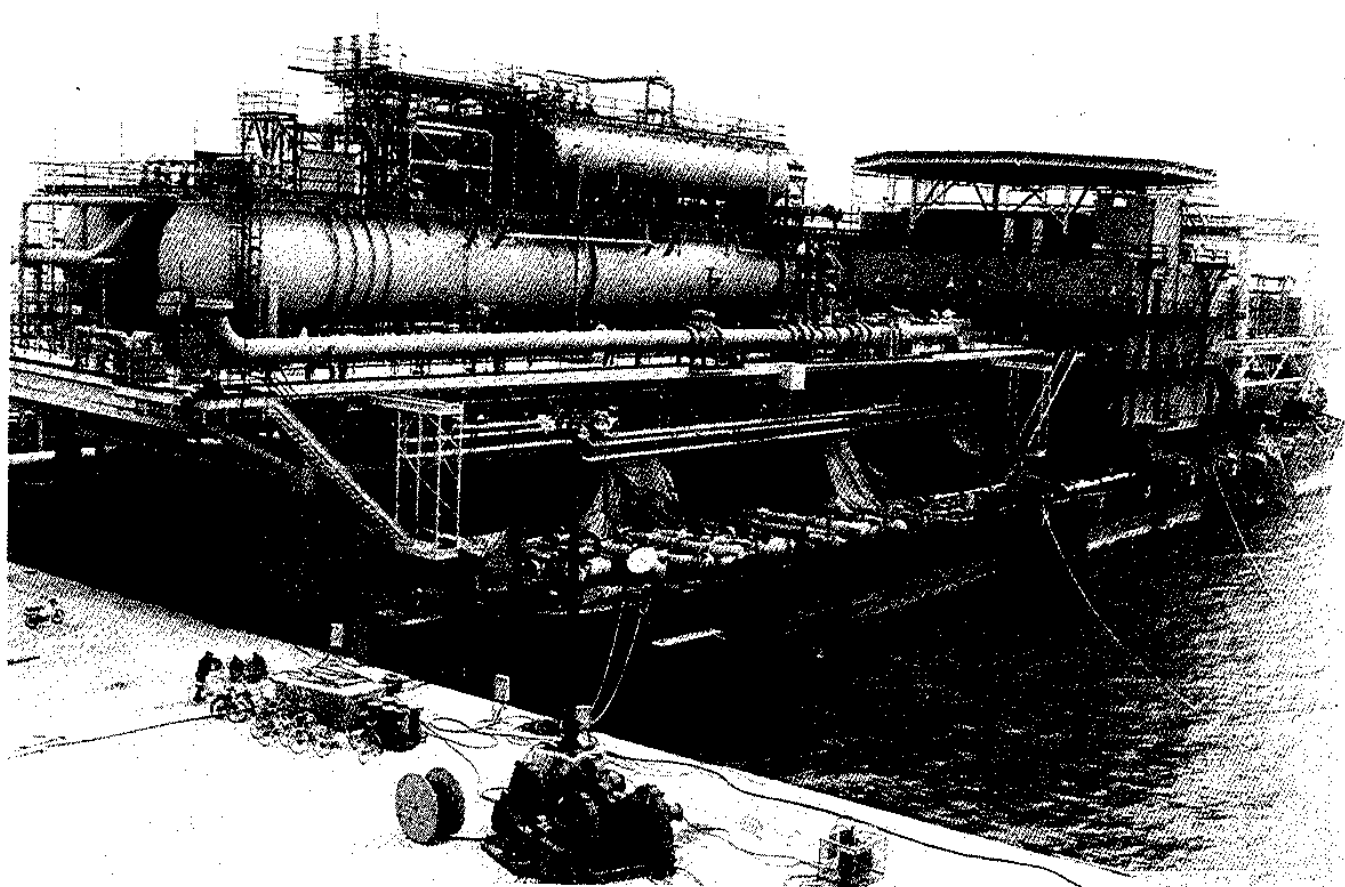


對스웨덴 冷凍貨物船

海上設備輸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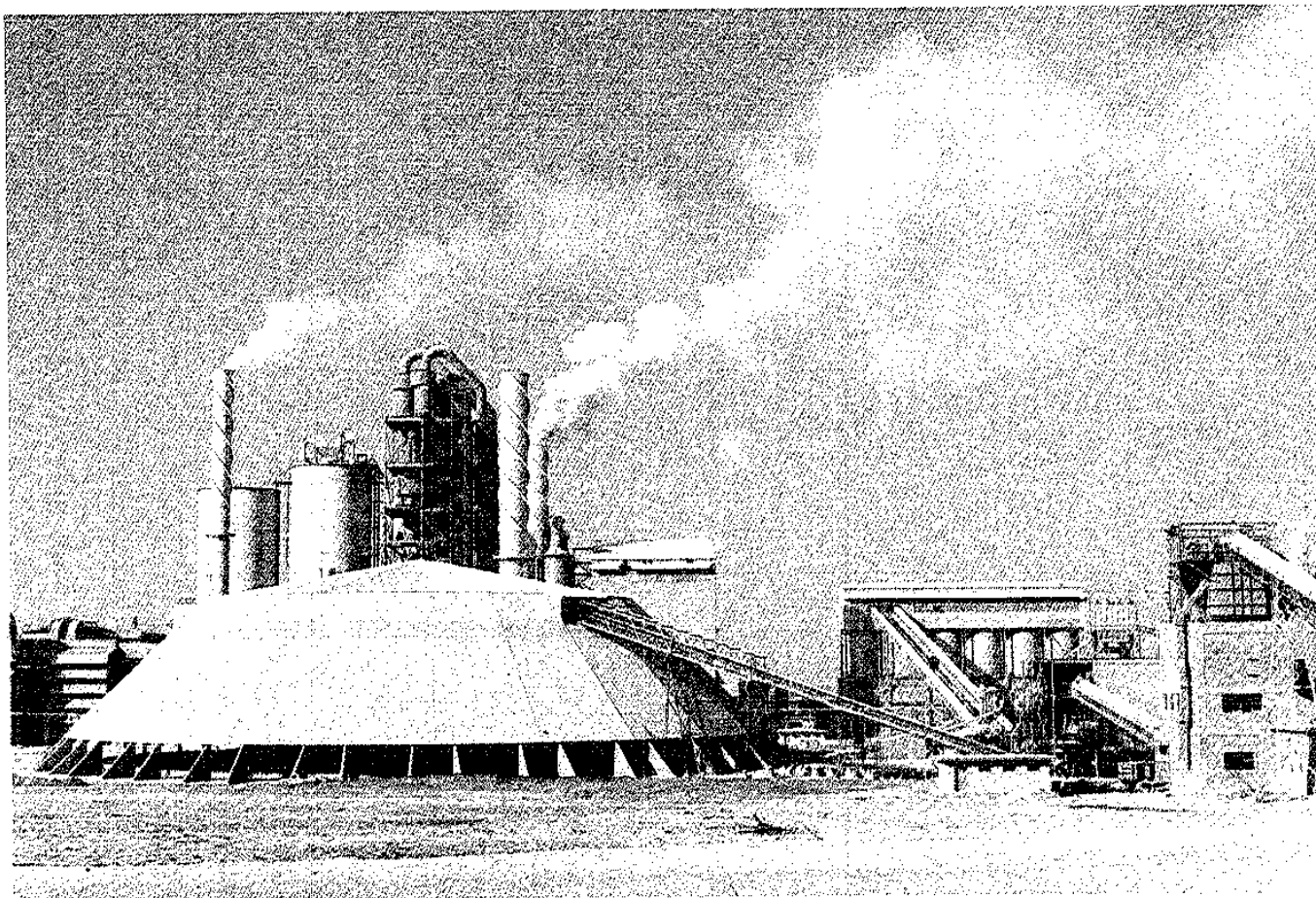


對美國 半潛水式 試錐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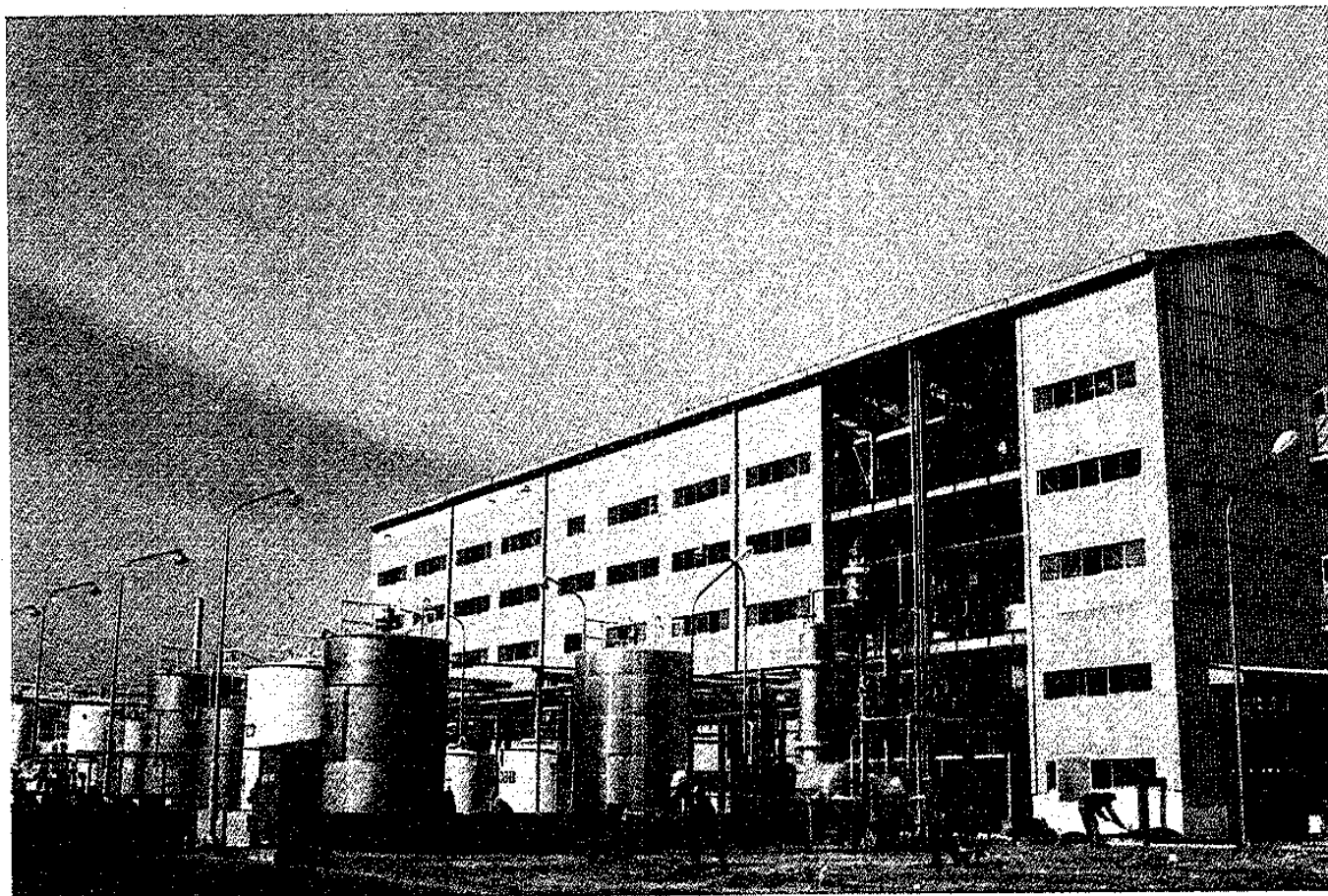


對印度 海上石油試錐 및 生産設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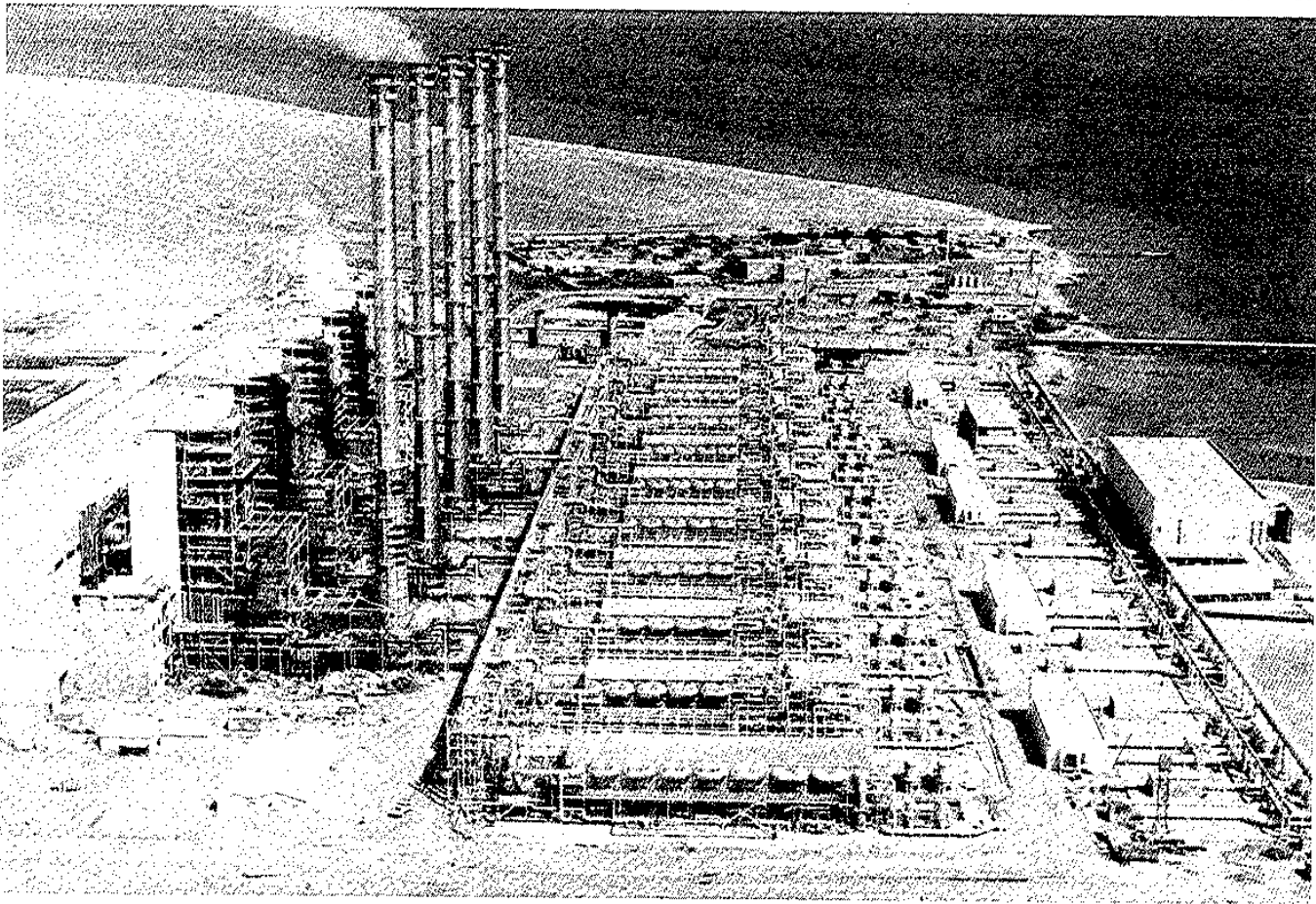
플랜트 및 機械類輸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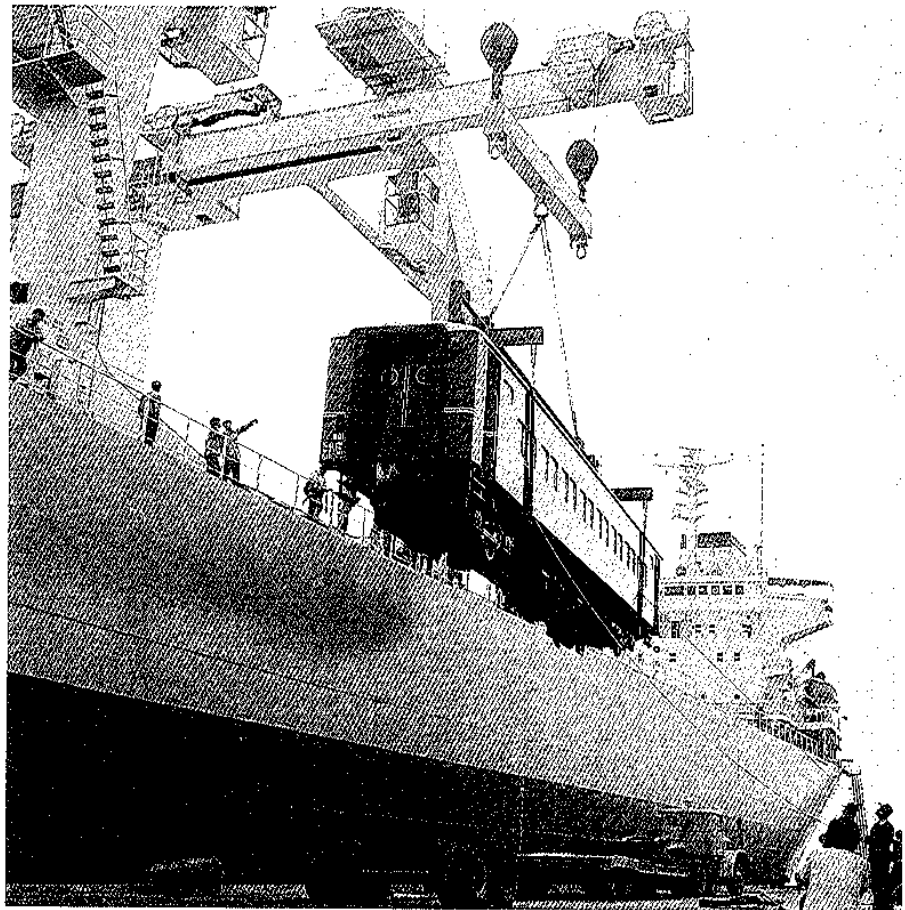
對 사우디아라비아 시멘트 플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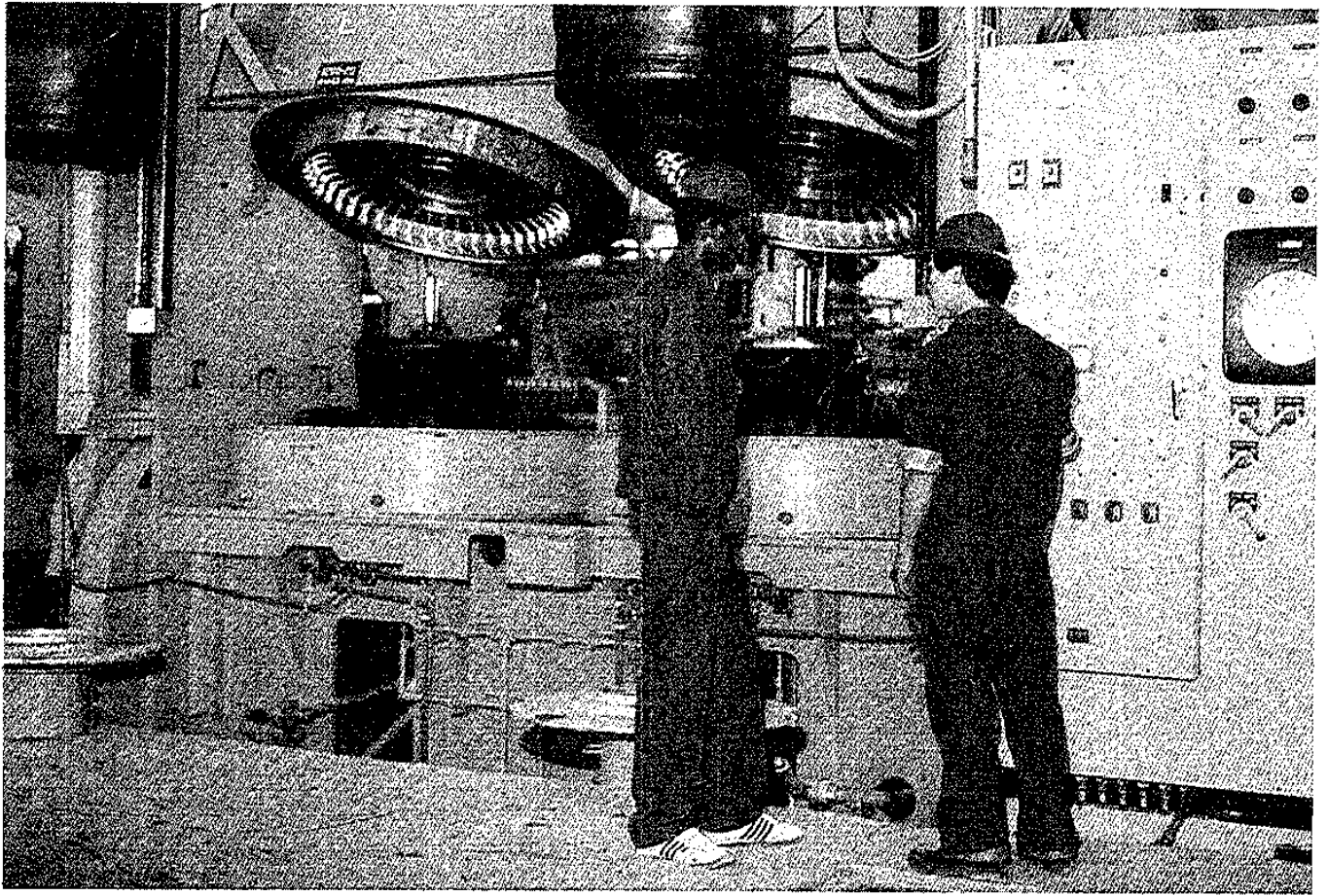
對 인도네시아 農藥原料 플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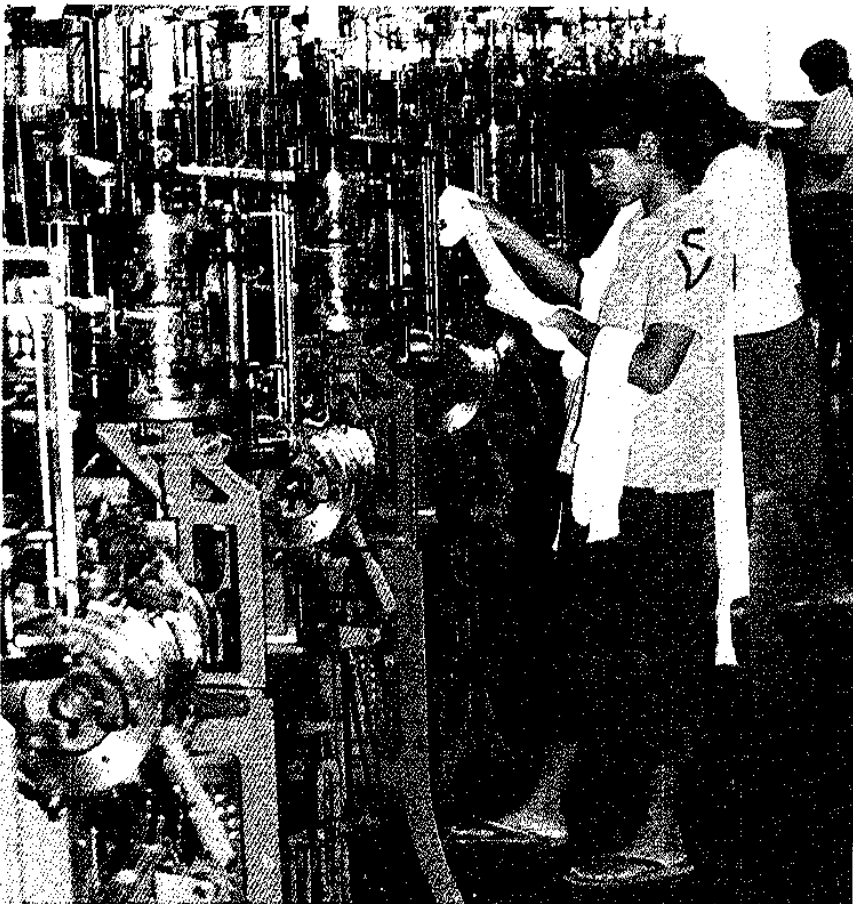
對 사우디아라비아 脫鹽水플랜트



對 방글라데시 鐵道車輛



對수단 타이어플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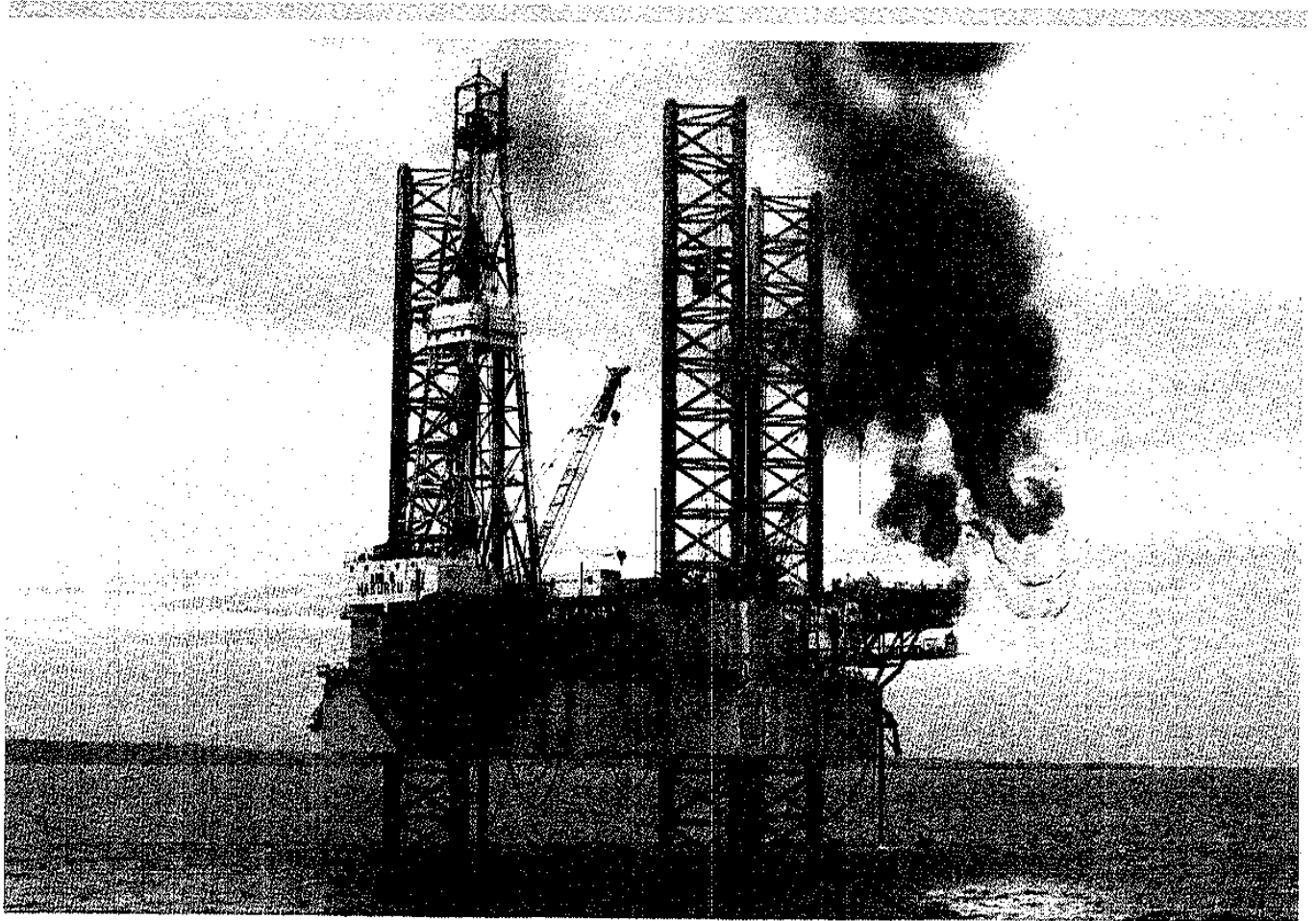
對스리랑카 양말生産工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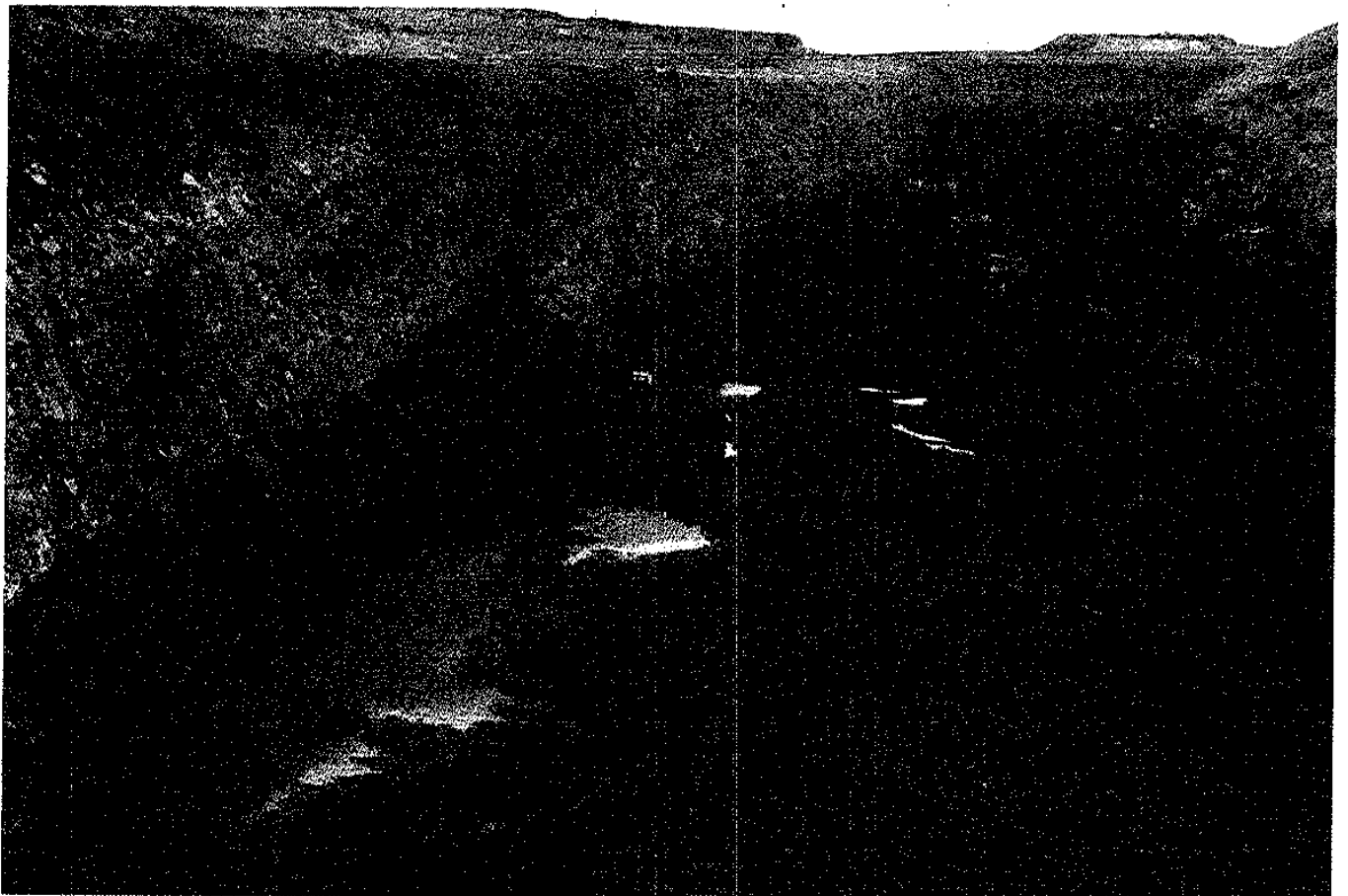
對北마리아나 衣類縫製事業



對도미니카共和國 가방製造事業



對인도네시아 油田開發事業



對濠洲 有煙炭鑛開發事業



對濠洲 有煙炭鑛開發事業



對인도네시아 山林資源開發事業

우리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서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외채를 줄여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체질을 바꾸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약과 저축을 생활화해야만 우리 경제를 건실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全斗煥 大統領閣下 第21回 輸出의 날 記念式 致辭抄)

1. 要約貸借對照表

	1976	1977	1978	1979
〈資 産〉				
預 置 金	903	25,476	23,494	18,132
有 價 證 券	21,945	31,047	46,502	74,600
貸 出 金	56,171	120,641	164,610	225,523
支 給 承 諾 代 充		22,232	29,302	26,699
延 拂 어 음 賣 渡 代 充				
業 務 用 固 定 資 産	94	1,994	3,710	5,358
其 他 資 産	1,631	2,262	539	838
合 計	80,744	203,652	268,157	351,150
〈負 債 및 資 本〉				
外 國 換 金	13,000	60,357	74,116	145,877
借 入 金				
發 行 金 融 債 券				
支 給 承 諾		22,232	29,302	26,699
延 拂 어 음 賣 渡				
延 拂 어 음 賣 却 代 金		7,870	6,397	5,677
未 支 給 延 拂 어 음 買 入 代 金				
受 入 保 證 金		259	818	802
其 他 負 債	886	1,324	3,668	5,759
充 當 金	22	2,512	3,446	4,926
資 本 金	65,355	105,355	140,355	144,855
積 立 金	101	1,481	3,743	10,056
當 期 純 利 益	1,380	2,262	6,312	6,499
合 計	80,744	203,652	268,157	351,150

(단위 : 백만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5,954	8,318	82,003	11,891	121,871	1,114,872
32,000	70,000	3	340,013	605,531	30,012
511,456	947,602	1,563,828	2,055,194	2,606,944	3,349,861
39,677	311,541	439,309	361,241	407,842	372,312
			132,587	271,807	253,138
6,608	10,043	10,690	8,423	15,721	30,406
678	2,195	9,621	13,679	10,828	26,784
596,373	1,349,699	2,105,454	2,923,028	4,040,544	5,177,385
439	490	2,056	1,518	12,803	2,539
312,790	588,246	1,007,723	1,395,468	1,624,303	1,941,874
				57,899	369,933
39,677	311,541	439,309	361,241	407,842	372,312
			132,587	271,807	253,138
6,383	138,178	243,380	574,524	1,146,781	1,579,058
			915	19,373	18,875
912	3,078	2,074	4,371	2,882	2,203
9,965	16,196	37,279	35,975	63,022	79,113
10,852	10,397	16,992	20,081	26,197	70,911
179,105	244,855	318,855	357,855	367,855	427,855
16,555	36,250	36,718	37,786	38,493	39,780
19,695	468	1,068	707	1,287	19,794
596,373	1,349,699	2,105,454	2,923,028	4,040,544	5,177,385

發刊辭

韓國輸出入銀行은 1976년 7월에 設立된 以來 10年이 되었습니다. 10年이면 한 年代를 구분짓는 期間이라고도 합니다만, 輸銀의 지난 10年은 특히 創業의 기틀을 다진 보람된 한 年代로서 기록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1969년의 輸銀法 制定과 1976년의 輸銀 設立은 당시의 왕성한 工業化 意志를 반영, 重化學製品 輸出增大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設立 이후 輸銀은 우리 經濟의 成長·發展을 촉진하고 對外經濟交流를 증진하는 데 큰 몫을 해 온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經濟開發計劃이 처음으로 시작된 60년대초 이후, 우리 經濟는 괄목할 만한 量的 成長과 質的 高度化를 거듭해 왔으며 20餘年の 짧은 기간 안에 低開發國에서 一躍 中進工業國으로까지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高度成長과 工業化는 급속한 輸出伸張과 지속적 設備投資의 증대에 의해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특히 급속한 輸出伸張은 需要面에서 成長을 주도하는 한편 設備投資 확대를 위한 外換收入의 주요한 源泉을 이루었습니다.

1969년의 輸銀法 制定은 이러한 對外指向의 工業化 戰略을 수행키 위한 制度的 裝置로서 輸出商品構造의 高度化와 新市場 開拓을 위한 金融의 先導機能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輸銀은 6年餘의 業務代行期間을 거쳐 1976년에 정식 설립되었는데 이는 70년대 중반 이후 우리 經濟의 重工業化가 急進展함에 따라 重工業製品 輸出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實物經濟의 급속한 成長·發展과 重工業製品의 輸出 증대를 반영하여 輸銀의 業務는 規模面에서 매년 크게 늘어 왔을 뿐 아니라 그 內容 또한 다양화되어 왔습니다. 支援實績에 있어서는 船舶, 「플랜트」 등의 延拂輸出金融이 大宗을 차지해 왔으나, 近年에는 主要資源의 開發事業과 製造業 등의 海外直接投資 金融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1985년말 현재 融資殘額은 3兆 3千億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信用供與國도 60個國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國際經濟環境의 變動이 輸銀 業務에 미치는 影響도 그만큼 더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昨今の 對外經濟與件은 2次 石油波動 이후 世界景氣回復의 遲延, 先進

國의 財政赤字와 開發途上國의 債務累積, 그리고 主要 輸出對象國들의 保護貿易主義 強化 등 만만치 않은 挑戰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經濟環境 變化 속에서 우리 經濟의 지속적인 成長·發展을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智慧와 그에 副應하는 機能의 活性化 그리고 業務의 內實化가 더욱 切實하다 하겠습니다.

1986년초부터 豫期치 못한 油價 下落과 國際金利 引下 그리고 「엔」貨 強勢 등 三低時代의 등장으로 國內外 經濟與件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986년 상반기 이후 貿易收支는 大幅 改善되고 있고 國內景氣 역시 上昇勢를 지속하는 등, 우리 經濟는 새로운 跳躍의 轉機를 맞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世界造船景氣의 後退로 인하여 國內 造船業界는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OECD 「가이드라인」金利의 適用등, 우리의 支援條件에 대한 關心과 더불어 先進國은 거의 모든 分野에 걸쳐 우리 나라를 競爭對象國으로 간주하고 있어 延拂輸出金融 業務를 專擔하고 있는 輸銀으로서의 이러한 周邊 經濟環境의 變化에 適宜 對處함은 물론 國際金融機關으로서의 位置를 더욱 공고히 다져가는 외에 優秀한 人材의 養成과 業務領域의 質的 深化 및 量的 擴大를 통한 國民經濟 發展에의 寄與度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때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10年史의 發刊은 輸銀 設立 이래 10年の 발자취를 되돌아 보면서 自省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今後 보다 나은 業務運營을 위한 參考資料를 마련하는데 그 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資料가 당초의 意慾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급變하는 世界經濟의 흐름을 把握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輸銀에 대한 여러분의 聲援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望外의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1986년 7월 1일

銀行長

柳 憶 佐

目 次

發 刊 辭

第 1 章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

第 1 節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背景	3
1. 工業化 基盤의 構築	3
2. 輸出第一主義 政策의 持續	4
第 2 節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經緯	7
1. 韓國輸出入銀行法의 制定	7
2. 韓國輸出入銀行 業務의 代行	10
3.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	11
設立委員會와 設立事務局의 發足 11 設立事務의 遂行 12 任員의 任命 12 資本金의 納入 12 設立登記 및 設立公告 13 設立事務의 引繼 및 設立經過 報告 13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 13	
第 3 節 韓國輸出入銀行의 機能	14
1. 輸銀의 設立目的	14
重化學工業製品輸出 支援 14 海外投資事業 支援 15 海外資源開發事業 支 援 16 對外經濟協力事業 支援 16	
2. 輸銀法의 改正	17
第1次 改正 17 第2次 改正 19	

第 2 章 經濟의 發展과 韓國輸出入銀行

第 1 節 概 觀	23
第 2 節 經濟發展과 產業構造 高度化	26
經濟開發 始發期(1962~66년) 26 高度成長期(1967~73년) 29	
第 3 節 重化學工業 育成과 輸出産業化 進展	34
重化學工業 育成期(1974~78년) 34 安定基調 定着期(1979~85년) 40	
第 4 節 輸銀의 金融支援과 輸出高度化	48
1. 重化學工業化와 輸銀의 金融支援	48
2. 輸銀金融支援과 輸出増大	50
資金別 支援實績 52 品目別 支援實績 53	

第3章 韓國輸出入銀行 業務의 發展

第1節 概觀	57
1. 資金調達의 多樣化	57
國內調達 58 海外調達 58	
2. 資金支援業務의 擴充	59
3. 輸出保險業務의 伸張	60
4. 支援業務의 強化	62
第2節 資金調達의 多樣化	63
1. 資金調達業務의 變遷	63
概要 63 資金調達 實績 64	
2. 國內財源의 安定的 調達	67
資本金 및 積立金 67 國民投資基金 借入 69 其他 國內資金 調達 71	
3. 海外財源의 比重 增大	72
銀行團借款 導入 72 保有延拂어음의 賣却 75 轉貸借款 導入 76 外貨表 示 輸出入金融債券 發行 79	
第3節 資金支援의 擴充	87
1. 資金支援業務의 變遷	87
業務의 多樣化 87 支援條件의 彈力的 運用 91	
2. 輸出資金 支援의 擴充	94
支援制度의 概要 94 支援制度의 變遷 98 輸出資金 支援實績 119	
3. 直接貸出 및 轉貸資金의 支援	120
直接貸出 120 轉貸資金 125	
4.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 支援의 擴大	129
支援制度의 概要 129 支援制度의 變遷 130 支援實績 132 中小企業 海外 投資의 支援 133 主要 支援「프로젝트」 134	
5. 與信實行 및 管理業務의 效率化	141
貸出執行業務의 變遷 141 資金別 貸出執行實績 151 支給保證 및 外國換業 務 159	
第4節 輸出保險 業務의 伸張	162
1. 輸出保險制度의 變遷	162
輸出保險의 概念 및 導入背景 162 輸出保險法의 制定 및 改正 163 輸出保 險 運營機關의 變更 164 輸出保險 運營組織 166 輸出保險基金 168	
2. 輸出保險 支援의 擴充	168
制度의 開發 및 改善 168 輸出保險의 運營實績 174 輸出保險業務의 國際 化 181	
第5節 支援業務의 強化	183
1. 組織의 變遷	183

政策決定機構 183 機構, 人員 및 職制 187	
2. 人事管理의 效率化	199
人事管理 199 研修 202 福祉・厚生 207	
3. 調査分析業務의 活性化	208
國別信用度評價業務의 內實化 209 經濟調査分析業務의 強化 216	
4. 法規業務	218
契約書의 法的 檢討 219 法的 檢討의 基本方向 220 法的 檢討業務의 擴大發展 221 輸銀法 및 同法 施行令 改正推移 222	
5. 事務合理化	223
事務改善 224 事務機械化 225 業務電算化 226	
6. 其他業務	228
行舍의 新築 228 金融淨化運動의 擴散 230 새마을運動의 持續的 展開 231	

附 錄

I. 法規編

1. 韓國輸出入銀行法	238
2. 韓國輸出入銀行法의 改正	244
3. 韓國輸出入銀行法施行令	262
4. 韓國輸出入銀行法施行令의 改正	267
5. 韓國輸出入銀行定款	281
6. 韓國輸出入銀行定款의 改正	287
7. 韓國輸出入銀行 業務方法書	303
8. 韓國輸出入銀行 業務方法書의 主要 改正內容	316
9. 輸出保險法	325
10. 輸出保險法施行令	337
11. 輸出保險法施行規則	341

II. 資料編

1. 主要 與信條件의 變更 推移	344
2. 機構 및 組織 變動 推移	346
3. 歷代 運營委員 및 任員	350
4. 歷代 部(室・支店・所)長	353
5. 年表	359

III. 統計編

1. 要約貸借對照表	398
2. 要約損益計算書	400

第 1 章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

第 1 章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

第 1 節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背景

韓國輸出入銀行은 1976년 7월 1일에 설립되었으나 韓國輸出入銀行法과 同法 施行令이 마련된 것은 이보다 거의 7년이 빠른 1969년의 일이었다.

이에 앞서 延拂輸出支援制度의 도입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4년(輸出振興綜合施策)이며, 輸銀 設立이 보다 구체화된 것은 1968년에 商工部가 최초의 延拂輸出計劃을 수립하면서 부터였다.

1968년의 第1次 輸出振興擴大會議에서 商工部는 東南아시아 7個國에 船舶, 버스, 機械類, 織物「플랜트」등 19백만「달러」상당의 延拂輸出을 추진한다는 計劃을 처음 보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大統領은 延拂輸出을 통한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擴大에 노력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商工部는 “中長期延拂輸出振興方案”을 작성했으며 財務部는 “中長期輸出支援金融制度 確立方案”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中長期 延拂輸出支援을 위한 專擔金融機關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輸銀 設立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 후 1年餘만인 1969년 7월에 輸銀法이 제정, 공포되었고 10월에는 다시 同法 施行令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처럼 輸銀 設立論議로부터 輸銀法 制定에 이르는 기간이 비교적 짧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강력한 工業化 意志와 왕성한 輸出「드라이브」政策에 힘입은 결과라 할 수 있다. 法制定 이후 輸銀설립시까지 6年餘의 業務代行期間을 거쳤다는 점에서도 당시의 輸銀法 제정은 重工業製品의 延拂輸出이 본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輸出振興施策의 다변화를 통한 輸出伸張, 나아가서는 工業化를 앞당기려는 政府의 강력한 工業化 意志를 반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 工業化 基盤의 構築

실제 1960년대 후반에 있어 우리 經濟는 輸入代替産業의 육성에서 시작된 상당 수준의 工業化 基盤을 구축할 수 있었다.

1962년의 第1次 5個年計劃을 기점으로 工業化는 計劃的 開發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生産의 量的 増大와 더불어 新規産業의 개발을 통한 工業構造의 質的 改善을 거듭할 수 있었다.

第1次 5個年計劃 기간중의 基幹工業의 확충, 新規工場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工業生産을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製造業 生産指數는 1960년의 100.0에서 1966년에는 216.3으로 증가하여 工業生産은 6년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業種別로는 輕工業 내지 消費財工業의 生産増加가 2배에 약간 못 미쳤던 반면, 重化學工業의 생산은 2~6배의 급신장을 나타냈다.

第1次 5個年計劃은 新規産業의 개발을 통한 産業多樣化에도 크게 기여했다. 「비스코스」人絹絲工場의 건설에서 시작된 化學纖維工業의 확충, 「에너지」供給源으로서의 精油工場 건설, 기타 化學肥料 및 基礎化學 生産工場의 건설 등은 그 대표적 例라 할 수 있다. 新規工業의 개발은 第2次 5個年計劃 기간중의 급격한 工業化를 추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후 工業構造는 점차 重化學工業化 傾向을 보이기 시작했다.

1967년부터 시작된 第2次 5個年計劃은 經濟의 量的 成長에 더하여 經濟의 體質 改善을 통한 自立經濟構造의 확립을 지향했다. 第2次 5個年計劃은 “重化學工業의 건설에 의하여 工業高度化의 기틀을 잡고 工業生産을 倍加한다”는 데 시책의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鐵鋼工業, 機械工業, 石油化學工業 등 重化學工業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무리가 뒤따르기도 했으나 이 기간중 우리 經濟는 상당 수준의 工業化를 이룩할 수 있었으며 電子, 機械 등의 일부 업종은 부분적으로 輸出産業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重化學工業化의 추진은 일면 海外市場을 겨냥해야 한다는 점에서 工業化는 輸出産業化와 表裏의 관계를 이루면서 추진되었다.

앞서 본 延拂輸出計劃의 立案과 輸銀設立 構想의 과정은 이러한 工業化 基盤의 구축과 重化學工業의 輸出産業化 노력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輸出第一主義 政策의 持續

1960년대 후반은 工業化 노력과 더불어 1962년 이후의 왕성한 輸出「드라이브」政策, 이른바 輸出第一主義 政策이 더욱 강화되던 시기였다.

第1次 5個年計劃의 시행과 더불어 政府는 輸出第一主義를 표방하기 시작했고 이

를 위한 制度의 整備強化에 착수했다. 1962년의 輸出振興法 제정은 그 이후에 있어서의 産業政策 추진의 根幹을 이루었다.

그 결과, 1960년에 32백만「달러」에 그쳤던 商品輸出은 1964년에 1억「달러」를 넘어섰으며 1966년에는 2.5억「달러」로 증대되었다. 輸出商品構成도 종전의 1次產品 중심에서 工產品 중심으로 고도화되었는바,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工產品의 비중은 1962년의 27.0%에서 1966년에는 62.4%로 급격히 높아졌다.

第2次 5個年計劃 기간에 들어서면서 輸出「드라이브」政策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특히 製造業 部門의 輸出産業化 노력이 경주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67년에 3.5억「달러」에 머물렀던 商品輸出은 1969년에는 7억「달러」로 倍增되었으며 1971년에는 다시 13.5억「달러」로 급증되었다. 輸出商品構造는 더욱 工產品化 경향을 보여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工產品의 비중은 1966년의 62.4%에서 1967년에는 70.1%, 그리고 1969년에는 79.0%로 높아졌다.

우리 나라의 商品輸出은 1962~69년중 연평균 40.6%의 급신장을 이룩했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工產品 중심으로 고도화되어 1969년의 工產品 輸出은 1962년보다 약 36배가 늘어난 이례적인 고도성장을 기록하게 됐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있어 工產品 輸出은 輕工業製品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重化學工業製品의 비중은 10% 내외에 머물렀다. 1968년의 경우, 최대 輸出品目은 合板이었으며 다음으로 衣類, 「웨터」, 假髮, 生絲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 후반에 重化學工業製品, 특히 資本財의 輸出伸張을 도모하기 위한 延拂輸出支援制度의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 나라의 重化學工業 발전이 본궤도에 올라섰고 이를 위한 海外市場 개척과 中長期 輸出金融支援의 필요성이 시급했던 때문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왕성한 輸出「드라이브」政策, 특히 輸

〈表 1-1-1〉

工產品 輸出構造 推移

(단위 : %)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輕 工 業 製 品	76.9	87.4	95.1	94.5	93.3	92.3	91.8	86.9
重 化 學 製 品	23.1	12.6	4.9	5.5	6.7	7.7	8.2	13.1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 輕工業製品은 SITC 6類 및 8類(原料別 製品과 雜製品), 重化學製品은 SITC 5類 및 7類(化學製品 및 機械類)임.

資料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1

〈表 1-1-2〉

1960年代 下半期の 主要輸出商品

(단위: 천「달러」)

品 目	輸 出 實 績		品 目	輸 出 實 績	
	1966	1968		1966	1968
活 鮮 魚	6,967	7,231	輕 編 織 物	3,800	13,789
오 정 어	6,290	1,968	衣 類	12,548	51,198
참 치	7,905	11,231	세 티	15,020	43,098
海 苔	6,600	16,641	漁 網	2,557	4,165
葉 煙 草	6,388	10,308	신 밭 類	4,834	15,487
人 蔘	2,011	4,442	假 髮	10,678	30,551
重 石	10,998	12,761	양 말	1,966	2,036
生 糸	11,412	21,024	合 板	30,458	67,109
合 織 織 物	3,781	4,702	라 디 오	2,652	2,660
綿 織 物	4,105	13,314	鐵 鋼 材	8,990	1,945
毛 織 物	3,380	5,614	시 멘 트	227	2,549

資料: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1965~70

出振興施策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1960년대의 輸出振興施策은 전반에는 輸出獎勵補助金を 주축으로 그 동안의 각종 政策을 정비, 강화하는 데 그쳤던 반면, 후반에 와서는 더욱 多樣化, 系統化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 시기의 主要施策內容으로는 輸出振興綜合施策의 樹立推進(1964년 이후), 靑瓦臺 輸出振興擴大會議 개최(1965년 이후), 「네거티브 시스템」의 채택(1967년), 彈力關稅制度의 실시(1968년), 輸出工業團地 및 輸出自由地域의 조성(1969년), 韓國輸出入銀行法の 제정(1969년), 輸出保險制度의 실시(1969년) 등을 들 수 있다.

第2節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經緯

韓國輸出入銀行은 1969년 7월 輸銀法이 제정, 공포된 다음 同年 10월부터 韓國外換銀行이 業務代行業을 시작한 이래 6년 8개월만인 1976년 7월 1일에 설립되었다.

政府가 重化學工業製品의 延拂輸出을 촉진시키기 위한 中長期輸出金融 支援方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은 1968년 第1次 輸出振興擴大會議에서 延拂輸出을 통해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振興에 노력하라는 大統領의 특별지시가 있는 다음의 일이었다. 동지시에 따라 財務部는 “中長期輸出支援金融制度 確立方案”을 그리고 商工部는 “中長期延拂輸出振興方案”을 제시하였다. 政府는 이들을 검토, 財務部가 제시한 方案을 根幹으로 한 韓國輸出入銀行法案을 마련하여 1969년초 國會에 제출하였다. 同法案은 審議過程에서 일부 수정되어 同年 7월 10일 國會 本會議에서 가결되었으며 7월 28일 法律 第2122號로 공포되었다.

뒤이어 同年 10월 政府는 同法 施行令을 제정하는 등 輸銀業務 개시를 위한 法的 根據를 마련하여 輸銀法 附則에 따라 韓國外換銀行에 1억원의 財政資金을 貸下하여 1969년 10월 29일부터 輸銀業務를 대행케 하였는바 이는 당시 아직은 본체도에 오르지 못한 우리 나라의 重化學工業 수준 그리고 政府財政 형편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1972년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시작되면서 政府는 重化學工業化를 선언하는 등 重化學工業 育成政策을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1975년부터 船舶을 중심으로 한 重化學工業製品의 延拂輸出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重化學工業製品 延拂輸出의 急伸張에 따라 輸銀設立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어 政府는 1976년 4월 輸銀을 설립키로 결정하고 設立委員會와 設立事務局을 발족시켰으며 이에 따라 1976년 7월 1일 輸銀이 정식 설립되어 業務를 개시하게 되었다.

1. 韓國輸出入銀行法の 制定

1968년 第1次 輸出振興擴大會議時 延拂輸出을 통한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振興

을 기하라는 大統領의 특별지시를 계기로 中長期輸出金融 支援方案이 구체적으로 논의,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財務部는 “中長期輸出支援金融制度 確立方案”을 商工部는 “中長期延拂輸出振興方案”을 각각 작성하였다.

財務部가 제시한 “中長期輸出支援金融制度 確立方案”은 特別法을 제정하여 中長期延拂輸出支援金融 專擔機構로서 輸出入銀行을 설립하되 당시 우리 나라 重化學工業 수준으로는 당분간 取扱業務量이 많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財政형편상 政府出資의 조속한 실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선 韓國外換銀行에 財政資金을 貸下하여 獨立會計로서 輸銀業務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편 商工部の “中長期延拂輸出振興方案”의 내용은 中長期延拂輸出振興法을 제정하여 財政資金과 中長期延拂輸出振興基金으로 資金을 확보하고 이의 운용에 있어서는 船積前에는 輸出契約書에 의거 支援對象品目の 生産 또는 製作에 필요한 原資材의 輸入資金과 生産 또는 製作資金을 지원하고 船積後에는 中長期延拂輸出金融을 지원하되 同業務는 第1案으로서 韓國銀行 또는 韓國外換銀行이 담당토록 하거나 第2案으로서 별도의 獨立機關을 설립하여 담당케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두가지 方案을 연구, 검토한 결과 政府는 外國의 경우 대부분의 資本財 輸出國들이 資本財 수출지원을 위한 專擔金融機關을 운영하고 있으며 延拂輸出金融業務의 내용이 특수하고 전문적인 점을 감안하여 專擔機構로서 輸銀을 설립키로 방침을 세우고 財務部가 제시한 方案을 根幹으로 韓國輸出入銀行法案을 마련하였다. 同法案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韓國輸出入銀行法案의 主要內容

1. 目的

中長期延拂輸出金融을 담당함으로써 外國市場 開拓과 貿易增進을 통한 對外 經濟交流를 촉진함.

2. 性格

全額 政府出資에 의한 特殊法人으로 하며 韓國銀行法과 銀行法은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3. 資本金

300억원으로 함.

4. 任員

總裁 1人, 副總裁 1人, 理事 5人 이내, 監事 1人으로 구성함.

5. 業務

- (1) 國內業者에 대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資本財 및 其他製品 輸出資金의 貸出 또는 어음의 割引
- (2) 國內業者에 대한 技術提供資金의 貸出 또는 어음의 割引
- (3) 外國政府 및 外國人에 대한 輸入資金, 技術導入資金의 貸出
- (4) 延拂輸出에 필요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物資輸入資金의 國內業者에 대한 貸出 또는 어음의 割引
- (5) 國內業者에 대한 海外事業資金 및 海外投資資金의 貸出
- (6) 前 (1), (2), (4), (5)의 貸出에 관련된 業務의 保證
- (7) 其他 附帶業務
- (8) 資金의 調達
 - ① 政府가 출자하는 資本金
 - ② 政府, 外國 金融機關 및 國內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
 - ③ 外國通貨表示 輸出入金融債券 發行

6. 業務의 制限

- (1) 銀行, 其他 國內 金融機關과의 競爭 禁止
- (2) 貸出, 割引 및 保證은 그 償還, 支給, 履行期間이 6월 이상, 5년 이내인 것에 한함. 다만 船舶, 鐵道車輛 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品目에 대해서는 10년까지 延長 可能
- (3) 借入 및 外債發行 限度는 納入資本金과 積立金 合計額의 10倍로 함.

7. 損益金의 處理

- (1) 純利益의 100分の 50은 적립하고 殘餘利益은 政府의 一般歲入으로 납입함.
- (2) 純損失은 積立金으로 충당하고 不足分은 政府가 보전함.

8. 經過措置

- (1) 輸出入銀行이 설립될 때까지 韓國外換銀行이 이 業務를 담당하되 이를 韓國外換銀行의 本業務와 분리된 獨立會計로 함.
- (2) 輸出入銀行의 설립과 동시에 韓國外換銀行에 대한 貸下金은 이를 政府 出資로 대체함.

上記法案은 1969년 초에 國事議 第343號로 國會에 제출되었는데 同年 6월 國會 財

務委員會 審議時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1969년 7월 10일 國會 本會議에서 가결되었으며 7월 28일 法律 第2122號로 공포되었다. 뒤이어 1969년 10월 6일 同法 施行令이 大統領令 第4009號로 제정, 공포되었다.

2. 韓國輸出入銀行 業務의 代行

輸銀法과 同法 施行令이 제정, 공포된 후 輸銀業務는 당초 政府 方針대로 輸銀法 附則 第3條에 따라 韓國外換銀行이 대행하게 되었는데 이미 1969년 5월 29일 中長期信用部를 신설하여 業務代행을 준비해 온 韓國外換銀行은 政府로부터 1억원의 財政資金을 貸下받아 10월 29일부터 輸銀業務를 대행하기 시작했다.

業務代行期間중의 財源은 주로 政府貸下金에 의존했으며 1975년 이후 延拂輸出 金融需要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터는 國民投資基金을 차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1975년 6월에는 韓國銀行이 韓國外換銀行에 출자한 500억원 중에서도 借入이 가능케 됨에 따라 이를 財源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한편 資金支援業務는 1971년 인도네시아의 山林資源開發을 위한 海外投資資金 388백만원 貸出을 始發로 점차 늘어나게 되었으며 1972년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추진에 따른 政府의 적극적인 重化學工業 育成政策에 힘입어 1975년부터는 船舶輸出支援을 중심으로 業務規模가 급신장되었다.

이에 따라 輸銀設立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었는바 장차 輸銀設立에 대비하도록 韓國外換銀行 中長期信用部는 1975년 7월 1일 輸銀企劃部와 輸銀業務部로 확대,

〈表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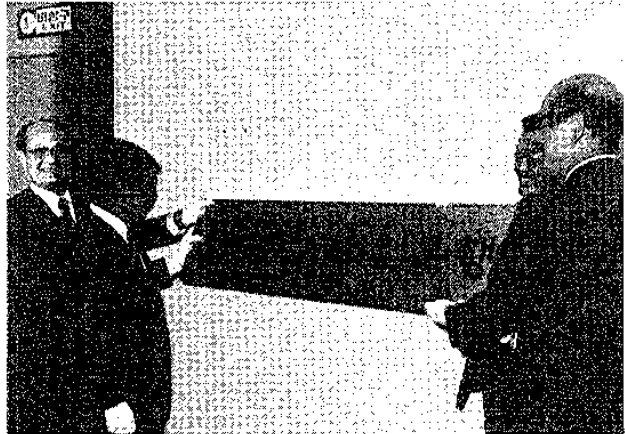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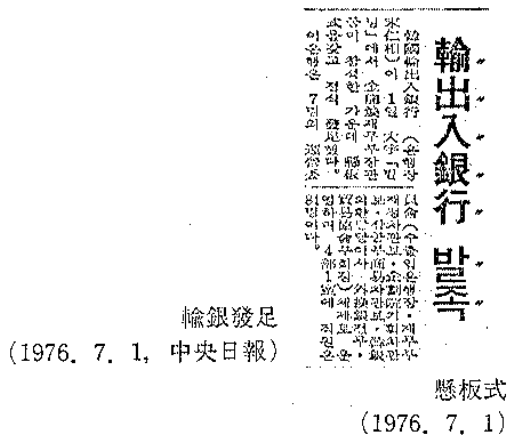
輸出入銀行資金 運用實績¹⁾

(단위: 백만원)

	輸 出 資 金		海外投資 資 金	貸出金回收	貸出殘額 (年月末)
		船舶資金			
1971			388		388
1972	1,158	793		98	1,448
1973	1,563	1,563		103	2,908
1974	1,568	1,312	752	890	4,338
1975	27,057	21,500	32	1,503	29,924
1976. 1~6	13,593	9,955	2,394	1,290	44,621
合 計	44,939	35,123	3,566	3,884	52,389 ²⁾

註: 1) 輸銀資金貸出 및 國民投資基金貸出만 포함.

2) 總貸出規模로서 輸出資金貸出, 海外投資資金貸出 및 貸出回收分の 再貸出을 합한 것임.



개편되었다.

한편 韓國外換銀行이 輸銀業務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輸銀法の 立法時에는 예견하지 못하였던 사항과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며 業務擴大에 따른 輸銀資本金의 増資가 요청되어 政府는 輸銀法 改正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輸銀法은 1974년 12월 26일 1次改正되어 法律 第2736號로 공포되었다. 輸銀法の 1次改正으로 設立目的에 海外資源開發에 필요한 金融供與가 추가되었고 法定資本金이 3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理事會制度가 폐지되고 대신에 運營委員會制度가 도입되었다. 뒤이어 政府는 法改正의 내용에 맞추어 施行令을 개정하고 1975년 2월 28일 이를 大統領令 第7561號로 공포하였다.

3.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

設立委員會와 設立事務局의 發足

1972년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시작과 함께 政府는 工業構造의 深化에 의한 지속적인 輸出伸張을 위해 重化學工業部門의 育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1975년부터는 重化學工業製品의 延拂輸出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延拂輸出金融 專擔機關인 輸銀의 設立이 절실히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政府는 1975년 7월 1일에는 韓國外換銀行 中長期信用部를 輸銀企劃部和 輸銀業務部로 확대, 개편하는 등 輸銀의 설립준비에 착수하였으며 1976년 4월 8일에는 輸銀의 設立方針을 최종, 결정하여 4월 10일에는 設立委員을 위촉, 輸銀設立委員會를 발족시켰다. 또한 設立委員會는 동일자로 設立事務局長을 임명하는 한편 韓國外換銀行 職員 12名으로 4個班을 편성하여 設立事務局을 발족시키고 그 事務室을 韓國外換銀行내의 輸銀企劃부에 설치하여 設

<表 1-2-2>

設立委員名單

委囑年月日	區 分	姓 名	職 位
1976.4.10	委員長	南 相 晉	財務部次官
1976.5.14	"	趙 忠 勲	財務部次官
1976.4.10	副委員長	河 永 基	韓國銀行 副總裁
"	委 員	高 炳 佑	財務部 財政次官補
"	"	朴 弼 秀	商工部 商易次官補
"	"	河 東 善	財務部 理財局長
"	"	鄭 寅 用	財務部 國際金融局長
"	"	洪 完 模	韓國外換銀行 專務理事
1976.5.14	"	宋 仁 相	韓國輸出入銀行長
"	"	李 泰 浩	韓國輸出入銀行 理事

立事務를 개시하였다.

設立事務의 遂行

1976년 4월 12일 第1次 會議에서 設立委員會規程, 設立委員會 事務局規程 그리고 設立委員會 經理規程 등 設立事務에 필요한 規程을 제정한 設立委員會는 1976년 6월 1일 第2次 會議를 개최하여 437백만원의 設立費豫算을 편성하는 한편 輸銀定款을 확정하여 6월 10일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았으며 輸銀本店 所在地를 서울特別市 中區 陽洞 286番地(大字「센터빌딩」16층)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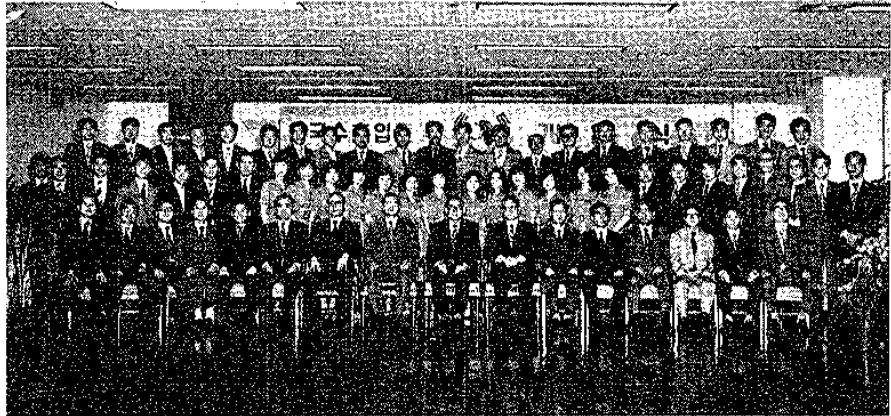
任員의 任命

設立委員會의 設立事務推進과 병행하여 政府는 輸銀法 第11條 規定에 따라 1976년 5월 12일 初代 韓國輸出入銀行長에 宋仁相氏를 임명한 데 이어 6월 1일에는 理事에 李泰浩氏와 元裕敏氏를 그리고 監事에는 朴鼎在氏를 각각 임명, 輸銀의 初代 任員陣을 구성하였다.

資本金의 納入

輸銀法 第4條 規定에 따라 設立登記를 위한 資本金이 납입되었는바 1976년 6월 17일에는 韓國銀行이 現金 200억원을 출자하였으며 韓國外換銀行은 輸銀앞 既貸出 債權 300억원을 資本金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6월 21일 政府는 財政資金 貸下金 53억 55백만원을 資本金으로 전환시켰다.

設立 當時의 任職員
(1976. 7. 1)



設立登記 및 設立公告

設立委員會는 1976년 6월 21일자로 輸銀法 附則 第2條 第3項 및 同法 施行令 第2條에 따라 서울民事地方法院에 輸銀의 設立登記를 완료하고 6월 22일 그 내용을 서울신문에 공고하였다.

設立事務의 引繼 및 設立經過 報告

設立委員會는 1976년 6월 23일 輸銀法 附則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輸出入銀行長에게 設立事務를 인계하였으며 同年 7월 20일 第3次 會議에서 輸銀設立에 관한 經過報告書를 확정하여 이를 財務部長官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임무를 종결하였다.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

한편 政府는 1976년 6월 25일 輸銀法 施行令 第34條의 규정에 의거, 輸銀의 業務開始日을 1976년 7월 1일로 지정함에 따라 輸銀은 이 날을 기해 정식 발족, 業務를 개시하게 되었다.

第3節 韓國輸出入銀行의 機能

1. 輸銀의 設立目的

輸銀의 設立目的은 輸銀法 第1條에 “輸出入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에 必要한 金融을 供與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과 對外經濟協力を 促進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輸銀設立의 背景이 되는 法制定 당시의 우리 나라 經濟狀況을 보면 重化學工業의 육성을 통한 産業構造의 高度化, 海外資源開發을 통한 資源의 長期 安定的 供給, 企業의 海外進出을 통한 外貨獲得과 對外經濟交流의 增進 등이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과 長기적 國家利益에 매우 중요한 政策課題로 인식되었다.

先進工業國과의 극심한 競爭위에서 이루어지는 資本財 輸出, 海外投資, 海外資源開發 등의 사업은 기존의 一般商業金融으로는 金融條件, 危險負擔면에서 많은 制約이 따르고 長期 低利의 政策金融支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金融을 擔當할 輸出入銀行의 設立이 요구되었다. 실제로 先進工業國은 輸出入銀行 또는 이와 유사한 金融機關을 통하여 이러한 對外去來를 지원해 오고 있었으며 同金融은 商業金融機關이 일반적인 條件으로 취급할 수 없는 部分을 支援對象으로 함으로써 商業金融에 대한 보완적인 性격을 띠고 발전해 왔다.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目的과 同設立目的의 主要機能을 우리 나라 經濟發展의 方向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된다.

重化學工業製品輸出 支援

船舶, 「플랜트」, 機械類, 鐵道車輛 등 重化學工業製品의 製作에는 長期의 期間과 巨額의 資金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輸出에 있어서는 一覽拂去來보다는 延拂去來가 많아 低利의 中長期信用을 수반하는 것이 國際去來의 慣行이다. 또한 輸出去來의 成立은 切열한 國際競爭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價格, 品質, 技術, 金融條件 등 각종 競爭要素의 國際比較優位가 수출의 成功與否를 결정한다. 이들 競爭要素중에서는 價格과 品質이 물론 가장 중요한 경쟁要素가 되지만 重化學製品

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開發途上國이므로 金利水準, 融資期間, 据置期間 등 金融條件이 경쟁의 焦點으로 되어 왔다. 이러한 現象은 輸銀이 설립된 후에도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第2次「오일 쇼크」를 전후해서는 開途國의 國際收支 악화와 先進國의 不況打開 노력이 相乘作用하여 “延拂金融戰爭”이라 불리울 만큼 심한 信用競爭의 양상을 보여왔다.

따라서 中長期輸出信用을 전담하는 輸銀의 첫번째 機能은 金融條件의 탄력적인 運用으로 輸出市場의 競爭狀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나라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을 촉진하고 對外競爭力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海外投資事業 支援

世界經濟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開放體制를 지향하고 있으나 資源波動 이후에는 新保護貿易主義의 팽배와 資源「내셔널리즘」의 대두 등으로 先進國의 輸入規制障壁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趨勢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工業化를 통한 輸出立國을 지향하는 우리 나라의 입장은 內需 및 輸出에 필요한 原資材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資源保有國에 직접 투자 진출하여야 하고 輸出市場의 隘路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先進國의 輸入制限措置를 피하여 輸入國 또는 第3國에 진출하여 迂迴輸出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海外投資進出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특히 國內의 人件費 上昇과 企業間의 競爭 激化로 收益性이 악화된 企業은 原資材 生産國 또는 低賃金國家에 진출하여 生産要素의 比較優位를 활용하여 競爭力을 회복하고 國內에서 낙후된 技術과 生産施設은 開途國에 이전하여 企業再生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海外投資는 資本, 技術, 經營의 集合體인 企業 자체가 海外로 진출한다는 점에서 商品輸出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言語, 風習, 制度가 다른 外國에서 企業을 운영하게 되므로 「리스크」가 높은 반면에 國際間의 각종 比較優位要素를 활용하게 되므로 성공적으로 운영될 때에는 收益率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外貨獲得, 市場開拓, 人力進出, 經濟協力 등 經濟的 效果가 商品輸出의 경우보다 몇 배로 큰 것이 통례이다.

이와 같이 海外投資는 그 성격상 投下資本의 懷妊期間이 길고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長期 低利의 政策金融 支援이 요청되며 初期段階에 있는 우리 나라 企業의 海外投資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도 輸銀의 적극적인 金融支援이 요청된다.

海外資源開發事業 支援

우리 나라는 資源의 海外依存도가 높은 資源不足國으로 工業化의 진전에 따른 國內消費用은 물론이고 輸出用 原資材도 輸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不足資源의 長期 安定的인 確保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한편 世界的인 資源供給 事情은 賦存資源의 有限性, 地域的 偏在, 資源生産의 非彈力性, 특히 資源保有國들의 資源「내셔널리즘」강화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는 반면 需要면에서는 人口增加와 함께 經濟規模의 확대, 資源多消費型 産業構造의 발달 등으로 資源需要가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資源消費國間에는 資源確保 競爭이 강화되고 종래의 單純輸入方式에서 資源保有國에 直接投資하여 開發輸入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입장도 이와 다를 바가 없으며 일부 企業은 이미 原木, 石炭, 原油 등에 開發投資하여 상당한 成果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 갈 趨勢에 있다.

이러한 開發投資輸入은 單純輸入에 비하여 필요한 資源을 안정된 價格으로 장기간 수입할 수 있는 利點은 있으나 資本의 懷妊期間이 길고 巨額의 資金이 소요되며 海外投資라는 면에서 각종 「리스크」가 따른다. 또한 開發投資輸入에 成功한 이후에도 國際資源價格의 등락에 따른 販賣면에서의 危險도 수반된다. 따라서 資源開發事業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輸銀의 政策金融 支援이 요청되며 資源開發事業중에서도 資源의 賦存量, 經濟性 등이 판명되고 生産段階에 들어가기 이전의 探查, 試錐 등의 開發段階에 있는 投資事業에 대하여는 일반 商業金融으로는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資源의 開發輸入方式에는 直接投資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방식이 있으며 資源保有國家에 따라 까다로운 要求條件이 많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데는 각종 「리스크」分析등 高度의 專門性이 요청된다.

對外經濟協力事業 支援

2次大戰後의 新國際經濟秩序는 各國간에 貿易은 물론 資本등 각종 生産要素의 자유로운 去來를 통한 相互利益의 향유라는 國際經濟協力の 強化를 基本理念으로 하고 있다. 對外指向의 成長을 추구하는 우리 經濟의 입장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重化學製品輸出, 海外投資, 海外資源開發 등 모든 형태의 對外經濟交流의 증진이 기본적인 과제로 되어 있다.

對外經濟交流의 증진은 호혜적인 利益의 均霑을 바탕으로 할 때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특히 資源保有國을 비롯한 開發國에의 投資進出이나 資本財輸出에서는 經

濟協力的인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 利潤追求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商業去來의 경우에도 일방적인 利潤追求보다는 相對國의 雇傭增大, 技術開發, 輸入代替 등 經濟開發에 기여하는 方向에서 추진될 때 당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거래의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輸銀法 第18條(業務) 第2項 第2號에서는 “海外 特定地域의 産業發展에 기여하며 우리 나라와의 經濟交流 增進을 촉진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事業에 필요한 資金의 貸出”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支援對象事業의 商業性보다는 장기적인 國家利益을 고려하여 특정국의 經濟開發이나 福祉增進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하여 讓許性 借款을 공여할 수 있음을 말한다. 현재까지 동자금을 지원한 실적은 없으나 先進工業國이 讓許性 借款을 가미한 混合信用 공여를 확대해 가고 있는 趨勢에 비추어 동자금을 점진적으로 공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輸銀法の 改正

1969년 7월 28일 法律 第2122號로 제정, 공포된 輸銀法은 1974년 12월 26일 및 1977년 12월 19일의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輸銀法은 設立目的에서 본 바와 같이 制定 당시의 經濟的 狀況보다는 發展的이고 未來指向的인 입장에서 제정되었으며 第1次 改正에서는 日本, 美國 등 先進國들의 支援制度和 該當 法規의 改正推移를 감안하여 融資制度면에서 이들 機關들과 平衡을 이루는 수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第2次 改正에서는 立法 당시 예상치 못했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1986년에 들어와 第3次 改正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業務規模의 증대에 따른 法定資本金 增額등 일부 보완사항이 검토되고 있다.

第1次 및 第2次 輸銀法 改正의 主要內容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第1次 改正(法律 第2736號 1974. 12. 26 公布)

(1) 法改正 內容

〈設立目的의 追加(第1條)〉 設立目的에 海外資源開發에 필요한 金融供與를 추가하였다.

〈法定資本金 增額 및 出資者의 範圍 擴大(第4條)〉 法定資本金을 3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리고 政府로 국한되어 있던 出資者에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韓國外換銀行 및 銀行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그리고 輸出業者團體와 國際金融機構를 포함시켰다.

〈運營委員會의 新設(第10條)〉 業務에 관한 重要사항의 決定機構인 理事會를 폐지하는 대신, 業務運營에 관한 基本方針을 수립하는 運營委員會를 신설하였다.

〈與信業務의 擴大(第18條)〉 ① 海外建設工事を 技術提供資金의 融資對象으로 포함시키고(第1項 第2號) ② 輸入資金, 海外事業資金 및 海外投資資金의 融資對象範圍를 확대, 조정했으며(第1項 第4號, 第5號, 第6號) ③ 外國政府등에 대한 出資資金貸出(第1項 第7號), 外國政府등에 대한 對韓決濟資金貸出(第1項 第8號),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貸出(第2項 第1號), 對外經濟協力資金貸出(第2項 第2號) 등의 貸出業務를 신설하였다.

〈資金借入先의 範圍 擴大(第19條)〉 政府, 外國金融機關 및 國際金融機構로 한정되어 있던 輸銀의 資金借入先에 韓國銀行, 韓國產業銀行, 韓國外換銀行, 銀行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과 外國政府를 추가하였다.

〈元貨表示 輸出入金融債券 發行根據 新設(第20條)〉 外貨表示 輸出入金融債券만 발행할 수 있던 것을 元貨表示 輸出入金融債券의 발행도 가능하도록 하고 元利金償還에 대하여 政府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業務計劃承認節次의 變更(第22條)〉 業務計劃의 承認節次중 國務會議 審議에 앞서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諮問을 거치도록 되어있던 節次를 생략토록 하였다.

〈貸出金 償還期間의 延長調整(第25條)〉 ① 第18條 第1項 資金의 償還期間을 종전의 6개월 이상 5년 이내에서 6개월 이상 10년 이내를 原則으로 하고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던 것을 20년까지로 확장하였으며 ② 第18條 第2項 資金(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 및 對外經濟協力資金)의 融資期間을 20년 이내로 정하였다.

〈其他〉 利益金の 處理方法(第36條), 餘裕資金의 運營方法(第38條), 韓國外換銀行의 業務代行期間중 臨時運營委員會의 設置根據(附則) 등을 규정하였다.

(2) 施行令改正 內容(大統領令 第7561號 1975. 2. 28 公布)

〈融資對象品目の 指定方法 變更(第13條)〉 輸出資金貸出의 融資對象品目中 産業施設 이외의 것은 財務部長官이 商工部長官과 협의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던 것을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이 단독으로 지정토록 하였다.

〈輸入資金貸出 融資對象 重要物資의 指定(第14條)〉 輸入資金貸出의 融資對象이 되는 重要物資의 종류를 종전에는 일정한 品目中 財務部長官이 商工部長官과 합의

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個別品目を 지정, 명시하였다.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貸出 融資對象 主要資源의 指定(第15條의 2)〉 主要資源의 範圍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海外投資資金貸出 融資對象 去來要件 指定(第15條)〉 海外投資資金貸出을 받을 수 있는 對象去來의 種類 및 要件을 명시하였다.

第2次 改正(法律 第3022號 1977. 12. 19 公布)

(1) 設立目的의 修正(第1條)

중전의 “中長期信用에 의한 輸出入”에서 “中長期信用에 의한”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代金決濟條件이 延拂去來 뿐만 아니라 一覽拂去來라도 去來의 履行 또는 融資金 償還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去來는 融資對象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解釋上的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2) 法定資本金의 增額(第4條)

延拂輸出 및 海外投資의 增加 趨勢에 따라 輸銀資金의 소요 증대에 대비, 法定資本金을 1,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다시 증액하였다.

(3) 理事會制度 復活(第9條의 2)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理事會에서 의결토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책임있는 業務處理를 할 수 있도록 理事會制度를 부활시켰다.

(4) 運營委員會委員 1人 追加(第10條의 2)

運營委員會委員으로 外務部長官이 所屬公務員중에서 지명하는 者 1人을 추가하였다.

第 2 章

經濟의 發展과 韓國輸出入銀行

第1節 概 觀

1962년 이후 經濟開發計劃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라 우리 經濟는 유례없는 高度成長과 産業構造의 質的 高度化를 이룩할 수 있었다. 1962~84년중 國民總生産은 연평균 8.2%의 高成長을 기록하였으며 産業構造는 종전의 農林漁業 중심에서 鑛工業 특히 製造業 중심으로 高度化되어 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製造業의 비중은 1962년의 9.1%(1975년 가격)에서 1984년에는 31.2%(1980년 가격)로 제고되었다.

이러한 經濟規模의 量的 擴大와 産業構造의 高度化는 對外指向의 工業化戰略이 奏效한 결과이며 “供給면에서는 製造業의 발전이, 그리고 需要면에서는 수출의 伸張이 經濟成長을 주도함으로써 전개”될 수 있었다.

그 동안의 計劃的 開發은 輸入→生産(輸入代替)→輸出의 단계를 따라 工業開發의 力點을 消費財→中間財→資本財 生産으로 이행시키는 형태를 취했다.

시기적으로는 經濟開發을 시작한 1960년대 초에는 먼저 基幹産業의 輸入代替와 開發基盤의 구축을 위한 社會間接資本施設의 건설에 정책의 역점이 두어졌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勞動集約의 輕工業製品의 輸出을 늘려가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對外指向의 工業化戰略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勞動集約의 輕工業 위주의 工業化戰略은 다시 賃金の 상승, 技術蓄積의 미흡과 後發開途國의 세계시장 참여 등으로 점차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重化學工業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工業構造의 高度化와 함께 自力成長構造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급속한 工業化를 수반했던 그간의 高度成長은 設備投資의 확대와 輸出의 급신장에 의해 밀받침되었다. 設備投資(國內總固定資本形成)는 1962~84년중 연평균 18.0%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輸出은 같은 기간중 500배이상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34.3%에 이르렀다.

한편 輸出商品의 구성은 당초의 1次產品 중심에서 工產品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등 質的 改善을 거듭했는데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農水產物 및 鑛物 등 1次產品의 비중은 1962년 72.3%에서 1975년에는 11.7%, 그리고 1984년에는 5.0%로 크게 줄어든 대신 工產品의 輸出比重은 1962년의 27.7%에서 1975년에는 88.3%, 그리

고 1984년에는 다시 95.0%로 급증, 전체 수출의 대종을 이루게 되었다.

工產品輸出의 구성은 1960년대의 輕工業製品의 중심으로부터 1970년대 중반부터는 重化學工業製品 중심으로 점차 高度化되어 왔는데, 重化學工業製品 수출의 對工產品 輸出比重은 1970년의 12.8%에서 1984년에는 56.0%로 증대되어 産業構造의 高度化 내지 重化學工業化를 반영하게 되었다.

실제, 重化學工業의 추진은 重化學工業의 輸出産業化 나아가서는 輸出商品構造의 高度化와 表裏의 관계를 이루면서 전개되었는데 그 이유는 重化學工業化의 추진이 일정한 “規模의 經濟”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內需가 제약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海外市場에 대한 배려, 즉 輸出産業化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重工業의 輸出産業化 내지 資本財 輸出促進에 있어서는 供給能力의 확충과 價格 및 非價格 競爭力의 제고이외에 中長期 輸出信用의 공여가 요청되었다. 重工業製品輸出은 그 대부분이 資本財 내지 耐久消費財로 구성됨에 따라 輸出去來金額이 대형화되며 동시에 受注를 위한 中長期 輸出信用의 공여가 國際慣行化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1969년의 輸銀法 제정과 1976년의 輸銀 설립은 輸出의 지속적 신장과 더불어 經濟의 重工業化를 이룩하려는 政策努力의 產物로서 평가될 수 있다. 즉 1969년의 輸銀法 制定은 對外指向의 工業化 戰略을 수행키 위한 制度的 裝置의 一環으로서 마련된 것이며 重工業製品 수출증대와 新市場 개척을 위한 金融의 先導機能을 강화하기 위했던 것이다. 또한 6年餘의 業務代行期間을 거쳐 1976년에 輸銀이 정식 설립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우리 經濟의 급속한 重工業化와 이에 따른 본격적인 重工業製品 수출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輸銀法 制定 이후 1976년까지는 총 1,357억원의 資金(承認 基準)이 지원되었다. 延拂輸出資金의 지원은 1972년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織造機械 輸出을 위한 金融支援을 효시로 船舶, 纖維機械, 木材機械를 비롯, 車輛 및 貨車와 電話交換施設의 수출로 그 지원대상을 넓혀 왔으나 輸出資金의 대부분은 船舶輸出에 공여되었으며 다음으로 鐵道車輛, 機械類, 「플랜트」 등의 차례로 輸出資金이 지원되었다.

延拂輸出資金의 지원은 1976년에 輸銀이 정식 설립되면서 부터 비로소 본격화되게 되었는데, 1977년에는 1971~76년의 6년간 지원액과 거의 같은 1,342억원이 지원되었다. 이후 延拂輸出資金 支援規模는 급증하기 시작하여 1979년에는 4,443억원으로 늘어났고 1982년에는 다시 6,281억원으로 증대되었으며 1985년에는 7,747억원으로 대폭 확충되었다.

이에 따라 輸出支援 輸出額(履行基準)은 1977년의 155백만「달러」에서 1980년에는 398백만「달러」로 배가되었으며 1984년에는 다시 1,391백만「달러」로 증대되어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2.3% 그리고 4.8%로 계속 높아져 왔다.

延拂輸出支援 金融規模의 급신장은 직접적인 輸出增大效果 이외에 外貨稼得, 雇傭, 生産 및 所得誘發 등을 통한 國民經濟 寄與效果를 크게 했으며 輸出用 機資材의 國産化 및 輸入代替, 그리고 勞動集約的인 中小企業部門과의 系列化 정착에도 큰 실적을 거두었다.

第2節 經濟發展과 産業構造 高度化

1962년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 즉 1950년대의 韓國經濟는 援助 중심의 戰後復興期 내지는 超過需要의 축소, 제거에 의한 自立經濟로의 이행을 추구하려는 摸索期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第1次 經濟開發計劃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의 經濟政策의 중점은 開發計劃의 초기에는 「인플레이션」, 고용, 농촌문제 등 국내문제의 해결에, 그리고 開發計劃의 후기에는 개방경제하에서 대외지향적인 工業化戰略에 의한 産業構造 高度化에 두어졌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전환은 産業構造면에서는 輕工業 중심에서 重化學工業 중심으로, 需要構造면에서는 輸入代替産業의 육성에서 內需産業化를 거쳐 輸出産業化로의 발전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經濟開發 始發期(1962~66년)

우리 나라에서 經濟開發計劃은 1950년대에서도 몇차례 수립된 바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야 체계적으로 작성, 추진되었다.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1961년 5.16軍事革命 직후 작성되어 실시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精緻한 開發計劃의 작성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통계자료의 정확성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經濟計劃 專門家の 부족 등으로 최적의 開發計劃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第1次 經濟開發計劃은 韓國經濟의 政策方向을 “自立經濟의 구축”에 두도록 함으로써 우리 나라 經濟發展過程에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었다.

計劃期間을 1962년부터 1966년까지로 한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그 目標를 社會經濟的 악순환의 시정과 自立經濟基盤의 구축에 두었다. 한편 計劃期間중 經濟成長率을 연평균 7.1%로 책정하고 産業構造를 1960년(基準年度)의 1次産業 36.0%, 2次産業 18.2% 및 3次産業 45.7%에서 目標年度에는 34.8%, 26.1% 및 39.1%로 각각 개선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産業構造의 개선은 計劃期間중 연평균으로 볼 때 1次産業이 5.7%, 2次産業이 14.8%, 3次産業이 4.4%로 각각 성장토록 계획된 것을 의미하였다.

〈表 2-2-1〉

産業別 成長과 産業構造

(단위 : %)

	目標成長率		構成比	
	年平均	1962~1966	基準年度(1960)	目標年度(1966)
第 1 次 産 業	5.7	35.9	36.0	34.8
第 2 次 産 業	14.8	101.4	18.2	26.1
第 3 次 産 業	4.4	20.4	45.7	39.1
國 民 總 生 産	7.1	40.7	100.0	100.0

또한 同計劃에서는 工業化의 기틀을 마련하고 왜곡된 産業構造를 개편하기 위하여 정책의 주요과제를 ①電力, 石炭 등 「에너지」공급원의 확보 ②農業生産力の 증대에 의한 農家所得의 증대와 國民經濟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③基幹産業의 확충과 社會間接資本의 충족 ④遊休資源의 활용 특히 雇傭의 증대와 國土의 보존 및 개발 ⑤輸出増大를 주축으로 하는 國際收支의 개선 ⑥技術의 진흥에 두었다.

이상과 같은 의욕적인 計劃目標과 政策課題에도 불구하고 1962년중의 農業凶作과 通貨改革 등으로 計劃初年度부터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여 1964년에 同計劃이 상당히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計劃期間중 연평균 7.9%의 經濟成長率을 달성함으로써 當初目標値를 상회하였다.

한편 計劃期間중 産業構造는 第1次産業이 36.0%에서 31.7%로, 第3次産業이 45.7%에서 42.6%로 그리고 第2次産業은 18.2%에서 25.7%로 변동되어 産業構造는 製造業 중심으로 고도화되었다.

政府는 製造業 중심으로 産業構造를 전환하기 위하여 電力, 石炭, 「시멘트」, 肥料, 鐵塊, 精油 등 基幹産業에 대하여 總量指標를 책정 육성하였는데 同計劃期間중 肥料, 「시멘트」, 精油施設 등은 거의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政府는 1966년 2월 중에 국내 造船工業의 육성을 위하여 造船目標를 34만여「톤」으로 책정하고 앞으로 造船工業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것을 천명하였다.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産業構造 高度化 과정에서의 특징은 工業化에 의한 産業構造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中間製品의 輸入代替 촉진과 輸出構造의 개선을 지적할 수 있다.

商品輸出은 基準年度の 32.9백만 달러에서 目標年度에는 4.2배가 증가한 137.5백만 「달러」로 계획되었으며, 商品輸入은 343.0백만 「달러」에서 492.3백만 「달러」로 계획되었는데, 1966년의 輸出은 250.3백만 「달러」의 실적을 보임으로써 計劃値

보다 약 112백만 「달러」가 증가한 반면 輸入도 1966년중에 736.6백만 「달러」에 달함으로써 計劃値를 약 250백만 「달러」 초과하였다. 이와 같이 수출과 수입이 모두 計劃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經濟의 自立化에 필요한 外換을 자력으로 조달하는 한편 變動換率制의 실시 및 貿易의 自由化 등 점진적인 開放體制로의 이행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計劃期間중 輸出實績을 보면 1962년의 54.8백만 「달러」에서 1966년에는 250.3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연평균 43.9%의 높은 성장율을 보였다. 計劃期間중 지속적인 수출증가와 함께 輸出商品의 構造도 고도화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總輸出중 工產品의 輸出額과 그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1次商品의 輸出은 1962년중의 40백만 「달러」에서 1966년중에는 96백만 「달러」로 약 2.4배가 증가한 데 반하여 工產品의 수출은 1962년중의 15백만 「달러」에서 1966년중에는 155백만 「달러」로 10배가 신장되었다. 이러한 工產品 수출증가로 總輸出額에서 차지하는 工產品의 비중도 크게 제고되어 1962년의 27.7%에서 1964년에는 55.2% 그리고 1966년에는 61.8%를 기록하였다. 工產品 輸出額의 급속한 신장과 함께 輸出商品의 構成도 점차 고도화되었는데, 經濟開發의 初期에는 輸出大宗品目이 重石, 쌀, 鐵鑛, 綿織物 등이었으나 중반 이후에는 衣類, 合板, 假髮 등으로 전환되었다.

政府는 수출증대에 의한 國際收支改善을 위하여 제도적인 보완과 稅制 및 金融支援을 계속하였는데 第1次 計劃期間중 주요 輸出振興政策을 연도별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962년 3월 政府는 輸出振興法을 공포하여 수출증대를 위하여 輸出品 製造用 原資材輸入에 대한 特惠措置, 海外活動 보장, 輸出實績 「링크」制를 채택하였다. 이

<表 2-2-2>

輸出商品의 構造變動

(단위: 백만 「달러」, %)

	1次商品		工 產 品		輸 出 實 績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1962	39.6	72.3	15.2	27.7	54.8	100.0
1963	41.7	48.0	45.1	52.0	86.8	100.0
1964	53.4	44.8	65.7	55.2	119.1	100.0
1965	67.6	38.6	107.5	61.4	175.1	100.0
1966	95.5	38.2	154.8	61.8	250.3	100.0

資料: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밖에 貿易金融을 우대하는 한편 經濟外交를 강화하여 수출을 신장토록 하였다.

1963년에는 輸入相對地域別 輸出額에 비례한 輸入制限, 輸出自動承認品目の 확대, 輸出補助金の 지급 및 求償貿易의 확대 시책을 강구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關稅法을 개정하여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不當廉賣防止關稅(anti-dumping duties), 報復關稅, 彈力關稅制度를 도입하였다.

1964년중의 輸出振興政策의 基調는 전년도와 비슷하였으나 수출증진과 수입억제를 직접적인 輸出補助金の 지급이나 輸入統制보다는 變動換率制의 실시에 의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었다.

다음 해인 1965년에는 輸出目標 1.7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하여 輸出振興綜合施策이 강력히 추진되었다. 綜合施策의 주요내용은 輸出用 原資材 輸入에 대한 「마아진」制 철폐, 輸出金融 金利의 인하와 稅制면에서는 輸出業體에 대하여 營業稅의 전액면제, 所得稅 및 法人稅의 50% 감면조치가 실시되었으며, 輸出業體에 대한 特別減價償却制度가 신설되었다.

計劃의 目標年度인 1966년에는 貿易自由化 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복잡다기한 輸出入節次를 간소화하는 한편 貿易關係 諸法規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통합, 정리하여 개정함으로써 貿易의 質的 高度化와 量的 擴大에 부응코자 하였다.

高度成長期(1967~73년)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期間중의 성과를 보면 平均成長率이 7.9%에 달함으로써 計劃値를 0.8%「포인트」나 초과하고 產業別로는 2次產業의 성장이 더욱 뚜렷하게 진전됨으로써 產業構造의 高度化가 이루어졌다.

〈表 2-2-3〉

産業別 成長率

(단위 : %)

	農林水産	鑛 工 業			社會間接資本·其他
			鑛 業	製造業	
1967	-5.9	20.2	11.4	21.6	14.6
1968	1.3	23.4	-1.5	27.2	15.3
1969	10.5	19.2	-1.3	21.6	14.2
1970	-1.4	19.6	16.6	19.9	9.5
1971	3.1	16.5	1.7	18.7	9.4
1972	2.9	12.9	-2.2	14.8	4.8
1973	6.2	28.7	17.3	29.9	13.0

註：1970년 以前系列은 1975년 不變市場價格 基準

資料：經濟企劃院, 韓國經濟指標

重化學工業育成에重點 全國民科學化운동전개



重化學工業化 宣言
(1973. 1. 12, 每日經濟新聞)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1967년부터 1971년까지를 計劃期間으로 한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이미 이룩한 기반을 토대로 産業構造를 근대화하고 自立經濟의 확립을 촉진함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 기본지침으로 化學, 鐵鋼 및 機械工業을 건설하고 工業高度化의 기틀을 잡는 한편 工業生産을 倍加하여 7억「달러」(商品輸出 5.5억「달러」)의 輸出을 달성하고 輸入代替를 추진하여 획기적인 國際收支改善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重化學工業化와 輸出産業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계획하였다. 2次開發計劃이 시작된 이후부터 1973년의 重化學工業育成 宣言에 이르는 동안 우리 經濟는 投資의 지속적인 확대와 輸出의 급격한 신장에 힘입어 연평균 10.9%의 高度成長을 이룩하였다.

高度成長期에 나타난 우리 經濟의 특징은 産業構造가 고도화되고 輸出이 지속적인 신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産業構造의 高度化 과정을 國民總生産額에서 製造業이 점하는 비중에서 보면 1967년에 16.6%에서 1971년에 23.3%로 다시 1973년에는 28.4%로 높아짐으로써 우리 나라의 産業構造가 製造業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製造業部門에서도 重化學工業의 生産額과 附加價値의 비중이 제고되었다. 重化學工業 가운데서도 化學肥料, 金屬工業, 「시멘트」 등 다른 産業에 補完性이 큰 産業部門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生産材工業 對 消費材工業의 「호프만」比率도 1962년의 1:2.2에서 1973년에는 1:1.4로 고도화되었다.

이와 같은 産業構造의 고도화와 함께 同期間중의 지속적인 工產品 輸出의 신장은 需要側面에서 成長에 크게 기여하였다. 즉 輸出은 國內市場이 협소하여 適正規模의 生産施設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海外市場開發에 의한 수요확대로 적정규모의 생산시설을 유지, 가동케 하였으며, 國際分業을 유도함으로써 成長의 原動力이 되었다.

〈表 2-2-4〉

輸出商品の 構造變動

(단위 : 백만「달러」, %)

	1次產品		工產品		輸出實績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1967	104.1	32.5	216.1	67.5	320.2	100.0
1968	115.4	25.3	340.0	74.7	455.4	100.0
1969	138.5	22.2	484.0	77.8	622.5	100.0
1970	140.6	16.8	694.6	83.2	835.2	100.0
1971	139.0	13.0	928.6	87.0	1,067.6	100.0
1972	179.5	11.1	1,444.6	88.9	1,624.1	100.0
1973	378.1	11.7	2,846.9	88.3	3,225.0	100.0

第2次 開發計劃期間중의 輸出實績은 연평균 33.8%의 신장을 보였으며 1972, 73년에는 각각 52.1%와 98.6%의 높은 증가율을 실현함으로써 1967년중의 輸出額 3.2억「달러」에서 1973년에는 10배가 늘어나 32.3억「달러」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輸出의 量的 擴大와 함께 輸出商品の 質的 改善도 괄목할 정도로 진전되었다. 즉 1967년에는 鑛產物과 農水產物 등 1次產品의 輸出比重이 32.5%에서 1973년에는 11.7%로 급격히 저하된 반면 工產品의 輸出比重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輸出商品構造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同期間중 수출증대를 주도 하여온 戰略輸出商品의 변동추이를 보면 1967년중에는 合板, 綈타, 被服類, 假髮, 生絲 등 단순 노동, 기술의 가공상품이었는데 비하여 1973년중에는 纖維, 合板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과 아울러 자본 및 기술집약적 상품인 鐵鋼材, 機械類, 輸送裝備 및 化學製品 등의 輸出比重이 높게 나타났다.

政府는 高度成長期에 産業構造 高度化와 輸出振興을 위하여 각종 法을 제정, 공포하는 한편 稅制와 金融面에서 지원을 계속하였는데 이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967년 3월에 機械工業振興法과 造船工業振興法을 제정, 공포하여 機械工業과 造船工業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69년 1월 電子工業振興法을 제정하고 同年 12월에는 石油化學工業 육성을 위하여 石油化學工業育成法을 제정하는 한편 年產「에틸렌」基準 6만M/T 규모의 「나프타」分解「센터」와 이를 모체로 한 PVC, 「폴리에틸렌」, 「카프로락담」, PVA, 「아크릴로니트릴」, 「에틸렌그리콜」, DMT工場 등 8개의 系列工場을 1971년까지 건설함으로써 化學工業의 육성을 지원케 하였다. 또한 同年 12월에 鐵鋼工業育成法을 제정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춘

鐵鋼業體와 原鑛供給業體에 대하여 營業稅와 法人稅 減免惠澤 등 稅制면에서 지원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政府는 同期間중 輸出의 量的 擴大와 輸出商品의 고도화를 위하여 關稅政策 등 각종 輸出支援政策을 계속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政府는 1967년 7월 25일을 기해 1960년대 초반부터 輸入抑制策으로 이용되었던 輸出入「링크」制를 폐지하고 종래의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에서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貿易自由化를 더욱 확대시켰다. 貿易制度의 전환은 世界 貿易自由化의 조류에 부응하여 開放體制로의 이행을 위한 방향설정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네가티브 시스템」으로의 정책전환으로 수출증대에 수반한 輸出用 原資材輸入 및 開發에 필요한 각종 施設財등 수입의 급증이 초래됨에 따라 綜合輸入抑制策을 강구하는 한편 金融·稅制면에서 輸出振興策을 추진하였다.

먼저 金融면에서는 輸出産業의 生産基盤을 확충키 위하여 內資와 外資를 집중 지원하였다. 즉 特定産業을 輸出産業으로 특화시키기 위하여 輸出特化産業 育成資金과 中小企業중 수출기여도가 큰 업체를 선정하여 輸出産業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輸出轉換施設資金등이 중점적으로 지원되었으며, 輸出品 生産業體가 輸出用 施設財를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政府保有外換으로 지원했다. 또한 關稅에 의한 輸出支援으로 첫째, 輸出用 原料, 機資材의 도입에 대한 關稅事前免除制度 둘째, 關稅를 납부한 輸入品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關稅還給制度和 關稅代置免除制度 셋째, 關稅賦課가 유예되는 保稅工場에서 물품을 제조, 수출함을 허용하는 保稅工場制度 등이 실시되었다.

1968년에는 中長期延拂輸出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諸般危險을 「카버」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로서 輸出保險法이 제정되었으며 1969년에는 延拂輸出에 의한 重化學工業製品의 수출증대를 위해 韓國輸出入銀行法이 제정되었고, 外資誘致에 의한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輸出自由地域設置法을 확정 공포하였다.

1971년의 輸出振興政策은 量的 擴大보다는 國產原資材의 使用促進, 品質向上을 통한 外貨稼得率의 제고 등 質的 水準을 향상코자 하였는데, 이는 美國의 經濟緊急措置(1971. 8. 16)에 따라 諸般 輸出與件이 불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輸出支援措置로서 輸出支援金融의 利子率을 國際金利水準으로 인하하였으며 韓國銀行의 再割引資金의 利用機會를 확대하는 한편 「달러」당 融資單價를 종전의

220원에서 295원으로 인상 조치하였다. 이러한 金融支援과 함께 稅制면에서도 特別減價償却制度를 개선하여 外貨收入에 비례하여 特別減價償却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固定資産耐久年限도 외국의 사례에 준하여 단축하는 한편 輸出品製造用 消耗性 機資材에 대하여 特關稅를 면제토록 하였다.

1972년중에는 D/A 및 D/P 短期延拂輸出 金融支援을 강화하고 中長期延拂輸出 金融의 金利 인하, 原資材의 海外開發輸入의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973년에 들어와서는 수출산업의 施設近代化를 추진하기 위하여 設備金融의 支援額을 크게 확대하고, 稅制면에서도 직접적인 輸出支援方式을 축소, 폐지하는 한편 海外市場開拓準備金制度를 확충하고 輸出損失準備金制度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 졌다.

第3節 重化學工業 育성과 輸出産業化 進展

우리 經濟는 1962년 이후 1次 石油波動이 시작된 1973년까지 國際經濟與件의 유리한 전개와 政府의 효율적인 經濟運用에 힘입어 産業構造는 製造業 중심으로 점차 高度化되었으며 製造業가운데서도 輕工業 중심에서 重化學工業 위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發展段階면에서는 輸入代替에서 內需産業化의 기반이 이루어졌다.

政府는 1970년대 중반부터의 産業政策 方向을 이미 이룩한 重化學工業의 기반을 확고히 하며 重化學工業을 內需産業에서 輸出産業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에 두었다. 이러한 政策에 따라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期間(1972~76년)중의 投資方向을 重化學工業 추진, 中間財 國産化 및 技術開發與件 조성에 두는 한편 주요 신규 성장산업으로 機械, 鐵鋼, 電子 및 造船工業을 선정하였다. 우리 나라 工業化 過程에서 1960년대 후반은 重化學工業중 石油化學, 石炭, 고무제품 등 中期産業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는 機械, 電子, 造船 등 重化學工業의 後期産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

그러나 1979년 상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世界的인 景氣沈滯 현상의 국내파급과 石油輸入負擔의 가중, 주요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 강화로 國際經濟與件이 불리하게 전개되었고, 重化學工業 育성과 輸出産業化를 위한 집중투자는 일부 産業내에 重複投資現象을 초래하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가 컸으며, 여기에 경제외적요인이 가세되어 經濟安定政策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重化學工業 育成期(1974~78년)

우리 經濟는 1,2次 經濟開發計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産業構造가 製造業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工業構造내에서도 飲食料品, 衣服, 家具 등 消費財産業과 石油化學, 非鐵金屬 등 「에너지」多消費 素材産業의 生産額 비중이 낮아진 반면 機械類, 電氣機器, 輸送用機器 및 精密機器 등 「에너지」低消費, 技術集約的 組立加工産業의 비중은 1973년의 13.8%에서 1978년에는 20.3%로 크게 높아졌다.

製造業을 消費財産業, 素材産業 및 組立加工産業으로 구분하여 1974년부터 1978

<表 2-3-1>

工業構造 變動 推移

(生産額)

(단위 : %)

	1974	1975	1976	1977	1978
消費財産業	31.6	31.8	30.0	29.2	27.9
素材産業	54.6	54.1	54.1	53.6	51.8
組立加工産業	13.8	14.1	16.0	17.1	20.3
合計	100.0	100.0	100.0	100.0	100.0

<表 2-3-2>

工業部門別 生産額増加率 推移

(단위 : %)

	1974	1975	1976	1977	1978	年平均増加率
消費財産業	10.9	13.1	18.2	12.4	15.2	14.0
素材産業	12.7	10.9	25.4	14.7	16.4	16.0
組立加工産業	37.9	14.2	41.8	23.8	43.2	32.2
製造業平均	15.0	12.0	25.4	15.5	20.6	17.7

資料 : 韓國銀行

년까지 5년간 연평균 生産増加率을 보면, 製造業 전체평균이 17.7%인데 비하여 消費財産業과 素材産業은 각각 14.0%, 16.0%로서 製造業 전체의 平均増加率을 하회한 반면 機械工業을 포함한 組立加工産業은 연평균 32.2%나 증가하여 製造業 生産의 増加를 주도하였다.

組立加工産業의 生産額이 1970년대 중반부터 뚜렷한 증가를 보이자 우리 나라의 工業構造도 生産額과 附加價值면에서 重化學工業 우위로 반전되어 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동기간중에는 組立加工産業의 생산증가가 全産業의 成長을 주도하였으나 石油化學, 鐵鋼製品 등 素材産業도 成長을 지속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重化學工業國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의 工業構造가 輕工業 우위에서 1976년과 1977년을 전환점으로 重化學工業 우위로 전환되고 重化學工業 내부에서도 組立加工産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輸出商品의 구성도 輕工業製品의 수출에서 重化學工業製品의 수출로 고도화되고, 다시 重化學工業製品 가운데서도 機械類 및 運搬用機器製品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먼저 同期間중 輸出商品의 構造變動을 1次產品과 工產品으로 대별하여 보면 工產品의 비중이 85.5%에서 90.1%로 높아진 반면 1次產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또한 同期間중 연평균 輸出増加率도 1次產品이 26.3%, 總輸出이 29.7%

<表 2-3-3>

重化學工業製品과 輕工業製品の 輸出推移

(단위 : 백만「달러」, %)

	輕工業製品		重化學工業製品		工產品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1973	2,043	71.1	830	28.9	2,873	100.0
1974	2,490	58.6	1,763	41.4	4,253	100.0
1975	3,171	66.2	1,620	33.8	4,791	100.0
1976	4,590	63.0	2,693	37.0	7,283	100.0
1977	5,129	58.3	3,666	41.7	8,795	100.0
1978	6,669	58.4	4,751	41.6	11,420	100.0

資料 : 商工部

인데 비하여 工產品은 30.4%의 증가를 시현하였다. 工產品 가운데서도 重化學工業의 輸出比重은 1973년중에는 28.9%에 불과하였으나 1978년중에는 41.6%로 제고됨으로써 工業構造의 高度화와 함께 輸出商品의 重化學工業化가 이루어졌다. 工產品의 수출을 輕工業製品과 重化學工業製品으로 구분하여 동기간중의 平均輸出增加率을 보면 輕工業製品은 27.2% 신장했는데 비하여 重化學工業製品의 수출은 47.2%의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특히 工業化過程에서 核心産業部門인 機械類(運搬用機器 포함)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1973년중에 396백만「달러」에서 1978년중에는 약 6.5배가 증가한 2,587백만「달러」에 달하였으며 總輸出중에서 機械類가 점하는 비중도 12.3%에서 20.4%로 크게 제고되었다.

政府는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1972~76년)의 중점을 “成長, 安定, 均衡의 조화를 추구하여 안정된 기반위에서 成長을 이룩”하면서 “輸出의 획기적 증대 및 重化學工業의 건설”에 두었다.

계획기간중에 ①연평균 經濟成長率은 8.6%로하며 ②製造業의 연평균 成長率은

<表 2-3-4>

重化學工業製品 輸出推移

(단위 : 백만「달러」)

	總輸出 (A)	重化學工業製品 (B)	機械類 및 運搬 用機器(C)	C/A(%)	C/B(%)
1973	3,225	829	396	12.3	47.7
1974	4,460	1,763	672	15.1	38.1
1975	5,081	1,620	702	13.8	43.3
1976	7,715	2,693	1,280	16.6	47.6
1977	10,046	3,666	1,741	17.3	47.5
1978	12,711	4,751	2,587	20.4	54.5

資料 :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13.3%로, 製造業의 國民總生産에서의 비중은 1970년의 20.5%에서 1976년에는 26.8%로 제고시키고 製造業에서의 重化學工業 비중은 1970년의 35.9%에서 1976년에는 40.5%로 하는 동시에 ④輸出은 매년 27.3%씩 증가시키며 工產品 輸出에서의 重化學工業製品 비중은 1970년의 14.3%에서 1976년에는 33.3%로 높이는 것 등을 목표로 책정하였다.

또한 政府는 1973년 1월 大統領의 年頭記者會見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産業構造를 고도화하고 수출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重化學工業을 적극 육성할 것을 밝힌데 이어 同年 8월에는 1980년대를 향한 우리 나라 經濟의 長期展望을 수립, 鑛工業部門이 經濟成長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특히 製造業은 연평균 17%의 成長을 이룩토록 하며 製造業가운데 輕工業은 연평균 13%, 重化學工業은 연평균 22%의 成長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하여 1981년에는 重化學工業과 輕工業의 비중을 51對 49로 계획함으로써 重化學工業의 획기적 신장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1973년 10월 「아랍」產油國의 石油禁輸와 대폭적인 油價引上으로 世界經濟는 不況局面에 접어들게 되었고, 產油國을 제외한 거의 모든 國家는 景氣沈滯속의 物價上昇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현상을 보였으며 우리 經濟도 輸出不振과 內需低調로 成長의 鈍化現象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해외로부터 파급된 經濟的 不安要因을 최소화하기 위해 政府는 1974년 1월 國民生活의 安定을 위한 大統領緊急措置를 발표하고 價格現實化 조치에 의한 海外「코스트 푸시」要因을 흡수하는 한편 總需要抑制을 위한 緊縮財政政策을 실시했다.

經濟安定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政府는 第3次 經濟開發計劃의 기본목표인 重化學工業의 효과적인 육성을 통하여 輸入代替를 기하는 한편 重化學工業을 輸出産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投融資을 확대하였는바 동기간중 國際收支 改善, 重化學工業 育성과 관련된 시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74년중에는 「오일 쇼크」로 인한 海外 貿易環境의 악화에 대처하고 國內 景氣沈滯를 극복하기 위하여 輸出支援金融, 內需用輸入原資材 備蓄金融의 확대를 위한 시책이 강구되었는데, 구체적 조치로는 輸出産業의 施設近代화와 品質向上을 위해 輸出産業 設備金融으로 200억원을 책정 지원토록 하였으며 同年 12월 7일 特別措置로 對美換率의 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輸出業體의 資金負擔을 완화하기 위하여 輸出支援金融의 融資單價를 1「달러」당 380원에서 420원으로 인상하였다.

1975년중에는 상반기까지 계속된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輸出不振을 타개하고 輸出用原資材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輸入事前承認業務를 개선하고, 輸出

<表 2-3-5>

主要重化學製品の生産能力推移

	단위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造船能力	1,000G/T	250	1,100	2,390	2,600	2,670	2,770
自動車	1,000台	63	63	70	120	150	205
製鋼	1,000M/T	2,181	2,702	2,852	4,530	4,635	5,040
시멘트	1,000M/T	8,290	10,260	11,860	14,060	14,060	16,000
發電設備	MW	4,271	4,523	4,720	4,810	5,790	6,916

資料：經濟企劃院，主要經濟指標

用原資材 輸入을 國產原資材의 使用實績과 「링크」시키는 등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졌다.

한편 重化學工業構造를 「에너지」 및 原資材의 의존도가 낮은 技術集約型構造로 전환하기 위하여 機械, 電子, 造船工業分野를 집중 지원, 육성하는 한편 老朽施設改替를 통한 輕工業의 競爭力強化 시책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한편 政府는 重化學工業의 國際競爭力 강화와 高度成長의 기반구축을 위해 鐵鋼, 非鐵金屬, 造船, 電子, 「디젤 엔진」 등 30個 重化學業種을 선정하여 合理化産業으로 지정하는 한편 合理化基準을 제정하고 國民投資基金과 輸出産業擴充資金을 지원하였으며 稅制支援도 병행하였다.

1976년중 政府는 産業政策의 기본방향을 物價安定과 國際收支改善에 두고 工業構造의 고도화와 競爭力 제고를 위하여 연중에 1,018억원의 國民投資基金을 重化學工業分野에 지원하였다. 특히 機械工業의 육성을 위해 대단위 綜合機械工場建設計劃을 활발히 추진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機械工業 육성을 위하여 33個 業種, 85個 品目の 中核品目 선정과 더불어 52個 業體의 中小企業型 專門機械工場을 선정, 지원하였다.

또한 1981년까지 「플랜트」건설의 70%를 국산화하도록 연중 「시멘트」, 肥料, 精油, 製鐵, 合成 고무 등 11個 品目の 標準國產化率을 책정, 고시하였으며 施設財와 原資材의 국산화도 계속 추진하였다. 이를 資金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國產機械購入, 計劃造船 등에 國民投資基金과 外貨貸出로 665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金融支援과 더불어 稅制면에서 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이 개정되었으며 特別償却認定業種에 機械工業과 電子工業이 추가되었다.

이상과 같은 重化學工業 育成政策과 더불어 輸出政策으로 政府는 同年 3월 10일 電子工業育成法을 확정하고 錄音機 등 31個 品目を 戰略開發品目으로, 電子時計 등

25個 品目を 重點開發品目으로 지정하여 이를 輸出위주의 産業으로 육성토록 하였으며, 輸出需要에 비추어 供給能力의 확충이 필요한 業種과 輸出産業의 基盤擴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業種에 대하여 연중 300억원을 輸出産業基盤擴充資金으로 배정하여 지원토록 하였다.

이 밖에 綜合貿易商社에 대한 完製品備蓄金融, 輸出産業 施設財 수입을 위한 外貨貸出 등을 실시하는등 輸出支援金融制度의 개편을 기하였다.

1977년은 第4次 經濟開發計劃의 初年度로서 100억「달러」의 輸出目標 달성을 위하여 重化學工業의 施設近代化가 추진되는 한편 輸出戰略産業의 육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重化學工業의 施設近代화와 國際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高加工 技術集約的이며 資源節約的 産業인 一般機械, 電子機器, 精密機器 등을 중점 支援對象業種으로 선정, 適正施設規模의 기준을 설정하고 國民投資基金으로 1,524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特別減價償却 범위의 확대와 關稅減免 등 稅制上的 지원을 병행하였다.

또한 重化學工業중 취약부문인 素材 및 部品産業의 육성을 위하여 製鐵, 製鋼 등 素材産業과 「기아」, 「베어링」 등 一般機械部品産業, 半導體 등 電子部品産業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나프타」分解施設등 4個의 石油化學施設과 製鐵施設 등에 대한 標準國產化率를 고시하여 國內産業의 自立度 제고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重化學工業의 輸出産業化를 위하여 同年 4월19일 造船工業의 육성 및 輸出産業化를 위한 造船工業振興 基本計劃을 확정하였으며 11월 24일에는 自動車工業의 輸出産業化를 위하여 部品團地造成과 資金支援 등을 내용으로 하는 輸出戰略産業化方案을 마련하였다. 또한 輸出有望中小企業 육성을 위하여 專門型 機械工場을 선정하여 업체당 內資 2억원, 外貨 40만「달러」의 施設資金과 運轉資金을 지원하였다. 이 밖에 「시멘트」, 肥料 등의 「플랜트」건설에 대하여 標準國產化率를 공고하여 資材의 國產使用率을 높이도록 하였다.

1977년에 이어 1978년중의 産業政策方向도 重化學工業化에 의한 工業構造 高度化에 두었으며 125억「달러」의 輸出目標 달성을 위하여 産業의 國際競爭力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競爭力 강화를 위하여 業種別 대책으로는 産業聯關度가 높고 輸出戰略品目에 속하는 一般機械, 電子, 自動車, 製鐵 등 13個 重點支援業種을 선정하여 設備投資를 확대하고 合併 및 系列化를 추진하여 規模의 適正化를 유도하는 한편 施設의 近代化에 의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 밖에 機械, 金屬, 造船, 化學, 電子 등 7個 戰略部門에 대하여는 先進技術 導入을 촉진키 위하여 技術導入節次를 간소화하였으며 國內技術 開發能力의 보강을 위해 大德研究團地와 昌原 및 龜尾工業團地에 專門 技術研究所의 완공을 촉진하였다.

同年중 重化學工業의 輸出産業化를 위해 機械工業을 輸出産業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機械工業政策調整委員會를 설치하였으며 機械工業의 施設近代化를 위해 200억원을 공급하는 한편 國內技術開發 촉진을 도모코자 技術開發促進法 施行令을 개정하여 機械, 電子, 造船 및 金屬工業을 重要戰略産業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政府가 研究設備의 설치 및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開發途上國에 대한 小型資本財의 中短期延拂輸出 촉진을 위해 對開發途上國 中短期延拂輸出 支援金融制度를 신설하는 한편, 重化學工業製品 및 「플랜트」의 延拂輸出을 촉진키 위하여 輸銀의 融資比率을 75~80%에서 90%로 인상하는등 延拂輸出 支援金融制度의 신설 및 개편이 이루어졌다.

安定基調 定着期(1979~85년)

1979년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OPEC의 基準油價引上으로 同年 下半期부터 世界的인 景氣沈滯 현상이 국내에 파급되었으며, 石油輸入負擔의 가중과 주요 先進工業國의 保護貿易主義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政府는 經濟의 運用方向을 기존의 重化學工業化와 輸出産業化 政策에 의한 성장 추구에서 安定回復과 成長潛在力을 배양하려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政策轉換에 따라 그동안 高度成長期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던 重化學工業部門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조정하는 시책이

〈表 2-3-6〉

重化學工業 比重

(단위 : %)

	生産額基準		附加價值基準	
	重化學工業	輕工業	重化學工業	輕工業
1980	50.9	49.1	50.5	49.5
1981	52.8	47.2	51.5	48.5
1982	53.2	46.8	52.1	47.9
1983	54.8	45.2	53.4	46.6
1984	56.8	43.2	55.7	44.3
1985	57.1	42.9	56.1	43.9

註：1980년 不變價格

資料：韓國銀行

강구되었다.

즉 經濟運用을 成長 위주에서 安定 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經濟活動의 自律性이 제고되도록 하였으며 投資의 配分면에서도 政府主導에서 市場機能을 중요시하는 民間主導로 운용되도록 하였다.

1980년에는 2次 石油波動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國內에 파급됨에 따라 그동안 成長을 지속하여 온 重化學工業 가운데 非鐵金屬, 「시멘트」 등 「에너지」多消費産業은 成長率이 상대적으로 둔화된 반면 機械, 電子, 自動車 등 「에너지」低消費 및 資本集約的 産業은 成長率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19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나라 産業構造는 高技術, 「에너지」低消費, 組立加工産業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安定化施策의 지속과 198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世界經濟의 回復으로 1983년 이후부터는 機械類, 電子製品, 自動車, 船舶 등이 成長을 주도하였으며 産業構造가 組立加工産業 위주로 점차 고도화되기 시작했고 이어 知識, 技術集約的, 資源節約的인 半導體, 「컴퓨터」, 生命工學, 新素材産業 등 첨단산업의 투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1979년 이후 연도별 經濟安定化施策과 重化學工業化의 진전 및 輸出産業 추이를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表 2-3-7〉

主要品目別 輸出 推移

(단위: 백만「달러」, %)

	1979		1981		1983		1985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食料및直接消費財	1,218.2	13.9	1,466.8	15.5	1,223.2	0.9	1,259.0	-1.9
原 料 및 燃 料	438.9	20.6	588.6	22.8	1,023.4	40.3	1,374.1	6.8
輕 工 業 製 品	7,579.7	11.3	10,109.4	19.4	9,654.5	1.7	11,173.9	0.5
織 維 製 品	4,515.2	12.3	6,029.1	22.1	5,838.0	1.4	6,627.1	-1.2
신 발 類	736.7	7.4	1,021.5	17.3	1,231.5	6.9	1,524.9	13.5
其 他	2,327.8	10.6	3,058.8	15.0	2,585.0	0.0	3,021.9	-1.3
重化學工業製品	5,818.5	30.2	9,089.0	24.7	12,543.9	20.4	16,476.0	5.9
化 工 品	186.4	62.8	315.3	8.6	379.2	11.6	574.5	24.4
鐵 鋼 製 品	1,051.5	91.5	1,770.8	12.4	1,748.0	-4.6	1,717.9	-11.2
機 械 類	388.5	49.4	607.5	26.4	865.3	33.7	1,381.0	28.8
電 子 製 品	1,492.6	34.6	1,813.6	10.6	2,442.3	39.6	2,907.0	-10.0
船 舶	517.2	35.5	1,411.4	128.5	3,735.0	31.9	5,040.0	7.6
其 他	2,182.3	14.5	3,170.4	18.2	3,374.1	11.9	4,855.6	16.0
合 計	15,055.3	100.0	21,253.8	21.4	24,445.0	11.9	30,283.0	3.6

資料: 韓國銀行

1979년은 第2次 石油波動으로 先進諸國의 成長率이 1975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景氣沈滯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는 經濟成長도 둔화되었으며 國際收支도 악화되었다. 특히 製造業 生産은 輕工業部門의 成長이 1978년의 절반수준인 8.3%의 成長에 그쳤으며 重化學工業의 成長도 전년의 29.5%에 비해 14.3%「포인트」가 낮은 15.2%의 증가에 그쳤다. 製造業部門의 成長率이 둔화된 직접적 이유는 先進諸國의 成長鈍化에 따른 輸入需要의 감퇴와 정부의 經濟安定化施策 추진에 따른 輕工業部門의 부분적인 供給隘路 및 重化學工業의 투자조정에 기인하였다.

1980년은 불리한 國際經濟環境과 대내적으로 그 동안 누적되어 온 構造的 問題點이 顯在化하고 여기에 經濟外的 要因이 가세하여 經濟成長率이 1962년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負의 成長(-5.2%)을 보였다. 이와 같은 負의 成長은 수출의 증가(前年比 16.3% 增)에도 불구하고 原油 및 關聯製品價格의 급등과 民間消費 및 設備投資 등 國內需要의 감퇴 및 農業部門의 감산 등에 기인하였다.

또한 製造業部門도 國內 油價의 대폭적인 인상과 國內外 景氣의 沈滯에 따른 需要不振등으로 전년대비 1.1% 負의 成長을 보였는데 이는 一般機械(-23.7%), 電氣機器(-13.3%), 輸送用機器(-16.4%) 등 主要 重化學工業이 負의 成長을 보였기 때문인바, 同年중 重化學工業의 生産은 전년대보다 9.2%「포인트」나 낮았다. 重化學工業의 生産이 1979년에 비하여 낮아진 원인은 1979년 下半期和 1980년중에 重化學工業에 대한 投資計劃을 전면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이었다.

重化學工業의 投資調整對策은 1970년대 중반 이후, 發電設備를 비롯한 일부 品目の 重複投資에 따른 過當競爭 및 稼動率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마련되었다. 政府는 이러한 問題를 안고 있는 重化學工業部門에 대하여 規模의 經濟 실현과 專門化 生産體制의 확립으로 國際競爭力을 제고하기 위해 당시 複數業體로 다원화되어 있던 自動車 및 發電設備部門을 통폐합하여 單一業體로 일원화하고 資本集約的인 裝置產業에 대해서는 新規投資를 가급적 억제토록 하였다.

政府는 이러한 投資調整을 기하는 한편 重化學部門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金融 및 輸出保險 支援制度를 보완, 개선하였는바, 金融면에서는 外國換銀行이 輸銀과 協調融資를 실시하여 中長期延拂輸出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保險면에서는 重化學製品의 輸出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諸般危險으로부터 國內수출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包括保險制를 도입하여 1981년 1월 1일부터 실시토록 하였다.

1981년중의 우리 經濟는 第2次 石油波動 및 重化學工業 投資調整의 충격에서 벗어나 經濟成長, 物價安定 및 國際收支 등 여러 면에서 회복세를 보였다. 經濟成長率은 6.4%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農業(24.1%)과 製造業 특히 重化學工業의 착실한 成長에 기인하였다. 同年중 製造業의 主要 業種別 成長내용을 보면 衣服(25.1%)은 높게 나타났으나 고무製品(-10.1%)은 負의 成長을 보이는 등 業種間에 현저한 격차를 보였으며 輕工業製品 전체로는 5.3%의 成長을 보였다. 반면에 重化學工業은 內外需要의 증가와 鐵鋼등 일부 業種의 生産能力 확대로 1980년중의 負의 成長에서 9.8%의 증가로 크게 호전되었다.

연중 政府는 國際競爭力 강화를 도모하고 비효율적인 既存投資를 조정하는 한편 設備投資 촉진을 위해 金融・稅制면의 지원을 확대하였다. 金融支援의 主要 內容은 設備投資의 촉진을 위하여 輸出産業 및 中小企業에 각각 2,000억원과 1,500억원의 設備資金을 지원하였으며 國產機械購入資金의 공급규모를 확대하였다. 한편 稅制면에서는 技術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企業의 技術, 人力開發費用에 대한 稅額控除制度를 신설하고 技術開發準備金 設置限度를 인상하였다.

또한 造船工業을 輸出主宗産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4個 造船所의 증설, 造船技

<表 2-3-8>

製造業의 主要業種別 成長推移

(단위 : %)

	1981	1982	1983	1984	1985(p)
製 造 業	7.5	4.1	12.2	14.8	3.5
輕 工 業	5.3	2.9	9.2	9.2	2.5
食 料 品	0.3	7.9	13.5	10.8	10.7
飲 料 品	1.3	6.5	5.9	11.7	0.5
纖 維	7.4	3.5	4.1	3.9	2.4
衣 服	25.1	-7.5	12.3	8.4	3.2
製 材 · 家 具	4.4	-5.2	14.5	4.8	-6.5
고 무	-10.1	-0.8	37.8	29.3	-1.2
重 化 學 工 業	9.8	5.3	15.0	19.8	4.3
化 學	3.1	5.2	11.5	10.4	6.1
石 油 精 製	-5.6	-9.3	1.9	11.0	6.1
非金屬礦物製品	-1.2	9.3	20.5	9.5	1.4
第 1 次 鐵 鋼	15.9	8.6	8.2	9.7	1.3
一 般 機 械	11.6	13.5	21.8	16.8	14.8
電 氣 機 器	17.1	1.8	23.7	27.8	-1.4
輸 送 用 機 器	32.7	14.5	14.7	60.1	8.3

資料：韓國銀行

術用役會社の 설립 및 船舶設計의 「센터」化를 내용으로 하는 造船部門 長期輸出計劃을 확정, 발표하는 한편 自動車部品工業을 輸出産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30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1982년에 들어와 우리 經濟는 原油等 國際原資材 價格의 안정으로 國內物價도 안정세를 회복하였으며, 연도중에 船舶의 輸出增加(236.9%)와 自動車の 國內外需要增加에 힘입어 輸送用機器部門이 14.5%나 신장하였으며 建設重裝備와 一般機械類의 國產化가 추진되어 13.5% 성장함으로써 重化學工業은 전반적으로 착실한 成長을 보였다.

연중 政府는 産業政策의 方向을 國際競爭力의 제고와 成長潛在力의 배양에 두고 産業構造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生産性向上과 技術開發 촉진시책을 강구하였다. 産業構造의 고도화와 합리화를 위하여 核心戰略部門을 중점 개발하고 專門化와 施設改善에 주력하였다. 重化學部門의 産業構造 고도화 시책으로 電子工業高度化 長期計劃(1982~91년)을 수립하여 半導體, 「컴퓨터」의 개발을 촉진하고 電子交換機등의 양산화를 추진하였으며, 自動車部門에서는 車種別로 專門生産業體를 지정하여 規模의 經濟 실현과 專門化를 도모하는 한편 自動車 需要増大를 위해 需要者金融을 확대하였다. 또한 國產機械에 대한 수요 진작을 위하여 연중 購入資金供給을 1,571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融資期間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同一人 融資限度를 폐지하는 등 융자조건을 개선하였다.

政府는 重化學工業과 「플랜트」의 輸出産業基盤 확충을 위하여 同年중 産業設備促進法 施行令을 개정하여 종래에는 海外建設免許業體만이 해외에서 産業設備設置工事を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産業設備輸出業體나 輸出用機資材를 설계 제작하는 者도 自家製作한 機械 및 裝置에 한하여 해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輸出支援金融制度를 개편하였는데 主要内容은 同年 6월 28일 金利引下時 輸出金融에 대한 優待金利適用이 폐지된 점을 감안하여 受惠資格要件 및 事後管理를 완화하고, 輸出支援金融 融資單價를 전년말의 540원에서 1982년말에는 615원으로 인상하였다.

1983년중의 우리 經濟는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 및 內需의 호조로 성장세를 지속하였는데, 이는 주로 世界經濟가 第2次 石油波動的 長期沈滯에서 벗어나 景氣回復勢를 보인 데에 기인하였다. 특히 重化學業種중 建設重裝備, 鑛山用機械 등의 國產化 촉진과 輸出 증가로 一般機械部門이 21.8% 증가하였으며, 輸送用機器도 新種車 개발과 船舶의 수출신장으로 14.7% 확대되었다. 한편 重化學工業은

15.0%나 신장하여 製造業중에서 차지하는 附加價值基準에 의한 重化學工業의 비중은 53.4%로 높아졌다.

政府는 연중에도 産業의 國際競爭力 강화와 成長潛在力의 제고에 政策의 역점을 두고 産業構造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戰略産業으로서 機械工業에 대해서는 國產機械購入資金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으며 海外建設業體의 國產建設裝備 使用義務化 등으로 수요증가를 도모하였으며, 電子工業部門에 대해서는 生産基盤 확충과 技術開發을 촉진키 위하여 최신키술의 도입과 外國人合作投資를 장려하고 「컴퓨터」, 通信機器, 産業用電子機械 등 尖端技術産業을 육성하기 위하여 新技術企業化資金 制度를 신설하였다. 한편 産業支援機能의 효율화를 위하여 1980년대 産業政策의 과제와 支援施策改編方向을 확정하여 産業政策의 중점을 技術開發과 生産性向上에 두고 이를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政府는 연중에 海外建設業體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고 國產建設重裝備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海外建設業體 現地法人이 同裝備를 구입하는 경우 2~5년의 범위내에서 所要資金의 100%까지 延拂輸出資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시에 機械工業과 電子工業의 所要施設機資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내에서 關稅輕減의 혜택을 주었다.

1984년중에도 우리 經濟는 美國을 비롯한 主要先進國의 경기상승세와 輸入需要의 확대 및 國際原資材 價格의 안정으로 7.5%의 經濟成長率을 나타냈는데 製造業은 輸出의 호조와 內需의 증대로 14.8%의 높은 成長을 보임으로써 전체 成長을 주도하였다. 輸送用機器(60.1%), 電氣機器(27.8%), 一般機械(16.8%) 등이 높은 成長을 기록하여 重化學工業은 輕工業成長率 9.2%보다 훨씬 높은 19.8%의 成長을 보였다. 이와 같은 重化學工業의 成長으로 製造業에서 점하는 重化學工業의 비중은 1983년중의 53.4%에서 1984년중에는 55.7%로 높아졌다.

政府는 연중에도 産業政策의 方向을 成長潛在力의 제고와 産業構造의 合理的 調整에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國際競爭力 향상을 위해 技術開發 促進施策을 강구하였다.

機械工業을 戰略産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公共投資事業에 國產機資材의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國民投資基金에서 國產機械購入資金 1,811억원을 공급하였으며 農業機械를 輸出産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農業機械部品の 國產化計劃을 수립, 시행하였다. 또한 電子部品の 輸出産業化를 위해 特定研究開發事業을 지원하고 尖端技術의 開發을 촉진하였다.

또한 政府는 産業의 장기적인 國際競爭力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技術開發 促進政策으로 大統領 直屬機構로 技術振興審議會를 설치하고 국내외 技術水準과 動向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技術開發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협의 조정토록 하였다. 技術開發을 需要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政府 및 政策投資機關의 購買豫示制度를 활용토록 하였고 金融 및 財政면에서도 지원을 확대하였다.

1984년중에 政府는 수출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輸出金融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貿易去來法 施行令과 輸出金融規程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輸出産業의 設備投資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輸出産業設備金融 取扱規程을 제정하여 총규모 2,000억원 범위내에서 長期施設資金을 지원키로 했고, 中小企業의 延拂輸出支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品目에 따라 70~90%(船舶, 機械類 등은 90%, 部品類는 70%)로 구분 지원하던 引渡前金融 融資比率를 中小企業의 경우 品目を 구분하지 않고 90%를 지원키로 하였다.

1985년중 우리 經濟는 美國등 先進工業國의 經濟成長率 둔화와 保護貿易主義 강화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되었고 國內景氣의 불투명으로 투자활동이 저조하여 經濟成長率이 5.1%에 그쳤다. 특히 製造業은 국내투자 및 수출수요가 저조하여 1984년 成長率의 약 1/4에 불과한 3.5%의 成長에 그쳐 전체 經濟成長 둔화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主要 業種別로 보면 輕工業중 食料品은 비교적 견실한 伸張勢(10.7%)를 보였으나 製材·家具(-6.5%), 纖維, 衣服 등 기타 대부분의 輕工業製品은 부진현상을 보였다. 또한 技術 및 資本集約的 業種인 重化學工業도 상반기중 수출과 민간투자의 부진으로 둔화 현상이 확대되었으나 하반기들어 수출수요의 회복과 설비투자의 확대에 힘입어 「컴퓨터」 周邊機器 및 自動資料處理機器를 중심으로 한 一般機械(14.8%), 乘用車의 內需 확대와 캐나다에 대한 수출 증대로 輸送用機械(8.3%)가 비교적 높은 成長率을 보였다. 그러나 船舶生産은 世界的인 造船業의 불황으로 受注殘量이 크게 줄어 들었으며 電氣機器는 「컬러」TV의 국내보급이 일단락되었고 對美輸出의 「덤핑」판정 등의 영향으로 負의 成長을 보이는 등 여러 요인이 가세하여 1985년중 重化學工業의 成長率은 전년의 19.8%에서 크게 낮은 4.3% 신장에 그쳤다.

政府는 1985년중에도 産業의 成長潛在力을 배양하고 國際競爭力 강화를 위한 施策을 계속 추진하였다. 연초 이래의 경제성장둔화와 저조한 고용사정 등에 대처하고 産業의 成長潛在力을 배양키 위하여 設備投資促進에 적극적인 金融 및 稅制면의 지원을 강구하였는데 먼저 金融면에서는 輸出産業에 대한 設備資金의 限度를

계속 확대하였으며, 연중에 3차례에 걸쳐 輸出支援金融의 「달러」당 融資單價를 종전의 평균 655원에서 74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다. 한편 中小少額輸出業體에 대한 包括輸出金融制度를 도입하여 貿易金融制度를 개선 보완하였다. 또한 1986년 6월 말까지 時限附로 30大系列 與信管理對象에서 製造業에 대한 設備金融을 제외하여 施設近代化를 촉진하였으며 輸出産業設備金融의 融資比率를 종전의 90%에서 100%로 제고시켰다. 金融면의 지원과 함께 稅制면에서도 設備投資 촉진을 위해 增資所得控除를 恒구화하고 減價償却 耐用年數도 단축, 운용토록 하였다.

이밖에 일부산업 특히 肥料, 合板産業 등에서 過剩設備등의 問題가 발생하여 遊休設備의 처분, 企業의 통폐합 등 不況産業에 대한 構造調整支援施策을 강구하였으며, 中小企業의 自己成長基盤의 확충과 輸出産業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3년간 中堅輸出業體 1,000個를 선정하여 有望中小企業發掘 支援制度를 통하여 施設運轉資金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生産性 향상을 위한 經營技術指導를 계속 실시하였다.

第4節 輸銀의 金融支援과 輸出高度化

1. 重化學工業化와 輸銀의 金融支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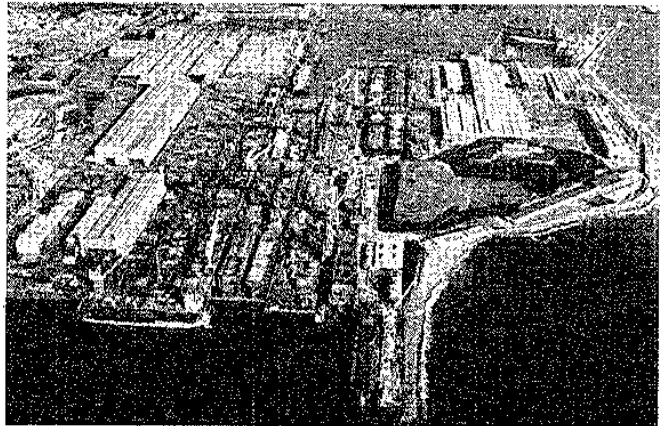
우리 나라의 産業構造는 그 동안 農林漁業 중심에서 鑛工業 특히 製造業 중심으로 급속히 高度化되어 왔으며 이를 위한 對外指向의 工業化戰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1970년대에 들어서는 勞動集約的 輕工業製品의 수출이 貨金 상승, 後發開途國의 世界市場 참여, 선진국의 輸入規制 강화 등으로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重化學工業 投資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重化學工業은 협소한 國內市場만으로는 規模의 經濟를 달성할 수 없고 輸出에 크게 의존하여야 하므로 重化學投資 촉진과 함께 輸出産業化를 동시에 추구하는 重化學工業化 戰略이 추진되었다.

3次 5個年計劃이 시작된 1973년 1월 政府는 經濟의 重化學工業化를 선언하였고 이후 鐵鋼 및 石油化學製品 등의 國內生産이 시작되면서 重化學工業化는 급진전을 보게 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에는 重化學工業에 집중적인 投資가 이루어졌다.

한편 重化學工業을 輸出産業으로 육성하는 데는 막대한 投資財源과 高度의 技術蓄積을 필요로 하며 先進工業國과 직접 경쟁하여 輸出市場을 개척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長期 低利의 輸出金融支援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重化學工業製品의 수출은 輕工品製品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去來單位가 巨額이며 非反復的인 점, 輸出對象國이 주로 資本이 빈약한 開途國인 점 등 製品의 성격상 延拂信用과 輸出保險의 지원이 이미 보편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1976년에는 韓國輸出入銀行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輸銀設立 이후 造船 및 機械類를 중심으로 한 重工業製品 輸出은 괄목할 정도로 증대되어 왔는데 이는 延拂輸出金融支援이 實物經濟의 확대를 촉진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輸銀設立 이후의 重化學工業化의 진전도를 보면, 工業生産중 重化學工業生産의 비율은 1972년의 41.8%에서 1977년에는 50.9%로 그리고 1980년에는 53.2%로 크



大型造船所 全景

게 높아졌으며 重化學製品 輸出은 1972년의 경우 總輸出의 21.3%인 346백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7,286백만「달러」로 급격히 늘어나 總輸出의 41.6%를 차지하였다. 한편 輸銀의 融資承認額은 1972년의 3.6백만「달러」에서 1977년 277백만「달러」, 1980년 393백만「달러」, 1984년 1,370백만「달러」로 급신장하여 1985년말까지 總 6,870백만「달러」를 기록, 11,547백만「달러」규모의 輸出去來 및 海外投資去來를 지원하였다.

重化學工業의 輸出産業化를 위한 金融支援의 利點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輕工業製品은 需要와 供給의 양면에서 競爭度가 높고 先進各國의 輸入規制措置에 따라 輸出市場의 유지와 확대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데 비하여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은 輸入國의 經濟開發에 필요한 産業設備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輸入國으로부터 수입저항을 덜 받아 市場開拓이 용이하다는 利點이 있다.

둘째, 重化學工業은 關聯産業에 대한 前, 後方聯關效果가 높고 勞動生産性과 附加價值創出면에서 효율성이 높으며 技術開發을 촉진하고 生産財의 海外依存度を 낮추게 한다.

셋째, 「플랜트」, 機械類 등의 輸出時에는 建設, 施工, 「엔지니어링」, 「노우 하우」 등 技術用役이 함께 수출되어 外貨稼得率이 높고 原料, 部品 등의 지속적인 輸出을 가능케 한다.

이와 관련하여 中長期延拂信用의 供與와 輸出保險支援을 통한 重化學工業製品 輸出促進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졌으며 同業務를 전담하는 輸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다.

한편, 그 동안의 重化學投資는 우리 나라의 産業 및 輸出構造 高度化에 크게 기여한 반면에 1970년대 후반의 집중적인 투자가 資源配分の 效率性を 저해하였다는

비판도 있었으며 이에 따라 重化學投資調整을 거치면서 1980년대의 經濟政策의 기조는 高度成長政策에서 安定化政策으로 전환되었다.

그 동안 우리 나라 産業構造上의 내재적 隘路要因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工業部門간의 均衡面에서 基礎生産財와 中間生産財 部門이 충분히 육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最終生産財部門에 상대적으로 과중한 투자가 이루어져 輸入誘發的인 工業構造를 형성해 왔으며 제품수출에 있어서도 낮은 國產化率로 인해 採算性과 競争力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둘째, 技術水準面에서 先進工業國에 비해 충분한 技術蓄積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重化學工業化가 추진되어 工業全般에 걸친 隘路要因이 발생했으며 특히 고도의 技術水準을 요하는 重化學工業에서 技術隘路現象이 顯在化되었다.

셋째, 産業政策面에서 그동안 輸出産業과 重化學工業에 우대정책이 베풀어져 內需産業과 農業, 水産業 등 基礎産業의 발전이 낙후하여 産業間의 不均衡問題가 대두되었다.

넷째, 素材産業과 部品 및 中間財産業을 담당하는 中小企業이 상대적으로 낙후하여 輸出構造의 底邊이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乖離問題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産業構造의 轉換過程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마찰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바 최근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각종 經濟施策이 베풀어지고 있으며 특히 技術開發, 投資促進, 技術 및 技能人力の 양성, 中小企業의 育成支援政策 등이 추진되었다.

重化學工業의 輸出産業化를 통한 産業構造高度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部門間 均衡回復努力은 産業 및 輸出構造의 底邊擴大를 위한 조정기적 施策으로도 볼 수 있는바 輸銀은 調整期 局面에서 발생하는 延拂輸出 및 海外投資 需要에 신속적으로 대처하면서 重化學工業製品의 對外競争力 제고에 주력해 왔다.

2. 輸銀金融支援과 輸出増大

먼저 輸銀의 金融支援實績을 개관하면, 1969년의 輸銀法 制定 이후 輸銀이 정식 설립된 1976년까지는 延拂輸出 및 海外投資의 胎動期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輸銀의 金融支援實績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1971~76년중 輸出資金支援額(承認基準)은 모두 1,258억원으로 1972년의 아프

가니스탄에 대한 織造機械 延拂輸出지원을 효시로 船舶, 纖維機械, 木材機械를 비롯하여 鐵道車輛 및 貨車와 電話交換施設의 수출에 주로 지원되었다. 당시 輸出資金의 대부분은 船舶輸出에 지원되었는데 輸出資金支援額 1,258억원중 1,149억원이 船舶輸出에 지원되었으며 다음으로 鐵道車輛, 機械類, 「플랜트」 등의 順으로 지원되었다. 海外投資資金은 인도네시아 등지의 原木開發事業 등에 대하여 99억원을 지원하여 同期間중 總融資承認額은 1,357억원에 이르렀다.

1976년에 輸銀이 정식 설립되면서 부터는 延拂輸出資金支援이 본격화되어 1977년에는 1971~76년의 6년간 지원액에 가까운 1,152억원을 지원, 본격적인 延拂輸出時代를 맞게 되었다. 이후 延拂輸出 資金需要는 급증하기 시작하여 技術提供資金과 轉貸資金을 포함한 輸出支援金融의 總承認額은 1976년의 818억원에서 1979년에는 4,162억원으로 급증하였으며 1982년 5,742억원, 1984년 1조 1,242억원, 1985년 7,673억원으로 증가되어 왔는데, 이는 주로 船舶輸出에 지원되었다.

또한 海外投資支援金融은 主要資源開發 支援資金을 포함하여 1971~76년중에는 99억원에 불과하였으나 1977년 190억원, 1979년 282억원, 1982년 539억원으로 급상승하였다가 1984년 92억원, 1985년 74억원으로 다시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초기에 활발히 추진되던 原木開發事業이 山林保有國들의 資源「내셔널리즘」강화로 부진해지고 대신 石炭開發事業과 原油開發事業에 대한 지원이 1979~83년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그후로는 資源開發事業이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고 海外投資 진출도 다소 부진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金融支援制度면에서는 輸銀設立 당초에는 供給者信用만을 취급하였으나 1979년 이후 購買者信用을 병용 취급하고 있으며, 國內外 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 제도를 도입, 운용하는 등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輸出信用의 供與方式에는 國內 輸出者를 借主로하여 製作資金등 수출에 필요한 資金과 輸出物資 引渡後의 延拂信用供與에 따른 延拂金融을 지원하는 供給者信用 방식과 國內에서 수출되는 物品이나 用役의 대전을 海外 輸入者에게 직접 용자하는 購買者信用 방식이 있는바 設立初期에는 延拂債權의 관리와 채권보전이 용이한 供給者信用 방식으로만 金融支援을 하였으나 현재는 進一步한 金融方式으로 알려진 購買者信用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購買者信用 방식은 融資銀行이 직접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輸出者와 輸入者에게는 많은 유리한 점이 있어 美國, 英國등 歐美諸國에서 공여되는 輸出信用은 購買者信用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輸銀은 1979년에 購買者信用 방식을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약 3억「달러」상당액을 이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輸銀은 한정된 財源으로 급증하는 延拂輸出 資金需要에 대응하기 위해 중래 단독으로 지원하던 融資所要額을 1980년초부터는 國內金融機關과 일정비율로 분담지원하는 協調融資制度를 시행하였다. 同制度는 처음에는 協調融資機關의 輸出대상을 輸出資金貸出중 引渡後金融限度額의 20% 해당액으로만 제한하였으나 同年 7월부터는 引渡前金融과 技術提供資金貸出에까지 확대하고 協調融資比率도 20%에서 30%로 인상하여 協調融資體制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國內金融機關의 自體調達外貨財源이 부족하여 協調融資가 원활히 실시되지 못하여 다음 해인 1981년초에는 外國金融機關도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현재까지 15個 國內金融機關 및 35個 外國金融機關들과 協調融資 基本協定을 체결하고 外國銀行 國內支店을 중심으로 協調融資가 이루어지고 있다.

資金別 支援實績

輸銀의 主要機能은 重化學製品의 輸出支援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事業의 지원으로 요약되며 이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貸出의 種類는 輸銀法 第18條에서 10種의 貸出과 保證 및 附帶業務로 구분하고 있다. 10種의 貸出科目중 支援實績이 있는 貸出을 크게 분류하면 製品輸出에 공여되는 輸出資金貸出과 技術用役輸出에 공여되는 技術提供資金貸出, 購買者信用 방식의 直接貸出 및 轉貸資金 등은 輸出支援金融에 속하며 海外投資資金貸出과 海外事業資金貸出,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貸出은 海外投資金融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業務代行 이후 1985년말까지 輸銀의 總貸出承認累計額은 6,870백만「달러」로 이 중에서 輸出資金貸出은 6,173백만「달러」, 直接貸出은 301백만「달러」, 技術提供資金貸出은 30백만「달러」, 轉貸資金은 40백만「달러」로 輸出支援金融이 전체의 95%를 점하고 海外投資金融은 전체의 5%에 머물고 있다. 그 중에서도 輸出資金貸出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重化學工業의 輸出産業化政策 추진과 輸銀의 金融支援으로 우리 나라 重工業製品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출 단계에 나섰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直接貸出은 1979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아직은 그 실적이 미미하며 英國, 홍콩 등 英聯邦國家들을 대상으로 한 船舶輸出去來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直接貸出의 시행초기에 金融條件면에서 채권보전이 보다 용이한 供給者信用을 다소 우대하였던 데도 원인이 있으나 直接貸出去來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輸入者의 신용도가 높아야 하며 輸入者측에서 세계상의 혜택등 유리한 조건이 있을 때에만 선호하여 일반적으로 開途國을 상대로 한 輸出去來에

서는 直接貸出의 공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金融條件을 동등하게 적용한 1984년 이후에도 直接貸出實績은 부진하였다.

1979년부터 시행한 轉貸資金은 直接貸出의 공여가 곤란한 소규모 資本財去來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供與對象國家를 開途國으로 한정하여 운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역시 부진한 상태에 있다. 한편 技術提供資金 支援額은 總 30백만 「달러」로 融資實績이 극히 부진한데 設立初期에 (株)雙龍이 가봉에 건설한 百貨店 建設工事を 技術提供資金으로 지원한 실적이 있고 그후 (株)亞細亞航業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航空地圖製作 用役契約을 수주하여 이를 지원한 것이 전부이다. 技術提供資金은 重化學工業化의 추진과 더불어 축적되는 重化學工業技術의 海外輸出을 유도하기 위해 「플랜트」輸出에 준해서 가장 유리한 金融條件을 적용해 왔는데 실제에는 高度技術의 輸出은 물론이고 中位技術의 輸出까지 부진함으로써 지원실적이 극히 미미하였다.

한편 海外投資支援金融은 總貸出承認額의 5%에 불과한 327백만 「달러」로 船舶輸出支援 4,957백만 「달러」, 「플랜트」輸出支援 1,404백만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5년말까지 輸銀이 融資承認한 海外投資金融 327백만 「달러」의 業種別 구성내용을 보면 금액으로는 資源開發事業이 12件에 220백만 「달러」로 가장 많고 건수로는 製造業投資가 22件에 96백만 「달러」로 가장 많다. 資源開發事業은 東南亞諸國에 대한 原木開發事業과 有煙炭의 대규모 수요자인 浦項綜合製鐵등이 추진한 石炭開發事業, 그리고 (株)코데코 에너지가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을 공여받아 인도네시아의 「마두라」油田에서 개발 생산중인 石油 및 天然「가스」開發事業이 전부이나 현재는 原木開發事業은 山林保有國들의 資源「내셔널리즘」강화로, 石炭開發事業은 세계적 石炭供給過剩으로, 그리고 石油開發事業은 최근의 油價下落趨勢로 신규개발투자가 부진한 실정에 있다. 반면 製造業投資는 초기에는 실적이 거의 없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플랜트」輸出에 수반하는 海外投資와 中小企業에 의해 추진되는 市場指向型 또는 生産要素指向型의 투자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品目別 支援實績

앞서 본 바와 같이 輸出支援金融은 貸出承認累計額의 약 95%를 차지하여 輸銀資金支援의 대종을 이루어 왔으며 이를 品目別로 나누어 보면, 船舶 76%, 「플랜트」 21%, 機械類 1%, 鐵道車輛 0.4%의 順으로 나타난다.

〈表 2-4-1〉

新造船 受注量 推移

(단위 : 천GT, %)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韓 國	1,060 (6.3)	1,706 (8.9)	1,372 (8.1)	1,098 (9.7)	3,742 (19.1)	2,373 (15.5)	1,482 (11.8)
日 本	8,287 (49.0)	10,004 (52.4)	8,803 (49.2)	5,650 (49.7)	11,126 (56.8)	8,850 (57.6)	6,182 (49.1)
世 界 全 體	16,913 (100.0)	19,090 (100.0)	16,873 (100.0)	11,357 (100.0)	19,594 (100.0)	15,354 (100.0)	12,602 (100.0)

註 : ()안은 世界 新造船市場 占有率임.

資料 : 日本海事研究所, 日本海事産業研究報, 1985. 12

그중에서도 船舶輸出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造船工業을 重工業化의 戰略産業으로 지정하여 중점 육성한 결과 現代造船所, 大宇造船所 등 大型造船所가 건설되었고 실제로 造船工業의 국제비교우위가 제고됨에 따라 海外受注實績이 餘他品目보다 월등히 높았던 데에 기인한다. 우리 나라 造船工業의 輸出額은 1975년 이후 연평균 20.6%의 높은 成長率을 기록해 왔으며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2년에는 0.1%에 불과하였으나 1977년에는 4.7%, 1984년에는 16%까지 증대하였으며 船舶建造能力과 新造船受注면에서도 世界 第2位の 造船國으로 부상하였다.

造船工業의 괄목할 만한 發展은 일면 輸銀의 延拂金融支援이 船舶輸出競爭力을 제고시켜 造船工業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인데 輸銀의 金融支援이 船舶輸出에 편중된 것은 重化學工業化의 初期段階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品目は 「플랜트」로서 1970년대 후반의 집중투자에 힘입어 우리 나라 「플랜트」輸出能力은 크게 향상되었는바 輸出支援實績은 1972년의 1백만「달러」수준에서 1978년 174백만「달러」, 1984년 218백만「달러」, 1985년 371백만「달러」로 꾸준히 신장되어 왔다. 品目內容은 木材製材施設로부터 海水淡水化設備, 시멘트「플랜트」, 타이어「플랜트」, 大型海上構造物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왔다.

第 3 章

韓國輸出入銀行 業務의 發展

第1節 概 觀

輸銀은 1976년 7월 1일 任職員 80名, 3部, 1室의 組織으로 출범한 이래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業務規模의 신장과 業務內容의 발전을 이룩해 왔다.

設立 당시 554억원에 불과하던 納入資本金은 1985년말 현재 4,27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資本財 輸出과 海外投資, 海外資源開發 등 海外事業活動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資金調達 및 支援規模는 크게 확대되었다. 資金調達業務에 있어서는 급증하는 資金需要에 대처하여 저렴한 자금의 適期供給에 힘써 왔으며 그 결과 資金調達規模가 매년 크게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資金調達方式과 財源도 다양화되어 왔다. 資金支援業務에 있어서는 資本財 輸出등에 대한 원활한 金融支援에 차질이 없도록 支援規模를 계속 확대시키는 한편 支援條件의 탄력적 운영, 새로운 融資制度의 도입 등 輸出信用競爭力 제고와 효율적인 金融支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한 1977년부터 業務를 대행케 된 輸出保險業務에 있어서도 保險基金의 확충, 새로운 保險制度의 도입, 信用調査의 강화 등을 통하여 量的, 質的으로 현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한편 이들 業務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國別 信用度評價 業務, 調査分析 業務, 法的 審査 業務, 事務改善 業務 등에 있어서도 큰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와 함께 機構 및 組織도 크게 확대, 개편되었는바 任職員數는 1986년 2월말 현재 任員 8名, 職員 597名 등 總 605名으로 늘어났고 本店내에 11部 3室 그리고 1個 國內支店과 8個 海外事務所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이 밖에 1985년 9월에는 1982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本店行舍의 新築工事が 완료되어 本店을 大字「센터 빌딩」에서 汝矣島 新行舍로 이전하였다.

1. 資金調達の 多樣化

輸銀設立 이후 급격히 증대되어 온 延拂輸出등 輸銀資金 需要를 원활히 충족시키기 위해 資金調達業務는 규모면에서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輸銀의 財源은 資本金, 積立金 및 國內外 借入金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政府의 財政형편상 資本金의 증액에는 한계가 있어 所要資金의 상당액을 借入 특히 海外 借入에 의존하게 되었다.

國內調達

設立 당시 554억원이 납입되었던 資本金은 매년 꾸준한 납입이 이루어져 왔는데 1977년 12월 第2次 輸銀法 改正으로 法定資本金은 1,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1985년말 현재 納入資本金 規模는 4,279억원에 달하게 되었다.

積立金은 輸銀法 第36條 第1號에 의해 利益金の 20%를 적립하는 法定積立金과 財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는 任意積立金으로 나누어지는데 設立 이후 利益金 전액을 적립하여 1985년말 현재 積立金은 總 596억원에 이르렀다.

1979년 이후 國內財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온 國民投資基金 貸下金은 1983년의 1,750억원을 최고로 1984년 이후 減少勢를 보여왔는데 1985년말까지의 總調達規模는 6,599억원을 기록하였다. 이 밖에 國內財源으로는 國內金融機關 借入과 轉貸資金 支援을 위한 韓國銀行 保有外換 受託金 등이 있는데 調達實績은 1985년말까지 각각 200억원, 213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海外調達

海外資金 調達額은 1979년 이후 國內資金 調達額을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그 調達比重이 점차 높아져 1984년에는 86%로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輸銀의 海外資金 調達は 銀行團借款, 保有延拂어음 賣却, 輸出入金融債券 發行, 外資材導入 轉貸借款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借入通貨도 「도이치 마르크」貨, 「스위스 프랑」貨 등으로 다양화되어 왔다. 이는 보다 저렴한 資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으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保有延拂어음의 賣却은 外債의 증가없는 海外資金 調達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銀行團借款은 1978년말에 최초로 2억「달러」의 導入契約이 체결되어 1979~80년의 2년간에 걸쳐 전액이 인출되었으며 1981년 이후에도 6차례의 美「달러」貨表示 銀行團借款, 2차례의 「엔」貨表示 銀行團借款이 도입됨으로써 銀行團借款에 의한 資金調達 規模는 1985년까지 總 6,792억원에 달하였다.

保有延拂어음 賣却에 의한 海外資金 調達は 1977년 6월에 처음으로 149백만「달

러」 상당액이 國際金融市場에서 매각되었으며 1981년부터 본격화되어 1982년 이후 1985년까지는 매년 總資金調達額의 50~70% 水準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985년까지의 延拂어음 賣却에 의한 資金調達 비중은 總資金調達額의 44.9% 인 1조 8,327억원을 기록하게 되었다.

1980년부터는 外資材導入을 위한 轉貸借款 도입이 추진되어 海外財源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1985년말까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西獨 등의 公的輸出金融機關으로부터 總 696억원의 轉貸借款을 도입하였다.

外貨表示 輸出入金融債券 發行에 의한 資金調達은 1984년에 50억「엔」의 「엔」貨表示 債券과 50백만「달러」의 變動金利附 債券이 발행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이를 발판으로 1985년에는 2件 2억「달러」의 變動金利附債券, 1억「도이치 마르크」의 債券, 1억「달러」의 「유로 노트」가 발행되었으며 50백만 「스위스 프랑」의 債券 發行 契約이 체결되는 등 國際債市場에서의 債券發行에 의한 資金調達總額은 3,084억원에 달하였다.

2. 資金支援業務의 擴充

輸銀은 設立 이후 造船, 「플랜트」 등 우리 나라 資本財의 輸出과 資源開發事業 등 우리 企業의 海外事業 活動을 본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經濟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해왔는데 이를 위해 매년 資金支援 規模를 확대해 왔으며 26次에 걸친 業務方法書의 改正(業務代行期間중 12次) 등을 통한 支援對象去來 要件 및 融資條件의 탄력적인 운영, 中小企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選別支援의 강화 그리고 協調融資制度 등 새로운 金融技法의 도입을 통해 財源의 效率的인 운영에 힘쓰는 한편 輸出信用의 競爭力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支援業務는 크게 다양화되어 왔는데 業務代行期에는 輸出資金貸出과 海外投資資金貸出만이 취급되었으나 設立 이듬해인 1977년에는 技術提供資金貸出이 그리고 1979년에는 購買者信用 方式에 의한 直接貸出과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轉貸資金供與業務가 취급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協調融資制度가 도입되었고 輸出用原資材 延拂輸入을 위한 外國金融機關으로부터의 轉貸借款業務도 취급되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에는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貸出이 처음으로 취급되었다. 또한 1985년에는 低金利通貨에 의한 資金支援을 위해 異種通貨貸出制度가 처음 도입되었다.

貸出業務와 관련하여 保證業務도 확대 실시되었는데 1977년에는 先受金還給保證業務와 契約履行保證業務가 그리고 1980년에는 協調融資金融機關에 대한 債務保證業務가 추가되었다.

한편 1976년 10월에는 財務部長官으로부터 甲類 外國換銀行 認可를 받아 輸銀業務와 관련된 外國換, 輸出入業務를 취급케 되었으며 1978년에는 輸銀 內國信用狀業務를 그리고 1979년에는 産業設備輸出促進法 및 同法 施行令에 의거 위임된 國內生産機資材의 搬出確認 및 外國機資材의 輸入承認業務를 취급케 되었다. 또한 1982년 7월부터는 그 동안 商工部에서 전담해 오던 産業設備 輸出許可業務중 일부를 輸銀이 취급케 되었다.

輸銀은 設立 이후 1985년말까지 總 6,618백만「달러」(融資承認基準)의 資金을 지원했는데 그 大宗을 이룬 것은 輸出資金이었다. 輸出資金의 主要 支援對象品目は 船舶, 「플랜트」, 機械類 등으로 이 중에서 船舶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는데 船舶輸出을 위한 輸出資金 支援額(直接貸出 제외)은 4,531백만「달러」로 總支援額의 68.5%를 점하였다. 「플랜트」에 의한 輸出資金 支援은 1978년부터 본격화되어 船舶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시멘트「플랜트」, 海水淡水化「플랜트」, 火力發電設備 등 50餘個「프로젝트」에 1,306백만「달러」가 지원되었다. 鐵道車輛, 機械類 등에 대하여는 각각 14백만「달러」와 73백만「달러」의 輸出資金이 지원되었다. 한편 技術提供資金은 1977년 가봉에서의 백화점 건설「프로젝트」에 처음으로 지원된 이후 그 실적은 부진하여 30백만「달러」가 지원되는 데 그쳤다.

直接貸出에 의한 資金支援은 모두 10건에 301백만「달러」를 기록하였는데 輸出資金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船舶輸出에 지원되었다. 轉貸資金은 11個 外國金融機關과 40백만「달러」의 轉貸資金 供與協定을 체결하였으나 支援實績은 12백만「달러」에 그쳤다.

海外投資資金은 資源開發, 製造業 등에 대한 우리 企業의 海外直接投資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모두 36件에 261백만「달러」가 지원되었으며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은 인도네시아의 「마두라」油田開發「프로젝트」1件에만 지원되었는데 1981년 이후 7회에 걸쳐 總 62백만「달러」가 지원되었다.

3. 輸出保險業務의 伸張

輸銀은 1977년 1월에 大韓再保險公社로부터 輸出保險業務를 승계받아 그 동안

우리 나라의 輸出規模 증대와 더불어 격증되어 온 輸出保險需要를 원활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輸出保險基金의 증액, 輸出保險 引受限度의 탄력적 운용, 新種 保險制度의 도입 등 輸出保險 基盤 확충에 힘쓰는 한편 國際信用投資保險者聯盟(Berne Union)에의 가입, 外國 公的保險機關과의 共同保險協約 체결 등 輸出保險業務의 국제화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輸出保險業務 承繼 당시 政府出損金 15억원과 利益金轉入額 7.9억원 등 總 22.9억원에 불과하였던 輸出保險基金은 政府出損과 利益金の 轉入(1978년 이전)으로 1985년말 현재 205.9억원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1970년 이후 別途計定에 적립된 利益積立金 188.0억원을 포함한 輸出保險 總財源은 393.9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輸出保險 引受限度도 輸銀의 業務承繼후 2次에 걸친 輸出保險法 改正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輸出保險 引受限度는 1978년 第4次 輸出保險法 改正時 종전의 基金의 20배에서 30배로 확대되었다. 또한 1981년 3월 第5次 輸出保險法 改正時에는 倍數限度制를 폐지하고 매년 商工部長官이 輸出保險種目別로 引受限度를 정하여 國會의 承認을 받아 운용토록 변경되었다.

한편 1977년에는 海外建設工事保險, 1979년에는 輸出保證保險 그리고 1981년에는 輸出代金金融保險을 신설함으로써 保險種目은 業務承繼 당시의 6個 種目에서 9個 種目으로 확대되었으며, 保險事故危險의 逆遡及 防止를 통한 危險分散, 保險料負擔 경감 등 輸出保險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978년 6월에는 輸出어음保險을 대상으로 한 包括保險制度가 도입되었다. 包括保險制度는 1980년 7월부터는 輸出保證保險 그리고 1981년 1월부터는 中長期延拂輸出保險에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한편 輸銀은 信用危險과 非常危險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海外輸入者에 대한 信用調査와 國別情勢調査를 강화하여 왔는데 1986년 2월말 현재 信用調査「화일」數는 12,790個에 달하였으며 國別情勢評價가 완료된 國家數는 135個國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輸出保險業務의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1976년 이전에는 연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輸出保險 利用率이 최근 5년간에는 4~6%로 제고되었으며 1969년 輸出保險業務 개시 이후 1985년말까지 保險引受實績은 20,891건에 總 7조 4,804억원, 그리고 1985년말 현재 有效契約額은 3조 3,460억원을 기록하였다.

4. 支援業務의 強化

輸銀은 資本財 輸出, 海外投資, 海外資源開發 등을 위한 거액의 長期資金 支援을 主業務로 하고 있는바, 이에는 적지 않은 政治的, 商業的인 危險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輸銀은 設立 初期부터 우리 나라 金融機關으로서는 처음으로 支援對象國의 信用度評價 業務를 도입, 발전시켜 왔으며 契約書의 法的 檢討業務에도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支援對象國의 債務償還能力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與信限度를 설정함으로써 貸出에 따르는 危險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國別 信用度評價 業務는 1977년 1월 企劃調查部가 확대, 개편되어 海外投資調查部가 신설되면서부터 본격화 되었는데 1977년 4월, 第1次 試案이 작성된 후 이를 수정 보완하여 1979년 3월 第4次 試案이 마련됨으로써 國別 信用度評價 및 與信限度 設定方法은 일단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同評價 및 限度設定方法에 관한 諸規程은 1982년 8월과 1985년 5월에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1985년말 현재 總 102個國에 대한 評價가 완료되었다.

輸銀의 支援去來와 관련된 國際契約書의 瑕疵 내지 法的 危險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契約書의 法的 檢討業務는 國別 信用度評價 業務와 함께 輸銀의 貸出審査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海外資金 調達과 관련된 契約書도 法的 檢討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契約書의 法的 檢討業務는 輸銀 資金支援 規模의 확대에 따라 量的으로 증가해 왔을 뿐만 아니라 質적으로도 다양화 되어 왔으며 1985년말 현재 契約書 法的 檢討實績은 總 660件에 달하였다.

한편 輸銀은 主要國의 輸出金融 및 保險制度, 支援對象産業의 動向, 各國의 經濟動向 및 投資環境, 國際金融市場 動向 등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調查月報, 週間 輸銀뉴스 등에 게재하거나 또는 一般資料로서 발표함으로써 輸銀業務 關聯分野에 대한 각종 情報를 行內는 물론 關係機關과 關聯業界에 제공하여 業務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해 왔다.

이밖에 輸銀은 設立 이후 業務改善, 事務合理化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특히 業務의 膨脹에 따라 1980년부터 추진해 온 業務電算化는 1984년 10월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985년말 현재 貸出, 事後管理, 計理, 調査 등의 業務와 관련하여 總 361本の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第 2 節 資金調達의 多樣化

1. 資金調達業務의 變遷

概 要

輸銀의 支援資金財源은 韓國輸出入銀行法の 規定에 의거 ①資本金 및 積立金 ②借入金 ③輸出入金融債券 發行의 세 가지로 조달되고 있다.

輸銀法 第4條에 의하면 輸銀의 法定資本金은 5,000억원이며 政府,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韓國外換銀行, 銀行法 第3條 第1項에 의한 金融機關, 輸出業者의 團體와 國際金融機構가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85년말 현재 納入資本金은 4,279억원으로서 政府, 韓國銀行, 韓國外換銀行의 3個 機關에 의해서 납입되었다.

積立金은 輸銀法 第36條 第1號에 의하여 利益金의 20%를 적립하는 法定積立金과 財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는 任意積立金이 있다. 輸銀은 설립 이후 利益金 전액을 적립하여 오고 있으며 1985년말 현재 積立金 總額은 596억원에 이른다.

또한 輸銀은 支援資金調達財源으로서 資金을 國內外에서 차입할 수 있는데 그 근거로서 輸銀法 第19條는 輸銀은 政府,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韓國外換銀行, 銀行法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外國政府, 外國의 金融機關 또는 國際金融機構로부터 資金을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輸銀은 韓國銀行, 韓國外換銀行과 外國金融機關으로부터 長短期資金을 차입하여 왔으며 1985년말 현재 借入金殘額(延拂어음賣却殘額 포함)은 3조 5,209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借入金增大에 따른 財務構造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輸銀法 第23條는 輸銀의 借入金限度를 納入資本金과 積立金 合計額의 10倍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輸銀法 第20條에는 財源調達の 方法으로 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元貨表示 輸出入金融債券의 발행실적은 없고 해외에서 각종 外貨表示 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하여, 1985년말 현재 同發行殘額은 3,699억원에 이르고 있다.

輸銀 설립후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支援規模의 급격한 증대와 더불어 상술한 法的 根據하에 輸銀이 조달한 資金調達規模는 급격히 증대되었고 資金調達源과 調達

通貨의 多邊化가 이루어짐으로써 輸銀의 資金調達業務는 크게 발전되어 왔다.

預受金の 受入業務를 취급하지 않는 輸銀은 資本金과 積立金 이외에는 借入 및 債券發行에 資金調達을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政府의 재정형편상 출자에 제약을 받고 있는 資本金만으로는 延拂輸出支援規模 급증에 따른 資金需要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支援規模가 커질수록 輸銀의 借入依存度는 자연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國內貯蓄率이 낮는데 따른 國內財源의 制約性 때문에 國內借入을 늘리지 못함으로써 海外調達比重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되어 왔다.

海外調達에 있어서는 최근 몇년 동안 資金調達源의 多邊化를 통한 安定的 資金調達基盤을 구축하기 위하여 종래의 銀行團借款 도입 및 延拂어음 매각에 힘쓰는 외에도 새로이 「유로 노트」, 變動金利附債券, 低金利通貨表示 債券의 발행 등 새로운 資金源의 발굴에 주력해 왔다.

資金調達 實績

輸銀의 支援資金調達は 設立 初年度에는 전적으로 資本金 남입과 國民投資基金

〈表 3-2-1〉 財源別・年度別 資金調達實績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國內調達	資本金	65,355	40,000	35,000	4,500	34,250	65,750
	積立金	1,481	2,263	6,312	6,499	19,695	468
	國民投資基金借入	10,000	30,000	29,684	30,000	30,000	75,000
	國內金融機關借入		5,000	15,000			
	韓銀保有外換		16,732	85	964	1,700	1,552
	小計	76,836 (100.0)	93,995 (82.5)	86,081 (62.3)	41,963 (46.4)	85,645 (51.6)	142,770 (31.9)
海外調達	國外金融機關借入 ²⁾				48,400	79,188	142,202
	外資材導入轉貸借款					1,046	22,415
	輸出入金融債券發行 ²⁾						
	延拂어음賣却 ²⁾		19,873	52,189			140,801
小計			19,873 (17.5)	52,189 (37.7)	48,400 (53.6)	80,234 (48.4)	305,418 (68.1)
合計		76,836 (100.0)	113,868 (100.0)	138,270 (100.0)	90,363 (100.0)	165,879 (100.0)	448,188 (100.0)

註: 1) 연도별 新規 資金調達額만을 계상함(引出基準).

2) 1985년말 殘額을 제외하고는 韓國銀行에 「스왑」에 처된 調達額은 포함되지 않음.

차입 등 國內財源에만 의존하였다.

1977년에 들어와서는 資金調達額이 급증하면서 資金調達源을 다양화하게 되었는데 國民投資基金 借入金을 300억원으로 크게 늘리는 동시에 韓國外換銀行으로부터의 借入金, 韓國銀行 保有外換의 受託金 등을 國內財源으로 확보하였으며 海外財源으로서 延拂어음 매각을 시작하였다. 同年중 總調達額은 延拂어음 賣却額 199억원(41백만「달러」)을 포함하여 1,139억원에 달하였다. 1978년말에는 최초로 2억「달러」의 銀行團借款을 도입하였으며(1979~80년에 引出), 1980년에는 外資材導入 轉貸借款의 도입을 개시하여 海外調達財源의 多樣化를 도모하였다.

1979년에 銀行團借款을 인출하면서부터 輸銀 資金週達の 海外依存度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는데 1979년의 海外調達依存度는 53.6%를 기록하였다.

輸銀의 資金調達規模가 1977년에 이어 다시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81년의 일로서 同年중 資本金 納入額은 전년의 343억원에서 658억원으로 倍增되었으며 國民投資基金 借入額은 1977~79년간 매년 300억원의 규모에서 同年중에는 750억원으로 1.5배가 증가되어 國內調達規模도 크게 확대되었다. 同年중 銀行團借款 導入額(引

(단위 : 백만원, %)

1982	1983	1984	1985	合 計		1985年末殘額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74,000	39,000	10,000	60,000	427,855	10.5	427,855	9.4
1,068	707	1,287	19,794	59,574	1.4	59,574	1.3
100,000	175,000	100,000	80,000	659,684	16.2	577,333	12.6
				20,000	0.5	20,000	0.4
1,852	692		1,747	25,324	0.6	1,708	0.1
176,920 (27.3)	215,399 (31.9)	111,287 (14.0)	161,541 (17.3)	1,192,437	29.2	1,086,470	23.8
312,998	23,069	57,918	15,439	679,214	16.6	1,248,477	27.3
37,942	8,219			69,622	1.7	29,900	0.7
		41,370	267,060	308,430	7.6	369,933	8.1
119,574	429,579	582,969	487,693	1,832,678	44.9	1,832,196	40.1
470,514 (72.7)	460,867 (68.1)	682,257 (86.0)	770,192 (82.7)	2,889,944	70.8	3,480,506	76.2
647,434 (100.0)	676,266 (100.0)	793,544 (100.0)	931,733 (100.0)	4,082,381	100.0	4,566,976	100.0

出基準)은 전년의 792억원에서 1,422억원으로 증가되었고 延拂어음 賣却額도 1,408억원으로 급증함으로써 總資金調達規模는 4,482억원에 달하여 전년대비 1.7배가 증가되었다. 또한 同年중 海外調達比重은 이전에 비해 더욱 높아져 68.1%를 차지하였다.

1982년에는 資本金 납입과 銀行團借款 도입이 설립 이후 最高水準을 기록하였으며 資本金 納入額은 740억원, 銀行團借款 導入額은 3,13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同年중 總資金調達額은 전년대비 44.3%가 증가되었다.

1983년 이후 1985년까지는 延拂어음 賣却額이 매년 總資金調達額의 50~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海外調達方式과 調達通貨가 크게 다변화되었다. 즉 1983년중 延拂어음 賣却額은 전년도의 1,196억원에서 4,296억원(565백만 「달러」)으로 급증하였고 同年중에 100억「엔」의 「엔」貨表示 銀行團借款이 도입되었다. 다음 해인 1984년에는 外貨表示 輸出入金融債券을 처음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50억「엔」의 「엔」貨表示債券과 50백만「달러」의 變動金利附債券이 발행되었다. 1985년은 輸出入金融債券 발행이 본격화된 해였는데 同年중 2억「달러」의 變動金利附債券, 1억「도이치 마르크」의 債券, 1억「달러」의 「유로 노트」를 각각 발행, 인출하였으며 50백만「스위스 프랑」의 債券發行契約을 체결하였다.

1979년에 銀行團借款 도입이 처음 시작된 이래 延拂어음 매각, 外貨表示 輸出入金融債券의 발행 등으로 資金調達の 海外依存度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1985년의 경우 總調達額 9,317억원중 海外調達額은 7,702억원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1985년말까지의 資金調達 累計를 보면 總調達額은 4조 824억원으로서 그중 29.2%인 1조 1,924억원이 國內調達이었고 70.8%인 2조 8,899억원이 海外調達이었다. 이를 資金源別로 보면 延拂어음 賣却額, 銀行團借款 導入額, 國民投資基金 借入金이 각각 44.9%, 16.6%, 16.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資本金 및 積立金の 합계는 11.9%를 차지하였다. 1985년말 현재 總調達殘額은 4조 5,670억원으로 國內調達 23.8%, 海外調達 76.2%의 구성비를 나타냈다. 資金源別로는 延拂어음 매각과 銀行團借款 도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延拂어음 賣却殘額은 1조 8,322억원(美「달러」환산액: 2,058백만「달러」)으로서 40.1%의 높은 구성비를 나타냈으며 銀行團借款 導入殘額은 1조 2,485억원(美「달러」환산액: 1,402백만「달러」)로 27.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國民投資基金 借入金殘額이 5,773억원으로 12.6%, 外貨表示 輸出入金融債券 發行殘額이 3,699억원(美「달러」환산액:

415백만「달러」)으로 8.1%을 기록하였다. 이 밖에 外資材導入用 轉貸借款 導入殘額은 299억원 (0.7%), 韓國外換銀行 借入金殘額은 200억원 (0.4%), 外貨受託金殘額은 17억원 (0.1%)에 달하였다.

2. 國內財源의 安定的 調達

資本金 및 積立金

(1) 資本金

輸銀法 第4條와 同法 施行令 第1條의 규정에 의하여 資本金은 政府, 韓國銀行을 비롯한 여러 機關에서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現金으로 납입하며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現物로 납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資本金은 出資對象機關중 政府, 韓國銀行, 韓國外換銀行의 3개 機關이 전액 現金으로 출자하였다.

설립시의 法定資本金은 1,500억원이었으나 延拂輸出支援規模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이듬해인 1977년 12월 輸銀法の 第2次 改正時 法定資本金을 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輸銀 설립시 納入資本金은 553억원이었으나 그 후 資本金 出資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1985년말 현재 納入資本金은 4,279억원에 이르고 있다. 出資機關別로 資本金

〈表 3-2-2〉

資本金 納入現況

(단위 : 백만원, %)

	出資機關				累 計	納入額 總調達額
	政 府	韓國銀行	外換銀行	合 計		
1976	15,355	20,000	30,000	65,355	6,355	85.1
1977	20,000	20,000		40,000	105,355	35.1
1978	5,000		30,000	35,000	140,355	25.3
1979	4,500			4,500	144,855	5.0
1980	4,250	30,000		34,250	179,105	20.6
1981	15,750	50,000		65,750	244,855	13.5
1982	19,000		55,000	74,000	318,855	11.4
1983	19,000	20,000		39,000	357,855	8.5
1984	10,000			10,000	367,855	1.3
1985	30,000	30,000		60,000	427,855	6.4
合 計	142,855 (33.4)	170,000 (39.7)	115,000 (26.9)	427,855 (100.0)		

納入狀況을 보면, 먼저 政府는 설립 당시 154억원을 출자하고 이후 매년 꾸준히 出資를 지속하여 1985년말 현재 납입총액은 1,429억원에 이르러 總納入資本金의 33.4%를 차지하였다. 또한 韓國銀行은 설립 당시 200억원을 출자하고 그 이듬해에 다시 200억원을 출자한 이후 1980~85년중 다시 1,300억원을 출자, 총액 1,700억원을 출자함으로써 1985년말 현재 納入資本金의 39.7%를 차지하였다. 한편 韓國外換銀行은 設立年度에 300억원을 그리고 1978년 및 1982년에 각각 300억원, 550억원을 출자하여 합계 1,150억원을 출자함으로써 전체의 26.9%에 이르렀다.

輸銀의 財源調達方法으로서 海外借入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는 資本金이 輸銀의 중요한 財源이었다. 1976년중에는 資本金 納入額이 總調達額의 85.1%에 이르렀으며 1977년, 1978년에도 각각 35.1%, 25.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調達財源이 다양화되어 國內外借入이 증가됨에 따라 資本金의 비중은 점차 낮아져 1982년 이후에는 매년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또한 國內外借入規模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資本金 納入額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여 資産總額중 資本金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6년의 80.9%에서 1985년에는 9.4%로 크게 낮아졌다.

한편 輸銀은 1985년말 현재 資本金 納入總額이 法定資本金에 근접하고 있어 1986년중 輸銀法 改正으로 法定資本金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2) 積立金

輸銀 설립 이후 발생한 利益金은 전액 積立金으로 유보되어 業務活動의 財源으

〈表 3-2-3〉

積立金 積立現況

(단위 : 백만원)

	法定積立金	任意積立金	總積立金	累 計
1976(第 1 期)	276	1,205	1,481	1,481
1977(第 2 期)	486	1,777	2,263	3,744
1978(第 3 期)	1,354	4,958	6,312	10,056
1979(第 4 期)	1,446	5,053	6,499	16,555
1980(第 5 期)	4,383	15,312	19,695	36,250
1981(第 6 期)	103	365	468	36,718
1982(第 7 期)	257	811	1,068	37,786
1983(第 8 期)	192	515	707	38,493
1984(第 9 期)	257	1,030	1,287	39,780
1985(第10期)	3,959	15,835	19,794	59,574
合 計	12,713	46,861	59,574	

로 충당되고 있다. 輸銀法 第36條 第1號에 의하면 利益剩餘金중 20%는 의무적으로 적립(法定積立金)하고 나머지는 配當을 실시한 후 財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아 적립(任意積立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79년 運營委員會에서 法定積立金과 任意積立金의 合計額이 納入資本金에 달할 때까지 配當을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함으로써 利益金 전액을 배당없이 적립하여 自己資本의 充實化를 기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었다.

輸銀은 1976년 第1期 決算 이후 매년 純利益을 실현하여 第3期 決算時(1978년)에는 積立金 累計가 100억원을 상회하였으며 1985년 第10期 決算후 利益金處理 결과, 積立金 累計는 596억원(法定積立金 127억원, 任意積立金 469억원)에 달하였다. 同積立金 累計額은 1985년말까지의 輸銀 總資金調達額의 1.4%를 차지하였다. 특히 1980년도(第5期)와 1985년도(第10期)에는 각각 197억원, 198억원의 큰 純利益(納稅後)을 실현하여 積立金 증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積立金의 증가는 資本金의 증가와 함께 自己資本 充實化에 기여해 왔으나, 自己資本의 증가가 借入額의 增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自己資本比率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1985년말 현재 同比率은 10.7%를 기록하였다.

國民投資基金 借入

國民投資基金法 第16條 第4項에 의하면 輸銀은 輸銀法 第18條 第1號(輸出資金貸出), 第3號(直接貸出 및 轉貸資金貸出) 및 第4號(重要物資輸入資金貸出)의 규정에 의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同基金을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表 3-2-4〉

年度別 國民投資基金 貸下現況

(단위: 백만원, %)

	總貸下額 (A)	對輸銀貸下額 (B)	構成比 (B/A)	基金借入額 總調達額
1976	178,542	10,000	5.6	13.0
1977	240,738	30,000	12.5	26.3
1978	380,299	29,684	7.8	21.5
1979	439,810	30,000	6.8	33.2
1980	438,415	30,000	6.8	18.1
1981	623,700	75,000	12.0	16.7
1982	730,000	100,000	13.7	15.4
1983	732,590	175,000	23.5	25.9
1984	498,708	100,000	20.1	12.6
1985	464,417	80,000	17.2	8.6

輸銀은 設立 初年度부터 同規定에 의하여 國民投資基金을 차입하여 輸出資金貸出 財源(輸銀法 第18條 第3號 및 第4號의 業務를 위한 國民投資基金 사용실적은 없음)에 充當하여 왔다.

同基金은 가장 안정된 國內借入源으로서 延拂輸出資金支援에 큰 몫을 차지하였으며 海外借入金과는 달리 收支改善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 즉 國民投資基金의 借入條件을 보면 金利는 輸銀 해당 貸出金利에 1%를 차감한 金利를 적용하며, 期間 등 餘他條件은 輸銀法, 同法 施行令 및 業務方法書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國民投資基金의 이러한 유리한 借入條件 때문에 同基金의 차입은 調達費用이 貸出金利를 크게 상회하여 손실을 경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연도별 國民投資基金 借入實績을 보면, 1976년에는 100억원을 차입하여 總資金 調達額의 13.0%를 차지하였고 이듬해에는 300억원을 차입하여 同比重이 26.3%로 크게 높아졌다. 이후 1980년까지는 4년간 같은 규모의 차입수준을 유지하였다. 1981년중 750억원으로 급증한 것을 계기로 1983년까지 계속 증액되었는데 1983년중 國民投資基金 借入額은 1,750억원에 달하여 總資金 調達額의 25.9%를 차지하였다. 이후 政府의 國民投資基金 축소방침에 따라 借入規模는 1984년에 1,000억원, 1985년에는 800억원으로 다시 감소되었다.

한편 支援規模의 확대에 따른 國民投資基金 借入規模의 증대와 더불어 韓國銀行의 國民投資基金 總貸下額에서 차지하는 對輸銀 貸下額의 비중도 동시에 증대되어 왔다. 1976년부터 1982년까지는 同比重이 10% 내외이었으나 1983년에는 23.5%로 크게 증대되었고 1984년, 1985년에는 각각 20.1%, 17.2%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國民投資基金의 部門別 貸下內容을 보면 國產機械購入, 計劃造船 등 重化學工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1985년중 同部門에 대한 貸下構成比는

〈表 3-2-5〉

部門別 國民投資基金 貸下現況

(단위: 백만원, %)

	1985년중 貸下額		1985년말 貸下殘額	
	金 額	構成比	金 額	構成比
重化學工業	319,417	68.8	1,771,654	61.0
食糧増産事業	25,000	5.4	139,312	4.8
電氣業	40,000	8.6	492,400	16.9
새마을工場			437	0.0
延拂輸出(輸銀專擔)	80,000	17.2	502,578	17.3
合 計	464,417	100.0	2,906,381	100.0

68.8%, 그리고 1985년말 貸下殘額으로 볼 때는 61.0%의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1985년중 輸銀에 대한 貸下額 比重은 總貸下額의 17.2%, 1985년말 貸下殘額 기준으로는 17.3%를 차지하여 두번째로 높은 貸下比重을 나타냈다.

國民投資基金은 輸銀의 중요한 國內借入源이고 전체 國民投資基金 운용면에서도 延拂輸出支援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여 왔으나 政策金融 縮小政策에 따라 國民投資基金 貸下總額은 1983년의 7,326억원을 最高水準으로 하여 그 규모가 계속 줄어들어 1985년에는 4,644억원에 머물렀다.

其他 國內資金 調達

輸銀의 國內調達財源으로는 상술한 資本金 및 積立金, 國民投資基金 借入金 이외에도 韓國銀行으로부터의 外貨受託金, 國內金融機關 長期借入金 및 國內金融機關으로부터의 外貨資金 短期借入 등이 있다. 이 밖에 法的 根據는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발행실적이 없는 元貨表示 輸出入金融債券이 있다.

韓國銀行으로부터의 外貨受託金은 韓國銀行이 보유, 운영하고 있는 外貨(美「달러」貨에 한함)를 輸銀이 수탁받아(輸銀이외의 外國換銀行에 대한 一般預託과 輸銀 延拂輸出支援用을 위한 特別預託이 있음) 운용하는 外貨資金으로서 현재 輸銀에 대한 預託限度는 50백만「달러」이며 用途는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轉貸資金貸出用으로 제한되어 있다. 預託利率은 「리보」(libor)를 적용하며 期間은 件別로 3년 이내이다.

당초에는 同受託金の 사용이 延拂輸出資金貸出에도 허용되어 輸銀 설립 이듬해인 1977년에는 167억원(34.6백만「달러」)을 사용, 同年度 總資金調達額의 10.8%를 차지하는 중요한 資金源이었다. 그러나 다음 해부터 借入實績이 극히 부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輸出資金貸出用에 있어서는 政府 保有外換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輸銀이 직접 海外市場에서 資金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결국 1979년부터는 外國金融機關에의 轉貸資金貸出에만 同受託金を 사용토록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轉貸資金 貸出實績이 줄어들면서 同資金의 사용실적도 부진했는데 1985년말까지 同資金의 總使用額 累計는 45백만「달러」, 1985년말 未償還殘額은 1,919천「달러」에 달하였다.

國內金融機關으로부터의 元貨借入에 있어서는 설립초기 韓國銀行과 韓國外換銀行으로부터의 借入分은 곧 출자 전환되었으며 현재에는 韓國外換銀行으로부터의 借入金 200억원이 남아 있다. 同借入金은 1977년에 50억원, 1978년에 150억원(3회

分割)을 각각 차입한 것으로 당초 期間은 長期, 利率은 연 5%이었으나 1983년 3월에 條件을 바꾸어 期間은 無期限, 利率은 연 3%로 개선되었다. 同借入金은 과거 韓國銀行이 韓國外換銀行에 납입하였던 出資金중에서 韓銀 설립시 韓國外換銀行이 출자한 300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이다.

여타 國內借入金으로는 國內金融機關(주로 外國銀行 國內支店)으로부터의 外貨短期借入金이 있다. 同借入金은 資金調達과 執行 사이의 격차를 조절하여 所要資金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 이외에 同借入金은 加算金利가 中長期借入金보다 낮고 附帶費用도 없어 借入費用이 절감되므로 收支管理를 위해 適正水準의 借入殘額을 유지해 왔다. 韓銀은 현재 30餘個의 國內外金融機關과 함께 약 4억「달러」의 「크레디트 라인」을 설정하여 놓고 수시로 차입하고 있다.

3. 海外財源의 比重 增大

銀行團借款 導入

韓銀 設立후 선박을 비롯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韓銀의 貸出資金需要도 동시에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國家財政의 제약과 國內資本市場의 협소 등으로 韓銀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의 자금을 國內에서만 조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필요한 자금을 장기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海外金融市場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지난 10년 동안 銀行團借款 방식에 의한 外貨資金 조달은 모두 9차례로서 두 차례의 日本「엔」貨表示借款과 7차례의 美「달러」貨表示借款에 의해 각각 400억「엔」과 17억「달러」를 차입하였다.

韓銀이 銀行團借款 도입을 위해 처음으로 국제금융시장에 진출한 것은 1978년으로서 美國의 First Chicago Asia Ltd.를 비롯한 6個 銀行을 幹事銀行으로 하고 總 46個 銀行으로부터 2억「달러」규모의 銀行團借款을 도입하였다. 同借款에는 「오일 머니」를 투자하기 위해 中東系 銀行이 대거 참여한 것이 특기할 만하며 당시까지 우리 나라가 도입한 銀行團借款중 가장 유리한 조건의 것이었다. 즉 滿期 10년에 최초 2년간은 「런던」銀行間貸出金利인 「리보」에 5/8%의 加算金利를 추가하고 잔여기간은 「리보」+3/4%로서 國內餘他銀行의 차입조건보다도 金利 및 手數料 등에서 각각 1/16%「포인트」 및 1/4%「포인트」만큼 유리하게 도입되었다. 또한 우수한 國際銀行이 대거 참여, 3억 7천만「달러」나 초과 응모되어 國內外金融

최초의 2억「달러」銀行團借款 契約 체결
(1978. 12. 7)



界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초의 銀行團借款을 성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輸銀은 資金調達源을 해외금융시장으로 확대하고 보다 유리한 借入條件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第2次 銀行團借款 도입은 1981년 6월에 행해졌는데 同借款에는 美國의 Chemical Asia Ltd.를 비롯하여 8個 銀行이 主幹事銀行으로 참가하였으며 總 46個 금융기관으로 銀行團을 구성하여 2억「달러」의 外資를 도입하였다. 同借款團 구성에는 세계각국의 一流銀行이 고루 참여하였으며(北美 2個國 13個 銀行, 유럽 9個國 15個 銀行, 아시아·태평양 14個 銀行 및 中東 4個 銀行) 應募額이 당초목표보다 약 5천만「달러」나 초과되었다.

이후 國際金融市場에서 韓國의 信認度가 높아지면서 銀行團借款 도입은 市場動向調査段階부터 좋은 반응을 보여 종전보다 借入規模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美國, 英國, 日本, 프랑스 등 世界 有數銀行들이 輸銀借款의 주선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주선의사를 표명한 모든 銀行이 借入金利率을 경쟁적으로 낮게 제의하여 借入金利率은 加算金利가 종전의 5/8%~3/4% 보다 낮아진 「리보」+1/2%로 정해졌으며 管理手數料도 종전의 7/8%에서 5/8%로 개선되었다.

1982년 이후에는 매년 3억「달러」씩의 銀行團借款을 도입했는데 借入條件면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中南美諸國의 對外債務不履行事態가 발생하고 일부 非產油開途國의 外債「리스크줄링」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위축되면서 종전의 借入者市場에서 貸出者市場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1983년중 우리 나라의 海外借入은 導入條件보다 導入可能規模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輸銀의 경우도 금융시장 여건의 악화에 따라 借入條件이 전년보다 다소 불리해졌으며 「유로」市場에서만 조달되던 것이 美國內市場에서도 조달되도록 美

國內優待金利(prime rate)가 적용되었다. 1983년 6월에 체결된 銀行團借款에서는 美國內優待金利貸出분이 포함되어 金融市場與件이 악화된 데에도 불구하고 美國系銀行이 다수 참여하였으며 英國, 西獨, 日本, 프랑스, 濠洲系 금융기관까지 지역적으로 골고루 참여하여 參加銀行의 多邊化를 이루었다. 또한 짧은 기간내에 借款團構成이 완료되어 國際金融市場에서 우리 나라의 對外信認度가 높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다.

1983년중에는 6월의 3억「달러」借款導入에 이어 7월에는 100억「엔」규모의 「엔」貨表示 銀行團借款을 처음 도입하였다. 「엔」貨表示 銀行團借款은 매 6개월씩 適用金利가 변동되는 變動金利部分(floating tranche)과 매 5년마다 適用金利가 바뀌는 固定金利部分(fixed tranche)으로 각각 절반씩 나누어 조달되었다.

1984년에도 3억「달러」규모의 銀行團借款의 도입이 추진되었는데 開發途上國의 外債問題가 절정에 이룸에 따라 美國系 金融機關의 收支惡化로 新規 資金供與를 꺼리는 美國系 銀行의 참여가 부진하였다. 이에 반해 日本系 銀行이 계속해서 적극적인 참여반응을 보였으며 유럽系 銀行의 참여비중도 높아졌다. 1984년의 銀行團借款도 「유로」市場 調達部分과 美國內市場 調達部分이 혼합되었다. 「유로」市場 調達部分은 基準金利를 「리보」와 「리비드」(libid)금리의 중간수준인 「리민」(limean)으로 정하여 전통적인 銀行借款 기준금리인 「리보」에 비하여 연간 약 1/16%「포인트」정도의 차입비용을 절감하였다. 또한 美國內市場 調達部分에 대해서도 預金證書利率 기준으로 上限을 제한함으로써 불리한金利의 적용가능성을 배제하였다. 특히 1984년도 銀行團借款에서는 複數通貨借入條件을 삽입하여 종전의 美「달러」貨 차입일변도에서 美「달러」貨를 포함한 기타 國際通貨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借入者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其他通貨로 변경, 운용할 수 있는 신축성을 부여키 위한 것이다.

1985년 1월에 들어 輸銀으로서 처음으로 私募方式에 의한 銀行借款 1억「달러」의 도입계약을 Chase Manhattan Bank 와 체결하였다. 이어 9월에는 3억「달러」규모의 導入契約을 40個 銀行과 체결하였다. 이 借款에는 新種 借款技法이라 할 수 있는 讓渡貸出證書(transferable loan certificate) 발행조건을 포함시킴으로써 자금공여자로 하여금 銀行團借款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또한 美國內市場 調達部分(prime loan)을 선호해 왔던 美國系 銀行들이 「유로」市場 調達部分(libor loan)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유로」市場에서만 전액 조달하게 되었다.

한편 10월에는 日本으로부터 300억「엔」의 「엔」貨表示 銀行團借款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借款도 매 6개월마다 金利가 바뀌는 變動金利部分과 5년후 金利가 재조정되는 固定金利部分으로 나누어 조달되었다. 借入費用면에서도 1983년의 「엔」貨表示借款보다 규모가 큰 데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매우 유리하게 도입되었으며 日本系 金融機關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점이 특기할 만하다.

保有延拂어음의 賣却

지난 10년동안 外貨資金 調達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 保有延拂어음의 賣却을 통한 外貨調達이었다. 保有延拂어음의 賣却方式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나라 輸出者가 해외에 延拂로 수출할 경우 그에 대한 支給約束으로 어음을 수령하며 동어음에 대해 一流銀行의 支給保證을 받는다. 輸銀은 輸出者에게 金融을 제공하면서 輸入者가 발행한 約束어음과 一流銀行의 支給保證을 貸出擔保로서 취득하며, 이 延拂어음중 일부를 國際金融市場에 매각 처분하여 자금화하게 된다. 延拂어음의 賣却은 순수한 의미의 海外借入과는 구분되나 관련 貸出金の 早期回收로 輸銀 지원자금의 回轉率 제고와 長期 低利의 安定的 財源 확보라는 점에서 外貨資金調達の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輸銀으로부터 金融支援을 받은 國內 輸出業者의 입장에서 볼 때는 輸銀融資金を 조기 상환함으로써 財務構造를 개선하여 國際競爭力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保有延拂어음의 賣却方式에 의한 外貨調達은 우리 나라의 對外債務를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필요한 外資를 적기에 조달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國際收支를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保有延拂어음 賣却方式에 의한 外資調達은 中長期延拂金融 支援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輸銀業務의 特殊性을 충분히 감안한 外貨資金調達方式으로서 輸銀 고유의 外貨資金調達方式의 하나이다.

한편 保有延拂어음의 賣却方式은 利子支給方式에 따라 利差精算方式과 割引方式으로 구분되며, 市場進出方式에 따라 雙方賣却方式(bilateral)과 借款團構成 賣却方式(syndication)으로 나뉘어진다.

輸銀은 이제까지 割引方式으로는 매각하지 않고 利差精算方式에 의해 어음買入者와 輸銀간에 賣却金利와 어음金利의 差를 精算 授受하고 있다. 최초의 保有延拂어음 賣却은 1977년 6월에 행해졌는데 149백만「달러」상당액을 Scandinavian Bank Ltd.를 代理人으로 한 借款團에 매각하였다. 이 때의 賣却條件은 金利가

「리보」+1 1/8~1 1/4 %, 引出手數料 1/8 % flat 등이었다.

한편, 1981년 6월에는 두번째로 保有延拂어음 201백만「달러」를 Wells Fargo Bank, N.A. 를 비롯한 銀行團에 매각하였다. 賣却金利는 1977년의 賣却時보다 크게 개선된 「리보」+3/8 % 였으며 約定手數料와 引出手數料를 없애는 대신 소액의 代理人手數料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 들어 延拂輸出 支援規模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外貨資金所要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1982년에 160백만「달러」의 保有延拂어음을 매각한 이후 계속 賣却規模를 늘려 왔다. 이 때부터 輸銀의 知名度 및 信用度가 國際金融市場에 널리 인식됨에 따라 종래의 借款團構成 方式에서 벗어나 支給保證銀行에게 매각하는 個別賣却 方式을 채택하여 賣却節次를 간소화하고 賣却條件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1983년 이후에는 延拂輸出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船舶輸出履行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賣却 可能性이 높은 世界一流銀行保證어음을 다량 취득하게 되어 延拂輸出金融 지원에 소요되는 財源確保는 물론 우리 나라의 國際收支를 개선하기 위한 資金을 조달하기 위하여 保有延拂어음 賣却契約額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1983년에는 한 해만도 743백만「달러」를 매각한 바 있다. 이어 1984년에는 862백만「달러」, 1985년에는 574백만「달러」에 달하는 保有延拂어음을 非邇求條件으로 「홍콩」, 「런던」 등 國際金融市場에서 매각하게 되었다.

이로써 1977년 6월 國際金融市場에서 최초로 保有延拂어음을 매각한 이래 1985년말 현재 總 2,689백만「달러」의 外資를 保有延拂어음 賣却方式에 의해 조달하게 되었다.

한편 1985년말에 매각한 延拂어음의 賣却條件은 金利가 연 「리보」+3/16 %, 附帶費用이 1/4 % flat 으로 최초 매각시보다 그 條件이 크게 개선되었다.

轉貸借款 導入

外貨調達源의 多邊화와 보다 유리한 조건의 長期 安定的 外貨財源의 확보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온 輸銀은 그 일환으로 외국의 公的輸出金融機關이 우리 나라의 資本財 輸入者에게 공여하는 購買者信用을 주선, 도입하여 이를 국내의 輸入者에게 전대해 주는 轉貸借款을 도입하게 되었다.

輸銀이 借主가 되어 轉貸借款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國內 輸入者가 借主가 될 경우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첫째, 公的輸出金融機

關인 輸銀이 借主가 되면 國內의 輸入者가 借主가 될 경우에 필요로 하는 銀行支給保證義務가 면제되어 輸入者인 借主의 借入「코스트」가 절감되는 利點이 있다. 둘째, 輸入者가 個別輸入契約 締結時마다 政府로부터 借款導入承認을 얻는 것보다는 輸銀이 일괄 승인을 얻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며 동시에 借款을 도입할 능력이 없는 國內 輸入者들도 輸銀을 통하여 同資金을 이용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輸銀은 지난 1980년 스웨덴의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SEB)로부터 최초로 原資材 延拂輸入代錢 決濟用 轉貸借款을 도입한 이후 1985년 12월 31일 현재 덴마크, 노르웨이, 英國, 프랑스, 西獨 등 6個國의 公的輸出金融機關으로부터 총 254백만「달러」에 달하는 轉貸用「크레디트 라인」을 확보하여 이중 약 95백만「달러」를 인출, 사용하였다. 轉貸借款資金은 銀行借款에 비하여 借入「코스트」가 상대적으로 낮아 資金負擔 輕減 및 財源運用의 效率性을 기할 수 있었으며 輸銀支援「프로젝트」의 所要外資材 輸入과 관련하여 現金輸入을 延拂決濟로 전환함으로써 國際收支 개선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외에도 日本등 特定地域에 편중되어 있는 外資材 輸入先의 多邊化를 기함과 동시에 船舶延拂輸出資金의 適期支援를 통한 輸出 증대 및 外貨稼得效果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최초의 轉貸借款 導入契約은 스웨덴의 輸出金融機關인 SEB 및 Östgötabanken, Linköping 과 이루어졌다. 1980년 8월 20일 「스톡홀름」에서 SEB 를 代理人으로 하여 체결된 同轉貸借款은 輸銀이 1979년 12월 31일 융자승인한 大宇造船의 對노르웨이 延拂輸出用 「케미칼 탱커」(21,500 DWT級) 4隻 建造에 소요되는 機資材 輸入決濟資金의 融資를 위해 도입되었는데, 主要 導入條件을 보면 契約金額 18.1 백만「달러」, 借入金利가 7.65 % 로 당시 「리보」가 17~18 %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였으며 融資期間 5년으로 매 6개월 균등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었다.

輸銀은 SEB 로부터의 轉貸借款 導入에 이어 大宇造船의 對노르웨이 「케미칼 탱커」 4隻(1979년 12월 31일자 融資承認)의 所要外資材 輸入決濟資金用으로 덴마크의 Den Danske Bank (DDB)와도 3백만「달러」의 轉貸借款 導入契約을 1980년 9월 30일 「런던」에서 체결하였다. 同資金은 Aalborg Vaerft A/S 를 비롯한 덴마크의 輸出者로부터 「케미칼 탱커」 建造用 外資材 및 用役 輸入決濟資金으로 사용되었다.

1980년 8월 및 9월의 SEB 와 DDB 로부터의 轉貸借款 導入 이외에도 輸銀은 노르웨이의 Eksportfinans 와 2억 「노르웨이 크로네」에 상당하는 美「달러」貨의 轉貸

借款 導入契約을 1980년 12월 15일 체결하였다. 同借款의 導入條件을 보면 個別融資期間(3~10년)別로 상이한(7.77~7.83%) 金利가 적용되었으며 OECD「가이드 라인」金利에 따라 변동되도록 되어 있었다. 同資金이 前記 SEB, DDB의 轉貸借款과 다른 점은 前者가 大字造船의 「케미칼 탱커」 건조등 外資材 導入을 위한 「프로젝트 크레디트 라인」이었던 데에 반해 Eksportfinans 轉貸借款은 同資金의 用途가 特定「프로젝트」에 한정되지 않는 一般「크레디트 라인」이라는 점이였다. 同借款은 「크레디트 라인」이 거의 소진되어 감에 따라 향후 外資材 輸入豫想을 감안하여 1982년 5월 11일자로 未消盡部分의 個別融資 承認期間을 1983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함과 동시에 추가로 2억「노르웨이 크로네」를 增額 도입하였다.

한편 스웨덴으로부터의 機資材導入으로 SEB 1次 18.1백만「달러」의 「크레디트 라인」이 거의 소진되자 SEB와 2次로 20백만「달러」의 「크레디트 라인」을 설정하였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1次가 引出期日을 1982년 2월 1일까지로 한정한 데 비하여 2次는 契約滿期日이 매년 1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점이였다.

또한 輸銀支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英國으로부터 수입되는 外資材의 輸入決濟資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英國의 International Westminster Bank Ltd. (NATWEST)로부터 20백만「달러」의 轉貸借款 導入契約을 1981년 10월 13일 체결하였다. 그 후 NATWEST 1次分중 19.2백만「달러」가 소진됨에 따라 NATWEST와 두번째 20백만「달러」의 轉貸借款 導入協定이 1982년 12월 15일 체결되었으나 引出時限인 1984년 6월 15일까지 使用實績이 없었다.

北歐諸國 및 英國으로부터의 轉貸借款 導入과 더불어 종래 一覽拂決濟方式으로 수입하던 프랑스產 機資材를 2~7년 期間의 延拂償還條件으로 결제하기 위하여 1982년 3월에는 프랑스의 Société Générale로부터 1억「프랑스 프랑」의 轉貸借款을 도입하였다. 同借款 導入條件을 보면 償還期間 2~7년으로 金利는 프랑스當局이 輸出金融에 적용하는 金利가 적용되었다. 同資金은 大字造船이 美國의 Dual Offshore Co.가 발주한 昇降式 石油試錐船 2隻을 건조하기 위하여 프랑스產 機資材를 도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同資金은 프랑스當局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프랑스國籍의 船舶을 이용하는 運送인 경우와 프랑스에서 영업중인 保險會社에 부보하는 경우에만 融資가 가능하였다. 여타 轉貸借款의 融資表示通貨가 美「달러」貨이었던 데에 반해 同借款은 「프랑스 프랑」貨라는 점도 특이하였다. 그 후 1984년 3월 18일자로 融資承認期間이 만료됨에 따라 同資金의 融資承認 有效期間을 1986년 3월 18일까지로 연장하였다. 同融資 承認期間延長에 있어서는 未使用殘額의 「크레

디트 라인」 61.2백만 「프랑스 프랑」을 25백만 「프랑스 프랑」으로 축소 조정했는데 同資金은 약 38.8백만 「프랑스 프랑」이 사용되었으며 1985년말 현재의 未償還殘額은 약 17.8백만 「프랑스 프랑」이었다.

그 후 덴마크로부터 도입되는 資本財 輸入代錢의 결제를 위하여 1982년 5월에는 DDB 와 다시 10백만 「달러」의 「크레디트 라인」 設定契約을 체결하였으며 2백만 「달러」를 인출,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外資材 輸入先의 多邊化를 위해 西獨의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KfW)와 2억 「도이치 마르크」貨의 「크레디트 라인」을 설정하는 契約을 1985년 8월에 체결한 바 있다. 同協定에 따른 轉貸借款資金은 西獨으로부터 수입되는 船舶建造用 資本財 및 用役의 輸入代錢決濟用으로 사용되며, 이에 적용되는 金利는 個別融資契約時 OECD 「가이드라인」의 最低金利와 KfW의 調達金利에 0.5%를 가산한 金利중 輸銀이 선택하는 金利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1980~82년에 주로 契約이 체결되어 1980~83년에 引出이 이루어진 轉貸借款은 1985년말 현재 약 95백만 「달러」상당이 사용되었으며, 未償還殘額은 약 34백만 「달러」이다.

外貨表示 輸出入金融債券 發行

輸銀은 設立 이래 資金需要의 지속적인 확대로 外貨資金調達規模가 크게 늘어났으나 1983년까지의 外資調達은 주로 銀行團借款과 延拂어음 賣却 등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서 國際資本市場이 활발해짐에 따라 輸銀은 直接金融方式의 外貨表示 輸出入金融債券(이하 債券)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外資調達源을 개발하고 보다 유리한 條件으로 外資를 도입하며 調達方法의 多樣化및 市場多邊化를 기하게 되었다.

國際資本市場에 진출하여 債券發行을 통해 外資를 조달하는 것은 銀行團借款등의 間接金融方式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意義를 지닌다.

첫째, 銀行團借款등 一般金融市場에만 의존하는 借入者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資金調達市場을 갖기 어려운 반면 債券市場에 잘 알려진 借入者는 다른 借入方法을 이용한 國際金融市場 접근이 용이하다. 따라서 債券發行이 성공적으로 끝나 債券市場에서의 信認도와 知名度를 얻게 되면 다른 형태의 借入에 있어서도 借入改善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資本市場에서의 債券發行은 광범위한 投資者에 대한 弘報效果가 있다. 특

히 公募方式에 의한 債券發行의 경우는 發行債券이 主要 國際金融市場의 證券去來所에 상장되어 流通市場에서의 去來內容이 新聞등에 계속 공개됨으로써 發行國과 發行者的 對外信認도가 제고되며 發行者的 事業活動에 대한 國際的 弘報效果를 갖는다.

세째, 債券發行에 의한 資金調達은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借入手數料가 다소 높고 節次가 복잡하지만 長期 安定的으로 資金을 조달할 수 있고 銀行團借款에 비해 借入金利率이 낮아 總借入費用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國際信認도가 낮은 國家 또는 借入者의 경우는 國際資本市場에서의 債券消化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借入費用을 부담해야만 債券發行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1970년대까지는 先進工業國의 政府, 公共機關이나 國際的 知名度가 높은 一流企業體, 銀行, 國際機構 등이 國際資本市場의 주된 起債者였다.

輸銀은 設立 이래 수차에 걸친 銀行團借款 도입과 延拂어음 매각 등으로 國際金融市場에서 信認度を 인정받았고 또한 國際金融經驗이 축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우수한 金融機關들로부터 債券發行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3년부터 債券發行의 가능성을 타진해 왔으며 1984년 1월 東京 資本市場에서 최초로 50억「엔」의 「엔」貨債券 발행에 성공하였다. 이후 1985년말까지 「유로」債市場에서 3件의 變動金利附債券과 西獨시장에서의 「도이치 마르크」貨債券, 스위스시장에서의 「스위스 프랑」貨債券 등 總 7件에 달하는 債券을 발행하였는바 債券發行은 銀行團借款 도입 및 延拂어음 매각과 함께 輸銀의 중요한 外貨資金 調達源이 되었다.

(1) 「엔」貨債券 發行

輸銀이 債券發行을 위해 처음으로 진출한 곳은 東京 資本市場이었다. 日本 「엔」貨債券市場은 1970년 ADB가 60억「엔」을 기채한 이래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특히 1980년 이후 일본의 막대한 貿易收支黑字와 「엔」貨의 低金利, 日本內 金融需要 부진 등으로 인해 급성장하여 1983년중 總 73件, 8,990억「엔」의 發行實績을 기록하였다. 海外發行者는 「엔」貨의 低金利 혜택뿐 아니라 同市場에서 發行實績을 쌓아 知名度를 높이는 것이 새로운 資金調達市場의 확보와 資金調達方法의 多樣化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엔」貨債券 발행을 희망하였다. 한편, 輸銀으로서는 「엔」貨가 延拂輸出支援을 위한 所要資金중 美「달러」貨 다음으로 큰 需要를 갖고 있어 「엔」貨資金 조달이 크게 요구되었었다. 또한 韓國産業銀行, 輸國外換銀行

등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 이미 「엔」貨債券을 발행한 경험이 있고 輸銀 역시 銀行團借款 導入 등으로 日本의 主要 金融機關과 밀접한 교류를 유지해온 터라 東京 資本市場은 최초의 債券發行을 위해 적합한 市場이었다.

輸銀은 우선 發行規模를 50억「엔」으로 정하고 同債券發行을 주선할 主幹事機關 선정에 착수하였다. 主幹事機關은 債券發行에 관한 市場調査, 發行條件案, 諸契約書 작성 등 準備節次交渉을 發行者를 대신하여 또는 發行者와 협의하여 행함으로써 債券發行의 成敗에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主幹事機關 선정은 債券發行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輸銀은 日本의 4大 證券會社の 하나로 債券周旋 經驗이 많고 오랫동안 輸銀의 外貨借入에 참여해 온 「야마이찌」證券會社를 同債券發行의 主幹事機關으로 선정하였다. 이어 日本長期信用銀行, 第一勸業銀行 등 7個의 日本金融機關으로 幹事團을 구성하였다.

發行方法에 있어서는 최초의 債券發行인 점을 감안하여 發行節次가 간단하고 發行條件이 신축적인 私募方法을 택하였다.

發行金利 및 價格은 당시의 市況 및 發行者의 信認度에 따라 결정되는데 發行計劃 樹立 당시인 1983년 10월 日本 資本市場은 美「달러」貨에 대한 「엔」貨 換率이 強勢로 반전하여 투자분위기가 회복되고 日本 金融市場의 基準金利가 되고 있는 長期優待金利(LTPR)가 8.2%(1983. 10. 28)로 종전보다 0.2% 「포인트」 하락하는 등 債券發行 與件이 호조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發行市場의 유리한 상황과 이미 「엔」借款 도입 등으로 輸銀의 信認度가 높아진 데 힘입어 同債券의 額面金利(coupon rate)는 1983년 9월에 「엔」貨債券을 발행한 서울市廳과 부산市廳의 額面金利 8.7%보다 0.3% 「포인트」 낮은 8.4%로 결정되었다. 發行價格은 額面金利의 하락으로 額面價發行에서 0.1% 「포인트」 할인한 99.9%였는바 割引率을 감안하더라도 同債券의 發行條件은 최초의 債券發行으로서는 매우 유리한 것이었다.

署名式은 1984년 1월 24일 東京에서 거행되었으며 輸銀側과 20餘名の 幹事團側代表들이 서명에 참가하였다.

「엔」貨債券發行은 輸銀 최초의 債券發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을 뿐만 아니라 美「달러」貨 일변도에서 탈피함으로써 借入通貨의 多邊化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2) 變動金利附債券 發行

「엔」貨債券 발행을 성공리에 마친 輸銀은 國際間 中長期資本移動에 있어서 「유로」金融市場과 더불어 2大 主流를 이루고 있는 「유로」債市場에 진출, 1984년 11월

50백만「달러」의 變動金利附債券(floating rate notes ; FRN)을 발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國際資本市場에 진출하게 되었다.

FRN은 문자 그대로 額面金利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主要 國際金融市場에서 형성되고 있는 金利에 연동되어 정기적으로 변경되는 中長期債券이다. 즉, 額面金利가 매 6개월 혹은 매 3개월마다 特定金利에 일정한 加算金利를 더하여 당해 利子期間에 적용되는데 주로 金利는 당해 利子期間 開始 2營業日前 오전 11時(「런던」시간) 현재의 「런던」銀行間 6개월 또는 3개월의 預置(bid) 또는 貸出(offer) 金利로 결정된다.

輸銀은 3件 250백만「달러」의 FRN을 발행하였는바 發行順序別로 發行條件 및 主要 契約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1次 FRN發行은 「유로」債市場의 첫 진출로 同市場의 광범위한 投資家에의 접근을 통한 輸銀의 知名度 제고 및 향후 同市場 進出에 대비한 基盤 構成에 큰 의의가 있었다.

發行規模는 FRN의 첫 발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유로」債市場에서는 다소 小額인 50백만「달러」로 결정하였다.

起債通貨國內에서 발행하는 外國債의 경우와 달리 「유로」債 發行時는 主幹事機關의 역할이 매우 커 主幹事機關 선정이 특히 중요하였는바 First National Bank of Chicago (FNBC), Long Term Credit Bank of Japan(LTCB), Manufacturers Hanover Trust Bank(Mantrust), Sumitomo Bank 등 4個 機關을 主幹事機關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 4個 主幹事機關외에 BA Asia Limited, Dai-Ichi Kangyo Bank 등 18個 金融機關을 副幹事機關으로 선정하여 總 22個의 國際金融機關으로 幹事團을 구성하였다.

主要 發行條件을 살펴 보면 滿期는 10년으로 하되 發行後 5년째와 7년째에 임의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選擇權(put-option)을 投資者들에게 부여했고 輸銀으로서도 發行後 5년째부터 임의로 상환할 수 있는 選擇權(call-option)을 갖도록 하였다. 金利는 6個月物 「리보」에 加算金利 0.25% 선에서 결정되었는데 이는 美國 등 先進工業國의 주요 기업들이 발행하는 FRN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輸銀이 도입한 銀行團借款의 平均金利인 「리보」+0.75%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것이었다. 한편, 幹事團에 지급하는 發行手數料(front-end fee)는 韓國産業銀行, 韓國外換銀行 등 기존의 國內 發行機關들에 적용되었던 1.875%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동FRN이 5年後 全액 상환된다고 가정할 때 연율로 0.375%가 된다.

이상의 條件들에 합의하여 1984년 11월 5일 「런던」소재 First Chicago Ltd. 사무실에서 동FRN의 契約署名式을 가졌는바, 輸銀側과 20餘名の 幹事團代表들이 서명에 참가하였다.

1次 FRN發行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FRN의 價格條件등이 다른 借入方式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1985년에 들어서는 1억「달러」 규모의 第2次 FRN 발행을 결정하였다.

1억「달러」의 FRN 發行計劃이 결정된 뒤 Chase Manhattan Bank(CMB), FNBC, LTCB, Orion Royal Bank of Canada 등 4個 機關이 主幹事機關으로 선정되었으며 日本의 DKB 등 20個 機關이 副幹事機關이 되었는데 幹事團에는 日本系 金融機關이 11個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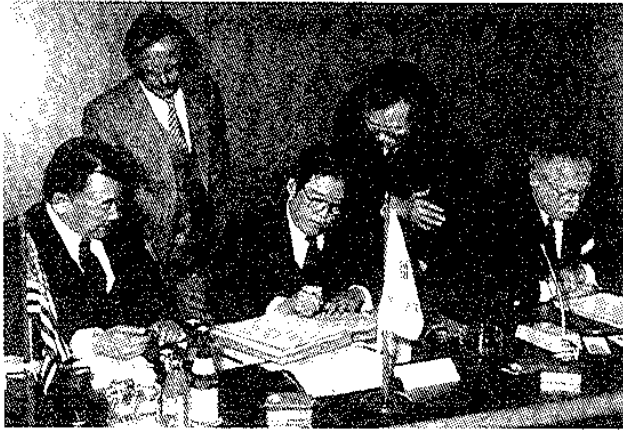
主要 發行條件중 債券滿期 10년과 投資者 任意償還請求選擇權 및 發行者 任意償還選擇權의 내용, 그리고 金利 역시 6個月 「리보」+0.25%로 1次 FRN 발행때와 같았다. 그러나 發行手數料는 그동안 우리 나라 銀行들이 FRN을 발행할 때 적용받아 온 1.875%보다 훨씬 낮은 1.625%를 적용받게 되었는바 이같은 發行條件 改善으로 약 25만「달러」의 發行費用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밖에 기타 手數料 절감 등에 힘입어 동FRN 발행에 따른 總費用(all-in cost)은 滿期 5년을 기준으로 1次 FRN의 「리보」+0.634%에서 「리보」+0.584%로 낮아졌다.

契約締結 署名式은 1985년 5월 3일 「런던」에서 거행되었으며 輸銀側과 29名の 幹事團代表들이 서명에 참가하였다.

1,2次 FRN 발행으로 유로債市場에서 信認度を 인정받은 뒤 2次 FRN 발행후 6개월만에 다시 3次 FRN을 발행하였다.

發行規模는 1억「달러」, 滿期는 10년으로 하였고 發行者 任意償還選擇權과 投資者 償還請求選擇權의 내용은 1,2次的 경우와 같게 하였다. 第3次 FRN 발행을 위하여 이번에는 CMB를 單獨主幹事機關으로 선정하였다. CMB는 輸銀의 銀行團借款 도입이나 延拂어음 매각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고 1次 FRN 발행시에는 副幹事機關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어 輸銀과 CMB는 26個의 副幹事機關을 선정하였는바, 日本系 機關들의 參與가 계속 늘어 LTCB, Saitama 등 15個 機關이 참여했고 美國에서 5個 機關, 英國 2個 機關, 그리고 네덜란드, 西獨, 캐나다, 벨기에 등에서 1個 機關씩 참여하였다.

額面金利는 1,2次때와 마찬가지로 6個月 「리보」+0.25%로 결정되었으나 發行手數料를 第2次 발행시 1.625%에서 1.25%로 줄여 또다시 약 40만「달러」의 費用



1억「마르크」債券發行 契約 체결
(1986. 3. 3)

을 절감하였다. 이에 따라 FRN 발행 總費用도 第2次때보다 0.05%가량 낮아져 「리보」+0.53%로 되었다.

契約締結 署名式은 1985년 11월 29일 「런던」에서 거행되었다.

(3) 「도이치 마르크」貨債券 發行

輸銀은 1984년 1월 「엔」貨債券 發行에 이은 두번째 其他通貨 債券發行을 위해 西獨 資本市場에 진출하게 되었다. 「도이치 마르크」貨는 西獨의 經濟力 成長과 함께 國際外換市場에서 강세를 유지해 왔으며 金利도 낮아 1983년에는 「유로」債市場에서 美「달러」貨 다음의 起債通貨가 되기도 하였는바 輸銀으로서도 外貨資金調達源의 다양화 및 低金利通貨 차입을 통한 調達「코스트」절감 등의 側面에서 「도이치 마르크」貨 資金의 확보가 필요하였다.

輸銀은 債券發行規模를 5년 滿期の 1억「도이치 마르크」로 결정하고 西獨의 Deutsche Genossenschafts Bank(DG Bank)를 主幹事機關으로 선정하여 發行交渉 및 幹事團 構成을 의뢰하였다. 이후 DG Bank의 주선으로 幹事團은 Bank of Tokyo, Commerzbank 등 8個 機關으로 구성되었다. 發行交渉 당시 잠정 發行金利는 8 1/4%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西獨 資本市場의 호전 등에 따라 6月の 계약체결시에는 發行金利를 7 5/8%까지 낮출 수 있었다. 發行手數料는 西獨市場의 定型화된 규칙에 따라 2 3/4%가 적용되었다.

契約締結 署名式은 1985년 6월 18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루어졌다.

(4) Euronote Facility 契約 締結

Note Issuance Facility(NIF)로 더 많이 알려진 Euronote Facility는 銀行團 借款과 變動金利附債券을 결합한 方式으로 借入者가 미리 約定된 借入限度와 借入

期間내에서 3~12개월의 短期어음을 발행하여 당해어음 만기도래시 이를 상환하거나 또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계속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金融方式이다.

輪銀은 1985년 7월 Bankers Trust Asia Ltd.를 主幹事機關으로 선정하고 Continental-Illinois, Dai-Ichi Kangyo Bank, Sumitomo Bank, LTCB, Nat'l Australia Finance Asia Ltd. IBJ, Morgan Guaranty, FNBC 등을 共同主幹事로 그밖에 Barclays Bank를 비롯한 9個 金融機關을 副幹事機關으로 하여 幹事團을 구성하였다.

동Facility를 통한 資金調達規模는 1억「달러」, 借入期間은 5년으로 결정하였고 어음發行期間은 3개월과 6개월중 輪銀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동Facility의 金利는 6개월 「리보」에 연동시키되 加算金利는 최고 1/4%로 하여 매번 어음발행시마다 투자자들로부터 入札方式으로 加算金利를 제시받아 平均落札加算金利를 1/4%에서 차감한 뒤 이중 1/2을 平均落札加算金利에 가산하는 方式을 적용하였다.

통상의 Euronote Facility에서는 借入者는 最高金利를 그대로 적용받고 最高金利와 投資者의 平均落札加算金利間의 差減利益分을 모두 幹事團이 취하였으나 동 Facility에서는 差減利益分을 幹事團과 공동 분배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이 밖에 동Facility는 계약체결 2년후에는 幹事機關이 동어음을 殘存期間을 滿期로 하는 FRN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選擇權을 부여하여 投資效果를 증진시켰다.

동Euronote Facility의 契約締結은 1985년 8월 12일 「홍콩」에서 이루어졌다.

계약체결 이후 輪銀은 8월 22일 1次로 35백만「달러」의 3개월 滿期어음을 발행하였는바 당시 平均落札加算金利가 0.1147%를 기록, 當該金利는 「리보」+ 0.18236%로 결정되었다. 1986년 2월말 7次的 어음발행까지 金利는 「리보」+ 0.18% 선를 유지함으로써 金利면에서 Euronote Facility는 어느 外資調達方式보다 낮은 水準을 기록하게 되었다.

(5) 「스위스 프랑」貨債券 發行

「스위스 프랑」貨는 國際金融市場의 主要 5個國通貨중 金利가 가장 낮고 換率도 매우 안정되어 있어 輪銀의 低金利資金 調達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도이치 마르크」貨債券과 함께 1985년초부터 「스위스 프랑」貨債券 발행이 검토되었다.

國際金融市場에서 보수적 성격이 가장 강한 스위스는 外國人의 「스위스 프랑」貨債券 발행의 전제조건으로 스위스中央銀行의 동의와 發行國 政府의 보증을 요구

하여 同債券發行 추진을 어렵게 하였으나 同年 하반기에 들어서 輸銀의 경우에는 政府保證없이 발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음으로써 發行規模 50백만 「스위스 프랑」의 債券發行을 결정하였다.

主幹事機關 선정에 있어서는 스위스 3大銀行중 輸銀과 업무교류가 밀접하였던 Swiss Bank Corporation(SBC)을 主幹事機關으로 선정하였으며 幹事團도 SBC가 9個 스위스 國內銀行과 스위스內 日本系 銀行 4個 그리고 美國系 및 西獨系 銀行 各各 1個씩으로 구성하였다.

同債券의 主要條件중 發行金利 및 發行價格은 관례에 따라 契約締結 前日 市況에 따라 결정키로 하였으며 同債券 발행과 관련한 手數料는 스위스 市場의 경우 發行金額과 期間에 따라 정형화된 總發行手數料 3%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契約書 작성시 輸銀은 유통시장에서 同債券의 價格安定을 위해 債券 발행후 4년째부터 4년간 연 3백만 「스위스 프랑」씩을 재매입할 것과 輸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流通市場에서 언제든지 어떠한 가격으로든 同債券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同債券은 額面價로 발행되었으며 額面金利는 6 1/8%이었는데 이는 비슷한 시기에 계약체결한 세계적인 기업 Air Canada가 발행한 債券의 額面金利 6 1/4%보다도 0.125% 「포인트」 낮은 것으로 당시 市況下에서는 매우 유리한 것이었다.

契約締結 署名式은 12월 20일 「런던」에서 거행되었다.

第3節 資金支援의 擴充

1. 資金支援業務의 變遷

業務의 多樣化

輸銀은 韓國外換銀行에서의 6年餘에 걸친 業務代行期와 設立후 10년의 기간동안 支援業務의 확충과 制度의 개선을 통해 中長期 延拂資金을 適期에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 經濟의 重工業化와 輸出의 지속적인 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 기간동안 輸銀法과 同法 施行令은 對内外 經濟與件의 변화에 맞추어 각각 2次 및 1次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業務方法書는 38次에 걸쳐 개정되었다. 輸銀은 設立 이후 先進金融技法의 도입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對象去來에 대한 選別支援을 강화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도 공헌하였다.

먼저 輸銀의 資金種別 支援推移를 보면, 業務代行期에 있어서는 船舶輸出支援을 중심으로 한 輸出資金貸出과 海外 山林開發支援 및 外國人에 대한 船舶貸與事業支援을 위한 海外投資資金貸出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輸銀이 설립된 1976년 이후에는 輸出資金의 경우 「플랜트」부문에 대한 貸出이 크게 늘어났으며 동시에 直接貸出, 轉貸資金,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 등의 貸出이 늘어나면서 業務領域을 더욱 넓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支援資金의 다양화는 무엇보다도 經濟規模의 확대와 對外經濟與件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實物去來가 나타났던 외에, 輸銀이 實物去來形態의 다양화에 맞추어 業務方法書 改正 또는 各種 資金의 支援指針 制定 등을 통해 支援制度를 보완했기 때문이었다.

즉 輸銀은 설립 다음 해인 1977년에 海外建設工事와 관련하여 技術提供資金을 최초로 취급하였고, 1978년과 1979년에는 轉貸資金과 直接貸出 取扱規程을 제정했으며 1981년중에는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의 貸出을 취급할 수 있도록 同資金의 基本融資條件을 業務方法書에 신설하였다.

이중 轉貸資金은 外國의 金融機關(中央銀行 포함)에 輸銀이 일정액의 與信限度를 제공하고 同國의 輸入者들이 이 한도 범위내에서 同資金을 轉貸받아 우리 나라

商品을 구입하게 하는 輸出金融支援制度의 일종으로 마련되었다. 이 制度는 小規模 去來를 지원함으로써 海外에 새로운 市場을 개척하고 借入國의 潛在需要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輸銀이 1978년 4월과 6월에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轉貸借款 取扱規程과 同資金取扱에 관한 基本運營方針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다. 轉貸資金關係規程은 그 후 3次에 걸쳐 개정되어 1985년 현재는 供與對象國이 開發途上國은 물론 OECD國家중에서도 開途國 수준에 있는 국가에까지 확대되었고, 與信限度를 설정할 수 있는 金融機關도 對象國이 설립한 金融機關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外國銀行 支店도 포함한 對象國 所在 全金融機關으로 확대되었다.

直接貸出制度는 우리 나라로부터 資本財와 技術을 수입하려는 外國의 購買者에 대해 輸銀이 필요한 資金을 직접 대출해 주는 制度로서 大規模 資本財의 中長期延拂去來 지원을 위해 輸銀은 1979년 8월과 9월에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直接貸出 基本運營規程과 同取扱規程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同支援制度를 도입하게 되었다.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은 第2次 石油波動과 이를 계기로 한 資源「내셔널리즘」의 高潮에 자극을 받아 原油를 비롯한 主要資源을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1981년 5월에 처음 취급되었다. 輸銀은 「코데코 에너지」株式會社에 同資金을 대출하여 인도네시아의 「마두라」油田開發을 지원하였다.

輸銀은 이와 같은 對象去來의 新規開發과 아울러 支援資金의 效率化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輸銀은 한정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業務方法書에 규정되어 있는 延拂資金 支援對象去來要件 및 融資條件을 변경하는 間接調整方式과 特定資金의 支援指針을 改廢하는 直接調整方式을 운용해 왔는데 直接調整方式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制度의 變遷이 있었다.

첫째는 「플랜트」輸出에 대한 資金支援指針 제정이다.

輸銀은 政府의 방침에 따라 「플랜트」의 輸出基盤이 다져질 때까지 船舶등에 대한 일반적인 輸出資金貸出과는 별도로 支援의 適格要件 對象去來를 지정할 필요가 있었던바, 이를 위해 제정된 것이 1979년 6월의 「플랜트」輸出에 대한 資金支援指針이었다. 이 指針에서는 支援對象이 되는 「플랜트」를 “設計, 施工, 監理 등 技術部門과 함께 수출되는 産業設備”로 규정하고 國內企業의 供給額이 受注契約金額의 60% 이상일 때에는 外國의 下請參與分도 지원가능토록 하였고, 1981년 11월에는 外産機資材使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國産機資材率에 미달되어도 例外取扱이 가

능하도록 支援要件을 완화한 바 있다. 한편 「플랜트」의 輸出競爭力 제고와 관련, 1984년에는 同指針을 개정하여 1백만「달러」이상의 去來만 지원토록 하였고, 1985년에는 「플랜트」중 일부 업종의 國產機資材 使用比率을 상향 조정하는 등 支援要件을 강화하였다.

둘째는 選別支援制度의 도입이다.

이 制度는 1970년대말 이후 輸銀의 延拂資金 需要가 급증하자 輸出資金은 물론 直接貸出, 轉貸資金, 海外投資(事業)資金 등 資金別로 그 支援基準을 설정하여 支援對象去來라 하더라도 支援效果가 더 큰 去來를 우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80년부터 실시되었다. 그 주된 內容은 先受金, 延拂金利, 延拂期間, 對外債權에 대한 保證 등 延拂條件이 國民經濟的 次元에서 한층 유리한 去來를 우선 지원한다는 것으로, 1980년부터 1983년까지는 銀行長 결재로 同指針이 매년 수정, 운용되어 오다가 1984년부터는 一般指針으로서 확정, 운용되어 오고 있다.

이 밖에 國產化率 제고, 中小企業의 육성, 過剩設備의 조정 등 產業政策的 観点에서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制度를 도입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輸銀 設立 직후인 1976년 12월에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는 1977년도 韓國輸出入銀行 資金支援基準을 결정하면서 각 支援對象 品目別로 基準外資材依存率을 정하였으며 同基準이 輸銀資金支援 對象要件의 하나로 발전되었다. 또한 「플랜트」의 경우에는 基準外資材依存率 대신에 國產機資材率을 설정하여 制度 運用에 합리화를 기하였으며, 1982년 2월에는 國產機資材 使用去來에 대한 優先支援指針을 제정했고 1985년 8월에는 國產機資材 使用去來 優先支援指針施行基準을 제정하여 國產化率에 따라 融資比率을 차등 지원하였다. 그 결과 1985년중 本承認된 船舶輸出資金의 경우 推進用 「엔진」은 100%가, 그리고 發電用 「엔진」은 82.5%가 國產「엔진」으로 탑재하게 되었다.

한편, 1984년부터는 中小企業에 대한 優先支援策을 강구하여 輸出資金에 있어서는 引渡前金融의 融資比率을 大企業보다 상향조정하여 1985년부터는 中小企業이 國內外 所要資金 전액을 輸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海外投資(事業) 資金貸出과 관련해서는 融資比率 및 貸出金利면에서 優待措置를 강구했으며 1985년 5월에는 信用保證基金과의 業務協約을 체결하여 中小企業의 擔保力 不足問題를 보완토록 하였다.

또한 1985년 2월에는 遊休產業設備輸出에 관한 資金支援指針을 제정하여 國內產

業의 합리화에도 일익을 담당했는데 同指針은 産業構造의 高度化로 과잉상태에 있는 纖維産業設備과 合理化對象 海外建設業體가 보유하고 있는 海外建設重裝備를 海外에 수출하는 경우 이를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밖에 1980년 選別支援制度의 도입으로 사실상 폐지되었던 海外建設輸出에 대한 支援制度도 1985년 1월 海外建設工事に 대한 資金支援指針이 제정됨으로써 다시 부활되었는데 이는 海外建設受注 부진을 타개하고 新規 海外建設市場 개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이와 아울러 設立 이후 豫備承認制度의 도입으로 支援業務의 합리화를 기하였으며 協調融資制度의 도입, 國別 信用度評價에 의한 與信限度 설정, 支援「프로젝트」에 대한 國民經濟的 效果分析 등 先進金融技法의 도입과 활용에도 주력하였다.

豫備承認制度는 1977년 1월 第14次 業務方法書의 改正을 통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며 1979년 11월에는 業務方法書에 國內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 실시를 위한 根據條項을 신설하고 1980년 1월 및 2월에는 協調融資에 관한 基本運營方針과 協調融資 取扱規程을 각각 마련함으로써 國內에서는 처음으로 輸出資金貸出의 引渡後金融을 대상으로 國內金融機關과 協調融資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協調融資는 그 후 1980년 7월과 1981년 2월의 業務方法書 改正에 따라 輸出資金貸出의 引渡前金融과 技術提供資金에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協調金融機關도 外國金融機關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1980년 7월부터는 輸出用 原資材의 延拂輸入을 위한 外國金融機關으로부터의 轉貸借款 導入業務를 취급하여 一覽拂條件으로 수입해 왔던 輸出用 原資材를 長期低利의 延拂條件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國際收支 개선 및 輸銀의 資金負擔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國別 信用度 評價業務는 國別與信限度 설정 및 對外債權 保全과 관련하여 1977년부터 도입, 시행해 왔는데 특히 開途國의 外債問題가 심각해진 1982년 이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支援事業에 대한 國民經濟的 效果分析業務는 1980년 12월부터 個別「프로젝트」별로 經濟的 妥當性分析을 시작함으로써 본격화되었는바, 經濟的 投資報酬率, 外貨稼得效果, 雇傭誘發效果 등을 중심으로 資金支援效果를 國民經濟的 次元에서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貸出業務와 관련, 債務保證業務도 그 범위를 계속 늘려 왔는데 債務保證業務는 先受金還給保證, 契約履行保證 및 對外支給保證 등으로 나누어 지원되었다. 先受金還給保證은 우리 나라의 輸出契約者가 契約履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外國

의 購買者로부터 輸出者가 既受領한 先受金을 購買者에게 환급할 것을 輸銀이 보증하는 制度로서 1977년 3월부터 同業務가 취급되었다. 契約履行保證은 輸銀 支援「프로젝트」의 수출과 관련하여 輸銀이 輸出者의 契約履行을 보증하는 制度로서 1977년 7월부터 취급되었고, 對外支給保證業務는 1981년 2월부터 外國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 實施와 더불어 취급되었다.

이 밖에 1976년 10월부터는 甲類外國換銀行 業務를 취급하였는데 업무범위는 輸銀業務와 관련된 外國換業務와 輸出入業務 및 그 附隨業務에 국한되었다. 한편 1978년 5월부터는 輸銀內國信用狀業務를, 그리고 1979년 11월부터는 産業設備輸出促進法 및 同法 施行令에 의거 위탁된 國內生産 機資材의 搬出確認業務 등을 취급하게 되었다.

支援條件의 彈力的 運用

輸銀은 設立 이후 支援條件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延拂資金에 대한 支援效果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輸銀資金 支援條件은 크게 支援對象 去來要件과 融資條件으로 나눌 수 있는바, 이들 支援條件은 對象去來의 國際競爭力 水準, 對內外 經濟與件, 國際去來 慣行 등을 감안하여 資金支援 效果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條件內容이 변경되어 왔다.

(1) 支援對象 去來要件의 變動

輸銀은 國內 供給者와 海外 購買者간에 체결한 商品去來契約중 원칙적으로 延拂去來契約만을 支援對象으로 하고 있다. 延拂去來는 일반적으로 契約金額중 일정액을 물품의 引受前에 購買者가 供給者에게 선지급하고 그 差額은 物品引渡後에 장기에 걸쳐 分割償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延拂去來는 一覽拂去來와는 달리 당사자가 契約時에 先受金, 延拂期間, 延拂利率 등 延拂去來條件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延拂去來를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輸銀은 일정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延拂去來만을 支援對象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對外債權의 保全이 확실한 去來만을 지원하고 있다.

支援對象 去來要件이라 함은 先受金, 延拂金利, 延拂期間, 對外債權 保全方法 등에 관한 요건을 말하며 輸銀은 同支援對象要件을 변경함으로써 延拂資金 支援效果의 극대화에 주력하였다.

〈先受金〉業務代行期에는 資金의 種類나 品目の 구분없이 先受金이 20%이상 되는 去來만을 지원했으나 設立 이후인 1977년 1월부터 先受金を 品目에 따라 구분하기 시작하였으며, 直接貸出制度和 轉貸資金制度의 도입으로 1980년부터는 資金 種目別로도 先受金を 구분, 적용하게 되었다.

한편 1980년 1월부터는 基準先受金制度가 도입되었는바, 1985년말 현재 基準先受金은 輸出資金 및 直接貸出의 경우 「플랜트」(機械類 및 試錐船 포함) 15% 이상, 船舶 및 其他 20% 이상이며 轉貸資金은 15% 이상으로 되어 있다.

〈延拂金利〉延拂金利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3월로서, 당시의 最低 延拂金利는 6%이었다. 이어 1977년 1월부터 延拂金利는 8%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고, 1979년 1월부터는 延拂金利와 貸出金利간의 逆金利를 방지하기 위하여 “當該去來의 延拂金利가 當行 貸出金利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輸銀의 引渡後金融 貸出利率에 연동시키게 되었다.

〈延拂期間〉輸銀 設立時 輸出資金의 延拂期間은 船積後金融의 融資期間만 설정하여 産業施設 10년 이내, 船舶 8년 이내, 鐵道車輛 및 其他 5년 이내, 自動車 3년 이내로 규정되었다. 한편 延拂期間 개념이 정립된 것은 1977년 2월의 業務方法書 改正時부터인데 同年 5월부터는 金額別로 延拂期間이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말에는 船舶의 延拂期間이 종래의 8년에서 8.5년으로 연장됨으로써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去來의 最長 延拂期間은 현재 「플랜트」, 機械類, 鐵道車輛이 10년, 船舶이 8.5년, 部品類 및 乘用車가 3년, 其他品目이 5년으로 되어 있다.

한편 1979년 1월부터는 引渡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据置期間을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

〈支給保證〉延拂代錢 償還에 대한 支給保證은 당초에는 輸入國 政府機關 또는 外國一流銀行이 발행한 것만 인정되었으나 1977년 1월부터는 輸入國 金融機關이 발행한 支給保證書도 인정하게 되었다.

(2) 融資條件의 變動

融資條件이라 함은 融資比率, 融資期間, 貸出金利, 約定手數料 등의 제반 金融 支援條件을 말하는데 이를 조정함으로써 輸銀資金에 대한 需要를 조절하는 한편 融資條件을 支援對象 去來內容에 따라 차등 적용해오고 있다.

〈融資比率〉輸出資金貸出의 融資比率은 輸銀 設立時에는 品目の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融資對象額의 90%로 적용되었으나 1977년 1월부터는 品目別로 구분되어

「플랜트」 및 船舶에는 80%, 機械類, 鐵道車輛, 其他製品에는 75%가 적용되었다. 한편 1980년 1월부터 協調融資制度가 도입되어 所要資金 전액을 借主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主要 支援對象品目에 대한 引渡後金融의 融資比率은 종전의 90% 범위내에서 80% 범위내로 낮아졌다. 이어 同年 7월부터 協調融資의 對象이 引渡前金融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引渡前金融과 技術提供前金融에 있어서는 元貨資金 所要分을 輸銀이, 그리고 外貨資金 所要分은 協調融資機關이 각각 취급하게 되었고 引渡後金融의 輸銀 融資比率은 품목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70% 범위내로 인하되었다. 또한 技術提供後金融 및 海外投資資金의 融資比率도 이에 맞추어 종전의 80% 범위내에서 70% 범위내로 인하되었다.

한편 世界海運 및 造船市況의 長期沈滯로 新造船 受注가 매우 부진해짐에 따라 輸銀은 1985년 6월에 輸出資金貸出의 引渡後金融 融資比率과 直接貸出 融資比率을 85% 범위내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海外投資資金貸出의 融資比率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70% 범위내이고 轉貸資金의 경우에는 融資對象額의 100% 범위내에서 融資比率이 적용되고 있다.

〈貸出金利〉 輸銀의 貸出金利는 設立初期에는 船積前金融의 元貨資金이 生産集荷資金과 같은 연 8%의 金利가 적용되었고 外貨所要資金의 경우에는 「리보」+ 2.5%의 金利가 적용되었다. 또 船積後金融에 있어서는 融資期間別로 3년 이내의 8%로부터 10년 이상의 9% 범위내에서 差等金利가 적용되었다. 이어 1977년 이후 融資承認된 거래는 輸出資金貸出의 引渡前金融 元貨所要資金과 引渡後金融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연 7%의 金利가 적용되었다. 그 후 國際金融市場에서의 高金利趨勢로 1980년 1월부터는 同暫定金利의 적용이 중단되었으며, 輸出資金貸出의 引渡後金融 利率은 引渡前金融 元貨所要資金의 貸出利率과 마찬가지로 연 8%가 적용되었으며, 1981년 11월에는 다시 연 9%로 인상되었다.

한편 1984년 11월부터는 業務方法書에 基準金利만을 정하고 貸出實行利率은 理事會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業務方法書를 개정하고 基準金利를 연 9~10%로 정하였으며, 1985년 12월에는 造船受注 부진과 관련하여 船舶의 基準金利를 종전의 9%에서 8%로 1%「포인트」인하하였다.

船舶 이외의 品目에 대한 輸出資金貸出의 實行利率은 海上試錐設備를 둘러싼 韓·美間의 貿易紛糾로 1985년 8월 이후 輸銀의 實質借入金利率水準 또는 OECD「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매 6個月마다 조정토록 하였다.

〈融資期間〉 輸出資金貸出의 引渡前金融 融資期間은 輸出契約 發效日에서 輸出

目的物の引渡期日까지의 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며 引渡後金融의 融資期間은 輸出目的物の 引渡完了時에서 分割償還日까지의 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원칙은 큰 변동없이 적용되어 왔다.

技術提供資金 및 直接貸出의 融資期間은 輸出資金貸出과 동일하며, 轉貸資金貸出의 償還期限은 1985년말 현재 品目別, 金額別로 구분하여 2~5년의 범위내에서 고정되어 있으며 海外投資(事業) 資金貸出의 경우는 1백만「달러」이하가 7년, 1백만「달러」이상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의 融資期間은 最長 20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約定手数料〉約定手数料는 1976년 8월부터 0.25%를 징구하였으나 1979년 1월부터는 輸出企業의 資金負擔을 경감시켜 國際競爭力을 강화할 수 있도록 供給者信用에 한하여 이의 징수를 면제하여 왔다. 그러나 1981년 2월부터는 특히 船舶輸出의 過熱受注競争에 따른 先契約事例를 방지하기 위하여 供給者信用에 대하여 다시 0.5%의 約定手数料를 징수하게 되었다.

2. 輸出資金 支援의 擴充

支援制度의 概要

(1) 特性

輸出資金 支援制度는 輸出目的物の 성격에 따라 輸出資金貸出과 技術提供資金貸出로 구분된다.

輸出資金貸出은 「플랜트」, 船舶, 鐵道車輛 등 資本財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나라 輸出者 또는 製作者에게 대출해 주는 제도이고 技術提供資金貸出은 技術이나 用役을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나라 技術提供者에게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輸出資金貸出과 技術提供資金貸出은 여타 支援制度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供給者信用〉 輸出資金貸出과 技術提供資金貸出은 국내 輸出者, 製作者 또는 技術提供者만을 融資對象者로 하는 供給者信用이기 때문에 외국의 輸入者나 外國金融機關을 融資對象者로 하는 直接貸出과 轉貸資金貸出, 즉 購買者信用과 달리 일차적인 債權의 기반이 국내에 존재하게 된다.

輸銀은 融資承認時에 輸出者의 財産狀態와 負債比率, 經營能力 등을 분석하고 國內擔保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출실행후에도 貸出債權의 관리가 購買者信用의 경우 보다는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貸出金 償還을 위한 財源은 궁극적으로 延拂輸出代錢이 되나 延拂債權의 행사와 관리를 직접적으로 輸出者가 하게 할 수도 있고 輸銀이 직접 할 수도 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輸出者의 國內財産으로 상환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外國 購買者의 입장에서 보면 購買資金 조달을 위하여 별도로 金融機關을 물색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金融에 필요한 여러가지 절차를 피할 수 있어서 간편한 長點이 있다.

國內 輸出者는 外國의 輸入者에게 延拂金融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契約締結時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고, 輸銀과 融資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게 되므로 신속하고 용이하게 金融支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탄력적인 延拂條件을 제시하여 對外競爭力을 높일 수 있는 長點이 있다.

〈引渡前金融과 引渡後金融〉 輸出資金貸出과 技術提供資金貸出의 경우에는 다른 資金의 경우와 달리 當該去來의 추진에 필요한 資金을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國內 輸出者는 우선 輸出目的物의 製作에 소요되는 資金(技術提供資金의 경우에는 技術用役의 海外移轉에 필요한 資金)을 조달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지원하는 資金을 引渡前金融(技術提供資金의 경우에는 技術提供前金融)이라 하고 輸出者가 輸出目的物을 제작하여 外國 購買者에게 인도한 후 輸出代錢이 입금될 때까지 延拂代錢에 해당하는 금액을 융자하는 것을 引渡後金融이라고 한다. 引渡前金融은 輸出目的物의 引渡時에 引渡後金融으로 상환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프로젝트」를 引渡前·後金融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것은 金融의 원칙에 따라 實所要資金을 지원하며 引渡後金融 취급을 통해 輸出目的物의 인도를 추진키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協調融資〉 輸出資金貸出과 技術提供資金貸出은 다른 資金과 달리 他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方式을 택하고 있다.

協調融資란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融資機關이 資金을 분담하여 지원하는 融資方式을 말한다.

輸銀은 韓國外換銀行을 비롯하여 5個 市中銀行, 綜合金融會社 및 外國銀行 國內支店 등 50個 金融機關과 協調融資를 위한 基本協定을 체결하고 있는데, 引渡前金

融의 경우에는 輸銀이 國內所要資金을 지원하고 協調融資機關은 外資材 購入에 필요한 國外所要資金을 지원하며, 引渡後金融의 경우에는 輸銀이 延拂該當額의 85% 를, 協調融資機關은 延拂該當額의 15% 를 각각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協調融資時 債權保全을 위한 擔保는 當該去來에 따른 約束어음과 支給保證書を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나 이를 분리할 수 없을 때는 輸銀이 約束어음과 支給保證書を 취득, 관리하고 協調金融機關에게는 輸銀이 支給保證書を 발행한다.

(2) 支援對象去來

輸出資金 또는 技術提供資金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우선 輸銀의 融資對象去來로서 적합하여야 하고 貸出金 회수를 위한 債權保全 방법이 확실하여야 한다. 主要 支援對象 去來條件은 다음과 같다.

〈支援對象品目〉 輸出資金貸出의 支援對象品目は 원칙적으로 資本財이거나 外貨 獲得을 위한 海外 輸出入市場의 확보 또는 개척에 현저히 기여하는 商品이어야 하며 技術提供資金貸出의 對象技術範圍는 産業施設과 그 附屬品の 설치 또는 운영에 수반되는 技術 등의 用役 및 調査, 設計, 監理와 海外建設工事 및 海外建設用役 등이다.

한편 輸銀이 輸出資金 支援對象品目으로 정하고 있는 品目에는 大統領令에 의하여 정해진 産業施設, 船舶, 鐵道車輛 등과 財務部長官이 지정한 機械類와 電氣機器, 鐵道用 이외의 車輛, 鐵道線路, 鐵構造物 및 「컨테이너」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品目 중에서도 乘用車, 「컨테이너」와 같은 品目は 輸銀이 輸出資金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 去來秩序를 파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資金支援을 보류 또는 제한하고 있다.

〈基準外資材依存率 및 國產機資材率〉 支援對象品目이라 하더라도 外資材依存率 이 높은 경우에는 이를 融資對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모든 支援對象品目は 일정한 外資材依存率과 國產機資材率을 충족해야 한다.

〈基準先受金率〉 一覽拂去來를 제외한 延拂去來의 契約金額에 대하여 「플랜트」와 機械類는 15% 이상, 「플랜트」와 機械類 이외의 品目は 20% 이상의 先受金を 引渡時까지 수령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先受金은 外換管理規程上의 先受金 및 着手金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當該去來의 契約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去來目的物의 引渡完了時까지 수령되는 금액을 말한다.

先受金を 一定率 이상 수령하는 去來만을 지원하는 것은 支援資金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고, 外國 購買者의 契約履行을 보다 확실히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延拂期間〉 支援對象 輸出去來의 延拂期間은 원칙적으로 최장 10년 이내이며 延拂期間이 5년을 초과하는 去來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据置期間을 둘 수 있다.

〈延拂金利 및 償還方法〉 對象去來의 延拂金利는 引渡後金融 貸出金利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延拂金利에 의한 利子收入으로 輸銀의 貸出金利子를 지급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引渡後 元利金은 연 1회 이상 定期 分割償還되어야 한다.

〈延拂債權 保全方法〉 外國 一流銀行이 발행한 信用狀 또는 支給保證書가 있거나 外國政府機關이나 中央銀行의 支給保證書가 있어야 한다.

輸銀이 外國의 一流銀行으로 정하고 있는 金融機關은 純資産이 2억「달러」 이상이거나, OECD 國(단, 그리스, 터키, 포르투갈, 스페인 제외) 또는 홍콩에 主事務所를 두고 있는 銀行으로서 純資産이 5천만「달러」 이상인 銀行이다.

(3) 支援內容

〈融資比率〉 引渡前金融은 當該 輸出契約金額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殘額에 대하여 일정 融資比率 범위내에서 國內 所要資金을 지원한다.

다만 中小企業 輸出去來의 경우는 品目の 구분없이 90% 범위내에서 國內 所要資金 뿐만 아니라 國外 所要資金까지도 지원하고 있으며 引渡後金融을 低金利通貨로 융자하는 경우에도 상기 品目別 融資比率 범위내에서 國外 所要資金을 지원한다.

引渡後金融은 品目の 구분없이 契約金額에서 基準先受金을 공제한 殘額의 85% 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中小企業 輸出去來로서 理事會 議決을 얻은 경우와 低金利通貨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基準先受金을 공제한 殘額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貸出金利〉 貸出實行利率은 연 8% 이상에서 理事會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融資期間〉 引渡前金融의 融資期間은 최초의 貸出取扱日부터 契約書에서 정하고 있는 引渡期日에 30일을 가산한 날 까지이며 引渡後金融의 融資期間은 최초 貸出取扱日부터 當該 契約書에서 정하고 있는 최종 分割償還日까지로 하되 引渡前金融의 融資期間과 引渡後金融의 融資期間을 통산하여 6월 이상 10년 이내가 되도록 하고 있다.

〈償還方法〉 引渡前金融은 引渡後金融을 취급할 때 일괄 상환하여야 하며 引渡後金融은 연 1회 이상 정기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擔保〉 引渡後金融의 경우는 國內에 있는 國內 輸出者의 不動產, 動產 등 國內

財産을 擔保로 취득하고 필요하면 連帶保證을 입보시키고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理事會 議決로 信用貸出도 가능하여 引渡後金融을 취급하게 되면 當該 契約書에 따라 輸出目的物の 引渡時에 발행되는 約束어음, 支給保證書 또는 保證信用狀을 擔保로 취급하며 필요한 경우 輸出保險에 부보토록 하고 있다.

(4) 支援節次

輸銀의 資金支援은 事前協議, 豫備承認, 本承認의 3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輸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國內 輸出者는 우선 去來의 初期段階에 去來條件 및 去來 推進方向 등에 관하여 輸銀과 事前協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輸銀은 支援條件과 支援內容 등을 國內 輸出者에게 설명하고 지원 가능성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事前協議를 거친 國內 輸出者는 外國 輸入者의 입찰에 참가하여 수주를 받게 되면 購買意向書, 假契約書 등 거래 추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輸銀의 豫備承認을 신청하게 된다. 輸銀은 당해 거래의 國民經濟的 收益性, 技術的 妥當性, 支給保證機關, 外國 輸入者의 信用狀態 등을 검토하여 豫備承認을 행한다. 豫備承認은 6개월 또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기간까지 유효하며 그 기간내에 契約를 체결토록 한 뒤 本承認을 행한다.

支援制度의 變遷

(1) 概觀

輸銀 設立 당시인 1976년에는 船舶輸出 支援을 위한 輸出資金貸出이 대부분이었으며 輸銀 資金의 수요도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設立 다음 해인 1977년부터는 延拂輸出 支援을 위한 制度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輸銀의 主要 支援條件을 규정하고 있는 業務方法書도 1977년에 무려 8차례나 개정되었다.

그 후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資金種目이 다양해지고 資金需要가 급증함에 따라 國內 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制度和 「플랜트」 輸出에 대한 資金支援指針 및 選別支援方針이 수립, 시행되었다. 또한 1982년에는 國內 機械工業의 적극 육성이라는 政府 方針에 따라 國產機資材 使用去來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國產機資材 使用去來에 대한 優先支援指針이 제정되었다.

한편 1983년 이래로 世界景氣가 침체되고 中東 產油國의 石油收入이 감소하게 되자 그 영향은 海外建設 景氣의 부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海外建設 受注

不振 타개를 위해 1985년에는 海外建設工事に 대한 資金支援制度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1985년에는 또한 美「달러」貨만을 貸出通貨로 삼아 왔던 종래의 貸出方式에서 벗어나 日本「엔」, 「도이치 마르크」, 「스위스 프랑」 등의 低金利通貨를 貸出通貨로 도입했으며 低金利通貨表示貸出의 경우에는 異種通貨貸出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制度의 變遷은 政府의 重要政策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으로 특히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 및 輸銀 運營委員會의 결정에 따라 추진되었다.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는 外國에 대한 無償援助, 延拂輸出, 投資 등에 관한 政府의 基本方向과 重要政策 및 年間計劃의 수립, 조정을 목적으로 1976년 11월 24일 大統領令 第8284號로 설치되었으며 종전의 經濟長官懇談會나 經濟長官協議會를 대체하여 설치된 機構이다.

同委員會는 輸銀 業務와 관련하여 同委員會規程 第2條 및 同運營細則 第3條에 의거, 延拂輸出 및 海外投資計劃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1977년과 1978년에는 輸出入銀行 運營方針을 의결하여 輸銀 運營에 대한 基本方向과 支援基準 및 方法, 資金別 支援指針 등을 정하였고, 1979년, 1980년 및 1981년에는 延拂輸出支援政策의 運用方向 등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同委員會는 1983년 1월 27일 海外協力委員會의 발족과 함께 폐지되고 同委員會가 관장하던 업무를 海外協力委員會가 인수하였다.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規程에 따르면 同委員會는 “海外經濟協力 및 技術協力에 관한 重要事項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어 議決機關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海外協力委員會는 設置令 第3條(職務)에서 “對外經濟關係 및 이와 관련된 海外協力에 관한 基本計劃의 수립 및 政策의 조정, 事業推進에 따른 機關間의 協助, 調整을 관장한다”고 하여 協助 및 調整機關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支援制度의 變遷과 더불어 輸出資金의 融資條件도 수차례의 변경을 거듭하였다. 融資條件의 變更은 주로 業務方法書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業務方法書는 1969년 10월 27일 제정되어 業務代行期에 12次, 그리고 1976년 輸銀 設立 이후 26次 등 모두 38次에 걸쳐 개정되었다.

(2) 金融技法의 開發

<協調融資制度> 1976년 7월 輸銀 設立 이래 1979년까지는 支援資金에 여유가 있었으므로 協調融資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였고 또한 國內 金融機關이나 外國

金融機關이 輸銀支援「프로젝트」의 所要資金 가운데 借主社의 自己資金 해당분에 대하여 지원한 사례는 있었으나 輸銀이 직접 주도하여 協調融資를 행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輸銀資金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정된 資金만으로는 延拂輸出資金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協調融資制度의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이어 協調融資制度의 도입을 위한 자체 준비와 더불어 輸銀이 協調融資制度를 도입하게 된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1979년 9월 3일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에서 輸銀의 長期資金調達上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國內 外國換銀行과 協調融資를 실시토록 한다는 方針을 결정한 데서 찾을 수 있다.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에서 協調融資方針을 결정함에 따라 輸銀은 1980년 2월 26일 協調融資 取扱規程을 제정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引渡後金融의 80%를 輸銀이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韓國外換銀行, 5個 市中銀行 또는 外國銀行 國內支店이 「리보」金利로 협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協調金融機關의 입장이 각기 다르고 輸銀과의 協調融資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協調融資制度는 실시 초기부터 문제점이 대두되게 되었다. 즉 市中銀行의 경우에는 輸銀과의 協調融資取扱分도 國內與信限度에 포함됨으로써 自體 融資限度를 잠식한다는 이유 때문에 協調融資를 기피하였고, 外國銀行 國內支店の 경우에는 協調融資에 관한 인식부족과 基本協定 締結을 위한 本店의 承認을 얻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의 協調融資實績은 매우 저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1980년 6월 13일에는 經濟企劃院에서 관계기관 참여하에 輸出入銀行 融資財源調達方案에 관한 회의가 열렸으며 그 회의에서 결정된 基本方針에 따라 輸銀의 協調融資 取扱規程이 1980년 7월 11일에 다시 개정되었다. 主要 改正內容은 ①종전에는 引渡後金融에만 적용하던 融資를 引渡前金融에도 확대 적용하여 輸銀은 引渡前金融의 元貨所要資金을 지원하고 協調融資機關은 外貨所要資金을 지원하며 ②引渡前金融에 대한 融資金融機關의 融資比率를 종전의 20%에서 30%로 인상하고 輸銀의 融資比率는 종전의 80%에서 70%로 낮추며 ③融資에 참가할 수 있는 協調金融機關에 國內 綜合金融會社를 포함시키는 외에 ④原資材延拂輸入을 위한 海外調達資金을 財源으로 하는 貸出은 輸銀 및 外國換銀行이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었다.

이상과 같이 融資制度가 변경된 후에는 綜合金融會社의 融資 참여활동이 활발해

졌고 外國銀行 國內支店들도 점차 輸銀과의 融資에 대한 商業性을 재인식하게 되어 融資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市中銀行은 國內與信限度 문제등으로 輸銀과의 融資에 참가한 실적이 없다.

輸銀과 融資 基本協定을 체결하고 있는 金融機關은 1986년 2월말 현재 國內銀行이 9個, 綜合金融會社가 6個, 外國銀行 國內支店이 34個, 外國銀行(日本 長期信用銀行 現地法人)이 1個로 모두 50個에 달하고 있다.

〈豫備承認制度〉輸銀은 設立초부터 融資承認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去來條件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契約內容은 去來初期 단계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개괄적인 去來內容이 합의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輸銀과 다시 협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는바, 대부분의 경우 일방적으로 契約을 체결한 후에 融資를 요청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支援條件에 맞도록 契約을 수정해야 하거나 심지어는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契約締結전에 契約書案을 가지고 輸銀의 豫備承認을 받도록 하고 輸銀이 승인한 내용과 같이 契約이 체결되면 本承認을 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1977년 1월 1일 第14次 業務方法書의 改正을 통하여 사전에 輸銀의 豫備承認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船舶輸出去來등은 受注의 確實性和 受注競爭 등을 이유로 豫備承認전에 契約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종전과 같이 豫備承認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1979년 5월 15일에는 第23次 業務方法書의 改正을 통하여 支援對象要件에 적합한 去來로서 銀行長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豫備承認을 생략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豫備承認을 생략한 去來는 1979~80년중 數個 去來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는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도 豫備承認을 거쳐 本承認을 해오고 있다.

〈選別支援制度〉1980년에 이르러 延拂資金 需要가 급증하게 되면서 부터 協調融資制度 및 海外金融機關으로부터의 轉貸借款資金 도입이 이루어졌고 한편으로는 한정된 財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資金別 支援基準을 설정하여 支援效果가 큰 去來를 선별하여 지원토록 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檢討內容에 따르면 “資金別 基準은 금년도 業務計劃上の 資金供給規模에 비하여 資金需要가 과다할 전망에 대비하여 마련하는 것인바, 資金需要 전망의 변동 및 業務計劃의 증액 등 여건 변화시에는 同基準도 폐지 내지 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規程으로 제정할 성질은 아니다”고 하였으며 制定權者에 관하여는 “規程은 아니지만 與

信에 관한 重要 方針이므로 理事會規程 第5條에 근거하여 理事會에 부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나 銀行長이 정하는 別途方針으로 하기로 하고 1980년 2월 27일 第2次 融資審議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銀行長의 決裁로 1980年度 輸銀融資 選別支援指針이 제정되었다. 同指針은 同年 6월 26일 일부 개정된 후 1983년까지 매년 年度別 指針으로 수립되어 왔으나 1984년부터는 年度別 區分을 삭제하여 一般的인 指針으로서 운영해 오고 있다.

당초의 選別支援指針은 輸出資金, 技術提供資金, 海外投資資金, 直接貸出, 轉貸資金貸出 등 各 資金別로 支援指針을 정했는데 이 중 輸出資金과 技術提供資金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先受金, 延拂金利, 延拂期間, 据置期間 및 外資材依存率(「플랜트」의 경우에는 國產機資材率) 등 支援要件에 부합되는 去來만을 지원토록 하였다. 다만 支援對象 要件중 하나가 미달일지라도 다른 要件이 양호한 去來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同但書 내용은 1980년 6월 26일 改正時 삭제되었으며 支援要件에 부합되는 去來만을 지원토록 하는 대신 가급적 國際金融市場에서 매각이 가능한 約束어음을 취득하는 去來를 우선 지원토록 하였다.

또한 輸出資金의 경우에는 對外債權保全이 확실한 去來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나 輸入國의 정책상 信用狀이나 支給保證書의 발행이 금지된 경우에 國別 與信 限度 이내에서 허용토록 하고 一覽拂去來인 경우에는 「플랜트」輸出 및 償還期間 1년 超過去來에 한하도록 하였다.

한편 技術提供資金의 경우에는 對外債權保全이 확실한 去來로서 技術用役 專門事業 및 「플랜트」輸出에 따른 技術提供事業에 한하였다. 따라서 당시까지 同資金으로 지원되어 온 海外建設工事등은 사실상 輸銀의 支援對象에서 제외되었다.

그 동안의 指針 개정내용을 보면 選別支援指針이 제정된 同年 6월에는 約束어음 賣却을 통한 자체 財源調達이 가능하도록 支援條件에 부합되는 去來만을 지원토록 하되 當該去來에서 발행되는 約束어음이 國際金融市場에서 매각가능한 경우를 우선 지원토록 하였다.

1981년에는 「플랜트」를 제외한 品目の 경우, 据置期間이 없는 去來만을 지원토록 하고 國民經濟的 投資報酬率이 15% 이상인 去來에 한하였다. 따라서 1981년에는 船舶, 機械類 및 鐵道車輛은 据置期間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1982년에는 機械類에 대한 거래는 据置期間을 인정토록 개정되었다. 이것은 第30次 業務方法書 改正(1981. 11. 17)으로 機械類의 延拂期間을 「플랜트」와 동일하게 변경한 데 따른 조

차이었다.

1983년에는 鐵道車輛에 대한 据置期間을 인정함으로써 据置期間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船舶輸出去來에 국한되었다. 이와 함께 國民經濟的 投資報酬率의 基準도 13%로 인하하였다.

1981년의 輸出資金에 관한 選別支援指針은 당해 約束어음이 國際金融市場에서 매각가능토록 約束어음의 發行 또는 保證機關을 純資産 2억「달러」이상의 金融機關, OECD會員國家에 主事務所를 두고 있는 純資産 5천만「달러」이상의 金融機關 또는 國別信用度 評價基準으로 B級 이상인 國家의 政府 또는 中央銀行으로 한정하고 協調融資가 가능한 去來만을 지원토록 정하였다.

1982년에는 約束어음의 支給保證機關을 一流銀行 또는 B級 이상 國家의 政府機關이 보증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도 지원하도록 일부 수정함으로써 個別去來의 規模에 따라 支給保證機關의 融通성을 인정하였다.

1983년에는 一流銀行의 基準이 별도로 책정되었으므로 支給保證機關을 이에 맞추어 純資産이 2억「달러」 이상이거나 OECD會員國家(그리스, 터키, 포르투갈, 스페인은 제외하였음) 또는 홍콩에 主事務所를 두고 있는 銀行으로서 純資産이 5천만「달러」 이상인 銀行으로 하였다.

1984년에는 中小企業의 延拂輸出 및 海外投資事業을 選別支援事業으로 정하였으며 이 후로는 매년 年度別 選別支援指針을 수립하는 대신, 同指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該當部門을 변경기로 하였다.

〈異種通貨 貸出制度〉 輸銀은 22個國 通貨를 融資對象去來의 決濟通貨로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貸出通貨의 種類와 運用方法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取扱基準이 없이 美「달러」貨만을 貸出通貨로서 운용하여 오고 있었다.

따라서 美「달러」貨 이외의 外貨表示貸出, 또는 契約通貨와 貸出通貨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異種通貨貸出의 경우에는 融資額의 算定과 適用金利上の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이와 동시에 1983년부터는 國際景氣의 계속된 침체로 受注競争이 더욱 치열해 졌으며 國內 輸出者로부터 對外受注競争 특히 低金利通貨國과의 受注競争을 이유로 美「달러」貨 이외의 通貨表示 融資 요청이 늘어나게 되어 1985년 6월 貸出表示通貨의 運用에 관한 指針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同指針의 주요 내용은 外貨表示貸出通貨는 美「달러」貨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日本「엔」, 「스위스 프랑」, 「도이치 마르크」의 3個 低金利通貨로도 융자하는 것을 허용하되 低金利通貨 貸出時에는 당해 低金利通貨에 대한 OECD「가이드라인」상의

最低利率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低金利通貨表示貸出은 輸出契約通貨가 低金利通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었으므로 美「달러」貨로 체결된 輸出契約은 低金利通貨表示貸出을 이용할 수 없었다.

한편 1984년에 비롯된 美國과의 輸出補助金 시비가 輸銀 金利의 上向調整(OECD「가이드라인」金利 또는 實質借入金金利의 적용)이라는 방향으로 韓·美間에 합의를 보게 되고 그 결과 1985년 8월 輸銀의 金利를 實質借入金金利 水準으로 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船舶 이외의 品目에 대한 輸出去來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金利가 적용되게 되었는데, 美國의 輸出補助金 시비와 輸出業界의 對外受注 競爭力 강화를 위해 低金利通貨表示貸出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同年 8월 金利調整과 병행하여 貸出表示通貨의 運用에 관한 指針을 일부 개정하고 低金利通貨表示貸出의 경우 異種通貨貸出을 취급키로 하였다.

(3) 主要 支援指針의 制定 및 變更

〈「플랜트」輸出에 대한 資金支援指針〉「플랜트」輸出은 産業設備輸出促進法の 適用對象으로서 機資材, 設計, 施工, 監理 등을 포괄하는 綜合輸出인바, 草創期에는 單純勞務人力의 供給이나 設計, 施工만을 수주받은 去來도 「플랜트」輸出로 간주하여 輸銀資金支援을 요청하여 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國內業體가 「플랜트」를 元請 또는 下請受注하는 去來에 있어서 그 일부를 外國企業에 下請 또는 再下請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도 輸銀資金支援을 요청해 오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에 대한 일정한 支援基準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1979년 4월 30일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에서 의결된 1979年度 延拂輸出 및 海外投資計劃은 輸銀의 「플랜트」輸出基盤 확충 및 支援資金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플랜트」輸出에 대한 資金支援指針을 제정, 운용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輸銀은 1979년 6월 15일 運營委員會의 의결로 「플랜트」輸出에 대한 資金支援指針을 제정하였으며 지금까지 4차례의 改正을 통하여 支援指針의 내용을 변경한 바 있다.

당초의 「플랜트」輸出에 대한 資金支援指針은 支援對象 要件으로서 設計, 施工, 監理 등 技術部門과 함께 수출되는 産業設備輸出促進法上の 産業設備과 그 設備가 별도로 정하는 國產機資材率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國內業體의 供給分이

受注契約金額의 60% 이상일 때에 한하여 外國의 下請參與分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經濟協力的 次元에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國產機資材率에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指針은 1981년 11월 16일 國內生産이 불가능하여 外資材使用이 불가피하거나 發注者가 특별히 사용할 機資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國產機資材率에 미달되어도 예외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國產機資材率도 조정되었다. 1983년 1월에는 外換管理規程上의 中長期 外貨貸出金利의 적용을 받던 外國의 下請分에 대한 金利를 協調融資分 取扱金利를 적용토록 개정하였으며 1984년 11월 5일에는 「플랜트」 契約金額이 1백만「달러」 상당액 이상인 去來만 지원할 수 있도록 支援對象 要件을 강화하였고 1985년 7월에는 일부 업종의 國產機資材率을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政府는 遊休産業設備의 海外移轉에 의한 國內産業의 직접 施設規模 유지와 競爭力 강화를 위해 1984년 12월 24일 經濟長官協議會에서 國內 遊休産業施設의 海外移轉 支援對策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韓銀은 1985년 1월 22일 遊休産業設備輸出에 대한 資金支援指針을 제정하였다.

同指針은 纖維産業設備과 合理化對象 海外建設業體가 보유하는 海外建設重裝備의 海外輸出時 基準先受金을 제외한 殘額의 70%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으며 當該 設備의 성능은 商工部長官이 지정한 韓國機械研究所가 확인토록 하였다.

〈國產機資材 使用去來 優先支援指針〉 1981년 6월 2일 延拂輸出資金 確保對策會議에서 적기 納品이 가능한 것으로 外國 輸入品과 가격수준이 같고 國際公認機關이 품질을 인정한 國產化率 50% 이상인 國產機資材가 있는 경우에는 韓銀 融資支援을 받는 延拂輸出去來에 同國產機資材를 사용토록 하라는 大統領 指示가 있었다. 이에 따라 商工部는 1981년 10월 7일 韓銀의 融資支援을 받는 輸出船舶에 國產「엔진」을 탑재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지원하도록 요청하게 되었고 1981년 11월 4일 貿易進興擴大會議에서는 造船工業의 現況과 育成對策 報告와 관련, 1984년 이후 輸出船에는 國產「디젤 엔진」을 100% 탑재할 계획을 보고하였다.

韓銀은 1981년 11월 12일, 財務部, 商工部 등 關係機關과 延拂輸出去來의 國產化率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支援方案을 협의하였으며 이듬해인 1982년 2월 12일 運營委員會의 의결을 거쳐 國產機資材 使用去來에 대한 優先支援指針을 제정하였다.

同支援指針은 國產化率이 50% 이상인 國產機資材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적정가격으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는 去來만 지원토록 하고 부득이 하여 外產機資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融資比率을 차등 적용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船舶用「엔진」만을 對象國產機資材로 정하고 있다. 融資比率은 당초 國產「엔진」사용시 70%, 예외취급시 60%를 지원토록 하던 것을 1985년 6월 26일 第36次 業務方法書 改正時 融資比率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예외취급시에는 業務方法書上의 融資比率에서 10%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변경하였다.

한편 당초의 國產機資材 使用去來 優先支援指針은 시행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예컨대 對象品目인 船舶用「엔진」의 범위와 적기공급 및 國產化率의 확인 그리고 價格水準의 해석 등에 관하여 많은 異見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輸銀은 1982년 6월 同指針에 대한 해석을 별도로 마련하여 對象「엔진」은 推進用 및 補機用「디젤 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國產化率은 韓國造船工業協會가 확인토록 하고 價格水準은 工場渡價格으로 日本등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일「엔진」機種의 輸入價格(CIF) 이내인 경우만 인정토록 하였다.

그러나 당초의 指針은 對象要件 부합「엔진」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예외 취급하여 融資比率을 差等適用(60%)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1983년 7월 12일에 要件에 부합되는 國產「엔진」이 없어 外國產「엔진」을 탑재하거나 要件에 부합되지 않는 國產「엔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輸銀支援對象으로 해석토록 변경하였다.

이어 1985년 8월 7일에는 同指針의 시행에 필요한 별도의 基準으로 國產機資材 使用去來 優先支援指針 施行基準을 제정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代替使用이 가능한 「엔진」이 國內에서 생산될 경우 이를 對象國產機資材로 인정하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85년에 이르러서는 推進用 國產「엔진」은 거의 100%가 輸出船舶에 탑재되고 있으며 補機用 國產「엔진」도 80% 이상의 높은 탑재율을 보이게 되었다.

〈海外建設工事 支援指針〉 輸銀은 1974년 12월 第1次 法改正時 支援對象技術 범위에 “海外에서 행하는 建設工事を 포함한다”고 명문화하였으며 1976년 1월 28일 臨時 運營委員會에서는 海外建設輸出 支援金融規程을 의결하여 輸銀이 1個의 金融機關과 協調融資方式으로 海外建設工事を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輸銀은 100억원, 國內 外國換銀行은 200억원의 財源을 조성, 지원키로 하

였으며 韓國銀行은 輸銀과의 協調融資을 위하여 별도의 規程(韓國輸出入銀行과의 協調融資에 의한 海外建設輸出支援資金 融資取扱要領)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國內 外國換銀行이 協調融資財源을 확보하지 못하고 海外建設業體도 外貨表示金融과 現地金融을 통한 資金調達에 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1977년 輸銀이 단독으로 지원한 大字實業의 수단 영빈관 工事와 가봉 百貨店 建設工事を 제외하고는 同規程에 의한 支援實績은 전무한 상태이었다. 더우기 1980년의 選別支援制度 도입으로 海外建設工事は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方針이 수립되면서 同規程은 사실상 死文化 되었고 1982년 2월에는 韓國銀行이 關聯規程을 폐지하였다.

그 후 輸銀은 海外建設工事は 지원하지 않는다는 方針을 견지하여 왔으나 1983년 油價下落과 이란·이라크戰爭의 지속으로 海外建設受注가 격감하고 工事代金の 支拂條件도 악화되어 先受金比率이 축소되고 工事完了후 일정기간의 延拂決濟條件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자 海外建設輸出의 지원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輸銀은 이와 같은 海外建設業界의 실정을 감안하여 1985년 1월에 海外建設工事に 대한 資金支援指針을 별도로 제정하여 海外建設業界를 지원키로 하였으나 계속되는 海外建設景氣의 침체와 이에 따른 受注不振으로 융자신청 사례는 극히 드물게 되었다.

(4) 支援對象 去來要件의 變遷

〈先受金〉 제정 당시의 業務方法書는 先受金에 대한 명확한 定義를 내리지 않고 다만 “원칙적으로 輸出價格의 100분의 20 이상이 輸出目的物の 인도완료전에 결제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1977년 1월 1일의 第14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도 “「플랜트」는 15%, 船舶은 25%, 그리고 鐵道車輛 및 기타 品目は 20%가 輸出目的物の 인도전에 입금되어야 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先受金이라는 用語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契約書上 具備要件인 先受金에 관한 내용을 信用狀上의 「레드 클로즈」(red clause)나 着手金과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게 되어 1977년 3월 31일 第16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先受金の 定義를 “去來目的物の 引渡完了時까지 수령되는 金額”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1977년 1월 1일의 第14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 「플랜트」에 대한 先受金率을 15%로 인하하고, 船舶輸出去來에 대한 先受金率을 25%로 인상한 것은 당시로서

는 技術蓄積이 미약한 「플랜트」輸出을 장려하고, 造船景氣는 好況이었으므로 船舶輸出去來는 조건이 양호한 去來를 선별 지원키 위한 것이었다.

그후 世界 造船景氣가 침체되고 이에 따라 各國의 造船所가 제시하는 先受金率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1980년 1월 18일에 業務方法書를 다시 개정하여 船舶輸出去來의 先受金率을 20%로 낮추었다. 따라서 「플랜트」輸出去來는 15%, 「플랜트」를 제외한 모든 品目の 輸出去來에 대한 先受金率은 20%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이를 “基準先受金”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機械類는 「플랜트」의 主要 構成要素이며 대단위 機械設備 輸出의 경우에는 設計, 監理 등 技術部門과 함께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 「플랜트」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OECD 「가이드라인」에서도 「플랜트」와 機械類에 대한 先受金率이 모두 15%라는 점을 감안하여 1982년 12월 1일의 第31次 業務方法書 改正時 機械類에 대한 先受金率을 15%로 인하하였다.

〈延拂金利〉 延拂金利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輸銀 設立 이전인 1975년 3월 19일 第11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 이를 6%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후 1977년 1월 1일 第14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는 이를 8%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그후 輸出者가 去來相對方으로부터 징수하는 延拂金利가 輸銀 貸出金利 이상이어야 우리 나라의 輸出者가 外國의 輸入者로부터 징수하는 延拂金利와 輸銀에 지급하는 貸出金利간의 逆金利로 인한 資金負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1979년 1월 12일의 第22次 業務方法書 改正時부터는 當該 去來의 延拂金利가 輸銀 貸出利率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延拂期間〉 輸銀 設立時에는 延拂期間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船積後金融의 융자기한만을 産業施設 10년, 船舶 8년, 鐵道車輛 5년, 自動車 3년, 기타 5년으로 한정하였는데 1977년 2월 9일 第15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 동일한 내용을 融資對象去來의 延拂期間으로 규정하였으며, 1977년 5월 2일 第17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는 支援對象品目으로 추가 지정된 部品類의 延拂期間을 규정하기 위하여 모든 品目에 대한 延拂期間을 輸出價額 1백만「달러」를 基準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한편 1979년 1월 12일 第22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는 機械類, 電氣機器의 融資比率를 인상하기 위하여 其他品目に 속해 있던 機械類, 電氣機器를 별도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延拂期間도 鐵道車輛의 경우와 같이 1백만「달러」초과시 5년, 1백만「달러」이하시 3년으로 세분하였다.

鐵道車輛의 경우는 당초 最長 5년으로 정하였으나 耐久年數가 15년이고 과거 8~13년으로 예외 취급하였으며, 평균 10~15년의 延拂期間을 허용하는 先進國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1979년 5월 15일 第23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는 「플랜트」輸出과 같이 10년, 7년으로 각각 연장하였다.

1981년 11월 7일 第30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는 機械類가 「플랜트」의 主要 構成要素임에도 「플랜트」및 鐵道車輛에 대한 延拂期間보다 짧으며 대규모 機械類 輸出의 경우에는 設計, 設置, 技術提供 등에 이르기까지 「플랜트」와 유사한 품목인 점을 감안, 「플랜트」및 鐵道車輛과 같은 기간으로 조정하였다.

1985년 12월 30일 第30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는 船舶에 대한 延拂期間을 8년에서 8.5년으로 연장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침체된 造船市況과 船舶에 대한 延拂期間은 8.5년으로 하고 있는 “OECD諒解”를 고려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延拂期間의 제한은 据置期間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重化學工業製品의 國際競爭力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1979년 1월 1일부터는 「플랜트」, 船舶, 鐵道車輛, 機械類 및 電氣機器의 경우 5년 이상의 장기 延拂輸出去來에 대하여는 引渡後 2년 이내의 据置期間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据置期間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는데, 예컨대 据置期間을 引渡後金融 取扱日로부터 當該 去來의 최초 償還日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통상 매 6개월부터 최초 상환되는 去來의 관행을 고려하여 輸出目的物의 引渡後 6개월부터 최초 償還이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1979년 5월에는 据置期間을 따로 설정하여 종전의 관행처럼 輸出目的物의 引渡後 소정 据置期間이 완료된 다음부터 매 6개월 또는 1년마다 분할상환토록 하였다.

〈支給保證〉 輸銀은 設立時부터 延拂代錢에 대한 世界 一流銀行이나 輸入國 政府機關의 支給保證書 또는 信用狀을 支援對象去來의 要件으로 정해 왔다.

그러나 輸銀의 資金支援을 받는 延拂輸出去來의 상당 부분이 開發途上國과 이루어지고 輸入者가 外國 一流銀行의 支給保證書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1977년 1월 1일부터는 輸入國 金融機關의 支給保證書도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運營委員會(1979년 8월 31일부터는 理事會)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취급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필리핀에 대한 通信「케이블」수출, 케냐의 管子음쇠 製造施設 수출, 수단의 建設工事, 가나의 船舶 및 機械類 수출 등에 대한 金融支援은 外國의 一流銀行 支給

保證이 아닌 當該國 金融機關의 支給保證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外國 一流銀行의 기준은 換去來 契約時 純資産額이 1억「달러」이상인 銀行을 A級銀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오다가 1981년에는 選別支援指針上에서 支給保證 適格銀行을 純資産 規模가 2억「달러」이상이거나 OECD國에 主事務所를 둔 銀行으로서 純資産 規模가 5천만「달러」이상인 金融機關을 一流銀行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원용하였다.

그러나 一流銀行의 기준을 純資産規模에 의해 획일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國際金融市場의 信用度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1982년 9월 17일 一流銀行의 基準을 銀行長의 決裁로 정하였다.

〈基準外資材依存率〉 一定率의 外資材依存率을 정하고 그 이상의 外資材 사용을 억제하기 시작한 것은 1976년 12월 22일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가 1977年度 韓國輸出入銀行의 資金支援基準을 의결한 때부터이다. 이때에 정한 外資材依存率은 船舶이 40% 이하, 其他品目이 30% 이하이었다. 1977년 5월 部品類가 支援對象品目으로 추가되면서 이에 대한 外資材依存率은 25% 이하로 정하였다.

한편 1978년 5월 同委員會는 1978년 輸出入銀行 運營指針에 의거 基準外資材依存率에 관한 사항을 運營委員會에 위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基準外資材依存率을 다시 정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종전의 基準外資材依存率은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우리 나라의 延拂輸出이 아직도 初期段階로서 外國 輸入者가 使用機資材를 外國產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아 시행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새로이 마련된 外資材依存率은 契約金額(FOB 價格)에서 外資材輸入額(CIF 價格)이 차지하는 百分率로 표시하였으며 船舶 56% 이하, 「플랜트」 50% 이하, 部品類 25% 이하, 其他製品 50% 이하로 정하였다.

그러나 「플랜트」의 경우, 소요 機資材를 國內에서 수출하거나 第3國에서 수입하여 現地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따라 輸入機資材를 國內에서 규제하여 外資材依存率을 산정하는 데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고, 業種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50% 이하를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1979년 6월 15일 運營委員會가 정한 「플랜트」輸出에 대한 資金支援指針에서는 「플랜트」는 業種에 따라 6~34%로 차등 적용기로 변경하였다.

船舶에 대한 基準外資材依存率은 1981년 11월 一般船舶 37%, 特殊船舶 49%로 낮아진 이후 점차 하향 조정되어 현재는 一般船舶이 25%, 特殊船舶이 35%로 되

어 있다.

이와 같이 外資材依存率을 支援對象去來의 요건으로서 규정화한 것은 1981년 11월 17일 第30次 業務方法書 改正時 外資材依存率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때부터이며, 이때 鐵道車輛에 대한 基準外資材依存率을 客車와 貨車는 40% 이하, 電動車와 「디젤」機關車는 50% 이하로 정하였다.

그후 1984년 6월 其他品目を 「콘테이너」, 鐵道用 이외의 車輛, 鐵構造物 등으로 세분하여 基準外資材依存率을 별도로 정하였다.

〈決濟通貨〉 支援對象要件에 決濟通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1975년 3월 19일 第11次 業務方法書 改正時 “輸出價額이 外換管理法上的 指定通貨로 결제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부터이다(1979년 11월 10일 第25次 業務方法書 改正時 指定領收通貨로 용어를 정리).

이는 안정성 있는 通貨로 輸出契約을 체결케 함으로써 貸出金償還時 通貨價值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당시의 貸出取扱規程 第99條(信用狀 또는 支給保證書의 具備要件)는 輸銀이 지원하는 去來의 信用狀 또는 支給保證書는 “外換管理法上的 指定領收通貨로서 銀行長이 인정하는 것”으로 결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79년 11월 16일 韓國外換銀行에 當座口座로 개설하고 있던 美「달러」, 「도이치 마르크」, 「스웨덴 크로네」 및 「사우디 리알」을 決濟通貨로 지정하고 여타 決濟通貨의 追加選定은 申請去來에 대한 貸出審査時 國際經濟與件을 감안하여 市場率이 게시되는 OECD國 通貨중에서 필요한 경우 매 件別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輸出市場이 점차 다변화되고 自國通貨로 輸入契約을 체결하려는 경향이 증대됨에 따라 1983년 2월 決濟通貨의 폭을 金融團協定上的 市場率이 고시되는 모든 通貨로 확대했으며 1984년 8월에는 金融團協定上的 告示對象 이외의 通貨라 하더라도 國內 外國換銀行에서 市場率이 게시되는 通貨에 대해서는 貸出審査時 최근 수년간의 貸出通貨에 대한 換率變動과 當該 通貨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매 件別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融資條件의 變遷

〈融資對象品目〉 輸銀法 第18條 第1項 第1號는 輸出資金貸出의 支援對象品目を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資本財, 其他 外貨獲得을 위한 海外 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현저히 기여하는 商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69년 10월 6일 공포된 同法 施行令은 支援對象品目을 産業施設(船舶, 車輛과 當該 産業施設을 위한 원료, 예비품,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과 外貨獲得을 위한 商品으로서 一般 輸出去來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品目中 財務部長官과 商工部長官이 합의하여 지정한 품목으로 규정하였다.

同法 施行令은 1975년 2월 29일의 改正을 통하여 産業施設(船舶 및 車輛 포함) 이외의 輸銀 支援對象品目は 運營委員會의 의결을 거쳐 財務部長官이 지정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財務部長官은 1975년 11월 13일 一般機械 및 機械製品, 裁縫機, 有線通信機器와 開發途上國에 대한 6월 이상 2년 이내의 短期 延拂輸出促進을 위한 잠정적인 支援品目으로서 「시멘트」, 「타이어」類, 魚網 및 線絲類 등을 지정하였으며 1977년 1월 5일에는 自動車製品 및 建設重機를 추가 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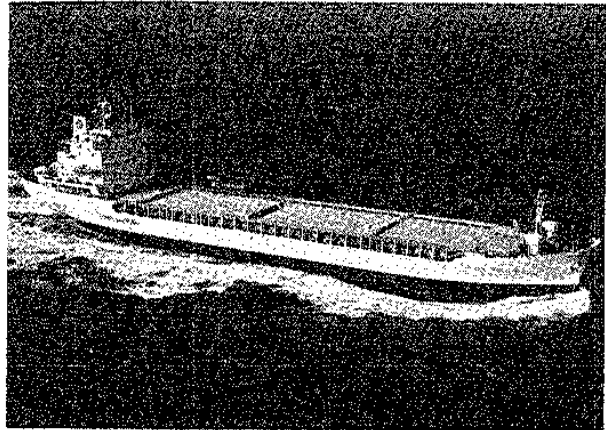
그러나 다양한 重化學製品을 열거하는 데 따른 실무상 번잡을 피하기 위해 1977년 5월 9일에는 CCCN 分類를 원용하여 支援對象品目들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였다.

당시의 指定品目は CCCN 第84類와 第85類인 機械類와 電氣機器(다만 部品類인 品目 및 가정용, 사무용, 오락용의 品目は 제외), CCCN 第87類인 鐵道車輛 이외의 車輛, CCCN 第7316號의 品目中 鐵道用「레일」및 이와 관련된 部品類이었으며 이와 같은 品目 지정과 아울러 國際競爭入札에 있어 延拂條件에 의한 輸出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資本財는 運營委員會가 의결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한편 1978년 4월 26일에는 當該 去來의 輸入者가 外國政府인 경우 對外經濟協力的 측면에서 輸銀의 支援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當該 去來의 輸入者가 外國政府인 경우로서 그 去來의 海外市場 開拓度 및 對外經濟協力 寄與度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에서 品目を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同年 5월 23일에는 CCCN 第7321號의 鐵構造物과 CCCN 第8608號의 「콘테이너」가 支援對象品目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한편 그동안은 産業施設과 「플랜트」의 用語가 혼동되어 産業施設이 「플랜트」, 船舶, 鐵道車輛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해 왔는데, 1979년 11월 10일 業務方法書의 改正으로 産業施設이란 用語를 「플랜트」로 변경하였다.

한편 「콘테이너」는 支援對象品目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同品目を 延拂金融으로 지원하는 경우 기존 輸出市場 秩序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韓國 「콘테이너」工



최초의 輸銀支援 輸出 船舶
(1975년 融資承認, 스웨덴)

業會의 요청에 따라 1980년 9월 5일 「콘테이너」에 대한 지원을 보류키로 方針을 정하였으며 그 후 輸出與件이 악화되어 1983년 延拂期間 2년 이내의 去來는 잠정적으로 지원키로 하였다가 1984년 이후 「콘테이너」市場이 다시 호전되면서 「콘테이너」輸出은 轉貸資金에 한하여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船舶의 修理 및 改造는 1980년 5월까지는 技術提供資金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船舶의 建造와 동일한 정도의 설계를 요하며 상당한 資材가 투입되는 등 工程의 복잡성이 新造工事와 유사하므로 1980년 2월 27일 融資審議委員會의 의결을 거쳐 船舶輸出去來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支援船舶의 범위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1981년 11월 16일 船舶에 대한 基準外資材依存率 변경시 多目的貨物船(multipurpose cargo ship), 一般貨物船(general cargo ship), 「콘테이너」船, 撒物船(bulk carrier) 등, CCCN 第8090號인 一般船舶과 이에 속하지 않는 特殊船舶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特殊船舶의 경우에는 輸銀이 船舶으로 지원키 곤란한 종류도 있었으므로 1984년 12월 11일 特殊般船舶類에 대한 對象品目 區分基準을 다시 마련하였다.

同基準은 遠距離 自航能力과 경제적 목적을 기준으로 支援對象 特殊船舶을 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종래 船舶으로 지원하던 海洋試錐設備는 「플랜트」로 지원케 되었다.

〈融資比率〉 輸銀 設立時의 融資比率를 보면 引渡前金融(당시는 船積前金融)은 契約金額에서 既決濟된 금액을 공제한 殘額의 90%중 실제 所要資金을 지원토록 하고 引渡後金融(당시는 船積後金融)은 契約金額에서 輸出目的物의 引渡時까지 結濟된 금액을 공제한 殘額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였다.

그러나 1977년 1월 1일부터는 品目別로 이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는바, 引渡前金融은 契約金額에서 既受領한 금액을 공제한 殘額에 대하여, 引渡後金融은 契約金

額에서 基準先受金을 공제한 殘額에 대하여, 그리고 「플랜트」 및 船舶은 80% 機械類, 鐵道車輛과 其他製品은 75%로 정하였으며 同年 5월 部品類가 融資對象品目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融資比率을 70%로 정하였다.

한편 1977년 3월에는 引渡後金融의 融資比率 算定方式이 변경되었는데 종전까지는 契約額에서 基準先受金을 공제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나 引渡前金融이 既受領 先受金 控除方式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引渡後金融의 算定方式도 實受領 先受金 控除方式을 택하도록 하였다.

1979년 1월에는 추가 지정된 機械類 및 電氣機器와 鐵道車輛 이외의 車輛에 대한 融資比率을 책정하고 産業施設, 船舶, 鐵道車輛에 대한 融資比率을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産業施設, 船舶, 鐵道車輛, 機械類 및 電氣機器에 대한 引渡前·後金融의 融資比率은 契約額에서 既受領 先受金을 공제한 殘額의 90%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鐵道車輛 이외의 車輛에 대한 引渡前·後金融의 融資比率은 70% 이내로 정하였다.

1979년 11월 10일 第25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는 引渡前金融의 元貨表示 融資時 적용될 換率을 一覽出給換어음 買入率로 정하였다. 그러나 一覽出給換어음 買入率은 輸銀內國信用狀 受惠者에 대한 支援時 換差問題가 발생하였고 內國人間의 決濟에 一覽出給換어음 買入率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 있었으므로 1980년 1월 業務方法書의 改正을 통하여 電信換 買入率로 변경하였다. 이때에 引渡後金融의 融資金額 산정방식을 既受領 先受金 공제방식을 유지하되 既受領 先受金이 基準先受金에 미달될 경우에는 基準先受金을 공제토록 함으로써 基準先受金을 融資金額 산정시의 하한선으로 정했으며 協調融資의 실시에 따라 「플랜트」, 船舶, 鐵道車輛, 機械類 및 電氣機器의 融資比率을 90%에서 80%로 인하하였다.

1980년 7월에는 協調融資制度가 본격화됨에 따라 引渡後金融의 融資比率을 品目에 따른 구분없이 70%로 조정하였고 1981년 2월 6일 第28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는 基準先受金 공제방식을 택하도록 개정하여 基準先受金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큼 協調融資金額을 감소시켜 基準先受金 超過受領을 유도하였다.

한편 1979년 下半期 이래 船舶延拂輸出去來가 호조를 보이면서 輸銀資金 需要가 급증하게 되자 選別支援을 강화하여 資金所要를 일부 절감하였으며 1981년 11월 17일 第30次 業務方法書의 改正을 통하여 引渡前金融의 融資比率 算定方式을 既受領 先受金 공제방식에서 契約書上 先受金 공제방식으로 변경하였다.

1983년부터는 政府의 中小企業育成施策에 부응하여 中小企業支援을 위한 制度

改善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中小企業의 海外投資支援과 延拂輸出을 통한 海外進出 지원을 들 수 있는데 中小企業의 延拂輸出을 적극 지원키 위한 試案으로 資金力이 약한 中小企業의 製作資金 지원을 위해 1984년 3월 中小企業이 제작, 수출하는 部品類, 鐵道用 이외의 車輛 및 기타 品目の 引渡前金融 融資比率을 90%로 인상하였다.

1985년 6월에는 世界 造船景氣의 不況과 관련, 引渡前金融의 融資比率을 契約書上 先受金 控除方式에서 다시 實受領 先受金 控除方式으로 전환하고 引渡後金融의 融資比率을 70%에서 85%로 확대하였다.

同年 8월에는 協調融資가 곤란한 中小企業과 低金利通貨 去來를 위하여 中小企業 및 低金利通貨表示 貸出의 경우 引渡前金融은 國內外 所要資金을 모두 지원하고 引渡後金融은 契約金額에서 基準先受金을 공제한 金額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輸銀資金만으로 延拂輸出去來가 가능토록 하였다.

〈融資期間〉 1976년 8월 2일의 第13次 業務方法書 改訂을 통해 引渡前金融의 融資期間은 輸出契約 發效時부터 輸出目的物の 引渡期日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고, 引渡後金融의 融資期間은 輸出目的物の 引渡完了時부터 當該 去來의 支給保證書, 信用狀 또는 契約書에 約定된 分割償還期日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支援對象 要件으로서 延拂期間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引渡前·後金融을 통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品目別 融資期間에 제한이 없었으며, 다만 支援金利를 期間別로 차등 적용하고 있었다.

融資期間을 品目別로 구별하지 않은 것은 當該 品目の 내구성, 생산성,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1977년 1월 第14次 業務方法書 改正時 引渡後金融의 融資期間을 品目에 따라 3~10년으로 구분, 적용하였다.

이어 1977년 2월의 第15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는 동일한 내용을 支援對象 要件인 延拂期間으로 정하고 引渡後金融의 融資期間을 “關係契約書에 約定된 分割償還計劃의 分割償還日에 30일을 가산한 期間內”로 변경하였다. 分割償還日에 30일을 가산한 것은 當該 延拂代金の 입금절차, 우편기일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한편 1979년에 이르러서는 延拂期間이 8~10년에 이르는 長期去來가 많아짐에 따라 1979년 5월 15일 第23次 業務方法書 改正을 통해 融資期間 通算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融資期間 10년 制限規定이 引渡後金融에 개별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1981년 2월 6일 第28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는 引渡前·後金融이 融資形式, 支援金利, 利子徵收方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하여도 이는 동일 去來에 대한 연속적인 金融이라는 점에서 引渡前·後金融의 融資期間을 통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다시 引渡前·後金融의 融資期間을 통산하도록 개정하였다.

한편 「플랜트」와 이에 수반하는 機械類 또는 鐵道車輛은 통상의 延拂期間이 10년이었으므로 引渡前金融과 引渡後金融을 통산하면 10년을 초과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으며 따라서 매 去來마다 運營委員會의 의결을 받아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運營委員會는 1981년 3월 6일 輸出資金貸出등의 償還期間과 債務保證期間에 대한 例外取扱基準을 제정하여 「플랜트」, 機械類 또는 鐵道車輛의 輸出去來는 引渡前·後金融의 通算期間이 製作期間만큼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理事會가 이를 승인토록 위임하였으며 1985년 8월에는 造船景氣가 침체되어 既發注한 船舶의 引受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船舶輸出의 경우도 引渡前金融 融資期間 延長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理事會가 승인토록 조치하였다.

〈貸出金利〉 輸銀 設立 직후인 1976년 8월의 貸出金利는 船積前金融의 生産·集荷資金(원貨)은 연 8%, 輸入資金(外貨)은 外貨獲得用 輸入原資材 貸出金利가 적용되었으며 船積後金融은 融資期間別로 8~9% 내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었다.

당시 韓銀總裁가 고시하는 外貨獲得用 輸入原資材 貸出金利는 「리보」+2.5%이었으므로 輸銀의 船積前金融중 外資材 輸入資金 해당분은 同金利가 적용되었으나 1977년 1월 1일부터는 이에 대한 金利를 外換管理規程에서 정한 基準金利 범위내에서 銀行長이 결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리보」+2%로 인하하여 短期 輸出金融의 外貨貸出金利 水準과 일치시켰다.

1976년 8월 第3次 業務方法書 改正時の 貸出金利 조정은 당시의 與受信金利의 일부 조정과 金利構造의 전반적인 개편조치에 부응하여 韓國外換銀行의 業務代行期에 적용하던 연 7%의 金利를 인상한 것이었다. 그러나 輸銀業務가 草創期에 있고 重化學工業 製品의 輸出増大를 위하여는 金融條件의 일부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1977년 2월에 다시 業務方法書를 개정하여 전체적인 金利體系는 유지하되 1977년과 1978년중 融資承認이 이루어지는 去來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잠정적으로 연 7%의 金利를 적용하고 이미 승인된 去來도 次期 利子支給日로부터 償還이 완료될 때까지 연 7%의 金利를 적용키로 하였다.

이와 같은 暫定金利의 적용은 1979년까지 연장되었는데 1980년에 이르러서는 國

際金融市場의 金利가 高金利 趨勢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輸銀의 資金調達費用이 증가함에 따라 貸出金利의 引上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1980년 1월 18일 第26次 業務方法書 改正을 통하여 전반적인 金利調整을 단행하였는바 종전의 暫定金利 적용은 1980년 1월 18일 이전에 승인된 것에 한하기로 하고 引渡前金融은 元貨所要資金은 연 8%, 外貨所要資金은 外國換管理規程에서 정한 中長期 外貨資金의 基準金利를 적용하며 引渡後金融은 기간에 관한 구분없이 연 8%를 적용하되 強勢通貨表示로 용자하는 경우에는 當該 通貨의 國際金利 水準을 감안하여 運營委員會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國際 高金利 趨勢는 1981년에도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OECD 「가이드 라인」상의 金利가 연 2.25% 내지 2.5%가 인상되었고 주요 競爭相對國도 輸出支援金利를 인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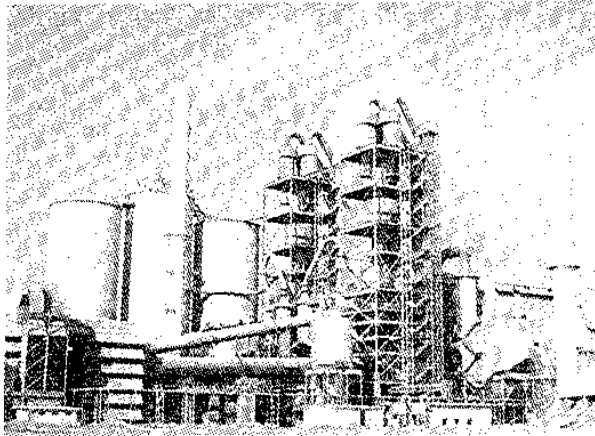
반면 輸銀은 資金調達費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收支가 악화되어 45억원의 政府利差補填을 제상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1981년 11월 支援金利를 연 8%에서 9%로 인상하였다.

1984년 11월까지의 單一 固定金利를 적용했는데 이는 去來의 特性, 去來相對國의 經濟事情 및 輸出目的物의 差異를 고려치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國內外 經濟與件의 變化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業務方法書上에 適用金利를 명시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支援金利가 노출되고 필요시 改正 節次도 번거롭기 때문에 業務方法書에는 基準金利만을 정하고 實際 適用되는 利率은 理事會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이에 따라 1984년 11월 5일 業務方法書를 개정하여 業務方法書上에는 “연 9% 내지 연 10%의 범위내에서 理事會가 정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1984년부터 시작된 韓·美間의 貿易紛糾과 1985년 輸銀이 지원한 對美 海上試錐設備에 대한 相計關稅 提訴件이 輸銀의 金利를 OECD 「가이드 라인」金利 또는 實質借入金利 水準으로 매 6개월마다 조정하는 방향으로 韓·美間에 타결을 보게 됨에 따라 1985년 8월 31일 OECD國家에 대한 貸出實行利率을 實質借入金利 水準인 연 10.60%(5년 이하 去來), 연 11.15%(5년 초과 去來)로 각각 조정하였다.

한편 世界經濟의 침체와 海運市場의 불황으로 新造船 受注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자 1985년 8월에는 業務方法書上의 基準金利를 9%에서 8%로 인하하고 船舶에 대한 引渡後金融과 實行利率을 연 8%로 인하, 조정하였다.

이어 1986년 2월 15일에는 韓·美間의 합의에 따라 輸銀 金利의 조정이 예정되



시멘트 「플랜트」輸出
(1978년 融資承認, 사우디아라비아)

어 있었는데 OECD 「가이드라인」金利가 高所得國과 中小所得國에 대해서는 다소 불리하나 低所得國의金利는 연 8.8%로서 輸銀 實質借入金利보다 낮은水準이었으므로 船舶 이외의 品目에 대한 引渡後金融金利를 OECD 「가이드라인」金利에 일치시켰다.

〈約定手數料〉 輸銀이 約定手數料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設立 직후인 1976년 8월 2일부터이며 당시의 約定手數料率은 0.25%이었다. 徵收對象이 되는 金額은 融資承認日로부터 실제 與信이 집행되는 날까지의 未執行 殘額으로 하였으며 船積前・後金融으로 구분하여 승인되는 경우에는 船積後金融 承認額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施行過程에서 船積前金融 承認額이 船積後金融 承認額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하여 1977년 1월 1일부터는 業務方法書를 개정하여 船積前・後金融중 큰 金額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輸出者로서는 約定手數料의 부담에 따라 契約金額이 큰 延拂輸出의 경우

〈表 3-3-1〉

品目別 輸出資金 貸出承認實績

		1976 ²⁾		1977		1978		1979		1980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輸出資金 ¹⁾	플랜트			2	6,911	2	173,930	4	11,050	7	135,753
	船舶	1	11,394	8	208,399	2	47,409	26	743,074	12	235,901
	鐵道車輛							1	3,610	1	3,895
	機械類・其他	3	525	4	2,791	6	26,165	4	9,083	5	4,944
	合 計	4	11,919	14	218,101	10	247,504	35	766,817	25	380,493
技術提供資金				4	19,878	3	7,822			1	349

註：1) 直接貸出 取扱分은 제외

2) 7월 1일~12월 31일

상당한 資金壓迫을 받게 되어 受注競争時 저해요인이 되고 있었으므로 1979년 1월 1일부터 供給者信用의 경우에는 約定手數料를 면제키로 하였다.

이후 約定手數料는 購買者信用의 경우에만 적용되었는데 1980년 이후 世界 造船 景氣의 회복에 따라 受注量이 증가하였고 國內造船所는 受注量 확보와 受注競争을 의식하여 실제 工程期間에 앞서 미리 輸出契約을 체결하고 輸銀資金支援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되어 이와 같은 先契約締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約定手數料의 징수가 다시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1981년 2월 6일 第28次 業務方法書 改正을 통하여 供給者信用의 경우에도 約定手數料를 다시 징수키로 하였으며 約定手數料率은 종전보다 높은 연 0.5%를 적용하게 되었다.

輸出資金 支援實績

輸出資金貸出은 輸銀資金支援의 大宗을 이루어 왔는데 設立 이후 總承認實績의 약 90%를 輸出資金貸出이 차지하였다.

輸出資金貸出 承認實績을 品目別로 보면 船舶이 전체의 76.5%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플랜트」가 22.0%, 機械類 및 기타가 1.5%의 비중을 나타냈다. 輸出資金 貸出承認이 船舶輸出去來에 편중되었던 것은 「플랜트」, 機械類의 實物去來가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인데 최근에 와서는 「플랜트」 輸出支援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受注內容도 火力發電設備, 海上石油試錐 및 生産設備 등으로 大型化, 多樣化되고 있다.

設立 이래 輸出資金 貸出承認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地域은 유럽으로서 전체의 33.4%를 차지했으며 東南亞地域이 22.4%, 北美地域이 20.5%를 나타

(단위: 천「달러」)

1981		1982		1983		1984		1985		合 計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9	245,430	3	58,362	6	85,513	10	217,690	8	371,059	51	1,305,698
24	508,883	20	613,351	28	552,222	60	1,135,128	22	475,599	203	4,531,360
								2	6,337	4	13,842
7	10,678	5	9,599	3	8,360	2	898			39	73,043
40	764,991	28	681,312	37	646,095	72	1,353,716	32	852,995	297	5,923,943
		1	1,542							9	29,591

냈다. 유럽地域의 비중이 특히 높았던 것은 同地域에 대한 船舶輸出去來가 많았던 까닭이며 東南亞地域은 1981년 이후 船舶 및 「플랜트」輸出 증대로 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北美地域은 1984년 이후 「플랜트」輸出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는 同地域에 대한 海上試錐設備의 輸出이 증가한 때문이다.

3. 直接貸出 및 轉貸資金의 支援

直接貸出

(1) 直接貸出의 概要

直接貸出은 우리 나라로부터 資本財 또는 技術을 도입하려는 外國의 購買者에게 輸銀이 필요한 資金을 대여하여 주는 制度이다. 이 制度는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轉貸資金貸出과 함께 購買者信用制度의 일종으로서 供給者信用制度에 대응되는 概念이다.

美國, 英國 등을 비롯한 歐美先進國의 輸出支援金融機關에서는 購買者信用方式에 의한 延拂輸出이 輸出支援金融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日本輸出入銀行의 경우에는 總貸出額의 약 30%가 購買者信用方式에 의한 金融支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輸銀의 輸出支援金融은 대부분 供給者信用方式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重工業製品의 輸出去來가 다양해지고 輸入國의 對外利子支給에 대한 稅制惠澤등에 따른 選好增加에 따라 購買者信用의 公여가 점차 증가되어 왔다.

(2) 直接貸出制度和 供給者信用制度

直接貸出制度和 供給者信用制度는 容子절차와 내용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데 이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國內輸出者의 입장에서 보면, 供給者信用方式에 의하는 경우 借主는 輸出者가 되므로 延拂輸出을 위한 借入金이 輸出者의 財務諸表上에 長期固定負債로 나타남에 반하여 購買者信用方式에 의하는 경우 海外購買者가 직접 借主가 되고 輸出者는 輸出目的物引渡時까지 輸出代錢의 全額을 지급받게 되는 一覽拂輸出去來方式이 되므로 輸出者의 財務構造가 개선된다. 한편, 購買者信用方式에 의하는 경우에는 融資에 수반되는 債權保全 및 貸出金回收 등 모든 책임이 輸銀에 귀속되므로 輸出者는 아무런 부담없이 輸出契約의 이행에 전념할 수 있다.

다음으로 購買者의 입장에서 輸銀으로부터의 直接貸出方式에 의한 輸入은 일종의 公共借款의 도입이 되어 自國내의 稅制에 따라서는 源泉稅등의 免除惠擇이 주어지게 되므로 그만큼 購買費用이 경감된다. 또한 輸出者에 대하여는 現金購買와 같은 성격이므로 購買者는 價格協商등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輸銀의 입장에서 볼 때는, 輸銀이 직접 外國의 借主와 融資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므로 世界一流銀行의 支給保證등 輸銀이 요구하는 融資條件에 따라 融資協定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債權保全에 보다 철저를 기할 수 있고 外國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分에 대한 債務保證의 부담이 없다.

(3) 直接貸出制度의 變遷

1978년 8월 31일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는 第10次 會議에서 ①1978년중 잠정조치로서 輸銀이 50백만「달러」범위내에서 輸入國金融機關에 대하여 1년 초과 3년 이내의 短期轉貸資金을 공여할 수 있도록 하며 外國의 對韓國 資本財購買者에 대한 直接借款을 공여할 수 있도록 하고 ②이를 위해 輸銀을 對外購買者信用供與 取扱專擔銀行으로 체제를 정비하여 1979년 이후 同業務를 취급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輸銀은 1978년 10월 購買者信用을 취급하기 위한 사전준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업무의 습득을 위해 職員을 美國 및 英國의 有關金融機關에 파견하는 한편, 同業務 取扱을 위한 업무분장등의 준비기간을 거친후 美國輸出入銀行, 英國輸出信用保證局(ECGD) 및 日本輸出入銀行 등의 購買者信用制度를 「모델」로 하여 1979년 8월 22일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直接貸出 基本運營規程을 제정했으며 그해 9월 20일에는 同取扱規程을, 그리고 11월 19일에는 標準融資協定書 樣式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후 同規程은 輸出資金貸出에 대한 融資條件 및 節次 등이 변경될 때 그에 준하여 개정되어 왔다. 다만 融資金利에 대해서는 基本運營規程 제정당시 연 8.5% 이상에서 輸出資金貸出 引渡後金融의 合成金利水準을 감안하여 理事會가 정하게 되어 있었으나, 1982년 3월 6일 同規程 2次 改正時 輸出資金 引渡後金融利率 이상에서 理事會가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1984년 11월 5일 同規程 7次 改正時 輸出資金 貸出利率 범위내에서 理事會가 實行利率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第35次 業務方法書의 개정으로 輸出資金貸出利率이 종전의 單一基準金利에서 일정범위의 基準金利로 변경된 데 기인한 것이다. 直接貸出의 實行利率은 轉貸資金 貸出利率과 마찬가지로 同規程 제정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輸出資金 引渡後

〈表 3-3-2〉

直接貸出 承認實績

(1985. 12. 31 현재)

(단위 : 천「달러」)

承認日字	輸入國	目的物	契約額	融資承認額
1979. 11. 21	노르웨이	Chemical Tanker 6隻	144,000	81,000
1980. 2. 9	아 이 터	Bus 50臺	1,570	1,335
1980. 12. 19	파 라 과 이	Truck 250臺	1,250	1,000
1981. 3. 12	英 國	Bulk Carrier 1隻	37,900	21,224
1981. 7. 8	泰 國	送電用鐵塔	3,790	2,122
1982. 9. 7	英 國	Ro-Ro船 1隻	70,192	39,308
1982. 11. 2	英 國	Container船 1隻	39,000	21,840
1982. 11. 12	印 度	Water Injection Well Platform	35,435	19,844
1983. 6. 14	印 度	Win Process Platform Project	130,976	77,931
1983. 8. 2	英 國	Bulk Carrier 3隻	62,496	34,998
合 計			526,609	300,602

金融利率과 國際金利水準 등을 감안하여 理事會에서 결정하였는바, 통상 輸出資金
引渡後金融利率보다 0.5% 높게 책정되어 借主에게 약간 불리하였으나 1985년 8월
31일 同規程 9次 改正 이후 輸出資金貸出利率과 동일하게 적용해오고 있다.

(4) 直接貸出 支援實績

輸銀이 直接貸出制度를 도입한 후 1985년말까지 취급한 貸出件數는 모두 10件으
로 貸出 관련 去來의 總輸出契約額은 527백만「달러」, 貸出承認額은 總 301백만「달
러」로서 輸銀總貸出承認額의 4.4%를 기록하였다.

輸銀이 최초로 취급한 直接貸出은 1979년 11월 21일 承認(承認額 81백만「달러」)
된 大韓造船公社의 32,000DWT級 液體化學製品 運搬船(chemical tanker) 6隻
(輸出契約額, 隻當 24백만「달러」, 合計 144백만「달러」) 輸出支援을 위한 라이베리
아의 Stolt Falcon社의 5個社(各社가 1隻씩 購入)에 대한 貸出이다. 이들 借主社
는 세계 최대의 便宜置籍國인 라이베리아에 便宜置籍하기 위하여 노르웨이의 特殊
貨物輸送 專門海運會社인 Stolt Nielsen 「그룹」이 라이베리아에 설립한 회사들이
므로 實船主이자 實際借主는 Stolt Nielsen 「그룹」이었다. 따라서 直接貸出의 형
식상의 受惠國인 라이베리아의 경제적 효과는 會社 및 船舶의 登録手數料, 「톤」稅
등의 징수 등에 그쳤으나 우리 나라로서는 최초로 巨額의 輸出去來를 直接貸出方
式으로 성사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

당초 同去來는 1975년 10월 10일 大韓造船公社가 傭船主인 Stolt Nielsen 「그

롭」과 長期傭船契約에 의거, 傭船用 船舶을 건조, 수출하기 위한 去來로 輸銀이 大韓造船公社에 대해 海外投資資金貸出을 승인하였으나 그후 大韓造船公社가 同船舶을 傭船主에 매각하게 됨에 따라 Stolt Nielsen 「그룹」에 대한 直接貸出로 전환하게 되었다. 同去來支援과 관련해서는 大韓造船公社가 제공한 擔保의 實效價値 부족 및 傭船料收入의 불확실성 등으로 債權保全上 문제가 없지 않았으나 直接貸出로 변경됨에 따라 世界一流銀行이 支給保證을 하게 되어 對外債權保全이 확실하게 되었다. 또 輸出者인 大韓造船公社는 당초 輸出代錢을 延拂條件으로 수령하게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資金負擔을 갖게 되었으나 同船舶의 購買者가 直接 借主가 됨과 동시에 輸銀의 既貸出金은 輸出者인 大韓造船公社의 輸銀에 대한 負債償還에 충당하여 輸出者の 財務構造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상기 去來는 輸出者の 財務構造改善을 위해 추진된 去來로 볼 수 있는데 이 밖에 輸入國의 稅制上 受惠, 政府機關 發注事業 등의 이유로 購買者가 특별히 直接貸出方式을 요구한 去來가 적지 않다.

먼저 購買者가 自國의 稅制上 惠澤을 받고자 추진된 直接貸出로는 對英國 船舶 輸出 5件(7隻)을 들 수 있는데, 이중 제일 먼저 취급된 去來는 1981년 3월 12일 承認(承認金額 21,224천「달러」)된 (株)大字의 140,000DWT級 撒物船(bulk carrier) 1隻(輸出契約額 37,900천「달러」)의 輸出支援을 위한 Ben Line Steamers Ltd.에 대한 대출이다. 借主인 Ben Line Steamers Ltd.는 韓國船舶을 최초로 구매하는 英國의 海運會社로서 당시 세계적 石炭需要增大에 따른 石炭運搬船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음을 볼 때 英國등 海運國에 대한 市場開拓效果가 컸던 去來였다. 英國은 設備投資促進을 위하여 船舶, 機械 및 「플랜트」 등에 대한 資本的 支出이 발생하고 그 支出이 발생한 會計期間중에 所有權이 購買者에게 이전될 경우 同會計期間의 法人稅算定時 支出金額의 100%까지를 營業所得으로부터 공제해 주었으며 특히 新造船舶購買時 支出金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2년간 移延시킬 수 있는 稅制上的 혜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資本的 支出이 營業所得을 초과하는 경우 그 差額을 營業損失로 인정하여 同損失을 다음 會計期間으로 移延시키거나 그 損失을 초래한 기간만큼 過去 會計期間으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한 法人의 損失은 그 法人이 속한 「그룹」全體의 利益으로부터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英國所在의 海運會社가 船舶을 구매하는 경우 供給者信用보다는 直接貸出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後續去來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政府機關發注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된 直接貸出로는 對印度 「플랜트」輸出 2



아이티 Valiores Auto Sales S.A.社 앞
直接貸出 供與協定 체결
(1980. 2. 9)

件을 비롯하여 對아이티 車輛輸出, 對泰國 送電用鐵塔輸出 去來를 들 수 있다. 1982년 11월 12일 輸銀이 승인한 Water Injection Well Platform의 輸出(契約額 35,435천「달러」)支援을 위하여 印度의 Oil & Natural Gas Commission(ONGC)에 대한 直接貸出(承認額 19,844천「달러」)件을 살펴 보면 동「프로젝트」는 정류된 海水를 海底地盤內에 주입하여 地盤內의 압력을 높혀줌으로써 原油 및 天然「가스」의 채취를 용이하게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海洋設備로서 海洋開發事業의 하나인 Bombay High 海域開發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된 去來였다. 借主인 ONGC는 印度全域의 石油 및 天然「가스」資源開發을 목적으로 1959년 國營會社로 설립되어 1960년부터 內陸의 油田開發에 착수하여 생산을 개시한 이래 1970년에는 海洋開發에도 눈을 돌려 1976년 Bombay High 海域에서 최초의 海洋石油生産을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現代重工業(株)는 1976년 이래 大型「탱크 터미널」 및 offshore platform 등 海洋「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ONGC의 海洋油田 관련 대규모 개발계획에 비추어 볼 때 동「프로젝트」支援으로 계속적인 海洋設備의 對印度 輸出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株)大字의 「버스」 50臺 輸出支援을 위한 아이티의 Valiores Auto Sales S.A.社에 대한 直接貸出은 비록 소규모 거래이긴 하였으나 去來目的物の 높은 國產化率로 外貨稼得率이 높았으며, 무엇보다도 아이티의 大衆交通手段 現代化에 기여함으로써 兩國間の 經濟協力關係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종래까지 아이티는 정상적인 대중교통수단이 없이 「픽업」등이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교통수단의 현대화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높았고 同國 大統領도 이를 개선키로 공약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大衆交通手段의 現代化라는 절실한 요청에 부응하여 이루어진 同直接貸出은 輸入者인 Valiores Auto Sales S.A.社가 借主이나 同社는 輸入「버스」全量을 政府에 납품함으로써 同國과의 經濟協力을 더욱 강화하고 더 나아가 餘他開發途上國에 대한 車輛輸出을

증대할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轉貸資金

(1) 轉貸資金의 概要

輸銀이 취급하고 있는 轉貸資金은 開發途上國 및 OECD會員國중 開發途上國 수준에 있는 국가에 대한 소규모 資本財輸出을 촉진하기 위하여 輸入者 去來銀行인 신용있는 金融機關(中央銀行포함)에 輸銀이 與信限度(credit line)를 설정하고, 同借主銀行으로 하여금 同資金의 最終受惠者인 自國내의 韓國資本財 輸入者에게 資金을 전대토록 하는 輸出金融支援制度로서 일종의 購買者信用이며 商品借款供與制度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轉貸資金貸出의 借主는 輸入國의 金融機關이 되므로 우리 나라의 輸出者는 物品의 引渡時까지 輸出代錢을 전액 회수하는 반면에 輸銀은 借主銀行으로부터 貸出金を 延拂로 회수하게 된다. 한편 輸入者는 輸入物品代錢을 自國의 借主銀行에 延拂로 상환하게 된다. 轉貸資金貸出은 對開發途上國 輸出에 주안점을 둔 商品借款 즉 「타이드 론」(tied loan)이라는 점에서 용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임팩트 론」(impact loan)과 다르며, 輸出去來를 지원하는 有償借款인 점에서 원조적 성격을 가진 經濟協力資金과도 구분된다.

이와 같이 볼 때 轉貸資金貸出은 金融供與가 실무적으로 곤란한 소규모 資本財 去來의 원활한 輸出支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資本財의 中長期 延拂去來를 지원하는 直接貸出 및 輸出資金貸出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2) 轉貸資金貸出制度의 變遷

1970년대 후반기 이후 開發途上國으로부터 耐久性消費財와 小型資本財의 延拂 輸入需要가 증대됨에 따라 輸入者에 대한 信用供與形態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財務部는 1978년 3월 31일자 對開發途上國 中長期延拂輸出支援措置를 결정하고 對開發途上國 輸出促進政策의 일환으로 開發途上國을 대상으로 輸銀이 轉貸資金貸出業務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輸銀은 1978년 4월 14일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轉貸資金 取扱規程을 제정하고 이어 6월 16일에는 外國金融機關앞 轉貸資金 取扱에 대한 基本運營方針

을 마련하였는데 그 主要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對韓延拂輸入決濟資金(法 第8條 第1項 第8號)으로서 OECD會員國을 제외한 開發途上國의 신용있는 金融機關에게 國別 10백만「달러」, 借主別 5백만「달러」 범위내에서 年利率 7~9%, 1년 초과 3년 이내로 융자한다. 둘째, 融資對象品目は 가공처리하지 아니한 1次產品을 제외한 品目중에서 輸銀運營委員會에서 선정한 品目으로 하고 韓國銀行 保有外換 50백만「달러」를 同融資金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한편 財務部の 同支援措置가 1978년 12월 21일자로 일부 변경됨에 따라 輸銀은 그 변경내용에 맞추어 OECD會員國中 開發途上國 水準에 있는 국가를 融資對象國에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시켰고, 支援對象品目이 資本財로서 銀行長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融資期間을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融資期間 3년까지는 韓國銀行 保有外換으로, 3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輸銀 自體造成資金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1978년 12월 29일자로 上記 規程을 개정하였다.

1980년 2월 5일에는 上記 基本運營方針 및 取扱規程을 폐지하고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轉貸資金貸出 基本運營規程과 同取扱規程을 새로 마련했는데, 이는 同基本運營方針이 체제상 餘他規程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支援對象品目이 大統領令 및 財務部長官 指定品目으로 축소, 조정되었고 業務方法書上的 貸出金利가 조정됨에 따라 그 制度의 개편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주요 변경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支援體制를 直接貸出에 준하여 조정하고 法 第18條 第1項 第8號 資金에서 同第3號 資金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融資承認節次를 與信限度設定段階와 融資承認段階로 二元化하고 매 輸出契約別로 승인을 받도록 하여 個別支出別로 償還期間을 따로 인정토록 하였다. 셋째, 한정된 輸出支援資金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支援對象品目の 범위를 축소하여 輸出資金貸出의 支援對象品目과 같게 했다. 넷째, 支援對象品目を 資本財로 제한함에 따라 先受金(輸出契約額の 10% 이상) 要件을 신설하였고, 融資金의 償還期間을 品目別, 輸出價額別로 2~5년에서 차등 적용하며, 外資材依存率要件도 輸出資金貸出과 같도록 규정하였다. 다섯째, 與信限度는 1個國 10백만「달러」, 1個銀行 5백만「달러」 원칙에서 1個國 10백만「달러」, 1個銀行 3백만「달러」로 조정하였으며 融資金利도 종래의 연 7~9% 범위내에서 정하던 것을 연 8.5% 이상에서 輸出資金 引渡後金融의 合成金利水準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변경하였다.

그후 1981년 3월 및 11월에는 上記 基本運營規程이 다시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主要内容은 ①與信限度 供與對象機關이 종전에는 對象國金融機關으로 제한되었으나, 償還危險을 경감시키고 先進國 金融機關의 전세계적인 支店網을 활용키 위하여 借主銀行을 對象國에 소재하는 金融機關으로 확대하고 ②輸銀支援資金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輸出資金貸出 및 直接貸出의 基準先受金率이나 主要 外國輸出 入銀行과의 行평을 고려하여 先受金率을 종전의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③機械類에 대한 融資金 償還期間이 1백만「달러」이내인 경우 3년 이내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플랜트」 및 鐵道車輛과 같이 5년으로 연장하는 동시에 基準外資材依存率도 輸出資金支援品目과 같도록 조정하였고 ④貸出金利도 輸出資金 引渡後金融의 合成金利水準을 감안하여 理事會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輸出資金 引渡後金融 貸出利率 이상에서 정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1984년 11월 基本運營規程의 3次 改正時에는 轉貸借款의 명칭을 轉貸資金 貸出로 바꾸고 貸出金利도 輸出資金 貸出利率 범위내에서 理事會가 정하도록 변경하였다. 上記 用語의 변경은 同支援制度가 대외적으로 低開發國에 원조적 성격을 가진 借款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融資金利算定方法의 변경은 第35次 業務方法書의 改正으로 輸出資金 貸出利率이 종전의 單一基準金利에서 일정범위내의 基準金利로 변경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였다. 基本運營規程 改正 이후 貸出實行利率은 直接貸出과 마찬가지로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輸出資金 貸出利率과 國際金利水準을 감안하여 별도로 理事會에서 정해 왔었으나 1985년 8월 31일부터는 輸出資金 貸出利率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同取扱規程은 輸出資金貸出 또는 直接貸出 規定에 맞추어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보완되어오다 1984년 2월 轉貸資金貸出 업무처리의 신속 및 간소화를 목적으로 대폭 개정되었는바, 그 改正要旨는 다음과 같다.

첫째, 輸銀과 借主銀行間에 합의한 與信限度設定協定書案은 理事會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直接貸出 取扱規程에서와 같이 理事會는 主要融資條件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協定書案을 銀行長이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先行條件書類의 徵求時期에 대하여 融資金의 최초 支給에 앞서 이를 징구하게 되어 있었는바, 이는 同協定書가 실제 發效要件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實物去來에 대한 融資承認을 하게 되므로 최초 融資承認에 앞서 同書類를 징구하도록 하였다. 또한 同書類중의 하나로서 借主로부터 準據法國 및 借主國 辯護士의 法的 意見을 징구하게 되어 있던 것을 원칙적으로 借主國 辯護士의 法的 意見만 징구하고 準據法國 辯護士의 法的 意

見 정구는 생략하되 同法的 意見을 반드시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銀行長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하게 하였다. 세째, 信用狀方式의 融資支給節次를 간소화하고자 當該 製品 船積時까지 約束어음, 見積送狀을 비롯한 각종서류를 借主 또는 輸出者로부터 청구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는 업무처리의 흐름으로 보아 불합리하므로 約束어음 및 見積送狀을 제외한 모든 書類는 融資金 支給前에 청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融資金 支給金額別로 청구하는 約束어음의 청구방법 및 시기는 當該與信限度協定書에서 銀行長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見積送狀의 청구는 업무처리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였다.

이 밖에 轉貸資金 融資財源인 韓國銀行 保有外換은 轉貸資金 支援制度가 생긴 이래 매년 輸銀業務計劃에 반영되어 實物去來가 발생되어 同資金 지출時마다 輸銀 融資金利에서 0.5%를 차감한 利率로 韓國銀行으로부터 受託받고 있었으나 1984년 1월부터 同受託金利가 「리보」로 조정되었다. 한편 1986년부터는 輸銀 자체조성자금에 의해 轉貸資金을 지원하게 되었다.

(3) 轉貸資金 供與實績

輸銀은 1979년 2월 6일 칠레의 Banco Israelita de Chile와 2백만「달러」의 與信 限度設定協定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우리 나라가 外國金融機關에게 轉貸資金을 공여한 최초의 사례이다. 그후 輸銀은 1985년말 현재 上記 件을 비롯, 모두 11件, 40백만「달러」의 轉貸資金供與協定을 체결하였다.

轉貸資金供與는 資本財輸出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특히 小規模去來에 지원됨으로써 輸出商品의 다양화 및 輸出市場 開拓에 적극 기여하게 되었다. 칠레는 당시 우리 나라의 自動車 輸出實績이 가장 많은 중요한 市場으로서 연간 35천臺의 自動車 輸入需要가 있어 美國, 日本, 브라질 등 世界 自動車 輸出國의 각축장이 되고 있었는데, 同資金에 의한 自動車 및 同部品の 輸出 증가로 우리 나라의 自動車 輸出市場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同國과의 貿易逆調 해소에도 도움을 주었다. 한편 자마이카 中央銀行에 대한 轉貸資金貸出은 同國에 대한 機械類 輸出 증대와 더불어 「카리브」地域 및 第3世界國家에 대한 輸出 증진과 經濟協力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 自由中國에 대한 轉貸資金供與는 同國의 鐵鋼材 輸出 증대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집트의 韓·이집트 合作銀行인 Cairo Far East Bank S.A.E.에 대한 轉貸資金供與는 借主銀行을 韓·이집트 輸出窓口로 활용하고 아프리카 및 中東地域 進出企業에 대한 金融支援「센터」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는데

〈表 3-3-3〉

轉貸資金 供與協定 締結現況

(1985.12.31 현재)

(단위 : 천「달러」)

協定締結日字 (承認日字)	借 主 國	借 主 銀 行	與信供與限度	輸 出 品 目
1979. 2. 6 (1979. 1. 19)	칠 레	Banco Israelita de Chile	2,000	自動車
1979. 2. 9 (1979. 1. 19)	자 마 이 카	The Bank of Jamaica	5,000	機械類
1980. 1. 28 (1979. 12. 18)	泰 國	Thai Farmers Bank	5,000	
1980. 6. 2 (1980. 4. 1)	自 由 中 國	The Int'l Commercial Bank of China	5,000	鐵鋼製品
1980. 1. 28 (1980. 12. 2)	이 집 트	Cairo Far East Bank S.A.E.	3,000	乘用車
1981. 9. 22 (1981. 7. 14)	칠 레	Banco de Chile	3,000	
1982. 10. 19 (1982. 10. 6)	페 루	Corporacion Financiera de Desarrollo S.A.	3,000	
1984. 10. 10 (1984. 8. 28)	멕 시 코	Banco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S.A.	5,000	
1985. 2. 18 (1985. 2. 15)	아 이 티	Banque de la Republique d' Haiti	2,000	建設裝備, 乘用車 等
1985. 8. 19 (1985. 6. 5)	自 由 中 國	The Int'l Commercial Bank of China	5,000	
1985. 11. 5 (1985. 8. 9)	멕 시 코	Banco Nacional de Mexico	2,000	
合 計			40,000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轉貸資金 供與協定을 체결한 것 가운데 실제 용자가 이루어진 것은 5件, 12,325천「달러」로서 그 實績이 다소 저조한바, 이는 對應實物去來가 부진했기 때문이었다. 1981년 9월 22일에 協定締結된 칠레의 Banco de Chile 앞 與信供與限度 3백만「달러」는 同國의 景氣沈滯에 따른 輸入需要의 부진으로 資金引出없이 1984년 5월 4일 同協定이 종결되었으며, 泰國의 Thai Farmers Bank 앞 5백만「달러」, 페루의 Corporacion Financiera de Desarrollo S.A. 앞 3백만「달러」 및 멕시코의 Banco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S.A. 앞 5백만「달러」 등은 1985년말 현재 實物去來없이 與信限度使用期間이 연장되고 있다.

4.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 支援의 擴大

支援制度의 概要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事業 支援을 위한 輸銀法上의 資金種類에는 法 第18條

第1項 第5號~第7號 資金과 第2項 第1號 資金이 있다. 上記 資金은 業務方法書上에 다시 海外事業資金貸出, 海外投資資金貸出, 外國政府 등에 대한 出資資金貸出 및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貸出로 규정된다.

海外事業資金貸出은 外國에서 事業을 영위하는 國內業者에 대해 그 事業의 設備 신설 또는 확충에 소요되는 資材의 대부분이 國內에서 생산되는 物品으로 充당될 경우 所要資金의 70%까지 (中小企業 80%)를 융자해 주는 制度이다.

海外投資資金貸出은 海外投資를 행하는 國內業者에 대해 輸銀法 施行令 第15條에 규정된 海外投資資金 내지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設備貸與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하며 所要資金의 70%까지 (中小企業 80%)를 융자해 주는 制度이다.

한편 外國政府등에 대한 出資資金貸出은 우리 企業이 出資(株式取得 포함)하는 外國法人에 출자하기 위해 필요한 資金을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출해 주는 制度이나 아직까지 貸出取扱規程이 마련된 바 없으며 支援實績도 없다.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貸出은 主要資源開發을 위한 海外投資 또는 海外事業을 영위하는 國內業者에 대해 필요한 資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政府의 資源開發 計劃에 의한 支援方針에 따라 主務長官의 資源需給에 관한 의견을 첨부한 추천서 또는 허가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所要資金의 70%까지를 융자한다.

支援制度의 變遷

(1) 海外投資資金 및 海外事業資金

輸銀 業務方法書上 海外投資資金 貸出條件의 대부분은 海外事業資金 貸出條件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 海外投資資金貸出의 條件變更은 항상 海外事業資金 貸出條件을 변경함으로써 이에 따라 변경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融資比率〉 輸銀 設立 당시 海外投資資金 및 海外事業資金貸出의 융자비율은 所要資金의 70%로 같았으나 1977년 1월 1일 海外投資資金에 대한 융자비율만 80%로 인상된 후 1980년 7월 10일에 다시 70%로 인하되었다. 이는 당시 輸出資金의 융자비율이 90%에서 70%로 인하되었기 때문인데 輸出資金貸出은 종전 契約額에서 先受金을 공제한 殘額의 90%를 輸銀이 지원하던 것을 70%로 낮추는 대신 協調融資로 나머지 30%를 조달케 함으로써 수출업체는 輸銀融資를 적게 받는 대신 延拂代錢 전액을 융자받게 되었다.

이후 1983년 3월 9일에는 中小企業에 대한 융자비율만 다시 80%로 인상되었다.

〈貸出金利〉輸銀 設立 당시의 貸出利率은 7%였으나 1976년 8월 2일 第13次 業務方法書 改正時 輸出資金 貸出金利에 준하도록 개정되어 융자기간 3년 이내는 8%, 5년 이내는 8.25%, 7년 이내 8.5%, 10년 이내 8.75%, 10년 초과 9%의 금리를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 資本財輸出의 부진과 上記 改正金利가 國際競爭上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 1977년 2월 9일의 第15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는 附則 經過措置로서 1977년 및 1978년중 輸出資金 貸出承認件에 대하여 연 7%의 금리를 적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輸出資金 貸出金利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海外投資資金 貸出金利도 연 7%의 이율을 다시 적용하게 되었다.

그후 1980년 1월 18일 第26次 業務方法書 改正에 따라 輸出資金 貸出金利가 7%에서 8%로 다시 인상되었는데, 이때 海外投資資金중 重要物資, 主要資源 確保事業에 대하여는 輸出資金 貸出金利과 동일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기타 海外事業에 대하여는 국가정책상 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 및 우리 나라가 國際收支赤字國이라는 점을 감안, 外國換管理規程에서 정한 一般外貨貸出金利인 中長期外貨資金 融資基準金利를 적용토록 하였다.

1981년 11월 17일 第30次 業務方法書 改正에서는 輸出資金 貸出金利引上(8%→9%)에 따라 重要物資, 主要資源 確保事業에 대하여만 금리를 9%로 인상하였으며 1982년 12월 1일 第32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는 종전 外國換管理規程上 中長期外貨資金 融資基準金利가 「리보」+ 1.5%로 변경됨에 따른 금리조정이 있었는데, 이때 종전의 海外投資資金 支援金利인 中長期外貨資金 融資金利가 「리보」+ 1.5%(국내 외국환은행의 支給保證이 없는 경우 0.5% 가산)로 변경되었다.

한편 1984년 11월 15일 第35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融資條件 改善措置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貸出利率을 9~10%에서 理事會가 정하는 實行利率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理事會에서는 中小企業에 대한 海外投資資金 貸出金利를 10%로 조정하였다.

1985년 8월 31일 第37次 業務方法書 改正에서는 貸出實行利率을 理事會가 결정토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貸出實行利率은 重要物資, 主要資源 確保事業의 경우 9%, 中小企業의 경우 9.5%, 기타의 경우 10%로 조정하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金利는 10%에서 9.5%로 인하되었고 大企業의 기타 사업 貸出金利는 종전의 「리보」+1.5%에서 연 10%의 固定金利로 변경되었다.

(2)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 貸出取扱規程은 1981년 5월 19일 業務方法書에 처음 신설 되었으며, 1981년 11월 17일 第30次 業務方法書 改正時 금리를 종전의 8%에서 9%로 인상(輸出資金貸出 引渡後金融金利 水準)한 것 외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支援実績

1976년 設立 이후 1985년말까지의 海外投資資金 貸出(承認기준)은 모두 36件, 261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海外投資 내용은 件數로는 製造業投資의 비중이 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資源開發事業投資로 31%를 차지하였다. 金額基準으로는 資源開發投資 비중이 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設備貸與投資 32%, 製造業投資 5%의 순서로 나타났다. 製造業投資의 비중이 件數에 비해 극히 낮은 것은 대부분이 中小企業 또는 中小規模 投資였기 때문이다.

資源開發事業投資는 일반적으로 投資規模가 커서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초기에는 原木開發事業이 主宗을 이루었고 1982년, 1983년에는 有煙炭 鑛開發事業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製造業投資의 業種分布를 보면 縫製品 제조업이 7件, 1,357천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積算電力計 제조업이 2件, 206천 「달러」에 달했으며, 이 밖에 「타이어」, 땀남, 「시멘트」, 鋼管, 石板, 「필름」, 가방, 「비닐」장판, 化學製品 등

<表 3-3-4>

海外投資資金 貸出承認実績

(단위 : 천「달러」)

	製造業		資源開發		設備貸與		其 他		合 計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1976					1	12,384	1	5,653	2	18,037
1977			2	4,979	1	34,240			3	39,219
1978	3	5,785			2	31,184			5	36,969
1979	5	1,352	2	52,148	1	4,737			8	58,237
1980	2	2,279							2	2,279
1981			1	13,650					1	13,650
1982	1	350	3	63,375					4	63,725
1983	1	130	2	17,360			2	496	5	17,986
1984	3	896	1	7,809					4	8,705
1985	2	2,590							2	2,590
合 計	17	13,382	11	159,321	5	82,545	3	6,149	36	261,397

에 투자되었으며 件當 平均投資金額은 760천 「달러」로써 中小規模 海外投資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設備貸與事業을 위한 海外投資資金貸出은 大韓造船公社의 노르웨이 Stolt Nielsen社에 대한 船舶建造貸與資金 支援이 1件 있었으나 1979년에 直接貸出로 전환되었다.

한편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은 인도네시아의 「마두라」油田開發「프로젝트」에 대해서만 資金支援이 행해졌는데 7次에 걸쳐 62백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海外事業資金은 貸出實績이 전무한데 그 이유는 海外投資資金을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외에 海外事業資金은 設備의 신설, 확충에 소요되는 資材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등의 附帶條件이 따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外國政府 등에 대한 出資資金貸出도 지원실적이 전무한바, 주된 이유는 海外投資資金에 의해서도 合作先의 出資資金을 지원받을 수 있는 외에 債權保全上의 문제 등이 개입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同資金에 대해서는 실제 取扱要領도 제정되지 않았다.

中小企業 海外投資의 支援

輸銀法 施行令상의 海外投資 支援對象去來는 ①重要物資 및 主要資源 확보에 기여하는 海外投資 ②外國과의 經濟協力 증진에 기여하는 海外投資 ③海外僑民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海外投資 및 ④기타 海外 輸出入市場의 확보 또는 外貨獲得에 크게 기여하는 海外投資로서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친 경우 등으로서 특히 ④項의 경우에는 融資承認에 신중을 기해 왔다. 결과적으로 輸銀의 海外投資 支援政策은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강했으며 이는 政府의 國際收支 배려와도 직접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

海外投資支援이 보다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이후 政府의 中小企業支援 政策의 강화와 더불어 海外進出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

특히 中小企業 내지 中小規模의 海外投資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保護主義 만연에 따른 第3國 投資에 의한 迂廻輸出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國內의 經濟與件이 크게 변화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輸銀은 1983년에 中小企業 海外投資資金으로 100억원을 특별 배정하였으며 中小企業 海外投資의 경우에는 融資比率를 70% 이내에서 80%이내로 높였

고 中小企業에 대한 海外投資事業 金融支援制度 説明會, 延拂輸出 및 海外投資懇談會, 기타 巡廻教育 및 案内冊子 발간 등의 資金支援制度 弘報에 주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中小企業支援을 강화하기 위하여 審査2部를 中小企業 支援業務 專擔部署로 지정, 支援窓口를 일원화하였다.

이어 1984년에는 融資條件을 더욱 개선하였는데 中小企業 海外投資의 優待融資比率(80%) 적용대상을 開途國에서 전지역으로 확대했고 中小企業 海外投資 貸出金利를 일괄 10% 固定金利로 조정한 외에 中小企業의 擔保能力 취약을 보완키 위한 中小企業 信用取扱規程을 제정, 시행하였다. 또한 지원절차의 간소화에 주력했는데 輸銀融資金額이 40만「달러」이하인 海外投資事業에 대해서는 貸出承認權限을 모두 理事會로 하부 위임했다. 이 밖에 각종 懇談會 및 金融支援制度 説明會 등을 각지에서 개최하여 海外投資에 대한 업계의 關心 제고 및 支援制度 홍보에도 주력하였다.

1985년에는 海外投資資金 貸出金利를 다시 인하, 조정했는데 大企業은 종전의 「리보」+1.5~2%에서 10% 固定金利로 그리고 中小企業은 10%에서 9.5%로 각각 인하했다. 또한 中小企業에 대한 海外投資資金 信用貸出을 위해 信用保證基金과 業務協約을 체결(5월 15일)했는데, 輸銀 信用貸出取扱分の 80% 범위내에서 信用保證基金이 보증을 행하고 貸出金 未回收額의 80%에 대해 信用保證基金이 保證債務를 이행토록 하였다. 中小企業振興公團과도 業務協調約定을 체결(12월 30일)하여 中小企業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을 확대토록 하였다. 연중에도 中小企業에 대한 海外投資支援制度 説明會를 계속 개최(9회)하여 업계의 관심 제고 및 支援制度 홍보에 주력하였다.

그 동안의 主要 中小企業 海外投資支援內容을 보면 1983년에는 韓濠肉牛의 對濠洲 牧蓄業 投資(885천「달러」)에 176천「달러」를 융자승인했고, 「타이가」商社의 對 아이보리코스트 「칼라 필름」現像所 投資(400천「달러」)에 320천「달러」를 융자승인했다. 1984년에는 대미실업의 對北마리아나 衣類縫製業 投資(350천「달러」)에 190천「달러」, 「크로바」商社의 對도미니카共和國 가방製造業 投資(490천「달러」)에 394천「달러」, 그리고 泰和工業의 對말레이시아 「비닐」장판 製造業 投資(390천「달러」)에 312천「달러」를 각각 융자승인했다.

主要 支援「프로젝트」

輸銀 設立 이후 1985년말까지 海外投資資金 貸出承認額은 36件, 261백만「달러」

衣類縫製 海外投資事業
(1983년 融資承認, 도미니카共和國)



에 달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主要資源開發, 「플랜트」輸出關聯, 기타 中小規模 製造業의 海外投資에 지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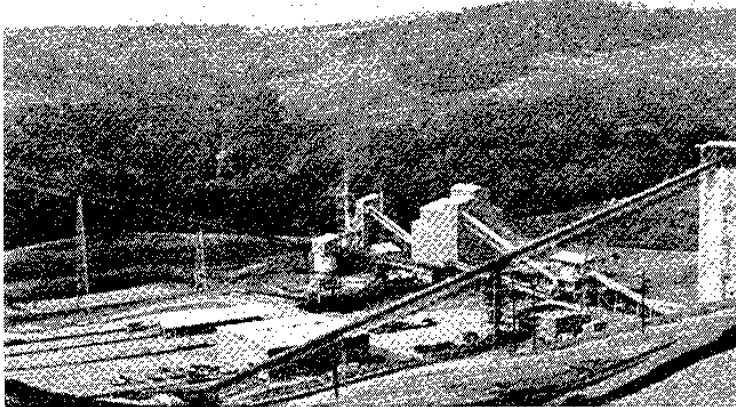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支援「프로젝트」의 推進經緯와 事業成果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縫製品製造工場 單獨投資事業

中小衣類製造業體인 (株)유화통상은 「퀴타」障壁 우회를 위한 第3國에의 製造業 海外投資에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同社는 對美纖維類輸出「퀴타」로 인한 수출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1978년 9월 온두라스에 150천「달러」를 투자하여 縫製品 제조공장을 설립하였다. 投資資金 150천「달러」는 輸銀融資金 93천「달러」와 自己資金 57천「달러」로 조달하였다.

온두라스의 「푸에르토 코르테스」(Puerto Cortes) 自由貿易地帶에 입주한 現地法人, Yu-Hwa Honduras Ltd. 는 유화통상의 100% 子會社로서 연간 약 25천打의 男女用 「블라우스」를 생산, 美國에 수출할 계획이었다. 同社가 온두라스를 投資對象國으로 선택한 이유는 온두라스가 對美纖維輸出「퀴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에 美國에 인접하여 상품 수송기간이 짧고, 수송비가 절감되며, 自由貿易地帶 입주에 따른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혜택 내용은 공단측이 건물을 지어 입주업체에 염가로 임대하여 原資材 및 施設財 輸入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配當所得稅 이외의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 등이었다.

同社는 現地投資法人의 사업이 본격화되자 1979년 8월, 生産「라인」증설을 위한 增額投資를 통하여 당초의 「블라우스」生産「라인」2個組(연산 25,200打)에 「블라우스」生産「라인」1個組(연산 12,600打), Western Shirts 生産「라인」1個組(연산 33,600打), 「드레스」와 「스포츠 셔츠」生産「라인」1個組(연산 36,600打)를 증설하



炭鑛開發事業
(1979년 融資承認, 美國)

여 總生産「라인」을 5個組로 늘렸으며 生産能力을 연산 86,400打로 확대시켰다. 이에 필요한 追加所要資金 300천「달러」는 輸銀融資金 240천「달러」와 自己資金 60천「달러」로 조달했는데 輸銀의 융자조건은 融資期間 3년(据置期間 1년 포함)에 融資金利 7%였다.

그 동안의 사업경과를 보면 당초 資本金 150천「달러」, 従業員數 147名, 生産「라인」 2個組, 初年度 賣出額(1978년 4개월간) 95천「달러」로 출발하여 5년 후에는 資本金 450천「달러」(純資産 510천「달러」), 従業員數 516名, 生産「라인」 8個組, 연간 賣出額 8.3백만「달러」로 급성장하였다.

한편 投資效果면에서는 최초 5년간에 設備輸出 80천「달러」, 原·副資材輸出 1,850천「달러」, 配當金 送金 140천「달러」, 現地就業者 送金 270천「달러」 등 總外貨獲得額이 2,340천「달러」에 달하여 投資額의 5배에 이르는 외화획득효과를 실현하였다.

한편 現地法人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다시 인접국가인 도미니카共和國에 150천「달러」를 투자하여 子會社를 설립하였는데 従業員數 260名, 연간 賣出額이 2.8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2) 有煙炭鑛開發 投資事業

浦項綜合製鐵(株)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鐵鑛石, 原料炭 등 製鐵에 필요한 主原料를 주로 長期供給契約方式에 의한 單純輸入으로 충족하였다. 그러나 1973년 第1次 石油波動을 계기로 資源民族主義가 심화되고 主要資源의 需給 및 價格이 크게 불안정해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鐵鋼의 國內 需要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海外投資를 통한 開發輸入으로 製鐵原料의 장기 안정적인 調達基盤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同社는 製鐵原料 중 國內에 부존되어 있지 않은 製鐵用 有煙炭의 開發輸入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美國내 炭鑛 76個所 가운데 9個所를 대상으로 1976년부터 開發參與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후 1977년 7월, 美國 有數의 綜合商社인 Alco Standard Corp.의 子會社로서 石炭開發業務를 전담하고 있는 Barnes & Tucker Co.로 부터 「펜실베니아」州 「인디애나 카운티」에 위치한 「타노마」(Tanoma) 炭鑛의 開發을 제의 받았다. 浦項綜合製鐵(株)은 現地探鑛作業, 技術調査 등을 거쳐 「타노마」炭鑛開發事業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炭鑛開發事業을 전담시키기 위하여 租稅避難地域인 네덜란드 안틸레스에 1978년 11월 「타노마」石炭會社를 설립하였다.

「타노마」炭鑛의 妥當性 조사 결과 炭種은 高流動性 良質의 中揮發性 粉炭이며 埋藏量은 精炭基準 22백만톤으로 34년간에 걸쳐 연평균 646천톤을 생산할 수 있는 中規模 炭田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전되는 경우 1982년 10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出荷가 가능하여 1983년 이후 매년 所要原料炭의 약 11.7%를 「타노마」炭鑛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炭鑛開發計劃을 확정 한 후 「타노마」石炭會社는 鑛山主人 Barnes & Tucker Co.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Indiana Land Co.와 租鑛契約을 정식으로 체결하는 한편 Barnes & Tucker Co.와 管理運營契約을 체결하여 採炭作業을 위임 운영토록 하고 1980년 7월 9일 現地에서 「타노마」炭鑛開發을 위한 着工式을 거행하였다.

이 炭鑛開發事業의 總所要資金은 73,499천「달러」로 同所要資金의 약 70%에 해당하는 51,748천「달러」를 輸銀이 지원키로 하였고 1,320천「달러」는 美國의 「시티뱅크」가 융자하고 나머지 855천「달러」는 浦項綜合製鐵(株)의 自己資金으로 충당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輸銀은 貸出金利 연 7%, 貸出期間 20년으로 51,748천「달러」의 融資金을 開發着手후 5년간에 걸쳐 分割引出하고 貸出元金은 据置期間 3년, 据置후 17년간에 걸쳐 분할 상환받는 조건으로 1979년 9월 貸出을 정식 승인하였다. 그후 輸銀은 鑛山開發事業이 진전되는 데 따라 1979~84년에 걸쳐 貸出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이중 現地法人에 대한 出資資金은 8,800천「달러」, 現地法人에 대한 貸出資金은 42,948천「달러」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企業의 전액 출자에 의한 최초의 海外鑛山開發事業으로서 당초 계획은 開發期間인 1979~82년까지는 5백만「달러」의 赤字를 예상했고 正常稼動期間인 1983~99년까지는 總 50백만「달러」의 黑字를 예상하였으며 연평균 3백만

「달러」의 利益이 실현될 것으로 추정했었다. 이러한 추정은 有煙炭의 「톤」당 販賣價格을 70.8「달러」로 전제한 것이었는바, 1982년까지는 「톤」당 판매가격이 당초 추정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계속된 世界鐵鋼景氣의 不況으로 有煙炭의 需要가 감퇴됨에 따라 1983년부터는 有煙炭 價格이 계속 하락하여 1985년에는 「톤」당 53「달러」線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사업착수후 1984년말까지 4,167천「달러」의 赤字가 누증되었는바, 이를 타개하기 위해 借主社는 現地法人에 대한 貸出資金을 出資資金으로 전환할 것을 輸銀에 요청하여 이를 1985년 5월 10일자로 승인하게 되었다.

(3) 山林開發 投資事業

(株)現代洋行은 國內 原木需要量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原木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해 파푸아뉴기니아 政府와 장기간의 교섭 끝에 1979년 12월 山林開發投資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1980년 5월 漢拏資源(株)을 설립하여 同原木開發事業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필리핀, 泰國, 말레이시아 등 東南아시아 原木輸出國들은 원목수출을 금지하거나 원목수출「쿼타」를 배정하여 이를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실정에 있었다. 그러나 파푸아뉴기니아는 지리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山林開發이 부진하여 원목수출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어서 同國에 진출하는 것은 자원확보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프로젝트」內容을 살펴 보면 한라자원은 파푸아뉴기니아에 100% 單獨投資會社인 Nam Yang Timber(PNG) Pty, Ltd. 를 설립하고, 同現地法人은 同國「웨스트뉴 브리튼」州 소재 「카푸록」地區의 180천ha 林地에 연간 原木을 200천M³, 「우드 칩」(wood chip)을 200~240천M³씩 생산하여 原木은 生産量의 75%, 「우드 칩」은 생산전량을 國內에 반입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한 總所要資金은 23,902천「달러」로서 이중 6,500천「달러」는 資本金, 13,000천「달러」는 借入金 그리고 나머지 4,402천「달러」는 現地法人의 운영기간중 발생하는 留保金으로 충당토록 계획되었다.

輸銀은 소요자금 중 資本金에 대하여 70%(4,550천「달러」), 現地法人 借入金에 대하여 70%(9,100천「달러」), 합계 13,650천「달러」를 융자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30%는 한라자원이 자체 조달토록 하였다.

이에 대한 輸銀 融資은 1981년 8월 28일 승인되었는데, 융자 조건은 融資期間 9

년 (3년 据置후 6년간 연 2회 균등분할 상환)에 融資金利 연 8%이었다.

이 사업은 사업착수 시점에서는 原木輸出國들의 원목수출금지 및 제한조치가 강화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原木價格이 상승되어 收支展望이 양호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 세계경기침체로 原木價格이 하락됨에 따라 經營收支가 다소 악화되었다. 그러나 1985년 1월부터 主要 原木輸出國인 인도네시아의 原木輸出이 전면금지되어 東南亞에서는 사실상 원목구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事業性이 밝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鋼管製造工場 合作投資事業

이 合作投資事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Rabiah & Nassar Co. 와 Fahad Mohammed Sata 兩社가 70%(21,231천「사우디 리알」)를 출자하고 우리 나라의 韓國鋼管이 30%(9,099천「사우디 리알」)를 출자하여 資本金 30,300천「사우디 리알」(9,000천「달러」)의 合作法人 Saudi Steel Pipe Co.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하고 韓國鋼管이 新設合作法人에 연산 52천 M/T 규모의 鋼管「플랜트」(12,401천「달러」상당)를 一覽拂로 수출하는 내용의 것이었다. 同「플랜트」에서는 直徑 1/2~4「인치」의 鋼管을 생산하여 전량을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었던 바,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간 鋼管輸入量은 420천M/T으로 本工場 생산능력의 5배에 달하여 우선 생산제품의 販路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업이었다.

이 合作事業을 위한 現地法人의 總所要資金은 28,532천「달러」로서 자금조달계획을 보면 資本金 9,000천「달러」, 借入金 19,532천「달러」로 조달하되 資本金은 사우디아라비아側이 70%, 韓國側이 30%를 출자하고 借入金の 약 70%는 사우디産業開發基金(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 SIDF)의 融資, 그리고 나머지 30%는 현지 商業金融으로 조달하도록 하였다.

특히 SIDF 融資는 貸出時 2%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에는 金利負擔이 전혀 없고 元金은 2년 据置, 10년 分割償還하는 아주 양호한 조건이었다.

輸銀은 合作事業에 海外投資資金과 輸出資金의 용자를 승인했는데 1980년 3월 26일에는 韓國鋼管에 海外投資資金 7,279천「사우디 리알」(2,160천「달러」, 투자액의 80% 해당액)을 용자승인하였고, 1980년 8월 19일에는 鋼管「플랜트」제작자인 韓管産機(株)에 대해 「플랜트」제작설치를 위한 輸出資金 7,005천「달러」를 용자승인하였다. 現地合作法人의 경영에 있어서는 理事會 任員 5人 가운데 韓國側이 總支配人과 工場長을 임명하여 실제 회사운영과 생산업무 등 핵심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同投資事業은 12백만「달러」의 國產「플랜트」를 수출하는 외에 100餘名の 技術人力이 現地에 진출하고 공장가동 初年度부터 5년간 매년 578천「달러」의 技術指導費를 받게 되며 原資材인 「핫 코일」을 매년 20백만「달러」씩 浦項綜合製鐵에서 수출할 계획이어서 外貨稼得效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製造工場은 1982년 3월에 완공되어 가동에 들어갔는데, 공장가동 初年度에는 2,289천「달러」의 赤字를 보았으나 1983년부터 黒字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同赤字補填을 위하여 1983~85년도에 利益配當을 하지 못하였는데 1985년까지의 利益金으로 赤字補填을 완료함에 따라 1986년도부터는 배당이 가능해졌다. 한편 技術指導費 收入은 1981년 136천「달러」, 1985년 376천「달러」가 입금되었다.

그간의 外貨獲得實績을 보면 1985년말까지 「플랜트」輸出 12,401천「달러」, 技術指導費收入 512천「달러」, 訓練費 60천「달러」, 原·副資材 輸出 26,459천「달러」, 現地就業者 送金 6,948천「달러」 등 總 46,380천「달러」에 달하였다.

(5) 가방工場 單獨投資事業

「크로바」商社(株)는 여행용 가방류 전문생산, 수출업체로서 美國, 유럽 등지에 연간 10백만「달러」의 가방류를 수출하고 있는 中小企業體로서 근래에 들어서는 中共, 泰國, 홍콩 등의 국가에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對美輸出増大를 강화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에 있었다. 또한 1984년 1월 부터는 美國이 台灣 및 韓國의 織物製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쿼타」를 적용하게 되어 對美輸出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同社는 이러한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人件費가 저렴하고 「쿼타」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도미니카共和國을 선정하여 現地에 진출키로 하였다.

도미니카共和國을 투자상대국으로 택한 이유는 全量 輸出業體에 대해 法人稅, 配當稅, 輸入關稅 등을 면제하고 投資元金의 回收 및 果實送金에 제한이 없으며 賃金이 여타「카리브」지역諸國보다 낮고 工團 入住業體에 대하여는 工場敷地 및 建物を 賃가로 임대하여 주는 외에 美國과의 거리도 가까와 交通, 통신, 수송에 있어서도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事業內容은 「산페드로」(San Pedro) 工業自由地帶에 493천「달러」를 單獨投資하여 연간 400천~600천「달러」의 合纖織物製 가방을 생산, 이를 전량 美國에 수출할 계획이었다(연간 輸出額 4백만~5백만「달러」).

輸銀은 본 사업지원을 위하여 1984년 12월 4일 海外投資資金 394천「달러」를 융자승인하였는바, 융자조건은 融資期間 4년(1년 据置후 3년간, 연1回 均等分割償還), 融資金利 年 10%(中小企業 優待金利 적용)이었다.

輸銀 대출기간인 初期 4년 동안의 投資期待效果를 보면 生産設備 輸出 188천「달러」, 配當金 送金 731천「달러」, 現地就業者 送金 515천「달러」, 原·副資材 輸出 9,413천「달러」등 總外貨獲得額이 10,847천「달러」로 계획되었다. 同社는 1985년 3월 現地에 공장을 완공하고 제품생산을 개시하여 연중 1백만「달러」를 수출하였다.

그러나 現地에 진출한 이후 도미니카共和國의 外換事情이 악화되면서 現地 公正換率 적용상의 不利益이 커지게 되어 同社는 인근국가인 파나마에 會社를 설립하고 도미니카의 自由貿易地帶에는 공장만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同社는 1985년 8월 5일 韓國銀行으로부터 現地法人 設立地域 變更許可를 받아 파나마에 現地法人을 설립, 운영케 되었다.

5. 與信實行 및 管理業務의 效率化

貸出執行業務의 變遷

(1) 設立 以前

輸銀 設立 이전의 業務代行期間중에는 輸出資金과 海外投資資金에 대해서만 資金支援이 이루어졌다. 輸出資金은 1972년 4월 勝利機械製作所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織機 155台的 延拂輸出을 지원하기 위하여 335백만원이 처음 대출집행되었으며, 이어 鐵道車輛, 貨車, 電話交換施設, 纖維機械 등의 수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輸銀 設立까지 輸出資金支援의 大宗을 이루었던 것은 船舶輸出資金으로서 貨物船, 油槽船, 漁船 등의 建造資金에 輸出資金 總額의 80%가 지원되었다.

한편 海外投資資金을 살펴 보면 1971년 7월 東和企業(株)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山林開發 合作投資에 388백만원이 처음 대출집행되었으며, 1974년에는 752백만원이 추가 지원되었다. 1975년에는 모로코와의 遠洋漁業 合作投資를 위해 대왕수산(株)에 19백만원, 진양수산(株)에 13백만원이 각각 지원되었다. 또한 1976년 6월에는 노르웨이의 傭船去來에 2,394백만원이 海外投資資金으로 지원된 바 있다.

〈表 3-3-5〉

輸銀設立 이전의 資金運用實績¹⁾

(단위 : 백만원)

	輸 出 資 金		海外投資 資 金	貸 出 金 回 收	年 末 貸出殘額
		船舶資金			
1971			388		388
1972	1,158	793		98	1,448
1973	1,563	1,563		103	2,908
1974	1,568	1,312	752	890	4,338
1975	27,057	21,500	32	1,503	29,924
1976 (1~6월)	13,593	9,955	2,394	1,290	
合 計	44,939	35,123	3,566	3,884	

註 : 1) 輸銀資金貸出 및 國民投資基金貸出만 포함.

(2) 1976년

1976년 7월 1일 輸銀이 정식 설립되면서 支援金融에 대한 審査, 貸出執行 및 事後管理業務는 이를 일괄하여 業務部에서 관장케 되었다. 1976년중에는 소규모의 輸出資金貸出과 海外投資資金貸出만이 취급되었는데 연중 貸出執行實績은 37,391백만원에 달하여 연말 貸出殘額は 56,172백만원을 기록하게 되었다.

(3) 1977년

1977년 1월 27일에는 業務部가 확대, 개편되어 審査部와 金融部가 신설되었는데 貸出의 審査와 承認, 與信에 관한 企劃 및 與信運用指針 등의 업무는 審査部가 전담하고, 貸出承認에 따른 資金의 집행과 貸出金の 회수 및 擔保權의 실행 등 與信의 事後管理業務 그리고 이와 관련한 輸出入, 外換國業務는 金融部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3월에는 아프리카 가봉에서의 百貨店 建設「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최초의 技術提供資金 4,640백만원이 대출취급되었다.

金融部는 貸出執行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融資金額이 巨額이며 融資期間이 長期인 만큼 貸出金の 적기 分割執行을 위해 現場調査 및 企業實態調査를 병행하였고 (7개 業體), 貸出事後管理를 위한 債權書類의 보완, 債權書類上 債權關係人の 自署에 관한 사항 등에 주력하였으며, 業體別 貸出金事後管理簿를 작성하여 비치하는 등 事後管理業務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한편 1977년중에는 8次에 걸친 業務方法書 改正을 통해 貸出執行業務의 효율화

가봉 百貨店 竣工式
(1977. 12. 7)



를 기하였고 船舶建造資金 執行基準을 새로이 마련하였으며 鐵道車輛生産資金의 所要基準表를 작성, 시행하였다.

이밖에 그 동안 사용되었던 資金支援節次規程, 豫備承認要領, 事後管理規程을 포괄하여 11월 1일자로 業務方法書의 施行細則인 貸出要綱을 制定, 운용하게 되었다.

1977년중에는 전년에 비하여 支援實績이 크게 신장되어 96,030백만원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輸出資金중 船舶建造資金 지원이 급증하고 技術提供資金 지원이 늘어나는 등 業務取扱範圍가 점차 다양화되었다. 이에 따라 연말 貸出殘額은 120,641백만원으로 증대되었다.

(4) 1978년

船舶部門의 貸出執行은 그 동안 197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船舶建造工程 및 資金所要基準表에 의거해 왔는데, 1978년 4월 14일부터는 貸出實行要件, 方法 및 先受金 管理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資金執行方法을 보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연중에는 支援「프로젝트」의 성공적인 輸出履行과 輸出者の 輸出競爭力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輸出入銀行 內國信用狀 取扱規程을 제정(1978. 5. 16)하여 輸出用 原資材의 국내조달을 촉진하고 輸出物資의 생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연중의 신규 內國信用狀 開設實績은 26個 업체, 1,430백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연중에는 債權保全 改善策으로 輸銀業務의 특수성을 감안한 特別約定書를 제정, 운용하는 외에 취급여신의 특수성에 적합한 保證限度 金額表示方案 등을 마련하여 保證書 및 어음去來約定書를 개선, 운용했고 건조중인 船舶에 대한 根抵當 權設定方法과 管理改善方案을 강구하였다.

또한 産業設備輸出促進法の 제정과 관련하여 「플랜트」수출의 資金執行 및 事後 管理方案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 밖에 中短期性 優良去來를 一般長期延拂去來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자의 中短期輸出資金貸出 取扱規程을 1978년 12월 24일 運營委員會 議決을 거쳐 제정하여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케 되었다.

1978년중의 貸出執行實績을 보면 1977년의 96,030백만원보다 32%가 증가한 127,169백만원에 달했는데 船舶輸出支援資金은 전년보다 규모가 줄어든 58,397백만원의 貸出執行에 그쳤다. 이에 따라 연말 貸出執行殘額은 164,610백만원을 기록하게 되었다.

(5) 1979년

연중에는 産業設備輸出促進法과 관련하여 國內生産機資材의 搬出確認등의 업무를 위임받게 되었다.

또한 輸銀內國信用狀 取扱規程중 일부를 개정하여 輸出資金貸出의 融資對象에 輸銀內國信用狀 및 國內物品供給契約書를 포함시켰다.

한편 그동안 業務方法書 規定에 의한 貸出要綱에 의거 貸出承認 및 貸出執行業務를 처리하여 왔으나 8월 21일 第41次 理事會 議決에 따라 종전의 貸出要綱이 폐지되고 貸出承認節次規程과 별도로 貸出의 實行에 관련되는 사항만을 취급하는 貸出取扱規程(全文 134條項)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1979년중의 貸出執行實績을 보면 1978년의 127,169백만원보다 25%가 증가한 158,551백만원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船舶輸出支援은 1978년의 58,397백만원보다 21%가 증가한 70,866백만원에 달하였다.

또한 연중에는 轉貸借款制度가 처음 도입되어 칠레의 Banco Israelita de Chile에 2백만「달러」의 與信限度가 설정되었는데 이중 964백만원이 집행되었다.

이와 함께 直接貸出業務도 처음 시작되었는데 大韓造船公社의 船舶 6隻 수출과 관련 라이베리아의 Stolt Falcon社(實船主: 노르웨이의 Stolt Nielsen 「그룹」)의 5個社에 19,602백만원이 대출집행되었다.

(6) 1980년

1980년에는 資金回收管理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輸出代錢을 輸銀計定에 직접 입금되도록 輸出契約書上の 送金方法을 개선하고 特別約定書에 關聯條文을 추가하

〈表 3-3-6〉

資金別 品目別 貸出執行實績(Ⅰ)

(단위 : 백만원)

		1976 (7~12월)	1977	1978	1979	1980
輸出資金	플랜트		130	35,983	50,216	37,996
	船舶	32,958	71,730	58,397	70,866	224,873
	鐵道車輛	507	332		1,085	2,982
	機械類·其他	254	1,287	10,711	4,429	2,822
	小計	33,719	73,479	105,091	126,596	268,673
技術 提供 資金	建設工事		4,640	2,224	404	
	其他用役		2,350	3,788		171
	小計		6,990	6,012	404	171
海外 投資 資金	資源開發		2,395		678	779
	設備貸與	1,223	287	2,755	582	1,224
	其他	2,449	12,879	13,311	9,725	55
	小計	3,672	15,561	16,066	10,985	2,058
直接貸出					19,602	27,607
轉貸資金					964	1,702
合 計		37,391	96,030	127,169	158,551	300,211

여 債權保全과 回收의 신속화를 기하였다.

또한 先受金の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先受金 管理要領을 제정(1980. 7. 28)하여 시행하였다. 이는 輸銀이 支援「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입금되는 先受金은 그 동안 貸出取扱規程 第39條(先受金の 事後管理)의 規定에 의거 관리하여 왔으나 先受金の 入金方式이 다양하고 入金時期에도 큰 차이가 있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1980년중의 支援貸出執行實績을 살펴 보면 1979년의 158,551백만원 보다 89%가 증가한 300,211백만원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船舶輸出支援은 1979년의 70,866백만원보다 217%가 증가한 224,873백만원에 달하였다. 轉貸資金은 1,702백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鐵鋼製品輸出과 관련하여 自由中國의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ICBC)에 공여되었다. 直接貸出은 大韓造船公社의 船舶 6隻 수출과 관련하여 Stolt Falcon社등에 26,818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株)大宇實業의 「버스」 50台(大型 40台, 中型 10台) 輸出支援과 관련하여 아이티의 Valores Auto Sales S.A.에 789백만원이 집행되었다. 이에 따라 연말 貸出殘

額은 1979년말의 2배를 넘는 511,456백만원으로 늘어났다.

(7) 1981년

그 동안 船舶建造資金의 執行計劃 수립과 집행의 기준으로 사용해 온 船舶建造資金 所要基準表(1977. 8. 1) 및 船舶部門 貸出執行方法(1978. 4. 14)을 船舶建造資金 執行基準으로 통합, 개정하여, 1981년 1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①資金執行計劃 수립 관련, 징구서류 간소화 ②資金執行計劃 확정절차 개선 ③貸出執行方法 개선 ④工程管理節次 효율화 등이었다.

한편 연중에는 外貨表示支給保證料率을 연 0.5%로 낮추어 8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貸出取扱規程 第15條(引渡前金融의 利子) 第1項에 의거, 引渡前金融利子 징수방법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引渡前金融 利子徵收時의 利子徵收期間調整(統合改書日 確定)基準을 설정 8월 21일자로 시행하였다.

한편 연중에는 外國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實施에 따른 對外支援保證業務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中短期輸出資金貸出 取扱規程을 폐지하였고 協調融資對象이 引渡前金融까지 확대됨에 따라 輸銀內國信用狀 取扱規程을 개정(1981. 9. 25)하여 輸出物資(完製品)購買用 輸銀內國信用狀 개설금액 한도인 輸銀融資承認額 범위내에 協調融資를 위한 債務保證承認額을 추가함으로써 輸銀內國信用狀金額을 實去來金額에 접근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貨로만 표시하게 되어 있는 輸銀內國信用狀 表示通貨를 輸出物資購買를 위한 경우에는 資金用途(承認通貨)에 따라 원貨와 外貨(外貨經費, 原資材輸入資金)로 구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引渡後金融 취급시 擔保條件에 따라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約束어음 擔保取得方法을 개선하는 외에 貸出取扱規程 第18條 第2項에 의거한 約定手數料 징수시 未支出承認額의 계산방법을 개정, 시행토록 하였다.

한편 연중에는 (株)한라자원의 파푸아뉴기니아 山林開發資金支援과 관련 資金管理役을 처음 파견한 바 있으며 對顧客「서어비스」改善의 일환으로 貸出 및 外國換關係 구비서류목록을 재정비하여 징구서류를 크게 간소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1981년에는 貸出取扱業務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는데 특히 船舶建造資金 執行基準의 改正에 따라 資金執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輸銀內國信用狀 및 貸出取扱規程과 外國換業務 관련 징구서류의 간소화 등 支援業體에 대한「서어비스」개선에 주력하였고 約束어음의 擔保取得方法 개선등을 통한 債權

保全策을 강구하였다.

1981년의 貸出執行額은 전년비 75%가 증가한 524,088백만원에 달했는데 이중 船舶輸出支援에 451,129백만원이 집행되어 전체의 86%를 차지하였다. 海外投資資金에 있어서는 파푸아뉴기니아의 山林開發 支援事業에 11,534백만원이 대출집행되었으며, 코데코 에너지주식회사의 油田開發事業에 최초의 主要資源開發資金 貸出로 6,466백만원이 지원되었다. 直接貸出은 英國의 Ben Line社에 대한 撒物船 수출 외 1件에 4,593백만원이, 그리고 轉貸資金은 自由中國으로의 鐵鋼製品輸出에 1,627백만원이 각각 집행되는데 그쳤다. 연말 貸出殘額은 947,602백만원으로 1980년말의 511,456백만원보다 85%가 증가하였다.

(8) 1982년

1982년 2월 23일자 第8次 理事會 議決에 따라 貸出取扱規程중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輸出資金貸出등의 利子와 約定手數料 계산시 1년을 365일로 계산하던 것을 360일로 계산토록 변경하였다.

또한 3월 25일자로 輸銀內國信用狀 取扱規程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輸出資金引渡前金融의 貸出形式이 元貨表示 어음貸出에서 外貨表示로 변경됨에 따라 輸銀內國信用狀의 表示通貨를 輸出物資購買의 경우는 外貨로, 輸出用原資材購買의 경우에는 外貨 또는 元貨(自己資金으로 保證金を 적립하는 경우에 한함)로 표시하게 되었으며, 輸出用原資材購買를 위한 輸銀內國信用狀 취급시에 한하여 징수하고 있던 期間別手數料(term charge)를 輸出物資購買의 경우에도 징수하게 되었다.

한편 對顧客「서비스」改善의 일환으로 輸銀內國信用狀 개설신청서류의 구비 요건중 受惠者의 施設保有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生産實績證明書를 當該品目 供給實績證明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6월 2일에는 貸出條件變更附議案 作成基準을 제정하여 支援業體의 제출자료를 정형화하였다.

한편 그 동안 商工部에서 전담하였던 産業設備 輸出許可業務중 일부를 7월 26일부터 輸銀이 취급하게 됨으로써「플랜트」輸出支援業務및 産業設備 搬出確認業務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支援業體에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연중의 産業設備輸出許可는 32件(80,259천「달러」), 産業設備 搬出許可는 176件(702,741천「달러」)에 달하였다.

1982년의 貸出執行額은 전년비 34%가 증가한 701,649백만원에 달했으며 이중 船舶輸出支援資金은 전년비 5%가 증가한 472,803백만원을 차지하였다. 船舶에 대

한 資金執行額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은 연중에 引渡期日이 연장됨에 따라 工期가 다소 지연된 데 큰 이유가 있으며 海外投資資金이 급증한 것은 資源開發事業에 대한 資金執行이 활발했기 때문이었다. 연말 貸出殘額은 1,563,828백만원으로 전년말 대비 65%가 증가하였다.

(9) 1983년

貸出實行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보면 先受金管理要領을 개정(1983. 4. 11), 시행하였는바, 「프로젝트」의 本承認전에 입금된 先受金은 현행과 같이 예치관리하고 本承認 이후에는 5백만「달러」이상의 高額先受金인 경우를 제외하고 입금 즉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管理對象인 5백만「달러」이상의 高額先受金の 管理解止는 輸銀資金 執行方法과 같은 방법으로 행하도록 하며 先受金の 수출자알 지급시에는 先受金使用計劃書만 제출토록 하였다.

이어 1983년 5월 3일자로 當行支援金融에 대한 貸出取扱規程중 일부를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國內에서 공급되는 輸出用原資材의 讓渡擔保 취득근거 신설 ②현황과악이 곤란한 擔保動産에 대한 擔保物調査 생략근거 신설 ③信用保證基金의 代位辨濟에 의한 回收方法 명문화 ④約定手數料등의 遲滯料 징수근거 신설 ⑤保證料의 징수방법 개선 등이다.

한편 船舶建造資金 執行基準을 개정(1983. 6. 1), 시행하게 되었는바 그 내용은 ①資金執行計劃 수립기준 항목의 구분, ②國產「엔진」資金 執行方法 명시 ③기타 資材費 집행계획 개선 ④勞務費, 經費 집행계획 개선 등이다.

이와 동시에 先受金預置管理基準을 제정(1983. 7. 27)운영하게 되었으며,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 讓渡擔保取得指針을 제정(1983. 8. 31), 시행하게 되었다.

이밖에 債權書類 移管基準을 제정(1983. 1. 5)하여 貸出取扱 담당자가 貸出事後管理 담당자에게 채권서류를 이관하는 절차와 채권서류의 관리목록 및 기준을 제정하여 업무의 정형화를 기하였다.

또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資金管理 駐在員의 業務要綱을 제정(1983. 8. 31)하여 輸銀支援資金의 효율적인 資金管理와 事後管理를 기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8월 5일에는 賣却延拂어음의 關聯貸出金 相計方案을 확정, 실시하게 되었고 10월 7일에는 貸出取扱規程중 일부를 개정하였는바, 政府의 中小企業支援 強化施策에 따라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時 融資比率를 不動産擔保 감정가액의 70~90%

이내에서 감정가액 범위내로 상향조정하여 우대 지원키로 하였으며, 不動産擔保 이외에 有價證券, 支給保證書 등의 담보에 대하여도 일부 해지근거를 명문화하여 업무의 융통성을 도모하고 담보관리 업무수행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플랜트」輸出資金 執行基準을 개정(1983. 12. 1)하여 船舶建造資金 執行基準의 체제에 맞추어 資金執行基準의 一元化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一括受注方式(turn-key base)이 아닌 「플랜트」나 船舶이 아닌 機械類에 대하여도 동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1977년 8월 27일자로 제정되었던 鐵道車輛生産資金 所要基準表는 폐지하였다. 1983년중의 資金執行實績은 전년비 2.5%가 증가한 719,506백만원에 그쳤으며 이중 船舶輸出支援資金은 전년보다 1.4%가 감소한 466,360백만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世界造船 및 海運市場의 不況에 따른 船舶工程 및 引渡時期 延期要請 사례 빈발 및 轉貸資金과 技術提供資金貸出 관련 대상실물거래의 부진 등에 따른 결과였다. 연말 貸出殘額은 2,055,194백만원으로 1982년말대비 31.4%가 증가되었다.

(10) 1984년

貸出實行과 관련하여 변경된 주요사항을 보면, 船舶建造資金의 執行基準을 개정(1984. 5. 23)하였는데 貸出執行金額算出을 工程進度基準率에서 貸出執行比率에 의거 운용토록 변경하였으며, 船舶建造 工程段階別(着工, 龍骨配置, 進水, 引渡) 現地確認은 필요시에 실시하도록 완화하였다.

또한 輸銀內國信用狀 取扱規程을 개정(1984. 5.29 및 7.25)하였는데 주요내용은 ①輸出用原資材 購買를 위한 信用狀 開設限度를 구분명시 ② 現金積立에 의한 換어음 買入時 支給同意書 정구생략 등이다.

이와 함께 1984년 7월 26일자로 貸出取扱規程을 일부 개정하여 擔保取得方法을 원칙적으로 讓渡擔保의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貸出元利金 回收方法의 例外取扱 但書條項을 신설하였다.

한편 9월 24일자로 産業設備輸出에 따른 搬出確認 및 輸入承認規程을 일부 개정하였고, 12월 7일자로 貸出取扱規程을 일부 개정하여 約定手數料의 徵收時期를 조정했으며 保證料率을 理事會에서 책정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約束어음讓渡方法을 개정하였고 債權讓渡證書의 양도금액 기재방법의 제정과 確定日字를 받는 貸出關聯書類의 徵求基準을 제정 운용하게 되었다. 한편 연중의 資金執行額은 850,257백만원에 달하였으며 43건의 貸出承認條件 변경이 있었다. 轉貸資金과 技術提供資金

〈表 3-3-7〉

資金別 品目別 貸出執行實績(Ⅱ)

(단위 : 백만원)

		1981	1982	1983	1984	1985
輸出資金	플랜트	44,965	133,769	107,819	89,138	161,340
	船舶	451,129	472,803	466,360	683,367	654,368
	鐵道車輛	304				3,646
	機械類·其他	3,422	6,389	9,190	420	
	小計	499,820	612,961	583,369	772,925	819,354
技術提供資金	建設工事					
	其他用役	37	611	179		
	小計	37	611	179		
海外投資資金	資源開發	11,534	51,072	31,288	13,680	2,174
	設備貸與	11	262	239	483	1,450
	其他			140	265	
	小計	11,545	51,334	31,667	14,428	3,624
直接貸出		4,593	21,525	84,534	58,368	20,770
轉貸資金		1,627	1,958	602		1,747
主要資源開發資金		6,466	13,260	19,155	4,536	5,059
合 計		524,088	701,649	719,506	850,257	850,554

은 對象實物去來의 부진으로 貸出執行實績이 전무하였으며 海外投資資金의 支援實績도 크게 감소되었다. 연말 貸出殘額은 2,606,944백만원으로 1983년말 대비 26.8%가 증가하였다.

(11) 1985년

1985년에 이르러서도 世界海運 景氣가 계속 不況을 면치 못함에 따라 船舶의 新規受注量이 전년에 비하여 크게 감소되었으나 既受注된 船舶建造에 따른 資金供給은 원활히 추진되었다. 연중의 資金執行 관련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2월 6일자로 職制分課規程을 개정한 데 따른 업무조정으로 企劃部에서 관장하던 外國換管理 업무가 金融部로 이관되면서 延拂輸出金融과 관련된 正常外決濟許可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金融部는 産業設備輸出許可, 搬出確認, 輸出入承認 및 外國換管理規程 第9-9條 및 第9-10條(輸出入銀行의 貸出承認을 받은 3년초과 延拂輸出去來에 대한 正常外決濟許可事項)의 업무와 貿易外支給認證 업무를 총괄 취급함에 따라 外國換業務의 추진과 事後管理를 병행하게 되었고 外國換 對顧客賣買率을 고시하

여 對顧客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게 되었다.

또한 貸出實行과 관련된 先受金管理要領의 일부를 개정(1985. 4. 8)했고 輸銀支援金融 수혜대상의 30대 계열기업群에 대한 與信管理 基準(1985. 5. 2)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탄력적인 資金執行에도 불구하고, 1983년 하반기 이후 계속적인 세계조선경기 불황에 따라 연중에는 輸出用 建造船舶의 引渡遲延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는 주로 世界海運景氣의 不況에 따른 수송물동량의 부족으로 船主들의 인수기피현상이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輸銀은 引渡遲延船舶에 대한 대책을 유형별로 원인분석하여 早期引渡方案을 강구하며 자금 수급계획의 탄력적인 조정과 船舶輸出履行에 필요한 실무 대책을 수시로 수립하여 이에 대처하였다.

한편 6월 1일자 職制分課規程 개정에 따라 與信實行전의 條件變更은 審査1部 및 審査2部에서 담당하며, 與信實行후의 條件變更은 金融部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또 貸出取扱規程을 개정하여 (1985. 7. 26) 당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約束어음, 支給保證書, 信用狀 등을 見質擔保로 취득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讓渡擔保의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1985년중에는 總 59件的 資金執行計劃을 수립하여 850,554 백만원의 貸出執行實績을 기록했으며 114件的 貸出條件變更이 있었다. 世界海運市場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既受注船舶에 대한 資金支援에 따라 輸出資金중 船舶支援資金은 654,368백만 원에 달했으며 「플랜트」輸出 支援實績은 전년의 89,138백만원에서 161,340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技術提供資金은 집행실적이 없었으며 海外投資資金貸出도 부진하였다. 연말 貸出殘額은 3,349,861백만원으로 전년말대비 28.5%가 증가되었다.

資金別 貸出執行實績

業務代行期 이후 1985년말까지의 貸出執行額 累計는 5조 176억원에 달하였다. 이중 輸出資金 執行額은 4조 4,283억원(88.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直接貸出 2,829억원(5.6%), 海外投資資金 2,171억원(4.3%), 主要資源開發資金 553억원(1.1%), 技術提供資金 230억원(0.5%), 轉貸資金 110억원(0.2%)의 순서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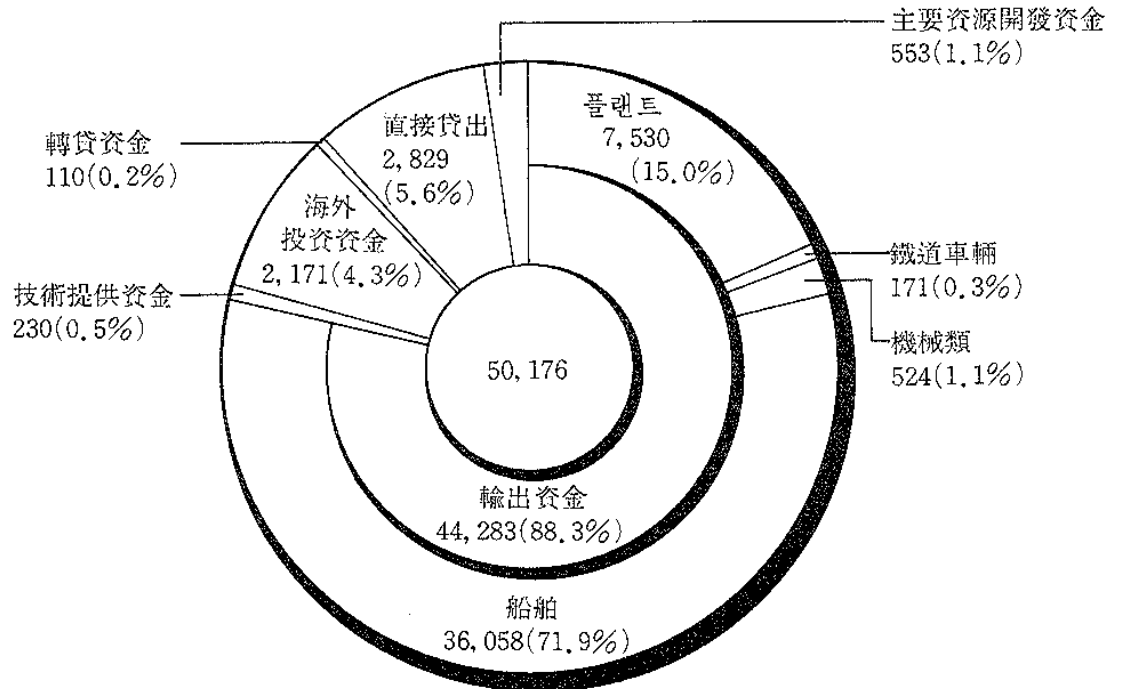
地域別로는 유럽에 1조 7,942억원(35.8%)이 집행되어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圖 3-3-1〉

資金別 品目別 貸出執行實績

(1985. 12. 31. 현재)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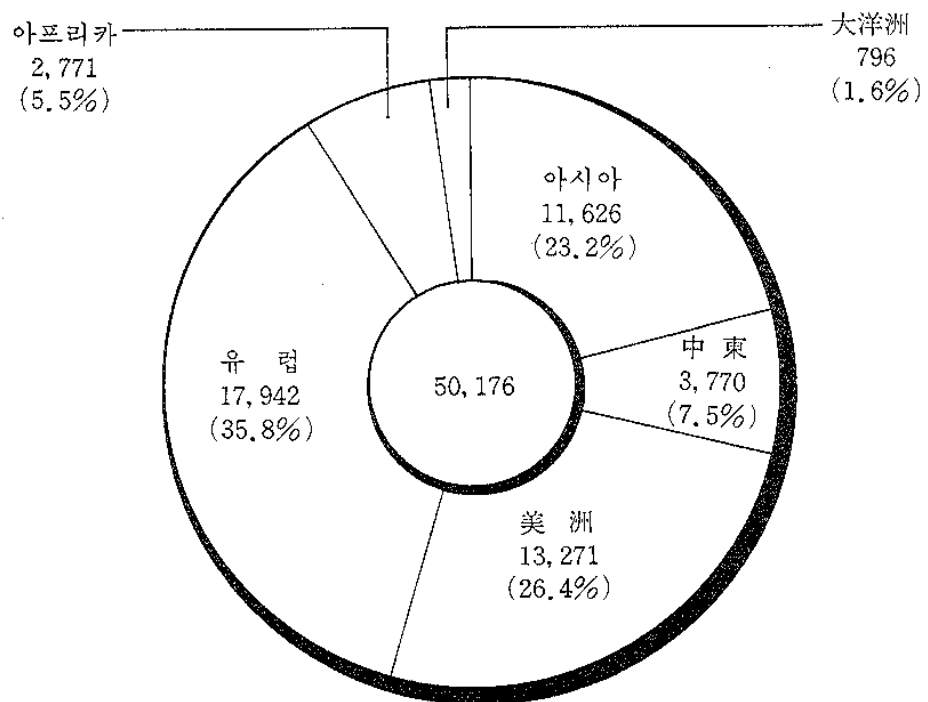


〈圖 3-3-2〉

地域別 貸出執行實績

(1985. 12. 31. 현재)

(단위 : 억원)



다음으로 美洲 1조 3,271억원(26.4%), 아시아 1조 1,626억원(23.2%), 中東 3,770억원(7.5%), 아프리카 2,771억원(5.5%), 大洋洲 796억원(1.6%)의 순서를 나타냈다.

(1) 輸出資金

〈船舶〉輸出資金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것이 船舶으로서 3조 6,058억원이 집행되어 總貸出執行額의 71.9%를 차지하였다.

船舶에 대한 輸出資金 貸出實績은 198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4년에는 6,834억원으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1985년에는 同貸出實績이 처음으로 전년 수준을 하회하였다.

이에 따라 總船舶輸出에서 차지하는 輸銀支援 船舶輸出의 비중 (新造船, 金額기준)은 1977년의 31.6%에서 1981년에는 63.9%, 그리고 1985년에는 85.1%로 제고되었다.

그 동안 輸出船을 중심으로 擴大成長을 지속해온 國內造船業界는 1983년 하반기 이후 世界海運市場의 不況에 따른 新造船 발주감소 및 建造船舶의 인도지연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1985년의 貸出執行 부진은 이에 따른 영향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플랜트〉輸銀 設立 이전에는 1973년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人絹織物工場 수출에 「플랜트」輸出資金이 지원되었으며 設立 이후에는 1977년에 필리핀의 自動電話交換施設 수출을 위해 처음으로 130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이어 1978년에는 케냐의 管子음쇠제조「플랜트」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멘트「플랜트」, 수단의 타이어「플랜트」등에 35,983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197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멘트「플랜트」輸出資金의 추가지원과 필리핀의 백시멘트「플랜트」, 인도네시아의 合板제조「플랜트」등에 50,216백만원이, 그리고 1980년에는 泰國의 積算電力計「플랜트」, 사우디아라비아의 鋼管제조「플랜트」, 스리랑카의 신발제조「플랜트」및 양말제조「플랜트」등에 37,996 백만원이 각각 지원되었다.

1981년에는 美國 및 英國으로의 石油試錐設備 수출과 에쿠아돌의 「시멘트」공장 증설에 44,965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이어 1982년에는 美國에 대한 石油試錐設備등에 133,769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1983년에는 인도네시아의 農藥제조「플랜트」, 말레이시아의 「페락」(Perak) 시멘트「플랜트」, 美國의 라면제조「플랜트」등에 107,819백만원이 대출집행되었다. 1984년에는 印度의 ONGC 海洋試錐設備, 인도

네시아의 「포르말린」제조「플랜트」, 말레이시아의 送電設備「플랜트」, 사우디아라비아의 火力發展設備「플랜트」, 美國의 試錐設備「플랜트」 등에 89,138백만원이 지원되었고, 1985년에는 印度의 海洋「가스」設備「플랜트」, 싱가포르의 産業用「보일러 플랜트」, 노르웨이의 石油試錐設備「플랜트」, 美國의 石油試錐設備「플랜트」 등에 161,340백만원이 지원되었다.

〈鐵道車輛〉 鐵道車輛에 대한 輸出資金은 設立 이전인 1975년 4월에 뉴질랜드에 대한 貨車 1,500輛 수출과 관련, 4,943 백만원이 처음 지원되었다. 1976년에는 가봉에 대한 貨車 30輛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貨車 100輛의 수출지원이 이루어졌다.

1979년에는 방글라데시에 대한 貨車 133輛의 수출과 관련, 1,085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1980년에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주한 鐵道車輛 50輛 수출에 2,982 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同輸出과 관련, 1981년초에 304백만원이 추가 지원되었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는 지원실적이 없었으며 1985년에는 방글라데시에 대한 客車 60輛 그리고 가봉에 대한 貨車 62輛과 機關車 2輛의 수출을 위해 3,646백만원이 지원되었다.

〈機械類等〉 機械類에 대한 輸出資金 지원은 1972년에 홍콩에 대한 機械附屬品 수출과 관련, 30백만원이 처음 지원되었다. 1974년에는 다시 홍콩에 대한 電話機 부속품 수출과 관련, 217백만원이 지원되었고 1975년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織機 部品 및 合板製造機 수출을 위해 614 백만원이 지원되어 輸銀 設立時까지 總 861 백만원이 지원되었다. 1976년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織機 및 合板製造機와 말레이시아의 合板製造機 수출을 위해 1,597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1977년에 1,287백만원이 추가지원되었다. 1978년에 이르러 機械類 수출은 더욱 활발해졌는데 스웨덴에 대한 「터빈」부품 수출, 볼리비아에 대한 아연제조부품 수출, 인도네시아에 대한 合板製造機 및 木材切斷機 등의 수출을 위해 10,711백만원이 지원되었다.

〈表 3-3-8〉

輸銀支援船舶輸出實績
(1985. 12. 31. 현재)

		1976	1977	1978	1979	1980
新輸出 船舶實績	隻	53	108	68	56	27
	G/T	551,294	553,660	617,525	304,107	464,449
	金額(A)	298,086	472,396	543,976	372,396	353,436
輸船 銀船 支輸 援出	隻	31	14	17	19	24
	金額(B)	243,012	149,497	174,969	268,732	302,909
輸銀支援比重 (B/A)		81.5	31.6	32.2	72.2	85.7

1979년에는 이란에 대한 鐵道部品 등 機械類, 튀니시아에 대한 피복류, 인도네시아에 대한 木材切斷機 등의 機械類 수출을 위해 4,429백만원이 대출되었다. 1980년에는 美國에 대한 「콘테이너」수출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木材切斷機 수출을 위해 2,822백만원이 지원되었고, 1981년에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通信「케이블」 및 電氣製品의 부속품 등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製織機 및 濠洲의 「크레인」 부품 수출을 위해 3,422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1982년에는 美國에 대한 工作機械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製織機, 練絲機 등의 機械類 수출을 위해 6,389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이어 1983년에는 필리핀의 石炭荷役設備 부품 등 機械類 수출등을 위해 9,190 백만원이 지원되었고 1984년에는 인도네시아의 製織機 수출과 관련, 420백만원이 지원되었다.

(2) 技術提供資金

技術提供資金貸出중 海外建設「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1977년 가봉의 百貨店 건설에 처음 지원되었으며, 이어 同年 7월에 수단 迎賓館 건설공사에도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는데 1977년에 4,640백만원, 1978년에 2,224백만원, 1979년에 404백만원이 계속 지원되었다.

用役部門에 대한 支援은 1977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주한 航空地圖製作에 따른 技術提供資金이 처음 지원되었고, 이어 11월에는 노르웨이로부터의 船舶改造 수주에 따른 기술제공자금이 지원되어 모두 2,350백만원이 대출집행되었다. 이어 197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신규로 수주한 항공지도제작에 대한 지원과 노르웨이로부터 船舶改造 수주에 따른 지원 및 12월의 이탈리아로부터의 船舶改造 수주 등과 관련, 總 3,788백만원이 대출실행되었다.

한편 1979년에는 수주실적이 없었고 1980년 9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다시

(단위 : 천「달러」, %)

1981	1982	1983	1984	1985
37	72	63	111	88
955,785	1,216,745	949,392	2,084,210	2,467,097
885,315	1,983,073	1,826,327	1,924,063	1,738,162
29	39	51	50	73
565,650	1,089,402	1,535,131	1,277,286	1,478,884
63.9	54.9	84.1	66.4	85.1

航空地圖製作에 대한 수주로 171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1981년에 37백만원이 추가 대출실행되었다. 그러나 1981년에는 신규지원실적이 없었다. 1982년에는 同年 6월에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의 航空地圖製作을 위해 611백만원이 대출실행되었으며 1983년에 179백만원이 추가 지원되었다.

(3) 直接貸出

直接貸出制度가 도입된 후 1979년에 처음으로 라이베리아에 대한 液體化學物 運搬船 수출을 위해 81백만「달러」가 지원되었다.

1980년에는 아이티와 파라과이에 버스 및 트럭의 수출을 위해 각각 1.3 백만「달러」와 330 천「달러」가 지원되었다.

이어 1981년에는 美國과 泰國에 대한 撒物船 및 送電用鐵塔 수출과 관련, 각각 21.2백만「달러」, 2.0백만「달러」가 지원되었으며 1982년에는 4件, 97.1백만「달러」, 그리고 1983년에는 2件, 112.9백만「달러」가 지원되었다.

1979년 이후 直接貸出 支援實績은 모두 11件, 316 백만「달러」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輸出實績은 554.5 백만「달러」에 달하였다.

輸銀이 直接貸出 方式으로 지원한 거래의 특징을 살펴보면, 品目은 船舶, 「플랜트」 등 大型輸出去來가 대부분(11件중 8件, 316백만「달러」중 312백만「달러」)이며, 輸出對象國은 우리 나라와 二重課稅防止協定이 체결되어 있어 輸銀에 대한 利

<表 3-3-9>

直接貸出 執行實績
(1985. 12. 31. 현재)

(단위: 천「달러」)

承認日字	輸入國	目的物	契約額	貸出執行額
1979. 11. 21	라이베리아	液體化學物運搬船 6隻	144,000	81,000
1980. 2. 9	아이티	버스 50臺	1,570	1,335
1980. 12. 19	파라과이	트럭 250臺	413	330
1981. 3. 12	英國	Bulk Carrier 1隻	37,900	21,224
1981. 7. 8	泰國	送電用 鐵塔	3,790	2,099
1982. 3. 26	英國	Bulk Carrier 1隻 ¹⁾	35,964	20,140
1982. 9. 7	"	Ro-Ro 船 1隻	69,542	38,944
1982. 11. 2	"	Container船 1隻	35,598	19,935
1982. 11. 12	印度	Water Injection Well Platform	32,317	18,097
1983. 6. 14	"	Win Process Platform	130,976	77,931
1983. 8. 2	英國	Bulk Carrier 3隻	62,496	34,998
合計			554,566	316,033

註: 1) 당초 1979. 12. 29자 輸出資金貸出로 承認된 件임.

자마йка 中央銀行 앞
轉貸資金 供與協定 체결
(1979. 2. 9)



子支給에 대해 源泉稅를 감면받을 수 있는 國家(11件 중 5件)로 나타나고 있다.

(4) 轉貸資金

轉貸資金은 1979년 자마йка에 대한 5백만 「달러」의 與信限度 공여를 시작으로 1985년말 현재 모두 11件, 40백만 「달러」가 공여되었다. 이 가운데 실제 資金引出은 칠레의 Banco Internacional, 臺灣의 ICBC, 자마йка의 The Bank of Jamaica, 이집트의 Cairo Far East Bank S.A.E, 아이티의 中央銀行 등 5個機關으로부터, 12.3 백만 「달러」가 이루어졌다.

자마йка의 The Bank of Jamaica 에 대한 5 백만 「달러」 與信증 실제 資金引出額은 3.3 백만 「달러」에 달했는데 동건에 대해서는 1985년 8월에 「리스크줄링」協定

<表 3-3-10>

轉貸資金 供與實績

(단위 : 천 「달러」)

承認日字	借主國	借主銀行	與信限度	引出額	備考
1979. 1.19	자 마 이 카	The Bank of Jamaica	5,000	3,372	1985. 8. 10 「리스크줄링」協定체결 (1985. 10. 10 발효) 借主銀行名稱변경(중 전 : Banco Islaelita de Chile)
1979. 2. 6	칠 레	Banco Internacional	2,000	1,992	
1980. 6. 2	臺 灣	The Int'l Commercial Bank of China (ICBC)	5,000	4,988	
1980.12. 2	이 집 트	Cairo Far East Bank S.A.E	3,000	263	
1985. 2.15	아 이 티	Haiti 中央銀行	2,000	1,700	
合 計			17,000	12,315	

이 체결되었다. 한편 칠레의 Banco de Chile 에 대한 轉貸資金은 與信限度 使用期間이 종료되면서 引出實績없이 協定이 종료되었으며, 泰國 Thai Farmer's Bank 등에 대한 5件은 1985년말 현재 資金引出이 행해지지 않은채 與信限度만이 공여되고 있다.

(5) 海外投資資金

輸銀 業務代行期間중에는 海外投資資金은 1972년에 인도네시아 山林開發合作投資를 시작으로 주로 資源開發事業등에 總 3.0백만「달러」가 지원되었다.

輸銀 설립 이후에는 1976년에 船舶設備貸與 등을 포함, 12.5 백만「달러」가 처음 지원되었으며, 이후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어 1979년에는 22.7 백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業種構成에 있어서는 製造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진 반면, 支援資金規模에 있어서는 資源開發事業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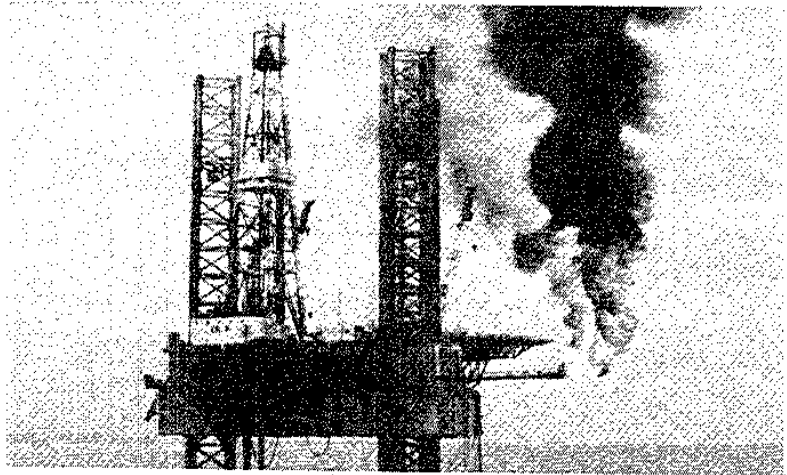
1980~81년에는 國內外 景氣의 침체를 반영하여 海外投資資金貸出이 크게 줄어 각각 3.1백만「달러」와 16.5 백만「달러」가 지원되는데 그쳤다. 1982년 이후의 海外投資資金貸出은 製造業과 資源開發事業을 중심으로 그 규모가 점증되어 왔는데, 1982년에는 資源開發事業 68.2 백만「달러」를 포함하여 모두 68.6백만「달러」가 지원되었으며, 1983년에는 39.8 백만「달러」, 그리고 1984년에는 17.4 백만「달러」가 지원되었으며, 1985년에는 4.1 백만「달러」가 지원되었다.

輸銀 設立 이후, 海外投資資金貸出의 특징은 件數면에서는 製造業의 비중이 월

〈表 3-3-11〉 設立 이후 海外投資資金 貸出執行實績 (단위: 천「달러」)

	製 造 業	資源開發事業	其 他
1976			12,533
1977	593	4,948	26,610
1978	5,692		27,502
1979	1,202	1,401	20,093
1980	1,855	1,180	84
1981	17	16,465	
1982	350	68,205	
1983	300	39,331	177
1984	584	16,534	320
1985	1,629	2,442	
合 計	12,222	150,506	87,319

油田開發事業
(1981년 融資承認, 인도네시아)



등히 높았던 반면, 金額면에서는 資源開發事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왔다.

(6)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

政府의 資源開發計劃에 따라 海外에서의 主要資源開發事業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코데코 에너지(株)의 인도네시아 西「마두라」油田 開發事業에 대해서 同資金이 1件 지원되었다. 그 동안의 支援內容을 보면 코데코 에너지(株)는 1981년 5월 인도네시아 國營石油會社인 西「마두라」油田의 共同開發 本契約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政府의 승인을 받은 후 우리 나라 政府로부터 海外資源開發許可를 얻은 뒤 1981년 10월부터 物理探查를 시작, 油徵의 유무를 조사한 후 1982년 7월부터 試錐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輸銀은 1981년 4월 23일 第14次 經濟長官協議會에서 開發初期 3年間(1981. 5~1984. 4)의 探查費用 48,147천「달러」의 80%인 38,518천「달러」의 支援이 결정되었으며, 그후 探查費用의 상승에 따른 追加費用도 輸銀이 지원토록 政府의 支援方針이 결정되어 6회에 걸쳐 23,667천「달러」를 中액대출함으로써 總 62,185천「달러」를 지원하였다. 1984년 12월 29일 政府는 코데코 에너지(株)로 하여금 韓國石油開發公社의 石油開發基金 7,336천「달러」를 차입토록 하여 同基金으로 輸銀貸出金を 상환하여 貸出殘額은 54,849천「달러」에 이르고 있다.

支給保證 및 外國換業務

(1) 支給保證業務

輸銀의 支給保證業務는 다른 金融機關 또는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債務保證, 先

受金還給保證, 契約履行保證으로 구분되며, 保證限度額は 輸銀法 第23條(借入金 등의 限度額)에 따라 納入資本金과 積立金 合計額の 10倍(1985년 12월 31일 현재 46,760억원) 이내로 되어 있으며, 1985년말 현재의 保證殘額は 3,723 억원(418백만「달러」)을 기록하였다.

輸銀은 1980년 1월부터 市中銀行, 綜合金融會社, 外國銀行 國內支店 등과 協調融資를 취급하게 됨에 따라, 輸銀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協調融資와 관련하여 借主의 요청이 있는 경우, 協調金融機關 取扱分에 대한 債務保證을 위하여 支給保證書を 발급하여 왔다. 이 경우 借主는 貸出實行전에 支給保證書 發給을 신청하고 그와 동시에 輸銀은 借主로부터 支給保證約定書を 징구한다. 1985년말 현재 輸銀의 債務保證은 34 件, 35백만「달러」에 달하였는데, 借主의 金融費用 負擔增加 회피에 따라 최근에는 協調融資 取扱分에 대한 支給保證書 發給要請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다.

한편 輸銀은 輸銀支援「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재 입금되었거나 장래에 입금될 先受金の 償還을 보증하고 있는데, 同先受金還給保證은 輸銀支給保證額の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82.2%) 1985년말 현재 保證實績은 104件, 344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輸銀支援「플랜트」, 機械類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輸出者の 契約履行을 보증하기 위한 契約履行保證은 1985년말 현재 3件에 保證殘額は 20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2) 外國換 業務

輸銀은 1976년 10월 5일 財務部長官으로부터 甲類外國換銀行 業務取扱認可를 받아 外國換, 輸出入業務 및 이와 관련된 附帶業務를 취급해 왔다. 輸銀의 外國換業務는 輸銀支援 去來에 국한되며 輸出入 승인, 輸入信用狀 개설 및 船積書類 인도,

〈表 3-3-12〉 支給保證殘額
(1985. 12. 31 현재) (단위: 천「달러」)

	件 數	保證殘額
債 務 保 證	34	34,745
先受金還給保證	104	343,824
契約履行保證	3	19,515
其 他	4	20,151
合 計	145	418,235

輸出信用狀 통지, 協調金融機關에 대한 債務保證, 內國信用狀 개설, 先受金還給保證 및 契約履行保證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輸銀은 貿易去來法 第23條 및 同施行令 第32條(權限의 委任등)에 의거 商工部長官으로부터 輸入許可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設立初期부터 外國換銀行의 자격으로 輸銀 支援去來에 대한 輸入許可業務를 취급하였다. 그러나 1980년 2월 26일 協調融資 取扱規程을 제정하고 原資材輸入을 위한 國外所要資金은 協調融資機關에서도 취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최근에는 輸入許可業務를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

輸出許可業務는 1980년 12월 22일 商工部の 延拂輸出許可에 관한 방침에 따라 輸銀支援去來에 대한 輸出許可 및 輸出代金決濟를 輸銀이 취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輸出許可業務의 一元化를 기하게 되었다.

이 밖에 輸出用 原資材의 국내조달을 촉진하고 中小企業 支援을 확대하기 위하여 1978년 5월 16일 韓國輸出入銀行 內國信用狀 取扱規程을 제정하여 國內에서 輸出用原資材나 輸出物資를 구매하고자 하는 者는 輸出契約書 또는 輸出信用狀에 의거 輸銀이나 輸銀이 지정하는 外國換銀行에 輸銀內國信用狀의 개설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輸銀이 所定 內國信用狀의 개설과 그 어음의 買入業務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그동안의 外國換業務는 産業設備 輸出許可 및 搬出確認, 延拂輸出관련 正常外決濟許可, 기타 貿易外支給認證 業務가 중심을 이루었다.

第 4 節 輸出保險 業務의 伸張

1. 輸出保險制度의 變遷

輸出保險의 概念 및 導入背景

(1) 輸出保險의 概念

輸出去來는 일반적으로 去來의 상대방이 원격지에 위치한 서로 다른 國家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輸出契約이 성립되었다 할 지라도 輸入者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지 않을런지, 또는 約定期日내에 代金을 결제해 줄 것인지 등 輸出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輸入國에서 戰爭, 革命, 內亂 등이 일어나거나 輸入國 政府가 輸入禁止, 輸入制限 또는 換去來制限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輸入者의 決濟意思에도 불구하고 代金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輸出者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輸出者가 안심하고 輸出에 전념토록 하여 輸出을 증대시키기 위한 制度的 裝置가 필요한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輸出保險制度이다. 간단히 말해서 輸出保險은 貿易去來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危險 가운데서 海上保險등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輸出代金回收上의 危險 즉 輸入國에서의 戰爭, 革命, 內亂, 換去來의 禁止 또는 制限 등의 非常危險 (political risks)과 輸出契約상대방의 破產 또는 代金支給拒絕 및 遲延 등의 信用危險 (commercial risks)으로 인하여 輸出者, 生産者 또는 輸出資金을 융자한 金融機關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진흥을 도모코자 운영하는 國家의 非營利 政策保險이다.

(2) 輸出保險制度의 導入背景

1960년대 우리 나라 經濟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經濟開發을 통한 自立經濟基盤의 구축이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62년에 시작된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그 후 우리 經濟의 高度成長과 產業構造 高度化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國土 面積에 비해 人口가 많으며 賦存資源이 부족한 우리 나라

가 經濟開發計劃의 최우선 목표로 對外指向的 開發戰略을 채택하여 輸出 第1主義를 표방한 것은 우리 나라를 輸出立國으로 발돋움하게 한 原動力이 되었다.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기간 이전에 연 30~40백만「달러」에 불과하던 輸出額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약 43% 라는 괄목할 만한 伸張을 이룩하여 계획의 최종년도인 1966년에는 256백만「달러」로 급증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우리 나라 輸出은 연도별 增加率이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었던 데다 輸出額 자체도 미미한 규모(1968년도의 경우 약 6억「달러」상회)여서 우선은 양적으로 수출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 다시 말해 總量輸出規模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政府는 信用狀(L/C)조건의 一覽拂去來와 같은 안전한 決濟形態의 輸出 이외에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또는 D/P(Document against Payment)와 같은 短期延拂輸出去來 및 中長期延拂輸出去來로 輸出形態를 다양화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輸出市場도 先進國 위주에서 政治的 危險度가 다소 높다하더라도 後進國에까지 다변화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輸出形態 내지 市場의 多邊化는 輸出代金回收上的 危險을 수반하게 됨에 따라가중된 危險으로부터 기인하는 수출자의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輸出保險制度의 도입이 시급해졌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輸出保險制度는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上的 總量輸出規模 增大施策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輸出保險法の 制定 및 改正

(1) 輸出保險法の 制定

우리 나라의 輸出保險制度는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2次年度인 1968년초에 輸出主務部處인 商工部가 貿易業界, 金融界, 學界 및 其他 經濟團體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부터 구체적인 도입, 운영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輸出保險制度가 갖는 특수성때문에 운영상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商工部보다는 보험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財務部가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어 보험운영에 대한 관장은 財務部가 맡되 그 실질적인 운영은 당시 국내에서 유일한 政府投資機關으로 再保險을 취급하고 있던 大韓再保險公社가 대행토록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어 1968년 6월에 개최된 經濟長官會議에서 同計劃案이 확정됨에 따라 政府는 1968년 12월 31일 法律 第2063號로 輸出保險法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2) 業務의 開始

輸出保險法이 제정, 공포된 이듬해인 1969년 1월 22일에는 大統領令 第3743號로 輸出保險法 施行令이, 그리고 同年 1월 30일에는 財務部令 第562號로 輸出保險法 施行規則이 각각 제정, 공포되었다. 이어 1969년 1월에는 政府로부터 3억원의 輸出保險基金을 출연받았으며 同年 2월 18일부터 輸出保險 引受業務가 시작되었다.

(3) 輸出保險法の 改正

輸出保險運營의 目的, 保險種目, 保險者(政府)와 被保險者의 權利, 義務事項 및 運營財源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는 輸出保險法은 제정 당시 總 9章 45個條와 附則으로 구성되었는데 法制定 이후 17년이 경과되는 동안 5次的 改정을 거쳐 현재는 總 9章 62個條(실제로는 추가조항으로 13章 84個條)와 附則 4個條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 동안의 主要 改正內容을 보면 ①輸出保險制度의 확대, 개편을 위한 각종 保險種目的 擔保範圍 확대, 保險金支給率 인상 및 新種保險種目的 신설과 引受限度의 基金 倍數制 철폐, ②효과적인 수출지원 강화를 위한 輸出保險運營主體 즉 政府의 輸出保險管掌部處 및 代行機關의 변경 ③輸出保險制度의 확충과 運營體制의 개선, 강화를 위한 輸出保險審議會의 設置機關 변경 및 輸出保險 專擔機關(韓國輸出保險公社)의 設置根據 설정 ④危險分散의 適正化를 위한 再保險의 실시근거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輸出保險 運營機關의 變更

(1) 管掌部處 및 代行機關

1970년대에 들어 重化學工業製品의 수출이 활기를 띠게 됨에 따라 政府는 重化學工業을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6년 7월 1일 延拂輸出 支援金融業務를 전담할 韓國輸出入銀行을 발족시킴과 동시에 輸出保險을 輸銀의 수출지원 금융과 연계시켜 운영할 수 있도록 第3次 法改正을 통하여 大韓再保險公社에서 수행해 오던 輸出保險業務를 1977년 1월 1일부터 輸銀이 대행, 운영토록 하였다.

한편 輸出保險은 수출지원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政策保險이기 때문에 이를 商工部의 綜合輸出政策과의 연계하에서 운영하기 위해 1978년 第4次 法改正을 통하여 輸出保險의 管掌部處를 財務部에서 商工部로 변경하였다.

〈表 3-4-1〉

輸出保險法の 改正推移

	日 字	主 要 內 容
第1次 改正 (法律 第2167號)	1970. 1. 1	○ 保險金支給率 引上 - 一般輸出保險・中長期延拂輸出保險：80%→90% - 輸出金融保險・輸出어음保險：70%→90% - 委託販賣輸出保險：70%→80% ○ 一般輸出保險의 擔保範圍 擴大 ○ 中長期延拂輸出保險의 付保對象貨物의 擴大 ○ 輸出金融保險 保險契約者에 韓國輸出入銀行 追加
第2次 改正 (法律 第2422號)	1972. 12. 30	○ 保險金支給率 引上 - 委託販賣輸出保險：80%→90% ○ 海外投資保險制度의 新設
第3次 改正 (法律 第2952號)	1976. 12. 31	○ 海外建設工事保險制度의 新設 ○ 輸出保險政府代行機關의 變更 - 大韓再保險公社→韓國輸出入銀行 ○ 輸出保險基金의 限度額(50억원) 撤廢
第4次 改正 (法律 第3107號)	1978. 12. 5	○ 再保險制度의 實施根據 마련 ○ 輸出保險契約締結限度의 增額 - 基金의 20倍→基金의 30倍 ○ 輸出保證保險制度의 新設 ○ 輸出保險管掌機關의 變更 - 財務部→商工部 ○ 輸出保險審議會 設置機關의 變更 - 韓國輸出入銀行→商工部 ○ 基金의 決算上 利益金 別途 積立制度 마련
第5次 改正 (法律 第3399號)	1981. 3. 27	○ 輸出保險引受限度 倍數制의 撤廢 ○ 輸出代金金融保險制度의 新設 ○ 保險者 代位權의 明文化 ○ 輸出信用保證制度의 導入 ○ 韓國輸出保險公社의 設立根據 마련

(2) 輸出保險審議會

輸出保險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輸出保險審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하여 政府, 金融機關, 貿易業界 및 學界 代表 12人 이내로 구성되는 輸出保險 最高議決機關이자 商工部長官의 諮問機關으로서 그동안 代行機關내에 설치, 운영해 왔으나 輸出保險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政府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도록 하기 위하여 第4次 法改正時에 商工부로 이관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同審議會의 委員은 輸出保險法 施行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되는데 委員은



輸出保險業務 引受
(1977. 1. 1)

①商工部 商易次官補, ②經濟企劃院, 外務部, 財務部, 動力資源部, 建設部 소속 1급상당 公務員 중에서 商工部長官이 위촉하는 者 각 1人 ③韓國輸出入銀行長 ④ 기타 輸出保險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 중에서 商工部長官이 위촉하는 者로 구성된다.

현재 委員長(商工部次官)을 포함하여 12人의 委員으로 구성된 同審議會는 保險料率, 保險關係 成立의 制限 등 輸出保險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輸出保險에 관하여 商工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고 있다.

輸出保險 運營組織

(1) 大韓再保險公社의 運營組織

輸出保險業務의 시작과 함께 大韓再保險公社는 輸出保險部를 신설하여 보험인수 및 사고보상과 신용조사업무를 수행할 保險業務課와 基金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할 保險管理課를 설치하였다. 그후 1974년에 신용조사업무만을 전담할 信用調査課를 신설하는 한편 嶺南地方에 소재하는 수출업체에 대한 부보편의의 제공과 輸出保險의 이용도 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해 釜山에 事務所를 개설하였다.

(2) 韓國輸出入銀行의 運營組織

1977년 1월 1일 輸銀이 輸出保險業務를 승계받은 후 同年 6월에 釜山事務所를 釜山出張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8월에는 輸出保險制度의 研究, 改善 및 事故補償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統轄課와 補償課를 신설하였다.

다음 해인 1978년 8월에는 美洲地域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사고조사를 전담할 「로스앤젤레스」事務所를 開所하고 9월에는 東南亞地域 수입자에 대한 신용

조사 및 사고조사를 전담할 「홍콩」事務所를 개설하였다.

또한 輸出保險 業務實績의 신장과 包括保險 실시에 따른 업무 영역의 확대 등을 감안 조직의 효율적 통합을 위해 1981년 3월 輸出保險部를 輸出保險1부와 輸出保險2부로 분리, 개편하고 輸出保險1부에는 統轄課, 業務課와 補償課를 두고 輸出保險2부에는 制度調査課를 신설하고 管理課, 信用調査課를 두게 되었다.

1984년 5월에는 보험인수업무와 사고보상업무의 상호견제를 통한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輸出保險1부의 補償課를 輸出保險2부로, 輸出保險2부의 制度調査課를 輸出保險1부로 변경하였다. 이어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1985년 6월 業務課를 業務1·2課로, 그리고 信用調査課를 信用調査1·2課로 각각 확대, 개편하였고 1986년 3월에는 釜山出張所를 釜山支店으로 승격시켜 현재는 2부 8課 1地方支店 및 2海外事務所의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表 3-4-2〉

輸出保險基金의 造成現況

(단위: 백만원)

	輸出保險基金			利益積立金		總累計
	政 府 出 損 金	利 益 金 轉 入	累 計(A)	利 益 金	累 計(B)	(A)+(B)
1969	300		300			300
1970	200	33	533			533
1971		71	604			604
1972		130	734			734
1973		254	988			988
1974		6	994			994
1975		194	1,188			1,188
1976	1,000	101	2,289			2,289
1977	2,000	△361	3,928			3,928
1978	3,000	212	7,140			7,140
1979	2,500		9,640	767	767	10,407
1980	3,000		12,640	2,226	2,993	15,633
1981	5,000		17,640	2,728	5,721	23,361
1982	950		18,590	6,947	12,668	31,258
1983	1,000		19,590	2,115	14,783	34,373
1984			19,590	2,093	16,876	36,666
1985	1,000		20,590	1,925	18,801	39,391

註: 1971년 이후 1975년까지 政府 新規出捐이 없었던 것은 同期間의 保險付保實績이 미미하였는데다 法上 利益金の 基金轉入根據로 인한 것이었음.

輸出保險基金

輸出保險基金은 輸出保險法 第30條(基金의 設置)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保險事業의 目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財源이다.

輸出保險基金은 1978년까지 政府의 出損金과 基金會計의 結算上 발생한 利益金의 轉入으로 組成해 왔으나 第4次 法改正에 의해 1979년부터는 結算上 발생한 利益金을 基金에 轉입시키지 않고 별도의 計定으로 積立하되 結算上 손실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同積立金에 의해 補填하고 積立金이 부족할 경우에는 政府가 補填하도록 함으로써 基金은 사실상 政府의 出損金만으로 組成되도록 변경되었다.

한편 政府는 業務開始 初年度에 3억원의 基金을 출연하기 시작한 이래 매년 基金을 증액 출연함으로써 1985년 12월말 현재의 保有基金은 政府出損金 199.5억원과 1978년까지 基金에 轉입된 利益金 6.4억원을 합하여 총 205.9억원에 달하게 되었다. 여기에다 1979년 이후 별도의 計定에 積立된 利益積立金 188억원을 포함하면 輸出保險 총재원은 약 394억원에 이르고 있다.

2. 輸出保險 支援의 擴充

1969년 2월부터 업무가 개시된 輸出保險은 그 동안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래의 機能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착실한 發展을 이룩하여 왔다. 시행 당시 一般輸出保險, 輸出金融保險, 輸出어음保險, 中長期延拂輸出保險 및 委託販賣輸出保險 등 5個 種目에 불과하던 保險種目を 다섯 차례의 法改正을 통하여 海外投資保險, 海外建設工事保險, 輸出保證保險 및 輸出代金金融保險 등을 추가로 신설, 도합 9個 種目으로 확대함으로써 변화하는 무역환경과 새로운 보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고 擔保力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아울러 강구했으며 일부 종목에 대하여는 包括保險制度를 도입, 시행하는 한편 꾸준한 弘報活動의 전개로 보험의 인식도를 제고시켜 왔음은 물론 先進保險運營技法의 도입, 연마를 위한 外國機關과의 교류에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制度의 開發 및 改善

(1) 新種保險種目の 開發

〈海外投資保險〉 우리 나라의 投資者가 海外投資를 행한 후 非常危險에 의하여

投資元金を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投資에서 발생한 果實을 송금할 수 없게 되어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付保適格投資는 株式, 社債, 貸付金債權 및 不動產에 관한 權利 등의 취득이다.

이 보험은 각국의 保護貿易主義 강화에 따른 무역장벽 타개와 資源의 장기,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하여 第2次 法改正時에 신설되었다.

〈海外建設工事保險〉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建設促進法에 규정된 海外建設工事 또는 海外建設用役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工事 완료 후 非常危險 또는 信用危險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代價를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國際收支의 改善, 雇傭의 增大, 技術蓄積 및 國威宣揚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된 建設輸出을 지원키 위해 第2次 法改正時에 신설되었다.

〈輸出保證保險〉 輸出契約이나 海外建設工事契約 또는 海外建設用役의 保險條項에 따라 保證書(bond)를 발행한 外國換銀行이 海外發注者로부터 保證債務의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資本財輸出이나 海外建設輸出 등과 관련하여 發注者에 대한 保證書의 제출은 그 계약 체결에 있어서 필수요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保證書 發給을 원활하게 하여 수출자의 受注活動을 지원하고자 第4次 法改正時에 신설되었다.

〈輸出代金金融保險〉 우리 나라의 상품 특히 資本財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轉貸資金 貸出,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直接貸出 등 購買者信用(buyer credit) 방식의 대출을 공여한 우리 나라 金融機關이 非常危險 또는 信用危險에 의해 그 元利金を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1978년 6월 輸銀이 購買者信用制度를 도입, 시행하게 되면서부터 이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고자 第5次 法改正時에 신설되었다.

(2) 包括保險의 實施

輸出保險은 個別保險 引受方式과 包括保險 引受方式의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個別保險 引受方式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을 할 때마다 보험자가 個個件의 내용을 심사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危險이 큰 物件만을 선택적으로 부보하려 하기 때문에 보험자의 입장에서서는 危險의 적정한 分散이 불가능하여 보험사업의 合理的 經營이 곤란하고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危

險이 큰 物件은 인수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보험부보의 기회를 잃게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 包括保險 引受方式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特約을 맺고 特定 商品 및 決濟條件의 輸出去來 전부를 자동적으로 부보하고 보험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자측에서 보면 保險需要를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危險의 逆選擇防止를 통한 危險分散이 가능하여 安定的 經營體制를 유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로서도 보험가입의 확실한 보장 아래 과감한 수출을 추진할 수 있고 保險料가 대폭 할인(個別保險料의 50%)된다는 利點이 있다. 따라서 政府는 包括保險制度 도입을 통하여 個別保險制度의 短點을 보완하고자 1978년 6월 1일부터 輸出어음保險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包括保險制度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후 包括保險制度는 中長期延拂輸出保險 및 輸出保證保險 種目에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輸出어음保險 包括保險〉 中短期延拂輸出에 관한 輸出어음保險 包括保險은 OECD國家를 제외한 開發途上國 또는 低開發國으로 수출되는 去來중 決濟期間이 180일 이상 3년 이내가 되는 거래를 適格付保對象으로 하여 197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開發途上國이나 低開發國의 수입자들은 자신들의 취약한 資金力이나 貿易慣習을 내세워 短期延拂輸出의 최장 信用期間인 180일을 초과한 決濟條件을 요구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輸出市場을 다변화시키고 同地域 國家들과의 經濟協力을 강화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180일이 초과 되는 거래에 대해 包括保險制度가 도입된 것이다.

한편 輸出어음保險 商社別 任意包括保險은 1981년 11월 11일자 商工部告示 第81—39號 輸出어음保險 商社別 任意包括保險 實施要領에 의해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制度는 시행 당시 中東地域의 石油收入增大에 편승한 同地域에로의 막대한 양의 수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業界의 요청에 따라 도입되었다.

〈中長期延拂輸出保險 包括保險〉 1980년 7월 4일자 商工部告示 第80—18號 中長期延拂輸出保險 包括保險 實施要領에 의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 制度는 政府의 重化學輸出促進政策에 따라 重化學製品 즉 선박, 「플랜트」 및 철도차량 등의 수출촉진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輸出保證保險 包括保險〉 1980년 7월 2일자 商工部告示 第80—19號 輸出保證保險 包括保險 實施要領에 의거 시행하게 되었다. 이 制度는 中東地域에 대한 海外建設工事 진출 급증에 따른 銀行支給保證團의 保證書 발급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

써 建設輸出을 적극 지원키 위해 도입되었다. 이 制度는 海外建設促進法에 규정된 海外建設工事契約 또는 海外建設用役契約에 관한 保證중 入札保證, 契約履行保證 및 先受金還給保證으로 그 適格付保對象이 제한되었다.

(3) 保險料率의 改定

保險料率は 業務開始後 7次에 걸쳐 조정되었다. 保險料率 改定の 주요 내용은 新種保險種目에 대한 料率의 신설, 輸出競爭力 強化를 위한 保險料率의 인하, 保險料率 體系의 합리적 정비 및 特別割引率의 도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4) 保險種目別 制度改善

〈一般輸出保險〉輸出契約을 체결한 후 수입국 政府의 輸入制限, 換去來의 制限 또는 수입국에서의 戰爭勃發 등과 같은 非常危險과 輸出契約 상대방의 破産이나 일방적인 契約破棄(輸出契約 상대방이 政府나 地方公共團體 또는 이에 준하는 공

〈表 3-4-3〉

保險料率의 改定推移

	日 字	主 要 內 容
第 1 次	1969.9.23	○ 輸出保險料率의 引下
第 2 次	1973.2. 1	○ 輸出保險料率의 引下
第 3 次	1974.1.14	○ 海外投資保險料率의 新設
第 4 次	1977.8. 1	○ 海外建設工事保險料率의 新設
第 5 次	1980.1. 1	○ 基本料率 體系整備(擔保危險에 따라 非常危險, 信用危險으로 分類) ○ 國別割引率 體系變更 ○ 公共輸入者割引制 導入 ○ 支給保證割引率 體系變更 ○ 連續保險割引率制 廢止 ○ 「인센티브」割引率制 導入
第 6 次	1982.10. 1	○ 特別割引率 競合調整 ○ 輸出代金金融保險料率 新設 ○ 特別割引率의 調整 ○ 海外投資保險의 留保金額料率 廢止 ○ 保險料 計算方法 改善
第 7 次	1985. 1. 1	○ 輸出어음保險 基本料率 體系變更 ○ 中長期延拂輸出保險 保險料 算出方式 變更 ○ 輸出保證保險 保險料率 引上 ○ 支給保證割引率, 公共輸入者割引率, 「인센티브」割引率 調整

共團體인 경우에 한함) 등의 信用危險으로 인하여 輸出이 불가능하거나 代金回收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또한 이 보험은 輸出契約에 이미 정하여진 航海 또는 航路가 非常危險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수출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海上運賃이나 海上保險料에 대한 손실도 보상하는데, 담보대상에 따라 輸出者保險, 生産者保險, 增加費用保險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第1次 法改正으로 保險金支給率을 80%에서 90%로 인상하였고 輸出契約 상대방의 歸責事由로 인한 수출자의 契約解除 및 輸出契約 상대방의 일방적인 契約破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담보했던 信用危險의 擔保範圍를 확대하여 輸出契約 상대방의 破産이나 이에 준하는 支給不能을 추가시켰으며 輸出契約 破棄의 경우 契約 상대방을 “外國政府 또는 地方公共團體”에서 “外國政府, 地方公共團體 또는 이에 준하는 公共團體”로 확대하였다.

〈輸出金融保險〉수출자, 생산자 또는 外國에 주둔하는 國軍 및 外國軍 機關에 대한 軍納業者가 金融機關으로부터 生産, 加工, 集荷에 필요한 자금을 어음貸出 또는 어음割引에 의거 융자 받은 후 수출 또는 양도하고자 하였던 貨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 또는 양도할 수 없게 되거나 수출한 貨物代金の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金融機關이 滿期에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第1次 法改正으로 保險金支給率을 70%에서 90%로 인상하는 외에 보험계약자에 韓國輸出入銀行을 추가하였으며 第3次 法改正時에는 융자금의 용도범위중 “外國軍 機關, 기타 이와 관련된 機關”을 “外國軍 機關,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로 하여 자금의 용도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輸出어음保險〉주로 無信用狀方式의 輸出去來(D/A, D/P 등)에서 발생하는 代金未回收危險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수출자가 발행한 貨換어음을 국내 外國換銀行이 매입한 후 수입자의 代金未支給등으로 同어음이 滿期에 不渡가 됨으로써 어음 買入銀行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第1次 法改正으로 保險金支給率을 70%에서 90%로 인상하였고 특정거래조건 및 특정수출자에 대해 包括保險制度를 시행하여 왔다.

또한 이 보험은 9個 輸出保險種目中 가장 利用도가 높은 보험으로서 특히 中小企業者의 利用이 대부분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동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

정하고 있는 約款을 1984년 7월에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폭을 대폭 강화하였는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保險金支給 時期를 사고사유별로 세분화하여 확정시킴으로써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둘째, 外國換算率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피보험자의 利益을 보장하였다.

세째, 保險料의 還給範圍를 넓힘으로써 보험료 환급에 따른 피보험자의 不利益을 배제하였다.

네째, 回收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의 보험자 부담 조항을 신설하였다.

다섯째, 約款上的 중요한 用語를 상세히 정의함으로써 約款해석으로 인한 이해관계자간의 紛爭의 소지를 제거하는 한편 約款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用語 및 表現을 정리하였다.

〈中長期延拂輸出保險〉「플랜트」등 資本財의 수출촉진을 위한 보험으로서 6월 이상 10년 이내(商工部長官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延拂條件으로 資本財를 수출한 후 非常危險 또는 信用危險으로 인하여 그 代金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第1次 法改正으로 中長期延拂輸出契約에 대한 定義를 “資本財를 수출하는 계약으로서…”를 “資本財,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海外輸出入市場의 확보 또는 개척에 현저히 기여하는 貨物(資本財등)을 수출하는 계약으로서…”로 변경하여 對象貨物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保險金支給率을 80%에서 90%로 인상하였으며 아울러 包括保險으로 운영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委託販賣輸出保險〉委託販賣 형식으로 貨物을 수출할 경우 수출자가 당초에 충분히 판매될 것으로 예상한 貨物이 예정대로 판매되지 않아 그 貨物의 輸出과 販賣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第1, 2次 法改正으로 保險金支給率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재 90%까지 보상하고 있다.

〈其他〉輸出保險業務와 관련하여 국내수출자 및 해외수입자에 대한 信用調査業務를 수행하고 있는 輸銀은 輸入者, 輸入國 銀行 및 輸入國 情勢 등에 관한 다양한 信用情報를 입수, 분석하여 이를 輸出者, 國內銀行 또는 輸出有關團體에게 제공함으로써 輸出代金 未回收危險을 극소화시키고 안전한 수출을 유도하고자 1983년 10월 19일자로 輸出信用情報「센터」를 설치하였다. 同信用情報「센터」는 會員

制로 운영되고 있는데 會員加入에 따른 加入費 및 會費 등이 없이 모든 「서어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설치 당시 122個 수출업체에 대하여 會員加入을 승인하고 會員證을 발급한 이래 1986년 2월말 현재 會員數가 1,575個로 늘어났다. 輸出信用情報「센터」의 會員에게는 輸銀과 업무제휴한 海外信用調査專門機關의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韓國「데이타」通信(株)의 「데이타」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신용정보 「서어비스」까지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온라인」 정보는 輸銀이 1983년 8월에 上記 會社의 DNS(Dacom-Net Service)會員으로 가입하여 美國 所在 「데이타」銀行인 Lockheed Information Service社의 dialog와 輸銀「터미널」을 연결하여 가장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입수하는 정보자료이다.

이 밖에 輸出保險引受의 적정을 기하고 輸出保險事故補償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輸銀내에 輸出保險引受審査委員會와 輸出保險事故補償審議委員會를 각각 설치, 운영함으로써 保險引受業務와 事故補償業務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왔다.

輸出保險의 運營實績

(1) 輸出保險 利用率

輸出保險 利用率은 輸出保險引受額이 總輸出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는 輸出保險의 수출진흥효과를 반영하는 중요한 指標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輸出保險 利用率은 輸銀이 輸出保險業務를 대행하기 이전인 1976년까지는 연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77년 이후 1985년말까지에는 연평균 3.5%로 크게 신장되었으며 최근 5년간은 同利用率이 4~6%선을 유지하고 있다.

<表 3-4-4>

輸出保險 利用率

(단위: 백만「달러」)

	輸 出 額 ¹⁾	保險引受額 ²⁾	利 用 率(%)
1970	1,003.8	8.6	0.86
1975	5,427.4	35.5	0.65
1980	25,764.5	744.6	2.89
1985	34,940.0	1,500.0	4.29

註: 1) 1980년부터는 建設輸出額을 포함함.

2) 適用換率은 各 年度末 현재 韓國銀行 集中基準率임.

한편 최근 3년간의 地域別 利用率을 보면 오세아니아지역이 1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中南美지역(11.1%), 아프리카지역(6.9%), 유럽지역(5.8%)의 順으로 되어 있는바 비교적 政治 經濟的으로 危險이 높은 地域으로의 수출에 輸出保險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외로 政治 經濟的 상황이 안정되어 있는 오세아니아지역의 利用率이 높은 것은 同地域에 대한 巨額의 海外投資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 引受 및 補償實績

〈年度別 引受 및 補償實績〉 輸出保險 業務 개시후 1986년 2월말까지의 輸出保險 付保件數는 21,292件, 保險金額은 7조 6,742억원, 保險料收入은 39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同期間중 保險事故는 總 299件이 발생, 76억원의 保險金이 지급됨으로써 收入保險料 對 保險金支給額의 비율, 즉 損害率은 19.5%를 기록하였다. 年度別・種目別 실적을 보면 1975년까지는 短期延拂輸出去來(D/A, D/P 등)를 담보하는

〈表 3-4-5〉

引受 및 補償實績

(단위: 백만원)

	引受 實績			補償 實績		損害率 (B/A×100%)	回收金
	件 數	保險金額	保險料(A)	件 數	保險金(B)		
1969	120	1,225	5				
1970	252	2,574	11				
1971	547	4,429	51				
1972	676	11,951	165				
1973	357	3,642	83	7	13	15.7	
1974	403	5,964	69	2	24	34.8	4
1975	1,392	16,298	148	18	207	139.9	8
1976	2,638	47,104	391	13	158	40.4	1
1977	2,710	50,184	461	25	486	105.4	31
1978	1,615	66,037	629	40	469	74.6	19
1979	1,202	259,140	745	30	405	54.4	39
1980	1,231	491,382	1,924	23	312	16.2	51
1981	1,527	1,512,441	5,227	17	430	8.2	44
1982	1,548	1,437,758	4,186	21	1,987	47.5	43
1983	1,278	979,810	4,635	33	1,022	22.0	424
1984	1,581	1,252,794	7,854	46	1,151	14.7	69
1985	1,814	1,337,649	11,432	22	902	7.9	11
1986.2	401	193,839	1,124	2	64	5.7	25
合 計	21,292	7,674,221	39,140	299	7,630	19.5	769

輸出어음保險이 대종을 이루어 전체引受實績의 약 90%를 차지함으로써 特定 種目に 편중된 실정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수출거래조건의 변화(一覽拂方式→延拂方式), 수출시장의 다변화(先進國 특히 美, 日 중심→開發途上國) 및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輕工業製品→重化學工業製品) 등에 따라 中長期延拂輸出保險등 기타 보험종목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다.

특히 1980년대초 中東地域으로부터의 海外建設受注가 활발해짐에 따라 海外建設工事保險과 輸出保證保險에 대한 인수액이 급증하여 1980년부터 1982년까지의 3년동안 두 종목으로 인수한 保險金額은 同期間중 總引受額 3조 4,416억원의 87.7%인 3조 170억원에 달하였다.

한편 1986년 2월 말까지의 事故補償件을 擔保危險別, 事故類型別로 살펴보면 먼저 信用危險의 발생으로 인한 보상이 91.9%, 非常危險으로 인한 보상이 9.2%를 차지함으로써 대부분의 보험사고가 信用危險에 의해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고유형별로는 수입자의 資金事情 악화등으로 인한 支給不能이 총보상액의

<表 3-4-6>

種目別 引受實績

(保險金額基準)

(단위: 백만원)

	一般 輸出 保險	輸出 金融 保險	輸出 어음 保險	中 長 期 延 拂 輸 出 保 險	委託販 賣 輸 出 保 險	海外 投資 保險	海外建設 工事保險	輸出保證 保 險	合 計
1969	721	492	12						1,225
1970	533	1,177	864						2,574
1971	16	18	4,371		24				4,429
1972	49		11,479	419	4				11,951
1973		7	3,635						3,642
1974	792		5,172						5,964
1975		24	16,073	201					16,298
1976	1,077	855	40,899	2,078		2,195			47,104
1977	15,362	2,172	28,440	3,037		1,173			50,184
1978	718	1,458	19,546	31,796		2,434	10,085		66,037
1979	869	1,160	16,546	29,270		6,381	204,914		259,140
1980		245	17,090	50,794		7,614	82,100	333,539	491,382
1981			22,202	71,989		21,561	445,165	951,524	1,512,441
1982			24,896	147,105		61,042	576,888	627,827	1,437,758
1983			22,478	579,288		161,812	28,104	188,128	979,810
1984			60,756	714,742		148,762		328,534	1,252,794
1985			73,579	1,126,281		79,428		58,361	1,337,649
1986.2			17,044	93,959		73,632		9,204	193,839
合 計	20,137	7,608	385,082	2,850,959	28	566,034	1,347,256	2,497,117	7,674,221

註: 1) 輸出代金金融保險은 1982년 制度創設 이후 현재까지 引受實績이 없음.

〈表 3-4-7〉

事故類型別 補償實績
(1969. 1. 1~1986. 2. 28)

(단위 : 백만원)

	補 償 實 績		構 成 比(%)
	件 數	保 險 金	
引 受 拒 絶	10	412	5.4
支 給 拒 絶	54	1,828	23.9
支 給 不 能	163	2,318	30.4
遡 求 不 能	20	1,853	24.3
本 支 社 破 産	44	603	7.9
送 金 遲 延	8	616	8.1
合 計	299	7,630	100.0

30.4%, 수출자의 歸責事由로 인한 보험사고로서 수출자의 破産에 따른 金融機關의 遡求不能이 24.3%, 악덕수입자의 고의적인 支給拒絶이 23.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의 사고유형으로는 수입국 정부의 送金制限(8.1%), 본지사의 同時破産(7.9%) 및 수입자의 引受拒絶(5.4%) 등을 들 수 있다.

〈一般輸出保險〉 업무개시 초기인 1969년 및 1970년에는 비교적 활발한 이용실적을 보여 왔으나 그 이후 引受實績이 감소하면서 1980년 이후에는 引受實績이 全無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의 수출자가 輸出商品의 船積 또는 引渡전에 발생하는 非常危險에 의한 손실경험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契約時에 一定額의 先受金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수출계약파기 위험을 별로 느끼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製品이 국내에 남아 있기 때문에 同製品의 再販賣를 통하여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輸出金融保險〉 一般輸出保險과 마찬가지로 업무개시 초기에는 비교적 활발한 이용실적을 보였으나 점차 引受實績이 감소하면서 1981년도 이후에는 引受實績이 全無하였다. 이는 輸出金融을 공여하는 金融機關이 輸出保險 付保에 의한 채권보전보다는 전통적으로 수출자가 제공하는 擔保物件으로 채권보전수단을 강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輸出어음保險〉 利用件數면에서 가장 실적이 높은 종목으로서 1969년부터 1986년 2월말까지 總 18,565件에 달하여 總引受件數 21,292件의 약 87.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主擔保去來인 D/A, D/P 조건의 거래가 비교적 단위금액이 적기 때문에 保險金額면에서는 總引受金額 7조 6,742억원의 약 5% 수준인 3,851억원에 그쳐었다. 輸出어음保險의 引受實績은 업무개시년도부터 꾸준한 증가를 보여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引受額이 연간 200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1984년에는 전년의 2.7배에 해당하는 608억원의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 보험은 현행 輸出保險種目中 가장 損害率이 높은 종목으로서 1986년 2월말 현재까지의 保險金支給額이 保險金支給總額 76.3억원의 68.4% 를 차지하였으며 補償件數도 總 299件 중 285件을 차지하였다.

〈中長期延拂輸出保險〉 1981년 1월 1일 이후 個別保險方式에서 包括保險方式로 전환하여 운영함에 따라 급격한 인수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즉 個別保險方式으로 운영하던 1969년부터 1980년까지의 12년간 引受實績이 1,176억원에 불과하였으나 包括保險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1981년에 720억원, 1982년에 1,471억원, 1983년에 5,793억원, 1984년에 7,147억원 그리고 1985년에는 1조 1,263억원의 引受實績을 기록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성장율은 104.2% 에 달했으며 1986년 2월말까지 2조 8,510억원이 인수되어 輸出保險 總引受實績(7조 6,742억원)의 37.2% 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政府의 重化學製品 輸出增大施策에 힘입어 이 보험의 주된 인수대상품목인 船舶, 「플랜트」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된 데 기인하였다.

한편 이 보험의 保險金支給實績을 보면 1986년 2월말까지 8件에 약 9억원이 지급되어 損害率 4.2% 를 기록하였다.

〈委託販賣輸出保險〉 이 保險은 1971년 및 1972년에 16件을 인수하여 保險金額이 28백만원에 달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引受實績이 全無하였다. 이는 수출거래형태에 있어서 委託販賣輸出이 거의 발생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거래의 대부분이 수출상품의 「샘플」輸出에 한정된 데 기인한 것이다.

〈海外投資保險〉 도입초기에는 引受實績이 全無했으나 1976년 이후부터 1986년 2월말까지 5,660억원이 인수되어 輸出保險 總引受金額의 7.4% 를 차지하였다.

특히 1983년에는 전년대비 265% 의 높은 신장율을 보이면서 1,618억원의 引受實績을 기록하였는바 이는 최근 들어 政府의 中小企業支援育成施策에 따라 中小企業의 海外投資事業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海外建設工事保險〉 1978년에 도입된 이래 1982년까지는 海外建設工事が 활발했기 때문에 引受實績이 1조 3,190억원에 달하였으나 1983년 이후 中東產油國의 石油收入 감소로 인하여 開發計劃이 대폭 축소 조정 내지 취소됨에 따라 海外建設受注實績이 격감되어 1983년에는 전년대비 5% 에 해당하는 281억원의 引受에 그쳤으며 1984년 이후에는 引受實績이 없었다.

〈輸出保證保險〉 1980년 7월에 海外建設工事 관련 保證書를 대상으로 包括保險

이 실시됨에 따라 1980년에만 3,335억원을 인수함으로써 同年 總引受實績(4,914억원)의 6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 해인 1981년에는 9,515억원을 인수하였으나 1982년 이후에는 海外建設工事의 受注不振과 함께 引受實績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保險金支給實績을 보면 1986년 2월말까지 5件에 약 14억원이 지급되었는바 損害率은 16.3%에 달하였다.

(3) 有效契約現況

1986년 2월말 현재 輸出保險有效契約額は 總 3조 3,047억원으로 總引受金額 7조 6,742억원의 43.5%에 달하였다. 이는 1969년 이래 1986년 2월말까지 인수한 모든 保險契約의 56.5%만 保險責任期間이 경과하여 소멸되고 아직도 43.5%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保險責任을 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輸出保險의 保險責任期間이 一般損害保險보다 장기임을 나타내 준다. 또한 有效契約額の 증가폭은 引受實績의 증가폭에 비해 훨씬 크며 1982년 및 1983년의 경우에는 引受實績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有效契約額は 오히려 증가하였다. 有效契約額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은 保險期間이 짧은 短期延拂去來의 付保에 비해 金額이 크고 期間이 장기인 中長期延拂輸出去來나 海外投資, 海外建設工事輸出 등에 대한 輸出保險 付保가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種目別 有效契約現況을 살펴 보면 1982년 2월말 현재 中長期延拂輸出保險이 2조 2,920억원, 輸出保證保險이 9,187억원으로 각각 總有效契約額の 68.6%, 27.5%

〈表 3-4-8〉 引受實績 對比 有效契約額 増加推移

(단위 : 백만원)

	引 受 實 績		有 効 契 約 額	
	金 額	前年比 増加率(%)	金 額	前年比 増加率(%)
1979	259,140		104,322	
1980	491,382	89.6	449,348	330.7
1981	1,512,440	207.8	1,406,329	213.0
1982	1,437,758	-4.9	2,001,924	42.4
1983	979,810	-31.9	2,506,578	25.2
1984	1,252,794	27.9	2,869,424	14.5
1985	1,337,649	6.8	3,345,679	16.6
1986.2	193,839	-98.6	3,340,713	-0.1

를 차지하여 대중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이 種目들이 保險期間이 長期일 뿐만 아니라 包括保險의 실시로 여타 保險種目に 비하여 인수실적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輸出保險 運營初期에 가장 이용이 활발하였던 輸出어음保險은 總有效契約 對比 0.73 % 에 불과한바 이는 件當 保險金額이 소액일 뿐아니라 保險期間 또한 단기이어서 대부분 당해 引受年度에 保險責任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한편 1986년 2월말 현재 輸出保險의 地域別 有效契約現況을 보면 中東地域이 33.6 %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시아 23.3 %, 北美 21.8 %, 유럽 16.6 %, 中南美 3.0 %, 오세아니아 1.2 %, 아프리카 0.5 % 의 順으로 되어 있다.

(4) 信用調査實績

〈海外輸入者 信用調査現況〉 1986년 2월말 현재 해외수입자에 대한 信用調査 「화일」數는 12,790個에 달하게 되었다. 신용조사 실적의 地域別 分布를 보면 美洲 지역이 35 %로서 가장 큰 몫을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順으로 되어 있다. 美洲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美國이 아직도 우리 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해외수입자의 신용조사를 위해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外國의 信用調査專門 機關의 數는 1985년 12월말에 3個 機關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현재 22個 機關으로 확충되었다.

〈國別情勢調査現況〉 輸入者信用調査가 信用危險의 발생가능성을 조사하는 데 반하여 國別情勢調査는 특정국가의 非常危險 발생가능성, 즉 國別危險度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國別情勢調査의 결과는 거래금액이 적고 기간이 짧은 短期去來보다는 거래금액이 크고 기간이 긴 中長期延拂輸出去來나 海外建設工事輸出과 보다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1986년 2월말 현재 國別情勢評價完了 國家數는 135個國에 달하고 있다.

(5) 基金의 財務現況

〈資產現況〉 1986년 2월말 현재 輸出保險基金의 總資產은 74,794백만원으로 1980년말 대비 4.6배가 늘어났으며 負債 및 資本은 각각 31,613백만원, 43,181백만원으로 1980년말 대비 각각 14.5배, 3.4배로 증가하였다.

總資本 對比 自己資本의 構成비를 보면 1980년에 88.7 % 이던 것이 점차 감소되

어 1986년 2월말에는 57.7%로 낮아졌다. 반면 他人資本 즉 負債의 구성비는 42.3%로 증가되었다.

한편 他人資本은 그 대부분이 保險契約準備金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구성비는 1986년 2월말 현재 97.7%에 이르고 있다.

〈損益現況〉 輸出保險基金의 損益現況을 살펴 보면 1981년에 69억원의 當期純利益을 기록하여 최고수준을 나타냈으며 1982년부터 1986년 2월말까지는 약 2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영업수익 측면에서 보면 보험료 수입에 비하여 보험금 지급액이 극히 적었던 1981년을 제외하고는 1985년까지 모두 赤字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영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保險契約準備金(損益計算書上の 後期移越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이 대폭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즉 保險契約準備金을 위한 積立額이 1980년에는 13억원에 불과하였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1985년에는 약 10배 정도 늘어 123억원에 달하였다.

輸出保險業務의 國際化

(1) Berne Union 加入

Berne Union은 國際信用投資保險者聯盟(The International Union of Credit and Investment Insurers)의 약칭으로 건전한 輸出信用保險 原則의 국제적 채택, 輸出信用條件의 원칙 확립 및 유지 그리고 양호한 投資環境 조성, 건전한 海外投資保險의 원칙 개발 및 유지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위해 1934년에 스위스에서 社團法人으로 설립된 輸出保險運營에 관한 國際機構이다.

輸銀이 Berne Union의 회원가입을 처음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大韓再保險公社에서 輸出保險業務를 대행할 당시인 1976년 2월 西獨「뮌헨」에서 개최된 臨時總會에서 「옴저버」회원 가입의 승인을 받은 때부터이다. 이어 1977년 1월 스위스「주리히」에서 개최된 臨時總會에서는 輸銀의 「옴저버」회원 승계자격을 인정받아 總會에 2회 이상 참석하면 正會員 加入資格이 주어지는 당시의 聯盟規約(현재는 4회 이상의 總會 참석으로 正會員 가입자격 취득)에 의거 1977년 6월 7일 노르웨이「오슬로」第34次 定期總會에서 正會員이 되었고 동시에 輸出信用保險委員會의 加入도 승인받게 되었다. 이어 1978년 5월 西獨의 「베를린」에서 개최된 第35次 定期總會에서는 投資保險委員會의 加入을 정식으로 승인받았다.

한편 1981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第38次 定期總會에서는 運營



Berne Union
서울 運營委員會
(1984. 10. 15~10. 17)

委員會의 委員으로 派選되었으며 1982년 2월 23일, 「홍콩」運營委員會의 결의에 따라 1984년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同運營委員會를 개최하였다. 同서울회의에는 運營委員會의 議長機關인 西獨의 Hermes(西獨의 輸出保險機關)를 비롯하여 14個國 14個機關 代表 25名과 Berne Union 事務局長 등 27名이 참석하였다.

(2) 共同保險協約의 締結

최근 「플랜트」수출 또는 海外建設工事 등에 있어 국제적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주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바, 이는 「플랜트」 및 각종 建設工事が 거액이고 복잡한 「프로젝트」여서 國際協力を 통한 技術力の 결집, 受注機會의 확대 및 危險의 분산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共同保險은 主契約國의 保險機關과 下請契約國의 保險機關이 共同保險協約에 따라 공동으로 自國의 수출분에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輸銀은 1978년 5월에 벨기에의 輸出保證公社(OND)와 共同保險協約을 체결한 데 이어 1980년 6월에는 네덜란드의 輸出保險會社(NCM)와 同協約을 체결하였고 1981년 10월에는 프랑스 貿易保險會社(COFACE)와도 共同保險協約을 체결하였다.

第5節 支援業務의 強化

1. 組織의 變遷

政策決定機構

輸銀은 업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基本政策을 수립하는 機構로서 運營委員會를 두고 있고, 업무 전반에 관한 重要事項을 결정하는 機構로서 理事會를 두고 있으며, 보다 專門的인 分野에 대한 정책결정을 위한 諮問(議決)機構로서 각종 委員會를 설치하고 있다.

(1) 運營委員會

運營委員會는 輸銀法과 定款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업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基本方針을 수립하고 同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따라서 運營委員會는 輸銀의 最高政策決定機構라고 할 수 있으며 同委員會의 결정은 最高執行機關인 銀行長을 羈束하게 된다.

運營委員會의 權限에 대하여는 輸銀法, 施行令 定款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輸銀法에 규정되어 있는 運營委員會의 權限은 定款의 변경, 主要資源開發資金貸出과 對外經濟協力資金貸出에 관한 업무, 業務方法書의 변경 및 殘餘利益金の 처리 등으로 되어 있다.

施行令상의 運營委員會 權限은 延拂輸出金融 支援對象品目の 追加 決定, 重要物資 및 主要資源의 品目 議決 그리고 貸出償還期間의 特例 適用에 관한 사항 등이다. 輸銀定款에서는 輸銀法, 施行令상에 규정되어 있는 運營委員會의 權限을 再規定하고 있으며, 運營委員會規程에서는 上記 諸權限외에도 年度別業務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 決算 및 損失補填에 관한 사항 및 業務方法書에서 運營委員會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運營委員會는 輸銀法 第10條 2項의 규정에 따라 關聯部處 및 機關의 長이 지명하는 8人의 委員으로 구성된다. 또한 運營委員會는 필요한 경우에 參觀委員을 두어 會議에 참석, 意見을 진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第1次 運營委員會
(1976. 7. 2)

輸銀法 制定 이후 韓國外換銀行의 業務代行期間중에는 韓國外換銀行에 臨時運營委員會를 두어 業務의 基本方針을 수립하였고, 關係法規定중 運營委員會에 관한 사항을 臨時運營委員會에 준용토록 하였으며 同委員會 議長은 韓國外換銀行長이 겸임토록 하였다. 이에 앞서 設立準備期間중의 設立事務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設立委員會가 대행하였다.

1976년 7월 1일자로 輸銀이 설립되어 業務를 개시한 그 다음 날인 7월 2일에 輸銀法에 의한 정식 運營委員會가 소집되어 第1次 會議를 갖게 되었다. 당시의 案件은 보고안전으로서 韓國外換銀行으로부터 業務移管에 따른 資産·負債의 引受에 관한 件이었다. 第1次 運營委員會에 참석하였던 運營委員은 委員長인 宋仁相 銀行長을 위시하여 徐錫俊 委員(經濟企劃院 企劃次官補), 高炳佑 委員(財務部 財政次官補), 朴弼秀 委員(商工部 商易次官補), 金建 委員(韓國銀行 理事), 洪完模 委員(韓國外換銀行 理事) 그리고 吳範植 委員(貿易協會 副會長) 등 7人이었다.

이후 運營委員會가 본격적으로 活動을 개시한 이래 1985년말까지 總 140回の 會議가 소집, 개최되었으며 年間業務計劃의 수립과 중요한 與信政策의 결정 등이 同 運營委員會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1977년 12월 19일의 第2次 輸銀法 改正時에는 法定資本金을 1,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 運營委員會의 委員으로 外務部側 公務員을 추가함으로써 對外經濟協力과 通商外交의 次元에서 政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運營委員會의 구성을 보완하였다.

(2) 理事會

理事會는 運營委員會 다음 가는 意思決定機關으로서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토록 하고 있는바, 運營委員會가 결정한 基本方針에 입각하여 定款에 정해진 바

에 따라 輸銀業務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運營委員會의 구성원이 주로 외부인사임에 비하여 理事會의 구성원은 輸銀 任員으로서, 銀行의 모든 중요한 일은 우선 理事會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輸銀業務가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 銀行經營의 次元에서 의사결정을 행한 후에 運營委員會가 國民經濟 전체의 입장에서 理事會의 결정을 여과하도록 二重의 意思決定機關을 두어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理事會는 輸銀法, 施行令, 定款의 규정 및 運營委員會의 의결에 따라 輸銀業務의 重要事項을 결정한다. 理事會는 업무처리에 관한 대부분의 內規를 정함으로써 사실상 輸銀業務의 重要事項에 관한 대부분의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理事會의 權限에 관해서는 輸銀法, 定款, 他規程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內規인 理事會規程에 정하여져 있다.

理事會는 銀行長, 專務理事, 그리고 5人の 理事로 구성되며 銀行長은 銀行의 最高執行機關인 동시에 議決機關인 理事會의 議長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監事는 理事會의 구성원은 아니나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輸銀法 制定 당시에는 法上 理事會만 규정되어 있고 運營委員會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1974년 12월 26일의 第1次 法改正에서 理事會制度가 폐지되고 대신 政府側 委員들이 참여하는 運營委員會制度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輸銀이 韓國外換銀行의 業務代行體制에서 벗어나 독립, 발족된 이후에는 輸銀 內部의 自體經營陣에 의한 政策決定機構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1977년 12월 19일의 第2次 法改正時에 理事會에 대한 根據規程이 다시 마련되었다.

第1次 理事會는 1977년 12월 30일 소집, 개최되었는데, 당시의 理事會는 議長에 宋仁相 銀行長 그리고 李泰浩 專務理事와 元裕敏, 全石斗, 李鴻俊 理事 등 5人으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案件은 韓國輸出入銀行 理事會 規程 制定(案) 등 4件이었다. 그 이후 理事會에 崔鍾岳 理事와 鄭勳沐 理事가 참여케 됨으로써 理事會는 法定人員 전원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고 第1次 理事會 개최 이래 1985년말까지 總 642回の 理事會가 소집, 개최되었다.

(3) 主要 諮問委員會

輸銀은 運營委員會와 理事會 이외에 專門分野에 관한 政策決定 諮問(議決)機構로서 業務審議委員會를 포함한 4個 委員會를 설치, 운용해 왔다.

業務審議委員會는 1977년 8월 1일 銀行長의 諮問機構로 설치되었으며 專務理事

가 委員長이 되고 理事 및 本店 各部署長이 委員이 되어 主要 業務計劃의 수립, 部署長會議에서 결정하지 못한 사항 및 銀行長이 요구한 사항 등을 심의해 왔다. 同委員會의 설치 당시에는 理事會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理事會의 기능을 일부 수행했으며 심의내용도 비공개로 하였다.

1977년 12월 19일 第2次 法改正에 따라 理事會가 설치된 후로는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많아지게 되어 1980년 4월 23일 業務審議委員會要綱을 개정하고 會議召集도 수시로 행하고 審議內容도 공개토록 하였다. 同委員會는 企劃部長을 幹事로 하여 會議를 召集하고 會議錄을 작성케 하며 심의결과를 銀行長에게 보고한다.

融資審議委員會는 法 第18條에 규정된 與信業務의 수행과 관련하여 1976년 8월 5일 銀行長의 諮問機構로서 설치되었다. 同委員會의 委員長은 專務理事가 되고 理事 및 本店 各部署長이 委員이 되며 幹事는 審査1部長이 담당한다.

同委員會의 第1次會議는 1976년 11월 10일 개최되었으며 案件은 大宇實業의 對 수단 鐵道車輛 延拂輸出 지원에 관한 件등 3件이었다. 同委員會는 ①현안 融資相談 거래중 지원여부의 결정이 어려운 案件에 대한 사전검토 ②與信에 관한 各種 制度, 基準, 方針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검토하는 것 등을 主業務로 하고 있다. 同委員會는 1979년까지는 활동이 활발했으나 1980년 이후에는 활동범위가 다소 줄어들었다.

國別信用度評價委員會는 1977년 9월 6일 國別信用度評價委員會 要綱이 제정되면서 설치된 기구로서, 融資金 償還의 안전성을 기하고 國別 與信支援의 편중을 예방함으로써 投資「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投資對象國의 信用度 평가를 主機能으로 하고 있으며 銀行長의 政策決定에 諮問役割을 수행하고 있다. 同委員會의 委員長은 專務理事가 되고 委員은 調査擔當 理事, 調査擔當 部署長, 貸出審査 및 事後管理擔當 部署長 및 輸出保險擔當 部署長으로 구성되며 幹事는 海外投資調査部長이 맡고 있다.

同委員會는 國別信用度 評價 및 與信限度 設定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된 결과를 銀行長에게 보고, 결재를 받은 후 貸出審査 및 事後管理擔當 部署長 및 輸出保險擔當 部署長에게 통보한다. 또한 同委員會에 부의할 案件의 事前審議를 위하여 國別信用度評價 專門委員會를 두고 있는데 委員長은 海外投資調査部長이 되고 委員은 國別信用度評價委員會에 참석하는 部署의 次長이 된다.

輸出保險引受審査委員會는 1980년 8월 4일 輸出保險引受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

하여 설치되었다. 同委員會의委員長은 專務理事가 되고 副委員長은 輸出保險擔當理事가 되며 委員은 商工部 輸出保險擔當課長, 建設部 海外政策課長, 韓國銀行 外換管理部長, 大韓貿易振興公社 海外調查部長, 輸銀 海外投資調查部長, 약간명의 保險專門家 등으로 구성되며 幹事는 輸出保險引受擔當 部署長이 된다.

同委員會는 輸銀이 保險金 受取人이 되는 保險契約에 관한 사항, 3백만「달러」를 초과하는 輸出어음保險의 引受限度 策定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을 主業務로 하고 있다.

輸出保險補償審議委員會는 輸出保險事故 補償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7년 1월 19일에 설치되었다. 同委員會의委員長은 專務理事가 되고 副委員長은 輸出保險擔當理事가 되며 委員은 商工부의 輸出保險擔當課長, 韓國銀行 外換管理部長, 大韓貿易振興公社 市場開拓部長, 輸銀 輸出保險擔當 顧問辯護士 및 輸出保險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로서 輸銀이 위촉하는 者 5人으로 구성되며 幹事는 輸出保險擔當 部署長이 된다.

同委員會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은 純損失額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輸出어음保險에 대한 保險金の 지급, 純損失額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中長期延拂輸出保險 事故에 대한 保險金の 支給 및 純損失額이 50만「달러」를 초과하는 海外建設工事保險 및 輸出保證保險 事故에 대한 保險金の 지급 등이다.

機構, 人員 및 職制

(1) 本部機構

1969년에 輸銀法이 제정, 공포된 후 同年 10월부터 輸銀業務代行部署로서 中長期信用部를 별도로 설치하여 輸銀業務를 취급해 오던 韓國外換銀行은 1975년 7월 1일에 中長期信用部를 輸銀企劃부와 輸銀業務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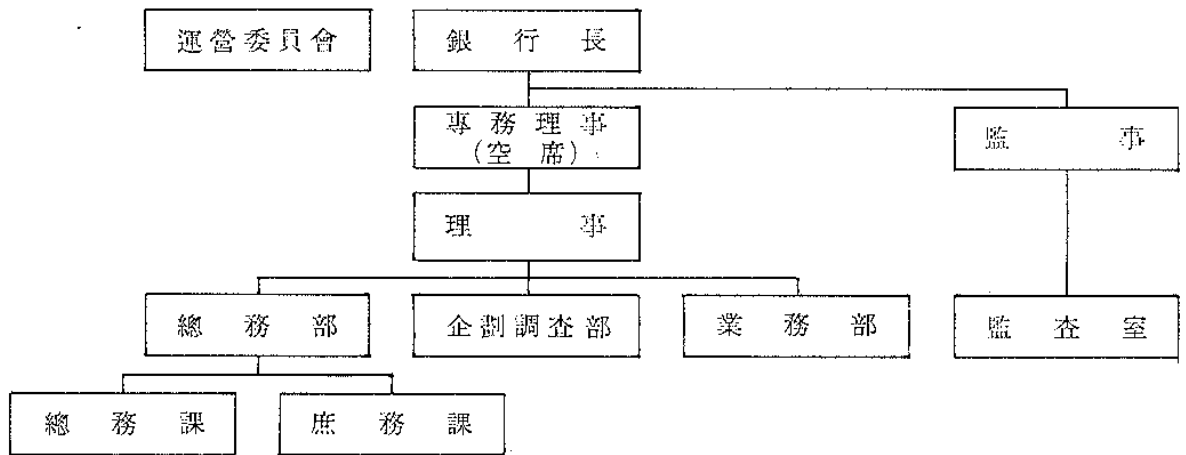
1976년 4월에는 輸銀設立案이 확정되어 輸銀設立節次의 일환으로 輸銀法에 의하여 위촉된 韓國輸出入銀行 設立委員會가 구성되어 執行機構로서 設立事務局을 두고 본격적인 설립준비를 시작했으며 이로부터 2개월 후인 1976년 7월 1일에 輸銀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이 때의 機構는 3部 1室로 출발하였다.

設立후 10년에 이르는 동안 輸銀은 20次の 機構改編을 거쳤는데 그간의 주요 변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設立 1개월 후인 1976년 8월 13일에는 甲類外國換業務의 內認可를 받아 同年 11

〈圖 3-5-1〉

設立 當時의 機構表



월 2일 企劃調查部내에 外換管理課가 신설되었다. 外換管理課는 輸銀업무관련 外換認可 및 許可業務와 貿易外去來의 사후관리업무 등 外換, 貿易關係 法規 및 對外去來에 관계되는 法規의 통할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76년 12월 17일에는 輸出保險法이 개정됨으로써 수출보험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輸銀은 당시 수출보험업무를 政府代行機關이었던 大韓再保險公社로부터 수출보험업무를 인수받기 위한 준비작업을 同年 年末까지 끝내고 1977년 1월 1일에 大韓再保險公社와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함과 때를 같이하여 輸出保險部를 신설하고 代行業務를 개시하였다.

同年 1월 27일에는 企劃調查部를 業務部和 海外投資調查部로 그리고 業務部를 審査部和 金融部로 분리, 개편하였으며, 總務部내에 安全計劃課를 신설하였다.

企劃調查部를 業務部和 海外投資調查部로 분리, 개편한 것은 당시의 企劃調查部가 기획, 자금 및 조사업무 등 성격이 상이한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처리상 비능률적인 면이 있었고, 조사업무도 輸銀의 특수성에 맞추어 國別信用度評價등 각종 調查分析에 관한 전문화가 요청되었기 때문이었다. 신설된 業務部 내에는 企劃課, 法規課 및 資金課를 두어 企劃課는 業務計劃 및 綜合運營計劃의 수립과 豫算編成 등의 기획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法規課는 용자 및 중요 契約書에 대한 법적 심사와 業務方法書등 중요 內規의 심사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資金課는 資金의 調達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 및 計算, 損益豫想, 決算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한편 海外投資調查部는 國內의 經濟動向調査, 지역별 經濟動向分析, 主要政策資料의 입안, 國別信用度 평가, 각종 情報 및 資料의 수집, 出版 및 弘報 등 조사 연구에 관한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다.

또한 業務部를 審査部和 金融部로 개편한 것은 기존 業務部가 여신심사와 실행을 동일부서에서 수행함으로써 與信業務의 전문화가 어렵고 업무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審査部는 貸出의 審査와 承認, 여신운용지침 등 與信에 관한 企劃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金融部는 대출승인에 따른 자금의 집행과 대출금의 회수 및 담보권의 실행 등 與信의 事後管理 업무 그리고 이에 관련되는 輸出入, 外換業務를 담당토록 하였다.

總務部에 安全計劃課를 신설한 것은 직장예비군 운영 및 민방위업무와 자체방호 등의 경비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8월 17일에는 總務部和 輸出保險部가 확대, 개편되고 業務改善室이 신설되었다.

總務部는 總務課, 庶務課 및 새로 신설된 安全計劃課의 3課로 구성되었다. 總務課는 文書管理 업무의 기획 및 통할과 직원의 敎育, 研修, 涉外, 儀典 및 주요업무에 관한 對外弘報 등 여러 업무를 함께 담당했는데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總務課의 업무를 기능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文書課 및 研修課를 다시 신설했다. 文書課는 文書管理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와 涉外, 儀典 및 弘報活動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각종 행사를 담당토록 하고, 직원의 研修訓練과 業務敎本の 편찬업무는 研修課가 담당케 하였다.

이와 동시에 輸出保險部에 統轄課와 補償課를 설치하여, 統轄課는 종합적인 기획업무와 보험제도의 연구를 통한 새로운 保險制度 開發 및 수출보험에 관한 弘報業務를 담당토록 하고 補償課는 현지 사고조사체계를 수립하여 신속한 査定 및 補償業務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業務改善室을 신설하여 일상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業務規程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각종 樣式, 書式 및 帳表의 제정 또는 개선에 통일을 기하고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庶政刷新에 관한 업무를 전담케 하였다.

다음 해인 1978년 2월 28일에는 第5次 法改正을 통하여 業務部の 資金課와 法規課를 각각 資金部和 法規室로 승격, 독립시켰다.

資金部の 독립, 신설은 1978년에 이르러 船舶, 「플랜트」 등의 延拂輸出이 증대됨에 따라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여 輸銀資金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별도의 독립부서에 의한 資金의 효율적인 調達 및 運用과 外貨資金調達을 수행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資金部내에 資金1課와 資金2課를 두어 資金1課는 자금수급계획, 국내자금조달, 자금운용관리 및 계획업무를 담당토록 했고, 資

金2課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債券발행, 연불어음매각, 銀行團借款도입 등 외화자금조달 및 운용관리, 「코레스」업무, 換對查 등을 담당토록 하였다.

또한 수출관련 對外債權의 확보를 위한 法的 審査業務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業務部 法規課를 法規室로 독립시켰는바, 法規室은 對外去來契約書에 대한 전문적인 법적 심사와 각종 內規의 제정 및 폐지에 따른 심사를 담당토록 하였다.

1978년 8월 14일에는 審査部를 審査1部和 審査2부로 개편하였다. 이것은 1979년부터 취급하게 될 購買者信用制度인 外國人에 대한 直接貸出 및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轉貸資金貸出 업무의 도입에 따라 同購買者信用制度를 보다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데, 審査1部는 與信에 관한 綜合企劃業務와 供給者信用중 輸出資金貸出, 技術提供資金貸出 및 이와 관련된 先受金還給保證 및 契約履行保證業務 등을 취급케 하고 審査2部는 購買者信用과 海外投資資金貸出 및 主要資源開發 支援資金貸出 등의 업무를 각각 분담, 취급케 함으로써 與信審査의 능력을 도모하였다.

1979년 4월 27일에는 業務部 및 總務部 安全計劃課의 명칭변경이 있었다. 이는 앞서 法規課 및 資金課가 독립부서로 승격됨에 따라 業務部는 실질적으로 豫算編成 등 기획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어 담당업무의 내용에 보다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企劃部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던 것이며, 安全計劃課의 명칭도 다른 금융기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安全管理課로 변경하였다.

1979년 10월 11일에는 任員의 庶務, 儀典 및 涉外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文書課를 任員附屬室로 확대개편하여 종래의 文書課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한편 企劃部の 企劃課를 企劃1課와 企劃2課로 분리하였다.

文書課를 任員附屬室로 확대, 개편한 것은 설립초기에 비하여 기구가 확대되고 업무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理事會와 運營委員會의 업무 급증으로 섭외, 의전 등의 업무가 과다해져 한정된 文書課 인원만으로는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企劃課의 분리는 業務計劃 수립등의 一般企劃 업무와 豫算 및 海外事務所 통할업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였다.

1980년 3월 15일에는 總務部の 安全管理課를 분리하여 독립부서로 승격시켰다. 이는 1979년에 輸銀이 乙支演習에 참가하게 되면서부터 이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및 지휘, 감독업무가 추가되어 독립된 專擔部署의 신설이 불가피했기 때문이었다.

同年 11월 18일에는 資金部내에 資金總括課를 신설하고 業務改善室內에 電算班

을 설치하였다.

資金總括課의 신설은 資金1課와 資金2課가 각각 담당하고 있던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조사와 장기 자금조달방안 강구 등 資金調達에 관한 綜合計劃業務를 분리하여 이를 전담케 함으로써 특히 海外資金의 調達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電算班의 설치는 1980년 3월 17일 第2次 業務審議會에서 검토, 결정되었는데 전반적인 業務電算化 추진과 더불어 각종 統計資料의 기록보존 및 분석과 거래 상대 국별 경제동향, 투자환경 등에 관한 情報資料를 수집, 분석하는데 필요한 集中情報管理體制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同年 12월 29일 電算要員의 확보를 위한 증원을 財務部에 신청하여 業務改善室內에 電算班을 설치하고 전산업무의 기초작업을 추진하였다.

1981년 2월 9일에는 輸出保險部를 輸出保險1부와 輸出保險2부로 분리, 개편하였다.

이는 輸出保險業務가 代行 초기에 비하여 보험금액, 지급보험금 및 해외신용조사건수 등의 업무실적면에서 크게 신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輸出保證保險 및 海外建設工事保險 등 새로운 보험종목의 개발과 包括保險方式에 의한 保險引受의 실시 에 따라 보험사업이 확대되고 있었으며, 機構면에서도 1부가 5個課로 구성되고 인원수도 72名에 달하는 등 확장된 조직을 1個部署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輸出保險1부에 統轄課, 保險業務課 및 補償課를 두어 주로 일선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輸出保險2부에는 保險管理課와 信用調査課를 두고 制度調査課를 신설하여 輸出保險基金의 관리, 信用調査 및 制度調査 등의 후선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1982년 3월 2일에는 政府가 추진하는 각종 行政機構의 축소 정책에 부응, 경영 합리화방안의 일환으로 任員附屬室과 法規室을 통합하여 文書部로 개편하였다. 또한 總務部 庶務課 업무중 使用後 文書 및 帳表 등의 보존, 관리업무를 文書部로 이관함으로써 文書部는 運營委員會 및 理事會 등에 관한 議事業務, 文書管理業務, 對外弘報 및 涉外儀典業務, 任員의 庶務 및 秘書業務와 각종 行內外 法規 및 契約의 해석, 법률실무에 대한 상담지도 등 法規關聯業務를 함께 관장하게 되었다.

1983년 10월 7일에는 部署間에 약간의 업무조정이 있었는데, 直接貸出 및 轉貸資金供與와 관련하여 審査2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融資協定書 변경등의 업무를 金融部로 이관하여 事後管理業務의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企劃部 企劃1課 업무

중 組織管理를 職制, 總定員 및 職級別 定員管理로 하여 組織管理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總務部 總務課 업무중 定員管理를 部署別 定員管理로 조정하였다. 이밖에도 資金部내의 課別 업무량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課別 業務分掌을 일부 조정하였다.

1984년 2월 29일에는 審査1부와 審査2부간의 분장업무내용을 대폭 조정하였다. 종전에는 兩部署간의 업무가 資金別로 분장되어 있어 供給者信用을 담당하고 있는 審査1부에 업무가 편중되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업무량의 불균형을 시정함과 동시에 同一品目を 용자방식의 구분에 따라 兩部署에서 분리하여 취급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中小企業金融支援 관련업무의 담당부서를 명시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輸出資金貸出, 直接貸出 및 輸出資金貸出과 관련된 海外投資資金貸出을 지역별로 구분, 審査1부는 美洲, 歐洲, 中東 및 아프리카地域에 대한 대출을, 審査2부는 中東을 제외한 아시아地域 및 大洋洲지역에 대한 대출을 각각 담당토록 하고 其他貸出은 종전대로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은 審査2부가 담당토록 하였다.

1984년 4월 27일에는 輸出保險部署間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同部署내 課別 업무분장도 일부 조정하였다.

종전에 輸出保險1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수출보험 인수업무와 보상업무를 각각 輸出保險1부와 輸出保險2부에서 분리, 운용토록 함으로써 輸出保險業務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제도 관련자료가 「번 유니온」(Berne Union)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輸出保險1부 統轄課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 制度調査課와 統轄課를 同一部署내에 둌으로써 업무자료 활용면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조사업무를 輸出保險1부로 이관하고, 制度調査課가 담당하던 업무 통계 및 대외보고업무를 統轄課로 이관하는 등 部署單位 및 課單位의 업무분장내용을 일부 조정하였다.

1985년 2월 6일에는 企劃部の 外換管理課를 폐지하고 外換管理業務를 외국환업무 취급부서인 金融部로 통합하여 對顧客「서비스」改善을 도모하고 외국환업무 처리에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外換管理課 업무의 金融部 移管을 계기로 企劃部の 課別 업무를 조정하고 명칭도 변경하여 종전의 企劃1課와 企劃2課를 綜合企劃課, 業務企劃課 및 豫算課의 3個課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企劃部の 기획기능을 보강하였다.

綜合企劃課는 종전 企劃1課의 업무중에서 職制 및 定員의 관리, 國內營業店の

설치 및 委任專決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하고 종전 企劃2課의 업무중에서 年間綜合運營計劃의 수립과 審査分析 업무를 인수하였으며 이 밖에도 幹部會議 및 部署長會議에 관한 사항도 담당토록 하였다.

業務企劃課는 종전 企劃1課의 업무 가운데 年間業務計劃의 수립 및 통할, 國會 및 政府 등에 대한 對外綜合業務報告 및 業務統計와 對外報告文書 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한편 종전 資金部에서 담당하여 왔던 長期收支展望에 관한 업무를 인수함으로써 업무기획기능을 보완토록 하였다.

豫算課는 종전 企劃2課의 업무 가운데 年間綜合運營計劃의 수립 및 심사분석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 즉 豫算의 編成, 配定, 執行의 사후관리업무 및 國外事務所등의 설치와 國外事務所의 업무통할에 관한 사항을 담당토록 하였다.

한편 資金部の 課制度를 폐지하였는바 이는 자금조달규모의 확대 및 조달원 다변화에 대처하고 자금조달 분야별 직원 전문화와 인력활용의 기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5년 5월 21일에는 與信에 대한 條件變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與信實行前의 조건변경은 審査1,2部에서 그리고 與信實行後의 조건변경은 金融部에서 각각 담당토록 하였다. 또한 수출보험부서의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여 輸出保險1部の 保險業務課를 보험종목에 따라 保險業務1,2課로 나누고, 輸出保險2部の 信用調査課를 업무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 信用調査1課에서는 商社信用調査업무 및 輸出信用 情報「센터」운영 등을 담당하고 信用調査2課에서는 國內外 經濟動向 調査 및 國別情勢 調査 등을 관장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능률과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1985년 9월 10일에는 本店이 汝矣島 新築行舎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行舎管理 담당 부서가 필요하게 되어 總務部로부터 庶務部를 분리, 庶務課, 管理課 및 營繕課를 두고 庶務課는 本店所管豫算의 집행, 업무용 물품과 부동산을 제외한 固定資產의 구입, 組稅와 公課金 및 印刷, 製本 등을 관장토록 하고, 管理課는 업무용 물품과 부동산을 제외한 固定資產의 관리, 운용 및 처분, 業務用 不動產의 구입 및 임대차, 차량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營繕課는 行舎와 業務用 不動產의 관리 및 유지, 營繕機資材의 관리 등을 관장토록 하였다.

한편 庶務課가 분리된 總務課는 人事, 厚生, 研修 機能단 말게 되어 그 명칭도 人事部로 변경, 總務部는 사실상 人事部로 분리, 개편되었다. 人事部에는 종전 總務課를 人事課와 給與課로 분리하고 研修課를 둬으로써, 人事管理 및 企劃機能을

강화하였다.

人事課는 人事管理 및 企劃, 職員의 任免 및 異動, 職員의 綜合評定 및 部署別 定員管理 등을 담당하고, 給與課는 職員の 報酬, 厚生 및 福利 등을 관장토록 하였으며, 研修課는 研修計劃의 수립, 職員の 研修實施 등을 담당토록 하였다.

1986년 4월 22일에는 文書部를 法規室 및 庶務部소속 任員附屬室로 분리 개편함으로써 동일 부서내에서 상호 이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였고, 또한 任員의 庶務業務 및 法規關聯業務를 제외한 議事業務, 文書管理業務는 企劃部, 業務改善室에서 각각 담당케 함으로써 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金融部를 金融1部, 金融2部로 분리 개편하여 업무량 증가에 대처함과 동시에 事後管理業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는바, 金融1部는 與信管理에 관한 綜合企劃業務, 審査1部 承認與信의 實行 및 이와 관련된 外國換業務 그리고 外國換管理 및 統計의 統轄을 담당토록 하였고 金融2部는 審査2部 承認與信의 實行 및 이와 관련된 外國換業務 그리고 與信의 事後管理 및 關聯企劃業務를 담당토록 하였다.

아울러 任員附屬室의 설치를 계기로 本部部署소속 附屬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本部部署내에 附屬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은 機構改編을 거쳐 1986년 5월말 현재의 本店機構는 11部 4室 1 附屬室 17課의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다.

(2) 支店 및 國外事務所

輸銀은 釜山에 1個 支店을 두고 있고 「뉴욕」事務所를 포함, 8個 國外事務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釜山支店은 1977년 1월 1일 輸銀이 大韓再保險公社로부터 수출보험업무를 인수하였을 당시 釜山지역의 수출보험업무 수행을 위하여 함께 인수하였다. 인수당시의 명칭은 釜山事務所이었으나 所長에 대한 銀行長 代理權의 위임 및 이들 행위에 수반한 登記節次의 수행 등 제반 업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同年 6월 22일 釜山出張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釜山出張所는 1985년 5월부터 釜山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輸銀 內國信用狀 受惠業體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本店이 행하고 있는 內國信用狀 買入의 中繼業務를 개시하여 金融部門業務도 본격적으로 취급케 되었다.

그러나 釜山出張所는 輸出保險引受와 輸銀 內國信用狀 決濟中繼業務 등을 수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出張所라는 명칭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로 인식되어 業務伸張과 對顧客「서어비스」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영업을 행하는 금융기관 점포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986년 3월 18일 釜山支店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輸銀은 설립 2년 뒤인 1978년에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인 「뉴욕」과 「런던」에 國外事務所를 처음 설치한 데 이어 수출금융 및 수출보험거래가 빈번하거나 업무 수행에 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國外事務所를 설치해 왔는데, 1985년말 현재 「뉴욕」, 「런던」 이외에 東京, 「로스앤젤레스」, 「홍콩」, 「아비잔」, 「산티아고」 및 「자카르타」 등 海外 8個 都市에 國外事務所를 두게 되었다.

「뉴욕」은 國際資本市場 및 國際貿易金融의 중심지로서 해외자금조달과 관련한 國際金融 및 資本市場 動向調査와 거래알선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駐在員 파견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1976년 11월 16일 財務部에 國外駐在員 파견 承認申請을 제출했고 1977년 1월 15일에 「뉴욕」 駐在員 파견 內認可를 받았다. 1977년 8월 8일 外國換管理規程의 개정에 따라 事務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事務室 賃借, 現地法에 의한 承認 등 절차를 마친 뒤, 1978년 5월 25일자로 財務部의 本認可를 받아 1978년 6월 1일자로 「뉴욕」所在 韓國貿易館내에 「뉴욕」事務所를 정식 개설하였다.

한편 「런던」을 중심으로 한 國際金融市場은 「유로 달러」市場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國際金融 및 資本市場의 중심지인바, 輸銀으로서는 특히 銀行團借款導入 및 外貨表示 債券發行 등 자금조달과 保有 延拂어음의 매각, 금융 및 수출보험업무에 관한 諸情報 입수 등을 고려하여 同地域에 대한 駐在員 파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同事務所는 「뉴욕」事務所와 같이 1976년 11월 16일 國外駐在員 파견 內認可를 받았으며 同年 8월 8일의 外國換管理規程의 개정에 따라 10월 13일 承認內容을 「런던」事務所로 변경하고 1978년 5월 25일 本認可를 받아 同年 6월 1일 정식 개설되었다.

「홍콩」事務所는 주로 輸出保險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同事務所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輸出保險事故 調査 및 信用調査를 大韓貿易振興公社, 在外公館 및 外國信用調査機關에 의뢰함으로써 수출보험에 대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各種 經濟情報 調査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홍콩」에 海外事務所를 설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77년 11월 4일 香港 事務所設置 內認可 申請을 財務部에 제출하였으며 1978년 7월 26일 本認可를

언어 同年 9월 1일 「홍콩」事務所를 개설하였다.

「로스엔젤레스」事務所는 「홍콩」事務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輸出保險에 관한 信用調査와 事故調査를 위하여 설립되었다. 「로스엔젤레스」는 우리 나라의 D/A 「베이스」輸出이 가장 많은 지역의 하나이며 보험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으로서 1973년부터 1976년까지의 총사고금액중 美洲지역 사고금액이 8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同地域의 수입업자에 대한 信用調査와 아울러 事故調査를 위하여 事務所의 설치가 시급히 요청되었다. 이와 관련, 美洲에 事務所를 설치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事務所 설치 內認可 후에 선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1977년 8월 18일 內認可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內認可는 「홍콩」 및 「아비잔」사무소의 設置認可와 같은 날짜인 1977년 11월 4일에 있었으며 同事務소의 設置節次가 완료됨에 따라 1978년 7월 18일 「홍콩」事務所와 함께 本認可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財務部の 本認可는 「홍콩」事務所 本認可와 함께 1978년 7월 26일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1978년 8월 28일자로 「로스엔젤레스」事務所를 정식 개설하게 되었다.

東京은 「싱가포르」, 「홍콩」 등과 함께 東南亞 金融市場의 중심지로서 外貨資金調達, 本船擔保制度 등의 금융기법 습득과 해외투자정보 수집을 위하여 東京내에 있는 약 1,000여개의 專門調査機關과 100여개의 外國銀行의 支店 또는 事務所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日本輸出入銀行의 금융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同地域에 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同事務소는 1978년 5월 20일 財務部に 設置承認申請을 하여 1978년 11월 16일 內認可를 받았으며 同認可內容에 따라 東京내의 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필하고 1979년 5월 28일 財務部の 本認可를 받아 同年 6월 19일 개설되었다.

「아비잔」事務所는 아프리카地域에 대한 우리 企業의 진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아비잔」은 아프리카 大陸 中西部 해안에 위치한 아이보리코스트의 首都로서 아프리카開發銀行(AfDB)이 소재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의 국가를 포함한 佛領 아프리카諸國에 대한 經濟 및 投資環境調査 활동과 資料 수집이 용이한 곳이다. 1977년 8월 18일 東京 및 「로스엔젤레스」事務所와 함께 「아비잔」事務所의 설치 內認可를 신청하여 同年 11월 4일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同事務소는 1978년중에는 現地 中央銀行의 最終認可를 받지 못하고 開所가 지연되어 오던 중 1979년 5월초 現地에서의 設置節次를 필함으로써 同年 5월 28일 財務部の 本認可를 받아 6월 20일 개설되었다.

「산티아고」는 칠레의 首都로서 칠레는 中南美 최대의 우리 나라 交易相對國이며

輸銀이 이미 轉貸資金과 海外投資資金을 공여한 실적이 있고 1979년 6월 韓·칠레 經濟協力委員會의 創立總會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등 우리 나라와 우호적인 經濟協力關係를 맺고 있어 우리 기업은 물론 輸銀 事務所의 活動與件이 中南美 어느 나라보다도 양호하여 輸銀의 事務所 설치 지역으로 中南美에서는 最適地로 인정되었다.

「산티아고」事務所는 우리 나라와의 經濟交流가 점증하고 있는 中南美諸國 진출의 기반을 구축하고 對中南美지역 情報「센터」로서의 調查活動을 수행키 위해 설치되었다. 1980년 9월 10일 「자카르타」事務所와 함께 「산티아고」事務所의 설치에 관한 認可申請을 財務部에 제출하여 同年 11월 28일 財務部の 內認可를 받은 후, 同 內認可 내용에 따라 事務所설치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취하고 1981년 6월 16일 財務部の 本認可를 받아 1981년 9월 1일 「산티아고」事務所를 개설하였다.

「자카르타」사무소는 인도네시아는 물론 「아세안」(ASEAN)諸國에 대한 延拂輸出과 資源開發事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資源保有國으로서 동남아 域內協力機構인 「아세안」의 本部가 소재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진출기반을 확보하고 「아세안」지역의 경제활동을 조사하기 위하여는 좋은 立地與件을 갖춘 곳이다. 輸銀은 1980년 9월 10일 「산티아고」事務所와 함께 「자카르타」事務所의 설치에 관한 認可申請을 財務部에 제출하여 1981년 11월 30일 財務部の 內認可를 받은 후 1982년 9월 16일 財務部の 本認可를 받아 同年 11월 1일 同事務所를 정식으로 개설하였다.

(3) 人員 및 職制

輸銀은 1976년 7월 1일자로 韓國外換銀行으로부터 代行業務를 인수받아 업무를 개시하였는바, 설립 당시의 인원은 임원 4名, 책임자급 직원 34名, 남녀 행원 22名, 서무직원 20名 등 합계 80名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1977년 1월 1일자로 정부의 輸出保險業務 代行機關으로 지정되어 大韓再保險公社로부터 수출보험업무를 인수하게 되었는바, 인수당시 同公社로부터 직원 20名이 輸銀으로 전입되었다.

그후 延拂輸出支援金融業務의 확충과 더불어 既存 金融機關 등으로부터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하였으며 中堅行員의 公採를 실시함으로써 優秀人力의 확보에 노력하여 왔는 바, 설립 이후 年平均 24%의 급속한 인원의 증가를 보게 되었다. 1986년 2월말 현재 輸銀의 人的 構成을 보면 임원 8名, 책임자급 직원 227名, 남녀 행원 249名, 서무직원 및 기타 별정직원 122名 등 합계 606名으로서 설립당시에 비

하면 7배 이상으로 인원이 증가하였다.

한편 職制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했는데 設立 이후의 변천추이는 다음과 같다.

輸銀에 근무하는 人員은 法과 定款에 따라 任員과 職員으로 구분되는데 任員은 銀行長, 專務理事, 監事 및 理事 5人 등 전부 8人으로 구성되는 經營陣을 지칭하며 職員은 本國職員과 國外事務所의 現地採用職員으로 구성된다.

本國職員은 국내에서 채용된 직원으로서 一般職員, 庶務職員 및 別定職員으로 구성된다. 一般職員은 은행의 一般業務에 종사하는 1급 내지 4급의 각급 責任者와 5급 내지 6급의 行員 및 女子行員으로 구성된다. 현재 一般職員중에는 銀行 一般職외에 당행 융자대상 사업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의 필요상 技術役도 두고 있다.

庶務職員은 당초 雇傭員으로 불리우고 있었으나 1983년 7월 16일 勞使合議에 따라 1983년 10월 7일 第14次 職制分課規程 개정시에 명칭을 변경하였다. 庶務職員은 電氣, 電話, 運轉, 整備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技能職과 警備, 修繕, 木工, 製本, 謄寫, 複寫, 文書發送 등의 勞務職에 종사하는 者로서 각각 主任,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된다.

別定職員은 一般職員이나 庶務職員으로 임용하기가 부적합한 경영, 법률, 세무, 기술 등의 顧問職과 연구원, 의사 등의 特殊專門職, 치과공, 약사, 간호원 등의 醫務職, 감정, 설계 등의 專門技術職, 사서, 도안, 세무 등의 事務職, 體育職, 勞務職, 特殊庶務職 및 見習職員을 포함한 臨時職 등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現地職員은 현지책임자, 현지사무직, 현지서무직원 및 현지별정직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本店에는 部に 部長, 室에 室長을 두어 部署長으로 하고 部, 室에 次長을 두어 部署長을 보좌하며 部署長의 有故時에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附屬室에 附屬室長을 두어 당해附屬室의 소관업무를 統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課가 있는 部署에는 課長을 두어 部長, 次長을 보좌하며, 課의 所管業務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토록 하고 있으며, 部長, 室長, 附屬室長 및 課長의 有故時에 그 직무를 대행케 하기 위하여 部長代理, 室長代理, 附屬室長代理 및 課長代理를 두고 있다. 그러나 輸銀은 이와 같은 系線組職외에도 參謀組織을 두고 役制度를 도입하여 秘書役, 調査役, 審査役, 檢査役, 管理役, 技術役 등을 필요한 部署에 두고 있다.

釜山支店 및 國外事務所에는 각각 支店長 및 所長을 두어 所管業務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토록 하고 있으며, 次長 및 支店長代理 또는 所長代理를 두어 支店 및 事務所の 업무를 분장하고 上位職級者の 有故時에는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審査役, 調査役, 管理役, 技術役을 두고 있다.

本部 各部署의 部署長은 1급 또는 2급의 本國職員으로 補하며 次長은 2급 또는 3급의 本國職員으로 임명하고 있다. 支店長 및 出張所長은 2급 이상의 本國職員으로, 支店 및 出張所의 次長은 3급 이상의 本國職員으로 補하도록 하고 있으며 國外事務所長은 3급 이상의 本國職員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課長은 3급의 本國職員으로 하며 秘書役, 審査役, 技術役, 部長代理, 室長代理, 支店長代理, 出張所長代理, 事務所長代理는 2급 내지 4급, 調査役, 檢査役, 管理役은 1급 내지 4급인 本國職員 또는 現地責任者로 補하고 課長代理는 4級の 本國職員으로 임명하고 있다.

한편 支店, 出張所, 事務所の 開設準備委員長 및 副委員長은 3급 이상의 本國職員으로 補하며, 開設準備委員은 4급 이상의 本國職員, 開設準備員은 5급 이상의 本國職員, 現地事務員 또는 現地庶務職員으로 補하도록 하고 있다.

2. 人事管理의 効率化

人事管理

(1) 人事管理의 變遷

1976년의 輸銀 설립과 더불어 中長期延拂輸出金融 支援業務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專門知識과 관련 國際金融業務知識을 겸비한 優秀金融人力の 確保와 育成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業務伸張에 따른 機構擴大 및 増員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人事管理體制의 定立이 시급히 요망되었다.

輸銀은 이러한 人事管理上の 必要性에 맞추어 設立以來 효율적인 人事管理體制의 確立과 職員 專門化에 주력해 왔으며 優秀人力の 確保를 위하여 經歷職員의 特採와 우수한 中堅行員級 職員의 公採를 병행 실시하여 왔다. 특히 設立初期에는 職務分析에 의한 職務內容 및 職務遂行要件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人事 및 企劃擔當部署가 정기적으로 실시한 部署別 業務量 및 所要人員 調査作業을 통하여 部署間의 균형있는 人員配置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輸銀의 業務規模가 급

격한 伸張勢를 지속하는 한편 業務內容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기적 眼目에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人事管理體制의 確立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3월에는 職務中心의 人事管理體制 確立을 위한 職務分析 및 1人當 業務量 調査作業에 착수하여 1980년에는 審査, 金融部署에 대한 調査 및 分析을 실시한 데 이어 1981년에는 銀行全體에 대한 職務分析을 완료하였다. 이에 의해 職員의 명확한 業務內容 및 業務量이 확정됨으로써 객관적인 資料에 의한 합리적인 人力需給計劃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職員의 配置, 異動, 昇進, 研修, 給與 등 諸般 人事管理部門의 對策樹立을 위한 基礎資料가 정비될 수 있었다.

한편 1981년 이전에는 財務部の 金融機關組織 및 人事管理 基本指針에 의거, 職級別 基準定員制를 도입하고 매년 財務部가 승인한 基準定員 범위내에서 各部署의 職級別 定員을 책정, 운영해 왔다. 그러나 1981년 2월에 職級別 基準定員制가 폐지된 데 이어 機構改編 및 總定員管理가 자율화됨에 따라 適正人員의 策定 및 維持 등 人力管理의 效率化를 위하여 人力管理上の 諸般 問題點을 연구, 보완함은 물론 職務分析의 活用度 提高등을 통해 人力管理技法을 합리화시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일층 강화하게 되었다.

昇進管理면에서는 設立初期에는 職員에 대한 정기적인 人事考課를 실시하여 이를 昇進人事에 반영해 왔으나 1977년 8월 이후에는 人力管理의 效率性 提高를 위하여 職員의 業務遂行態度, 業務實績, 適性 및 將來性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綜合評定制度를 시행함으로써 年功爲主의 人事管理에서 탈피하여 年功과 能力의 合理的 調和에 바탕을 둔 效率的 人事管理體制를 갖추게 되었다. 綜合評定制度는 과거 綜合勤務評定要綱과 人事考課要綱 등에 의해 다원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1981년 5월 上記要綱이 綜合評定規程으로 통합됨으로써 보다 實效性있는 人事管理制度로 발전되어 職員의 합리적인 昇進, 配置 및 異動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近年에 이르러서는 平均昇進所要期間이 장기화되는 등 綜合評定規定 制定 當時에 비해 諸般 人事管理與件이 크게 변모함에 따라 綜合評定の 客觀性 및 公正性을 제고하고 合理的 人事管理 및 勤務紀綱 確立을 도모하기 위하여 綜合評定制度 改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

이외에도 1979년 10월에는 職員士氣調査 및 人事意見調査를 실시, 同調査에 대한 다각적인 分析을 통하여 職員의 共通不滿事項 및 意思所在를 파악하였으며 매년 정기적인 自己申告制를 실시하여 職員 個個人の 隘路 및 希望事項을 파악, 職

<表 3-5-1>

年度別 職員 推移
(年末基準)

(단위 : 명)

	責任者	行 員	女行員	其 他	合 計
1976	46	24	17	35	122
1977	90	62	34	39	225
1978	129	83	42	62	316
1979	147	106	56	77	386
1980	164	109	68	88	429
1981	176	136	65	98	475
1982	195	140	69	109	513
1983	212	155	83	114	564
1984	218	148	86	109	561
1985	227	143	88	120	578
1986.2	227	160	88	122	597

員의 異動, 昇進 및 苦情處理를 위한 人事資料로 활용하는 등 組織내 「커뮤니케이션」의 증진을 통해 人事管理의 效率性を 제고시키려는 노력도 지속해 왔다.

또한 設立과 함께 總務部내에 人事相談室을 설치, 운영해 왔으나 1980년 12월 제정된 勞使協議會法에 의거, 苦哀處理委員會를 구성하는 한편, 人事部內에 苦哀相談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격의없는 對話를 통한 職員 個個人의 隘路事項과 苦哀의 解決 및 業務意慾 鼓吹에 큰 도움을 주었다.

(2) 人事管理의 現況

1982년 2월 總定員 및 職級別定員의 策定 등 諸般 人力管理事項이 자율화됨에 따라 職務分析 實施結果등을 바탕으로 自體人力管理機能을 강화하였는바 매년 業務內容 및 業務量 調査作業 등을 실시하는 한편 部署의 特殊事情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豫算 범위내에서 總定員 및 各部署의 職級別 定員을 책정, 운영해 왔다.

設立以來 輸銀은 業務規模의 伸張 및 業務內容의 多樣化에 따라 20次에 걸친 職制 및 基準定員의 變更을 행하였는바, 基準定員은 設立當時의 78名에서 10년이 지난 1986년에는 542名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편 輸銀은 人力構成上 他金融機關에 비해 中間管理者의 構成比率이 상대적으로 높은 特徵을 보여 왔는데 이는 取扱業務에 있어 單純反復的 業務가 적은 반면, 與信審査, 資金調達, 對顧客相談 등 專門知識을 갖춘 中間管理者가 처리해야 할 業務量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表 3-5-2〉

年度別 採用人員 推移

(단위 : 명)

	中堅行員	女行員	其 他	合 計
1976	31	17	20	68
1977	60	23	26	109
1978	53	23	29	105
1979	36	24	27	87
1980	37	15	32	84
1981	54	13	14	81
1982	26	16	18	60
1983	51	18	24	93
1984	15	6	10	31
1985	14	5	25	44
合 計	377	160	225	762

職員의 採用에 있어서는 職員은 一般職員, 庶務職員, 別定職員으로 구분하여 매년 수립되는 充員計劃에 따라 職級別 公募銓衡을 통해 채용하였다.

公募銓衡에 있어서는 일정한 資格要件을 갖춘 者 중에서 書類審査, 筆記 및 實技考試, 面接試驗, 身體檢查 등을 거쳐 最終合格者를 선정하였다. 그런데 職員採用에 있어서는 專門國際金融機關으로서의 業務性格上 初級行員의 採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中堅行員이 一般行員採用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公募銓衡에 의한 中堅行員의 採用規模는 業務伸張과 함께 매년 증가하여 1985년말 현재 總採用人員은 377명에 달하였다.

研修

(1) 研修制度의 發展

研修制度는 職員 個個人에게 研修機會를 통하여 業務遂行에 필요한 知識과 機能을 습득케 함으로써 業務能率을 증진시키게 될 뿐 아니라 組織體 一員으로서의 使命感을 갖게 하는 한편 自己啓發을 통하여 장래의 유능한 人材로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욱기 韓銀은 中長期輸出金融機關으로서 業務의 專門性이 요구되는바 이를 위한 職員研修의 必要性이 특히 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韓銀은 設立初期인 1977년 8월 當時 總務部내에 研修課를 두고 人事部門과의 긴밀한 協調下에 職員研修業務를 전담케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研修活動을 시작하였다.

研修內容에 있어서는 특히 業務와 관련이 깊은 각종 國際金融機關에서의 業務研修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先進金融制度 및 經營管理技法의 研究, 導入에 힘써 왔으며, 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語學研修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輸銀의 研修는 1976년에 실시한 語學研修가 그 始初를 이루었으며 設立初期에는 職員의 語學實力培養을 위한 行内外 語學研修와 業務技法의 習得을 위한 國外業務研修가 그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業務基盤이 정착됨에 따라 1977년부터는 金融研修院에서 실시하는 各種 專門職課程研修, 輸出學校研修 등 外部機關派遣研修를 시행함으로써 業務의 體系化 및 業務能率向上에 기여토록 했다. 또한 1978년 이후에는 業務遂行能力 提高를 위한 行內業務研修와 海外事務所에서의 勤務研修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듬해부터는 長期國外學術研修를 시행하는 등 研修對象領域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業務의 國際化 및 多樣化 趨勢에 부응할 수 있는 본격적인 職員研修體系를 갖추게 되었다.

이 밖에도 1979년에는 外國換, 輸出入, 金融, 審査, 法規, 資金, 計理, 豫算, 庶務, 調査 등 主要業務에 관한 業務研修教材를 발간한 바 있으며 그 후 業務內容의 변천에 따라 1984년에는 同教本을 全面 改編, 새로운 內容의 業務教本을 발간하여 職員의 實務研修, 實務考試 및 業務에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責任者級 職員의 業務遂行 및 業務管理能力의 培養을 위하여 1984년 이후 新任代理級 職員에 대해 管理者訓練課程을 이수케 하였으며 次, 課長級 職員에 대해서는 實踐管理者課程 通信研修를 실시하는 한편 高位幹部職員을 위한 海外機關 高級管理者課程 派遣研修를 확대 시행해 왔다.

(2) 研修制度의 現況

輸銀의 研修體系는 國內研修와 國外研修로 대별된다. 行內 自體研修 및 行外 派遣研修의 형태로 시행되는 國內研修는 그 內容上 業務研修, 語學研修 및 其他研修로 나누어지며 國外研修는 業務研修, 學術研修 및 視察研修 등으로 구분된다.

國內業務研修는 業務遂行에 필요한 知識과 能力을 연마하기 위한 것으로서 新入行員研修, 行內 實務研修 및 각종 外部機關 專門課程研修 등이 포함된다. 職員語學研修를 위해서는 語學實習室을 운영하고 각종 語學講座를 개설하는 한편 行外 語學教育專門機關 委託教育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其他研修로는 女行員 敎養研修, 産業視察研修, 夜間大學院 學術研修 등을 들 수 있다.

〈表 3-5-3〉

職員研修의 體系

		主 要 研 修	備 考
行 內 研 修	業務研修	○實務研修 ○新入行員 研修	業務知識 습득 및 能力 배양
	語學研修	○語學講座 개설 ○語學考試	
	其他研修	○女行員 研修 ○産業視察 研修	
行 外 研 修	業務研修	○金融研修院 專門職 課程 ○保險研修院 損害保險 課程 ○能率協會 管理者 訓練課程	專門知識의 체계적 습득 語學人力의 양성
	語學研修	○外大 語學研修 ○英語教育 專門機關 ○其他 外國語學院 수강료 보조	
	其他研修	○學術研修 (夜間大學院) ○打字研修	
國 外 研 修	學術研修	○海外 有數大學院 파견	長期 專門人力의 양성 先進金融技法 도입 및 國際金融人으로서의 資 質 함양
	業務研修	○金融, 保險機關 파견 ○大學校, 其他機關 파견	
	視察研修	○金融機關 파견	
特別 研修		○國民精神 教育 ○國民經濟 教育 ○새마을 研修	

國外研修 分野에 있어서는 職員의 對外業務遂行能力을 증진시키기 위해 國際金融機關 등지에서 業務研修를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 眼目에서 專門金融人力을 양성하기 위한 海外學術研修 및 高位幹部職員을 대상으로 한 國際金融機關 視察研修를 늘려 왔다. 이하 주요 研修課程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新入行員研修는 銀行業務遂行에 필요한 基礎事項 및 올바른 業務姿勢를 습득케 함으로써 銀行員으로서의 資質과 品性を 함양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新入行員研修는 통상 2~4週間에 걸쳐 실시되며 이 기간 중 輸銀의 沿革, 組織, 業務概況, 人事關係規程 및 기초적인 實務知識 등 諸般事項에 대한 教育을 실시하였다.

〈表 3-5-4〉

國內研修 實施現況

(단위 : 명)

	業務研修		語學研修		其他	合 計
	行內	行外	行內	行外		
1976			10	1		11
1977		15	10	4		29
1978		15	60	11	2	88
1979		19	80	8	2	109
1980		25	70	5		100
1981	352	22	120	4	173	671
1982	457	36	55	6	187	741
1983	146	48	80	28	141	443
1984	125	83	60	132	210	610
1985	211	100	120	154	239	824
合 計	1,291	363	665	353	954	3,626

行內實務研修는 4,5級職員을 대상으로 하여 業務遂行에 필요한 實務知識과 機能을 습득케 함으로써 銀行員으로서의 資質을 함양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둔 것으로 貸出審査, 契約書審査, 國別信用度評價, 貸出執行 및 事後管理, 資金調達 및 運用, 輸出保險 등 銀行業務 全般에 걸쳐 실시되었다. 研修對象職員은 이중 매년 1 가지 分野에 대해 研修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金融研修院등 外部機關 專門職課程研修를 통하여 業務의 체계화 및 専門化에 필요한 基礎理論, 專門知識 및 最新金融技法 등을 습득케 함으로써 職員資質의 向上 및 業務發展을 도모하였다. 外部機關 派遣研修의 중심이 되고 있는 金融研修院의 專門職研修課程에는 信用分析, 外換業務, 國際金融 등 業務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分野를 선별, 對象職員을 파견했는데 4,5級職員의 경우에는 當該職級에서 적어도 1課程을 이수토록 하였다. 이외에도 保險研修院, 韓國能率協會 등이 주관하는 專門課程研修중 輸銀業務 關聯分野에 대한 派遣研修를 확대 실시하였다.

한편 語學研修와 관련해서는 行內 外國語講座를 개설하는 한편 外大 語學研修院 및 其他 外國語專門教育機關에 派遣研修를 시행하였으며 行外 外國語學院 受講時에는 受講料의 일부를 보조하였다. 특히 設立 이듬해인 1977년부터는 行內에 語學實習室을 개설하고 自體計劃下에 同實習室을 이용한 行內 語學研修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語學研修에는 英語 이외에도 佛語, 獨語, 西班牙語, 日語 등 第2 外國語를 포함시켰으며 이들 科目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筆記試驗 및 「인터

뷰」를 통한 外國語考試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國內研修 이외에 國外研修를 특히 강화했는데 장기적 次元에서의 人材養成 및 先進諸國의 最新金融技法과 經營管理方式의 도입을 통해 業務發展을 도모할 목적으로 設立初期부터 優秀職員의 海外 派遣研修를 확대 실시해 왔다.

國外研修중 業務研修는 外國의 金融機關을 비롯한 專門機關에 職員을 파견하여 필요한 金融制度를 연구케 하거나 새로운 業務技法을 습득케 함으로써 國際金融人으로서의 資質涵養을 도모했다. 또한 學術研修는 海外 有數大學院에서 經濟學, 經營學 및 法律學 등을 연구케 하기 위한 것으로 期間 1년 이내의 短期 學術研修와 期間 2년 이내의 長期 學術研修로 구분, 시행하였다.

海外研修는 원칙적으로 實務經歷이 3년 이상인 者로서 外國語에 능통하고 勤務成績이 우수한 該當業務關聯者를 선정, 파견해 왔는데 主要 派遣對象國은 美國, 英國, 西獨, 日本 등이었다.

이 밖에 入行後 1년 이상이 경과한 職員을 대상으로 매년 産業視察研修를 실시하였는바 특히 輸銀支援 重化學業體의 施設 및 工程踏査를 통하여 延拂輸出 支援業務遂行에 있어서의 效率性 提高를 도모해 왔다. 또한 새마을精神의 生活化를 위한 새마을研修를 全職員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으며 매년 수립되는 教育計劃에 의거, 國民精神教育 및 經濟教育을 실시함으로써 金融人으로서의 資質涵養 및 價値觀의 再定立을 도모하는 한편 主要 政府施策 및 우리나라 經濟現實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表 3-5-5〉 國外研修 實施現況 (단위: 명)

	業務研修	學術研修	視察研修	合 計
1976	5			5
1977	8			8
1978	14		2	16
1979	16	1	3	20
1980	15	4	1	20
1981	16	2	2	20
1982	20	4	3	27
1983	18	4	3	25
1984	24	4	1	29
1985	25	4	1	30
合 計	161	23	16	200

이외에도 女職員의 敎養涵養 및 職業意識의 鼓吹를 위하여 매년 女職員敎養研修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職場雰圍氣 醇化 및 業務能率 提高에 주력하였다.

福祉・厚生

福祉厚生制度는 職員 個個人の 福利增進에 기여할 뿐 아니라 職員의 協同心과 所屬感을 북돋아 주는 한편 勤務意慾을 고취시킴으로써 銀行의 業務能率向上에 기여하는등 중요한 意義를 지닌다. 輸銀은 이러한 趣旨에서 設立과 동시에 제정된 福祉規程에 의거, 職員의 福利增進 및 保健向上을 위한 諸般措置 및 業務遂行중 발생한 災害에 대한 補償措置 등을 실시해 왔는데 그 主要內容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醫療惠澤

疾病의 早期發見, 治療 및 豫防 등 職員의 健康管理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綜合健康診斷을 실시해 왔으며 職員의 採用, 特殊勤務者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健康診斷을 실시하였다.

또한 職員의 隨時健康診斷과 함께 簡易治療의 便宜을 도모하는 한편 각종 醫藥品의 惠澤을 제공하기 위해 行內에 醫務室을 설치, 운영해 왔는데 醫務室은 1977년 12월 內科가 개설된 이래 1980년 1월에는 齒科가 추가로 설치되어 簡易 內科診療 및 齒牙治療에 임하였다.

한편 1979년 7월 1일부터는 醫療保險法에 의거, 서울特別市 鍾路區 所在 第1地區 醫療保險組合에 가입함으로써 醫療保險의 惠澤을 주게 되었다.

(2) 身體鍛鍊

職員의 體力向上을 위하여 國民體育振興法등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各種體育行事를 실시해 왔다. 主要行事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全職員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는 綜合體育大會가 있는데 1985년 가을에는 새로 마련된 研修院 球場에서 綜合體育大會行事를 가진 바 있다. 이 밖에도 「테니스」會, 山岳會, 낚시會 및 野球會 등의 지원을 통하여 職員間의 親睦圖謀 및 體力鍛鍊에 기여하였다.

또한 輸銀은 매년 여름 國內 名山 및 有名海水浴場 등지의 休憩施設을 임차하여 職員들이 이용토록 했는데 현재까지 경포대, 만리포, 대천, 해운대 등지의 海水浴場 및 설악산 등지에 夏季鍊成場을 설치, 운영한 바 있다.

(3) 厚生

職員의 厚生增進을 위하여 각종 支援을 늘려 왔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職員 子女의 學資金 보조, 無住宅職員에 대한 住宅 및 福祉資金 대여, 構內食堂 및 休憩室 등 福祉施設의 운영과 각종 「서클」活動 지원을 들 수 있다.

한편 1977년 9월에는 行友會를 조직하여 職員 상호간의 親睦, 共濟, 福利增進을 도모토록 했으며 1980년 11월에는 信用協同組合을 결성한 바 있다. 信協은 그 業務가 매년 크게 신장되어 1985년말 현재의 資本金은 1억 2,085천원으로 크게 확충되었다.

이 밖에 1980년 12월에는 勞使協議會가 정식 설치되어 使用者와 勤勞者 간의 협동과 이해 증진을 위한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게 되었다.

3. 調査分析業務의 活性化

輸銀의 調査分析業務는 설립 6개월 뒤인 1977년 1월 企劃調査部가 확대 개편되어 經濟調査機能만을 전담하는 독립부서로서 海外投資調査部가 신설되면서 본격화되었다.

輸銀의 調査業務는 中長期信用 供與對象國에 대한 國別信用度評價와 延拂輸出 支援政策 및 制度에 관한 기초조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同業務가 國內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分野인데다 調査要員 부족, 資料 미비 등으로 초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與件 아래에서도 輸銀은 國別信用度評價方法의 開發과 선진국의 中長期延拂輸出政策 및 制度에 대한 연구를 착실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첫 결실로 1977년 4월에 國別信用度評價를 위한 첫 試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후 수정, 보완을 거쳐 1979년 3월, 4次 試案이 마련되면서 현재의 國別信用度評價 및 與信限度設定方法의 체제를 갖추었는데 同評價方法은 1982년 8월과 1985년 5월에 개정된 바 있다. 이러한 評價方法의 質的 改善과 함께 매년 50餘個國의 國別信用度評價資料와 國別投資環境資料를 발간하여 輸銀의 審査業務에 활용하여 왔음은 물론 關係機關 및 業界의 참고자료로 제공하였다.

한편 國別信用度評價業務와 더불어 발족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未開拓分野이던 延拂輸出金融支援制度, 輸銀支援産業 動向 및 支援「프로젝트」의 國民經濟의 效果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國內外經濟 및 國際金融 등에 관한 경제조사업무를 병행해 왔다. 그 동안 輸銀은 320餘件의 調査研究資料를 발간했으며 週間輸銀뉴스, 輸銀

調査月報, EXIM Bulletin 등 定期刊行物を 통하여 輸銀의 支援政策方向 提示는 물론 關係機關의 政策立案 및 關聯業界의 業務參考資料를 제공해 왔다.

이와 같이 輸銀은 國別信用度評價에 대한 固有評價方法을 개발, 정착시켰고 中長期信用制度 研究 등의 專門 調査機關으로 발전하였다.

調査分析業務를 전담하고 있는 海外投資調査部는 발족당시 5名の 調査役을 포함, 9名の 人員으로 출발하여 1985년말 현재에는 20名の 각 직급별 調査役을 포함, 50名の 專門調査要員을 확보하게 되었다.

國別信用度評價業務의 內實化

(1) 國別信用度評價業務의 意義

國別信用度評價란 金融機關이 해외에 信用을 공여할 경우 借主國家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 가능한 債權回收上的 危險 程度를 미리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國別信用度問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次 大戰 후 世界銀行 등 主要 國際金融機構 및 先進工業諸國의 金融機關이 개발도상국에 投融資를 본격화하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 國別信用度問題가 특히 중요시된 것은 第1次 石油波動 이후 세계적 景氣沈滯, 선진국의 保護貿易主義 강화, 1次產品價格의 하락, 國際高金利現象 등으로 인하여 非產油開發途上國의 外換收入이 격감하고 對外債務償還負擔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 국가의 外債償還遲延과 債務救濟事例가 빈발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또한 이 시기에 들어서부터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지나半島의 共產化(1975), 이란事態의 발생(1978), 니카라과의 左傾化(1979), 아프카니스탄의 共產化(1980) 등 많은 國際政治上的 문제점들이 顯在化됨에 따라 國別信用度評價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 왔다.

따라서 國別信用度評價業務는 國際機構를 비롯한 主要國의 中長期信用機關에서는 물론 國際商業銀行이 海外投融資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되고 있다. 輸銀으로서도 中長期信用 供與를 통한 輸出增大에 力點을 두고 있고 支援對象國家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에서 國別信用度問題가 일찍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다. 즉 輸銀 信用供與의 최종수혜자가 주로 外國政府, 外國企業인 데 따라 海外債權이 발생하고 貸出金償還財源의 기반이 원천적으로 外國에 존재하며 貸出規模가 거액이고 償還期間이 또한 장기인 데 따른 國別信用度問題의

중요성이 일찍부터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支援對象國家가 정치적 안정도가 낮고 外債償還負擔能力 및 대규모 「프로젝트」의 受容能力에 한계가 있는 개발도상국임에 따라 國別信用度評價가 貸出審査의 주요 요건이 되었다.

이와 관련, 輸銀은 國別與信偏重의 배제와 與信의 危險分散 등 金融資産의 效率的 運用과 投融資資金의 安全性을 기하고 효과적인 經濟協力の 증진을 기본목적으로 하여 輸銀 設立과 더불어 國別信用度評價業務를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었으며 현재에는 輸銀 고유의 國別信用度評價方法을 개발, 海外投資調查部가 同業務를 수행하고 있다.

(2) 國別信用度評價方法의 改善

國別信用度評價方法은 世界銀行 등 國際金融機構와 선진공업국의 延拂輸出金融擔當機關 및 國際商業銀行 등에 의하여 個別 機關의 性格이나 經營方針 또는 經驗에 따라 독자적인 技法을 개발, 채택해 왔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國別信用度評價方法은 質的分析方法(qualitative analysis)과 數量的分析方法(quantitative analysis)으로 대별될 수 있다.

質的分析方法은 각국별로 정치, 경제, 사회정세의 현황과 전망을 報告書形式으로 기술, 작성하는 방법으로서 分析方法이나 報告書形式이 각 평가대상국가에 따라 다른 自由敘述法(fully qualitative system)과 分析方法이나 報告書形式을 표준화한 定型的敘述法(structured qualitative system)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 방법은 각국의 특징과 주요문제에 분석의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수량화할 수 없는 요소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客觀性を 유지하기 어렵고 국가간에 信用度比較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自由敘述法の 단점을 다소 개선한 定型的敘述法은 우수한 國際商業銀行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평가방법이다.

한편 數量的分析方法은 수치로 표시된 指標를 이용하여 각국의 信用度を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미리 정해진 共通指標에 加重値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指數加重平均法(checklist system)과 計量經濟學에서 이용되는 豫測模型을 활용하는 統計的分析方法이 있다. 이 방법은 質的 分析方法에 비하여 分析者의 主觀이 배제되고 국가간 信用度比較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치, 사회정세 등 수량화할 수 없는 요소가 무시되며 指標의 선택에 있어 主觀의 완전한 배제가 어렵고 그 결과치가 현실과 유리되는 면이 적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때문에 이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機關은 거의 없다.

현재 輸銀은 質的分析方法에 數量的分析方法을 가미한 固有方法을 개발, 채택하고 있는데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美國輸出入銀行등 國別信用度評價機關에 대한 담당조사역의 海外研修, 國內의전문가의 招請研修, 海外投資調查部내의 自體研修를 통하여 評價方法 및 節次의 개선으로 信用度評價業務의 質的改善을 이룩해 왔다. 輸銀은 1977년 4월에 對外債務負擔能力 評價에 중점을 둔 第1次 試案을 마련하여 처음으로 評價方法을 도입한 이후 1977년 8월 第2次 試案, 1978년 3월 國別與信限度 設定 및 活用方案을 포함한 第3次 試案, 1979년 3월 第4次 試案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시행하고 있는 國別信用度評價 및 與信限度設定方法의 체제를 갖추었다. 그 이후 1982년 8월에는 業務方法書 第7條에 의거하여 國別信用度評價業務에 관한 指針을 마련함과 동시에 同方法의 일부를 개정하고 1985년 5월에는 상기의 指針, 國別信用度評價委員會要綱(1977. 9), 國別與信限度管理 및 運用基準(1980. 11) 등으로 분리되어 있던 國別信用度評價에 관련된 規程을 통합, 조정하여 國別信用度評價 및 與信限度管理規程을 제정하고 國別信用度評價 및 與信限度設定方法도 개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輸銀의 國別信用度評價方法을 보면 한 나라의 信用度を 평가함에 있어서 5개의 評價分野 즉 ①國內經濟 ②對外去來 ③開發政策 ④政治社會 ⑤其他(우리나라와의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評價分野마다 信用度の 상태와 전망을 고려하여 等級(A,B,C,D,E)을 부여하고 等級에 따른 評點(A:1점, B:2점, C:4점, D:8점, E:16점)과 각 評價分野에 대한 加重值(評價分野別로 상이한 加重值 적용)에 의하여 綜合評點을 산출, 이에 따라 綜合等級을 결정한다. 評價分野중 對外去來에 대해서는 加重值를 다른 評價分野에 비하여 높게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對外債務償還能力 評價에 있어서 國際收支, 對外支給準備, 外國人投資環境 등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기 각 評價分野에 대한 信用度評價時에 고려되는 주요한 要素로서는 ①國內經濟는 經濟規模 및 成長, 賦存資源, 物價, 財政, 金融, 產業構造 등의 추이와 전망 ②對外去來는 國際收支, 對外支給準備, 對外債務 및 外國人投資環境 등의 추이와 전망 ③開發政策은 經濟政策, 外資政策 등을 포함하는 經濟開發計劃과 開發展望 ④政治社會는 政治安定度, 失業率, 文盲率 등의 사회환경 ⑤其他는 우리나라와의 外交・通商關係와 特記事項 등이다.

이상과 같은 方法에 의해 査定된 國別信用度等級은 國別信用度評價專門委員會의 事前審議와 國別信用度評價委員會의 本審議를 거쳐 銀行長의 결재를 받음으로

써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한편 國別與信限度設定方法도 國別信用度評價方法과 같이 金融機關에 따라 設定方法이 약간씩 다르나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國家信用度, 市場規模, 貸出銀行의 資本金 등이며 그 밖에 金融機關과의 信用供與對象國家와의 과거관계, 自國의 輸出金融制度 등이다.

輸銀의 與信限度設定方法은 1979년 3월 國別信用度評價를 위한 第4次 試案에서 현재의 體制가 갖추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①對象國의 外債受容能力評價에 의한 方法 ②貸出金延滯危險 分散方法 ③與信의 國家別 集中防止方法의 세가지 方式에 의한 與信限度設定額 중 최저 금액을 國別與信限度基準額으로 사용하였다. 상기 與信限度間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정된 與信限度的 운용도 지나치게 경직성을 보임에 따라 第4次 試案부터 資本金, 資金量, 過去經驗 등을 고려하여 信用度, 市場規模에 따라 國別與信限度를 미리 일괄 산정하는 현재의 방법으로 개편하였다.

현재의 國別與信限度는 國別信用等級(A,B,C,D,E)에 따라 最高限度를 차등 적용하고 同一等級國家라도 經濟規模(GDP기준)에 따라 5個「그룹」으로 이를 세분화하고 있다. 그러나 信用度等級이 E級인 경우에는 與信限度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方法에 의해 설정되는 信用度等級別 最高限度는 기본적 고려사항인 輸銀與信規模 등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3) 國別信用度評價結果의 活用

國別信用度評價 結果는 債權保全의 安全性 提高, 國別資金支援의 偏重 防止, 資金支援의 效率性 提高 등을 위하여 與信限度的 설정에 이용되고 與信供與 與否 및 優先順位의 基準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綜合評點에 의한 信用度等級은 國別與信限度的 설정에 이용되는데 輸銀의 國別與信限度 適用對象은 貸出額 및 債務保證額으로 輸出資金(技術提供資金)의 경우에는 引渡後金融(技術提供後金融)을 기준으로 하며, 一覽拂去來와 세계일류은행의 支給保證書가 있는 경우에는 與信限度適用對象에서 제외된다. 與信限度適用對象國家는 원칙적으로 개발도상국가로 하나 信用度等級이 E級인 국가는 제외된다.

國別與信限度的 적용시점은 豫備承認時부터인데 이는 海外進出企業의 대외거래 접근에 따른 위험을 去來初期段階에서부터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國別與信限度的 설정과 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1978년 5월 第8次 海外經濟技術

協力委員會에서는 韓國輸出入銀行 國別與信限度 設定 및 그 活用方案을 의결하여 輸銀의 國別與信限度 策定결과를 매 6개월마다 同委員會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國別與信이 당해국 與信限度의 200% 이하인 경우에는 同委員會의 의결을 거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의결한 바 있다.

그 후 1980년 2월의 第17次 同委員會에서는 輸銀融資支援節次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輸銀自體의 國別信用度評價技法을 강화할 수 있도록 上記方案을 폐지하고 輸銀이 자율적으로 評價業務를 수행토록 의결하였다. 또한 國別與信限度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同委員會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韓國輸出入銀行 運營委員會에서 결정토록 위임하였다. 國別與信限度는 輸銀의 資金支援決定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對外秘로 관리되고 있으며 與信限度의 設定은 海外投資調查部가 담당하고 있으나 관리와 운용은 審査1部에서 담당하고 있다.

國別信用度評價 結果는 國別與信限度設定 이외에 融資選別支援의 基準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輸銀融資選別支援指針에서는 國別信用度評價 結果를 優先支援與否 결정의 주요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國別信用度評價를 위하여 작성, 발간되는 國別信用度評價資料는 대상국의 제반 경제현황과 전망, 해외투자환경은 물론 정치, 사회 상황까지를 종합적으로 조사 평가하고 있으므로 政府와 關係機關의 대상국에 대한 政策方向 그리고 개별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判斷參考資料로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輸銀은 同資料가 발간되는대로 政府關係機關이나 海外進出業界에 배포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國別信用度評價 實績

輸銀이 國別信用度評價業務를 시작한 것은 1977년 1월에 企劃調查部가 海外投資調查部로 확대, 개편되면서 부터였다.

國別信用度評價資料의 作成은 1977년 상반기중에 國別信用度評價方法의 수립과 이에 관한 海外經濟協力委員會의 의결과정을 거쳐 우선 아시아, 中東, 中南美, 아프리카地域중 輸銀의 去來實績과 展望에 비추어 가장 평가가 시급한 3個國씩을 선정하여 12個國에 대하여 評價資料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1978년부터 본격적인 國別信用度評價業務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1978년에 71個國, 1979년에 80個國, 1980년 57個國에 대하여 評價資料를 작성했는데 國別信用度評價業務 개시 후 1980년말까지 總 93個國(累計 220個國)에 대한 評價資料를 작성하였다.

〈表 3-5-6〉

國別信用度評價 實績

	1983년 이전	1984	1985	合 計
아 시 아 大 洋 洲	Afghanistan(81) Bangladesh(83) Nepal(83) Palau(83) Sri Lanka(83) Western Samoa(78)	Brunei, Burma, India, Indonesia, Maldives, Mariana, Nauru, Pa- kistan, PNG, Taiwan	Fiji, Hong Kong,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Solomon Is, Thailand, Bhutan,	24
中 東	Syria(78)	Egypt, Iran, Jordan, Kuwait, Libya, Sudan, Tunisia, UAE, Yemen	Algeria, Bahrain, Iraq, Morocco, Oman, Qa- tar, Saudi Arabia, Turkey, Yugoslavia, Hungary	20
中 南 美	Bahamas(79) Bermuda(83) El Salvador(81) Nicaragua(78) Panama(83), Para- guay(83) Uruguay(78) Saint Vincent(83)	Antigua, Barbados, Colombia, Dominican Republic, Guatemala, Haiti, Honduras, Me- xico, Peru, Venezuela	Argentina, Bolivia, Brazil, Chile, Costa Rica, Ecuador, Jama- ica, Netherlands Antilles, Trinidad & Tobago, Surinam	28
아프리카 유 럽	Equatorial Guinea(81) Greece(83) Malawi(80) Mauritania(83)	Botswana, Burkina Faso, Ethiopia, Gabon, Gambia, Ghana, Ivory Coast, Kenya, Mauri- tius, Nigeria, Central Africa, Uganda	Angola, Cameroon, Congo, Guinea Bissau, Guinea, Ireland, Liber- ia, Portugal, Sierra Leone, Senegal, South Africa, Zaire, Zambia, Zimbabwe	30
合 計	19	41	42	102

註: 1) ()안은 評價年度임.

國別信用度評價 및 與信限度設定은 1978년 2월 國別 信用度評價委員會가 처음 개최되면서 시작되어 1978년 54個國, 1979년 22個國, 1980년 49個國을 완료함으로써 1980년말까지 總 68個國(累計 125個國)에 대한 評價 및 與信限度 설정을 완료했다. 이와 같이 輸銀은 1980년까지 國別信用度評價方法을 개발, 정착시킴과 아울러 評價對象國에 대한 資料의 作成 및 評價를 일단 완료하였다.

이어 輸銀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國家나 거래 추진중인 國家는 물론 거래가 예상되는 國家, 특히 정치, 경제 상황의 변동이 잦은 國家를 대상으로 계속해



輸銀 發刊 各種 刊行物

서 評價資料의 作成 및 信用度評價를 실시하였는데 1981년 50個國, 1982년 33個國, 1983년 49個國, 1984년 46個國, 1985년 43個國을 신규 또는 재평가하여 1981년부터 1985년말까지 總 102個國(累計 221個國)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다.

또한 이 기간중에는 OECD會員國중 개발도상국 수준의 일부 國家와 東歐共產圈 國家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의 交易擴大 추세에 맞추어 信用度 평가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5) 國別投資環境調査의 強化

輸銀은 國別信用度評價業務와 더불어 각국의 投資環境調査도 병행하여 수시로 國別 外資政策 및 制度 등에 관한 投資環境資料를 발간하여 輸銀의 貸出審査와 關聯產業界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자료로 제공해 왔다.

1982년 9월에는 全斗煥 大統領의 아프리카 4個國 순방을 계기로 그 동안의 業務蓄積을 기반으로 하여 海外投資調査部內에 아프리카 投資相談「센터」를 설치, 운영해 왔으며 1983년 3월에는 이를 세계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海外投資相談室로 개편하여 우리 企業의 해외투자진출과 관련한 投資對象國의 정치, 경제, 투자제도 등 전반적인 진출여건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수행해 왔다. 同相談室 설치 이후 1985년말까지의 相談件數는 107件에 이르렀다.

1985년 상반기에는 美國의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政策과 관련하여 우리 企業의 投資進出이 유망시되는 「카리브」 및 中美地域의 投資環境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關聯業界에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한편 1985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企業의 投資進出이 유망시되는 60個國을 선정하여 과거의 개괄적인 投資環境調査에서 탈피, 각국의 投資政策은 물론이고 投資節次, 각종 「인센티브」, 勞動事情, 社會間接資本 등을 포괄하는 본격적인 投資環境調査業務에 착수하였다.

經濟調查分析業務의 強化

海外投資調查部는 전술한 國別信用度評價業務를 수행하는 이외에도 延拂輸出,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輸入 등과 관련된 각종 制度調查와 더불어 造船等 輸銀支援産業 및 國內外經濟動向 등에 관한 조사분석업무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輸銀의 業務基盤擴充과 國際化에 크게 기여해 왔다.

(1) 延拂輸出金融支援制度 調査

延拂輸出, 海外投資, 海外資源開發輸入 등에 대한 中長期 延拂輸出金融 支援制度에 대한 조사 연구는 國別信用度評價業務와 더불어 輸銀의 가장 중요한 經濟調查分析業務의 하나가 되고 있다. 海外投資調查部는 그 동안 주요선진국의 中長期 延拂輸出 信用供與機關 및 國際金融機構의 制度를 비교 연구함과 동시에 선진각국의 支援動向, 延拂輸出金融政策 등을 분석하여 輸銀의 支援政策 수립의 참고자료를 제공해 왔다. 또한 同調査研究 結果를 輸銀調査月報, 週間輸銀뉴스 등에 게재하거나 單行本으로 발간하여 關係機關의 政策樹立에 대한 참고와 關聯業務에 대한 啓導에 앞장서 왔다. 1983년부터는 主要國 輸出金融機關 業務動向을 매분기별로 조사 발표해 오고 있다.

(2) 支援對象産業 調査

海外投資調查部는 輸銀의 資金支援對象産業이 되고 있는 「플랜트」, 造船 등에 대한 조사 연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세계의 「플랜트」, 造船, 海運 등의 動向에 관한 基礎調查와 이들 産業에 대한 國際競爭力 비교분석을 통해 輸銀與 信政策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해 왔고 選別支援를 강화하기 위한 産業別 優先順位設定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하여 輸銀資金支援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였다.

이 밖에도 輸銀支援事業의 國民經濟의 效果分析과 「프로젝트」評價 技法의 개발에도 주력하여 金融支援의 效果를 極大化하는 데 노력하였다.

(3) 國內外經濟動向 調査

海外投資調查部는 輸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國內 및 海外經濟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조사 분석자료의 발간을 확대해 왔다.

同調査分析業務의 범위는 國內外經濟 전반에 걸쳐 있으나 주요 내용은 重化學工業政策 및 支援戰略, 輸出構造, 經濟開發計劃 등 輸銀과 관련이 깊은 國內經濟動

向과 世界經濟 및 國際金融·外換市場動向, 개발도상국의 對外債務問題, 주요국의 資源現況, 多國籍企業의 海外投資動向 등에 관한 조사분석이 중심을 이루었다.

同經濟動向 조사에 있어서는 國內外經濟調查機關의 자료 이외에 輸銀의 海外事務所 보고 자료가 적극 활용되었다.

(4) 主要刊行物 發刊 및 圖書管理

輸銀은 定期刊行物로서 주간지인 週間輸銀뉴스, 월간지인 輸銀調查月報, 계간지인 EXIM Bulletin 외에 영문연차보고서인 Annual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週間輸銀뉴스는 설립 직후인 1976년 7월 13일부터 主要國內外經濟短信과 行內活動을 실은 EXIM NEWS를 매일 발간하여 행내에 배포한 것이 그 효시가 되었다. EXIM NEWS는 1977년 6월 10일 第288號를 끝으로 週報 EXIM WEEKLY(第1號發刊 1977년 7월 7일)로 개편 발간되기 시작했다. 行內用으로만 발간해 오던 EXIM WEEKLY는 1978년 1월 1일 第25號를 끝으로 題號를 週間輸銀뉴스로 바꾸어 配布處를 關係機關 및 業界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1980년 1월 1일부터는 週間輸銀뉴스의 經濟解說記事 중편, 地域別 海外經濟欄 신설, 國際機構動向, 國際金融市場動向, 輸銀業務活動 등 輸銀 機關誌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이어 1982년 12월 22일 輸銀調查月報가 창간되는 것을 계기로 주간지로서의 性格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國內經濟의 주요현안문제와 진출대상지역의 經濟動向 分析에 특화하되 시사성이 있는 문제와 신속을 요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週間輸銀뉴스는 輸銀의 가장 오래된 定期刊行物로서, 1985년말 현재 誌齡이 400號를 넘어섰다.

輸銀調查月報는 1982년 12월 22일 創刊號가 발행되었다. 同調查月報에는 延拂輸出, 海外資源開發 및 對外經濟協力 등과 관련하여 對外 進出戰略에 관한 정책 방향, 주요국의 각종 中長期 延拂輸出 支援制度와 支援政策, 진출 대상국에 대한 投資環境 등에 관한 심층적인 調查研究資料가 수록되어 輸銀은 물론 關係機關 및 產業界의 政策樹立 등의 업무에 기여해 왔다. 調查月報에는 <論叢, 解說, 資料><海外市場動向><國際金融機構動向><經濟短信><其他資料(國內外經濟日誌)><統計(輸銀業務活動狀況, 國內外主要經濟指標)> 등이 固定「컬럼」으로 수록되고 있다.

EXIM Bulletin은 1977년 1/4분기부터 발간되어 오고 있는 英文季刊誌이다. 同季刊誌는 우리 나라의 對外去來와 관련된 主要經濟動向, 造船, 「플랜트」, 機械 등 關聯產業의 조사 분석결과, 業務內容 및 業務實績 등을 수록하여 國內外에 소개함

으로서 輸銀支援事業의 확대와 對外經濟協力 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 밖에도 1976년 이후 매년의 業務實績을 수록한 英文 Annual Report를 발간하여 國內外에 배포해 왔다.

또한 1976년 7월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 중심의 國別信用度評價 對象國에 대한 評價資料를 매년 50餘個國씩 발간해 왔으며 1980년부터는 120餘個國을 대상으로 하는 國別便覽을 매년 발간하였다.

한편 延拂輸出, 海外投資, 國別信用度評價方法, 一般經濟動向, 重化學工業關聯産業, 國際機構, 國際金融, 輸出保險, 法規, 審査分野 등에 관한 각종자료를 그간 320餘件 발간한 바 있다.

輸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전문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립 이래 圖書資料室을 운영해 왔는데 藏書數는 1985년말 현재 國內圖書 6,242卷, 洋書 5,618卷, 日書 3,548卷으로 總 15,408卷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經濟專門圖書가 10,550卷을 점하고 있다. 또한 482種에 달하는 定期刊行物을 비치하는 등 國際金融 및 地域經濟에 관한 전문적인 情報 및 資料의 제공에 주력해 왔다.

4. 法規業務

輸銀의 法規業務는 設立初期에는 業務部에서 이를 담당했는데, 1977년 1월 27일 業務部내에 法規課가 설치되어 法規課에서 法規業務를 담당하여 오다가, 1978년 2월 28일 第5次 職制改編에 따라 독립된 部署인 法規室로 擴大 改編되어, 法規室이 法規業務 專擔部署가 되면서 融資關係契約에 대한 法的 審査등 法規業務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1982년 3월 2일 任員附屬室과 法規室이 文書部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法規業務는 文書部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1986년 4월 22일 文書部가 法規室과 庶務部所屬 任員附屬室로 분리, 개편되어 法規業務는 다시 法規室에서 전담케 되었다.

法規業務는 ①融資關係契約, 資金調達關係契約 및 重要契約에 대한 法的審査 ②國內外 通商, 投資 및 契約關係 法制 및 判例 등의 調查研究과 그 解釋 ③輸銀法 및 施行令 改正建議案 作成 ④定款 및 內規의 制定案作成, 改廢案에 대한 審査 ⑤法律實務에 대한 相談 및 指導 ⑥內規集 編纂 ⑦국내외 顧問辯護士에 관한 事項 등으로 세분된다. 그러나 輸出入,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輸入에 필요한 金融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輸銀의 業務性格上 상기 法規業務중에서도 融

資 및 資金調達關係 國際契約에 대한 法的 審査業務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輸銀의 法規業務는 國際的 性格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國內의 다른 金融機關에서의 法規業務와는 큰 차이가 있다. 즉 輸銀金融支援去來는 그 자체가 國際去來의 성격을 띠는 만큼 國內法規에 대한 검토 이외에도, 去來對象國의 貿易, 外換, 關稅 및 投資法上の 問題點 有無에 대한 검토와 당해 去來契約書 자체의 法的 瑕疵有無에 대한 法的 檢討가 아울러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融資 및 資金調達關係 國際契約에 대한 法的 檢討를 철저히 함으로써 國際去來에서 일어날 수 있는 國際間的 法的 紛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對外債權을 확실히 보전함으로써 國家利益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契約書의 法的 檢討

輸出入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輸入에 필요한 거액의 資金을 장기에 걸쳐 지원함에 있어서는 融資實行에 앞서 사전에 當該 去來가 元利金償還 및 收益性에 있어서 財務的으로 妥當性이 있는지(財務的 妥當性 檢討), 또 投資事業에 대하여 國民經濟的 次元에서 效率性이 있는지(經濟的 妥當性 檢討)를 검토하고, 이어 製作履行能力등 技術的인 側面에서 妥當性이 있는지(技術的 妥當性 檢討)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當該 去來와 관련된 國際契約書의 法的 瑕疵 내지 法的 危險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國際契約書의 法的 檢討業務가 뒤따라야 된다.

國際契約書에 대한 法的 檢討業務는 當該 去來에 대한 輸銀의 金融支援 與否를 결정하기에 앞서 진행되는 貸出審査過程에서 法的 妥當性檢討 分野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審査業務의 一環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輸銀의 貸出審査關係規程은 審査擔當部署長이 當該 去來에 관한 契約書案 또는 本契約書의 法的 瑕疵有無에 대하여 法規擔當部署長의 法的 審査意見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輸銀의 支援對象인 各種 輸出入,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輸入去來는 모두가 契約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當事者가 합의한 內容을 契約書에 명확히 기재하여 書面化한다는 것은 國內去來, 國際去來를 불문하고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國際去來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특히 크다고 하겠다.

大陸法系를 繼受한 우리 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契約書의 작성은 當事者의 合意 內容의 主要事項만을 기재함으로써 매우 간략한 것이 상례이며 契約書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事項에 관하여 사후에 紛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응 當事者間의 情宜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것이 보통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때 비로소 法院의 判決(契約書의 解釋)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國際去來上의 契約書는 多種多様하며, 異質的인 文化背景을 가진 當事者間에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契約書 內容에 當事者의 의도와 목적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지 않는 한 當事者가 自己本位로 생각하고 또 기대한 대로 契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法院도 契約의 解釋에 있어 補充的, 類推的 또는 擴大的 解釋을 피하는 것이 通例이다. 따라서 契約書야말로 當事者의 權利義務를 확정하는 決定的 手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國際去來契約에 있어서는 契約書에 규정한 것만이 절대적인 것이어서 法院은 거의 契約內容 그대로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신중한 태도로 契約書 作成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國際去來契約書는 대부분이 英文으로 작성되고 英美法系諸國의 法에 따라 契約의 解釋이 행하여지거나 訴訟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英美法 特有의 口頭證據法則(Parole Evidence Rule)이라든가 禁反言(estoppel)의 原則이 적용되는 관계로 契約書의 書面化와 契約內容면에 있어 契約書의 存在形態와 方式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契約書의 作成은 紛爭豫防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當事者는 契約書에 當事者의 權利義務 內容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총망라함으로써 사후에 야기될지도 모르는 紛爭의 素地를 사전에 봉쇄 내지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法的 檢討의 基本方向

國際去來에 대한 法的 妥當性を 검토함에 있어서는 우선 當該 去來가 國內法規, 다시 말하면, 貿易, 外換, 關稅 및 延拂輸出, 海外投資 등과 관련된 諸般 國內法規(輸銀法, 同法 施行令 및 業務方法書 등을 포함)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當該 去來가 去來相對國에 있어서도 法的 環境이 양호하고 또한 適法性を 갖는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相對國의 貿易, 外換 및 關稅 등의 管理制度, 外資導入制限 또는 特典, 對外支給保證制度 등에 관한 法律 또는 慣行 등을 조사,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相對國 辯護士의 法律意見을 청구하게 하는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當該 去來와 관련된 契約書에 대하여 法的 檢討時 확인하여야 할 事項은 契約書의 種別에 따라 多少의 差異가 있으나, 共通的인 事項으로는 ①契約當事者の 意圖가 契約書 內容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②契約書의 有效期間중 발생가능한 問題點이 빠짐없이 망라되어 紛爭豫防에 유용한 契約書로 작성되어 있는지, ③當事者가 의도하는 契約內容은 合法的이고 法的 拘束力을 갖는지, ④契約當事者는 契約締結能力을 갖추고 있는지, ⑤當事者의 一方이 複數인 경우에는 그 複數인 當事者와 債務는 共同(joint)인지 分割可能(several)한 債務인지, 아니면 連帶(joint and several) 債務關係에 있는지, ⑥契約은 讓渡possible한 것인지 아닌지, ⑦債務履行의 時期, 免責的 履行遲滯와 相對方의 義務와의 關係, 또는 履行遲滯의 猶豫期間은 적절한지, ⑧契約期間 更新의 節次는 적절한지, ⑨契約解除事由, 節次, 解除後의 權利關係는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 ⑩契約의 成立, 履行, 解釋등의 準據가 되는 準據法(governing law) 및 紛爭處理節次는 적절한지, ⑪契約의 履行에 관련된 税金, 其他 諸費用의 負擔關係는 명확하며 또한 불리하지 않은지, ⑫契約書 內容은 論理的 一貫性을 유지하고 있는지, ⑬ 契約書중에서 다른 條文을 상호 참조하는 경우 參照關係는 정확하고 타당한지, ⑭사용하고 있는 用語는 統一性을 결여하고 있지 않은지, ⑮文章은 평이하고 또한 表現은 정확한지, ⑯準據法을 英美法으로 하고 있는 경우 契約書가 英美法上의 證據라는 觀點에서 妥當性이 있는지, ⑰契約書의 內容이 法令에 위반하여 無效로 되는 것은 아닌지, 특히 獨占禁止法과 같은 强行法規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檢討가 포함된다.

이와 같이 輸銀이 지원하는 去來와 관련한 法的 檢討業務는 國內外 關聯法規에 대한 調査, 檢討와 契約書의 法的 瑕疵有無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國際去來契約書의 각종 法的 危險을 사전에 발견, 제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貸出業務를 法規的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法的 檢討業務의 擴大 發展

國際去來契約書에 대한 法的 檢討業務를 중심으로 하는 輸銀의 法規業務는 設立 初期 業務部 法規課에서 담당하던 때와 비교하면 業務의 量的, 質的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發展을 이룩해 왔다.

1977년에는 法的 檢討의 對象이 된 契約書가 總 26件에 불과하였으나 1984년과 1985년에는 각각 123件과 103件으로 約 4~5倍 증가하였다. 또 1977년에는 貸出關聯契約書와 資金調達關係契約書가 각각 전체의 46%와 8%를 차지하여 貸出關聯契

約書의 비중이 크게 우세하였으나 1985년에는 海外資金調達의 증가로 貸出關聯契約書와 資金調達關聯契約書의 비중이 각각 전체의 56%와 35%를 점하게 되어 資金調達關聯契約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資金調達關聯契約書는 量的으로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1983년 이후에는 延拂어음賣却契約書나 銀行借款契約書 이외에도 債券發行契約書등으로 다양화되어 왔다. 貸出關聯契約書도 購買者信用制度를 도입함에 따라 1979년에는 轉貸資金貸出契約書, 1980년에는 直接貸出契約書가 法的 檢討 對象契約書로 추가되는 등 점차 質的인 면에서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法的 檢討의 對象이 되는 契約書가 量的으로 급증하고, 質的인 측면에서도 그 種類가 다양화됨에 따라, 法的 檢討業務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法規擔當要員의 資質向上이 매우 중요한 課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法規擔當要員의 資質向上을 기하기 위하여 1978년부터는 美國, 英國 등의 法律業務 專門會社에 法規擔當要員을 研修派遣하여 왔다. 또한 國際去來에 관련된 英, 美, 日 등 先進諸國의 法規資料 및 圖書確保에 주력하는 한편, 國際去來契約에 정통한 當行 顧問辯護士로부터의 法律諮問을 확대 실시하였다. 특히 1985년에는 英美法과 그 判例에 대한 百科辭典格인 總 157卷의 「코퍼스 주어리스 시칸덤」(Corpus Juris Secundum)을 法規圖書로 구입, 비치하였고, 法規擔當 要員이 外國의 大學院에서 法律學碩士 課程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1984년 6월에는 法律業務 가이드를 창간, 國內外 法規에 대한 研究資料와 法律問題에 대한 質疑應答 및 用語解説을 중심으로 1985년말까지는 月 2회, 그리고 1986년부터는 月 1회씩 발간해 왔다.

輸銀法 및 同法 施行令 改正推移

輸銀法은 1969년 7월 28일 法律 第2122號로 제정, 공포된 이후 1974년 12월 26일 第1次 改正이, 그리고 1977년 12월 19일에 第2次 改正이 이루어졌으며 한편, 輸銀法 施行令은 1969년 10월 6일 大統領令 第4099號로 제정, 공포된 이후 1975년 2월 28일 第1次 改正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輸銀法 및 同法 施行令은 개정된지 이미 10년 가까이 경과되어 다양한 國內外 去來需要와 金融의 國際化 時代에 부응하고, 業務를 보다 效率的으로 수행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1986년에 들어 政府當局과의 協議下에 그 改正作業이 추진중에 있다.

輸銀은 1981년과 1985년에도 政府當局에 輸銀法 및 同法 施行令 改正建議案을

〈表 3-5-7〉

國際契約書 法的 檢討 實績

(단위 : 천수)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合 計
船 舶 輸 出	5	5	26	34	41	35	66	66	32	310
폴 렌 트 輸 出	5	6	8	14	4	11	21	18	14	101
海 外 投 資	2	4	6	4	7	2	10	7	4	46
直 接 貸 出				5	3	2	1		1	12
轉貸資金貸出			3	7	5	12		5	8	40
延拂 어 음 賣 却	2					2	9	13	28	54
銀 行 團 借 款		1		4			2	2	3	12
債 券 發 行							1	2	5	8
其 他	12	8	8	10	11	6	4	10	8	77
合 計	26	24	51	78	71	70	114	123	103	660

작성, 제출한 바 있는데 1986년에 들어 추진중인 法 및 同法施行令 改正의 주요내용은 ①法定資本金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고 ②國內外에 子會社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③輸入資金貸出의 支援對象에 主要資源을 추가하고 ④大韓民國 國民이 출자한 外國法人(現地法人)에 輸銀이 직접 대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⑤業務方法書에 규정할 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⑥運營委員會議決事項중 個別去來의 지원여부 관련사항을 下部委任하는 것 등이다.

5. 事務合理化

輸銀은 事務合理化의 一環으로서 業務提案制度 시행을 위하여 1976년 7월 1일 輸銀 設立과 동시에 提案審議委員會를 설치, 운영해 왔으며 1977년 8월 17일 機構改編으로 業務部에서 담당하던 事務改善에 관한 業務가 業務改善室로 이관됨으로써 事務合理化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事務合理化 노력과 함께 業務의 複雜化 및 量的인 擴大에 대비하기 위하여 業務의 電算化 및 事務機械化를 추진케 되었으며 1979년 4월 27일자로 이 업무를 業務改善室이 관장케 되었다.

1980년에는 提案審議委員會를 事務合理化委員會로 개편함과 동시에 業務提案制度와 事務機械化를 포괄하는 事務合理化業務를 추진하게 되었다.

業務改善室과 事務合理化委員會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온 事務合理化 사업은 事

〈表 3-5-8〉

年度別 業務提案 現況

(단위: 건수)

年 度	提 案	委員會 附議	採 擇	備 考
1977	42	16	6	
1978	12	12	2	努力賞 1
1979	15	7	2	" 2
1980	22	17		" 5
1981	33	5	1	" 3
1982	68	9	1	" 2
1983	33	4	1	" 3
1984	30	3	2	
1985	8			
合 計	263	73	15	

務改善, 事務機械化 및 業務電算化 分野로 나누어진다.

事務改善

職員の 창의적인 「아이디어」發掘과 情報資料 및 研究結果를 經營層에 제시함으로써 事務節次에서 파생되는 非合理的인 要素를 제거하고 業務改善에 기여하도록 고안된 業務提案制度는 輸銀 職員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單獨 또는 2人 이상의 共同提案 및 部署單位로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안된 意見은 業務改善室에서 豫備審査를 거쳐 委員會에 부의한다.

業務提案制度는 輸銀 設立과 함께 실시 되었는데 1985년말 현재 總 263件을 접수하여 이중 15件이 채택되어 事務改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事務改善의 일환으로 書式類 管理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1979년 12월부터는 帳票登錄制를 실시하고 帳票登錄臺帳을 발간하였는데 1980~85년중의 帳票制定은 156件, 改正 및 廢止는 각각 270件, 25件에 달하였다.

또한 文書의 作成, 處理, 分類, 保管 등 文書管理에 관한 事項은 設立時부터 規定化하여 文書處理의 能率化와 統一을 기하였으며, 1979년 3월에는 File 管理要領을 제정하여 文書의 체계적인 管理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保存文書의 量이 증중하고 保存文書의 機械化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保存文書를 「마이크로필름」에 수록, 보존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필름」事務取扱節次를 1979년 9월에 제정하여 효율적인 文書保存에 필요한 節次와 基準을 마련하였다.

〈表 3-5-9〉

帳票 制定 및 改廢 現況

(단위: 건수)

年 度	制 定	改 正	廢 止
1980	21	18	
1981	15	3	3
1982	28	181	
1983	33	33	3
1984	42	24	8
1985	17	11	11
合 計	156	270	25

事務機械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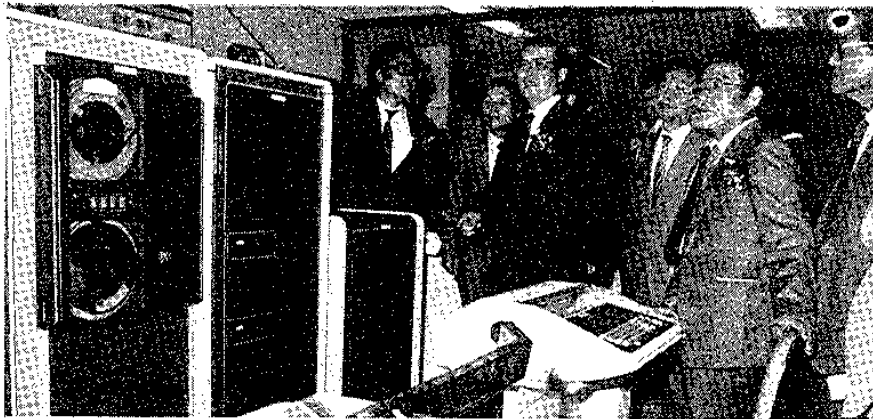
事務處理의 補助手段으로서 事務器機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져 왔는데, 事務機械化는 業務改善室과 事務合理化委員會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業務改善室은 전년도에 各部署로부터 필요한 器機의 購入要請을 접수하여 銀行 전체적인 立場에서 器機의 經濟性, 實用性, 保有 機種과의 統一性, 「아프터 서어비스」, 製品의 國產化 등을 검토하여 事務機械化計劃(案)을 수립, 事務合理化委員會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그 동안의 新種 事務機械 導入內容은 다음과 같다.

打字機에 「컴퓨터」를 접합시킨 형태의 「워드 프로세서」(word processor)는 「컴퓨터」의 記憶能力을 활용하여 수정, 편집, 확대를 가능케 함으로써 事務機器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輸銀은 1983년 12월 한글, 漢字, 英文이 印字되고 5臺의 CRT(cathode ray tube)에서 同時利用이 가능한 「워드 프로세서」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事務能率化를 기하고 있다.

「텔레кс」와 複寫機의 기능을 결합한 「팩시밀리」(facsimile)는 원격지간에 書類複寫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편리한 事務器機이다. 輸銀은 1985년 4월 本店과 釜山出張所에 「팩시밀리」를 設置稼動함으로써 內國信用狀의 買入代錢을 즉시 결제토록 하는 등 時間과 人力의 절약에 큰 실적을 거두었다.

이 밖에 1983년 8월에는 DNS(dacomnet service)를 설치 가동하여 信用調查資料, 각종 經濟統計 등의 검색에 유익하게 사용해 왔으며 1985년 5월부터 國際經濟動向과 國際金融市場의 움직임, 外換變動 狀況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聯合通信이 제공하는 「텔레레이트」(telerate)를 「리스」로 설치, 이용해 왔다.

1985년말 현재 事務機械 보유대수는 16種 194臺로서 이중 端末機를 제외한



「컴퓨터」稼働式
(1984. 10. 24)

EDPS(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와 「텔레레이트」, DNS 기제는 임차 사용하고 있다.

業務電算化

(1) 電子計算組織의 導入

輸銀은 1979년 4월 27일 電算要員 2名을 선발하고 同年 9월에는 人員을 7名으로 보강하여 業務電算化를 시작했다.

1980년 하반기부터는 給與業務를 자체 개발하여 운용했으며 1982년 10월에는 業務電算化 妥當性檢討를 완료하고, 同研究報告書에 기초하여 12월부터 貸出 및 事後管理, 外換, 計理業務의 電算開發을 시작하였다. 1984년 2월에는 同開發業務를 완료하게 되었으며 1984년 10월 24일에는 「컴퓨터」를 도입, 가동하게 되었다.

輸銀이 보유하게 된 「컴퓨터」機種은 美國 Data General 社가 제작한 Eclipse MV/8000II System 으로서 中央處理裝置(CPU)의 主記憶 容量은 4MB(mega-byte)이며, 補助記憶裝置로는 저장용량 354MB 인 「디스크」(disk)를 2臺 보유하고 있고, 資料 「백업」(back-up)用 「테이프 드라이브」(tape drive)를 1臺 보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打字機式 「콘솔」(console) 1臺, 600LPM(line per minute)의 「시스템 프린터」 1臺를 보유하고 있다.

端末機로는 CRT 18臺와 Hard Copy機 6臺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CRT 6臺와 Hard Copy機 1臺는 「프로그램」 개발용으로 電算室에, 나머지는 각 部署에 배치되어 있다.

附帶施設로는 恒溫恒濕器 10RT 2臺가 가동중에 있으며 無停電裝置인 UPS(uninterrupt power supplier)와 CVCF(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

容量: 100 KV)가 설치되어 일정한 전압, 전류를 공급해 주고 있다. 端末機 8 臺를 포함한 電子計算組織은 「리스」方式으로 임차하여 사용중이다.

(2) 「시스템」使用과 「네트워크」構成

電算處理에 있어서는 「배치」(batch) 處理方式이 적합한 業務도 있으나 보통은 「온라인 리얼 타임」(on-line real time) 方式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처리 방식이다. 輸銀은 가능한 한 「온라인」處理 方式을 지향해 왔는데 1985년중 電算業務 處理內容은 다음과 같다. 「배치」處理는 貸出 및 事後管理外 6 種으로서 연간 자료처리 件數는 749件(290千 「스트로크」, 관련「프로그램」數 209本)에 달했다. 한편 「온라인」處理는 計理外 6 種으로서 연간 자료처리 件數는 2,152千件(관련 「프로그램」數 152本)을 기록했으며 이 밖에 연간 機械 稼動時間은 2,752시간, 그리고 연간 機械使用時間은 1,206 시간에 달했다.

「온라인 네트워크」(on-line network)構成은 1984년 10월 4일 「컴퓨터」를 가동하면서 金融部에 CRT 4 臺, Hard Copy 機 2臺를 「온라인」化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어 資金部の 計理業務, 輸出保險2部の 信用調査「화일」관리 및 計理業務, 人事部的 給與業務, 海外投資調査部の 경제지포관리, 庶務部的 經費支出關係 傳票入力 및 文書部的 訪問人事 記錄管理 등을 위한 端末機가 설치됨으로써 1985년말 현재 8個 部署에서 端末機로 「온라인」을 운영중에 있다.

(3) 事務電算化 現況

1979년 4월, 2名의 要員으로 출발한 電算業務는 1985년말 현재 13名으로 증가되었는데 요원을 職能別로 분류하여 보면 전산업무 관리자(課長) 1名, 「시스템」 분석자(責任者) 3名, 「프로그래머」(行員) 7名, 「아이오 체크」(input output checker)(女行員) 2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電算業務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新入職員은 2~3개월간의 교육을 필한 뒤 실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非專門要員에 대한 교육은 30名씩 年1回 정도 外部 講師를 초빙하여 4~5주간씩 실시해왔다.

또한 전산업무를 效率的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1984년 9월에는 電子計算業務 取扱規程을 제정하여 電算要員, 業務電算化 開發, 電算業務의 運營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시행해 오고 있다.

電算化 業務開發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 하반기부터 給

與業務를 개발, 운영하여 오던 중 1982년 12월 貸出 및 事後管理, 外換, 計理業務 개발에 착수하여 1984년 2월 완료하였다. 同月에 機種 선정이 현재의 Eclipse MV/8000 II 로 확정됨에 따라 「프로그램」變換作業을 거쳐 10월의 「컴퓨터」 도입과 함께 정상 가동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배치」 형태로 되어 있던 給與業務도 「온라인」으로 변환시켰으며 1985년에는 전년도 개발업무의 보완 작업과 함께 다시 資金調達 및 運用業務, 主要 經濟指標 管理, 經營情報, 貸出統計 등 신규 개발 업무에 착수하여 361本の 「프로그램」개발을 완료하게 되었다.

6. 其他業務

行舍의 新築

(1) 推進 經緯

1976년 설립과 동시에 輸銀은 大宇「센터 빌딩」내에 600여평을 임차하여 업무를 개시했으나 業務量 및 人員增加에 따라 매년 賃借面積을 확대하게 되었고 그 결과 保證金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國際金融機關으로서 對外 公信力을 제고하고 業務量 및 人員의 증가와 任職員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1981년에 本店 行舍新築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同年 6월 13일 垞地 구입을 위하여 財務部로부터 34억원의 豫算을 승인받게 되었다.

이어 1981년 12월 28일에는 서울特別市로부터 汝矣島洞 16-1 소재 市有地 2,756평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1982년 1월 15일 본격적으로 新築業務를 추진하기 위하여 總務部 소속으로 建築推進班을 구성하였다.

또한 新築業務의 주요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銀行長 諮問機構로서 專務理事를 委員長으로 하는 建築推進委員會를 구성하였으며 각종 설계 및 시공의 전문적인 諮問機構로서 建築界의 著名人事 3인으로 諮問委員會를 구성하였다.

1982년 5월에는 新築行舍의 종합설계를 (株)正林建築에 의뢰하였으며 1982년 8월 20일에는 首都圈問題審議委員會와 美觀審議委員會의 승인을 받았고 1982년 11월 24일에는 서울特別市로부터 建築許可를 받음으로써 設計를 완료하였다.

이어서 1982년 12월 13일 施工者 선정을 위한 入札을 시행한 결과 指名者 13個社중 大林産業이 낙찰되어 契約을 체결하고 1982년 12월 17일 起工式을 거행하였다. 着工후 각종 法的 條件의 충족과 정밀한 施工, 優秀資材 사용, 완벽한 工程管

新築行舎 竣工記念式
(1985. 9. 17)



理 등에 주력하여 消防本部로부터 1985년 8월 22일 消防 竣工을 받았으며, 1985년 8월 31일 永登浦區廳의 本建物 竣工檢査에 합격함으로써 着工후 2년 8개월만에 本店建物이 준공되었으며, 1985년 9월 17일에는 竣工記念式을 거행하게 되었다.

(2) 行舎 概要

新築行舎의 規模와 主要施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 行舎는 垓地面積 2,756평에 延建坪 10,369평으로서 地下 3층 地上 10층 鐵骨 鐵筋콘크리트 建物이며 地下層은 駐車場과 함께 각종 機械室이 배치되어 있고 1,2,3층은 營業場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事務室을 연결, 배치하였으며 기타층에는 電算室, 任員室, 講堂, 福祉施設 順으로 事務空間과 共用部分이 상호 연결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駐車施設은 屋內 133대 屋外 50대, 도합 183대를 주차시킬 수 있고 機械設備로는 보일러 4「톤」2대, 2「톤」1대, 冷凍機 350R/T 2대, 150R/T 1대 등이 설치되었으며 각종 空調方式으로 自動感知 및 遠隔操作施設을 갖추고 있다.

電氣設備는 契約電力 3,500kw로서 停電時에는 즉시 가동될 수 있는 1,220kw 自家發電施設이 완비되었으며 防犯設備로서 CCTV, 超音波施設, 赤外線 外廊監視施設, 盜難防止施設 등이 설치되어 경비본부에서 일괄 감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通信設備는 局線 900回線 構內線 5,000回線이 수용가능하고 交換器는 SL-1「시스템」(「컴퓨터」型 最新 全電子式)으로 설치하여 음성 및 「데이타」를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SL-1 set 65대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文藝振興法에 의한 藝術品設置計劃을 마련하여 金炯堇氏의 '韓國의 幻想'

및 '永遠의 章', 張利錫氏의 '바다의 役軍', 朴泳善氏의 '鄉土' 등의 壁畵를 설치하였고 金燦植, 朴永姬, 崔起源, 鄭官謨 諸氏의 조각 작품을 설치하였다. 또한 地球儀型 萬國時計를 로비에 설치하는 등 美觀을 갖추는데 주력하였다.

(3) 工事 內容

着工후 투입된 주요자재는 「시멘트」 58,000포, 「레미콘」 3,290대분(23,000m³), 철근 1,800「톤」, H-BEAM 1,600「톤」, 화강석 10,000m²(加平石) 등으로서 延人員 45만명 기타 5만여종의 자재가 사용되었다. 특히 施工에 있어서는 國產資材 사용을 우선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리석, 천정 「텍스」 등의 불가피한 자재 이외에는 모두 國產資材를 사용함으로써 기자재의 약 95%를 국산화하였다. 또한 순수 국내기술로서 建物을 完工하였는데 主建物 全體를 大林産業(株)에 설비 전기를 포함, 총괄 도급하였다.

工事金額은 建築工事 117억원을 포함, 231억원이 소요되었다. 新築行舍는 1985년도 서울特別市 建築大賞 '銀賞'을 수상하였다.

金融淨化運動의 擴散

1975년 3월부터 政府가 庶政刷新運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金融機關에서는 自體庶政刷新運動 즉, 金融刷新運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輸銀의 金融刷新業務는 당초 監查室에서 이를 담당해 왔으나 1977년 8월의 機構改編에 따라 業務改善室이 신설되어 同業務를 관장하게 되었다. 한편 1980년 8월에는 社會淨化推進委員會가 결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종전의 庶政刷新運動은 범국민적 社會淨化運動으로 흡수, 발전되었다. 社會淨化運動은 國民精神改革을 통하여 社會全般에 퍼져 있는 不義, 不正, 腐敗와 각종 非理, 弊習을 제거하며 正直, 秩序, 創造를 바탕으로 하는 正義社會의 具現과 民主福祉國家建設을 위한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하는 汎國民精神革命運動, 社會改革運動으로 시작되었다.

輸銀은 1980년 8월 11일 職場淨化委員會를 구성하고 同年 9월 淨化運動推進計劃 및 細部實踐計劃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全任職員이 이 運動에 참여하게 되었다.

輸銀의 金融淨化活動은 民主 福祉國家建設을 위한 任職員의 투철한 國家觀, 使命感, 倫理觀을 확립하고 각종 非理와 病弊 및 不合理的 要素를 제거함으로써 시대적 여망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건전한 金融風土를 조성하는 데 그 目標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淨化活動課題는 직급별 淨化小委員會에서 自體活動課題를 자율적으로 선정, 실천해왔는데 淨化運動이 시작된 1980년 8월 이후 輸銀이 추진해 온 主要淨化課題로는 ①精神姿勢의 확립을 위한 각종 精神教育 실시 ②不條理 事前豫防을 위한 金融不條理 근절대책 수립 및 자체감사 기능 강화 ③金融환경 및 制度改善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④건전한 社會風土造成을 위한 각종 弘報 및 啓導活動 전개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淨化運動이 시작된 1980년 8월 이후의 主要淨化推進實績을 보면,

첫째로 범국민적으로 추진되어 온 請託排擊 및 意識改革運動의 정착을 위해 각종 精神教育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懇談會, 自體討論會, 視聽覺教育 등을 통하여 투철한 使命感과 職場倫理觀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였고 “바른生活”과 “顧客을 위한 親切” 등의 책자를 발간 배부하여 對顧客親切奉仕 姿勢確立에 주력하였다.

둘째로 業務關聯 非理病弊의 근원제거를 위한 金融不條理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職場淨化 推進實態點檢등 각종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不條理 事前除去에 노력하였으며 對顧客輿論調査를 실시하는 등 制度的 裝置 마련에 주력하여 밝고 정의로운 金融風土造成에 노력하였다.

세째로 顧客에 대한 제반 金融「서어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窓口「서어비스」強調期間 設定, 部署長 1일 窓口「서어비스」制 實施, 窓口「서어비스」實態에 대한 年 4回 「모니터링」 實施 및 顧客便宜 위주로의 制度改善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顧客支援體制를 확립하였다.

네째로 自體周邊 淨化活動의 일환으로 不正外來品 추방과 商去來秩序 확립을 위한 「캠페인」, 거리秩序 및 行樂秩序 「캠페인」 등 각종 弘報 및 啓導活動을 적극 전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秩序意識을 체질화하고 生活周邊을 정화하는데 솔선토록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社會風土 조성에도 주력하였다.

1980년 8월 이후 輸銀의 淨化活動은 任職員 精神姿勢確立을 통한 金融人으로서의 使命感 및 倫理觀을 재정립하게 했고 非理, 不條理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 또는 예방하기 위한 金融環境 및 制度改善, 對顧客奉仕姿勢 확립 및 周邊淨化를 통한 건전한 金融風土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 했다.

새마을運動의 持續的 展開

輸銀은 1976년 7월 發足과 더불어 새마을運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

마을運動 推進協議會를 구성하고 이를 계기로 하여 새마을運動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同協議會는 專務理事를 會長으로 하고 관련 部署長 및 理事를 委員으로 하여 새마을運動 推進計劃의 樹立 및 主要事業의 選定 등을 심의 결정했다. 實務部署는 창립초기의 總務部에서 1979년 11월에는 業務改善室로 바뀌었다.

職場 새마을運動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한 모심기 또는 벼베기行事 등을 통한 勞力支援과 環境淨化를 위한 새마을청소와 거리秩序確立「캠페인」등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日日茶室 운영, 職員誠金, 廢休紙賣却代金 등으로 불우이웃돕기운동, 一線將兵 慰問, 孤兒院 訪問을 행하였다.

1977년 이후의 主要새마을事業 推進實績을 보면,

첫째로 새마을精神教育에 중점을 두고 새마을教育機關을 통해 委託教育을 강화해 왔는데, 1976년 이후 韓國金融研修院을 통하여 任員 및 責任者級 職員 總 253名이 새마을教育을 이수했으며 輸銀 任職員 家族에 대한 새마을 精神教育을 통하여 새마을運動의 확산을 도모했는데, 1976년 이후 83名の 任員 및 責任者級 이상 職員 婦人이 이 教育에 참여하였다. 새마을精神教育은 輸銀 職員들에게 自助精神과 協同精神을 고취시키고 職員倫理觀을 확립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로 相扶相助의 美德을 발휘하는 이웃돕기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직원 的 誠金과 廢休紙賣却代金 및 日日茶室 운영 등으로 이웃돕기 基金을 조성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軍部隊를 매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해 왔으며, 年末年始와 仲秋節에는 收容兒童 結緣關係를 맺고 있는 永生愛育院(江西區 佳陽洞 소재)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밖에 永生愛育院에 수용되어 있는 院生 전원과 輸銀職員이 社會福祉施設 收容兒童 結緣關係를 맺고 원생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셋째로 1977년 10월부터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어 온 自然保護運動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自然淨化를 위한 責任淨化區域(우이동)을 정하고 月 2回 同地域에서 汚物, 休紙줍기運動을 실시하는 외에, 야생조류 모이주기, 행락질서계도, 산불예방「캠페인」등을 전개하여 自然保護意識을 고취하고 都市綠化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네째로 姊妹部落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했는데 1977년 11월부터는 京畿道 加平郡 外西面 三會里에 소재한 사기막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同部落을 적극 지원한바 있으며 1983년 12월부터는 忠淸南道 公州郡 正安面 北溪1里와 다시 자매결연을 맺고 본격적인 지원을 행해 왔다.

同部落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韓牛 入殖事業, 有實樹 栽培事業, 獎學

姉妹部落 새마을事業
支援金 傳達式
(1986. 2. 24)



金 支援 및 각종 勞力 支援을 통하여 주민들의 새마을 精神 고취 및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다. 특히 銀行長의 현지 방문을 포함하여 모두 19回 延人員 563名이 자매 마을을 방문하였으며, 마을에서는 13回 연인원 79名이 輸銀을 방문하는 등 주민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왔다. 1984년의 水害時에는 3회에 걸쳐 200名이 姉妹마을을 방문하여 주민과 같이 수해복구에 온 힘을 쏟아 相扶相助精神을 더욱 돈독히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새마을 勞力支援事業을 확대하여 모심기, 벼베기 등 姉妹部落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데 주력하였다.

附 錄

I. 法 規 編

1. 韓國輸出入銀行法
2. 韓國輸出入銀行法의 改正
3. 韓國輸出入銀行法施行令
4. 韓國輸出入銀行法施行令의 改正
5. 韓國輸出入銀行定款
6. 韓國輸出入銀行定款의 改正
7. 韓國輸出入銀行 業務方法書
8. 韓國輸出入銀行 業務方法書의 主要 改正內容
9. 輸出保險法
10. 輸出保險法施行令
11. 輸出保險法施行規則

1. 韓國輸出入銀行法

制定：法律 第2122號 1969년 7월 28일

改正：法律 第2736號 1974년 12월 26일

改正：法律 第3022號 1977년 12월 19일

第1條 (目的) 이 法은 韓國輸出入銀行(以下 “輸出入銀行”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輸出入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에 必要한 金融을 供與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과 對外經濟協力을 促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性格等) ① 輸出入銀行은 法人으로 한다.

② 輸出入銀行은 이 法 및 이 法에 依한 命令과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運營한다.

③ 韓國銀行法과 銀行法의 規定은 輸出入銀行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條 (本店·支店·出張所·代理店) ① 輸出入銀行은 本店을 서울特別市에 둔다.

② 輸出入銀行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必要한 곳에 支店, 出張所 또는 代理店을 둘 수 있다.

第4條 (資本金) 輸出入銀行의 資本金은 5,000億圓으로 하고, 政府, 韓國銀行, 韓國產業銀行, 韓國外換銀行, 銀行法 第3條 第①項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 輸出業者의 團體와 國際金融機構가 出資하되 政府出資의 時期와 方法은 大統領令이 定한다.

第5條 (定款) ① 輸出入銀行은 定款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

1. 目 的
2. 名 稱
3. 本店, 支店, 出張所와 代理店의 所在地
4. 資本金에 關한 事項
5. 任員과 職員에 關한 事項
6. 運營委員會에 關한 事項
- 6의 2. 理事會 運營에 關한 事項
7. 業務와 그 執行에 關한 事項
8. 會計에 關한 事項
9. 公告의 方法
10. 債券發行에 關한 事項
11.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② 輸出入銀行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運營委員會의 決議를 거쳐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 (登記) ① 輸出入銀行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銀行은 本店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 第①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를 必要로 하는 事項은 그 登記後가 아니면 第3者에 對抗하지 못한다.

第7條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이 法에 依한 輸出入銀行이 아닌 者는 韓國輸出入銀行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8條 (任員) 輸出入銀行에 任員으로서 銀行長 1人, 專務理事 1人, 理事 5人以內와 監事 1人을 둔다.

第9條 (任員의 職務) ① 銀行長은 輸出入銀行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한다.

② 專務理事는 銀行長을 補佐하고 銀行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銀行長과 專務理事를 補佐하고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分掌한다.

④ 銀行長과 專務理事가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銀行長이 미리 指定한 順位에 依하여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⑤ 監事는 輸出入銀行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9條의 2 (理事會) ① 輸出入銀行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銀行長·專務理事와 理事로 構成하고, 輸出入銀行의 業務에 關한 重要事項을 議決한다.

③ 理事會는 銀行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 3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 10 條 (運營委員會) ① 輸出入銀行에 運營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이 法과 定款에 規定된 範圍內에서 輸出入銀行의 業務運營·管理에 關한 基本方針을 樹立한다.

③ 委員會는 第 ② 項의 職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規定을 定할 수 있다.

第 10 條의 2 (委員會의 構成) ①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1. 經濟企劃院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1의 2. 外務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2. 財務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3. 商工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4. 韓國銀行總裁가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5. 輸出入銀行長

6. 韓國外換銀行長이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7. 財務部長官이 商工部長官과 協議하여 輸出業者 團體의 代表者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② 第 ① 項 第 7 號의 委員의 任期는 3 年으로 한다.

第 10 條의 3 (議長) ① 委員會의 議長은 輸出入銀行長이 된다.

②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議長이 미리 指定하는 順位の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 10 條의 4 (會議) ① 委員會의 會議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議長이 召集한다.

② 議長은 在籍委員 過半數 또는 監事로부터 要求가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會議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하는 바에 따른다.

第 10 條의 5 (會議參與의 制限) 委員會의

委員은 自己 또는 自己의 親族과 利害關係가 있는 議案에 關한 會議에 參席하지 못한다. 다만 全般的인 運營問題가 審議될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10 條의 6 (委員會의 權限에 關한 特例)

① 輸出入銀行長은 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 非常事態에 있어서 即刻的 行爲가 必要한 境遇에 委員會를 召集할 수 없을 때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委員會의 權限內에서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輸出入銀行長은 第 ① 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內容을 報告하여야 한다.

③ 委員會는 第 ① 項의 措置를 確認, 修正 또는 停止할 수 있다.

第 11 條 (任員의 任免) ① 銀行長은 財務部長官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② 專務理事와 理事는 銀行長의 提請에 依하여 財務部長官이 任免한다.

③ 監事는 財務部長官이 任免한다.

第 12 條 (任員의 任期) ① 銀行長, 專務理事와 理事의 任期는 3 年, 監事의 任期는 2 年으로 하되 重任될 수 있다.

② 任員에 關員이 생긴 때에는 새로 任命되 그 任期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으로 한다.

第 13 條 (任員의 兼職制限) 任員은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境遇를 除外하고는 다른 職業에 從事하지 못한다.

第 14 條 (任員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 ① 銀行長, 專務理事 또는 理事의 利益과 輸出入銀行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關하여는 當該 銀行長, 專務理事 또는 理事는 輸出入銀行을 代表하지 못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輸出入銀行을 代表할 다른 理事가 없을 때에는 監事가 이를 代表한다.

第 15 條 (代理人의 選任) 銀行長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任員 또는 職員中에서 輸出入銀行의 業務에 關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 16 條 (職員의 任免) 輸出入銀行의 職員은 銀行長이 任免한다.

第 17 條 (任員의 責任) 輸出入銀行의 任員은 刑法 其他 法律에 依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 18 條 (業務) ① 輸出入銀行은 第 1 條의 規定에 依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른 金融機關이 一般的인 條件으로는 取扱할 수 없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本財, 其他 外貨獲得을 爲한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顯著히 寄與하는 商品(以下 “製品”이라 한다)의 輸出을 促進하기 爲하여 그 輸出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大韓民國의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對한 貸出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2. 外國에 對한 技術의 提供(海外에서 行하는 建設工事を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促進하기 爲하여 그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3.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의 輸入 또는 技術의 導入을 促進하기 爲하여 그에 必要한 資金의 外國政府(外國政府機關과 外國의 地方公共團體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또는 外國人(外國의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對한 貸出

4.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을 爲하여 必要한 輸出用 原料, 材料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物資(以下 “重要物資”라 한다)의 輸入資金 또는 그 輸入을 圓滑히 하기 爲하여 必要한 輸入代金의 先給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5. 大韓民國國民이 外國에서 營爲하는 事業의 設備(船舶과 車輛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新設 또는 擴充하거나 이를 運營함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6. 大統領令이 定하는 海外投資資金 및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對한 設備의 貸與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7. 大韓民國國民이 出資(株式의 取得을 包含한다)하고자 하는 外國法人에 出資하기 爲하여 必要한 資金의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對한 貸出

8.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을 輸入하거나 技術을 導入한 者가 이로 因하여 發生된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債務를 履行함이 그 居住國의 國際收支上 顯著하게 困難한 境遇에 그 債務의 圓滑한 履行에 必要한 資金의 當該 外國政府 및 外國金融機關에 對한 貸出

9. 第 1 號, 第 2 號, 第 4 號 乃至 第 6 號의 規定에 依하여 資金의 貸出을 받을 수 있는 大韓民國國民이 그 資金을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받을 境遇, 그 債務의 保證

② 輸出入銀行은 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國民經濟上 長期安定的인 確保를 要하는 資源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資源(以下 “主要資源”이라 한다)의 外國에서의 圓滑한 開發과 對外經濟協力增進에 寄與케 함을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主要資源開發事業을 營爲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前準備 調査 및 鑛業權 其他權利의 取得에 必要한 資金, 其他 海外投資支援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2. 海外特定地域의 產業發展에 寄與하며 우리나라와의 經濟交流增進을 促進하기 爲하여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 外國政府 및 外國人에 對한 貸出 또는 當該事業에 必要한 長期資金을 調達하기 爲하여 當該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이 發行하는 債券의 取得

③ 輸出入銀行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第 ① 項 및 第 ② 項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를 행할 수 있다.

第 19 條 (資金의 借入) 輸出入銀行은 그 業務를 行함에 必要한 資金의 財源에 充當하기 爲하여 政府, 韓國銀行, 韓國產業銀行, 韓國外換銀行, 銀行法 第 3 條 第 ① 項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 外國政府, 外國의 金融機關 또는 國際金融機構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第 20 條 (輸出入金融債券) ① 輸出入銀行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輸出入

金融債券을發行할 수 있다.

② 輸出入金融債券은 그 元利金償還에 對하여 政府가 保證할 수 있으며 外國에서 發行하는 境遇에는 韓國外換銀行도 이를 保證할 수 있다.

第 21 條 (業務計劃의 承認申請) ① 輸出入銀行은 事業年度마다 業務計劃을 作成하여 當該年度가 開始되기 1月前에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前項의 業務計劃에 있어서는 第 18 條 第 ① 項 第 1 號 내지 第 9 號 및 第 18 條 第 ② 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供給計劃과 第 4 條, 第 19 條 및 前條의 規定에 依한 資金調達計劃을 區分하여야 한다.

③ 第 ① 項의 業務計劃에는 分期別業務計劃을 添附하여야 한다.

第 22 條 (業務計劃의 承認) 財務部長官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業務計劃을 承認함에 있어서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23 條 (借入金等の 限度額) 輸出入銀行이 第 19 條와 第 20 條의 規定에 依하여 資金을 借入하거나 債券을 發行할 수 있는 限度는 納入資本金과 積立金의 合計額의 10倍로 한다.

第 24 條 (他金融機關과의 競爭禁止) 輸出入銀行은 第 18 條에 規定하는 業務를 行함에 있어서 다른 金融機關과 競爭할 수 없다.

第 25 條 (業務의 制限) ① 輸出入銀行은 第 18 條 第 ① 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는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 支給 또는 履行이 確實하게 認定되는 境遇에 限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銀行은 第 18 條 第 ① 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는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 또는 履行의 期間이 6月以上 10年以下인 것에 限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에 限하여 그 期間을 20년까지 할 수 있다.

③ 第 18 條 第 ② 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의 貸出期間은 20年 以內로 한다.

④ 第 18 條 第 ② 項의 規定에 依한 貸出의 限度는 政府가 出資 또는 貸下한 金額(國民

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金額은 除外한다)과 積立金 및 剩餘金의 合計額으로 한다.

第 26 條 (貸出, 割引의 利率 및 債務保證의 料率) 輸出入銀行은 第 18 條 第 ① 項 및 第 ② 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는 貸出 또는 割引의 利率과 債務保證의 料率을 策定함에 있어서는 輸出入銀行의 事務取扱費, 業務代行手數料, 借入金 利子, 其他 諸費用과 資産의 減價償却에 充當할 수 있도록 策定하여야 한다.

第 27 條 (財産所有의 制限) 輸出入銀行은 營業에 必要하여 取得하거나 債務의 辨濟를 받기 爲하여 引受하거나 其他 業務遂行에 必要한 것 以外에는 動産 또는 不動産을 所有하지 못한다.

第 28 條 (業務의 代行) 輸出入銀行은 그 營爲하는 業務의 一部를 다른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 29 條 (業務方法書) 輸出入銀行은 第 18 條 第 ① 項 第 1 號 乃至 第 9 號 및 第 18 條 第 ② 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貸付,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保證의 方法, 融資比率, 利率, 料率, 期限과 元利金의 回收方法, 業務의 代行要領, 其他 業務方法을 記載한 業務方法書를 作成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 30 條 (他法令과의 關係) 輸出入銀行은 外國換管理法과 貿易去來法の 適用에 있어서는 外國換銀行으로 본다.

第 31 條 (事業年度) 輸出入銀行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依한다.

第 32 條 (豫算) 輸出入銀行은 事業年度마다 收入과 支出豫算을 編成하여 當該 事業年度가 開始되기 1月前에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33 條 (追加更正豫算) 輸出入銀行은 豫算成立後에 생긴 事由로 因하여 豫算의 變更을 加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할 수 있으며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34 條 (豫備費) ① 輸出入銀行은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하여 豫算에 豫備費를 計上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豫備費를 使用하고자 할 때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35 條 (決算) 輸出入銀行은 每事業年度 經過後 2月 以內에 決算書를 作成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附屬書類를 添附하여 財務部長官을 거쳐 大統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 36 條 (利益金の 處理) 輸出入銀行은 事業年度마다 資金의 減價償却에 充當한 後에 決算純利益金を 다음 各號의 順位에 依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1. 資本의 總額에 達할 때까지 利益金の 100分の 20을 積立한다.
2. 政府 以外의 出資者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優先的으로 利益金を 配當한다.
3. 第 1 號의 積立金 및 第 2 號의 配當金を 除한 殘餘利益金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處理한다.

第 37 條 (損失金の 補填) 輸出入銀行의 決算純損失金은 事業年度마다 積立金으로서 補填하고 積立金이 不足할 때에는 政府가 補填한다.

第 38 條 (餘裕金の 運營) 輸出入銀行은 다음 各號의 方法에 依하는 外에는 業務上 餘裕金を 運營하지 못한다.

1. 國債의 保有
2. 韓國銀行에의 預入
3. 其他 財務部長官이 定하는 方法

第 39 條 (監督) 財務部長官은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監督하며 이에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第 40 條 (任員의 解任事由) ① 大統領은 銀行長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財務部長官의 提請에 依하여 이를 解任할 수 있다.

1. 이 法에 依한 命令 또는 定款에 違反한 때
2. 刑事事件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때
3. 破産宣告를 받을 때
4. 心身의 障礙로 因하여 職務遂行이 甚히 困難하게 된 때

② 財務部長官은 輸出入銀行의 專務理事, 理事 또는 監事가 前項 各號의 1에 該當하

는 境遇에는 該當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第 41 條 (報告와 檢査) ① 財務部長官은 必要한 때에는 輸出入銀行에 對하여 報告書의 提出을 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輸出入銀行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 書類, 其他 必要한 事項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財務部長官은 前項의 檢査를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에게 委囑할 수 있다.

③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은 前項의 委囑에 依한 檢査의 結果를 財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 42 條 (罰則) 第 7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 43 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設立委員 等) ① 財務部長官은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輸出入銀行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게 한다.

② 設立委員은 定款을 作成하여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 設立委員은 政府의 出資金의 第 1 回 納入이 完了된 때에는 遲滯없이 第 6 條의 規定에 依한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 設立委員은 前項의 登記를 完了한 때에는 그 事務를 銀行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 3 條 (輸出入銀行이 設立될 때까지의 業務代行) ① 輸出入銀行이 設立될 때까지는 韓國外換銀行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 法에 依한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한다. 이 境遇에는 第 23 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韓國外換銀行이 第 ① 項의 規定에 依하여 代行한 輸出入銀行의 業務와 그 業務로 因하여 發生한 모든 權利, 義務는 輸出入銀行 設立과 同時에 輸出入銀行이 이를 承繼한다.

③ 韓國外換銀行이 第 ① 項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함에 있어서 政府로부터 貸下받은 資金은 輸出入銀行의 設立과 同時에 政府로부터 輸出入銀行에 出資한 것으로 본다. 다만 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資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臨時運營委員會) ① 韓國外換銀行이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하는 期間中 韓國外換銀行에 臨時運營委員會를 둔다.

② 臨時運營委員會는 韓國外換銀行이 代行하는 輸出入銀行의 業務運營에 關한 基本方

針을 樹立한다.

③ 이 法中 輸出入銀行에 두는 委員會에 關한 規定은 臨時運營委員會에 關하여 準用한다. 이 境遇에 第10條의 2 第①項 第5號, 第10條의 3 第①項과 第10條 第①項 및 第②項中 輸出入銀行長은 韓國外換銀行長으로 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韓國輸出入銀行法の 改正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1條 (目的)	1969. 7. 28	이 法은 韓國輸出入銀行(이하 “輸出入銀行”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中・長期信用에 의한 輸出入과 海外投資에 관한 金融을 供與하게 함으로써 貿易을 主로 하는 外國과 經濟交流를 促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1974. 12. 26	이 法은 韓國輸出入銀行(以下 “輸出入銀行”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中長期信用에 依한 輸出入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에 必要한 金融을 供與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과 對外經濟協力を 促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1977. 12. 19	이 法은 韓國輸出入銀行(以下 “輸出入銀行”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輸出入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에 必要한 金融을 供與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과 對外經濟協力を 促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中長期 信用에 依한”이라는 文句 削除
第2條 (性格等)	1969. 7. 28	① 輸出入銀行은 法人으로 한다. ② 輸出入銀行은 이 法 및 이 法에 依한 命令과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運營한다. ③ 韓國銀行法과 銀行法の 規定은 輸出入銀行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條 (本店・支店・出張所・代理店)	1969. 7. 28	(事務所와 代理店) ① 輸出入銀行은 主事務所를 서울特別市에 둔다. ② 輸出入銀行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필요한 곳에 分事務所 또는 代理店을 둘 수 있다.	
	1974. 12. 26	(本店・支店・出張所・代理店) ① 輸出入銀行은 本店을 서울特別市에 둔다. ② 輸出入銀行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必要한 곳에 支店, 出張所 또는 代理店을 둘 수 있다.	主事務所→本店 分事務所→支店, 出張所
第4條 (資本金)	1969. 7. 28	輸出入銀行의 資本金은 300 億圓으로 하고 政府가 全額 出資하되 그 出資의 時期와 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974. 12. 26	輸出入銀行의 資本金은 1,500 億圓으로 하고, 政府,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韓國外換銀行, 銀行法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 輸出業者의 團體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 5 條 (定款)		와 國際金融機構가 出資하되 政府出資의 時期와 方法은 大統領令이 定한다.	
	1977. 12. 19	輸出入銀行의 資本金은 5,000 億원으로 하고, 政府, 韓國銀行, 韓國產業銀行, 韓國外換銀行, 銀行法 第 3 條 第①項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 輸出業者의 團體와 國際金融機構가 出資하되 政府出資의 時期와 方法은 大統領令이 定한다.	1,500 億원 →5,000 億원
	1969. 7. 28	① 輸出入銀行은 定款에 다음 각호의 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 1. 目 的 2. 名 稱 3. 主事務所・分事務所와 代理店の 所在地 4. 資本金에 관한 事項 5. 任員과 職員에 관한 事項 6. 理事會에 관한 事項 7.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事項 8. 會計에 관한 事項 9. 公告의 方法 ② 輸出入銀行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1974. 12. 26	① 輸出入銀行은 定款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 1. 目 的 2. 名 稱 3. 本店, 支店, 出張所와 代理店の 所在地 4. 資本金에 관한 事項 5. 任員과 職員에 관한 事項 6. 運營委員會에 관한 事項 7.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事項 8. 會計에 관한 事項 9. 公告의 方法 10. 債券發行에 관한 事項 11.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② 輸出入銀行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運營委員會의 決議를 거쳐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10. 新設 11. 新設
	1977. 12. 19	① 輸出入銀行은 定款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1. 目 的 2. 名 稱 3. 本店, 支店, 出張所와 代理店の 所在地 4. 資本金에 關한 事項 5. 任員과 職員에 關한 事項 6. 運營委員會에 關한 事項 6의 2. 理事會 運營에 關한 事項 7. 業務와 그 執行에 關한 事項 8. 會計에 關한 事項 9. 公告의 方法 10. 債券發行에 關한 事項 11.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② 輸出入銀行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運營委員會의 決議를 거쳐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6의 2 新設
第 6 條 (登記)	1969. 7. 28	① 輸出入銀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銀行은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 第 ① 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필요로 하는 事項은 그 登記 後가 아니면 第 3 者에 對抗하지 못한다.	
	1974. 12. 26	① 輸出入銀行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銀行은 本店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 第 ① 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를 必要로 하는 事項은 그 登記 後가 아니면 第 3 者에 對抗하지 못한다.	主事務所 → 本店
第 7 條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1969. 7. 28	이 法에 依한 輸出入銀行이 아닌 者는 韓國輸出入銀行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 8 條 (任員)	1969. 7. 28	輸出入銀行에 任員으로서 銀行長 1 人, 專務理事 1 人, 理事 5 人 以內와 監事 1 人을 둔다.	
第 9 條	1969. 7. 28	① 銀行長은 輸出入銀行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任員의 職務)		한다. ② 專務理事는 銀行長을 補佐하고 銀行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銀行長과 專務理事를 補佐하고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分掌한다. ④ 銀行長과 專務理事가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銀行長이 미리 指定한 順位에 依하여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⑤ 監事는 輸出入銀行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 9 條 의 2 (理事會)	1977. 12. 19	① 輸出入銀行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銀行長・專務理事와 理事로 構成하고, 輸出入銀行의 業務에 관한 重要事項을 議決한다. ③ 理事會는 銀行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 3 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第 9 條 의 2 新設
第 10 條 (運營委 員會)	1969. 7. 28	(理事會) ① 輸出入銀行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銀行長, 專務理事와 理事로 構成한다. ③ 理事會는 輸出入銀行의 業務에 관한 重要事項을 決議한다. ④ 理事會는 銀行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⑤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構成員 3 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⑥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1974. 12. 26	(運營委員會) ① 輸出入銀行에 運營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이 法과 定款에 規定된 範圍內에서 輸出入銀行의 業務運營, 管理에 關한 基本方針을 樹立한다. ③ 委員會는 第 ② 項의 職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規定을 定할 수 있다.	
第 10 條 의 2 (委員會 의 構成)	1974. 12. 26	①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1. 經濟企劃院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 人 2. 財務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 人 3. 商工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 人 4. 韓國銀行總裁가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 1 人	第 10 條 의 2 新設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1977. 12. 19	5. 輸出入銀行長 6. 韓國外換銀行長이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7. 財務部長官이 商工部長官과 協議하여 輸出業者 團體의 代表者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② 第①項 第7號의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①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1. 經濟企劃院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1의 2. 外務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2. 財務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3. 商工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4. 韓國銀行總裁가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5. 輸出入銀行長 6. 韓國外換銀行長이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7. 財務部長官이 商工部長官과 協議하여 輸出業者 團體의 代表者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② 第①項 第7號의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1의 2 新設
第10條 의 3 (議長)	1974. 12. 26	① 委員會의 議長은 輸出入銀行長이 된다. ②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議長이 미리 指定하는 順位の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10條의 3 新設
第10條 의 4 (會議)	1974. 12. 26	① 委員會의 會議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議長이 召集한다. ② 議長은 在籍委員 過半數 또는 監事로부터 要求가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會議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하는 바에 따른다.	第10條의 4 新設
第10條 의 5 (會議參與 의 制限)	1974. 12. 26	委員會의 委員은 自己 또는 自己의 親族과 利害關係가 있는 議案에 關한 會議에 參席하지 못한다. 다만 全般的인 運營問題가 審議될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條의 5 新設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 10 條 의 6 (委員會 의 權限 에 關한 特例)	1974. 12. 26	① 輸出入銀行長은 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 非常事態에 있어서 卽刻的 行爲가 必要한 境遇에 委 員會를 召集할 수 없을 때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委員會의 權限內에서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輸出入銀行長은 第 ① 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遲滯 없이 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內容을 報告하여야 한다. ③ 委員會는 第 ① 項의 措置를 確認, 修正 또는 停止 할 수 있다.	第 10 條의 6 新設
第 11 條 (任員의 任免)	1969. 7. 28	(任員의 任命) ① 銀行長은 財務部長官의 提請에 依 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 專務理事와 理事는 銀行長의 추천에 의하여 財務 部長官이 任命한다. ③ 監事는 財務部長官이 任命한다.	
	1974. 12. 26	(任員의 任免) ① 銀行長은 財務部長官의 提請에 依 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② 專務理事와 理事는 銀行長의 提請에 依하여 財務 部長官이 任免한다. ③ 監事는 財務部長官이 任免한다.	
第 12 條 (任員의 任期)	1969. 7. 28	① 銀行長, 專務理事와 理事의 任期는 3 年, 監事の 任期는 2 年으로 하되 重任될 수 있다. ② 任員에 關員이 생긴 때에는 새로 任命하되 그 任期 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으로 한다.	
第 13 條 (任員의 兼職制 限)	1969. 7. 28	任員은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境遇를 除外하고는 다른 職業에 從事하지 못한다.	
第 14 條 (任員의 代表權에 對한 制 限)	1969. 7. 28	① 銀行長, 專務理事 또는 理事의 利益과 輸出入銀行 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關하여는 當該 銀行長, 專 務理事 또는 理事는 輸出入銀行을 代表하지 못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輸出入銀行을 代表할 다른 理事가 없을 때에는 監事が 이를 代表한다.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 15 條 (代理人 의 選任)	1969. 7. 28	銀行長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任員 또는 職員 中에서 輸出入銀行의 業務에 關하여 裁判上 또는 裁 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 16 條 (職員의 任免)	1969. 7. 28	輸出入銀行의 職員은 銀行長이 任免한다.	
第 17 條 (任員의 責任)	1969. 7. 28	輸出入銀行의 任員은 刑法 其他 法律에 依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 18 條 (業務)	1969. 7. 28	輸出入銀行은 第 1 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른 金融機關이 일반적인 條件으로는 取扱할 수 없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資本財 기타 外貨獲得을 위 한 海外輸出入市場의 확보 또는 開拓에 현저히 寄 與하는 商品(이하 “製品”이라 한다)의 輸出을 促進 하기 위하여 그 輸出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國 民(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貸付 또는 이로 인하여 발 행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 2. 外國에 대한 技術의 제공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대한 貸付 또는 이 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 3.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의 輸入 또는 技術의 導入 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資金의 外國政府 (外國政府機關과 外國의 地方公共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外國人(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 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貸付 4. 延拂輸出에 필요한 原料・材料・機材 중 그 輸入 이 投機・買占 기타 不健全한 目的에 이용되지 아 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物資(이하 “重要物資”라 한다)의 輸入 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그 輸入代金の 先給에 필 요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대한 貸付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 5. 大韓民國國民이 外國에서 營爲하는 事業의 設備 (船舶과 車輛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新設 또는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1974. 12. 26	擴充함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대한 貸付 6. 外國人에 대한 出資 또는 그 株式의 取得과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設備의 貸與에 필요한 資金 및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海外投資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대한 貸付 7. 第1號・第2號・第4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의 貸付를 받을 수 있는 大韓民國國民이 그 資金을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 貸付받을 경우 그 債務의 保證 8. 前各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로서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業務 ① 輸出入銀行은 第1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른 金融機關이 一般的인 條件으로는 取扱할 수 없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本財, 其他 外貨獲得을 爲한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顯著히 寄與하는 商品(以下 “製品”이라 한다)의 輸出을 促進하기 爲하여 그 輸出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對한 貸付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2. 外國에 對한 技術의 提供(海外에서 行하는 建設工事を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促進하기 爲하여 그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付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3.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의 輸入 또는 技術의 導入을 促進하기 爲하여 그에 必要한 資金의 外國政府(外國政府機關과 外國의 地方公共團體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또는 外國人(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對한 貸付 4.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을 爲하여 必要한 輸出用 原料, 材料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物資(以下 “重要物資”라 한다)의 輸入資金 또는 그 輸入을 圓滑히 하기 爲하여 必要한 輸入代金의 先給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付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5. 大韓民國國民이 外國에서 營爲하는 事業의 設備(船舶과 車輛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新設 또는 擴充하거나 이를 運營함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付 6. 大統領令이 定하는 海外投資資金 및 外國政府 또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는 外國人에 대한 設備의 貸與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付 7. 大韓民國國民이 出資(株式의 取得을 包含한다)하고자 하는 外國法人에 出資하기 爲하여 必要한 資金의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對한 貸付 8.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을 輸入하거나 技術을 導入한 者가 이로 因하여 發生된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債務를 履行함이 그 居住國의 國際收支上 顯著하게 困難한 境遇에 그 債務의 圓滑한 履行에 必要한 資金의 當該 外國政府 및 外國金融機關에 對한 貸付 9. 第1號, 第2號, 第4號 乃至 第6號의 規定에 依하여 資金의 貸付를 받을 수 있는 大韓民國國民이 그 資金을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 貸付받을 境遇, 그 債務의 保證 10. 第1號 乃至 第9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로서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業務 ② 輸出入銀行은 國民經濟上 長期安定的인 確保를 要하는 資源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資源(以下 “主要資源”이라 한다)의 外國에서의 圓滑한 開發과 對外 經濟協力增進에 寄與케 함을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主要資源開發事業을 營爲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前準備 調査 및 鑛業權 其他權利의 取得에 必要한 資金, 其他 海外投資支援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付 2. 海外特定地域의 産業發展에 寄與하며 우리나라의 經濟交流增進을 促進하기 爲하여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 外國政府 및 外國人에 對한 貸付 또는 當該事業에 必要한 長期資金을 調達하기 爲하여 當該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이 發行하는 債券의 取得 ③ 第②項 各號의 資金의 貸付는 委員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1977. 12. 19 ① 輸出入銀行은 第1條의 規定에 依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른 金融機關이 一般的인 條件으로는 取扱할 수 없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本財, 其他 外貨獲得을 爲한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顯著히 寄與하는 商品(以下 “製品”이라 한다)의 輸出을 促進하기 爲하여 그 輸出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大韓民國의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을 包含	9. 新設 10. 新設 ② 新設 ③ 新設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한다. 以下 같다)에 對한 貸出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2. 外國에 對한 技術의 提供(海外에서 行하는 建設工事を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促進하기 爲하여 그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3.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의 輸入 또는 技術의 導入을 促進하기 爲하여 그에 必要한 資金의 外國政府(外國政府機關과 外國의 地方公共團體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또는 外國人(外國의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對한 貸出. 4.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을 爲하여 必要한 輸出用 原料, 材料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物資(以下 “重要物資”라 한다)의 輸入資金 또는 그 輸入을 圓滑히 하기 爲하여 必要한 輸入代金の 先給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5. 大韓民國國民이 外國에서 營爲하는 事業의 設備(船舶과 車輛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新設 또는 擴充하거나 이를 運營함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6. 大統領令이 定하는 海外投資資金 및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對한 設備의 貸與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7. 大韓民國國民이 出資(株式의 取得을 包含한다)하고자 하는 外國法人에 出資하기 爲하여 必要한 資金의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對한 貸出. 8.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을 輸入하거나 技術을 導入한 者가 이로 因하여 發生된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債務를 履行함이 그 居住國의 國際收支上 顯著하게 困難한 境遇에 그 債務의 圓滑한 履行에 必要한 資金의 當該 外國政府 및 外國金融機關에 對한 貸出. 9. 第1號, 第2號, 第4號 乃至 第6號의 規定에 依하여 資金의 貸出을 받을 수 있는 大韓民國國民이 그 資金을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받을 境遇, 그 債務의 保證. ② 輸出入銀行은 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國民經濟上 長期安定的인 確保를 要하는 資源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資源(以下 “主要資源”이라 한다)의 外國에서의 圓滑한 開發과 對外經濟協力增進에 寄與케 함을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主要資源開發事業을 營爲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前	“委員會의 議決을 얻어”라는 文句插入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準備 調査 및 鑛業權 其他權利의 取得에 必要한 資金, 其他 海外投資支援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2. 海外特定地域의 産業發展에 寄與하며 우리나라와 의 經濟交流增進을 促進하기 爲하여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 外國政府 및 外國人에 對한 貸出 또는 當該 事業에 必要한 長期資金을 調達하기 爲하여 當該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이 發行하는 債券의 取得. ③ 輸出入銀行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第①項 및 第②項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를 行할 수 있다.	
第 19 條 (資金의 借入)	1969. 7. 28	輸出入銀行은 前條各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行함에 필요한 資金의 財源에 充當하기 爲하여 政府로부터 資金을 借入하거나 外國의 金融機關 및 國際金融機關 으로부터 外貨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1974. 12. 26	輸出入銀行은 그 業務를 行함에 必要한 資金의 財源에 充當하기 爲하여 政府,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韓國外換銀行, 銀行法 第3條 第①項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 外國政府, 外國의 金融機關 또는 國際金融 機構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第 20 條 (輸出入金 融債券)	1969. 7. 28	輸出入銀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外國通 貨로 表示된 輸出入金融債券을 外國에서 발행할 수 있다.	
	1974. 12. 26	① 輸出入銀行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輸 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 ② 輸出入金融債券은 그 元利金償還에 對하여 政府가 保證할 수 있으며 外國에서 發行하는 境遇에는 韓國 外換銀行도 이를 保證할 수 있다.	② 新設
第 21 條 (業務計劃 의 承認申 請)	1969. 7. 28	① 輸出入銀行은 事業年度마다 業務計劃을 作成하여 當해 年度가 開始되기 1月前에 財務部長官에게 제출 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前項의 業務計劃에 있어서는 第18條 第1號 내지 第7號의 規定에 의한 資金供給計劃과 第4條·第 19條 및 前條의 規定에 의한 資金調達計劃을 區分 하여야 한다. ③ 第①項의 業務計劃에는 分期別業務計劃을 첨부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하여야 한다.	
	1974. 12. 26	① 輸出入銀行은 事業年度마다 業務計劃을 作成하여 當該年度가 開始되기 1 月前에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前項의 業務計劃에 있어서는 第18條 第①項 第1號 내지 第9號 및 第18條 第②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供給計劃과 第4條, 第19條 및 前條의 規定에 依한 資金調達計劃을 區分하여야 한다. ③ 第①項의 業務計劃에는 分期別業務計劃을 添附하여야 한다.	
第22條 (業務計劃의 承認)	1969. 7. 28	財務部長官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業務計劃을 承認함에 있어서는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諮問과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1974. 12. 26	財務部長官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業務計劃을 承認함에 있어서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諮問과”라는 文句削除
第23條 (借入金 등의 限度額)	1969. 7. 28	輸出入銀行이 第19條와 第20條의 規定에 依하여 資金을 借入하거나 債券을 發行할 수 있는 限度는 納入資本金과 積立金の 合計額의 10 倍로 한다.	
第24條 (他金融機關과의 競爭禁止)	1969. 7. 28	輸出入銀行은 第18條에 規定하는 業務를 行함에 있어서 다른 金融機關과 競爭할 수 없다.	
第25條 (業務의 制限)	1969. 7. 28	①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1號 내지 第7號의 規定에 依하여 행하는 資金의 貸付,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支給 또는 履行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限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①項 내지 第7號의 規定에 依하여 행하는 資金의 貸付,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支給 또는 履行의 期間이 6 月 이상 5 年 이내인 것에 限하여야 한다.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다. 다만, 그 輸出이 5年을 초과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船舶・鐵道車輛 등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에 限하여는 그 期間을 10年까지 延長할 수 있다.	
	1974. 12. 26	①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①項 第1號 乃至 第9號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는 資金의 貸付,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 支給 또는 履行이 確實하게 認定되는 境遇에 限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①項 第1號 乃至 第9號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는 資金의 貸付,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 또는 履行의 期間이 6月 以上 10年 以下인 것에 限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에 限하여 그 期間을 20年까지 할 수 있다. ③ 第18條 第②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의 貸付期間은 20年 以內로 한다. ④ 第18條 第②項의 規定에 依한 貸付의 限度는 政府가 出資 또는 貸下한 金額(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金額은 除外한다)과 積立金 및 剩餘金の 合計額으로 한다.	③ 新設 ④ 新設
	1977. 12. 19	①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①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는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 支給 또는 履行이 確實하게 認定되는 境遇에 限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①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는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 또는 履行의 期間이 6月 以上 10年 以下인 것에 限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에 限하여 그 期間을 20年까지 할 수 있다. ③ 第18條 第②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의 貸出期間은 20年 以內로 한다. ④ 第18條 第②項의 規定에 依한 貸出의 限度는 政府가 出資 또는 貸下한 金額(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金額은 除外한다)과 積立金 및 剩餘金の 合計額으로 한다.	
第26條 (貸出, 割引의 利率 및 債務保證의 料	1969. 7. 28	(貸付・割引의 利率 및 債務保證의 料率)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1號 내지 第7號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는 貸付 또는 割引의 利率과 債務保證의 料率을 策定함에 있어서는 輸出入銀行의 事務取扱費・業務代行手数料・借入金利子 기타 諸費用과 資産의 減價償却에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率)	1974. 12. 26	充當할 수 있도록 策定하여야 한다. (貸付・割引의 利率 및 債務保證의 料率)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①項 第1號 乃至 第9號 및 第18條 第②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는 貸付 또는 割引의 利率과 債務保證의 料率을 策定함에 있어서는 輸出入銀行의 事務取扱費, 業務代行手數料, 借入金 利子, 其他 諸費用과 資産의 減價償却에 充當할 수 있도록 策定하여야 한다.	
	1977. 12. 19	(貸出, 割引의 利率 및 債務保證의 料率)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①項 및 第②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는 貸出 또는 割引의 利率과 債務保證의 料率을 策定함에 있어서는 輸出入銀行의 事務取扱費, 業務代行手數料, 借入金 利子, 其他 諸費用과 資産의 減價償却에 充當할 수 있도록 策定하여야 한다.	
第27條 (財産所有의 制限)	1969. 7. 28	輸出入銀行은 營業에 必要하여 取得하거나 債務의 辨濟를 받기 爲하여 引受하거나 其他 業務遂行에 必要한 것 以外에는 動産 또는 不動産을 所有하지 못한다.	
第28條 (業務의 代行)	1969. 7. 28	輸出入銀行은 그 營爲하는 業務의 一部를 다른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29條 (業務方法書)	1969. 7. 28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1號 내지 第7號의 規定에 의한 資金의 貸付・期限과 元利金の 回收方法, 業務의 代行要領 기타 業務方法을 記載한 業務方法書를 作成하여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974. 12. 26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①項 第1號 乃至 第9號 및 第18條 第②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貸付,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保證의 方法, 融資比率, 利率, 料率, 期限과 元利金の 回收方法, 業務의 代行要領, 其他 業務方法을 記載한 業務方法書를 作成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30條	1969. 7. 28	輸出入銀行은 外國換管理法和 貿易去來法の 適用에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他法令과 의 關係)		있어서는 外國換銀行으로 본다.	
第 31 條 (事業年 度)	1969. 7. 28	輸出入銀行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依한다.	
第 32 條 (豫算)	1969. 7. 28	輸出入銀行은 事業年度마다 收入과 支出豫算을 編成 하여 當該 事業年度가 開始되기 1 月前에 財務部長官 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33 條 (追加更正 豫算)	1969. 7. 28	輸出入銀行은 豫算成立後에 생긴 事由로 因하여 豫算 의 變更을 加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할 수 있으되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34 條 (豫備費)	1969. 7. 28	① 輸出入銀行은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하여 豫算에 豫備費를 計 上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豫備費를 使用하고자 할 때에는 財務部長 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35 條 (決算)	1969. 7. 28	輸出入銀行은 每事業年度 經過後 2 月 以內에 決算書 를 作成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附屬書類를 添附하 여 財務部長官을 거쳐 大統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 36 條 (利益金の 處理)	1969. 7. 28	輸出入銀行은 事業年度마다 資産의 減價償却에 충당 한 후에 決算純利益金を 다음 各號에 의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1. 純利益金の 100 分の 50 은 이를 積立하여야 한다. 2. 前號의 積立을 控除한 殘餘利益金은 政府의 一般 歲入으로 納付한다.	
	1974. 12. 26	輸出入銀行은 事業年度마다 資産의 減價償却에 充當 한 후에 決算純利益金を 다음 各號의 順位에 依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1. 資本의 總額에 達할 때까지 利益金の 100 分の 20 을 積立한다.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2. 政府以外의 出資者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優先적으로 利益金을 配當한다. 3. 第1號의 積立金 및 第2號의 配當金を 除한 殘餘 利益金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處理한다.	3. 新設
第 37 條 (損失金の 補填)	1969. 7. 28	輸出入銀行의 決算純損失金은 事業年度마다 積立金으로서 補填하고 積立金이 不足할 때에는 政府가 補填한다.	
第 38 條 (餘裕金の 運營)	1969. 7. 28	輸出入銀行은 다음 各號의 方法에 依하는 外에는 業務上 餘裕金을 運用하지 못한다. 1. 國債의 保有 2. 韓國銀行에의 預入	
	1974. 12. 26	輸出入銀行은 다음 各號의 方法에 依하는 外에는 業務上 餘裕金을 運營하지 못한다. 1. 國債의 保有 2. 韓國銀行에의 預入 3. 其他 財務部長官이 定하는 方法	3. 新設
第 39 條 (監督)	1969. 7. 28	財務部長官은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監督하며 이에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第 40 條 (任員의 解任事由)	1969. 7. 28	① 大統領은 銀行長이 다음 各號의 1 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財務部長官의 提請에 依하여 解任할 수 있다. 1. 이 法에 依한 命令 또는 定款에 違反한 때 2. 刑事事件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때 3. 破産宣告를 받은 때 4. 心身의 障礙로 因하여 職務遂行이 甚히 困難하게 된 때 ② 財務部長官은 輸出入銀行의 專務理事, 理事 또는 監事가 前項 各號의 1 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該當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第 41 條 (報告와 檢査)	1969. 7. 28	① 財務部長官은 必要한 때에는 輸出入銀行에 對하여 報告書의 提出을 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輸出入銀行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 書類, 其他 必要한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事項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財務部長官은 前項의 檢査를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長에게 委囑할 수 있다. ③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은 前項의 委囑에 依한 檢 査의 結果를 財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 42 條 (罰則)	1969. 7. 28	第 7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 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 43 條 (施行令)	1969. 7. 28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 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1969. 7. 28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設立委員 等)	1969. 7. 28	① 財務部長官은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輸出入銀行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게 한다. ② 設立委員은 定款을 作成하여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 設立委員은 政府의 出資金의 第 1 回 納入이 完了 된 때에는 遲滯없이 第 6 條의 規定에 依한 登記를 하 여야 한다. ④ 設立委員은 前項의 登記를 完了한 때에는 그 事務 를 銀行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 3 條 (輸出入銀 行이 設立 될 때까지 의 業務 代行)	1969. 7. 28	① 輸出入銀行이 設立될 때 까지는 韓國外換銀行이 政府로부터 財政資金을 貸下받아 이 法에 依한 輸出 入銀行의 業務를 行한다. 이 경우에는 韓國外換銀行 法에 依한 業務와는 區分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韓國外換銀行이 貸下받은 財政資金은 輸出入銀行이 設立된 때에는 지체없이 輸 出入銀行에 移管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移管된 財政資金은 移管된 날에 政府로부터 輸出入銀行에 出資한 것으로 본다.	
	1974. 12. 26	① 輸出入銀行이 設立될 때까지는 韓國外換銀行이 <u>大</u>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 法에 依한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한다. 이 境遇에는 第23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韓國外換銀行이 第①項의 規定에 依하여 代行한 輸出入銀行의 業務와 그 業務로 因하여 發生한 모든 權利, 義務는 輸出入銀行設立과 同時에 輸出入銀行이 이를 承繼한다. ③ 韓國外換銀行이 第①項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함에 있어서 政府로부터 貸下받은 資金은 輸出入銀行의 設立과 同時에 政府로부터 輸出入銀行에 出資한 것으로 본다. 다만 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資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附 則	新設
第1條 (施行日)	1974. 12. 26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臨時運營委員會)	1974. 12. 26	① 韓國外換銀行이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하는 期間中 韓國外換銀行에 臨時運營委員會를 둔다. ② 臨時運營委員會는 韓國外換銀行이 代行하는 輸出入銀行의 業務運營에 關한 基本方針을 樹立한다. ③ 이 法中 輸出入銀行에 두는 委員會에 關한 規定은 臨時運營委員會에 關하여 準用한다. 이 境遇에 第10條의 2 第①項 第5號, 第10條의 3 第①項과 第10條 第①項 및 第②項中 輸出入銀行長은 韓國外換銀行長으로 한다.	
		附 則	新設
	1977. 12. 19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3. 韓國輸出入銀行法施行令

制定：大統領令 第4099號 1969년 10월 6일
改正：大統領令 第7561號 1975년 2월 28일

第1章 出 資

第1條 (出資) 韓國輸出入銀行法(以下“法”이라 한다) 第4條의 規定에 依한 出資中 政府出資는 年次的으로 分割하여 現金으로 納入한다. 다만, 必要에 따라 그 一部를 現物로 納入할 수 있다.

第2章 登 記

第2條 (設立登記) ① 法 附則 第2條의 規定에 依한 設立委員(以下“設立委員”이라 한다)은 出資金의 第1回 納入이 完了된 날로부터 2週日以內에 本店 所在地에서 設立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登記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 的
2. 名 稱
3. 本 店
4. 資本金
5. 納入資本金의 總額
6. 出資方法
7. 任員의 姓名과 住所
8. 公告의 方法

第3條 (新設登記) ① 韓國輸出入銀行(以下“輸出入銀行”이라 한다)이 支店 또는 出張所를 設置한 境遇에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各各 該當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本店 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日內에 支店 또는 出張所를 設置한 時.
2. 當該 支店 또는 出張所에 있어서는 3週日內에 前條 第②項 各號의 事項.
3. 新設 支店 또는 出張所 以外의 支店 또는 出張所에 있어서는 前號의 期間內에 그 支店 또는 出張所를 設置한 時.

② 本店, 支店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 새로 支店

또는 出張所를 設置한 境遇에는 2週日內에 그 支店 또는 出張所를 設置한 時을 登記하면 된다.

第4條 (移轉登記) ① 輸出入銀行이 本店을 移轉한 境遇에는 2週日內에 移轉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銀行이 支店 또는 出張所를 移轉한 境遇에는 舊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日內에 移轉의 登記를 하고 新所在地에 있어서는 4週日內에 第2條 第②項 各號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③ 同一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서 支店 또는 出張所를 移轉한 境遇에는 2週日內에 그 移轉의 登記를 하면 된다.

第5條 (變更登記) 第2條 第②項 各號의 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는 本店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日內에, 支店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日內에 變更된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第6條 (代理人選任登記) ① 輸出入銀行長이 法 第15條의 規定에 依하여 代理人을 選任한 境遇에는 2週日內에 代理人을 둔 本店, 支店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登記한 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도 또한 같다.

1.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
2. 代理人을 둔 本店, 支店 또는 出張所
3. 代理人의 權限을 制限한 境遇에는 그 制限의 內容

第7條 (輸出入金融債券의 登記) ① 第23條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金融債券의 引受價額의 全額이 納入된 때에는 本店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日內에, 支店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日內에 輸出入金融債券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第26條의 規定에 依하여 發行된 때에는 그 輸出入金融債券의 賣出期間이 滿了한 날로부터 登記期間을 計算한다.

② 前項의 登記에는 第20條 第②項 第2

號乃至第6號의事項을記載하여야 한다. 다만, 第26條의規定에依하여發行된境遇에는 그賣出期間內의輸出入金融債券의賣出總額과 第20條 第②項 第3號乃至第6號의事項을記載하여야 한다.

③ 第5條의規定은 第①項의登記에關하여 이를準用한다.

第8條 (登記期間의起算) 前6條의規定에依하여登記하여야 할事項中 財務部長官의認可 또는承認을얻어야 할事項이 있을 때에는 當該認可書 또는承認書가到達한 날로부터登記期間을起算한다.

第9條 (登記所) ① 輸出入銀行의登記는本店, 支店 또는出張所의所在地를管轄하는地方法院, 그支院 또는登記所를當該登記의管轄登記所로 한다.

② 登記所에는輸出入銀行登記簿를備置한다.

第10條 (登記의申請人, 申請書添附書類)

第2條의規定에依한設立登記는設立委員이共同으로하는申請에依하고 第3條乃至第7條의規定에依한登記는輸出入銀行長의申請에依하여야 하며, 그申請書에는 다음各號의書類를添附하여야 한다.

1. 第2條의設立의登記에있어서는定款, 定款認可書의謄本, 財務部長官이出資金의第1回納入이完了된것을證明하는書面과輸出入銀行長이法第11條 第①項의規定에依하여任命된것을證明하는書面

2. 第3條의規定에依한支店 또는出張所의設置의登記에있어서는그設置를證明하는書面

3. 第4條의規定에依한本店, 支店 또는出張所의移轉의登記에있어서는그移轉을證明하는書面

4. 第5條의規定에依한變更事項의登記에있어서는그變更을證明하는書面

5. 第6條의規定에依한代理人選任의登記에있어서는그選任이法第15條의規定에依한것을證明하는書面과그權限을制限한境遇에는이를證明하는書面

6. 第7條의規定에依한輸出入金融債券의登記에있어서는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 其他輸出入金融債券의引受를證明

하는書面과各輸出入金融債券에對한納入을證明하는書面. 다만, 第26條의規定에依하여發行된境遇에는그賣出期間內의輸出入金融債券의賣出總額을證明하는書面으로 한다.

第11條 (登記에關한準用規定) 輸出入銀行의登記에關하여는이속에特別한規定이있는것을除外하고는非訟事件節次法 第192條乃至第213條의規定을準用한다. 이境遇에同法 第200條 第②項 第1號, 第204條 및 第208條에서支店이라함은支店 또는出張所로 한다.

第12條 (設立登記의公告) 輸出入銀行은第2條의規定에依하여設立의登記를完了한 때에는遲滯없이그뜻을公告하여야 한다.

第3章 業 務

第13條 (製品) 法 第18條 第①項 第1號의適用을받는製品은다음各號와 같다.

1. 産業施設(船舶 및車輛을包含한다)과 이를爲한原料, 豫備品, 部分品 및附屬品

2. 外貨獲得을爲한海外輸出入市場의確保 또는開拓에顯著히寄與하는商品으로서外貨稼得率이 높은品目과一般輸出去來秩序에影響을미치지 아니하는品目. 다만, 運營委員會(以下“委員會”라 한다)의議決을거친品目으로서財務部長官이指定하는것에限한다.

第14條 (重要物資) 法 第18條 第①項 第4號의適用을받는重要物資는다음各號와 같다.

1. 鐵鑛, 古鐵

2. 銅鑛, 電氣銅, 銅屑

3. 亞鉛鑛, 亞鉛塊

4. 鉛鑛, 鉛塊

5. 아루미나, 알미늄塊

6. 原木, 木材펠프

7. 생고무

8. 其他委員會의議決을거친品目으로서國務會議의審議를거쳐大統領의承認을얻어財務部長官이指定하는것.

第15條 (海外投資) ① 法 第18條 第①

項 第6號의 適用을 받는 海外投資資金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大韓民國 國民이 外國法人에 出資(株式의 取得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하기 爲하여 必要한 資金
2.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하고자 하는 外國法人에 外國人이 出資하기 爲하여 必要한 資金을 貸付하기 爲한 資金
3.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한 外國法人이 外國에서 行하는 事業에 必要한 長期資金을 貸付하기 爲한 資金

② 第①項의 海外投資資金은 그 投資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것이어야 한다.

1.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重要物資 또는 第15條의 2의 規定에 依한 主要資源의 確保에 寄與한다고 認定되는 것.
2. 外國과의 經濟協力 增進에 寄與한다고 認定되는 것.
3. 海外僑民의 經濟的 地位의 向上에 寄與한다고 認定되는 것.
4. 其他 海外輸出入市場 確保 또는 外貨 獲得에 크게 寄與하는 것으로서 委員會의 議決을 거친 것.

第15條의 2 (主要資源) 法 第18條 第②項의 適用을 받는 主要資源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石炭, 鐵鑛石, 銅鑛石, 原油 等 鑛產資源
2. 原木等 林產資源
3. 糧穀, 原綿, 原糖, 生 고무 等 農業資源
4. 其他 國民經濟上 長期安定的인 確保를 要하는 資源. 다만, 委員會의 議決을 거친 資源으로서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財務部長官이 指定하는 것에 限한다.

第16條 (償還期間等의 特例) 法 第25條 第②項 但書의 適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國際去來의 實態에 비추어 그 償還 또는 履行에 特히 長期間이 必要하다고 委員會가 認定하는 것에 限한다.

第17條 (決算) 法 第35條의 規定에 依하여 報告하는 決算書(損益計算書, 貸借對照表 및 剩餘金處理計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1. 事業計劃實績分析報告書

2. 財務諸表附屬書類

3. 其他 決算의 內容을 明白하게 함에 必要한 書類

第17條의 2 (利益金의 配當) 財務部長官이 法 第36條 第2號의 規定에 依하여 政府以外의 出資者에 對한 配當을 承認함에 있어서 그 優先的인 配當率은 100分의 15를 超過하지 못한다.

第4章 輸出入金融債券

第18條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承認) 輸出入銀行은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하고자 할 때에는 每回 그 發行의 金額, 方法 및 條件과 償還의 方法을 定하여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9條 (輸出入金融債券의 形式) 輸出入金融債券은 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應募者 또는 所有者의 請求에 依하여 無記名式을 記名式으로, 記名式을 無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第20條 (輸出入金融債券의 應募) ① 輸出入金融債券의 募集에 應하고자 하는 者는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 2通에 그 引受하고자 하는 輸出入金融債券의 券種別數와 住所를 記載하고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는 輸出入銀行長이 作成하고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輸出入銀行의 名稱
2.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 總額
3. 輸出入金融債券의 券種別 額面 金額
4. 輸出入金融債券의 利率
5. 元金償還의 方法 및 時期
6. 利子支給의 方法 및 時期
7.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價額 또는 最低價額
8. 輸出入銀行의 資本金과 積立金의 合計額
9. 輸出入金融債券의 未償還分이 있는 境遇에는 그 總額

③ 輸出入金融債券의 最低價額을 定하여 發行하는 境遇에는 應募者는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에 應募價額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21條 (輸出入金融債券의 總額引受) 前條의 規定은 契約에 依하여 輸出入金融債券

의 發行 總額을 引受하는 境遇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 22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總額)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에는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에 있어서 應募된 總額이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에 記載한 輸出入金融債券 發行總額에 未達할 때에도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한다는 表示를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그 應募總額으로서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總額으로 한다.

第 23 條 (輸出入金融債券 引受價額의 納入) 輸出入銀行은 輸出入金融債券의 應募가 完了된 때에는 遲滯없이 各 輸出入金融債券의 引受價額의 全額을 納入시켜야 한다.

第 24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時期) 輸出入金融債券은 그 引受價額의 全額이 納入된 後가 아니면 이를 發行하지 못한다. 다만 第 26 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 25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記載事項) 輸出入金融債券에는 債券의 番號, 發行年月日과 第 20 條 第 ② 項 第 1 號 乃至 第 6 號의 事項을 記載하고 輸出入銀行長이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第 26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賣出發行) ① 輸出入銀行은 輸出入金融債券을 그 賣出期間을 미리 定하여 賣出의 方法에 依하여 發行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第 20 條의 規定에 依한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는 이를 作成하지 아니한다.

③ 輸出入銀行이 第 ① 項의 規定에 依하여 發行하는 輸出入金融債券에는 第 20 條 第 ② 項 第 2 號의 事項은 이를 記載하지 아니한다.

④ 輸出入銀行은 第 ① 項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하고자 할 때에는 賣出期間과 第 20 條 第 ② 項 第 1 號 乃至 第 7 號의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 27 條 (輸出入金融債券原簿의 備置) ① 輸出入銀行은 本店에 輸出入金融債券原簿을 備置하고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輸出入金融債券의 數와 番號

2.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年月日

3. 第 20 條 第 ② 項 第 2 號 乃至 第 6 號

의 事項

② 輸出入金融債券이 記名式인 境遇에는 前項 各號의 事項 以外에 다음 各號의 事項도 記載하여야 한다.

1. 輸出入金融債券의 所有者의 姓名과 住所

2. 輸出入金融債券의 取得年月日

③ 輸出入金融債券의 權利者는 輸出入銀行의 營業時間內에 언제든지 輸出入金融債券原簿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第 28 條 (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 ① 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의 移轉은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輸出入金融債券原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輸出入銀行 其他 第 3 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 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을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境遇에는 質權者의 姓名과 住所를 輸出入金融債券原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輸出入銀行 其他 第 3 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③ 輸出入銀行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質權이 設定된 境遇에는 輸出入金融債券에 그 뜻을 表示하여야 한다.

第 29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買入消却) 輸出入銀行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輸出入金融債券을 買入하여 消却할 수 있다.

第 30 條 (利券欠缺의 境遇) ① 無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을 償還하는 境遇에 欠缺된 利券이 있을 때에는 이에 相當하는 金額을 그 償還額에서 控除한다.

② 前項의 利券의 所持人은 언제든지 그 利券과 償還으로 控除된 金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第 31 條 (輸出入金融債券 應募者에 對한 通知等) ①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하기 前의 그 應募者 또는 權利者에 對한 通知 또는 催告는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에 記載된 住所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住所를 輸出入銀行에 通知한 境遇에는 그 住所로 하여야 한다.

② 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의 所有者에 對한 通知 또는 催告는 輸出入金融債券 原簿에 記載된 住所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住所를 輸出入銀行에 通知한 境遇에는 그 住所로 하여야 한다.

③ 無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의 所有者에 對

한 通知 또는 催告는 公告의 方法에 依한다. 다만, 그 住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이에 依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5章 補 則

第32條 (設立委員) ① 設立委員은 다음各號에 揭記하는 者로 한다.

1. 財務部次官
2. 韓國銀行副總裁
3. 財務部財政次官補
4. 商工部商易次官補
5. 財務部理財局長
6. 財務部外換局長
7. 韓國外換銀行專務理事
8. 前各號外에 財務部長官이 委嘱하는 2人

② 設立委員은 韓國輸出入銀行設立委員會(以下“設立委員會”라 한다)를 構成하여 輸出入銀行設立事務의 處理에 關한 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③ 設立委員會에 委員長, 副委員長 各 1人을 두되, 委員長은 財務部次官인 委員이 되고, 副委員長은 韓國銀行副總裁인 委員이 된다.

④ 設立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⑤ 設立委員會의 會議는 設立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서 開議하고 出席委員 3分の 2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⑥ 設立委員會는 法 附則 第2條 第④項의 規定에 依한 事務引繼後 韓國輸出入銀行 設立에 關한 綜合經過報告書를 作成하여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⑦ 設立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設立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이를 定한다.

第33條 (業務의 移管) ① 韓國外換銀行은 法 附則 第3條의 規定에 依한 業務를 輸出入銀行의 業務開始日에 移管하되 財務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一部에 限하여 移管의 時期를 따로 定할 수 있다.

② 韓國外換銀行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移管되는 業務에 關聯된 資産과 負債를 輸出入銀行에 引繼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銀行이 承

繼하는 資産과 負債의 價額은 韓國外換銀行 帳簿價額에 依한다. 다만 外換에 關聯된 資産과 負債의 價額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決定한 評價額으로 한다.

④ 輸出入銀行은 前各項의 規定에 依한 引受引繼를 마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⑤ 第②項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銀行이 承繼한 權利中 權利者의 名義를 變更할 必要가 있는 것에 對하여는 遲滯없이 그 名義를 輸出入銀行으로 變更하는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⑥ 前項의 規定에 依한 名義變更에 所要되는 費用은 輸出入銀行이 이를 負擔한다.

第34條 (業務開始日) 輸出入銀行의 業務開始日은 設立登記를 한 날로부터 30日を 넘기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財務部長官이 定하는 날로 한다.

第35條 (設立費用) ① 輸出入銀行 設立에 關한 諸費用은 設立委員會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韓國外換銀行으로부터 借入하여 使用한다.

② 前項의 費用은 輸出入銀行이 이를 負擔한다.

附 則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代行業務의 區分處理) 韓國外換銀行이 法 附則 第3條 第①項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銀行業務를 代行하는 境遇에는 그 業務 및 會計處理에 있어서 韓國外換銀行法에 依한 業務 및 會計와는 區分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③ (業務代行으로 因한 利益金의 積立) 韓國外換銀行은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함으로써 發生하는 各 事業年度의 利益金을 財務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輸出入銀行의 計算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4. 韓國輸出入銀行法施行令의 改正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1條 (出資)	1969. 10. 6	第1章 出 資 韓國輸出入銀行法(以下“法”이라 한다) 第4條의 規定에 依한 出資는 年次的으로 分割하여 現金으로 納入한다. 다만, 必要에 따라 그 一部를 現物로 納入할 수 있다.	
	1975. 2. 28	韓國輸出入銀行法(以下“法”이라 한다) 第4條의 規定에 依한 <u>出資中 政府出資</u>는 年次的으로 分割하여 現金으로 納入한다. 다만, 必要에 따라 그 一部를 現物로 納入할 수 있다.	
第2條 (設立登記)	1969. 10. 6	第2章 登 記 ① 法 附則 第2條의 規定에 依한 設立委員(以下“設立委員”이라 한다)은 出資金의 第1回 納入이 完了된 날로 부터 2週日 以內에 主事務所 所在地에서 設立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登記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 的 2. 名 稱 3. 主事務所 4. 資本金 5. 納入資本金의 總額 6. 出資方法 7. 任員의 姓名과 住所 8. 公告의 方法	
	1975. 2. 28	① 法 附則 第2條의 規定에 依한 設立委員(以下“設立委員”이라 한다)은 出資金의 第1回 納入이 完了된 날로 부터 2週日以內에 <u>本店</u> 所在地에서 設立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登記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 的 2. 名 稱 3. <u>本 店</u>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 3 條 (新設登 記)	1969. 10. 6	4. 資本金 5. 納入資本金의 總額 6. 出資方法 7. 任員의 姓名과 住所 8. 公告의 方法 ① 韓國輸出入銀行(以下“輸出入銀行”이라 한다)이 分事務所를 設置한 境遇에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 라 各各 該當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主事務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日內에 分事務 所를 設置한 뜻 2. 當該 分事務所에 있어서는 3週日內에 前條 第② 項 各號의 事項 3. 新設 分事務所 以外의 分事務所에 있어서는 前號 의 期間內에 그 分事務所를 設置한 뜻 ② 主事務所 또는 分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登 記所의 管轄區域內에 새로 分事務所를 設置한 境遇에 는 2週日內에 그 分事務所를 設置한 뜻을 登記하면 된 다.	
	1975. 2. 28	① 韓國輸出入銀行(以下“輸出入銀行”이라 한다)이 <u>支店 또는出張所</u>를 設置한 境遇에는 다음 各號의 區 分에 따라 各各 該當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u>本店</u> 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日內에 <u>支店 또는 出 張所</u>를 設置한 뜻 2. 當該 <u>支店 또는出張所</u>에 있어서는 3週日內에 前 條 第②項 各號의 事項 3. 新設 <u>支店 또는出張所</u> 以外의 <u>支店 또는出張所</u> 에 있어서는 前號의 期間內에 그 <u>支店 또는出張所</u> 를 設置한 뜻 ② <u>本店, 支店 또는出張所</u>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登記 所의 管轄區域內에 새로 <u>支店 또는出張所</u>를 設置한 境遇에는 2週日內에 그 <u>支店 또는出張所</u>를 設置한 뜻 을 登記하면 된다.	
第 4 條 (移轉登 記)	1969. 10. 6	① 輸出入銀行이 主事務所를 移轉한 境遇에는 2週日 內에 移轉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銀行이 分事務所를 移轉한 境遇에는 舊所在 地에 있어서는 3週日內에 移轉의 登記를 하고 新所在 地에 있어서는 4週日內에 第2條 第②項 各號의 事 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③ 同一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서 分事務所를 移轉한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境遇에는 2週日內에 그 移轉의 登記를 하면 된다.	
	1975. 2. 28	① 輸出入銀行이 <u>本店</u> 을 移轉한 境遇에는 2週日內에 移轉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銀行이 <u>支店 또는出張所</u> 를 移轉한 境遇에는 舊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日內에 移轉의 登記를 하고 新所在地에 있어서는 4週日內에 第2條 第②項 各號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③ 同一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서 <u>支店 또는出張所</u> 를 移轉한 境遇에는 2週日內에 그 移轉의 登記를 하면 된다.	
第5條 (變更登記)	1969. 10. 6	第2條 第②項 各號의 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日內에, 分事務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日內에 各各 變更된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975. 2. 28	第2條 第②項 各號의 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는 <u>本店</u> 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日內에, <u>支店 또는出張所</u> 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日內에 各各 變更된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第6條 (代理人選任登記)	1969. 10. 6	① 輸出入銀行長이 法 第15條의 規定에 依하여 代理人을 選任한 境遇에는 2週日內에 代理人을 둔 主事務所 또는 分事務所의 所在地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登記한 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도 또한 같다. 1.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 2. 代理人을 둔 主事務所 또는 分事務所 3. 代理人의 權限을 制限한 境遇에는 그 制限의 內容	
	1975. 2. 28	① 輸出入銀行長이 法 第15條의 規定에 依하여 代理人을 選任한 境遇에는 2週日內에 代理人을 둔 <u>本店, 支店 또는出張所</u> 의 所在地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登記한 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도 또한 같다. 1.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 2. 代理人을 둔 <u>本店, 支店 또는出張所</u> 3. 代理人의 權限을 制限한 境遇에는 그 制限의 內容	
第7條	1969. 10. 6	① 第23條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金融債券의 引受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輸出入金融債券의 登記)		價額의 全額이 納入된 때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日內에, 分事務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日內에 輸出入金融債券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第26條의 規定에 依하여 發行된 때에는 그 輸出入金融債券의 賣出期間이 滿了한 날로 부터 登記期間을 計算한다. ② 前項의 登記에는 第20條 第②項 第2號 乃至 第6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다만, 第26條의 規定에 依하여 發行된 境遇에는 그 賣出期間內의 輸出入金融債券의 賣出總額과 第20條 第②項 第3號 乃至 第6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③ 第5條의 規定은 第①項의 登記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1975. 2. 28	① 第23條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金融債券의 引受價額의 全額이 納入된 때에는 本店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日內에, 支店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日內에 輸出入金融債券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第26條의 規定에 依하여 發行된 때에는 그 輸出入金融債券의 賣出期間이 滿了한 날로 부터 登記期間을 計算한다. ② 前項의 登記에는 第20條 第②項 第2號 乃至 第6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다만, 第26條의 規定에 依하여 發行된 境遇에는 그 賣出期間內의 輸出入金融債券의 賣出總額과 第20條 第②項 第3號 乃至 第6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③ 第5條의 規定은 第①項의 登記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8條 (登記期間의 起算)	1969. 10. 6	前6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하여야 할 事項中 財務部長官의 認可 또는 承認을 얻어야 할 事項이 있을 때에는 當該 認可書 또는 承認書가 到達한 날로 부터 登記期間을 起算한다.	
第9條 (登記所)	1969. 10. 6	① 輸出入銀行의 登記는 그 主事務所 또는 分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그 支院 또는 登記所를 當該 登記의 管轄登記所로 한다. ② 登記所에는 韓國輸出入銀行 登記簿를 備置한다.	
	1975. 2. 28	① 輸出入銀行의 登記는 本店, 支店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그 支院 또는 登記所를 當該 登記의 管轄登記所로 한다.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 10 條 (登記의 申請人, 申請書添 附書類)	1969. 10. 6	② 登記所에는 韓國輸出入銀行 登記簿를 備置한다. 第 2 條의 規定에 依한 設立登記는 設立委員이 共同으로 하는 申請에 依하고 第 3 條 乃至 第 7 條의 規定에 依한 登記는 輸出入銀行長의 申請에 依하여야 하며, 그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1. 第 2 條의 設立에 있어서는 定款, 定款 認可書의 謄本, 財務部長官이 出資金의 第 1 回 納入이 完了된 것을 證明하는 書面과 輸出入銀行長이 法 第 11 條 第 ① 項의 規定에 依하여 任命된 것을 證明하는 書面 2. 第 3 條의 規定에 依한 分事務所의 設置의 登記에 있어서는 그 設置를 證明하는 書面 3. 第 4 條의 規定에 依한 主事務所 또는 分事務所の 移轉의 登記에 있어서는 그 移轉을 證明하는 書面 4. 第 5 條의 規定에 依한 代理人 選任의 登記에 있어서는 그 選任이 法 第 15 條의 規定에 依한 것을 證明하는 書面과 그 權限을 制限한 境遇에는 이를 證明하는 書面 6. 第 7 條의 規定에 依한 輸出入金融債券의 登記에 있어서는 輸出入金融債券 請約書, 其他 輸出入金融債券의 引受를 證明하는 書面과 各 輸出入金融債券에 對한 納入을 證明하는 書面. 다만, 第 26 條의 規定에 依하여 發行된 境遇에는 그 賣出期間內의 輸出入金融債券의 賣出總額을 證明하는 書面으로 한다.	
	1975. 2. 28	第 2 條의 規定에 依한 設立登記는 設立委員이 共同으로 하는 申請에 依하고 第 3 條 乃至 第 7 條의 規定에 依한 登記는 輸出入銀行長의 申請에 依하여야 하며, 그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1. 第 2 條의 設立의 登記에 있어서는 定款, 定款 認可書의 謄本, 財務部長官이 出資金의 第 1 回 納入이 完了된 것을 證明하는 書面과 輸出入銀行長이 法 第 11 條 第 ① 項의 規定에 依하여 任命된 것을 證明하는 書面 2. 第 4 條의 規定에 依한 支店 또는 出張所의 設置의 登記에 있어서는 그 設置를 證明하는 書面 3. 第 4 條의 規定에 依한 本店, 支店 또는 出張所の 移轉의 登記에 있어서는 그 移轉을 證明하는 書面 4. 第 5 條의 規定에 依한 變更事項의 登記에 있어서는 그 變更을 證明하는 書面 5. 第 6 條의 規定에 依한 代理人 選任의 登記에 있어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서는 그 選任이 法 第 15 條의 規定에 依한 것을 證明하는 書面과 그 權限을 制限한 境遇에는 이를 證明하는 書面 6. 第 7 條의 規定에 依한 輸出入金融債券의 登記에 있어서는 輸出入金融債券 請約書, 其他 輸出入金融債券의 引受를 證明하는 書面과 各 輸出入金融債券에 對한 納入을 證明하는 書面. 다만, 第 26 條의 規定에 依하여 發行된 境遇에는 그 賣出期間內的 輸出入金融債券의 賣出總額을 證明하는 書面으로 한다.	
第 11 條 (登記에 關한 準 用規定)	1969. 10. 6	輸出入銀行의 登記에 關하여는 이 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非訟事件節次法 第 192 條 乃至 第 213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에 同法 第 200 條 第 2 項 第 1 號, 第 203 條 및 第 208 條에서 本店이라 함은 主事務所로 支店이라함은 分事務所로 한다.	
	1975. 2. 28	輸出入銀行의 登記에 關하여는 이 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非訟事件節次法 第 192 條 乃至 第 213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에 同法 第 200 條 第②項 第 1 號, 第 203 條 및 第 208 條에서 支店이라 함은 支店 또는 出張所로 한다.	
第 12 條 (設立登記 의 公告)	1969. 10. 6	輸出入銀行은 第 2 條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의 登記를 完了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 3 章 業 務	
第 13 條 (製品)	1969. 10. 6	法 第 18 條 第 1 號의 適用을 받는 製品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産業施設(船舶・車輛과 당해 産業施設을 爲한 原料, 豫備品, 部分品 및 附屬品을 포함한다) 2. 外貨獲得을 爲한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顯著히 寄與하는 商品으로서 外貨稼得率이 높은 品目과 一般輸出去來秩序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는 品目中 財務部長官과 합의하여 指定하는 것	
	1975. 2. 28	法 第 18 條 第①項 第 1 號의 適用을 받는 製品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産業施設(船舶 및 車輛을 包含한다)과 이를 爲한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 14 條 (重要物 資)		原料, 豫備品, 部分品 및 附屬品 2. 外貨獲得을 爲한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顯著히 寄與하는 商品으로서 外貨稼得率이 높은 品目과 一般輸出去來秩序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는 品目. 다만, 運營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의 議決을 거친 品目으로서 財務部長官이 指定하는 것에 限한다.	
	1969. 10. 6	法 第 18 條 第 4 號의 適用을 받는 重要物資는 前條에 規定하는 製品의 生産에 必要한 原資材로서 國內調達이 불가능하거나 適期確保가 곤란한 品目中 財務部長官이 商工部長官과 합의하여 指定하는 物品으로 한다.	
	1975. 2. 28	法 第 18 條 第①項 第 4 號의 適用을 받는 重要物資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鐵鑛, 古鐵 2. 銅鑛, 電氣銅, 銅屑 3. 亞鉛鑛, 亞鉛塊 4. 鉛鑛, 鉛塊 5. 아루미나, 알미늄塊 6. 原木, 木材펠프 7. 생고무 8. 其他 委員會의 議決을 거친 品目으로서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財務部長官이 指定하는 것	
第 15 條 (海外投 資)	1969. 10. 6	法 第 18 條 第 6 號의 適用을 받는 海外投資資金은 그 投資가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것에 限한다. 1. 輸出用 原資材 또는 國內 必須基礎資材의 確保에 기여하는 것일 것 2. 投資에 依한 追加輸出利潤 또는 其他의 外貨受取額이 投資日로부터 5年內에 投資總額에 달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國際收支 改善에 도움이 되리라고 認定되는 것일 것	
	1975. 2. 28	① 法 第 18 條 第①項 第 6 號의 適用을 받는 海外投資資金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大韓民國 國民이 外國法人에 出資(株式의 取得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하기 爲하여 必要한 資金 2.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하고자 하는 外國法人에 外國人이 出資하기 爲하여 必要한 資金을 貸付하기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u>爲한 資金</u> 3. <u>大韓民國 國民이 出資한 外國法人이 外國에서 行하는 事業에 必要한 長期資金을 貸付하기 爲한 資金</u> ② 第①項의 海外投資資金은 그 投資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것이어야 한다. 1.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重要物資 또는 第15條의 2의 規定에 依한 主要資源의 確保에 寄與한다고 認定되는 것 2. 外國과의 經濟協力 增進에 寄與한다고 認定되는 것 3. 海外僑民의 經濟的 地位의 向上에 寄與한다고 認定되는 것 4. 其他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外貨獲得에 크게 寄與하는 것으로서 委員會의 議決을 거친 것	②項 新設
第15條의 2 (主要資源)	1975. 2. 28	法 第18條 第②項의 適用을 받는 主要資源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石炭, 鐵鑛石, 銅鑛石, 原油 等 鑛産資源 2. 原木等 林産資源 3. 糧穀, 原綿, 原糖, 生 고무 等 農業資源 4. 其他 國民經濟上 長期安定的인 確保를 要하는 資源. 다만, 委員會의 議決을 거친 資源으로서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財務部長官이 指定하는 것에 限한다.	第15條의 2 新設
第16條 (償還期間等의 特例)	1969. 10. 6	(期間延長 製品等) 法 第25條 第②項 但書의 適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船舶 2. 鐵道車輛 3. 其他 國際去來의 實態에 비추어 特히 期間延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財務部長官이 指定한 것	
	1975. 2. 28	(償還期間等의 特例) 法 第25條 第②項 但書의 適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國際去來의 實態에 비추어 그 償還 또는 履行에 特히 長期間이 必要하다고 委員會가 認定하는 것에 限한다.	
第17條 (決算)	1969. 10. 6	法 第35條의 規定에 依하여 報告하는 決算書(損益計算書, 貸借對照表 및 剩餘金處理計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1. 事業計劃實績分析報告書 2. 財務諸表附屬書類 3. 其他 決算의 內容을 明白하게 함에 必要한 書類	
第 17 條 의 2(利 益金の 配當)	1975. 2. 28	財務部長官이 法 第 36 條 第 2 號의 規定에 依하여 政 府以外의 出資者에 對한 配當을 承認함에 있어서 그 優先的인 配當率은 100分の 15를 超過하지 못한다.	第 17 條의 2 新設
		第 4 章 輸出入金融債券	
第 18 條 (輸出入金 融債券의 發行承 認)	1969. 10. 6	輸出入銀行은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하고자 할 때에 는 每回 그 發行의 金額, 方法 및 條件과 償還의 方法 을 定하여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19 條 (輸出入金 融債券의 形式)	1969. 10. 6	輸出入金融債券은 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應募者 또는 所有者의 請求에 依하여 無記名式을 記名式으 로, 記名式을 無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第 20 條 (輸出入金 融債券의 應募)	1969. 10. 6	① 輸出入金融債券의 募集에 應하고자 하는 者는 輸 出入金融債券請約書 2通에 그 引受하고자 하는 輸出 入金融債券의 券種別數와 住所를 記載하고 이에 記名 捺印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는 輸出入銀行이 作成하고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輸出入銀行의 名稱 2.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 總額 3. 輸出入金融債券의 券種別 額面 金額 4. 輸出入金融債券의 利率 5. 元金償還의 方法 및 時期 6. 利子支給의 方法 및 時期 7.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價額 또는 最低價額 8. 輸出入銀行의 資本金과 積立金の 合計額 9. 輸出入金融債券의 未償還分이 있는 境遇에는 그 總額 ③ 輸出入金融債券의 最低價額을 定하여 發行하는 境 遇에는 應募者는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에 應募價額을 記載하여야 한다.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 21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總額引受)	1969. 10. 6	前條의 規定은 契約에 依하여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總額을 引受하는 境遇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 22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總額)	1969. 10. 6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에는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에 있어서 實地로 應募된 總額이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에 記載한 輸出入金融債券 發行總額에 未達할 때에도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한다는 表示를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그 應募總額으로써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總額으로 한다.	
第 23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引受價額의 納入)	1969. 10. 6	輸出入銀行은 輸出入金融債券의 應募가 完了될 때에는 遲滯없이 各 輸出入金融債券의 引受價額의 全額을 納入시켜야 한다.	
第 24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時期)	1969. 10. 6	輸出入金融債券의 그 引受價額의 全額이 納入된 後가 아니면 이를 發行하지 못한다.	
	1975. 2. 28	輸出入金融債券의 그 引受價額의 全額이 納入된 後가 아니면 이를 發行하지 못한다. 다만 第 26 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 25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記載事項)	1969. 10. 6	輸出入金融債券에는 債券의 番號, 發行年月日과 第 20 條 第②項 第 1 號 乃至 第 6 號의 事項을 記載하고 輸出入銀行長이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第 26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1969. 10. 6	① 輸出入銀行은 輸出入金融債券을 그 賣出期間을 미리 定하여 賣出의 方法에 依하여 發行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第 20 條의 規定에 依한 輸出入金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賣出發 行)		融債券請約書는 이를 作成하지 아니한다. ③ 輸出入銀行이 第①項의 規定에 依하여 發行하는 輸出入金融債券에는 第20條 第②項 第②號의 事項은 이를 記載하지 아니한다. ④ 輸出入銀行은 第①項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하고자 할 때에는 賣出期間과 第20條 第②項 第1號 乃至 第7號의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27條 (輸出入金 融債券原 簿의 備 置)	1969. 10. 6	① 輸出入銀行은 主事務所에 輸出入金融債券原簿을 備置하고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輸出入金融債券의 數와 番號 2.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年月日 3. 第20條 第②項 第2號 乃至 第6號의 事項 ② 輸出入金融債券이 記名式인 境遇에는 前項 各號의 事項 以外에 다음 各號의 事項도 記載하여야 한다. 1. 輸出入金融債券의 所有者의 姓名과 住所 2. 輸出入金融債券의 取得年月日 ③ 輸出入金融債券의 權利者는 輸出入銀行의 營業時間內에 언제든지 輸出入金融債券原簿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1975. 2. 28	① 輸出入銀行은 本店에 輸出入金融債券原簿을 備置하고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輸出入金融債券의 數와 番號 2.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年月日 3. 第20條 第②項 第2號 乃至 第6號의 事項 ② 輸出入金融債券이 記名式인 境遇에는 前項 各號의 事項以外에 다음 各號의 事項도 記載하여야 한다. 1. 輸出入金融債券의 所有者의 姓名과 住所 2. 輸出入金融債券의 取得年月日 ③ 輸出入金融債券의 權利者는 輸出入銀行의 營業時間內에 언제든지 輸出入金融債券原簿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第28條 (記名式輸 出入金融 債券)	1969. 10. 6	① 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의 移轉은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輸出入金融債券原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輸出入銀行 其他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 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을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境遇에는 質權者의 姓名과 住所를 輸出入金融債券原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輸出入銀行 其他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 29 條 (輸出入金融債券의 買入消 却)	1969. 10. 6	③ 輸出入銀行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質權이 設定 된 境遇에는 輸出入金融債券에 그 뜻을 表示하여야 한다. 輸出入銀行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輸出入金融 債券을 買入하여 消却할 수 있다.	
第 30 條 (利券欠缺 의 境遇)	1969. 10. 6	① 無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을 償還하는 境遇에 欠缺 된 利券이 있을 때에는 이에 相當하는 金額을 그 償還 額에서 控除한다. ② 前項의 利券의 所持人은 언제든지 그 利券과 償還 으로 控除된 金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第 31 條 (輸出入金 融 債 券 應募者에 對한 通 知等)	1969. 10. 6	①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하기 前의 그 應募者 또는 權利者에 對한 通知 또는 催告는 輸出入金融債券請約 書에 記載된 住所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住所를 輸出入銀行에 通知한 境遇에는 그 住所로 하여야 한 다. ② 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의 所有者에 對한 通知 또 는 催告는 輸出入金融債券原簿에 記載된 住所로 하여 야 한다. 다만, 따로 住所를 輸出入銀行에 通知한 境 遇에는 그 住所로 하여야 한다. ③ 無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의 所有者에 對한 通知 또는 催告는 公告의 方法에 依한다. 다만, 그 住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이에 依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5 章 補 則			
第 32 條 (設立委 員)	1969. 10. 6	① 設立委員은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者로 한다. 1. 財務部次官 2. 韓國銀行副總裁 3. 財務部財政次官補 4. 商工部商易次官補 5. 財務部理財局長 6. 財務部外換局長 7. 韓國外換銀行專務理事 8. 前各號 外에 財務部長官이 委囑하는 2人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 33 條 (業務의 移管)	1969. 10. 6	② 設立委員은 韓國輸出入銀行設立委員會(以下 “設立委員會”라 한다)를 構成하여 輸出入銀行設立事務의 處理에 關한 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③ 設立委員會에 委員長, 副委員長 各 1人을 두되 委員長은 財務部次官인 委員이 되고 副委員長은 韓國銀行 副總裁인 委員이 된다. ④ 設立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⑤ 設立委員會의 會議는 設立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3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⑥ 設立委員會는 法 附則 第 2 條 第 ④ 項의 規定에 依한 事務引繼後 韓國輸出入銀行 設立에 關한 綜合經過 報告書를 作成하여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⑦ 設立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設立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이를 定한다.	
第 34 條 (業務開始日)	1969. 10. 6	① 韓國外換銀行은 法 附則 第 3 條의 規定에 依한 業務를 輸出入銀行의 業務開始日에 移管하되 財務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一部에 限하여 移管의 時期를 따로 定할 수 있다. ② 韓國外換銀行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移管되는 業務에 關聯된 資產과 負債를 輸出入銀行에 引繼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銀行이 承繼하는 資產과 負債의 價額은 韓國外換銀行 帳簿價額에 依한다. 다만, 外換에 關聯된 資產과 負債의 價額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決定한 評價額으로 한다. ④ 輸出入銀行은 前各項의 規定에 依한 引受引繼를 마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⑤ 第 ② 項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銀行이 承繼한 權利中 權利者의 名義를 變更할 必要가 있는 것에 對하여는 遲滯없이 그 名義를 輸出入銀行으로 變更하는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⑥ 前項의 規定에 依한 名義變更에 所要되는 費用은 輸出入銀行이 이를 負擔한다.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 35 條 (設立費 用)	1969. 10. 6	① 輸出入銀行 設立에 關한 諸費用은 設立委員會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韓國外換銀行으로부터 借入하여 使用한다. ② 前項의 費用은 輸出入銀行이 이를 負擔한다. 附 則	
	1969. 10. 6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75. 2. 28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代行業務의 區分處理) 韓國外換銀行이 法 附則 第3條 第①項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銀行業務를 代行하는 境遇에는 그 業務 및 會計處理에 있어서 韓國外換銀行法에 依한 業務 및 會計와는 區分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③ (業務代行으로 因한 利益金の 積立) 韓國外換銀行은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함으로써 發生하는 各事業年度의 利益金を 財務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輸出入銀行의 計算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5. 韓國輸出入銀行定款

制定：1976년 7월 1일
改正：1977년 1월 1일
改正：1977년 7월 1일
改正：1977년 12월 29일
改正：1986년 3월 7일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銀行은 輸出入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에 必要한 金融의 供與 業務를 營爲함을 主된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名稱) ① 이 銀行은 韓國輸出入銀行法(以下 “法”이라 한다)에 依하여 設立되며 “韓國輸出入銀行”이라 稱한다.

② 이 銀行의 英文名稱은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로 表記한다.

第3條 (本店, 支店, 出張所와 代理店의 所在地)

① 이 銀行은 本店을 서울特別市에 둔다.

② 이 銀行은 國內外에 支店, 出張所와 代理店을 다음 곳에 둔다.

1. 釜山直轄市: 支店 1個所

③ 이 銀行은 國內외의 必要한 곳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事務所 및 駐在員을 둘 수 있다.

第4條 (資本金) ① 이 銀行의 資本金은 5,000억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의환은행, 은행법 第3條 第①項의 규정에 依한 금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出資하는 것으로 한다.

② 第①項의 出資는 設立登記前까지 한국은행 또는 한국의환은행이 제1회 납입금을 불입하고 정부는 설립등기의 完了후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대행기관 한국의환은행에 연불수출지원자금으로 既貸下한 財政資金을 出資로 轉換한다.

③ 이 銀行은 設立의 登記 또는 資本金의 增額에 따른 出資의 納入이 있는 후에 出資機關에게 출자증서를 發行할 수 있다.

第5條 (定款의 變更) 이 銀行의 定款을 變

更하고자 할 때에는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 (定款에 定하는 以外의 事項) 이 銀行의 業務를 營爲함에 있어 定款이 定하는 以外의 必要한 事項은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받아 따로 定한다.

第2章 任員과 職員

第7條 (任員) 이 銀行의 任員으로서 銀行長 1人, 專務理事 1人, 理事 5人 以內와 監事 1人을 둔다.

第8條 (任員의 職務) ① 銀行長은 이 銀行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한다.

② 專務理事는 銀行長을 補佐하고 銀行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는 銀行長과 專務理事를 補佐하고 銀行長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業務를 分掌한다.

④ 銀行長과 專務理事가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銀行長이 미리 指定한 順位에 依하여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⑤ 監事는 銀行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9條 (任員의 任免) ① 銀行長은 財務部長官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② 專務理事와 理事는 銀行長의 提請에 依하여 財務部長官이 任免한다.

③ 監事는 財務部長官이 任免한다.

第10條 (任員의 任期) ① 銀行長, 專務理事와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の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될 수 있다.

② 任員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任命되 그 任期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으로 한다.

第11條 (任員의 報酬) 銀行長, 專務理事,

理事 및 監事の 報酬와 手當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銀行長이 定한다.

第12條 (任員의 兼職制限) 任員은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를 除外하고는 다른 職務에 從事하지 못한다.

第13條 (任員의 代表權制限) ① 銀行長, 專務理事 또는 理事의 利益과 이 銀行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關하여는 當該 銀行長, 專務理事 또는 理事는 이 銀行을 代表하지 못한다.

② 第①項의 境遇에 이 銀行을 代表할 다른 理事가 없을 때에는 監事が 이를 代表한다.

第14條 (代理人 選任) 銀行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任員 또는 職員中에서 이 銀行의 業務에 關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15條 (職員의 任免) 이 銀行의 職員은 銀行長이 任免한다.

第3章 運營委員會

第16條 (運營委員會) ① 이 銀行에 運營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1. 經濟企劃院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1의2. 外務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2. 財務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3. 商工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4. 韓國銀行總裁가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5. 韓國輸出入銀行長

6. 韓國外換銀行長이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7. 財務部長官이 商工部長官과 協議하여 輸出業者團體의 代表者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③ 委員會는 이 銀行의 業務運用 및 管理에 關한 基本方針을 樹立하고 이 職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規程을 定할 수 있다.

第17條 (運營委員會의 召集) ① 委員會는 銀行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議長이 미리 指定하는 順位の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議長은 在籍委員 過半數 또는 監事の 要求가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會議을 召集하여야 한다.

第18條 (議決方法) 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하는 바에 따른다.

第19條 (會議參與制限) 委員會의 委員은 自己 또는 自己의 親族과 利害關係가 있는 議案에 關한 會議에 參席하지 못한다. 다만 全般的인 運營問題가 審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20條 (委員會의 權限에 關한 特例) ① 이 銀行長은 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即刻的인 行爲가 必要한 境遇에 委員會를 召集할 수 없을 때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委員會의 權限內에서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銀行長은 第①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內容을 報告하여야 한다.

③ 委員會는 第①項의 措置를 確認, 條正 또는 停止할 수 있다.

第21條 (會議參與) 專務理事, 理事, 監事는 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4章 理事會

第22條 (理事會) ① 이 銀行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銀行長, 專務理事, 理事로 構成한다.

③ 理事會는 이 銀行의 業務에 關한 重要事項을 議決하고, 이 職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規程을 定할 수 있다.

第23條 (會議召集) 理事會는 銀行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24條 (議決方法) 理事會는 構成員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 3分の2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25 條 (監事の會議參與) 監事は 理事會
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第 5 章 業務와 그 執行

第 26 條 (業務의 範圍) ① 이 銀行은 第 1
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른 金融機
關이 一般的인 條件으로는 취급할 수 없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이 定하는 資
本財 其他 外貨獲得을 爲한 海外輸出入市
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顯著히 寄與하는
商品(以下 “製品”이라 한다)의 輸出을 促
進하기 위하여 그 輸出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大韓民國의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對
한 貸出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2. 外國에 對한 技術의 提供(海外에서 行
하는 建設工事を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에 必要한 資金의 大
韓民國 國民에 對한 貸出 또는 이로 因하
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3.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의 輸入 또는
技術의 導入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에 必
要한 資金의 外國政府(外國政府機關과 外
國의 地方 公共團體를 包含한다. 以下 같
다) 또는 外國人(外國의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對한 貸出

4.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을
위하여 必要한 輸出用原料, 材料中 한국
수출입은행법시행령이 定하는 重要物資
(以下 “重要物資”라 한다)의 輸入資金 또
는 그 輸入을 圓滑히 하기 爲하여 必要한
輸入代金의 先給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對한 貸出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
의 다른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

5. 大韓民國 國民이 外國에서 營爲하는
事業의 設備(船舶과 車輛을 包含한다. 以
下 같다)를 新設 또는 擴充하거나 이를
運營함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對한 貸出

6.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이 定하는 海
外投資資金 및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對한 設備의 貸與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
民國 國民에 對한 貸出

7.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株式의 取得을
包含한다)하고자 하는 外國法人에 出資하
기 위하여 必要한 資金의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對한 貸出

8.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을 輸入하거나
技術을 導入한 者가 이로 因하여 發生된
大韓民國 國民에 對한 債務를 履行함이
그 居住國의 國際收支上 顯著하게 困難한
境遇에 그 債務의 圓滑한 履行에 必要한
資金의 當該 外國政府 및 外國金融機關에
對한 貸出

9. 第 1 號, 第 2 號, 第 4 號 乃至 第 6 號
의 規定에 依하여 資金의 貸出을 받을 수
있는 大韓民國 國民이 그 資金을 다른 金
融機關으로부터 貸出받을 境遇 그 債務의
保證

② 이 銀行은 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國民經
濟上 長期安定的인 確保를 要하는 資源中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이 定하는 資源(以
下 “主要資源”이라 한다)의 外國에서의 圓
滑한 開發과 外國經濟協力增進에 寄與케 함
을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主要資源開發事業을 營爲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前準備調査 및 鐵業權 其他 權
利의 取得에 必要한 資金 其他 海外投資
支援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對한 貸出

2. 海外特定地域의 産業發展에 寄與하며
우리나라와의 經濟交流增進을 促進하기
위하여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에 必要
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 外國政府 및
外國人에 對한 貸出 또는 當該 事業에 必
要한 長期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當該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이 發行하는 債券의
取得

③ 이 銀行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第
① 項 및 第 ② 項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를
行할 수 있다.

④ 이 銀行은 輸出保險法이 定하는 바에 따
라 政府의 輸出保險業務를 代行할 수 있다.

第 27 條 (資金의 借入과 限度) ① 이 銀行
은 그 業務를 行함에 必要한 資金의 財源에
充當하기 爲하여 政府, 韓國銀行, 韓國産業
銀行, 韓國外換銀行, 銀行法 第 3 條 第 ①
項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 外國政府, 外

國金融機關 또는 國際金融機構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② 이 銀行이 第①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을 借入하거나 法 第20條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할 수 있는 限度는 納入資本金과 積立金의 合計額의 10倍로 한다.

第28條 (業務計劃) ① 이 銀行은 每事業年度마다 業務計劃을 作成하여 該當 年度 開始 1月前에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第①項의 業務計劃에 있어서는 法 第18條 第①項 第②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供給計劃과 法 第4條 第19條 第20條의 規定에 依한 資金調達計劃을 區分하고 分期別 業務計劃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29條 (業務方法書) ① 이 銀行은 輸出入, 技術提供, 海外投資 및 對外經濟協力 등에 必要한 金融을 支援供與함에 있어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保證의 方法과 融資比率, 利率, 料率, 期限, 債券의 取得方法, 元利金의 回收方法, 債務保證의 條件, 業務의 委託 等 業務處理의 基準이 되는 業務方法書를 制定하여 運用할 수 있다.

② 第①項의 業務方法書는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30條 (貸出, 割引의 利率 및 債務保證의 料率) 이 銀行이 法 第18條의 規定에 따라 行하는 貸出 또는 割引의 利率과 債務保證의 料率을 定함에 있어서는 事務取扱費, 事務代行手數料, 借入金利子 其他 諸費用과 資産의 減價償却에 充當할 수 있도록 定하여야 한다.

第31條 (業務의 制限) ① 이 銀行이 法 第18條 第①項에 依한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支給 또는 履行이 確實하게 認定되어야 하며 償還 또는 履行期間이 6個月 以上 10年 以內인 中長期 貸出에 限한다. 다만, 國際去來의 實態에 비추어 그 償還 또는 履行에 特히 長期間이 必要하다고 委員會가 認定하는 경우에는 最長 20년까지 할 수 있다.

② 法 第18條 第②項의 資金의 貸出期間은 20年以內로 한다.

③ 이 銀行이 法 第18條 第②項의 規定에 依한 貸出을 行하는 限度는 政府가 出資 또는 貸下한 金額(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 받은 金額除外)과 積立金 및 剩餘金의 合計額으로 한다.

第32條 (他金融機關과의 競爭禁止) 이 銀行은 法 第18條에 定하는 業務를 營爲함에 있어서 他金融機關과 競爭하지 아니한다.

第6章 輸出入金融債券

第33條 (輸出入金融債券) 이 銀行은 法 第20條 및 同施行令 第18條 乃至 第31條의 定하는 바에 따라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

第7章 會 計

第34條 (事業年度) 이 銀行의 事業年度는 每年 1月1일부터 12月31日까지로 한다.

第35條 (豫算) 이 銀行은 事業年度마다 收入과 支出豫算을 編成하여 當該 事業年度가 開始되기 1月前에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36條 (追加更正豫算) 이 銀行은 豫算成立後에 생긴 事由로 因하여 豫算에 變更을 加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할 수 있으며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37條 (豫備費) ① 이 銀行은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하여 豫算에 豫備費를 計上할 수 있다.

② 第①項의 豫備費의 使用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38條 (退職慰勞金) 이 銀行은 退職하는 任員과 職員에게 退職慰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39條 (賞與金) 이 銀行은 任員과 職員에게 賞與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40條 (研究費와 海外派遣費) 이 銀行은 優秀한 職員 또는 其他 適格者에게 研究費 또는 海外派遣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41條 (決算) ① 이 銀行은 每事業年度

의 決算을 當該 事業年度經過後 60日 以內에 完結하고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理計算書 等의 決算書와 事業計劃實績分析報告書, 財務諸表附屬書類 및 決算內容에 必要한 書類를 作成하여 財務部長官을 거쳐 大統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 이 銀行이 第①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公告하고 本店, 支店, 出張所와 代理店에 備置하여야 한다.

第42條 (利益金の 處理) 이 銀行은 事業年度마다 資産의 減價償却에 充當한 後에 決算總利益金を 다음 各號의 順位에 依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1. 資本金의 總額에 達할 때까지 利益金の 100分の 20을 積立한다.

2. 政府 以外의 出資者에 對하여는 配當率이 100分の 15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優先의으로 利益金を 配當한다.

3. 積立金과 配當金を 除外한 殘餘利益金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處理한다.

第43條 (損失金の 補填) 이 銀行의 決算純損失金은 事業年度마다 積立金으로서 補填하고 그 積立金이 不足할 때에는 政府가 補填한다.

第8章 其 他

第44條 (公告의 方法) 이 銀行의 公告는 서울特別市에서 發刊되는 1 以上の 日刊新聞에 掲載한다.

第45條 (業務의 代行) 이 銀行은 그 營爲하는 業務의 一部를 他金融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46條 (餘裕金の 運用) 이 銀行은 다음 各號의 方法에 依하는 外에는 業務上 餘裕金を 運用하지 못한다.

1. 國債의 保有

2. 韓國銀行에의 預入

3. 其他 財務部長官이 定하는 方法

第47條 (外國換業務) 이 銀行은 外國換管理法와 貿易去來法의 規定에 따라 外國換業務를 營爲할 수 있다.

補 則

第48條 (職制) 이 銀行의 職制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銀行長이 定한다. 다만 이 銀行이 設立當時 設立委員會의 議決을 받아 確定한 職制는 이 定款에 依해 確定한 것으로 본다.

第49條 (顧問囑託) 이 銀行은 그 業務의 遂行을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大韓民國國民 또는 外國人을 顧問이나 囑託으로 雇傭할 수 있다.

第50條 (適用範圍) 이 定款 第41條 乃至 43條, 第45條, 第46條는 第26條 第④項의 業務를 遂行하는 境遇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定款은 이 銀行이 設立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銀行의 첫 事業年度는 이 銀行이 設立되는 날로부터 1976年12月31日까지로 한다.

第3條 (設立委員會의 記名捺印) 設立委員一同은 韓國輸出入銀行法 附則 第2條 第②項의 規定에 依하여 이 定款을 作成하고 다음에 記名捺印한다.

1976. 5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82番地
財務部次官 조 충 훈
서울特別市鍾路區貫鐵洞10番地
韓國輸出入銀行 銀行長 송 인 상
서울特別市中區南大門路3街110番地
韓國銀行 副總裁 하 영 기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82番地
財務部財政次官補 고 병 우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77番地
商工部商易次官補 박 필 수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82番地
財務部理財局長 하 동 선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82番地
財務部國際金融局長 정 인 용
서울特別市鍾路區貫鐵洞10番地
韓國外換銀行專務理事 홍 완 모
서울特別市鍾路區貫鐵洞10番地
이 태 호

附 則(1)

이 定款은 197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2)

이 定款은 197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3)

이 定款은 1977年 12月 29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4)

이 定款은 1986年 3月 7日부터 施行한다.

6. 韓國輸出入銀行定款의 改正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1976. 7. 1	이 銀行은 中長期信用에 의한 輸出入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에 必要한 金融의 供與業務를 營爲함을 主된 目的으로 한다.	
	1977. 12. 29	이 銀行은 輸出入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에 必要한 金融의 供與業務를 營爲함을 主된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名稱)	1976. 7. 1	① 이 銀行은 韓國輸出入銀行法(以下“法”이라 한다)에 依하여 設立되며 “韓國輸出入銀行”이라 稱한다. ② 이 銀行의 英文名稱은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로 表記한다.	
第3條 (本店, 支店, 出張所 와 代理 店의 所 在地)	1976. 7. 1	① 이 銀行은 本店을 서울特別市에 둔다. ② 이 銀行은 國內外의 必要한 곳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支店 또는 出張所 및 代理店을 둘 수 있다.	
	1977. 1. 1	① 이 銀行은 本店을 서울特別市에 둔다. ② 이 銀行은 國內外에 支店, 出張所와 代理店을 다음 곳에 둔다. 1. 釜山事務所: 釜山直割市 ③ 이 銀行은 國內外의 必要한 곳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出張所(이하 事務所, 駐在員 包含) 및 代理店을 둘 수 있다.	②項의 1 新 設 ③項 新設
	1977. 7. 1	① 이 銀行은 本店을 서울特別市에 둔다. ② 이 銀行은 國內外에 支店, 出張所와 代理店을 다음 곳에 둔다. 1. 釜山直割市: 出張所 1個所 ③ 이 銀行은 國內外의 必要한 곳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事務所 및 駐在員을 둘 수 있다.	
	1986. 3. 7	① 이 銀行은 本店을 서울特別市에 둔다.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 4 條 (資本金)	1976. 7. 1	② 이 銀行은 國內外에 支店, 出張所와 代理店을 다음 곳에 둔다. 1. 釜山直轄市: 支店 1個所 ③ 이 銀行은 國內外의 必要한 곳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事務所 및 駐在員을 둘 수 있다. ① 이 銀行의 資本金은 1,500억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은행법 제 3 조 제 ① 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出資하는 것으로 한다. ② 第 ① 項의 出資는 設立登記前까지 한국은행 또는 한국외환은행이 제1회 납입금을 불입하고 정부는 설립등기의 完了후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대행기관 한국외환은행에 연불수출지원자금으로 既貸下한 財政資金을 出資로 轉換한다. ③ 이 銀行은 設立의 登記 또는 資本金의 增額에 따른 出資의 納入이 있는 후에 出資機關에게 출자증서를 發行할 수 있다.	
	1977. 12. 29	① 이 銀行의 資本金은 5,000억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은행법 제 3 조 제 ① 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出資하는 것으로 한다. ② 第 ① 項의 出資는 設立登記前까지 한국은행 또는 한국외환은행이 제1회 납입금을 불입하고 정부는 설립등기의 完了후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대행기관 한국외환은행에 연불수출지원자금으로 既貸下한 財政資金을 出資로 轉換한다. ③ 이 銀行은 設立의 登記 또는 資本金의 增額에 따른 出資의 納入이 있는 후에 出資機關에게 출자증서를 發行할 수 있다.	
第 5 條 (定款의 變更)	1976. 7. 1	이 銀行의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 6 條 (定款에 定하는 以外의 事項)	1976. 7. 1	이 銀行의 業務를 營爲함에 있어 定款이 定하는 以外의 必要한 事項은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받아 따로 定한다.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 2 章 任員과 職員	
第 7 條 (任員)	1976. 7. 1	이 銀行의 任員으로서 銀行長 1人, 專務理事 1人, 理事 5人 以內와 監事 1人을 둔다.	
第 8 條 (任員의 職務)	1976. 7. 1	① 銀行長은 이 銀行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한다. ② 專務理事는 銀行長을 補佐하고 銀行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는 銀行長과 專務理事를 補佐하고 銀行長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業務를 分掌한다. ④ 銀行長과 專務理事가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銀行長이 미리 指定한 順位에 依하여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⑤ 監事は 銀行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 9 條 (任員의 任免)	1976. 7. 1	① 銀行長은 財務部長官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② 專務理事와 理事는 銀行長의 提請에 依하여 財務部長官이 任免한다. ③ 監事は 財務部長官이 任免한다.	
第 10 條 (任員의 任期)	1976. 7. 1	① 銀行長, 專務理事와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の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될 수 있다. ② 任員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任命하되 그 任期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으로 한다.	
第 11 條 (任員의 報酬)	1976. 7. 1	銀行長, 專務理事, 理事 및 監事の 報酬와 手當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銀行長이 定한다.	
第 12 條 (任員의 兼職制限)	1976. 7. 1	任員은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를 除外하고는 다른 職務에 從事하지 못한다.	
第 13 條 (任員의	1976. 7. 1	① 銀行長, 專務理事 또는 理事의 利益과 이 銀行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關하여는 當該 銀行長, 專務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代表權制限)		理事 또는 理事는 이 銀行을 代表하지 못한다. ② 第①項의 境遇에 이 銀行을 代表할 다른 理事가 없을 때에는 監事가 이를 代表한다.	
第 14 條 (代理人의 選任)	1976. 7. 1	銀行長은 運營委員會의 決議를 거쳐 任員 또는 職員中에서 이 銀行의 業務에 關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1977. 12. 29	銀行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任員 또는 職員中에서 이 銀行의 業務에 關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 15 條 (職員의 任免)	1976. 7. 1	이 銀行의 職員은 銀行長이 任免한다.	
第 3 章 運營委員會			
第 16 條 (運營委員會)	1976. 7. 1	① 이 銀行에 運營委員會(以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다음 名號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1. 經濟企劃院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2. 財務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3. 商工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4. 韓國銀行總裁가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5. 韓國輸出入銀行長 6. 韓國外換銀行長이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7. 財務部長官이 商工部長官과 協議하여 輸出業者團體의 대표자 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③ 委員會는 이 銀行의 業務運用 및 管理에 關한 基本方針을 樹立하고 이 職務를 遂行함에 따른 必要한 規程을 定할 수 있다.	
	1977. 12. 29	① 이 銀行에 運營委員會(以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다음 名號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1. 經濟企劃院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1의2. 外務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1人 2. 財務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3. 商工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4. 韓國銀行總裁가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5. 韓國輸出入銀行長 6. 韓國外換銀行長이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7. 財務部長官이 商工部長官과 協議하여 輸出業者團體의 代表者 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③ 委員會는 이 銀行의 業務運用 및 管理에 關한 基本方針을 樹立하고 이 職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規程을 定할 수 있다.	
第 17 條 (運營委員會의 召集)	1976. 7. 1	① 委員會는 銀行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議長이 미리 指定하는 順位の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議長은 在籍委員 過半數 또는 監事の 要求가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會議을 召集하여야 한다.	
第 18 條 (議決方法)	1976. 7. 1		
	1979. 12. 29	(議決方法) 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하는 바에 따른다.	
第 19 條 (會議參與制限)	1976. 7. 1	委員會의 委員은 自己 또는 自己의 親族과 利害關係가 있는 議案에 關한 會議에 參席하지 못한다. 다만 全般的인 運營問題가 審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 20 條 (委員會의 權限에 關한 特例)	1976. 7. 1	① 이 銀行長은 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即刻的인 行爲가 必要한 境遇에 委員會를 召集할 수 없을 때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委員會의 權限內에서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銀行長은 第 ① 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內容을 報告하여야 한다. ③ 委員會는 第 ① 項의 措置를 確認, 修正 또는 停止할 수 있다.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 21 條 (會議參與)	1976. 7. 1	專務理事와 監事는 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第4章 理事會 新設
	1977. 12. 29	專務理事, 理事, 監事는 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第 4 章 理事會	
第 22 條 (理事會)	1977. 12. 29	① 이 銀行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銀行長, 專務理事, 理事로 構成한다. ③ 理事會는 이 銀行의 業務에 關한 重要事項을 議決하고, 이 職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規程을 定할 수 있다.	
第 23 條 (會議召集)	1977. 12. 29	理事會는 銀行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 24 條 (議決方法)	1977. 12. 29	理事會는 構成員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 3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25 條 (監事の 會議參與)	1977. 12. 29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第 5 章 業務와 그 執行
第 26 條 (業務의 範圍)	1976. 7. 1	① 이 銀行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른 金融機關이 一般的인 條件으로는 취급할 수 없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이 定하는 資本財 其他 外貨獲得을 爲한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顯著히 寄與하는 商品(以下“製品”이라 한다)의 輸出을 促進하기 爲하여 그 輸出에 必要한 資金의 大	第 4 章 理事會가 新設됨에 따라 원래 第 4 章인 業務와 그 執行이 第 5 章으로 변경되어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韓民國國民(大韓民國의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對한 貸付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2. 外國에 對한 技術의 提供(海外에서 行하는 建設 工事を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 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付 또는 이 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3.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의 輸入 또는 技術의 導入 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의 必要한 資金의 外國政府 (外國政府機關과 外國의 地方 公共團體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또는 外國人(外國의 法律에 依하여 設立 된 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對한 貸付 4.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을 위하여 必要 한 輸出用原料, 材料中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이 定하는 重要物資(以下 “重要物資”라 한다)의 輸入資 金 또는 그 輸入을 圓滑히 하기 爲하여 必要한 輸入 代金의 先給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付 또는 이 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 5. 大韓民國國民이 外國에서 營爲하는 事業의 設備 (船舶과 車輛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新設 또는 擴充하거나 이를 運營함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對한 貸付 6.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이 定하는 海外投資資金 및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對한 設備의 貸與에 必要 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付 7. 大韓民國國民이 出資(株式의 取得을 包含한다)하 고자 하는 外國法人에 出資하기 위하여 必要한 資金 의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對한 貸付 8.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을 輸入하거나 技術을 導 入한 者가 이로 因하여 發生된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債務를 履行함이 그 居主國의 國際收支上 顯著하게 困難한 境遇에 그 債務의 圓滑한 履行에 必要한 資金 의 當該 外國政府 및 外國金融機關에 對한 貸付 9. 第1號, 第2號, 第4號 乃至 第6號의 規定에 依 하여 資金의 貸付를 받을 수 있는 大韓民國國民이 그 資金을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 貸付받을 境遇 그 債 務의 保證 10. 第1號 乃至 第9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로 서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業務 ② 이 銀行은 國民經濟上 長期安定的인 確保를 要하 는 資源中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이 定하는 資源(以 下 “主要資源”이라 한다)의 外國에서의 圓滑한 開發과	나머지는 順 次的으로 변 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 래 第22條 에 서 第46 條까지는 第 26條에서 第 50條로 條文 番號만 順次 的으로 變更 된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1977. 12. 29	外國經濟協力增進에 寄與케 함을 目的으로 다음 各 號의 業務를 行한다. 1. 主要資源開發事業을 營爲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前準備調査 및 鑛業權 其他 權利의 取得에 必要한 資金 其他 海外投資支援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付 2. 海外特定地域의 産業發展에 寄與하며 우리나라의 經濟交流增進을 促進하기 爲하여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 外國政府 및 外國人에 對한 貸付 또는 當該 事業에 必要한 長期資金을 調達하기 爲하여 當該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이 發行하는 債券의 取得 ③ 이 銀行은 輸出保險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政府의 輸出保險業務를 代行할 수 있다. ① 이 銀行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른 金融機關이 一般的인 條件으로는 취급할 수 없는 다음 各 號의 業務를 行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이 定하는 資本財 其他 外貨獲得을 爲한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顯著히 寄與하는 商品(以下“製品”이라 한다)의 輸出을 促進하기 爲하여 그 輸出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大韓民國의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對한 貸出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2. 外國에 對한 技術의 提供(海外에서 行하는 建設工事を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促進하기 爲하여 그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3.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의 輸入 또는 技術의 導入을 促進하기 爲하여 그의 必要한 資金의 外國政府(外國政府機關과 外國의 地方 公共團體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또는 外國人(外國의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對한 貸出 4.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을 爲하여 必要한 輸出用原料, 材料中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이 定하는 重要物資(以下 “重要物資”라 한다)의 輸入資金 또는 그 輸入을 圓滑히 하기 爲하여 必要한 輸入代金의 先給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5. 大韓民國國民이 外國에서 營爲하는 事業의 設備(船舶과 車輛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新設 또는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擴充하거나 이를 運營함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6.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이 定하는 海外投資資金 및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對한 設備의 貸與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7. 大韓民國國民이 出資(株式의 取得을 包含한다)하고자 하는 外國法人에 出資하기 위하여 必要한 資金의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對한 貸出 8.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을 輸入하거나 技術을 導入한 者가 이로 因하여 發生된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債務를 履行함이 그 居住國의 國際收支上 顯著하게 困難한 境遇에 그 債務의 圓滑한 履行에 必要한 資金의 當該 外國政府 및 外國金融機關에 對한 貸出 9. 第1號, 第2號, 第4號 乃至 第6號의 規定에 依하여 資金의 貸出을 받을 수 있는 大韓民國國民이 그 資金을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받을 境遇 그 債務의 保證 ② 이 銀行은 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國民經濟上 長期安定的인 確保를 要하는 資源中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이 定하는 資源(以下 “主要資源”이라 한다)의 外國에서의 圓滑한 開發과 外國經濟協力增進에 寄與케 함을 目的으로 다음 各 號의 業務를 行한다. 1. 主要資源開發事業을 營爲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前準備調査 및 鑛業權 其他 權利의 取得에 必要한 資金 其他 海外投資支援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2. 海外特定地域의 產業發展에 寄與하며 우리나라와 의 經濟交流增進을 促進하기 위하여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 外國政府 및 外國人에 對한 貸出 또는 當該 事業에 必要한 長期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當該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이 發行하는 債券의 取得 ③ 이 銀行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第①項 및 第②項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를 行할 수 있다. ④ 이 銀行은 輸出保險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政府의 輸出保險業務를 代行할 수 있다.	10號 削除
第 27 條 (資金의 借入과 限度)	1976. 7. 1	① 이 銀行은 그 業務를 行함에 必要한 資金의 財源에 充當하기 爲하여 政府, 韓國銀行, 韓國產業銀行, 韓國外換銀行, 銀行法 第3條 第①項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 外國政府, 外國金融機構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③項 新設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 28 條 (業務 計劃)	1976. 7. 1	② 이 銀行이 第 ① 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을 借入하거나 法 第 20 條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할 수 있는 限度는 納入資本金과 積立金の 合計額의 10倍로 한다. ① 이 銀行은 每事業年度마다 業務計劃을 作成하여 該當年度 開始 1月前에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第 ① 項의 業務計劃에 있어서는 法 第 18 條 第 ① 項 第 1 號 乃至 9 號 및 法 第 18 條 第 ② 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供給計劃과 法 第 4 條 第 19 條 第 20 條의 規定에 依한 資金調達計劃을 區分하고 分期別 業務計劃을 첨부하여야 한다.	
	1977. 12. 29	① 이 銀行은 每事業年度마다 業務計劃을 作成하여 該當年度 開始 1月前에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第 ① 項의 業務計劃에 있어서는 法 第 18 條 第 ① 項 및 第 ② 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供給計劃과 法 第 4 條 第 19 條 第 20 條의 規定에 依한 資金調達計劃을 區分하고 分期別 業務計劃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 29 條 (業務方 法書)	1976. 7. 1	① 이 銀行은 中長期信用에 依한 輸出入, 技術提供, 海外投資 및 對外經濟協力等에 必要한 金融을 支援供與함에 있어 資金의 貸付,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保證의 方法과 融資比率, 利率, 料率, 期限, 債券의 取得方法, 元利金の 回收方法, 債券保證의 條件, 業務의 委託 等 業務處理의 基準이 되는 業務方法書를 制定하여 運用할 수 있다. ② 第 ① 項의 業務方法書는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1977. 12. 29	① 이 銀行은 輸出入, 技術提供, 海外投資 및 對外經濟協力 等에 必要한 金融을 支援供與함에 있어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保證의 方法과 融資比率, 利率, 料率, 期限, 債券의 取得方法, 元利金の 回收方法, 債券保證의 條件, 業務의 委託 等 業務處理의 基準이 되는 業務方法書를 制定하여 運用할 수 있다. ② 第 ① 項의 業務方法書는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 30 條 (貸出, 割引의 利率 및 債務保證의 料率)	1976. 7. 1	처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1977. 12. 29	(貸付, 割引의 利率 및 債務保證의 料率) 이 銀行이 法 第 18 條의 規定에 따라 行하는 貸付 또는 割引의 利率과 債務保證의 料率을 定함에 있어서는 事務取扱費, 業務代行手數料, 借入金利子 其他 諸費用과 資産의 減價償却에 充當할 수 있도록 定하여야 한다.	
第 31 條 (業務의 制限)	1976. 7. 1	① 이 銀行이 法 第 18 條 第 ① 項 第 1 號 乃至 第 9 號에 依한 資金의 貸付, 어음의 割引,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支給 또는 履行이 確實하게 認定되어야 하며 償還 또는 履行期間이 6個月 以上 10年 以內인 中長期 貸付에 限한다. 다만, 國際去來의 實態에 비추어 그 償還 또는 履行에 特히 長期間이 必要하다고 委員會가 認定하는 경우에는 最長 20년까지 할 수 있다. ② 法 第 18 條 第 ② 項의 資金의 貸付期間은 20年 以內로 한다. ③ 이 銀行이 法 第 18 條 第 ② 項의 規定에 依한 貸付를 行하는 限度는 政府가 出資 또는 貸下한 金額(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金額 除外)과 積立金 및 剩餘金의 合計額으로 한다.	
	1977. 12. 29	① 이 銀行이 法 第 18 條 第 ① 項에 依한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支給 또는 履行이 確實하게 認定되어야 하며 償還 또는 履行期間이 6個月 以上 10年 以內인 中長期 貸出에 限한다. 다만 國際去來의 實態에 비추어 그 償還 또는 履行에 特히 長期間이 必要하다고 委員會가 認定하는 경우에는 最長 20년까지 할 수 있다. ② 法 第 18 條 第 ② 項의 資金의 貸出期間은 20年 以內로 한다.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③ 이 銀行이 法 第 18 條 第 ② 項의 規定에 依한 貸出을 行하는 限度는 政府가 出資 또는 貸下한 金額(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金額 除外)과 積立金 및 剩餘金의 合計額으로 한다.	
第 32 條 (他金融機關과의 競爭禁止)	1976. 7. 1	이 銀行은 法 第 18 條에 規定하는 業務를 營爲함에 있어서 他金融機關과 競爭하지 아니한다.	
		第 6 章 輸出入金融債券	
第 33 條 (輸出入金融債券)	1976. 7. 1	이 銀行은 法 第 20 條 및 同施行令 第 18 條 乃至 第 31 條의 定하는 바에 따라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	
		第 7 章 會 計	
第 34 條 (事業年度)	1976. 7. 1	이 銀行의 事業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 35 條 (豫算)	1976. 7. 1	이 銀行은 事業年度마다 收入과 支出豫算을 編成하여 當該 事業年度가 開始되기 1月前에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36 條 (追加更正豫算)	1976. 7. 1	이 銀行은 豫算成立後에 생긴 事由로 因하여 豫算에 變更을 加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할 수 있으며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37 條 (豫備費)	1976. 7. 1	① 이 銀行은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하여 豫算에 豫備費를 計上할 수 있다. ② 第 ① 項의 豫備費의 使用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 38 條 (退職慰勞 金)	1976. 7. 1	이 銀行은 退職하는 任員과 職員에게 退職慰勞金を 支給할 수 있다.	
第 39 條 (賞與金)	1976. 7. 1	이 銀行은 任員과 職員에게 賞與金を 支給할 수 있다.	
第 40 條 (研究費와 海外派 遣費)	1976. 7. 1	이 銀行은 優秀한 職員 또는 其他 適格者에게 研究費 또는 海外派遣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 41 條 (決算)	1976. 7. 1	① 이 銀行은 每事業年度の 決算을 當該 事業年度經過後 60日以内に 完結하고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理計算書 等の 決算書와 事業計劃實績分析報告書, 財務諸表附屬書類 및 決算內容에 必要한 書類를 作成하여 財務部長官을 거쳐 大統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 이 銀行이 第 ① 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公告하고 本店, 支店, 出張所와 代理店에 備置하여야 한다.	
第 42 條 (利益金の 處理)	1976. 7. 1	이 銀行은 事業年度마다 資産의 減價償却에 充當한 後에 決算總利益金を 다음 各 號의 順位에 依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1. 資本金의 總額에 達할 때까지 利益金の 100分の 20을 積立한다. 2. 政府以外의 出資者에 對하여는 配當率이 100分の 15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優先的으로 利益金を 配當한다. 3. 積立金과 配當金を 除外한 殘餘利益金は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處理한다.	
第 43 條 (損失金の 補填)	1976. 7. 1	이 銀行의 決算 純損失金은 事業年度마다 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이 不足할 때에는 政府가 補填한다.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 8 章 其 他	
第 44 條 (公告의 方法)	1976. 7. 1	이 銀行의 公告는 官報와 서울特別市에서 發刊되는 1 以上の 日刊新聞에 掲載한다.	
	1986. 3. 7	이 銀行의 公告는 서울特別市에서 發刊되는 1 以上の 日刊新聞에 掲載한다.	
第 45 條 (業務의 代行)	1976. 7. 1	이 銀行은 그 營爲하는 業務의 一部를 他金融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 46 條 (餘裕金의 運用)	1976. 7. 1	이 銀行은 다음 各 號의 方法에 依하는 外에는 業務上 餘裕金을 運用하지 못한다. 1. 國債의 保有 2. 韓國銀行에의 預入 3. 其他 財務部長官이 定하는 方法	
第 47 條 (外國換業 務)	1976. 7. 1	이 銀行은 外國換管理法과 貿易去來法の 規定에 따라 外國換業務를 營爲할 수 있다.	
		補 則	
第 48 條 (職制)	1976. 7. 1	이 銀行의 職制는 運營委員會의 決議를 거쳐 銀行長이 定한다. 다만 이 銀行이 設立當時 設立委員會의 議決을 받아 確定한 職制는 따로 運營委員會의 決議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977. 12. 29	이 銀行의 職制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銀行長이 定한다. 다만 이 銀行이 設立當時 設立委員會의 議決을 받아 確定한 職制는 이 定款에 依하여 確定한 것으로 본다.	
第 49 條 (顧問囑 託)	1976. 7. 1	이 銀行은 그 業務의 遂行을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大韓民國國民 또는 外國人을 顧問이나 囑託으로 雇傭할 수 있다.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第 50 條 (適用範圍)	1976. 7. 1	이 定款 第 37 條 乃至 39 條, 第 41 條, 第 42 條는 第 22 條 ③ 項의 業務를 遂行하는 境遇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977. 12. 29	이 定款 第 41 條 乃至 43 條, 第 45 條, 第 46 條는 第 26 條 ④ 項의 業務를 遂行하는 境遇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1976. 7. 1	이 定款은 이 銀行이 設立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經過措置)	1976. 7. 1	이 銀行의 첫 事業年度는 이 銀行이 設立되는 날로부터 1976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 3 條 (設立委員會의 記名捺印)	1976. 7. 1	設立委員一同은 韓國輸出入銀行法 附則 第 2 條 第②項의 規定에 依하여 이 定款을 作成하고 다음에 記名捺印한다.	
		1976. 5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 82番地 財務部次官	조 충 훈
		서울特別市鍾路區貫鐵洞 10番地 韓國輸出入銀行 銀行長	송 인 상
		서울特別市中區南大門路 3街 110番地 韓國銀行 副總裁	하 영 기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 82番地 財務部財政次官補	고 병 우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 77番地 商工部商易次官補	박 필 수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 82番地 財務部理財局長	하 동 선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 82番地 財務部國際金融局長	정 인 용
		서울特別市鍾路區貫鐵洞 10番地 韓國外換銀行 專務理事	홍 완 모
		서울特別市鍾路區貫鐵洞 10番地	이 태 호

	制定・改正 年 月 日	條 文	備 考
		附 則(1) 이 定款은 1977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2) 이 定款은 1977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3) 이 定款은 1977年 12月 29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4) 이 定款은 1986年 3月 7일부터 施行한다.	

7. 韓國輸出入銀行 業務方法書

制定：1969년 10월 27일 改正：1977년 9월 1일
 改正：1971년 7월 22일 改正：1977년 12월 29일
 改正：1971년 7월 22일 改正：1979년 1월 12일
 改正：1971년 10월 1일 改正：1979년 5월 15일
 改正：1972년 3월 23일 改正：1979년 8월 31일
 改正：1972년 5월 24일 改正：1979년 11월 10일
 改正：1973년 1월 13일 改正：1980년 1월 18일
 改正：1973년 5월 31일 改正：1980년 7월 10일
 改正：1974년 4월 10일 改正：1981년 2월 6일
 改正：1974년 5월 15일 改正：1981년 5월 19일
 改正：1974년 12월 20일 改正：1981년 11월 17일
 改正：1975년 3월 19일 改正：1982년 2월 18일
 改正：1975년 4월 17일 改正：1982년 12월 1일
 改正：1976년 8월 2일 改正：1983년 3월 9일
 改正：1977년 1월 1일 改正：1984년 3월 22일
 改正：1977년 2월 9일 改正：1984년 11월 5일
 改正：1977년 3월 31일 改正：1985년 6월 26일
 改正：1977년 5월 2일 改正：1985년 8월 31일
 改正：1977년 5월 31일 改正：1985년 12월 30일
 改正：1977년 7월 1일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業務方法書(以下 “方法書”라 한다)는 韓國輸出入銀行法(以下 “法”이라 한다) 第 29 條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輸出入銀行(以下 “輸出入銀行”이라 한다) 이 法 第 18 條에 規定된 輸出入, 技術提供, 海外投資 및 對外經濟協力 等에 관한 金融을 供與함에 있어서의 業務處理의 基準을 正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業務의 種類) 輸出入銀行은 延拂 輸出과 輸出目的物의 生産期間 및 建設工事의 工事期間이 長期인 對外去來 等 法 第 18 條에 規定된 다음의 業務를 행한다.

1. 韓國輸出入銀行法施行令(以下 “施行令”이라 한다) 第 13 條에 정하는 製品의 輸出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 輸出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以下 “輸出資金貸出”이라 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銀行法 第 3 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韓國產業銀行, 韓國長期信用銀行 및 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 第 2 條의 規定에 의

한 綜合金融會社를 말한다. 以下 “金融機關”이라 한다)에 대한 割引(以下 “輸出資金貸出에 대한 割引”이라 한다)

2. 海外輸出市場의 確保, 開拓 또는 經濟交流의 促進 또는 外貨獲得에 寄與하는 것으로 認定되는 海外에 대한 技術의 提供(海外建設工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以下 “技術提供資金貸出”이라 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發行된 어음의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以下 “技術提供資金貸出에 대한 割引”이라 한다)

3.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의 輸入 또는 技術의 導入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에 必要한 資金의 外國政府(外國政府機關과 外國의 地方公共團體를 包含한다) 또는 外國人(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包含한다)에 대한 貸出(以下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貸出”이라 한다)

4. 施行令 第 14 條에 정하는 重要物資의 輸入資金 또는 그 輸入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그 輸入代金의 先給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以下 “輸

入資金貸出”이라 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發行된 어음의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以下
“輸入資金貸出에 대한 割引”이라 한다)

5. 海外輸出入市場의 開拓 및 確保, 施行令
第 14 條에 정하는 重要物資 및 施行令
第 15 條의 2에 정하는 主要資源의 確保
또는 外國과의 經濟交流를 促進하기 위하
여 大韓民國 國民 또는 大韓民國 國民이
全額出資(株式의 全部를 所有하는 경우
包含)한 外國法人이 外國에서 營爲하는
事業의 設備(船舶과 車輛을 包含한다)를
新設 또는 擴充함에 必要한 資金과 이를
運營함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以下 “海外事業資金貸出”이라
한다)

6. 施行令 第 15 條의 規定에 의한 海外投
資資金과 外國政府 또는 外國인에 대한
設備의 貸與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以下 “海外投資資金貸
出”이라 한다)

7. 第 6 號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이 出
資(株式의 取得을 包含한다)하고자 하는
外國法人에 出資하기 위하여 必要한 資金
의 外國政府 또는 外國인에 대한 貸出(以
下 “外國政府 等에 대한 出資資金貸出”이
라 한다)

8. 大韓民國 國民으로부터 製品을 輸入하
거나 技術을 導入한 者가 이로 인하여 發
生된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債務를 履行
함이 그 居住國의 國際收支上 顯著하게
 곤란한 경우에 그 債務의 圓滑한 履行에
必要한 資金의 當該 外國政府 또는 外國
金融機關에 대한 貸出(以下 “外國政府 等
에 대한 對韓決濟資金貸出”이라 한다)

9. 第 1 號, 第 2 號, 第 4 號 내지 第 6 號
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의 貸出을 받을 수
있는 大韓民國 國民이 그 資金을 金融機
關으로부터 貸出받을 경우 그 債務의 保
證(以下 “債務保證”이라 한다)

10. (削 除)

11. 施行令 第 15 條의 2에서 정하는 主要
資源의 開發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必要
한 事前準備, 調査 및 鑛業權, 기타 權利
의 取得에 必要한 資金 및 기타 海外投資
支援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

(以下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貸出”이라
한다)

12. 海外特定地域의 産業發展에 寄與하며
우리나라와의 經濟交流增進을 促進하기
위하여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에 必要
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 外國政府 및
外國인에 대한 貸出 또는 當該事業에 必
要한 長期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當該
外國政府 또는 外國인이 發行하는 債券의
取得(以下 “對外經濟協力資金貸出”이라
한다)

13. 前 各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로서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業務

第 3 條 (用語의 定義) ① 法, 施行令 및 方
法書에서 大韓民國 國民이라 함은 大韓民國
의 國籍을 保有하는 自然인과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서 다음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保有하는 自然人이
라 함은 大韓民國의 國籍을 保有하고 大
韓民國에 居住하는 自然人을 말하며 그
자연인이 二重國籍을 保有하는 경우에는
原則적으로 大韓民國에 生活의 本據를 둔
者로 한다.

2.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
人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서 出資者, 株主 및 任員
의 構成 等を 綜合적으로 檢討하여 前號
의 大韓民國의 國籍을 保有하는 自然人에
의하여 實質적으로 支配 運營되고 있다고
認定되는 法人을 말한다.

② 法, 施行令 및 方法書에서 技術이라 함
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1. 産業施設(船舶과 車輛을 包含한다)과
이를 위한 原料, 豫備品, 部分品 및 附屬
品の 設置 또는 運營에 隨伴하는 技術 等
의 用役 및 調査, 設計, 監理

2. 海外建設工事와 海外建設用役

3. 其他 前各號에 準하는 것으로서 海外
輸出入市場의 開拓 및 確保와 國際收支改
善을 위하여 金融支援이 특히 緊要하다고
銀行長이 認定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얻은
用役

③ 方法書에서 先受金이라 함은 當該去來의
契約書에 정하는 바에 따라 去來目的物의
引渡完了時까지 受領되는 金額을 말한다.

④ 方法書에서 一覽拂去來라 함은 去來目的 物의 引渡完了時까지 當該 輸出契約金額中 瑕疵保證 等의 事由로 未回收되는 分을 除外한 全額이 入金되는 去來를 말한다.

第4條 (業務의 制限) 輸出入銀行은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경우에 한하여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할 수 있다.

1. 金融機關이 一般的인 條件으로는 取扱할 수 없는 경우
2. 第2條 第1號 내지 第9號의 業務는 當該貸出金의 償還, 割引어음의 支給 또는 保證債務의 履行이 確實하다고 認定되는 경우
3. 當該 貸出金의 償還, 割引어음의 支給 또는 保證債務의 履行期間이 6月 이상 10年 이내인 경우, 다만, 施行令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定된 것과 第2條 第11號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것은 6月 이상 20年 이내인 경우
4. 當該 去來가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과 國際收支 改善에 顯著히 寄與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既存 一般輸出去來秩序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며 法, 施行令 및 方法書에 規定된 金融支援이 특히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

第5條 (融資方式) ① 第2條의 業務中 資金의 貸出은 輸出入銀行이 單獨으로 取扱(以下 “單獨融資”라 한다)하거나 1個 이상의 金融機關 또는 外國金融機關과 協調하여 融資(以下 “協調融資”라 한다)할 수 있다. ② 第2條의 業務中 第1號 및 第2號 資金의 貸出에 있어서 協調融資에 관한 事項은 運營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金融機關이 輸出者, 輸出品生産者 또는 技術提供者(以下 “供給者”라 한다)에게 輸出에 必要한 資金, 技術提供에 必要한 資金 또는 輸出에 必要한 原料, 材料 및 機材 等의 輸入代金의 先給에 必要한 資金을 貸出した 것이 法, 施行令 및 方法書에 規定된 要件을 具備한 경우에는 取扱金融機關에 대하여 어음을 割引한다.

第6條 (事前協議 및 豫備承認) 輸出入銀行으로부터 또는 金融機關을 통하여 法, 施行令 및 方法書에 의한 資金의 貸出, 어음

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받고자 하는 者는 事前에 輸出入銀行과 去來條件 기타에 관하여 協議하고 豫備承認을 得하여야 한다. 輸出入銀行은 위의 豫備承認을 得한 것에 한하여 貸出, 割引 또는 債務에 대한 保證을 한다. 다만, 支援對象要件에 適合한 去來로서 輸出入銀行長(以下 “銀行長”이라 한다)이 부득이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第7條 (約定手数料) 第2條의 業務中 資金의 貸出에 있어서는 年 1,000 分の 5 이내에서 理事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約定手数料를 徵收한다.

第7條의 2 (利子減免等)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銀行長은 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利子(延滯利子를 包含한다)를 減免할 수 있다.

1. 國營企業體 또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法人이나 團體에 대한 貸出金으로서 利子の 減免이 부득이하다고 認定될 때
2. 會社整理法의 規定에 따라 作成된 法院의 整理計劃에 同意한 때
3. 債權回收의 最終的인 方法으로서 對外, 對內에 모든 擔保權을 實行하여도 回收不能할 때
4. 企業正常化를 위한 主要方案으로서 貸出金에 대한 利子減免이 부득이하다고 認定될 때
5.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貸出金으로서 延滯利子の 減免이 부득이하다고 認定될 때

②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銀行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貸出金 償還計劃을 調整할 수 있다.

1. 輸入當事國의 對外債務 償還計劃調整이 國際적으로 合意된 境遇
2. 輸出者가 中小企業으로서 延拂代錢의 回收가 불가능하여 同企業의 계속적인 事業營爲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第7條의 3 (外資材依存率等) 輸出入銀行 支援對象品目에 대한 外資材依存率 또는 國產機資材率은 理事會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7條의 4 (國別信用度 評價) 輸出入銀行

이 支援하는 去來의 相對國에 對한 國別信用度 評價에 關하여는 理事會가 따로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 2 章 輸出資金貸出

第 8 條 (融資對象) 輸出資金貸出은 다음各號의 要件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一覽拂去來를 除外한 延拂去來에 있어서는 輸出契約金額에 對하여 플랜트와 機械類는 100 分の 15, 플랜트와 機械類 이외의 品目은 100 分の 20에 該當하는 先受金(以下 “基準先受金”이라 한다) 이상을 受領하는 것일 것.

다만, 國際去來 慣例上 위와 같이 決濟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當該去來가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開拓과 國際收支改善에 顯著히 寄與하는 것으로서 金融支援이 특히 緊要하다고 銀行長이 認定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輸出契約 등에서 約定하는 延拂利率 및 延拂期間은 다음의 條件을 갖춘 것일 것. 다만, 當該輸出이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開拓 또는 對外經濟協力の 增進에 크게 寄與하는 것으로서 支援이 必要하다고 銀行長이 認定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輸出契約金額에서 先受金を 控除한 殘額에 對한 延拂利率은 別表(輸出入銀行貸出利率) 1. 가에 따라 理事會가 따로 定하는 引渡後金融 貸出利率 以上일 것.

나. 위의 殘額에 對한 元利金은 다음 表에 定한 期間 이내에서 輸出目的物의 引渡後 年 1 回 이상 定期分割償還되는

것일 것. 다만, 플랜트, 船舶, 鐵道車輛, 機械類, 電氣機器의 경우 延拂代錢 償還期間이 5 年을 超過하는 長期延拂 輸出去來에 있어서는 다음 表에 定한 期間 이내에서 引渡後 2 年이내의 据置 期間을 들 수 있다.

3. 다음의 要件을 갖춘 去來로서 當該契約과 관련된 債權回收가 可能하다고 銀行長이 認定하는 것일 것. 다만, 國際去來 慣例上 信用狀이나 支給保證書가 一般의 으로 發行되지 않는 경우, 輸入國의 政策上 信用狀이나 支給保證書의 發行이 禁止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하다고 認定되는 경우로서 銀行長이 理事會의 議決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外國의 一流銀行이 發行 또는 確認한 取消不能信用狀이나 支給保證書가 있거나,

나. 輸入國의 政府機關이나 金融機關의 支給保證書가 있을 것.

4. 輸出價額이 外國換管理法上의 指定領受通貨로 決濟되는 것일 것.

5. 外貨債權額의 確定에 支障을 주는 條項이 없을 것.

6. 기타 銀行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要件을 갖춘 것일 것.

7. 輸出入銀行의 融資承認을 얻은 原輸出契約書 또는 原輸出信用狀에 의하여 發行된 輸出物資購買를 위한 輸出入銀行內國信用狀 또는 國內物品供給契約書는 輸出資金融資對象이 된다.

第 8 條의 2 (融資區分) 第 2 條 第 1 號에 規定된 輸出資金貸出은 輸出目的物의 引渡時期까지의 引渡前金融과 輸出目的物의 引渡完了後 未回收代金の 回收時期까지의 引渡後金融으로 이를 區分한다.

第 9 條 (融資條件) ① 引渡前金融의 融資條件

1. 對象者

當該 輸出目的物을 輸出하거나 또는 生産하는 國內業者로 한다.

2. 融資形式

外貨表示 어음貸出로 한다. 다만, 理事會가 別途로 定하는 境遇에는 元貨表示 어음貸出로 取扱할 수 있다.

3. 融資比率

輸出契約金額 品 目	100 萬美弗 초 과	100 萬美弗 이 하
플랜트, 機械類, 鐵道車輛	10 年	7 年
船 舶	8.5 年	5 年
部品類 및 乘用車 (버스包含)	3 年	2 年
其 他 品 目	5 年	3 年

가. 輸出入銀行의 融資總額은 當該 輸出契約金額에서 이미 受領한 金額을 控除한 殘額에 대하여 다음의 比率 範圍內에서 當該 輸出目的物의 生産 또는 輸出에 必要한 國內所要資金으로 한다. 다만, 原資材 延拂輸入을 위한 外國調達資金을 財源으로 하는 境遇와 協調融資가 곤란하다고 銀行長이 認定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얻은 境遇에는 다음의 比率 範圍內에서 國外所要資金을 包含할 수 있다.

플랜트, 船舶, 鐵道車輛, 機械類, 電氣機器	100 분의 90
部 品 類	100 분의 70
鐵道用以外の車輛 및 其他 品 目	100 분의 75

나. 中小企業(中小企業 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를 말한다. 以下 “中小企業”이라 한다)이 製作하여 輸出(以下 “中小企業輸出”이라 한다)하는 境遇 輸出入銀行의 融資總額은 當該 輸出契約金額에서 이미 受領한 金額을 控除한 殘額에 대하여 100 분의 90 範圍內에서 當該 輸出目的物의 生産 또는 輸出에 必要한 國內外 所要資金으로 한다.

다. 理事會가 따로 定한 低金利通貨로 融資하는 境遇에는 前 各號의 融資比率(中小企業 輸出去來의 境遇에는 100 분의 90)範圍內에서 當該 輸出目的物의 生産 또는 輸出에 必要한 國內外 所要資金으로 한다.

라. 輸出入銀行內國信用狀이나 國內物品供給契約書에 대한 融資는 原輸出契約書 또는 原輸出信用狀에 대한 輸出入銀行 融資承認額 範圍內에서 실제 所要되는 資金으로 한다.

4. 利率 및 利子徵收方法

가. 別表에서 定하는 利率로 한다.

나. 利子は 每 3 個月마다 先取함을 原則으로 한다. 元金償還期日 또는 利子支給期日이 經過한 後에는 理事會가 따로 定하는 延滯貸出金利率을 各該 適用한다.

5. 融資期間

最初 貸出取扱日로부터 輸出目的物의 引渡期日에 30日을 加算한 期間內에서 資金이 실제 所要되는 期間으로 한다. 다만 當事者間에 當該 去來의 引渡期日 延長의 合議가 있거나, 輸出者에게 歸責되지 아니하는 事由로 引渡가 遲滯되는 경우에는 銀行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融資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이 경우 銀行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當局의 承認 및 輸出者의 過失없음을 確認할 수 있는 證憑書類를 徵求한다.

6. 償還方法

輸出入銀行과 協調金融機關의 引渡後金融이 取扱될 때에는 그 融資金額中에서 먼저 回收한다. 先受金이 融資限度에 算入되었을 境遇, 當該 輸出目的物의 引渡完了以前에 入金되는 金額은 第3號의 融資比率 및 協調融資 分擔比率에 따라 回收한다.

7. 擔保

原則적으로 國內의 擔保를 取得하고 連帶保證人을 세우도록 한다.

다만, 擔保가 不足한 경우에는 信用이 確實하여 償權回收가 可能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銀行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信用貸出할 수 있다.

② 引渡後金融의 融資條件

1. 對象者

當該 輸出目的物을 輸出하는 國內業者로 한다.

2. 融資形式

外貨表示 證書貸出로 한다.

3. 融資比率

가. 輸出入銀行의 融資總額은 當該 輸出契約金額에서 基準先受金을 控除한 殘額에 대하여 100분의 85 範圍內로 한다.

다만, 原資材 延拂輸入을 위한 外國調達資金을 財源으로 하거나 協調融資가 곤란하다고 銀行長이 認定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얻은 境遇에는 同融資比率을 超過하여 取扱할 수 있다.

나. 中小企業 輸出去來로서 理事會의 議決을 얻은 境遇와 理事會가 따로 定한 低金利通貨로 融資하는 境遇의 貸出

은 當該 輸出契約金額에서 基準 先受金
을 控除한 殘額 範圍內로 할 수 있다.

4. 利率 및 利子徵收方法

가. 別表에 정하는 利率로 한다.
나. 利子は 當該 去來의 支給保證書,
信用狀 또는 關係契約書의 利子支給計
劃에 따라 後取할 수 있으며 元金償還
期日 또는 利子支給期日이 經過한 後에
는 理事會가 따로 定하는 延滯貸出金利
率을 각각 適用한다.

5. 融資期間

가. 引渡後金融의 貸出取扱日로부터 當
該去來의 支給保證書, 信用狀 또는 關
係契約書에 約定된 分割償還日에 30日
을 加算한 期間內로 한다.
다만, 輸出契約當事者에게 歸責되지 아
니하는 事由로서 부득이하다고 認定되
는 경우에 한하여 銀行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融資期間을 延長할 수 있
다.

나. 前가號의 規定에 의한 引渡後金融
의 融資期間은 引渡前金融의 融資期間
을 通算하여 第4條 第3號에 規定된
期間을 超過할 수 없다.

6. 償還方法

當該去來의 支給保證書, 信用狀 또는 關
係契約書의 分割償還計劃에 따라 定期分
割償還을 받는다.

7. 擔保

가. 當該去來와 關聯된 債權, 信用狀,
支給保證書, 어음 등을 理事會가 정하
는 바에 따라 擔保로 取得한다.

나. 前가號의 規定에 의한 擔保以外에
國內의 擔保를 取得하거나 連帶保證人
을 세우도록 하며, 必要하다고 認定되
는 境遇에는 輸出保險에 付保토록 한
다.

8. 輸出目的物의 引渡確認

當該融資에 관련된 契約에 따라 償還을
保證한 銀行, 또는 輸入者가 政府機關인
경우에는 當該政府機關이 輸出目的物의
引受를 確認하는 證憑을 受領한다.

다만, 輸出目的物을 船積함으로써 外貨
債權額이 確定되는 契約에 있어서는 船積
을 確認하는 證券等を 徵求함으로써 輸出
目的物의 引渡完了를 確認한다.

第3章 技術提供資金貸出

第10條 (融資對象) 第8條의 플랜트의 경
우에 準한다.

第10條의 2 (融資區分) 第2條 第2號에
規定된 技術提供 資金貸出은 技術提供完了
時까지의 技術提供前金融과 技術提供完了
後 未回收代金의 回收時期까지의 技術提供
後金融으로 이를 區分한다.

第11條 (融資條件) 融資條件은 다음과 같
다.

1. 對象者

當該技術을 提供하는 國內業者로 한다.

2. 融資形式

技術提供前金融은 第9條 第①項 第2號
에, 技術提供後金融은 제9條 第②項 第
2號에 각각 準한다.

3. 融資比率

가. 技術提供前金融은 第9條 第①項
第3號의 플랜트의 경우에 準한다.

나. 技術提供後金融은 第9條 第②項
第3號에 準한다.

4. 利率 및 利子徵收方法

가. 別表에서 정하는 利率로 한다.

나. 利子徵收方法은 技術提供前金融은
第9條 第①項에, 技術提供後金融은 第
9條 第②項에 각각 準한다.

5. 融資期間

技術提供前金融은 第9條 第①項 第5號
에, 技術提供後金融은 第9條 第②項 第
5號에 각각 準한다.

6. 償還方法

가. 技術提供前金融은 第9條 第①項
第6號에 準한다.

나. 技術提供後金融은 第9條 第②項
第6號에 準한다.

7. 其他 融資條件

擔保, 技術提供의 確認 등에 관하여는 第
9條의 規定에 準한다.

第4章 輸入資金貸出

第12條 (融資對象) 輸入資金의 貸出은 施
行令 第14條에 정하는 重要物資의 輸入 및
輸入資金의 先給에 必要한 資金을 支援하는

경우에 한한다.

第13條 (融資條件) 融資條件은 다음과 같다.

1. 對象者

當該 重要物資로 輸出品을 生産 輸出하거나 輸出用原資材를 生産 供給하는 國內業者로 한다.

2. 融資形式

外貨表示 어음貸出 또는 證書貸出로 한다.

3. 融資比率

輸入 및 輸入先給金額의 100 분의 80 範圍內로 한다.

4. 償還方法

當該 重要物資를 使用하여 生産한 輸出品 또는 輸出用 原資材의 輸出 또는 供給代錢으로 償還받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5. 融資期間

償還期間은 2 年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延長하고 이를 委員會에 報告한다.

6. 其他 融資條件

擔保, 契約上의 具備要件 등에 관하여는 第9條의 規定에 準한다.

第5章 輸出, 技術提供 또는 輸入 資金貸出에 대한 割引

第14條 (割引對象) 輸出資金貸出, 技術提供資金貸出, 輸入資金貸出에 대한 割引은 法, 施行令 및 方法書에 規定된 要件을 具備하고 있는 경우, 다음에 列擧하는 어음 등으로서 取扱金融機關이 背書한 것에 대하여 이를 取扱한다. 다만, 協調融資의 경우에 있어 金融機關이 分擔한 金額에 대하여는 이를 割引하지 아니한다.

1. 供給者가 取扱金融機關을 受取人으로서 하여 發行한 約束어음

2. 保證人이 發行하고 供給者를 支給人 또는 引受人, 取扱金融機關을 受領人으로서 하는 換어음

第15條 (割引條件) 割引條件은 다음과 같다.

1. 對象者

輸出, 技術提供 또는 輸入 및 輸入先給에 所要되는 資金을 貸出した 金融機關으로 한

다.

2. 割引比率

輸出, 技術提供 또는 輸入資金貸出에 대한 割引金額은 第9條, 第11條 및 第13條에서 規定한 融資比率 範圍內에서 金融機關이 실제 貸出した 金額으로 한다.

3. 割引率 및 割引料 徵收方法

輸出入銀行資金 貸出利率에서 年 100 분의 1을 減한 率로 한다.

割引料의 徵收는 第9條 第①項 第4號 및 第9條 第②項 第4號에 準한다.

4. 償還方法

融資取扱時에 받는 當該貸出에 관련된 어음 등을 그 期日에 割引받은 金融機關에 提示하여 融資金을 回收한다.

5. 其他 割引條件

割引期間, 擔保, 契約上의 具備要件, 輸出目的物의 引渡完了確認 또는 技術提供完了確認 등에 관하여는 第9條, 第11條 및 第13條의 規定에 각각 準한다.

第6章 外國政府, 外國金融機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貸出

第16條 (外國政府 等에 대한 貸出) 第2條 第3號, 第7號 및 第8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政府, 外國金融機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貸出에 관한 事項은 委員會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7條 (削除)

第7章 海外事業資金貸出

第18條 (融資對象) 海外事業資金의 貸出은 그 事業의 設備의 新設 또는 擴充에 所要되는 資材의 大部分이 大韓民國에서 生産되는 物品으로 充當되는 경우를 原則으로 한다.

第19條 (融資條件) 融資條件은 다음과 같다.

1. 對象者

外國에서 事業을 營爲하는 國內業者로 한다.

2. 融資形式

外貨表示 어음貸出 또는 證書貸出로 한다.

3. 融資比率

輸出入銀行의 融資總額은 當該事業에 必要한 設備의 新設, 擴充 또는 運營에 所要되는 資金總額의 100분의 70 範圍內로 한다.

다만, 中小企業에 對하여는 100분의 80範圍內로 한다.

4. 利率 및 利子徵收方法

가. 別表에서 定하는 利率로 한다.

나. 利子는 當該事業의 關係契約書 또는 事業計劃書의 利子支給計劃에 따라 後取할 수 있으며 元金償還期日 또는 利子支給期日이 經過한 後에는 理事會가 따로 定하는 延滯貸出金利率을 각각 適用한다.

5. 融資期間

所要資金總額에 따라 그 償還期間은 다음에 定한 期間 이내로 한다.

100萬美弗 초과 : 10年

100萬美弗 이하 : 7年

다만, 부득이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 한하여 銀行長은 第4條 第3號에 의한 期間內에서 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延長할 수 있다.

6. 償還方法

當該事業에 의한 分割償還計劃에 따라 年1回 이상 定期分割償還 받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3年이내의 据置期間을 들 수 있다.

7. 擔保

原則적으로 國內의 擔保를 取得하며 連帶保證人을 세우도록 한다. 다만, 擔保가 不足한 경우에 當該事業의 事業性 등으로 보아 債權回收가 可能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銀行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信用貸出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保險에 付保하여야 한다.

第8章 海外投資資金貸出

第20條 (融資對象) 海外投資資金貸出은 다음 경우에 한한다.

1. 施行令 第15條에 規定된 海外投資資金

2.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設備의 貸與에 必要한 資金. 다만, 當該設備의

大部分이 大韓民國에서 生産되는 資材로서 充當되는 경우를 原則으로 한다.

第21條 (融資條件) 融資條件은 다음과 같다.

1. 對象者

海外投資를 行하는 國內業者로 한다.

2. 融資比率

所要資金總額의 100분의 70 範圍內로 한다.

다만, 中小企業에 對하여는 100분의 80範圍內로 한다.

3. 其他 融資條件

第19條에 準한다.

第9章 債 務 保 證

第22條 (保證) 債務保證은 金融機關이 取扱하는 貸出이 法, 施行令 및 方法書에 規定된 要件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取扱한다.

第23條 (保證條件) 保證條件과 方法은 다음과 같다.

1. 依頼人

第2條 第1號, 第2號, 第4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을 받는 國內業者로 한다.

2. 受惠者

貸出을 取扱하는 金融機關으로 한다.

3. 保證形式

證書에 의한 保證形式에 의한다.

4. 保證金額 및 保證期間

가. 依頼人과 受惠者間에 締結된 契約上의 保證限度範圍內로 한다.

나. 保證期間은 當該去來의 融資期間에 30日을 加算한 期間이내로 한다.

5. 保證 및 代支給料率

理事會가 따로 定하는 料率로 한다.

6. 擔保

第9條 第①項 第7號에 準한다.

7. 代支給

가. 代支給 發生時는 當該 保證通貨表示 代支給金으로 處理한다.

나. 代支給金은 遲滯없이 依頼人으로부터 回收措置하되, 즉시 回收할 수 없을 때에는 理事會가 따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整理한다.

第9章의2 先受金還給保證

第23條의2 (先受金還給保證)

1. 對 象

法 第18條에 規定된 與信業務 取扱時 先受金還給保證은 當該 契約書에서 要求된 경우에 한한다.

2. 依頼人

法, 施行令 및 方法書에 規定된 要件을 갖춘 大韓民國 國民으로 한다.

3. 受惠者

當該去來의 先受金を 支給하는 外國의 契約當事者로 한다.

4. 保證形式

支給保證形式에 의하되 契約書에 明示된 所定樣式에 따를 수 있다.

5. 保證金額 및 保證期間

가. 受領하였거나, 受領할 先受金과 依頼人이 負擔할 그 利子の 合計額 範圍 內로 한다.

나. 保證期間은 當該去來의 契約書에 明示된 引渡日 또는 事業의 完了日 이 內로 한다.

6. 其他 要件

保證 및 代支給料率, 擔保, 代支給 等に 관하여는 第23條의 規定에 準한다.

第9章의3 契約履行保證

第23條의3 (契約履行保證)

1. 對 象

法 第18條에 規定된 與信業務 取扱時 契約履行保證은 當該 契約書에서 要求된 경우에 한한다.

2. 依頼人

法, 施行令 및 方法書에 規定된 要件을 갖춘 大韓民國 國民으로 한다.

3. 受惠者

當該去來의 契約를 締結한 外國의 契約當事者로 한다.

4. 保證形式

支給保證形式에 의하되 契約書에 要求된 所定樣式에 따를 수 있다.

5. 保證金額 및 保證期間

가. 契約書에 明示된 保證金額 範圍內

로 한다.

나. 保證期間은 契約書에 要求된 期間 內로 한다.

6. 其他 要件

保證 및 代支給料率, 擔保, 代支給 等に 관하여는 第23條의 規定에 準한다.

第9章의4 對外債務保證

第23條의4 (外國金融機關 또는 外國人에 대한 債務保證)

1. 對 象

法 第18條에 規定된 與信業務 取扱時 外國金融機關 또는 外國人에 대한 債務保證 은 法, 施行令 및 方法書에 規定된 要件 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2. 依頼人

大韓民國 國民,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 로 한다.

3. 受惠者

當該去來와 關聯하여 貸出을 取扱하는 外國金融機關 또는 信用을 供與하는 外國人 으로 한다.

4. 保證形式

證書에 의한 保證形式에 의한다.

5. 其他 要件

保證金額 및 保證期間, 保證 및 代支給料 率, 擔保, 代支給 等に 관하여는 第23條 의 規定에 準한다.

第10章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貸出

第24條 (融資對象)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 은 施行令 第15條의 2의 規定에 依한 主要 資源의 外國에서의 開發事業에 必要한 資金 을 支援하는 境遇로서 政府의 資源開發計劃 에 依한 支援方針에 따라 主務部長官의 資 源需給에 關한 意見을 添附한 推薦書 또는 許可書가 있는 境遇에 限한다.

第25條 (融資條件) 融資條件은 다음 各號 와 같다.

1. 對象者

主要資源開發을 爲한 海外投資 또는 海外 事業을 營爲하는 國內業者로 한다.

2. 融資形式

外貨表示 어음貸出 또는 證書貸出로 한

다.

3. 融資比率

所要資金 總額의 100分의 70 範圍內로 한다.

4. 利率 및 利子徵收方法

가. 別表에서 定하는 利率로 한다.

나. 利子は 當該事業計劃의 利子支給計劃에 따라 後取할 수 있으며 元金償還期日 또는 利子支給日이 經過한 後에는 理事會가 따로 定하는 延滯貸出金 利率을 各各 適用한다.

5. 融資期間

償還期間은 20年以內로 한다.

6. 償還方法

當該事業에 依한 償還計劃에 따라 年1回以上 分割償還받는다.

7. 擔 保

國內擔保를 取得하고 連帶保證人을 세우도록 한다.

第 25 條의 2 (例外規定) 政府의 支援方針이 第 25 條의 規定에 依한 融資條件과 다를 경우 委員會는 第 25 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例外取扱할 수 있다.

第 11 章 對外經濟協力資金貸出

第 26 條 (融資對象)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府間의 協定, 기타 合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第 27 條 (融資條件)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府間의 協定, 기타 合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外貨表示貸出을 原則으로 한다.

第 12 章 業務의 代行

第 28 條 (代行) ① 輸出入銀行은 金融機關에 대하여 다음의 業務의 一部를 代行시킬 수 있다.

1. 資金의 貸出 또는 債務의 保證申請의 接受事務.

2.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에 관한 審査.

3. 擔保物의 取得, 管理 및 處分

4. 貸出에 관련된 어음 또는 保證에 관련된 債務의 履行에 의하여 取得하는 債權

의 管理와 回收에 관한 業務

5. 貸出 또는 業務遂行에 따르는 信用調査 및 附帶業務

② 輸出入銀行은 위의 各號에 揭記한 業務의 代행을 위하여는 金融機關과 業務代行契約을 締結한다.

③ 金融機關이 위의 業務를 代行하는 경우에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手数料를 支給할 수 있다.

附 則(制定)

이 業務方法書는 法 第 29 條에 의한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1)

이 業務方法書의 第 9 條 第②項 “라”, 第 11 條 “라” 및 第 15 條 “다”는 法 第 29 條에 의한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2)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3)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1971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4)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5)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6)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7)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8)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 第①項 “라”를 適用함에 있어, 本 施行日 以前에 이미 取扱한 融資殘額에 대하여는 本 施行日 現在 先取한 利子が 滿了되는 次期利子支給日로부터 適用한다.

附 則(9)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10)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11)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變更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12)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1975년 4月 17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 第4號를 適用함에 있어, 本 施行日 以前에 이미 取扱한 融資殘額에 대하여는 本 施行日 現在 先取한 利子が 滿了되는 次期利子支給日로부터 適用한다.

附 則(13)

- ①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1976년 8月2日부터 施行한다.
- ② 이 施行日 以前에 貸出承認된 分에 대하여는 同貸出金の 償還完了時까지 從前의 規則에 의한다. 다만, 貸出承認된 分으로 現在 輸出目的物の 引渡가 完了되지 아니하였거나 對外價權이 確定되지 아니한 分에 대하여는 이 施行日 現在 先取한 利子が 滿了되는 利子支給日로부터 이 業務方法書 別表 “가”의 (1)의 利子率을 適用한다.

附 則(14)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1977年 1月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15)

- ① (施行日)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

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 가. 輸出入銀行의 融資承認이 1977年과 1978年中 이루어지는 去來에 대하여는 別表(利率表) “가”의 (1) 및 “나”의 規定에 불구하고 當該 貸出金の 償還完了時까지 利率을 年 100분의 7로 한다.
- 나. 前“가”의 適用을 받는 去來에 대하여는 이 業務方法書 第8條 第2號의 本文 規定에 불구하고 殘額에 대한 利率을 年 100분의 7 이상으로 한다.
- 다. 이 施行日 以前에 이미 融資承認된 去來에 대하여는 別表(利率表) “가”의 (1) 및 “나”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施行日 現在 先取한 利子期限이 滿了되는 次期利子支給日로부터 當該 貸出金の 償還이 完了될 때까지 利率을 年 100분의 7로 한다.

附 則(16)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1977年 3月3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17)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1977年 5月2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18)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19)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20)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21)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22)

- ① (施行日)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197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融資承認된 去來는 다음 各號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當初承認內容에 따른다.

가. 施行日以後 該當分の 約定手數料 徵收는 免除한다.

나. 融資限度에 算入된 先受金이나 一覽拂 去來 代錢의 入金額은 當初承認時의 融資比率에 따라 融資金回收에 充當할 수 있다.

③ (同前) 輸出入銀行의 融資承認이 1979年1月1日 以後에 이루어지는 去來에 대하여는 暫定的으로 別表(輸出入銀行 貸出利率) “가”의 (1) 및 “나”의 規定에 불구하고 當該 貸出金의 償還完了時까지 利率을 年 100분의 7로 한다. 다만, 銀行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委員會 또는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에 附議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年 100분의 7 이상의 利率을 適用한다.

附 則(23)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24)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25)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26)

① (施行日)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融資承認된 去來는 當初承認內容에 따른다.

③ (同前) 이미 豫備承認된 去來로서 이 施行日前에 契約이 締結되고 輸出入銀行이 同事實을 確認한 것에 대하여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④ (同前) 1979年 1月 1日 以後에 適用하던 暫定利率은 前 3項을 除外하고는 이 施行日 前까지 融資承認된 去來에 한하여 適用한다.

附 則(27)

① (施行日)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1980年

6月 16日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附 則(28)

① (施行日)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이미 融資承認 또는 豫備承認된 去來로서 協調融資가 곤란하다고 銀行長이 認定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얻은 경우에는 이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附 則(29)

이 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30)

① (施行日)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③ (同前) 이 施行日前에 輸出入銀行에 豫備承認申請이 接受된 去來로서 委員會가 別途承認한 去來에 대하여는 從前規定을 適用한다.

附 則(31)

① (施行日) 이 業務方法書의 變更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融資承認된 去來는 當初承認內容에 따른다.

③ (同前)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第9條 第①項 第2號의 規定을 除外하고는 從前 規定을 適用한다.

附 則(32)

① (施行日) 이 業務方法書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附 則(33)

이 業務方法書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34)

이 業務方法書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35)

①(施行日) 이 業務方法書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中小企業에 대한 海外投資資金貸出로서 이미 豫備承認된 去來의 경우에는 이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③(同前) 이 施行日前에 輸出入銀行에 豫備承認申請이 接受된 去來로서 委員會가 別途承認한 去來에 대하여는 從前規定을 適用한다.

附 則(36)

①(施行日) 이 業務方法書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當該承認內容에 不拘하고 이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③(同前) 이 施行日前에 融資承認된 去來는 當該承認 內容에 따른다.

附 則(37)

①(施行日) 이 業務方法書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當該承認內容에 不拘하고 이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③(同前) 이 施行日前에 融資承認된 去來는 當該承認內容에 따른다.

附 則(38)

①(施行日) 이 業務方法書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施行日前에 豫備承認된 去來는 當該承認內容에 不拘하고 이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③(同前) 이 施行日前에 融資承認된 去來는 當該承認內容에 따른다.

輸出入銀行貸出利率

1. 輸出資金貸出

가. 年8% 以上에서 國內外 金利水準, 資金調達費用 및 外國의 輸出支援金利 등을 勘案하여 理事會가 定한 實行利率을 適用한다.

다만, 低金利通貨로 融資하는 境遇에는 當該 通貨의 國際金利 水準을 勘案하여 理事會가 따로 定할 수 있다.

나. 協調融資가 곤란한 去來에 대한 引渡前金融의 國外所要資金과 引渡後金融의 融資比率를 超過하여 支援하는 金額에 대하여는 貸出取扱日, 어음期日 또는 利子納入日의 前營業日(또는 入手可能 最近日)의 6個月 滿期 LIBOR RATE에 理事會가 별도로 정한 年1.5% 以內의 金利를 加算한 利率로 하되 소수점 세자리 以下는 절사한다.

다만, 다른 外國換銀行(信用保證基金 包含)의 支給保證이 없는 境遇에는 上記金利에 0.5%를 加算한다.

다. 原資材 延拂輸入을 위한 外國調達資金을 財源으로 支援하는 金額에 대하여는 借入實質金利 以上에서 理事會가 別途로 定한 利率로 한다.

2. 技術提供資金貸出

輸出資金貸出에 準한다.

3. 海外事業資金 및 海外投資資金貸出

年9% 以上에서 理事會가 定하는 實行利率을 適用한다.

4. 主要資源開發 支援資金貸出

年9%의 利率을 適用한다.

8. 韓國輸出入銀行 業務方法書의 主要 改正內容

次別	改正日字	改 正 內 容	備 考
1	1971. 7. 22	1) 輸出資金貸付중 船積後金融의 貸出利率을 8%에서 6%로 인하 2) 輸出資金貸付중 船積後金融을 取扱한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率을 6%에서 4%로 인하	
2	1971. 7. 22	1) “어음貸付” 融資形式을 “어음貸付 또는 證書貸付”로 변경 2) 利子 徵收方法을 年1회 이상에서 3개월마다 先取로 변경 3) 海外事業資金, 海外投資資金의 延滯金利 적용	
3	1971. 10. 1	1) 輸出資金貸付의 船積前金融에 대한 貸出利率을 一律적으로 8%에서 6%로 인하 2) 割引率을 4~6%에서 一律적으로 5%로 변경	船積後金融은 6%
4	1972. 3. 23	1) “金融機關이 일반적인 條件으로는 融資할 수 없는 경우”를 “輸出目的物의 生産 또는 建設工事의 工期가 6개월 이상 所要되는 對外去來等 金融機關이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融資할 수 없는 경우”로 변경 2) “當該貸付에 관련된 資金의 償還”을 “當該貸付金의 償還”으로 변경	
5	1972. 5. 24	1) 融資總額의 範圍를 “一覽出給換 買入率로 評價한 金額의 60/100”에서 “引渡完了前에 決濟되는 金額을 控除한 殘額에 대하여 融資取扱時의 一覽出給換 買入率로 評價한 金額의 90/100”으로 변경 2) “對外債權額 範圍내에서 融資比率를 定한다”를 “融資取扱時의 一覽出給換 買入率로 評價한 金額 範圍내로 定한다.”로 변경 3) “業務方法書 변경은 財務部長官의 변경 承認日字부터 실시한다”를 신설	延拂輸出을 촉진하기 위하여 一般輸出金融과 동일한 수준으로 함
6	1973. 1. 13	1) 中長期性 一覽拂去來의 融資比率를 船積前金融 및 技術提供前金融의 融資比率와 동일한 90%로 함 2) L/C, L/G가 없어도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을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 3) 船積前 擔保規定은 國內物의 擔保 取得이 원칙이나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	
7	1973. 5. 31	船積前金融의 融資期限 延長을 供給者 측의 歸資사유가 아닌 경우 現地 公館長의 確認과 關係當局의 承認을 얻어 가능토록 함	
8	1974. 4. 10	船積後金融의 利率을 年 6/100에서 9/100로	
9	1974. 5. 15	海外事業 및 海外投資資金貸出에 있어서 物的 擔保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	

次別	改正日字	改 正 内 容	備 考
		어 信用貸出할 수 있도록 개정함	
10	1974.12.20	物的擔保 規定中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지 않고 信用貸出할 수 있도록 개정함	物的擔保가 부족한 경우 에도 借主社 의 信用이 확 실하여 債權 回收가 가능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임
11	1975. 3.19	1) 融資方式의 原則을 單獨融資로 함 2) 輸出資金 및 技術提供資金貸出의 船積前後金融 區 分을 철폐 3)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利子 徵收 後取 가능토 록 함 4) 物的 擔保가 不足한 경우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 쳐 信用貸出할 수 있도록 함 5) 外國政府等에 대한 貸付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취급 6) 海外事業 및 海外投資資金의 融資比率을 引上하고 据置期間을 둠 7) 主要 資源의 開發支援資金 및 對外經濟協力資金의 貸付는 委員會의 議決을 따르도록 함	74.12.26 當行法改正 에 따라 業務 範圍의 新設 擴大를 반영
12	1975. 4.17	利率을 9/100에서 7/100로 인하	76.7.31 貯 蓄增大와 資 金支援의 效 率化를 위한 政府의 與受 信金利 一部 調整과 金利 構造의 전반 적인 改編措 置에 부응
13	1976. 8. 2	1) 約定手數料를 0.25%로 신설 2) 利子率을 7%에서 8%로 일부 調整하고 期間別 差 等金利적용 3) 船積後金融을 外貨表示金融으로 전환	業界의 과대 한 資金需要 抑制 短期輸出金 融의 利子率 과 균형도모 및 延拂輸出 의 短期化 誘 導 輸銀資產의

次別	改正日字	改 正 内 容	備 考
			健全化 도모
14	1977. 1. 1	1) 延拂輸出者の 일방적인 契約締結을 防止하고 계획적인 選別支援을 위하여 豫備承認制度를 명문화 2) 「플랜트」輸出을 장려하기 위하여 「플랜트」의 先受金率을 15%로 완화하고 船舶은 去來관례에 비추어 25%로 강화 3) 모든 海外投資에 대해서 融資比率을 80%로 인상 4) 輸出者가 領收하는 延拂金利를 8% 以上으로 인상 5) 技術提供資金貸付도 前後金融으로 구분 6) 對市中銀行 割引率을 1% 감한 율로 함	現行: 6%이 상 現行: 6%고 정
15	1977. 2. 9	1) 77年中에 承認되는 件에 대해서는 貸出金利를 년 7%로 인하 2) 77年中에 融資承認되는 延拂契約은 輸入者로부터의 延拂金利를 7% 이상으로 함 3) 融資承認된 것에 대해서는 차기 이자 支給日로부터 貸出金利를 년 7%로 인하	
16	1977. 3. 31	1) 先受金の 定義를 명확히 함—“去來目的物の 引渡完了時까지 受領되는 金額” 2) 先受金還給保證을 신설 3) 保證書 發給에는 擔保提供을 받거나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信用 取扱할 수 있도록 함 4) 代支給 發生時の 處理方法을 명시	“引渡를 증빙하는 서류와 교환으로 支給되는 金額”까지를 포함 ‘輸銀業務와 關聯된 先受金還給保證業務의 취급 기준’을 明文化하여 當行으로 일원화
17	1977. 5. 2 (施行日字) (1977.5.9)	1) 支援對象 品目の 名稱 變更 및 新規品目の 追加 지정—車輛 및 其他 品目を 鐵道車輛 및 其他品目(部品類포함)으로 명칭 변경 2) 新規 指定에 따른 部品類의 基準 設定, 延拂期間(1백만「달러」超過3년, 이하 2년) 및 融資比率(70/100)規定 3) 支援 對象品目の 輸出價額(1백만「달러」기준)에 따른 基準延拂期間의 설정	

次別	改正日字	改 正 內 容	備 考
		4) 輸入資金貸付의 融資期限을 2년이내로 制限, 단, 委員會 承認으로 延長 가능 5) 海外事業資金의 境遇 所要 融資總額에 따라 償還 期間을 設定(1백만「달러」초과 10년, 이하 7년)	
18	1977. 5. 31	利子減免 規定을 신설 (延滯貸出金의 整理 또는 企業正常化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延滯利子등을 減免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19	1977. 7. 1	技術提供資金에 있어서 生産集荷資金 및 外資材 輸入資金等の 金利를 輸出資金貸出의 境遇와 동일하게 적용	現行: 年8% 고정
20	1977. 9. 1	1) 先受金還給保證 “1. 對象”신설 2) 契約履行保證을 신설 3) 別表(利率表)에 있어서 “貸出承認日로부터”를 “最初貸出取扱日로부터”로 文言 整理	P-Bond, 性能保障, 瑕疵保證 등
21	1977.12.29	1) 1977.12.19 當行法改正으로 理事會가 新設됨에 따라 運營委 議決事項 및 輸出入銀行長 決定 事項中 일부를 理事會 議決 事項으로 변경 <輸出資金 및 技術提供資金의 融資期限 延長(銀行長→理事會)과 信用貸出의 取扱(運營委→理事會)을 理事會에서 審議 決定토록 함> 2) 海外事業資金의 對象範圍 확대 3) 附帶業務의 取扱對象範圍 확대(法 제18조2항 業務) 4) 暫定 金利 계속 適用(年7%) 5) “貸付”→“貸出”等 用語 및 文言 정리	
22	1979. 1. 12 (施行日字) (1979.1.1)	1) 「플랜트」, 船舶, 鐵道車輛, 産業機械類, 電氣機器에 대한 融資比率의 인상(75~80%→90%) 2) 供給者信用에 한하여 約定手數料 徵收면제 3) 5年 超過 長期延拂去來에 대하여 2년 이내의 据置 期間 허용 4) 中短期 輸出資金貸出 取扱根據 規定 신설 5) 比率 決濟에 依한 融資金 回收 인정 6) 貸出利率을 暫定的으로 7% 유지 7) 用語 整理 船積前(後)金融 → 引渡前(後)金融 生集資金 → 원貨 所要 資金 外資材 輸入資金 → 外貨 所要 資金	運營委 議決 1978.12.29 重化學工業 製品의 國際 競爭力強化

次別	改正日字	改 正 內 容	備 考
23	1979. 5.15	1) 輸出資金貸出 融資對象에 輸出信用狀, 輸出契約書 이외에 輸出物資 購買를 위한 輸銀內國信用狀 및 國內 物品供給契約書を 포함토록 명기함. 融資限度는 原輸出契約書에 대한 融資承認額 範圍내로 함 2) 鐵道車輛의 延拂期間 延長(5년→10년) 3) 豫備承認을 省略할 수 있는 根據를 但書로 명시 “支援對象 要件에 適合한 去來로서 銀行長이 不得已하다고 認定하는 境遇는 例外 取扱” 4) 引渡前後金融期間을 通算하는 關係條文을 削除하고 引渡後金融 取扱時 融資期間의 起算點을 변경 “輸出目的物の 引渡 完了時로부터→引渡後金融의 貸出取扱日로부터” 5) 外國政府等에 대한 貸出의 融資條件을 삭제함 6) 貸出金利를 委員會 또는 經協委에 附議하여 따로 定하는 경우에는 7/100 이상으로 함	延拂去來의 特殊性和 適用利率의 彈力性 勘案
24	1979. 8.31	1) 輸出資金貸出時 主要基準(基準 先受金, 延拂利率, 延拂期間 및 支給保證書) 미달에 대한 例外取扱: 運營委員會→理事會(事後報告) 2) 輸入資金貸出時 融資期間 延長의 例外取扱: 運營委員會→理事會(事後報告) 3) 海外事業資金貸出 및 海外投資資金貸出時 國內 擔保 不足에 따른 信用取扱 議決機關을 運營委員會에서 理事會로 함	
25	1979.11.10	1) 國內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 實施에 따른 根據條項을 新設하고 이에 필요한 事項은 運營委에서 定하도록 함 2) 運營委議決을 얻는 경우, 引渡後金融의 所定融資比率를 超過하여 輸出契約金額에서 先受金を 控除한 全額을 支援할 수 있음 3) 其他 一部 文言 및 用語 整理 產業施設→「플랜트」	協調融資實施의 基盤을 조성 產業施設은 「플랜트」, 船舶, 車輛을 包含하는 概念으로 사용
26	1980. 1.18	1) 輸銀貸出利率 인상(7%→8%)	國際金融市場의 高金利趨勢와 輸銀資金調達費用의 增加等を 勘案

次別	改正日字	改 正 内 容	備 考
		2) 協調融資 實施에 따라 韓銀의 引渡後金融 融資比率를 80%이내로 변경 3) 船舶의 先受金率을 25%에서 20%로 조정 4) 引渡前金融의 元貨表示融資 算定基準을 一覽出給 換어음買入率에서 電信換買入率로 변경 5) 引渡後金融의 融資金額 算定時 先受金이 基準先受金에 未達된 경우에는 基準先受金을 공제함	外國換銀行의 協調融資로 輸出契約金額에서 先受金을 控除한 殘額을 全額支援함에 따라 韓銀融資比率를 조정 일반적인 國際商去來慣習 및 수주 경쟁상 先受金率이 낮아지고 있는 實情을 반영
27	1980. 7.10 (施行日字) (1980.6.16)	1) 協調融資制度를 輸出資金貸出의 引渡前金融과 技術提供資金貸出까지 확대함 2) 引渡前金融과 技術提供前金融의 元貨所要資金은 韓銀이, 外貨所要資金은 다른 外國換銀行이 취급토록 함 3) 引渡後金融의 韓銀融資比率를 品目區分없이 一律的으로 70% 範圍內로 인하 4) 技術提供後金融의 韓銀融資比率를 80%에서 70%로 인하 5) 海外投資資金貸出의 融資比率를 80%에서 70%로 인하 6) 協調融資金融機關에 綜合金融會社를 포함시킴 7) 原資材延拂輸入을 위한 外國調達資金을 財源으로 하는 貸出은 韓銀 및 다른 外國換銀行이 공히 取扱할 수 있도록 함. 韓銀의 貸出金利는 借入實質金利(借入金利+借入附帶費用)+0.5%임	나머지는 協調融資 " 引渡後金融의 融資比率과 均衡을 갖추도록 함
28	1981. 2. 6	1) 協調融資分の 韓銀併行取扱根據 신설 韓銀貸出金利는 中長期外貨資金融資의 基準金利 적용 2) 協調金融機關 範圍확대	

次別	改正日字	改 正 内 容	備 考
		韓國産業銀行, 長期信用銀行 및 外國金融機關 포함 3) 外國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取扱에 따른 對外支保業務 取扱根據 신설 4) 技術提供資金貸出의 融資比率 및 貸出金利는 輸出資金의 「플랜트」支援條件과 동일하게 개선 5) 約定手數料 徵收對象 확대 現行 購買者信用에서 供給者信用(海外投資 포함)까지 6) 引渡前・後金融期間을 通算하여 算定하도록 명문화	
29	1981. 5.19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貸出(法제18조제2항제1호 資金)의 基本融資條件을 新設 規定하여 業務取扱의 效率化를 기함	
30	1981.11.17	1) 貸出金利 중 年8%를 年9%로 1%포인트 인상 2) 引渡前金融(技術提供前金融 포함)의 先受金 控除方式 변경 (契約額一既受領先受金)→(契約額一契約書上先受金) 3) 外國人에 대한 債務保證 取扱根據 신설 4) 先受金, 延拂利率, 延拂期間 및 支給保證 要件에 대한 예외 취급시 運營委員會에 대한 事後報告 폐지 5) 機械類에 대한 延拂期間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 6) 原資材 延拂輸入을 위한 外國調達資金을 財源으로 하는 貸出金利를 借入實質金利+0.5%에서 借入實質金利+1%로 인상 7) 外資材依存率, 國別信用度 評價에 대한 根據規定 신설	一覽拂去來는 종전과 동일
31	1982. 2.18	1) 引渡前金融(技術提供前金融 포함)의 貸出表示通貨를 원貨에서 外貨로 변경 2) 引渡前金融의 所要資金 구분을 원貨所要資金, 外貨所要資金에서 國內所要資金, 國外所要資金으로 名稱 변경	
32	1982.12. 1	1) 海外事業(投資)資金貸出등에 적용하고 있는 '外國換管理規程에서 정한 中長期 外貨資金融資의 基準金利'를 LIBO Rate+1.5%로 하되, 다른 外國換銀行의 支給保證이 없는 경우에는 同金利에 年0.5%를 가산하는 것으로 변경	外國換管理規程 改正으로 外貨與信基準金利 폐지
33	1983. 3. 9	中小企業의 對開途國 海外投資(事業)에 대한 融資比率를 소요자금의 70%에서 80%로 확대	

次別	改正日字	改 正 內 容	備 考
34	1984. 3.22	1) 現行 品目別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引渡前金融의 融資比率을 中小企業이 製作, 輸出하는 경우에는 모두 90%로 인상 2) 當行의 融資比率을 초과하여 協調融資 該當分까지 單獨 融資할 경우 이의 議決權限을 現行 運營委員會에서 中小企業이 製作, 輸出하는 경우에는 理事會로 下部 위임함 3) 海外投資事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에 대해 優待 적용하는 融資比率 80% 적용 對象國家의 範圍를 開途國에서 모든 國家로 확대함	
35	1984.11. 5	1) 當行 貸出利率을 現行 資金別 單一固定金利에서 一定 範圍로 변경하고 구체적 實行利率의 策定은 理事會에 위임 2) 中小企業에 대한 海外投資(事業)資金貸出 利率을 現行 LIBOR+1.5%의 變動金利에서 理事會가 따로 정하는 固定金利로 변경 3) 金融團協定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는 保證 및 代支給料率 및 延滯利率을 理事會에서 정하도록 변경	國內外 經濟 與件 變化에 보다 伸縮的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 金融團協定 條지에 따른 措置
36	1985. 6.26	1) 引渡前金融 融資限度 算定方式 변경 (契約金額—契約書上先受金)→(契約金額—實受領先受金) 2) 引渡後金融 融資比率을 70%에서 85%로 확대	
37	1985. 8.31	1) 輸出資金貸出金利體系 변경 —基準金利를 年9%~10%에서 年9% 이상으로 변경 —協調融資分에 대한 支援金利를 LIBOR+1.5%에서 LIBOR에 理事會가 별도로 책정한 年1.5% 이내의 金利를 加算한 利率로 변경 —原資材 延拂輸入用 轉貸借款資金의 貸出金利를 現行 借入實質金利+1%에서 借入實質金利 이상에서 理事會가 별도로 정한 利率로 변경 2) 大企業: LIBOR+1.5%, 中小企業: 年9%~10%, 資源開發事業: 年9%로 되어있는 現行 海外投資(事業)資金貸出金利를 年9% 이상에서 理事會가 책정토록 변경 3) 引渡前金融의 元貨表示貸出 取扱根據 마련 4)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 및 低金利通貨表示貸出에 대한 融資比率을 引渡前金融의 경우 國外所要資金을 포함시키고 引渡後金融의 경우 85%에서 100%	

次別	改正日字	改 正 内 容	備 考
		로 확대 5) 技術의 範圍에 海外建設用役 및 기타 融資支援이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技術用役을 추가	
38	1985.12.30	1) 融資對象 船舶輸出去來의 延拂期間을 8년 이내에 서 8.5년 이내로 연장 2) 輸出資金의 基準金利를 年9% 이상에서 年8% 이 상으로 변경	

9. 輸出保險法

制定：法律 第2063號 1968년 12월 31일
改正：法律 第2167號 1970년 1월 1일
改正：法律 第2422號 1972년 12월 30일
改正：法律 第2952號 1976년 12월 31일
改正：法律 第3107號 1978년 12월 5일
改正：法律 第3399號 1981년 3월 27일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輸出貿易 기타 對外去來에서 발생하고 通常의 保險으로는 救濟하기 困難한 危險으로 인한 財産上의 損失을 補償하는 保險制度를 確立함으로써 輸出貿易 기타 對外去來의 振興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用語의 定義) ① 이 법에서 “輸出契約”이라 함은 國內에서 生産·加工 또는 集荷된 貨物을 輸出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이 約定되어 있는 契約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輸出者”라 함은 第①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 當事者로서 貨物을 輸出하는 者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供給契約”이라 함은 輸出契約에 의하여 輸出할 貨物을 國內에서 生産·加工 또는 集荷하여 當해 輸出者에게 引渡하는 契約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生産者”라 함은 輸出을 目的으로 國內에서 貨物을 生産·加工 또는 集荷하는 者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中·長期延拂輸出契約”이라 함은 資本財 기타 外貨獲得을 위한 海外輸出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顯著히 寄與하는 貨物(이하 “資本財등”이라 한다)을 輸出하는 契約으로서 그 代金 또는 貨賃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決濟條件에 의하여 回收하는 契約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輸出代金金融契約”이라 함은 銀行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과 韓國輸出入銀行(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資本財등의 輸出契約에 의한 代金の

支給에 必要한 資金을 外國의 政府·公共團體 또는 다른 外國法人이나 外國人에게 供與하는 契約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委託販賣輸出契約”이라 함은 國內에서 生産·加工 또는 集荷되는 貨物을 外國에서 販賣할 것을 委託하는 契約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海外投資”라 함은 다음 各號에 掲記하는 것을 말한다.

1. 外國法人(外國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株式 또는 持分(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의 取得

2. 大韓民國國民(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株式등을 取得하려 하거나 所有하는 外國法人의 株式등을 取得하려는 外國의 政府·公共團體 또는 다른 外國法人이나 外國人에 대한 當해 株式등의 取得에 要하는 資金에 充當되는 長期貸付金에 관한 債權(이하 “貸付金 債券”이라 한다)의 取得

3. 大韓民國國民이 株式등의 所有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그 經營을 實質적으로 支配하고 있는 外國法人의 社債 기타 이에 準하는 債券 또는 當해 外國法人에 대한 長期貸付金에 관한 債權(이하 “社債등”이라 한다)의 取得

4. 國外에서 營爲하는 事業에 使用되는 不動產 또는 設備에 관한 權利·鑛業權·工業所有權 기타의 權利 또는 이들에 類似的한 利益(이하 “不動產에 관한 權利등”이라 한다)의 取得

⑨ 이 법에서 “海外建設業者”라 함은 海外建設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말한다.

⑩ 이 법에서 “海外建設工事契約”이라 함은 海外建設促進法の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工事に 관한 契約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海外建設用役契約”이라 함은 海外建設促進法の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用役(海外技術用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契約을 말한다.

⑫ 이 법에서 “輸出保證”이라 함은 다음 各號에 掲記하는 것을 말한다.

1. 海外建設工事契約・海外建設用役契約 또는 輸出契約에 관한 入札(이하 “入札”이라 한다)의 條件에 包含된 保證條項에 따라 入札로 인한 債務에 관하여 당해 入札의 相對方에게 하는 保證(違約金 기타 이와 類似한 金錢을 支給하거나 그 支給에 갈음하여 主債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主債務者를 代身하여 履行하는 保證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海外建設工事契約・海外建設用役契約 또는 輸出契約의 保證條項에 따라 契約으로 인한 債務에 관하여 당해 契約의 相對方에게 하는 保證

第3條 (保險의 種類) 輸出保險의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一般輸出保險
2. 輸出金融保險
3. 輸出어음保險
4. 中・長期延拂輸出保險
5. 輸出代金金融保險
6. 委託販賣輸出保險
7. 海外投資保險
8. 海外建設工事保險
9. 輸出保證保險

第3條의 2 (共同保險 및 再保險)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輸出保險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는 그 締結한 輸出保險契約에 의한 責任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同保險 또는 再保險에 붙일 수 있다.

第4條 (保險料率) 輸出保險의 保險料率은 輸出保險事業의 收入과 支出의 均衡이 維持되도록 商工部長官이 미리 輸出保險審議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다.

第5條 (契約의 解止등) 公社는 輸出保險의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保險

契約에 의한 保險金을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支給한 保險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回收하거나 그 保險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다.

第5條의 2 (保險目的 또는 第三者에 대한 保險代位) 公社가 保險金을 支給한 경우에는 그 保險의 目的 또는 第三者에 대한 輸出保險의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權利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得할 수 있다.

第6條 (保險關係의 成立制限) ① 商工部長官은 輸出貿易 기타 對外去來에 있어서 危險이 增大되었거나 기타 輸出保險事業의 經營에 必要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輸出保險審議會의 議決을 거쳐 第12條 第①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金融保險關係 또는 第17條 第①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어음保險關係 또는 第29條의 11 第①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保證保險關係를 將來에 向하여 成立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② 商工部長官은 第①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7條 (保險事故의 逆選擇의 防止) 商工部長官은 輸出保險의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 의한 保險事故의 逆選擇을 防止하고 保險料의 平準化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輸出保險審議會의 議決을 거쳐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保險에 붙일 수 있는 期間의 제한
2. 保險責任의 時期의 제한
3. 商品別・商社別 또는 組合別 包括保險의 實施

第8條 (保險契約締結限度) ① 輸出保險의 種類別 契約締結限度는 商工部長官이 이를 정한다.

② 商工部長官이 第①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保險의 種類別 契約締結限度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國會議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8條의 2 (輸出保險審議會) ① 商工부에 輸出保險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審議會는 이 법에 의한 議決事項을 決定하고, 輸出保險에 관하여 商工部長官의 諮問에 응한다.

③ 審議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章 一般輸出保險

第9條 (保險契約) 公社は 다음 各號의 事由로 인한 損失이 발생할 때에 第10條 各號의 損失補償을 하기 위하여 一般輸出保險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1. 外國에서 實施되는 換去來의 제한 또는 금지
2. 輸入國에서 實施되는 輸入의 제한 또는 금지
3. 外國에서의 戰爭·內亂 또는 政變으로 인한 換去來의 不能
4. 輸入國에서의 戰爭·內亂 또는 政變으로 인한 當該國에 對한 輸出의 實行 不能
5. 國外에서 발생한 事由로 인한 輸入國에의 輸送不能
6. 第1號 내지 第5號 이외에 國外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輸出契約當事者에게 責任지을 수 없는 事由
7. 貿易去來法에 의한 輸出의 제한 또는 금지
8. 輸出契約의 相對方이 外國의 政府나 公共團體인 경우, 그 相對方에 의한 당해 輸出契約의 一方的인 破棄 또는 相對方에게 責任지을 수 있는 相當한 事由로 인한 輸出者에 의한 당해 輸出契約의 解除
9. 輸出契約 相對方의 破産 또는 이에 準하는 支給不能 事由의 발생

第10條 (補償할 損失의 範圍) 一般輸出保險에 의하여 補償을 받을 수 있는 損失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輸出者가 保險契約을 締結한 후에 第9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의 발생으로 輸出契約에 의한 貨物을 輸出할 수 없게 된 경우 (第9條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의 발생으로 당해 貨物의 輸出이 顯著하게 困難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輸出契約에서 정한 船積期日부터 2月이 경과한 날까지 輸出하지 못한 때를 포함한다)에 받은 損失. 다만 당해 輸出貨物에 발생한 損失은 除外한다.
2. 輸出者가 保險契約을 締結한 후에 第9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의 발생으로

輸出契約에 의한 輸出貨物의 代金을 支給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받은 損失. 다만, 당해 輸出貨物에 발생한 損失은 제외한다.

3. 輸出者가 第1號 및 第2號의 損失을 받음으로 供給契約當事者인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貨物의 生産者가 그 供給契約에 의한 당해 貨物을 引渡할 수 없거나 代金支給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받은 損失
4. 輸出者가 保險契約을 締結한 후에 第9條 第1號 내지 第7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의 발생으로 航海 또는 航路를 變更함으로 海上運賃 또는 保險料를 追加하여 負擔하게 된 경우에 받은 損失

第11條 (保險金) ① 一般輸出保險에 있어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한 保險金은 輸出者가 第9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輸出할 수 없게 된 貨物(第9條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그 輸出이 顯著하게 困難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輸出契約에 정한 船積期日부터 2月이 경과된 날까지 輸出하지 못한 貨物을 포함한다)의 輸出契約에 의한 代金額 또는 輸出契約에 의한 代金額 중 回收할 수 없게 된 金額에서 다음 各號의 金額을 控除한 殘額 또는 輸出者가 航海나 航路의 變更으로 인하여 追加하여 負擔하게 된 海上運賃이나 保險料의 增加額에 100分の 90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比率를 곱한 金額으로 한다.

1. 輸出貨物의 處分 기타 損失을 輕減하기 위한 措置에 의하여 回收된 金額 또는 回收할 수 있는 金額
2. 당해 事由의 발생으로 支給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金額
3. 당해 貨物의 輸出에 의하여 取得하게 되었던 利益金額

② 第①項의 規定은 生産者를 被保險者로 하는 一般輸出保險에 이를 準用한다.

第3章 輸出金融保險

第12條 (保險契約) ① 公社は 會計年度 또는 그 半期別로 金融機關을 相對方으로 하여 輸出金融保險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② 輸出金融保險에 있어서는 金融機關이 輸出者·外國에 駐屯하는 國軍 및 外國軍에 대한 軍納業者·生産者 또는 海外에서 建設業을 營爲하거나 用役을 提供하는 者에게 다음 各號의 資金을 融資하기 위하여 어음貸付 또는 어음割引을 한 뜻을 公社에 통지하므로 公社와 金融機關間에 그 어음貸付 또는 어음割引으로 融資받은 資金에 의하여 輸出하거나 輸出을 目的으로 引渡하고자 하였던 貨物의 全部 또는 一部를 輸出 또는 引渡할 수 없게 된 때와 당해 融資金에 의하여 輸出한 貨物의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回收할 수 없게 된 때와 당해 融資金에 의하여 海外에서 建設하거나 用役을 提供한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回收할 수 없게 된 때에 발생하는 金融機關의 未回收 金額을 補償하는 保險關係가 成立한다.

1. 輸出契約이 締結된 후에 輸出者가 당해 輸出契約에 의한 貨物을 輸出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資金 또는 生産者가 당해 貨物을 生産·加工하거나 集荷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資金
2.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貨物의 輸出契約이 締結될 것이라고 金融機關이 인정한 경우에 生産者가 당해 貨物을 生産·加工하거나 集荷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資金
3. 外國政府·外國에 駐屯하는 國軍·外國軍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한 貨物의 供給·工事의 도급 또는 用役의 提供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資金

第13條 (保險價額 및 保險金額) 輸出金融保險에 있어서의 保險價額は 어음金額으로 하고 保險金額은 保險價額에 100分の 90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第14條 (保險金) 輸出金融保險에 있어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은 保險價額중 第12條 第②項에 規定하는 事由로 인하여 金融機關이 어음의 滿期에 回收할 수 없었던 金額에서 滿期後에 回收한 金額을 控除한 殘額에 100分の 90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第15條 (資金의 回收) 保險金의 支給을 받은 金融機關은 第12條 第②項의 規定에 의한 어음貸付 또는 어음割引에 의하여 融資한 資金을 回收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16條 (回收金의 納付) 保險金을 支給받은 金融機關은 그 支給의 請求를 한 후에 回收한 金額에서 당해 어음의 滿期이후 保險金의 支給을 받은 날의 前日까지의 利子를 控除한 殘額에 支給을 받은 保險金의 額의 第14條에 規定하는 殘額에 대한 比率를 곱한 金額을 公社에 納付하여야 한다.

第4章 輸出어음保險

第17條 (保險契約) ① 公社는 會計年度 또는 그 半期別로 外國換管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換銀行(이하 “外國換銀行”이라 한다)을 相對方으로 하여 輸出어음 保險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② 輸出어음保險에 있어서는 輸出貨物에 대하여 發行된 荷換 어음을 外國換銀行이 그 發行人으로부터 買受한 뜻을 公社에 통지한 때에 公社와 外國換銀行間에 外國換銀行이 당해 荷換어음의 滿期에 支給을 받을 수 없게 된 金額 또는 당해 荷換어음에 대한 遡求를 받아 支給한 金額을 補償하는 保險關係가 成立한다.

第18條 (保險價額 및 保險金額) 輸出어음 保險에 있어서의 保險價額は 어음金額으로 하고 保險金額은 保險價額の 100分の 90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第19條 (保險金) 輸出어음保險에 있어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은 保險價額중 外國換銀行이 荷換어음의 滿期에 支給을 받을 수 없게 된 金額 또는 荷換어음에 대하여 遡求를 받아 支給한 金額에서 다음 各號의 金額을 控除한 殘額에 100分の 90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1. 滿期후에 支給을 받은 金額
2. 貨物의 處分 기타 貨物에 관한 權利의 行使로 回收한 金額
3. 遡求하여 回收한 金額

第20條 (어음에 의한 權利行使) ① 保險金의 支給을 받은 外國換銀行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荷換어음에 의한 權利의 行使 및 貨物의 處分 기타 貨物에 관한 權利行使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保險金의 支給을 받은 外國銀行은 發行人에게 責任지을 수 없는 事由로 인하여 荷換어음의 滿期에 支給받을 수 없거나 遡求

를 받은 경우에는 支給을 받을 保險金의 額에 相當하는 金額은 이를 제외하고 遡求하여야 한다.

第 21 條 (回收金の 納付) 保險金の 支給을 받은 外國換銀行은 그 支給의 請求를 한 후에 回收한 金額(第 20 條 第 ② 項에 規定하는 경우에 遡求하여 回收한 金額은 제외한다)에서 荷換어음의 滿期이후 保險金の 支給을 받은 날의 前日까지의 利子を 控除한 殘額에 支給받은 保險金の 額의 第 19 條에 規定하는 比率을 곱한 金額을 公社에 納付하여야 한다.

第 5 章 中・長期延拂輸出保險

第 22 條 (保險契約) 公社は 輸出者が 中・長期延拂輸出契約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本財등을 輸出한 경우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당해 輸出貨物의 代金 또는 貨貨料를 回收할 수 없게 된 때에 이에 의하여 받은 損失(당해 輸出貨物에 발생한 損失은 제외한다)을 補償하기 위하여 中・長期延拂輸出保險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1. 外國에서 實施되는 換去來의 제한 또는 금지
2. 輸入國에서의 戰爭・內亂 또는 政變
3. 第 1 號 및 第 2 號 이외에 國外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輸出契約當事者에게 責任을 지울 수 없는 事由
4. 輸出契約 相對方의 破産
5. 輸出契約相對方에 의한 6月 이상의 債務의 履行遲滯. 다만, 輸出者에게 責任지을 수 없는 경우에 限한다.

第 23 條 (保險價額 및 保險金額) ① 中・長期延拂輸出保險에 있어서의 保險價額은 輸出契約에 의한 輸出貨物의 代金 또는 貨貨料로 한다. 다만, 2期 이상에 分割하여 決濟하기로 約定한 경우에는 各期마다 決濟받을 金額을 保險價額으로 한다.

② 中・長期延拂輸出保險의 保險金額은 保險價額에 100分の 9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을 곱한 金額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때에는 그 超過部分은 無効로 한다.

第 24 條 (保險金) 中・長期延拂輸出保險에

있어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은 保險價額중 第 22 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輸出者가 決濟期(第 22 條 第 5 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決濟期후 6月이 경과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回收할 수 없는 代金 또는 貨貨料에서 다음 各號의 金額을 控除한 殘額에 保險金額의 保險價額에 대한 比率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1. 당해 事由의 발생으로 支給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金額

2. 決濟期 후에 回收한 金額

第 25 條 (代金の 回收) 保險金の 支給을 받은 輸出者는 당해 輸出契約에 의한 輸出貨物의 代金 또는 貨貨料의 回收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 26 條 (回收金の 納付) 保險金の 支給을 받은 輸出者는 그 支給의 請求를 한 후에 回收한 金額에서 決濟期이후 保險金の 支給을 받은 날의 前日까지의 利子を 控除한 殘額에 支給받은 保險金の 額의 第 24 條의 規定에 의한 殘額에 대한 比率을 곱한 金額을 公社에 納付하여야 한다.

第 5 章의 2 輸出代金金融保險

第 26 條의 2 (保險契約) 公社は 金融機關이 輸出代金金融契約에 의하여 資金을 供與한 경우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그 資金의 元金 및 利子(이하 “元利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없게된 때에 이로 인하여 받는 損失을 補償하기 위하여 金融機關과 輸出代金金融保險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1. 外國에서 實施되는 換去來의 제한 또는 금지
2. 輸入國에서의 戰爭・內亂 또는 政變
3. 第 1 號 및 第 2 號 이외에 國外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輸出代金金融契約 當事者에게 責任지을 수 없는 事由
4. 輸出代金金融契約 相對方의 破産
5. 輸出代金金融契約 相對方에 의한 6月 이상의 債務의 履行遲滯. 다만, 金融機關에게 責任지을 수 없는 경우에 限한다.

第 26 條의 3 (保險價額 및 保險金額) ① 輸出代金金融保險에 있어서 保險價額은 元利金の 額으로 한다. 다만, 2期 이상 分割

하여償還하기로約定한 경우에는各期마다償還받을金額을保險價額으로한다.

②輸出代金金融保險에 있어서保險金額은保險價額의100分の90의범위안에서大統領令이정하는比率을곱한金額을초과할수없으며, 이를초과한 때에는그超過部分은無効로한다.

第26條의4(保險金)輸出代金金融保險에 있어서公社가支給하여야 할保險金은保險價額중第26條의2各號에 해당하는事由로인하여金融機關이償還期日(第26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償還期日후6月이경과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償還받을수없는元利金에서다음各號의金額을控除한殘額에保險金額의保險價額에 대한比率을곱한金額으로한다.

1. 당해事由의 발생으로支出을요하지 아니하게된金額
- 2.償還期日후의回收한金額

第26條의5(代金の回收)保險金の支給을 받은金融機關은 당해輸出代金金融契約에 의한元利金の回收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6條의6(回收金の納付)保險金の支給을 받은金融機關은 그支給의請求를 한 후에回收한金額에서償還期日 이후保險金の支給을 받은 날의前日까지의利子を控除한殘額에支給받은保險金の額の第26條의4의規定에 의한殘額에 대한比率을곱한金額을公社에納付하여야 한다.

第6章 委託販賣輸出保險

第27條(保險契約)公社는輸出者가委託販賣輸出契約에 의하여貨物을輸出한 경우에 당해貨物의販賣에 의하여 그貨物의輸出 및販賣를 위하여支給한費用을回收할수없게된 때에 받은損失을補償하기 위하여委託販賣輸出保險契約을締結할수있다.

第28條(販賣價格)①委託販賣輸出保險契約에 있어서는 당해貨物의輸出 및販賣를 위하여支給할費用額과 당해輸出契約에 정하는販賣期間(이하“販賣期間”이라 한다)내에販賣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당해貨物의販賣價格(이하“販賣價格”)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第①項의販賣價格은 당해貨物에 대한費用額에100分の105를곱한金額 이상으로 한다.

第29條(保險金)①委託販賣輸出保險에 있어서公社가支給하여야 할保險金은第28條第①項의費用額 중 당해貨物 및販賣를 위하여支給한金額에서 다음各號의金額을控除한殘額에100分の90을곱한金額으로 한다.

- 1.販賣期間내에販賣된 당해貨物의販賣價格에 의하여計算한代金額
- 2.貨物의處分 기타損失의輕減을 위한措置에 의하여回收한金額 또는回收할수 있는金額

②販賣期間내에販賣되지 아니한貨物로서販賣期間이滿了된 날로부터3月내에返送을 위하여船積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第28條第①項의費用額 중 당해貨物의輸出 또는販賣를 위하여 지급한金額을第①項第2號에規定한,回收한金額 또는回收할수 있는金額으로 본다. 다만,公社의承認을 얻은 것에 대하여서는例外로 한다.

第6章의2 海外投資保險

第29條의2(保險契約)①公社는海外投資를 한者가 다음各號의1에 해당하는事由로인하여 받은損失을補償하기 위하여海外投資保險契約을締結할수있다.

- 1.株式등·貨付金債權 또는社債등의元金(이하“元金”이라 한다),株式등에 대한配當金支給請求權 또는貨付金債權이나社債 등의利子支給請求權(이하“配當金請求權”이라 한다) 또는不動産에 관한權利등의外國政府등에 의한剝奪
- 2.海外投資(第2條第⑧項第4號에揭記하는 것을 제외한다)의相對方이戰爭·內亂 또는政變으로인하여損害를받거나,不動産·設備·原資材 기타의物件에 관한權利·鑛業權·工業所有權 기타의權利 또는利益으로서事業의遂行上 특히重要な 것이外國政府등에 의하여侵害됨으로써損害를받아 당해海外投資의相對方(第2條第⑧項第2號에揭記하는海外投資에 있어서는株式등의

取得의 相對方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事業繼續의 不能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由의 발생

3. 戰爭·內亂 또는 政變으로 인하여 不動産에 관한 權利등에 대하여 損害를 받음으로써 당해 不動産에 관한 權利등의 事業用으로서의 使用不能

4. 元金の 喪失(第1號 또는 第2號의 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取得한 金額·株式등에 대한 配當金·貸付金債權이나 社債등의 利子(이하 “配當金등”이라 한다) 또는 不動産에 관한 權利등의 喪失(第1號 또는 第3號의 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取得한 金額(이하 “取得金등”이라 한다)을 다음에 掲記하는 事由로 인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期間 이상의 期間 國內에의 送金不能

가. 外國에서 實施되는 換去來의 제한 또는 금지

나. 外國에서의 戰爭·內亂 또는 政變으로 인한 換去來의 杜絶

다. 外國政府등에 의한 당해 取得金の 管理

라. 당해 取得金등의 送金許可의 取消 또는 外國政府 등이 그 許可를 할 것을 미리 約定하고 있었던 경우에 그 許可의 拒否

마. “가” 내지 “라”의 1에 해당하는 事由의 발생후에 있어서의 外國政府등에 의한 取得金の 沒收

② 海外投資保險의 保險期間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의 3 (保險金) ① 海外投資保險에 있어서 第29條의 2 第①項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한 損失에 대하여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은 元金에 관한 損失에 있어서는 당해 事由에 관한 元金(이하 “事故元金”이라 한다)에 대하여 第29條의 2 第①項 第1號의 事由 또는 第2號의 損害의 발생 直前に 評價한 額과 당해 事故元金の 取得을 위한 對價의 額중 적은 金額에서 配當金請求權등에 관한 損失에 있어서는 당해 事由에 관한 配當金請求權등(이하 “事故配當金請求權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第29條의 2 第①項 第1

號의 事由 또는 第2號의 損害의 발생 直前に 評價한 額에서 不動産에 관한 權利등에 관한 損失에 있어서는 당해 事由에 관한 不動産에 관한 權利등(이하 “事故權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第29條의 2 第①項 第1號의 事由 또는 第3號의 損害發生 直前に 評價한 額과 당해 事故權利등의 取得을 위한 對價의 額중 적은 金額에서 다음 各號에 掲記하는 金額을 控除한 殘額에 100分の 90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比率을 곱하여 얻은 金額으로 한다.

1. 事故元金·事故配當金請求權등 또는 事故權利등에 대하여 각기 당해 事故發生 直後に 評價한 額

2. 당해 事由의 발생으로 인하여 取得한 金額 또는 取得할 수 있는 金額

3. 損失을 輕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 回收한 金額

② 第29條의 2 第①項 第4號의 事由로 인하여 받은 損失에 대하여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은 元金 또는 不動産에 관한 權利등(이하 “元金등”이라 한다)의 喪失에 의하여 取得한 金額에 관한 損失에 있어서는 第29條의 2 第①項 第4號 “가” 내지 “마”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同號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期間 이상의 期間 國內로 送金할 수 없었던 金額(당해 事故의 발생전에 國內로 送金할 수 있었던 金額을 제외한다. 이하 “送金不能額”이라 한다)과 당해 元金등의 取得을 위한 對價의 額중 적은 金額에서, 配當金에 관한 損失에 있어서는 送金不能額에서 다음 各號에 掲記하는 金額을 控除한 殘額에 100分の 9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比率을 곱하여 얻은 金額으로 한다.

1. 당해 事由의 발생으로 인하여 支給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金額

2. 당해 送金不能額으로 支給한 金額

3. 損失을 輕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 回收한 金額

③ 元金등에 대하여 第①項 및 第②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 또는 그 累計額이 당해 元金등의 取得을 위한 對價의 額에서 다음 各號에 掲記하는 金額을 控除한 殘額을 초과할 때에는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은 前 ②項

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殘額으로 한다.

1. 당해 事由의 발생전에 있어서의 당해 元金등의 喪失(第 29 條의 2 第①項 第 1 號 내지 第 3 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取得한 金額 또는 取得할 수 있는 金額(送金 不能額이 包含되는 경우에는 그 金額에서 당해 送金不能額을 控除한 殘額)과 그 喪失한 元金 등의 取得을 위한 對價의 額 중 많은 金額

2. 당해 事由의 발생전에 있어서의 第 29 條의 2 第①項 第 1 號 내지 第 3 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의 발생으로 인하여 取得한 金額 또는 取得할 수 있는 金額

3. 第①項 各號 또는 第②項 各號에서 정하는 金額

④ 公社는 第①項 및 第③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 29 條의 2 第①項 第 1 號 내지 第 3 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의 발생으로 인하여 取得한 金額 또는 取得할 수 있는 金額 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國內로 送金할 수 없는 金額(당해 事由의 발생전에 國內로 送金할 수 있었던 金額을 제외한다. 이하 “送金不能取得額”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第①項 및 第③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金額외에 당해 金額과 第①項 第 2 號 또는 第③項 第 2 號에 規定하는 金額에서 送金不能取得額을 控除한 殘額을 各各 第①項 第 2 號 또는 第③項 第 2 號에 規定하는 金額으로 보아 第①項 및 第③項의 規定을 適用하여 算定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金額과 差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1. 外國政府등에 의한 沒收

2. 外國政府등에 의한 管理(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期間 이상의 期間 繼續하여 管理된 경우에 限한다)

3. 第 1 號 및 第 2 號에 準하는 事由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由

第 29 條의 4 (回收) 保險金の 支給을 받은 者는 事故元金 또는 事故權利 등의 取得을 위한 對價나 取得金 등에 관한 送金不能額의 回收 또는 事故配當金請求權 등에 관한 權利의 行使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 29 條의 5 (回收金の 納付) 保險金の 支給을 받은 者는 그 支給의 請求를 한 후에

回收한 金額이 있을 때에는 回收한 때마다 그 金額에 公社로부터 支給을 받은 保險金의 額의 第 29 條의 3 第①項 또는 第②項에 規定하는 殘額에 대한 比率를 곱하여 얻은 金額(支給을 받은 保險金의 額을 초과할 때에는 그 保險金의 額)을 公社에 納付하여야 한다.

第 6 章의 3 海外建設工事保險

第 29 條의 6 (保險契約) 公社는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建設促進法에 規定된 海外建設工事 또는 海外建設用役(이하 “海外工事”라 한다)을 행한 경우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海外工事의 代價를 回收할 수 없게 된 때에 이로 인하여 받은 損失을 補償하기 위하여 海外建設工事 保險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1. 外國에서 實施되는 換去來의 제한 또는 금지

2. 海外建設工事發注國에서의 戰爭·內亂 또는 政變

3. 第 1 號 및 第 2 號 이외의 國外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海外工事의 契約當事者에게 責任지을 수 없는 事由

4. 海外工事發注者의 破産

5. 海外工事發注者에 의한 6月 이상의 債務의 履行遲滯. 다만, 海外建設業者에게 責任지을 수 없는 경우에 限한다.

第 29 條의 7 (保險價額 및 保險金額) ① 海外建設工事保險에 있어서의 保險價額은 당해 海外工事의 代價로 한다. 다만, 당해 海外工事契約上 그 代價를 2回 이상에 걸쳐 分割決濟하기로 約定된 경우에는 그 決濟만을 一部代價를 保險金額으로 할 수 있다.

② 海外建設工事保險에 있어서의 保險金額은 保險價額에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를 곱한 金額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때에는 그 超過部分은 無效로 한다.

第 29 條의 8 (保險金) 海外建設工事保險에 있어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은 保險價額중 第 29 條의 6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海外建設業者가 決濟期(第 29 條의 6 第 5 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決濟期후 6月이 경과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

다)까지回收할 수 없는代價에서 다음各號의金額을控除한殘額에保險金額의保險價額에 대한比率를 곱한金額으로 한다.

1. 당해事由의 발생으로支給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金額

2. 決濟期후에 回收한金額

第29條의 9 (回收) 保險金の支給을 받은 海外建設業者는 당해 海外工事契約에 의한代價의 回收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9條의 10 (回收金の 納付) 保險金の支給을 받은 海外建設業者는 그支給의請求를 한 후에 回收한金額에서 決濟日의翌日부터 保險金の支給을 받은 날의 前日까지의 利子를 控除한殘額에支給받은 保險金の額의 第29條의 8의 規定에 의한殘額에 대한比率를 곱한金額을 公社에 納付하여야 한다.

第6章의 4 輸出保證保險

第29條의 11 (保險契約) ① 公社는 會計年度 또는 그 半期別로 外國換銀行을 相對方으로 하여 輸出保證保險契約를締結할 수 있다.

② 輸出保證保險은 外國換銀行이 海外建設業者·海外建設用役 提供者 또는 輸出者(이하 “入札者등”이라 한다)의 要請에 의하여 海外建設工事契約·海外建設用役契約 또는 輸出契約에 관한 輸出保證을 한 뜻을 公社에 통지한 때에 公社와 外國換銀行間에 外國換銀行이 당해 輸出保證의 相對方으로부터 請求를 받아 第2條 第⑫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債務를 履行하기 위하여 당해 入札 또는 契約의 條件에 따라支給한金額을 補償하는 保險關係가 成立한다.

第29條의 12 (保險價額 및 保險金額) ① 輸出保證保險에 있어서의 保險價額は 輸出保證의 保證金額으로 한다.

② 輸出保證保險에 있어서의 保險金額은 保險價額에 100分の 90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곱한金額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때에 그 超過部分은 無效로 한다.

第29條의 13 (保險金) 輸出保證保險에 있어서 公社가支給하여야 할 保險金은 保險價額중 外國換銀行이 輸出保證의 相對方으

로부터 請求를 받아 당해 保證의 條件에 따라支給한金額에서 다음各號의金額을控除한殘額에保險金額의保險價額에 대한比率를 곱한金額으로 한다.

1. 輸出保證 相對方으로부터 回收한金額

2. 主債務者에게 求償하여 回收한金額

第29條의 14 (權利의 行使) ① 保險金の支給을 받은 外國換銀行은 輸出保證에 따른債務를 履行함으로써 取得한 輸出保證의 相對方에 대한 財産上の 權利行使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保險金の支給을 받은 外國換銀行은 主債務者인 入札者등에 대한 求償權을 行使하여야 한다.

第29條의 15 (回收金の 納付) 保險金の支給을 받은 外國換銀行은 그支給의請求를 한 후에 第29條의 14에 規定하는 權利를 行使하여 回收한金額에서 輸出保證의 條件에 따라 保證債務를 履行한 날 이후 保險金の支給을 받은 날의 前日까지의 利子를 控除한殘額에支給받은 保險金の額의 第29條의 13에 規定하는殘額에 대한比率를 곱한金額을 公社에 納付하여야 한다.

第7章 輸出保險基金

第30條 (基金의 設置) 輸出保險事業의 目的을 效率的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輸出保險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31條 (基金의 造成) ① 基金은 다음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 및 政府이외의 者의 出捐金

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源

②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①項 第1號의 出捐金を 歲出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第32條 (基金의 管理) 基金은 公社가 이를 管理한다.

第33條 (基金의 運用) 基金은 다음各號의 方法에 의하여 運用한다.

1. 金融機關에의 預入

2. 國債·地方債 또는 證券去來所에 上場된 有價證券의 買入

3. 기타 商工部長官이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하는 方法

第34條 (基金의 借入) ① 公社는 保險金

의支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基金의負擔으로 借入 또는 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② 第①項의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內에 償還하여야 한다.

第35條 (基金의 收入과 支出) ① 基金은 第31條 第①項의 財源과 保險料·回收金·利子 기타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을 그 收入으로 한다.

② 基金은 保險金·利子 및 公社의 運營經費 기타 基金의 運用에 필요한 經費를 그 支出로 한다.

第36條 (利益金과 損失金의 處理) ① 基金의 決算上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② 基金의 決算上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①項의 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이 不足할 때에는 政府가 補填한다.

第8章 韓國輸出保險公社

第37條 (設立) 이 法에 의한 輸出保險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韓國輸出保險公社를 設立한다.

第38條 (法人格)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第39條 (定款) ① 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에 관한 事項
4. 運營委員會 및 理事會에 관한 事項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事項
6.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事項
7. 會計에 관한 事項
8. 公告의 方法에 관한 事項
9.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10. 規約·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事項

② 公社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商工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40條 (登記) ① 公社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 第①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으며, 그 登記申請書에는 公

社의 定款과 商工部長官의 公社設立認可書 寫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
4. 任員의 姓名과 住所
5. 公告의 方法

③ 公社의 設立登記와 기타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1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公社가 아닌 者는 韓國輸出保險公社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42條 (民法의 準用) 公社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 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3條 (運營委員會) ① 公社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② 運營委員會는 公社의 業務 및 運營에 관한 基本方針을 樹立한다.

③ 運營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 (任員) ① 公社에 社長 및 副社長 各 1人을 包含한 7人 이내에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

② 社長은 商工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하고, 副社長과 理事는 社長의 提請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이 任免한다.

③ 監事は 商工部長官이 任免한다.

第45條 (任員의 任期) 社長·副社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46條 (任員의 職務) ① 社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公社의 業務를 統理한다.

② 副社長은 社長을 補佐하며, 社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 業務를 分掌하며, 社長 및 副社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 監事は 公社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47條 (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社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第①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

第48條 (任員の身分保障) 公社の任員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任期중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解任되지 아니한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때

2.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公社에 損失을 발생하게 한 때

3. 心身障碍로 인하여 職務遂行이 심히 困難하게 되거나 不可能하게 된 때

4. 第47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第49條 (理事會) ① 公社의 重要事項을 決議하기 위하여 公社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社長·副社長 및 理事로 構成한다.

③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④ 理事會는 社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⑤ 監事は 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50條 (職員의 任免) 公社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長이 任免한다.

第51條 (任員 및 職員의 兼職制限) 公社의 任員 및 職員은 그 職務 이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任員은 商工部長官의, 職員은 社長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를 兼할 수 없다.

第52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公社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 公務員으로 본다.

第53條 (業務) 公社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輸出保險에 관한 原保險·共同保險 및 再保險

2. 基金의 管理 및 運用

3. 信用調査

4. 輸出信用保證

5. 第1號 내지 第4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

6. 기타 輸出保險業務의 발전을 위하여 商工部長官이 委託하는 業務

第54條 (會計年度) 公社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55條 (豫算과 決算) 公社의 豫算과 決

算은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56條 (보고 및 調査) ① 輸出保險의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는 公社가 輸出契約 기타 輸出保險關係에 관련되는 事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要求하거나, 關係帳簿·書類 또는 輸出貨物을 調査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第①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行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標를 提示하여야 한다.

第57條 (異議申請) ① 公社가 이 法에 의하여 行한 處分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月이내 處分이 있는 날로부터 3月이내에 公社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 公社는 第①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을 때에는 1月이내에 이를 審議하여 그 結果를 당해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異議申請人은 第②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審議 結果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結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月이내에 商工部長官에게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④ 第②項의 規定은 第③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58條 (關係機關등에 대한 信用調査등의 依賴) ① 公社는 外國의 輸入制限·換制限 또는 國外商社의 信用·輸出保險事業의 수행에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外國換銀行 또는 大韓貿易振興公社의 國外支店 기타 關係機關(이하 “關係機關”이라 한다)에 調査를 依賴할 수 있다.

② 關係機關은 第①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依賴를 받은 때에는 調査를 行한 후 지체없이 그 事項을 公社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公社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①項의 調査를 外務部長官 또는 在外公館에 要請할 수 있다.

第59條 (監督) 商工部長官은 公社의 業務를 監督한다.

第60條 (보고 및 檢査) ① 商工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社에 대하여 公社의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事項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公社의 業務 및 財産狀況과 帳簿·書類·施設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商工部長官은 第①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결과 違法 또는 부당한 事項을 발견한 경우에는 公社에 대하여 그 是正·注意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9章 補 則

第61條 (罰則) ① 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 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0條 第①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보고를 한 때
2. 第60條 第①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 방해 또는 忌避한 때
3. 第60條 第②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② 第41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62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이 法은 1969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法律 第2167號 1970年 1月 1日 公布) 이 法은 1970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1977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第31條 第①項 및 第32條 第①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再保險公社가 代行하고 있는 輸

出保險事業 및 輸出保險基金會計事務는 이 法 施行日에 韓國輸出入銀行이 이를 承繼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1979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輸出入銀行이 代行하는 輸出保險業務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하는 것으로 본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 第②項의 規定은 1982年 1月 1일부터 施行하고, 公社에 관한 規定은 따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輸出保險業務의 代行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第31條 및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業務 및 基金會計의 代行은 이 法에 의한 公社가 設立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 公社는 輸出保險事業으로 인하여 발생한 權利·義務를 包括 承繼한다.

第3條 (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基金은 이 法에 의하여 政府가 出捐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公社의 設立準備) ① 商工部長官은 5人이내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設立委員會를 構成하고, 公社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게 한다.

② 設立委員會는 公社의 定款을 作成하여 商工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후 公社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 設立委員會는 公社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公社의 社長에게 業務를 引繼하여야 하며, 設立委員은 業務引繼가 끝난 때에 解囑된 것으로 본다.

10. 輸出保險法施行令

制定：大統領令 第 3743 號 1969 年 1 月 22 日
 改正：大統領令 第 4797 號 1970 年 3 月 24 日
 改正：大統領令 第 6564 號 1973 年 3 月 14 日
 改正：大統領令 第 8423 號 1977 年 1 月 27 日
 改正：大統領令 第 9309 號 1979 年 2 月 8 日
 改正：大統領令 第 10418 號 1981 年 7 月 23 日

第 1 條 (目的) 이 令은 輸出保險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輸出契約의 約定事項) ① 法 第 2 條 第 ① 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契約으로 約定하여야 할 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貨物의 名稱·規格 및 數量
2. 貨物의 價格 및 代金決濟條件
3. 貨物의 輸入國 및 船積時期

② 輸出契約의 約定事項은 貿易去來法 其他 對外去來에 關한 法令에 違反되어서는 아니 된다.

第 3 條 (中·長期延拂輸出契約의 決濟條件) 法 第 2 條 第 ⑤ 項의 規定에 의한 中·長期 延拂輸出契約의 決濟條件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輸出代金 등의 決濟期間이 6 月 이상 10 年 이내일 것. 다만, 商工部長官이 定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決濟期間을 6 月 이상 20 年 이내로 한다.
2. 先受金 比率·延拂金利 其他 商工部長官이 定하는 條件

第 4 條 (共同保險 및 再保險) ① 法 第 3 條의 2 의 規定에 의한 共同保險은 다음 各號의 事項을 條件으로 하는 輸出(海外建設工事·海外建設用役提供 및 海外投資를 包含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우에 불일 수 있다.

1. 內國人和 外國人이 共同으로 輸出하되, 輸入者(都給人 및 海外投資의 相對方을 包含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하여 內國人和 外國人이 主된 契約者와 從된 契約者의 關係를 가질 것.
2. 輸出代金은 主된 契約者가 輸入者로부터 支給받아 從된 契約者의 參與分에 該

當하는 輸出代金을 그 從된 契約者에게 支給하기로 할 것.

3. 主된 契約者와 從된 契約者는 自國의 輸出保險機關에 輸出保險으로 付保할 것.

② 法 第 3 條의 2 의 規定에 의하여 再保險에 불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內國人이 主된 契約者가 되어 外國人과 共同으로 輸出하는 경우에 韓國輸出保險公社가 締結한 輸出保險契約에 따른 責任中 그 外國人의 參與分에 대한 責任을 外國輸出保險者에게 出再하는 경우

2. 外國人이 主된 契約者가 되어 內國人과 共同으로 輸出하는 경우에 外國輸出保險者가 締結한 輸出保險契約에 따른 責任中 그 內國人의 參與分에 대한 責任을 韓國輸出保險公社가 受再하는 경우

③ 韓國輸出保險公社는 第 ② 項 第 1 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가 締結한 輸出保險契約에 따른 責任 中 一部를 國內再保險事業者에게 出再할 수 있다.

第 5 條 (輸出保險審議會의 構成) ① 法 第 8 條의 2 의 規定에 의한 輸出保險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는 委員長 1 人을 包含한 委員 12 人 이내로 構成한다.

② 委員長은 商工部次官이 되고,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가 된다.

1. 商工部 商易次官補
2. 經濟企劃院·外務部·財務部·動力資源部 및 建設部所屬 1 級 相當 公務員 中에서 商工部長官이 委囑하는 者 各 1 人
3. 韓國輸出保險公社 社長
4. 其他 輸出保險에 關하여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 中에서 商工部長官이 委囑하는 者

第6條 (審議會의 審議事項)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할 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保險料率
2. 保險關係 成立의 制限
3. 保險期間의 制限
4. 保險責任時期의 制限
5. 包括保險의 實施
6. 保險種類別 契約締結限度
7. 其他 商工部長官이 附議하는 事項

第7條 (委員長의 職務) ① 委員長은 審議會를 代表하며, 審議會의 會務를 統理한다.

②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指名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8條 (會議) ① 委員長은 審議會의 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② 會議는 委員長을 包含한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9條 (幹事) ① 審議會에 幹事 1人을 둔다.

② 幹事는 商工部 所屬職員 중에서 商工部長官이 任命한다.

③ 幹事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審議會의 庶務를 處理한다.

第10條 (手當) 審議會의 會議에 出席한 公務員이 아닌 委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第11條 (運營細則) 이 令에 規定된 것 이외에 審議會의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審議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定한다.

第12條 (供給貨物의 種類) 法 第10條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貨物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産業施設(船舶 및 車輛을 包含한다)과 그 部分品 및 部屬品
2. 特定國家에의 輸出을 위하여 生産된 貨物로서 當該 輸入國 이외의 國家에 대한 輸出 또는 國內에서의 販賣가 顯著하게 困難하다고 認定되는 것 중 商工部長官이 定하는 貨物

第13條 (一般輸出保險金의 支給率) 法 第11條 第①項의 規定에 의한 比率은 實損害額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第14條 (生産貨物 등의 種類) 法 第12條 第②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貨物의 種類는 農產物·林產物·畜產物·工產品 其他

貨物로서 輸出契約의 成立 또는 輸出貨物의 生産·加工 또는 集荷가 時期的으로 集中되는 것이거나 輸出進興政策上 獎勵하여야 할 것 중 商工部長官이 定하는 貨物로 한다.

第15條 (貨物供給의 相對方) 法 第12條 第②項 第3號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라 함은 外國政府 또는 外國의 地方公共團體가 發注한 事業을 行하는 者를 말한다.

第16條 (資本財 등의 種類) 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資本財 등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産業施設(船舶 및 車輛을 包含한다) 및 當該 産業施設을 위한 原料·豫備品·部分品·部屬品과 産業施設의 設置 또는 運營에 隨伴하는 技術 등의 用役
2. 第1號에 該當하지 아니한 貨物중 外貨獲得을 위한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顯著히 寄與하는 貨物로서 商工部長官이 定하는 것.

第17條 (中·長期延拂輸出保險金額) 法 第23條 第②項의 規定에 의한 比率은 保險價額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第18條 (輸出代金金融保險金額) 法 第26條의 3 第②項의 規定에 의한 比率은 保險價額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第19條 (海外投資保險事故) 法 第29條의 2 第①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由는 다음과 같다.

1. 破産 其他 이에 準하는 事由
2. 銀行에 의한 去來의 停止 其他 이에 準하는 事由(顯著하게 債務超過가 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
3. 6月 이상의 事業의 休止

第20條 (送金不能 期間) 法 第29條의 2 第①項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期間은 2月로 한다.

第21條 (海外投資保險의 保險期間) 法 第29條의 2 第②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期間은 15年으로 한다. 다만, 海外投資者의 外國法人이 그 事業의 全部를 開始할 때까지에 要하는 期間內에서 商工部長官이 定하는 期間을 加算한 期間으로 한다.

第22條 (海外投資保險金의 支給率) 法 第29條의 3 第①項 및 第②項의 規定에 의한 比率은 각각 100분의 90으로 한다.

第23條 (外國政府 등에 의한 管理期間)

法 第29條의 3 第④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期間은 2月로 한다.

第24條 (送金不能事由) 法 第29條의 3 第④項 第3號의 規定에 의한 事由는 다음과 같다.

1. 外國에서 實施되는 換去來의 制限 또는 禁止(2月이상 繼續하여 行하여진 것에 한한다)
2. 外國에서의 戰爭·內亂 또는 政變에 의한 換去來의 杜絶(2月이상 繼續하여 行하여진 것에 한한다)
3. 法 第29條의 2 第①項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의 發生에 의하여 取得한 金額이 讓渡가 禁止된 國債·公債 其他 이에 準하는 有價證券으로 取得한 것인 경우에 戰爭·內亂·政變 또는 外國政府 등의 行爲에 의한 當該 有價證券의 償還 不能
4. 第3號에 規定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戰爭·內亂·政變 또는 外國政府 등의 行爲에 의하여 法 第29條의 2 第①項 제1號 내지 第3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의 發生에 의하여 取得한 金額(金錢으로 取得한 것을 除外한다) 또는 取得할 수 있는 金額의 金錢으로의 取得不能

第25條 (海外建設工事保險金額) 法 第29條의 7 第②項의 規定에 의한 比率은 保險價額의 100 分の 80으로 한다.

第26條 (輸出保證保險金額) 法 第29條의 12 第②項의 規定에 의한 比率은 保險價額의 100 分の 70으로 한다.

第27條 (設立登記) 韓國輸出保險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의 設立登記는 商工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2週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28條 (支社 또는 出張所의 新設登記) ① 公社가 支社 또는 出張所를 設置한 때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1.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日 이내에 그 設置된 支社 또는 出張所의 名稱과 所在地
2. 새로 設置된 支社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日 이내에 法 第40條 第②項 各號 및 支社 또는 出張所의 名稱과 所在地
3. 이미 設置된 支社 또는 出張所의 所在

地에 있어서는 3週日 이내에 새로 設置된 支社 또는 出張所의 名稱과 所在地

② 主된 事務所·支社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登記所의 管轄區域안에서 새로이 支社 또는 出張所를 設置한 때에는 2週日 이내에 그 支社 또는 出張所의 名稱과 所在地만을 登記한다.

第29條 (移轉登記) ① 公社가 主된 事務所·支社 또는 出張所를 다른 登記所의 管轄區域으로 移轉한 때에는 舊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日 이내에 그 移轉의 뜻을, 新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日 이내에 法 第40條 第②項 各號 및 支社 또는 出張所의 名稱과 所在地를 登記하여야 한다.

② 同一한 登記所의 管轄區域 안에서 주된 事務所·支社 또는 出張所를 移轉한 때에는 2週日 이내에 그 移轉의 뜻만을 登記한다.

第30條 (變更登記) 公社는 法 第40條 第②項 各號 또는 이 令 第28條 第①項의 登記事項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主된 事務所 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日 이내에, 支社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日 이내에 變更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31條 (代理人的 選任登記) 韓國輸出保險公社社長(이하 “社長”이라 한다)이 代理人을 選任할 때에는 代理人을 둔 主된 事務所·支社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에서 2週日 이내에 各號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登記한 事項이 變更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代理人的 姓名과 住所
2. 代理人을 둔 主된 事務所·支社 또는 出張所의 名稱과 所在地
3. 代理人的 權限을 制限한 때에는 그 制限의 內容

第32條 (登記期間의 起算) 公社의 登記事項으로서 商工部長官의 認可 또는 承認을 얻어야 할 事項이 있는 때에는 그 認可書 또는 承認書가 到達한 날로부터 登記期間을 起算한다.

第33條 (管轄登記所) ① 公社의 登記는 主된 事務所·支社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그 支院 또는 登記所를 當該 登記의 管轄登記所로 한다.

② 登記所에는 公社登記簿를 備置한다.

第34條 (登記申請人) 公社의 登記에 있어서는 設立登記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社長이

그 申請人이 된다.

第 35 條 (登記申請書의 添附書類) 第 28 條 내지 第 31 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의 申請書에는 각각 그 事由를 證明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 36 條 (登記에 관한 準用規定) 公社의 登記에 관하여 이 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非訟事件節次法 第 192 條 내지 第 213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에 同法 第 200 條 第 ② 項 第 1 號, 第 203 條 및 第 208 條 중 “本店”을 “主된 事務所”로, “支店”을 “支社” 또는 “出張所”로 본다.

第 37 條 (運營委員會의 議決事項) 法 第 43 條 第 ② 項의 規定에 의하여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할 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公社의 定款變更
2. 公社의 豫算 및 決算
3. 第 1 號 및 第 2 號 이외에 公社의 業務 및 運營에 관하여 社長이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 38 條 (運營委員會의 構成) ① 運營委員會의 委員의 數는 委員長 1 人을 포함한 委員 8 人 이내의 範圍안에서 公社의 定款으로 定한다.

② 委員長은 社長이 되고, 委員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社長이 委囑한다.

第 39 條 (委員長) 委員長은 運營委員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한다.

第 40 條 (運營細則) 이 令에 規定하는 事項 이외에 運營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定한다.

第 41 條 (輸出信用保證) 法 第 53 條 第 4 號의 規定에 의한 輸出信用保證業務에 관한 事項은 商工部長官이 定한다.

第 42 條 (豫算과 決算) 法 第 55 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의 豫算은 會計年度開始 1 月前에, 決算은 會計年度 終了後 2 月 이내에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43 條 (關係機關등에 대한 信用調査등의 依賴) ① 法 第 58 條 第 ① 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依賴를 받은 關係機關의 長은 所屬職員 중에서 調査를 專擔할 者를 指定하여 그 職位와 姓名을 公社의 社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 ① 項의 調査에 所要되는 費用은 公社가 豫算의 範圍 안에서 이를 支給할 수 있다.

第 44 條 (施行規則) 이 令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商工部令으로 定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 27 條 내지 第 40 條의 規定은 法律 第 3399 號 輸出保險法 中 改正法律 附則 第 1 條 但書에 의한 公社의 成立日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法律 第 3399 號 輸出保險法 中 改正法律 附則 第 2 條 第 ① 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保險業務 및 基金會計의 代行業에 관한 細部事項은 商工部長官이 定한다.

③ (經過措置) 公社가 成立될 때까지는 公社의 權限에 속하는 事項은 商工部長官의 監督下에 韓國輸出入銀行이 이를 遂行한다.

④ (經過措置) 第 4 條 第 ② 項 各號·第 42 條 및 第 43 條 第 ② 項 中 “韓國輸出保險公社” 및 “公社”와 第 5 條 第 ② 項 및 第 43 條 第 ① 項 中 “韓國輸出保險公社 社長” 및 “公社의 社長”은 公社가 成立될 때까지 각각 “韓國輸出入銀行” 및 “韓國輸出入銀行長”으로 본다.

11. 輸出保險法施行規則

制定：財務部令 第 562號 1969년 1월 30일

改正：財務部令 第1229號 1977년 2월 10일

改正：商工部令 第 559號 1979년 2월 9일

改正：商工部令 第 635號 1981년 8월 20일

第1條 (保險關係 成立・制限의 公告) 輸出保險法(이하 “法”이라 한다) 第6條 第②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條 第①項의 保險關係 成立制限에 관한 公告를 하는 경우에는 官報에 의하거나 2個 이상의 日刊新聞에 2回 이상 掲載하여야 한다. 다만, 外交・國防上 必要한 境遇에는 保險契約者에게 通知하는 것으로 公告에 갈음할 수 있다.

第2條 (豫算) ① 輸出保險法 施行令(이하 “令”이라 한다)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輸出保險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의 豫算은 韓國輸出保險公社의 社長(이하 “公社의 社長”이라 한다)이 作成하여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公社의 社長이 第①項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얻고자 할 때에는 公社의 豫算書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1. 當該年度의 輸出保險事業計劃書 및 資金計劃書
2. 當該年度의 推定損益計算書 및 推定貸借對照表
3. 前年度의 損益計算書・貸借對照表 및 그 附屬書類

第3條 (決算) ① 令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決算은 公社의 社長이 作成하여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公社의 社長이 第①項의 承認을 얻고자 할 때에는 公社의 決算書에 다음 各號의 書

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1. 輸出保險事業 執行狀況表 및 基金運用狀況表
2. 當該年度의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
3. 기타 決算의 內容을 明白하게 함에 必要한 書類

③ 公社의 社長은 基金의 決算을 함에 있어서 輸出保險의 種類別로 保險業法 第98條에 準하는 責任準備金과 特別準備金を 保險業法施行規則 第25條 및 第27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計上하여야 한다.

第4條 (月末事業報告) 公社의 社長은 法 第60條 第①項의 規定에 의하여 每月 末日 現在의 다음 各號의 報告書 등을 다음달 15日까지 商工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輸出保險契約・有効契約高 및 信用調査 現況 報告書
2. 基金收入計算書
3. 基金支出計算書

附 則

① (施行日)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第2條 및 第3條 중 “韓國輸出保險公社” 및 “公社”와 第2條・第3條 및 第4條 중 “韓國輸出保險公社 社長” 및 “公社의 社長”은 公社가 成立될 때까지 各各 “韓國輸出入銀行” 및 “韓國輸出入銀行長”으로 본다.

II. 資 料 編

1. 主要 與信條件의 變更 推移
2. 機構 및 組織 變動 推移
3. 歷代 運營委員 및 任員
4. 歷代 部(室・支店・所)長
5. 年表

1. 主要 與信條件의 變更 推移

가. 融資期間(延拂期間)

(1) 輸出資金貸出

區 分	1976. 7. 1	1977. 1. 1	1977. 5. 2	1979. 5. 15	1981. 11. 17	1985. 12. 31
플랜트	10년	→	10년(7년)	→	→	→
機械類	10년	5년	5년(3년)	→	10년(7년)	→
鐵道車輛	10년	8년	5년(3년)	10년(7년)	→	→
船舶	10년	8년	8년(5년)	→	→	8.5년(5년)
乘用車(버스포함)	10년	3년	3년(2년)	→	→	→
部品類	—	—	3년(2년)	→	→	→
기타	10년	5년	5년(3년)	→	→	→

註：()안은 1백만「달러」이하 去來의 延拂期間임.

(2) 技術提供資金貸出：輸出資金貸出의 경우에 準함.

(3) 直接貸出(1979. 8월 업무 개시)：輸出資金貸出의 1백만「달러」초과 去來의 경우와 동일함.

(4) 轉貸資金貸出(1978. 6월 업무 개시)

區 分	1978. 6.	1980. 2. 5	1981. 11. 17
플랜트, 鐵道車輛, 船舶	外國金融機關과의 協	5년(5년)	→
機械類	定 또는 合議된 條件	5년(3년)	5년(5년)
部品類 및 乘用車(버스포함)	에 따름	3년(2년)	→
기타		5년(3년)	→

註：()안은 1백만「달러」이하 去來의 延拂期間임.

(5) 海外投資(海外事業)資金貸出

1976. 7. 1	1977. 5. 2
10년	1백만달러 초과：10년 1백만달러 이내：7년

나. 貸出金利

(1) 輸出資金貸出

(단위 : 연율%)

	1976. 7. 1	1977. 2. 9	1980. 1. 18	1981. 11. 17	1984. 11. 5	1985. 8. 31	1985. 12. 30	1986. 2. 15
船舶	8	7	8	9	9	9	8	8
船舶이외	8~9				9~10	9~11.15	9~11.15	8.8~11.2

(2) 技術提供資金貸出

(단위 : 연율%)

1976. 7. 1	1977. 7. 1	1980. 1. 18	1981. 2. 6	1984. 11. 5
8	7	libor+1.96	輸出資金貸出과 동일	輸出資金貸出의 플렌트 경우와 동일

(3) 直接貸出

(단위 : 연율%)

1979. 8	1980. 1	1981. 7	1981. 11. 17	1984. 11. 5
7~9	8.5~9	8.5	9.5	輸出資金貸出과 동일

(4) 轉貸資金貸出

(단위 : 연율%)

1978. 6	1980. 1. 1	1981. 11. 17	1985. 8. 31
7~9	9	10	輸出資金貸出과 동일

(5) 海外投資(海外事業)資金貸出

(단위 : 연율%)

1976. 7. 1	1977. 2. 9	1980. 1. 8	1982. 12. 1	1984. 11. 5	1985. 8. 31	1986. 3. 15
8~9	7	libor+ 1.96~1.99	libor+ 1.5~2	○大企業 : libor+ 1.5 ○中小企業 : 10 ○重要物資 또는 主 要資源確保事業 : 9	○大企業 : 10 ○中小企業 : 9.5 ○重要物資 또 는 主要資源 確保事業 : 9	○大企業 : 10 ○中小企業 및 重要物資 또 는 主要資源 確保事業 : 9

2. 機構 및 組織 變動 推移

1976. 7.1 (開 設)	1976. 10.4 (第 1 次 改正)	1977. 1.1 (第 2 次 改正)	1977. 1.27 (第 3 次 改正)	1977. 8.17 (第 4 次 改正)
○業務部 ○企劃調査部 ○總務部 —總務課 —庶務課 ○監査室	○業務部 ○企劃調査部 —外換管理課 ○總務部 —總務課 —庶務課 ○監査室	○業務部 ○企劃調査部 —外換管理課 ○總務部 —總務課 —庶務課 ○輸出保險部 —業務課 —管理課 —信用調査課 ○監査室	○業務部 —企劃課 —外換管理課 —法規課 —資金課 ○總務部 —總務課 —庶務課 —安全計劃課 ○海外投資調査部 ○審査部 ○金融部 ○輸出保險部 —業務課 —管理課 —信用調査課 ○監査室	○業務部 —企劃課 —外換管理課 —法規課 —資金課 ○總務部 —總務課 —庶務課 —研修課 —文書課 —安全計劃課 ○海外投資調査部 ○審査部 ○金融部 ○業務改善室 ○輸出保險部 —統轄課 —保險業務課 —保險管理課 —信用調査課 —補償課 ○監査室
		○釜山事務所	左 同	○釜山出張所 (1977. 11.22)
3部 1室 2課	3部 1室 3課	4部 1室 6課 1國內 事務所	6部 1室 10課 1國內 事務所	6部 2室 14課 1國內 出張所

1978. 2.28 (第5次 改正)	1978. 8.14 (第6次 改正)	1979. 4.27 (第7次 改正)	1979. 10.11 (第8次 改正)
○業務部 —企劃課 —外換管理課 ○法規室 ○總務部 —總務課 —庶務課 —研修課 —文書課 —安全計劃課 ○資金部 —資金1課 —資金2課 ○海外投資調查部 ○審査部 ○金融部 ○業務改善室 ○輸出保險部 —統轄課 —保險業務課 —保險管理課 —信用調查課 —補償課 ○監査室	○業務部 —企劃課 —外換管理課 ○法規室 ○總務部 —總務課 —庶務課 —研修課 —文書課 —安全計劃課 ○資金部 —資金1課 —資金2課 ○海外投資調查部 ○審査1部 ○審査2部 ○金融部 ○業務改善室 ○輸出保險部 —統轄課 —保險業務課 —保險管理課 —信用調查課 —補償課 ○監査室	○企劃部 —企劃課 —外換管理課 ○法規室 ○總務部 —總務課 —庶務課 —研修課 —文書課 —安全管理課 ○資金部 —資金1課 —資金2課 ○海外投資調查部 ○審査1部 ○審査2部 ○金融部 ○業務改善室 ○輸出保險部 —統轄課 —保險業務課 —保險管理課 —信用調查課 —補償課 ○監査室	○企劃部 —企劃1課 —企劃2課 —外換管理課 ○任員附屬室 ○法規室 ○總務部 —總務課 —庶務課 —研修課 —安全管理課 ○資金部 —資金1課 —資金2課 ○海外投資調查部 ○審査1部 ○審査2部 ○金融部 ○業務改善室 ○輸出保險部 —統轄課 —保險業務課 —保險管理課 —信用調查課 —補償課 ○監査室
左 同	○釜山出張所 ○「뉴욕」事務所 (1978. 6.1) ○「런던」事務所 (1978. 6.1)	○釜山出張所 ○「뉴욕」事務所 ○「런던」事務所 ○「로스엔젤레스」事務所 (1978. 8.28) ○「홍콩」事務所 (1978. 9.1)	○釜山出張所 ○「뉴욕」事務所 ○「런던」事務所 ○「로스엔젤레스」事務所 ○「홍콩」事務所 ○東京事務所 (1979. 6.19) ○「아비잔」事務所 (1979. 6.20)
7部 3室 14課 1國內 出張所	8部 3室 14課 1國內 出張所 2國外 事務所	8部3室14課(名稱變更) 1國內 出張所 4國外 事務所	8部 4室 14課 1國內 出張所 6國外 事務所

1980. 3.15 (第9次 改正)	1980. 11.18 (第10次 改正)	1981. 2.9 (第11次 改正)	1982. 3.2 (第13次 改正)
○企劃部 —企劃1課 —企劃2課 —外換管理課 ○任員附屬室 ○法規室 ○總務部 —總務課 —庶務課 —研修課 ○資金部 —資金1課 —資金2課 ○海外投資調查部 ○審査1部 ○審査2部 ○金融部 ○業務改善室 ○安全管理室 ○輸出保險部 —統轄課 —保險業務課 —保險管理課 —信用調查課 —補償課 ○監査室	○企劃部 —企劃1課 —企劃2課 —外換管理課 ○任員附屬室 ○法規室 ○總務部 —總務課 —庶務課 —研修課 ○資金部 —資金1課 —資金2課 —資金總括課 ○海外投資調查部 ○審査1部 ○審査2部 ○金融部 ○業務改善室 ○安全管理室 ○輸出保險部 —統轄課 —保險業務課 —保險管理課 —信用調查課 —補償課 ○監査室	○企劃部 —企劃1課 —企劃2課 —外換管理課 ○任員附屬室 ○法規室 ○總務部 —總務課 —庶務課 —研修課 ○資金部 —資金1課 —資金2課 —資金總括課 ○海外投資調查部 ○審査1部 ○審査2部 ○金融部 ○業務改善室 ○安全管理室 ○輸出保險1部 —統轄課 —保險業務課 —補償課 ○輸出保險2部 —保險管理課 —信用調查課 —補償課 ○監査室	○企劃部 —企劃1課 —企劃2課 —外換管理課 ○文書部 ○總務部 —總務課 —庶務課 —研修課 ○資金部 —資金1課 —資金2課 —資金總括課 ○海外投資調查部 ○審査1部 ○審査2部 ○金融部 ○業務改善室 ○安全管理室 ○輸出保險1部 —統轄課 —保險業務課 —補償課 ○輸出保險2部 —保險管理課 —信用調查課 —制度調查課 ○監査室
○釜山出張所 ○「뉴욕」事務所 ○「런던」事務所 ○「로스엔젤레스」事務所 ○「홍콩」事務所 ○東京事務所 ○「아비잔」事務所	左 同	○釜山出張所 ○「뉴욕」事務所 ○「런던」事務所 ○「로스엔젤레스」事務所 ○「홍콩」事務所 ○東京事務所 ○「아비잔」事務所 ○「산티아고」事務所 (1981. 9.1)	○釜山出張所 ○「뉴욕」事務所 ○「런던」事務所 ○「로스엔젤레스」事務所 ○「홍콩」事務所 ○東京事務所 ○「아비잔」事務所 ○「산티아고」事務所 ○「자카르타」事務所 (1982. 11.1)
8部 5室 13課 1國內 出張所 6國外 事務所	8部 5室 14課 1國內 出張所 6國外 事務所	9部 5室 15課 1國內 出張所 7國外 事務所	10部 3室 15課 1國內 出張所 8國外 事務所

1984. 4.27 (第16次 改正)	1985. 2.6 (第17次 改正)	1985. 5.21 (第18次 改正)	1985. 9.10 (第19次 改正)	1986. 4. 22 (第21次 改正)
○企劃部 —企劃1課 —企劃2課 —外換管理課 ○文書部 ○總務部 —總務課 —庶務課 —研修課 ○資金部 —資金1課 —資金2課 —資金 總括課 ○海外投資調查部 ○審查1部 ○審查2部 ○金融部 ○業務改善室 ○安全管理室 ○輸出保險1部 —統轄課 —保險業務課 —制度調查課 ○輸出保險2部 —保險管理課 —信用調查課 —補償課 ○監查室	○企劃部 —綜合企劃課 —業務企劃課 —豫算課 ○文書部 ○總務部 —總務課 —庶務課 —研修課 ○資金部 ○海外投資調查部 ○審查1部 ○審查2部 ○金融部 ○業務改善室 ○安全管理室 ○輸出保險1部 —統轄課 —保險業務課 —制度調查課 ○輸出保險2部 —保險管理課 —信用調查課 —補償課 ○監查室	○企劃部 —綜合企劃課 —業務企劃課 —豫算課 ○文書部 ○總務部 —總務課 —庶務課 —研修課 ○資金部 ○海外投資調查部 ○審查1部 ○審查2部 ○金融部 ○業務改善室 ○安全管理室 ○輸出保險1部 —統轄課 —保險業務1課 —保險業務2課 —制度調查課 ○輸出保險2部 —保險管理課 —信用調查1課 —信用調查2課 —補償課 ○監查室	○企劃部 —綜合企劃課 —業務企劃課 —豫算課 ○文書部 ○人事部 —人事課 —給與課 —研修課 ○庶務部 —庶務課 —管理課 —營繕課 ○資金部 ○海外投資調查部 ○審查1部 ○審查2部 ○金融1部 ○金融2部 ○法規室 ○業務改善室 ○安全管理室 ○輸出保險1部 —統轄課 —保險業務1課 —保險業務2課 —制度調查課 ○輸出保險2部 —保險管理課 —信用調查1課 —信用調查2課 —補償課 ○監查室	○企劃部 —綜合企劃課 —業務企劃課 —豫算課 ○人事部 —人事課 —給與課 —研修課 ○庶務部 —庶務課 —管理課 —營繕課 ○資金部 ○海外投資調查部 ○審查1部 ○審查2部 ○金融1部 ○金融2部 ○法規室 ○業務改善室 ○安全管理室 ○輸出保險1部 —統轄課 —保險業務1課 —保險業務2課 —制度調查課 ○輸出保險2部 —保險管理課 —信用調查1課 —信用調查2課 —補償課 ○監查室
○釜山出張所 以下左同	○釜山出張所 以下左同	○釜山出張所 以下左同	○釜山出張所 以下左同	○釜山支店 (1986.3.18) 以下左同
左 同	10部 3室 12課 1國內 出張所 8國外 事務所	10部 3室 14課 1國內 出張所 8國外 事務所	11部 3室 17課 1國內 出張所 8國外 事務所	11部 4室 17課 1附屬室 1國內 支店 8國外 事務所

3. 歷代 運營委員 및 任員

가. 運營委員

所 屬	職 位	姓 名	就任年月日	退任年月日
經濟企劃院	企劃次官補	徐錫俊	1976. 7. 1	1978. 2. 12
	企劃次官補	姜慶植	1978. 2. 13	1982. 1. 24
	企劃次官補	河東善	1982. 1. 25	1983. 1. 28
	次官補	鄭永儀	1983. 1. 29	1983. 8. 28
	次官補	陳稔	1983. 8. 29	
外 務 部	經濟次官補	崔浩中	1977. 12. 19	1978. 6. 6
	經濟次官補	申東元	1978. 6. 7	1980. 12. 19
	第2次官補	李昌洙	1980. 12. 20	1982. 12. 27
	第2次官補	朱炳國	1982. 12. 28	1983. 11. 9
	第2次官補	申貞燮	1983. 11. 10	1984. 6. 6
	第2次官補	尹億燮	1984. 6. 7	1985. 5. 19
	第2次官補	柳宗夏	1985. 5. 20	
財 務 部	財政次官補	高炳佑	1976. 7. 1	1977. 9. 25
	財政次官補	李龍萬	1977. 9. 26	1978. 6. 23
	國際金融次官補	鄭寅用	1978. 6. 24	1980. 9. 19
	國際金融次官補	朱炳國	1980. 9. 20	1982. 1. 14
	企劃管理室長	朱炳國	1982. 1. 15	1982. 12. 27
	企劃管理室長	權泰元	1982. 12. 28	1984. 9. 4
	第1次官補	李炯九	1984. 9. 5	1986. 1. 27
	第1次官補	李同浩	1986. 1. 28	
商 工 部	商易次官補	朴弼秀	1976. 7. 1	1980. 9. 4
	商易次官補	金善吉	1980. 9. 5	1980. 10. 1
	商易次官補	洪性佐	1980. 10. 2	1982. 12. 23
	第1次官補	車秀明	1982. 12. 24	1984. 2. 2
	第1次官補	金喆壽	1984. 2. 3	
韓 國 銀 行	理	金建	1976. 7. 1	1977. 3. 15
	理	秋仁錫	1977. 3. 16	1978. 7. 30
	理	鄭英謨	1978. 7. 31	1980. 8. 25
	理	高光直	1980. 8. 26	1981. 8. 26
	理	田永秀	1981. 8. 27	1982. 7. 8
	理	張炫圭	1982. 7. 9	1983. 8. 23
	理	李昶洙	1983. 8. 24	1984. 10. 24
	理	李尙鎬	1984. 10. 25	
韓國外換銀行	專務理事	洪完模	1976. 7. 1	1977. 4. 7
	專務理事	李弼善	1977. 4. 8	1979. 10. 23
	專務理事	鄭憲俊	1979. 10. 24	1980. 8. 28

所 屬	職 位	姓 名	就任年月日	退任年月日	
韓國外換銀行	理	事	金 瑗 敬	1980. 8. 29	1981. 10. 6
	理	事	金 斗 杓	1981. 10. 7	1982. 8. 19
	理	事	趙 澤 英	1982. 8. 20	1984. 1. 3
	理	事	洪 憲 欽	1984. 1. 4	1985. 2. 14
	理	事	崔 昇 洛	1985. 2. 15	
韓國貿易協會	副 會 長	吳 範 植	1976. 7. 1	1978. 2. 20	
	副 會 長	李 致 寧	1978. 2. 21	1979. 3. 4	
	副 會 長	金 禹 根	1979. 3. 5	1981. 9. 25	
	副 會 長	桂 鳳 赫	1981. 9. 26	1984. 6. 5	
	副 會 長	李 鳳 宣	1984. 10. 11		
動力資源部 (參觀委員)	企劃管理室長	李 鳳 瑞	1978. 7. 26	1981. 1. 7	
	資源政策室長	許 南 薰	1981. 1. 8	1983. 11. 7	
	資源政策室長	崔 震 碩	1983. 11. 29		

4. 任員

銀行長

代 順	姓 名	就任年月日	退任年月日	備 考
初代	宋 仁 相	1976. 7. 1	1979. 5.13	
2代	梁 潤 世	1979. 5.14	1979.12.14	
3代	李 泰 浩	1980. 1. 8	1983. 1. 6	
4代	朴 聖 相	1983. 1.27	1986. 1.12	
5代	柳 惇 佑	1986. 1.13		

専務理事

	李 泰 浩	1977. 5.12	1980. 1. 7	銀行長 就任
	金 建	1980. 1. 8	1980. 7.30	
	河 國 煥	1980. 8. 1	1985. 9.18	
	成 旭 基	1985. 9.19		

監事

	朴 鼎 在	1976. 7. 1	1978. 5. 1	
	金 建	1978. 5. 1	1980. 1. 7	
	金 鍾 燮	1980. 1. 8	1980. 7.19	
	全 石 斗	1980. 8.20	1984. 8.19	
	宋 茂 燮	1984.10. 2		

理事

	李 泰 浩	1976. 7. 1	1977. 5.11	専務理事로 昇格
	元 裕 敏	1976. 7. 1	1980. 7.19	
	全 石 斗	1977. 2. 3	1980. 8.20	監事로 昇格
	李 鴻 俊	1977. 5.12	1983. 5.11	
	崔 鍾 岳	1979. 5. 7	1985. 5. 7	専務理事로 昇格
	鄭 勳 沐	1980. 7. 5	1981. 6.20	
	成 旭 基	1980. 8.20	1985. 9.18	
	朴 炳 植	1980. 8.20		
	鮮 于 潤	1981. 8.13		
	朴 京 東	1983. 6.30		
	李 鍾 桓	1985. 5. 8		
	李 定 寧	1985.10. 2		

4. 歷代 部(室・支店・所)長

任員附屬室(廢止)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任 員 附 屬 室 長	李 鍾 桓	1979.11. 8	總務部長兼務 1982. 3. 9 任員附屬室과 法規室이 文書部로 통합 개편
	朴 春 義	1979.11.28	
	蔡 弘 植	1981. 8.13	

企劃調查部(廢止)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企 劃 調 查 部 長	全 石 斗	1976. 7. 1	1977. 1.27 企劃調查部가 業務部와 海外投資調查部로 개편

企劃部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業 務 部 長	李 鍾 桓	1977. 2.15	1978. 2.28 業務部가 業務部, 資金 部, 法規室로 확대 개편
	陳 重 元	1979. 3. 1	
企 劃 部 長	陳 重 元	1979. 4.27	業務部를 企劃部로 개편
	鄭 炳 武	1982. 3. 9	
	金 東 均	1983. 6. 1	
	陳 重 元	1985. 5. 8	

文書部(廢止)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文 書 部 長	蔡 弘 植	1982. 3. 9	1986. 4. 22 法規室 및 庶務部 소속 任員附屬室로 분리 개편
	朴 春 義	1984.10.12	

總務部(廢止)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總 務 部 長	崔 鍾 岳	1976. 7. 1	1979.10.11 總務部가 總務部와 任員 附屬室로 확대 개편, 1980. 3.15 總 務部가 總務部와 安全管理室로 확대 개편
	金 然 河	1977. 5.12	
	金 澤	1979. 3. 1	
	李 鍾 桓	1979. 6. 5	
	金 東 均	1980.12. 1	
	金 澤	1983. 6. 1	
	李 鍾 桓	1984.10.12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朴 炳 奎	1985. 5. 8	1985. 9.10 總務부가 人事부와 庶務 부로 개편

人事部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人 事 部 長	朴 炳 奎	1985. 9.10	

庶務部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庶 務 部 長	具 滋 協	1985. 9.10	
任員附屬室長	文 龍 達	1986. 5. 1	
	趙 昌 鎬	1986. 5. 1	

行舍建築推進班(廢止)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行舍建築推進班長	具 滋 協	1983. 6. 1	1985. 9.10 行舍完工에 따라 해체

海外投資調查部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海外投資調查部長	成 旭 基	1978. 4. 4	
	李 鍾 桓	1979. 3. 1	
	李 僨 九	1979. 6.23	
	田 宗 培	1984.10.12	
	李 善 浩	1986. 5. 1	

資金部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資 金 部 長	鮮于 潤	1979. 4.11	
	田 宗 培	1981. 8.13	
	蔡 弘 植	1984.10.12	

業務部(廢止)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業 務 部 長	李 鴻 俊	1976. 7. 1	1977. 1.27 業務부가 審査부와 金融 부로 개편

審査部(廢止)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審 查 部 長	李 鴻 俊	1977. 2.15	1978. 8.14 審査부가 審査1부와 審査2부로 개편
	崔 鍾 岳	1977. 5.12	

審査1部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審 查 1 部 長	崔 鍾 岳	1978. 9. 1	
	金 澤	1979. 6. 5	
	李 善 浩	1983. 6. 1	
	田 宗 培	1986. 5. 1	

審査2部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審 查 2 部 長	金 澤	1978. 9. 1	
	成 旭 基	1979. 3. 1	
	李 鍾 桓	1980.12. 1	
	李 善 浩	1981. 8.13	
	朴 炳 奎	1983. 6. 1	
	鄭 東 豪	1984. 1.20	
	申 甲 澈	1985. 5. 8	

金融部(廢止)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金 融 部 長	金 澤	1977. 2.15	1986. 4.22 金融 1,2부로 개편
	曹 永 采	1978. 9. 1	
	黃 在 元	1980.12. 1	
	柳 奉 錫	1982.11. 1	
	鄭 東 豪	1985. 5. 8	

金融1部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金 融 1 部 長	鄭 東 豪	1986. 5. 1	

金融2部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金 融 2 部 長	朴 春 義	1986. 5. 1	

輸出保險部(廢止)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輸 出 保 險 部 長	黃 相 信	1977. 1. 1	1981. 2. 9 輸出保險부가 輸出保險1 부와 輸出保險2부로 개편

輸出保險 1 部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輸 出 保 險 1 部 長	黃 相 信 玉 正 煥	1981. 3. 1 1984.10.12	

輸出保險 2 部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輸 出 保 險 2 部 長	申 甲 澈 鄭 東 豪 玉 正 煥 孔 道 植	1981. 3. 1 1983. 6. 1 1983. 9. 9 1985. 5. 8	

法規室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法 規 室 長	鄭 炳 武 金 然 河 曹 永 采 金 然 河 鄭 炳 武	1978. 3. 1 1979. 3. 1 1980.12. 1 1981. 8.13 1986. 5. 1	1982. 3. 9 任員附屬室과 法規室이 文書部로 통합 개편 1986. 4. 22 文書部 해체로 法規室 부활

業務改善室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業 務 改 善 室 長	高 永 鎬 鄭 炳 武 鄭 東 豪 金 然 河 柳 奉 錫 朴 炳 奎 文 龍 達 姜 秣 二	1977. 9.17 1979. 3. 1 1979. 6. 5 1980.12. 1 1981. 8.13 1982.11. 1 1983. 6. 1 1986. 5. 1	

安全管理室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安 全 管 理 室 長	韓 永 洙 趙 鎮 煥	1980. 4. 1 1985. 4. 1	

監査室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首席検査役 監査室長	曹 永 采	1976. 7. 1	
	黃 在 元	1978. 9. 1	
	黃 在 元	1979.11. 7	
	鄭 炳 武	1980.12. 1	
	曹 永 采	1982. 3. 9	
	鄭 東 豪	1983. 9. 9	
	孔 道 植	1984. 1.20	
	金 東 均	1985. 5. 8	
	吳 金 宰	1985.11.23	

釜山支店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事務所長 出張所長	權 寧 喆	1977. 1. 1	1977.11.22 事務所에서 出張所로 명 칭변경
	權 寧 喆	1977.11.22	
	李 成 浩	1978. 3. 1	
	鄭 炳 武	1979. 6. 5	
	蔡 弘 植	1980.12. 1	
	文 龍 達	1981. 8.13	
	申 甲 澈	1983. 6. 1	
	孔 道 植	1983. 9. 9	
	朴 炳 奎	1984. 1.20	
	吳 金 宰	1985. 5. 8	
支 店 長	崔 成 龍	1985.11.23	1986. 3.18 出張所에서 支店으로 명 칭변경
	崔 成 龍	1986. 3.18	

「뉴욕」事務所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事務所長	李 善 浩	1977.10.19	事務所開設準備委員長 事務所長
	李 善 浩	1978. 6. 1	
	李 鍾 桓	1981. 8.13	
	李 儼 九	1984.10.12	

「런던」事務所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事務所長	田 宗 培	1977. 8.20	事務所開設準備委員長 事務所長
	田 宗 培	1978. 6. 1	
	朴 春 義	1981. 8.13	
	金 澤 澤	1984.10.12	

東京事務所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事 務 所 長	李 鶴 柱	1978.12.22	事務所開設準備委員長 事務所長
	李 鶴 柱	1979. 6.19	
	鄭 東 豪	1980.12. 1	
	鄭 炳 武	1983. 6. 1	
	具 滋 協	1986. 5. 1	

「아비잔」事務所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事 務 所 長	金 潤 培	1978. 3.30	事務所開設準備委員長 事務所開設準備委員長 事務所長
	趙 昌 鎬	1979. 4.27	
	趙 昌 鎬	1979. 6.20	
	章 榮 孝	1981. 3. 1	
	黃 昌 益	1984.10.12	

「로스엔젤레스」事務所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事 務 所 長	申 甲 澈	1977.11.11	事務所開設準備委員長 事務所長
	申 甲 澈	1978. 8.28	
	玉 正 煥	1980.12. 1	
	金 性 鐸	1983. 9. 9	

「홍콩」事務所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事 務 所 長	金 松 雄	1978. 3. 1	事務所開設準備委員長 事務所長
	金 松 雄	1978. 9. 1	
	金 殷 壽	1981. 8.13	
	金 寬 永	1984.10.12	

「산티아고」事務所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事 務 所	姜 承 求	1981. 3. 1	事務所開設準備委員長 事務所長
	姜 承 求	1981. 9. 1	
	李 秀 豈	1984.10.12	

「자카르타」事務所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事 務 所 長	陳 重 元	1982. 3. 9	事務所開設準備委員長 事務所長
	陳 重 元	1982.11. 1	
	柳 奉 錫	1985. 5. 8	

5. 年表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76.4	○財務部, 韓國輸出入銀行 設立을 결정(8) ○韓國輸出入銀行 設立委員會 구성 및 設立事務局 발족(10) ○제1차 設立委員會 개최(12)	○財務部, 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을 합병하여 8월초에 새로운 大型 銀行을 발족키로 결정(8) ○經濟企劃院, 不公正去來行爲 및 競爭 制限行爲를 전면금지(15) ○政府, 韓國과 가봉간의 經濟協力을 일원화하기 위해 韓·가봉 株式會社(SOGACCO) 설립(30)	○日本輸出入銀行, 현행 「플랜트」輸出業者에 대한 信用을 「뱅크 론」을 포함한 輸入業者에 대한 信用으로 전환(9) ○캐나다, 각종衣類에 대한 輸入規制 강화(14) ○ADB, 제9차 年次總會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개최(22)
5	○初代 宋仁相 銀行長 임명(12) ○設立委員 일부 변경(14)	○韓國銀行, 輸出金融의 과다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輸出金融條件을 강화(6) ○政府, 重工業製品 長期輸出計劃확정(18) ○財務部, 輸出用原資材 延支給輸入擔保金적립율을 5%로 인상(18) ○政府, 浦項綜合製鐵 제2기 확장공사 준공(31)	○UNCTAD,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제4차 總會 개막(5) ○世界銀行, 貸出金利를 8.5%에서 8.85%로 인상(10)
6	○제2차 設立委員會 개최(1) ○任員 임명(1) —監事 朴鼎在 —理事 李泰浩 —理事 元裕敏 ○韓國銀行 및 外換銀行으로부터의 借入金 200 억원 및 300억원을 각각 出資로 전환(17) ○設立登記(21) ○政府貸下金 53억55백만원을 出資로 전환(21) ○設立委員會, 銀行長에게 設立事務 인계(23)	○財務部, 117개 섬유류제품과 22개 화학약품을 關稅定額還給對象品目으로 추가 지정(1) ○財務部, 278억원의 基金으로 信用保證基金 독립 발족(10) ○財務部, 外國換管理規程 전면 개편(21)	○방글라데시, IFC 가입(21) ○OECD, 多國籍企業에 대한 行動規約 채택(21) ○OECD, 연례閣僚會談에서 「인플레이」억제를 위하여 經濟成長率을 둔화시키기로 합의(21) ○7個國經濟頂上會談, 지속적인 經濟成長政策을 추구할 것에 합의하는 「산후안」宣言을 발표(28)
7	○正式發足, 業務개시(1) ○定款 및 職制分課規程 제정(1)	○財務部, 2년제 財形貯蓄制를 신설(12) ○經濟企劃院, 現金借款 및 物資借款의 도입을 대폭 규제키로 결정(28)	○캐나다·EC, 經濟協力協定 체결(6) ○EC開發援助委員會, 對開途國 STABEX 制度에 의한 최초의 國別援助制

年 月	當 行	國 內	海 外
8	○제 13 차 業務方法書개정 (3) ○職場民防衛隊 발대 (19)	○財務部, 外國換管理規程 일부 개정 (31) ○政府, 銀行金利 대폭인상 (2) ○財務部, 金融機關 預貸金利인상에 따라 信託預金金利 인상 (2) ○韓國銀行, 外貨貸出金利를 최고금리 범위내에서 각 外國換銀行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치 (13)	當額발표 (8) ○IDB, 英國, 西獨, 日本 등 9개 域外國의 신규 가입을 승인 (9) ○EC·ACP諸國閣僚會議, 9개 開途國의 「로메」協定 신규가입을 승인 (15) ○프랑스, 公定割引率을 8%에서 9.5%로 인상 (22) ○濠洲·印度政府, 양국간 交易증진을 위한 貿易協定 체결 (2) ○英國, 「스털링」지역의 「스털링」貿易信用에 관한 外換統制強化措置 발표 (23)
9	○宋仁相 銀行長, 제31차 IMF/IBRD年次總會 참석차 출국 (17) ○프랑스 經濟使節團 來訪 (20)	○商工部, 綜合貿易商社의 指定要件을 일부 강화 (21) ○商工部, 제4차 5개년計劃期間의 電子製品育成計劃案 확정 (30)	○멕시코, 「페소」貨를 變動換率制度로 이행 (1) ○EC 9개국 外相, 유럽議會 直接選舉實施에 관한 協定에 정식 서명 (20) ○프랑스, 公定割引率을 9.5%에서 10.5%로 인상 (23)
10	○職制分課規程 개정 (4) 一企劃調查部에 外換管理課 신설	○財務部, 外國換管理規程 개정 (5) ○韓國銀行, 輸出金融 融資取扱細則 일부 개정 (10)	○IMF, 世界銀行과 합동年次總會를 「마닐라」에서 개최 (2) ○世界銀行, 貸出金利를 향후 3개월간 8.9%에서 8.7%로 인하 (2) ○西獨, 「마르크」貨를 「스네이크」體制내에서 평가 절상 (18) ○EC, 200「마일」共同漁撈地域을 설정하기로 합의 (30)
11		○財務部, 貿易規模의 확대에 따라 外國換銀行의 國內外 점포망 확대 계획 발표 (9) ○國會, 所得稅法 改正案과 附加價值稅法案 등 18개	○EC委員會·루마니아, 纖維類 輸入에 관한 協定 체결 (10) ○美國, 公定割引率을 5.5%에서 5.25%로 인하 (19) ○GATT, 「제네바」에서 年

年 月	當 行	國 內	海 外
12	○政府出資 100억원 납입 (30) ○제 3 차 輸出保險法 개정 (31)	- 稅法案을 통과 (29) ○經濟企劃院, 제4차 經濟開發5개년計劃(1977~81)을 확대 수정 (7) —계획기간 중의 年平均目標 經濟成長率: 9% → 9.2% —1981년의 1인당 GNP: 1,284「달러」 → 1,512「달러」 ○財務部, 外換規制의 대폭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外國換管理規程 개정 (9) ○金通委, 外貨貸出融資 범위 확대와 貸出金利 인하 등 外貨貸出取扱規程 개정 (16) ○國務會議, 附加價值稅 施行令(案) 의결 (27)	- 次總會개막 (22) ○英國, 財政赤字감축, 雇傭擴大, 投資增進을 내용으로 하는 緊急綜合經濟措置 발표 (15). ○OPEC閣僚會議, 原油價格의 2元化 引上을 결정 (17) ○멕시코, 外換去來 中止措置를 해제 (20)
77.1	○輸出保險代行機關을 大韓再保險公社에서 輸銀으로 변경 (1) ○職制分課規程 개정 (27) —企劃調查部를 業務部와 海外投資調查部로 분리, 개편 —總務部내 安全計劃課 신설 ○제3차 輸出保險法施行令 개정 (27)	○政府, 經濟 10개 部處長官 합동기자 회견 (15) —經濟成長率: 10% —商品輸出: 100억「달러」 ○財務部, 企業어음의 無擔保貸出金利 및 與信金利를 최고 22% 범위내에서 流動化하도록 短資金利體系를 재조정 (25)	○美輸出入銀行, 貸出金利를 만기 6년이하는 8.25%에서 8%로, 14년이상의 경우는 9.5%에서 9%로 각각 인하 (5) ○아시아 決濟同盟(ACU), 버마銀行協會의 會員가입을 발표 (15) ○「카터」, 제39대 美大統領으로 취임 (20)
2	○全石斗 理事 취임 (3) ○제15차 業務方法書 개정 (9) ○제1차 輸出保險法施行規則 개정 (10)	○銀行「저로」制度 실시 (1) ○財務部, 優良企業의 無保證社債 발행 허용등을 내용으로 하는 債券市場育成策마련 (14) ○財務部, 有價證券에 관한 최고정책 결의기구인 證券管理委員會 및 證券監督院 발족 (19)	○先進國中央銀行總裁會議, 「파운드」貨지원을 위한 30억「달러」의 待機性借款供與條件을 확정 (7) ○OECD造船部會, 당면한造船不況에 대처하기 위해 造船業界의 구조개편을 촉구하는 보고서 채택 (11) ○EC·레바논, 5개년財政支援計劃 등을 내용으로 하는 經濟協力協定 체결 (16)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3	○제16차 業務方法書 개정 (31)	○經濟企劃院, 主要投資事業에 대한 사전심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投資審査要綱 마련(3) ○政府, 電力消費抑制策을 마련하기 위해 제1차 中央非常對策委員會 소집(15) ○經濟企劃院, 主要 經濟政策수립에 民間經濟團體를 참여시키기 위한 제1차 官民經濟實務者懇談會 개최(30)	○ASEAN, 상호간의 貿易擴大를 위하여 特惠貿易協定을 체결(24) ○ADB, 通常資本財源에 의한 貸出金利를 8.9%에서 8.7%로 인하(3) ○EC 9 개국閣僚理事會, 共通輸出信用政策실시에 합의(9) ○아프리카·아랍頂上會議, 아랍재국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하여 15억「달러」의 「오일머니」와 AfDB를 통한 資金 提供에 합의(9) ○日本, 公定割引率을 6.5%에서 6%로 인하(11)
4	○宋仁相 銀行長, 延拂輸出 및 合作投資可能性 타진차 출국(2) ○職場豫備軍 小隊 발족(9)	○財務部, 對中東交易 및 用役輸出 촉진을 위하여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트후국의 通貨를 指定通貨로 추가 지정(1) ○商工部, 工業構造고도화 와 國際競爭力강화를 위한 工業技術革新事業細部推進計劃 확정(4) ○商工部, 造船工業 육성 및 輸出産業化를 위한 造船工業振興基本計劃 발표(9) ○金通委, 家計手票制度 신설 및 短期性預金金利 인상(21)	○라틴아메리카 金融開發機構, 資本金 1억「달러」규모의 아랍·라틴아메리카 開發銀行 設立 합의(4) ○IFAD, 오스트리아, 에콰도르, 우루과이 3개국 추가 가입(6) ○IMF, 4월1일부터 會員國에 대한 貸出金利를 現行 4~6%에서 0.375% 「포인트」인상(13) ○아랍聯盟, 아랍通貨基金(AMF) 創設 결정(19) ○IMF, 잠정위원회에서 新融資制度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26)
5	○제17차 業務方法書개정(2) ○李泰浩 專務理事, 李鴻俊 理事 취임(12) ○「브리테인」BTC會長 내방(27) ○제18차 業務方法書 개정(31)	○外務部, 韓·터어키간의 貿易增進 및 經濟技術協力에 관한 協定 체결(5) ○外務部, 韓國과 이란간의 社會保障에 관한 協定 및 漁業協力協定 체결(11) ○商工部, 石油類價格을 工場渡기준 4.275%, 消費者價格은 3.33~4.15%씩 각각 인상 발표(20)	○UN海洋法회의, 제6차 회의 개막(23) ○日本 및 蘇聯, 1975년말로 종료된 日·蘇貿易協定을 1980년까지 연장키로 합의(30) ○IDB, 과테말라에서 年次總會 개최(30)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6	○宋仁相 銀行長, 제 34 차 Berne Union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3) ○輸出保險 國際機構인 Berne Union에 정식 가입(7) ○延拂어음 158백만「달러」賣却契約 체결(15) ○釜山事務所를釜山出張所로 변경(22)	○政府, 銀行貸出金利를 18%에서 17%로 인하(1) ○經濟企劃院, 금년도 追更豫算案규모를 2,107억원으로 확정(8) ○經濟企劃院, 附加價值稅率을 당초계획인 13%에서 10%로 인하키로 결정(13) ○商工部, 附加價值稅 실시에 따라 油類價格 조정(30) ○金通委, 金融機關與受信 최고金利 일부 개정(30)	○스웨덴, 국내 6 대造船所를 합병하여 國營造船會社를 설립(23) ○ASEAN, 經濟閣僚會議「싱가포르」에서 개최(27) ○英國, 造船業 및 海運業의 불황타개 방안으로 이들 업종의 30개 會社를 국영화(30) ○IMF, 7월1일부터 「슈퍼폴드 트란제」에 대한 補償比率을 인하하고 SDR에 대한 利子率 및 手數料를 3.75%에서 3.5%로 인하한다고 발표(30)
7	○定款 개정(1) ○제 19 차 業務方法書 개정(1) ○「스미타」日本輸出入銀行 總裁 來訪(18) ○韓國銀行出資 200억원 납입(21)	○國會, 2,107억원 규모의 追加更正 豫算案 확정(5) ○商工部, 韓國・오스트레일리아 간의 균형된 通商 확대와 經濟協力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韓・濠 공동성명 발표(5) ○財務部, 海外部門의 通貨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短期 延拂輸入 기간연장을 일체 중지하는 한편 「리파이낸스」 및 「뱅크 론」 도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결정(14)	○日本政府, 200해리 漁業專管水域 선포(1) ○IDB, 라틴아메리카諸國에 대한 貸出金利를 8.35%에서 8%로 인하(7) ○아랍토후국연합, 金融秩序확립을 위해 中央銀行을 창설키로 결정(22) ○ADB, 貸出金利를 8.7%에서 8.3%로 인하(29)
8	○職制分課規程 개정(17) —總務部내 文書課, 研修課 신설 —業務改善室 신설 및 輸出保險部내 統轄課, 補償課 신설	○財務部, 外換管理規程 전면 개정(3) ○經濟閣議, 附加價值稅施行令 改正案 의결(26) ○商工部, 綜合商社 指定要件을 대폭 개정, 1978년부터 시행키로 결정(27)	○ASEAN, ASEAN 5 개국과 日本, 濠洲, 뉴질랜드가 참가한 가운데 擴大 首腦회의 개최(6) ○先進 14 개국 財務相會議, 86억 SDR규모의 IMF 新融資制度에 관하여 협의(6)
9	○제 20 차 業務方法書 개정(1) ○「무어」美國輸出入銀行 總裁 내방(15) ○購買者信用 供與에 國別信用 限度制 채택(15)	○經濟企劃院: 1977~79년의 經濟運用基本計劃 발표(1) —1978년 經濟成長率: 11% —1978년 1인당 GNP:	○말레이시아, 輸出촉진을 위해 輸出信用保險會社를 설립(6) ○美 OPIC, 開途國에 대한 投資危險으로부터 자국投資家를 보호키 위해 政治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宋仁相 銀行長, 제 32 차 IMF/IBRD 總會 참석차 출국(22)	1,050「달러」 ○財務部, IMF에 대한 出資金을 현재의 80백만 SDR에서 160백만 SDR로 증액키로 결정(7) ○經濟閣議, 내년도 輸出保險引受額을 1,375 억원으로 확정(19) ○財務部, 10월1일부터 預金金利 1.8%, 貸出金利는 1%씩 각각 인하키로 발표(20)	危險도 付保對象에 포함키로 결정(14) ○스웨덴, IDB에 가입(19) ○IMF 및 IBRD, 「워싱턴」에서 年次總會 개최(26)
10	○政府出資 100억원 납입(5)	○政府, 銀行貸出金利를 18%에서 17%로 인하(1) ○韓國銀行, 輸出支援金融融資單價를 1「달러」당 40원씩 인하(10) ○財務部, 一般貸出 전면 억제, 當座貸越 및 輸出金融 감축 등 金融緊縮 강화(13) ○韓國銀行, 金融機關에 대한 商業어음 再割引比率을 우대어음 50%, 일반어음 30%로 30%씩 인하(17)	○IMF, 사오통 132번째 加盟國으로 가입(4) ○IFC, 아랍트후국 연합 107번째 會員國으로 가입(12) ○IBRD, 10월1일부터 貸出金利를 8%에서 7.9%로 인하(20) ○美FRB, 公定割引率을 5.75%에서 6%로 인상(25)
11	○職場豫備軍 中隊로 중편(10) ○農村 部落(경기도 가평군 사기막마을)과 자매결연(11) ○「페터」 Marine Midland 銀行長 來訪(12) ○李泰浩 事務理事, 韓·가봉百貨店 開店式 참석 및 經濟狀況 조사차 출국(24)	○韓國銀行, 商業어음再割引比率을 우대 80%, 일반 60%로 환원(7) ○經濟閣議, 附加價值稅法施行令 개정안, 特別消費稅法施行令 개정안 등 7개 議案 의결(7) ○商工部, 自動車工業의 輸出産業化를 위해 部品團地조성 및 資金支援 등을 내용으로 하는 輸出戰略産業化方案 마련(24)	○「카터」美大統領, ILO탈퇴를 선언(1) ○FAO, 「로마」에서 世界食糧에 관한 회의 개막(1) ○EC委員會, EC의 經濟 및 通貨同盟 再出發을 위한 5개년行動計劃 발표(17) ○日本, 新內閣 구성(28)
12	○제2차 輸出入銀行法 개정(19) ○定款 및 業務方法書 개정(29) ○政府出資 100억원 납입(31)	○財務部, 輸出先受金에 대한 國內銀行의 支給保證 규제 및 국내기업의 海外支社나 現地法人을 통한 輸出先受金 영수 전면 금지(14)	○世界主要纖維貿易國, 1977년말로 만료되는 多者間纖維協定(MFA)을 1978년 1월1일부터 4년간 연장키로 합의(14) ○OAPEC, 바레인의 「마나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78.1		○財務部, 海外建設用役受入外貨 및 輸出先受金에 대한 外貨預置制 폐지 (26) ○金通委, 輸出金融 融資比率를 「달러」당 20원씩 인상(29) ○金通委, 特別定期家計預金金利를 15.6%에서 18.0%로 인상(3) ○經濟閣議, 保險會社の 不動産投資를 억제키 위한 保險法施行令 改正案 의결 (12) ○政府, GNP成長率 10~11%등을 내용으로 하는 1978년도 經濟施策運用基本方針 발표(21) ○經濟企劃院, 石油類價格 평균 3.67% 인상(28)	- 라」에서 年例總會 개최 (14) ○西獨聯邦銀行, 公定割引率을 3.5%에서 3%로 인하(15) ○「카터」美大統領, 1978년 1월말로 임기만료되는 「번즈」FRB議長의 후임에 「밀러」를 임명(28) ○美FRB, 「보스톤」 「미니애폴리스」 및 「캔사스시티」 등 3개 聯邦銀行의 公定割引率을 6.0%에서 6.5%로 인상(9) ○世界銀行, 貸出金利를 7.9%에서 7.45%로 인하(23) ○GATT, 東京 「라운드」의 최종협상을 위한 會談 개최 (23) ○ 에쿠아돌政府, 對外投資를 保有外換 범위내에서 무제한 허용키로 결정 (28)
2	○李泰浩 專務理事, 國際金融市場 조사 및 벨기에 KEAF 開店式 참석차 출국(20) ○제5차 職制分課規程 개정 (28) —資金課를 資金部로 확대 개편하고 資金部內에 資金1課와 資金2課 신설 —法規課를 法規室로 확대 개편	○金通委, 預金支給準備率 인상(2) —저축성예금 : 17%→20% —요구불예금 : 24%→27% ○財務部, 一般貿易商社의 居住者外貨計定 개설 허용(13) ○經濟閣議, 技術開發促進法 改正案 등 3개案件 의결 (23) ○經濟閣議, 外資導入法施行令 改正案등 4개 案件 의결 (27)	○EC, 1974년에 시효가 만료된 對中共 個別双務協定에 대체할 5개년 貿易協定에 가조인(3) ○日·中共, 北京에서 1978~85년간의 長期貿易協定에 조인(16) ○主要 「커피」 生産國, 「런던」에서 「커피」價格안정을 위한 世界「커피」協定の 輸出割當制度를 토론 (20) ○이라크政府, 總352억 「달러」가 소요되는 5개년 經濟開發計劃(1976~80) 발표(28)
3		○韓國銀行, 再割引比率 및 金利 인하(4) ○經濟企劃院, 基準年度 變	○主要銅輸出入國, 國際銅價格安定協定을 체결(2) ○UNCTAD, 先進國과 開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更 等의 産業生産指數 개편(8)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 1978년도 海外投資 및 延拂輸出支援強化 綜合對策 의결(9) ○經濟企劃院, 1978~79년 經濟運用計劃 확정(23) —1979년 經濟成長率: 10% —1979년 1인당 GNP: 1,260「달러」 —1979년 輸出: 153억「달러」 —1979년 輸入: 165억「달러」 ○財務部, 「엔」貨, 스위스 「프랑」貨 등 46개국 通貨를 領收通貨로 지정하고 모든 通貨를 支給通貨로 확대(27)	途國간의 開途國債務蕩減 問題協議 결렬(10) ○IMF, 회원국의 「크레디트·포지션」에 대한 補償比率을 3.5%에서 3.75%로 인상(23) ○日·EC 회의, 日本의 國際收支黑字축소 및 輸入증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24)
4	○宋仁相 銀行長, 제11차 ADB 年次總會 참석 및 外貨資金調達 협의차 출국(19)	○政府, 動力資源對策委員會 구성(18) ○財務部, 外貨貸付金利를 최고 0.5%까지 인하하고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연장(21) ○商工部, 中小企業振興公團 설립등을 내용으로 하는 中小企業育成綜合對策 마련(27)	○IMF, 新IMF規程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1) ○ADB, 貸出金利를 7.65%에서 7.7%로 인상(6) ○IEA, 「에너지」開發 및 保存政策에 관한 會談 개최(12) ○英聯邦, 國際商品價格 安定을 위한 共同基金設置에 관한 會談 개최(13) ○OPEC, 이란 등 8개 產油國, 海洋環境 보호에 관해 會議(15) ○OPEC, 대체「에너지」개발촉진과 石油收入감소 補償策으로 油價引上에 합의(27)
5	○朴鼎在 監事 퇴임(1) ○金 建 監事 취임(1) ○韓國輸出入銀行 內國信用狀 取扱規程 제정(16) ○宋仁相 銀行長 제35차	○經濟閣議, 5次 經濟計劃 기간중 主要投資事業 選定 指針 의결(5) ○財務部, 延拂輸出業者가 발행한 內國信用狀에 대	○「카터」美大統領, 國際開發調整處 설립(1) ○OPEC, 中長期石油價格政策을 협의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非公式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6	Berne Union 總會 참석차 출국(25) ○「헤이든」아메리카銀行 副行長來訪(29) ○벨기에 OND와 共同保險 協定 체결(30)	해서도 輸出金融을 지원할 방침(9) ○財務部, 6월부터 中短期 延拂輸出에 따른 包括保險 실시 예정(12) ○韓國銀行, 輸出先受金 轉換資金 融資條件 강화(22) ○商工部, 「플랜트」輸出促進法 제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플랜트」및 延拂輸出 促進對策 마련(30) ○金通委, 금융기관 與受信金利 인상(12) ○韓國銀行, 主要原資材輸入金融 金利를 13%에서 15%로 인상(14) ○韓日大陸棚協定 발효(22) ○政府, 非同盟開發國들과의 經協 및 重化學工業製品 海外市場 확보를 위해 對外經濟協力開發基金을 발족시킬 방침(30)	石油相 會議(6) ○美FRB, 公定割引率을 6.5%에서 7%로 인상(11) ○OPEC, 定期閣僚회의에서 國際通貨情勢 및 OPEC 국가간 經濟協力方案 토의(23) ○제6차「아세안」閣僚會議, 特惠關稅協定 對象品目 확대(6) ○英國政府, 金融 및 財政 緊縮 政策 발표(8) ○OPEC 定期閣僚會議, 油價引上 및 「달러」문제 토의(16) ○유럽投資銀行(EIB) 理事會, 資本金을 7,087백만 EUA로 배증할 것을 결의(19) ○사우디아라비아등 일부 OPEC 회원국, 1979년 油價引上을 위한 產油管理制실시에 합의(26) ○美FRB, 6개 聯邦銀行의 公定割引率을 7%에서 7.25%로 인상(30)
7		○財務部, 일반물품의 現金輸入 擔保金利 폐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外換管理 規程 개정(3) ○財務部, 「달러」당 圓자비율 20원씩 인상 및 輸出先受金 轉換資金 融資期間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輸出支援金融擴大策 마련(22)	○ECGD, 西獨「마르크」貨 및 美「달러」貨에도 供給者信用 保證기로 결정(5) ○EC頂上會談, 「유럽」通貨制度創設 및 主要經濟 政策에 합의(7) ○美FRB, 10일자로 12개 聯邦銀行의 公定割引率을 7.25%로 통일(7) ○美·日·EC 등 主要先進國, 1980년대 世界 貿易秩序를 확립하기 위한 東京「라운드」共同宣言文基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8	○ 제6차 職制分課規程 개정 (14) - 一 審査部를 審査1부와 審査2부로 분리 개편 ○ 「로스앤젤레스」事務所 開所 (28) ○ 李泰浩 專務理事, 外貨資金調達 협의차 출국 (29)	○ 經濟企劃院, 부동산투기 억제와 地價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8) ○ 韓國·카나다 商工長官 공동성명 발표 (19) ○ 政府, 稅法改正案 발표 (23) ○ 動力資源部, 海外資源의 開發輸入促進을 위해 5백억원 규모의 基金造成등을 내용으로 하는 海外資源開發法案 확정 (23)	- 礎案에 합의 (13) ○ 先進7個國, 「본」 經濟頂上會談에서 世界經濟回復 등 綜合戰略에 합의 (17) ○ 世界銀行, 3/4分期 貸出金利를 7.5%에서 7.9%로 인상 (27) ○ 日本政府, GNP 統計를 新SNA 방식으로 대체키로 결정 (4) ○ 美·「아세안」閣僚會議, 共同宣言 발표 (4) ○ 美輸出銀行, 機械, 工具 등 美商品의 海外販賣促進위해 中期輸出信用制度 개정 (8) ○ ESCAP, 域內貿易促進 원칙에 합의하고 폐막 (23)
9	○ 「홍콩」事務所 開所 (1) ○ 海外建設工事의 資金執行 및 事後管理 方案 제정 (12) ○ 宋仁相 銀行長, 제33차 IMF/IBRD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 (18)	○ 財務部, 企業資金調達の 원활화와 社債需要의 개발을 위해 保證社債金利의 상한 철폐 등 社債發行條件 자율화 (1) ○ 財務部, 關稅制度改正案 발표 (6) ○ 政府, 4조 5,550억원 규모의 1979년도 豫算案 확정 (14) ○ 韓國·스웨덴 商務長官, 貿易障壁 제거에 합의 (23)	○ 佛·西獨 頂上會談, 新유럽 通貨制度의 換率決定은 上下限範圍內 변동方式을 지지키로 합의 (15) ○ G-24, 先進國의 經濟成長 촉진과 對開途國貿易規制 완화 촉구 (23)
10	○ 韓國外換銀行 出資 100억원 납입 (2) ○ 「고메스」칠레 「리타」銀行長 來訪 (16) ○ 「플랜트」輸出의 資金執行 및 事後管理方案 제정 (26) ○ 政府出資 50억원 납입 (30)	○ 韓國·필리핀 經濟協力委員會, 韓國과 「아세안」간의 經濟協力增進에 상호협력한다는 공동성명 발표 (6) ○ 韓國·노르웨이 商工長官, 양국간 交易의 均衡的 擴大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 (14) ○ 韓國銀行, 再割引比率 인상 (19) ○ 韓國·네덜란드 外務長官,	○ 美FRB, 11개 聯邦銀行의 公定割引率을 8%에서 8.5%로 인상 (13) ○ 中共·프랑스, 科學技術協力協定 체결 (21)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11	○韓國外換銀行 출자 100억 원 납입(2)	양국간 二重課稅防止協定 서명(25) ○韓國·오스트리아 經濟協力委員會, 技術·投資情報「센터」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30) ○韓國·자마йка, 民間經濟協力委員會 설치에 합의(3) ○韓國·인도네시아經濟協力委員會, 양국간 교역증대 및 資源合作開發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6) ○經濟企劃院, 外國人投資業體의 輸出義務率 하향조정(15) ○韓國·덴마크 商工長官, 造船工業分野의 協力강화 등 12개항의 공동성명 발표(29)	○UNCTAD, 主要商品의 輸出안정을 위한 60억「달러」의 共同基金 설치에 관한 회의 재개(10) ○유고財務省, 1979년부터 輸出金融과 海外投資支援을 위한 유고輸出信用銀行의 業務開始 발표(13) ○日本·「아세안」經濟協議會, 民間「레벨」의 經濟交流增進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19)
12	○韓國外換銀行 출자 100억 원 납입(1) ○제4차 輸出保險法 개정(5) ○「자롱」카메룬 商工會議所 會長 來訪(6) ○2억「달러」「뱅크론」도입 계약 체결(7)	○財務部, 外換管理規程 개정(8) —輸入擔保金制 폐지 —일반인의 外貨預置허용 —海外旅行經費 支給限度 확대 ○財務部, 國內 中長期 外貨貸出金利와 海外建設用役金融金利를 인하(14) ○經濟閣議, 總2,450억원 규모의 1979년 輸出入銀行 業務計劃 의결(21)	○인도네시아 政府 제3차 5개년 計劃(1979.4~84.3) 개요 발표(5) —基礎原資材 生産 증대 —特定民間企業活動 촉진 —脆弱産業構造 改編 ○IMF, 1979년 1/4분기중의 SDR 手數料率을 4%에서 6%로, 金利는 4%에서 5.4%로 각각 인상(28)
79.1	○제 22 차 業務方法書 개정(12) ○李泰浩 專務理事, Berne Union 臨時總會 및 對질레 轉貸資金 供與協定 체결차 출국(25)	○韓國銀行, 輸出支援金融 및 主要原資材輸入金融의 再割引率을 70%에서 80%로 인상(12) ○財務部, 通貨信用의 안정기조 유지, 企業의 수출 경쟁력 강화지원 등 1979년도 財務施策 발표(23)	○IMF 40억 SDR을 137加盟國에 배분한다고 발표(3) ○IEA, 이란 石油供給 中斷에 대처하기 위해 東京에서 國際會議(20) ○스위스 國立銀行, 스위스證券市場 外國人에게 재개방(26)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2	○칠레 Banco Israelita de Chile 앞 轉貸資金 供與協定 체결(6) ○자메이카 中央銀行 앞 轉貸資金 供與協定 체결(9) ○宋仁相 銀行長, 美洲公館 長會議 참석차 출국(14)	○財務部, 企業어음의 短資會社賣出 최고金利를 20.5495%에서 21%로 인상키로 결정(2) ○金通委, 中短期延拂資金 支援對象을 綜合貿易商社에서 全輸出業體로 확대(5) ○韓國銀行, 內國信用狀取扱規程 일부 개정(22) ○財務部, 外國換管理規程 일부 개정(24)	○ADB, 貸出金利를 7.7%에서 7.4%로 인하(9) ○사우디政府, ARAMCO의 完全引受를 공식 발표(13) ○美下院歳出委員會, 財務省의 相殺關稅賦課權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法案을 통과(21) ○日本大藏省, 非居住者 債券取得 規制措置 철폐(23) ○베네수엘라政府, 同國產燃料用石油價格을 油種別로 「배럴」당 2.10~2.51 「달러」인상 발표(26)
3	○政府出資 650백만원 납입(21)	○商工部, 中小輸出産業施設資金 支援要領 일부 개정(5) ○韓國銀行, 金融機關의 商業어음 保證指針 일부 개정(15) ○韓國銀行, 金融機關 選別融資指針 일부 개정(22)	○OPEC會長, 石油戰略武器化 선언(4) ○OECD, 스페인 OECD輸出信用協定에서 탈퇴(7) ○UNCTAD, 先進國과 開途國은 商品價格安定化 共同基金 설치에 합의(20) ○OPEC, 石油價 9.05% 인상(27)
4	○Citi Bank 專務理事 來訪(9) ○제7차 職制分課規程 개정(27) ○李泰浩 專務理事, 제12차 ADB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29)	○財務部, 特別定期家計預金限度額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6) ○經濟企劃院, 經濟安定化 綜合施策 발표(7) ○金通委, 韓國銀行與信業務利率, 輸出金融融資取扱細則 및 內國信用狀取扱規程 개정(19)	○IFC, 보츠와나共和國 IFC에 가입(4) ○日本銀行, 4월 17일부터 公定割引率을 3.5%에서 4.25%로 인상(16) ○世界銀行, 貸出金利를 7%에서 7.9%로 인상(26) ○프랑스政府, 소련과 長期經濟協力條約 체결(28)
5	○카메룬 外相 來訪(4) ○崔鍾岳 理事 취임(7) ○宋仁相 銀行長 퇴임(13) ○梁潤世 銀行長 취임(14) ○제23차 業務方法書 개정(15)	○經濟企劃院, 1979~81년의 經濟運用計劃 편성(7) —1981년의 1인당 GNP : 2,150「달러」 —1980, 81년의 經濟成長率 : 9% ○金通委, 其他어음 擔保貸出金利를 23%에서 21%	○아랍石油輸出國機構(OAPEC), 定期關係會議 개최(9) ○G-10 財務相會談, 1980년 10월 종료되는 一般借入協定(G.A.B.)을 5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15)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6	○李泰浩 專務理事, 벨기에 제36차 Berne Union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5) ○동경 事務所 開所(19) ○「아비잔」事務所 開所(20)	- 로 인하(10) ○國務會議, 海外資源開發 政府投資機關 지정(14) ○投資事業調整委員會, 重化學投資事業 조정(25) ○經濟企劃院, 外國人投資 企業 輸出義務 해제 및 완 화(4)	○그리스·EC, 「아테네」에 서 그리스의 EC加入에 관한 協定에 조인(28) ○「카터」美大統領, 聯邦資 金으로 太陽「에너지」銀行 의 設立을 추진키로 결정 (20) ○EC·ACP 國家, 新5개년 貿易 및 援助協定에 합의 (27) ○IMF, 7월 1일부터 SDR 金利를 6.5%에서 6.75% 로 인상(28)
7	○豫備軍 定期監査結果 優 秀部隊 表彰 수상(11) ○제1차 內國信用狀 取扱規 程 개정(13)	○金通委, 輸出金融 融資比 率 인상(2) ○商工部, 輸出入期別公告 商工부로 일원화(2) ○動力資源部, 石油類價格, 電氣料를 각각 59%, 35% 인상(9) ○金通委, 金融機關의 預金 支給準備에 관한 規程 일 부 개정(19) ○財務部, 外國換管理規程 개정(31)	○멕시코國營石油會社 (PE MEX), 油價를 「배럴」당 17.10「달러」에서 22.60「달 러」로 32.2% 인상(5) ○美FRB, 公定割引率을 9.5%에서 10%로 인상 (20) ○日本銀行, 公定割引率을 4.25%에서 5.25%로 인 상(24) ○니카라과아革命政府, 모 든 銀行의 國有化를 선언 (26)
8	○政府出資 13억50백만원 납입(29) ○제24차 業務方法書 개정 (31)	○財務部, 預置外貨引出基 準 완화(21) ○財務部, 所得稅率을 8~ 70%에서 6~62%로 인하 (23)	○美上院, 「볼커」의 FRB議 長職 및 「밀러」의 財務長 官職 任命을 각각 승인 (5) ○IMF, 補償金融의 引出限 度を 割當額의 100%로 확대(7) ○ADB, 貸出金利를 7.4% 에서 7.6%로 인상(16) ○美FRB, 公定割引率을 10.0%에서 10.5%로 인 상(16)
9	○延拂輸出支援方式을 購買 者信用 方式으로 점차 轉 換키로 결정(15) ○金 建 監事, 中南美 通商	○商工部, 輸出用原資材 輸 入制限 대폭 완화(4) ○金通委, 金融機關與信金 利의 韓銀再割引率 連動	○泰國政府, 導入外資에 대 한 免稅措置를 1980년 9 월까지 연장(18) ○美FRB, 公定割引率을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使節團 一員으로 출국 (22) ○梁潤世 銀行長, 유고슬라 비아 제34차 IMF 總會 참석차 출국(26)	制 채택(6) ○政府, 韓·美貿易協商 개 최(19) ○ 韓·濠經濟協力委員會, 資源開發小委員會설치, 濠洲의 對韓投資 증진 및 韓國의 對濠洲技術人力 진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26)	10.5%에서 11.0%로 인 상(19) ○世界銀行, 1980년 중반부 터 開途國借入金의 換危 險 완화를 위한 通貨「플」 制 도입 예정(22) ○IMF, 10월 1일부터 SDR 金利 및 補償率 인상 (각각 6.75%→7.75%, 6.075%→6.975%) (28) ○ IMF / IBRD, 제34차 합 동 年次總會를 「베오그라 드」에서 개최(2) ○美 FRB, 公定割引率을 11%에서 12%로 인상(6) ○英國 「에너지」相, 노르웨 이와 北海油田 共同開發 協定에 joining (17) ○ EC, ACP 諸國과 제2차 「로메」協定 체결(31)
10	○기네아經濟使節團 來訪 (2) ○ 제8차 職制分課規程 개 정(11) 一 文書課를 任員附屬室로 확대 개편 一 企劃課를 企劃1課와 企 劃2課로 분리 개편 ○「코도크」AfDB副總裁 來 訪(31)	○經濟企劃院, 外國人投資 最低限度額을 20만「달러」 에서 50만「달러」로 확대 (6) ○財務部, 海外再保險限度 를 12백만「달러」에서 20 백만「달러」로 확대(12) ○商工部, 輸出保險料率 인 하 및 재할인 실시(19)	○日本政府, 公定割引率을 5.25%에서 6.25%로 인 상(1) ○西獨聯邦銀行, 公定割引 率을 5%에서 6%로 인상 (11) ○ 이란政府, 對美 原油輸 出 금지(12) ○ 이란 革命評議會, 全軍 에 非常令 발동(29) ○ IMF, 會員國 政府 및 中 央銀行間 「스왑」去來에 SDR 使用 승인, 會員國 政府 및 中央銀行의 SDR 先物去來 허용(1) ○ 캐나다政府, 國內造船業 者에 대한 補助計劃(契約 高의 20%補助)을 1980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 (31)
11	○제25차 業務方法書 개정 (10) ○말레이시아通商使節團 來 訪(15)	○政府, 韓·美經濟政策 協 議會 개막(10) ○金通委, 外貨預金支給準 備金 최저율 인하(15) ○政府, 제1차 韓·佛經濟 實務者會議 개최(23) ○政府, 韓·獨 經濟協力委 員會 합동會議 개최(27)	
12	○가나 交通部長官 一行 來 訪(5) ○梁潤世 銀行長 퇴임(14) ○政府出資 25억원 남입 (18) ○Cairo Far East Bank 銀行長 來訪(24)	○財務部, 輸出入銀行의 1980년도 資金支援規模를 2,670억원으로 하는 1980 년도 輸出入銀行業務計劃 확정(26) ○金通委, 支準率引下등을 의결(28)	
80.1	○李泰浩 銀行長, 金建專 務理事, 金鍾燮 監事 취 임(8)	○財務部, 外貨貸付金利를 일률적으로 0.25%「포인 트」씩 인상(8)	○UN特別總會, 소련의 아 프가니스탄에 대한 武力 介入을 규탄하고 全面撤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2	○金 建 專務理事, Berne Union 臨時總會 참석차 출국(17) ○제26차 業務方法書 개정(18) ○泰 國 Thai Farmers Bank 앞 轉貸資金 供與 協定 체결(28)	○政府, 換率인상(「달러」당 484→580원, 19.8%)및 金利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綜合經濟對策 발표(12) ○金融機關代表者會議, 外貨延拂金利를 22%에서 28%로 인상(18) ○經濟企劃院, 1980년 經濟運用計劃 발표(22) —經濟成長率: 3~5% —輸出: 170억「달러」 —輸入: 225억「달러」 ○財務部, 長期信用銀行을 6월 2일 개설하기로 확정(25) ○政府, 國內石油類價格 및 電力料金 인상(29) ○財務部, 計劃造船用 外貨 貸出規模를 전년의 63백만「달러」에서 40백만「달러」로 축소하고 不足資金은 轉貸借款으로 充當키로 결정(15) ○韓國銀行, 複數通貨 「바스켓」에 의한 換率流動制 실시(27) ○서울特別市, 地下鐵 3·4號線 착공(29)	- 軍을 요구하는 決議案 가결(14) ○印度, 「인디라 간디」首相 취임(14) ○ASEAN財政委員會, AS EAN輸出入銀行 設立 결정(23) ○美議會, 中共을 最惠國 待遇 國家로 승인(24) ○世界銀行, 開途國에 대한 新規 貸出金利를 최고 8.25%로 인상(31)
3	○제9차 職制分課規程 개정(15) —安全管理課를 安全管理室로 확대 개편	○國務會議, GATT 「제네바」議定書 加入案 의결(11) ○財務部, 公害防止施設資金金利를 24.5%로 유지 하되 實需要業體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實質金利水準을 21%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14) ○商工部, 11개 中小企業工團 造成計劃 발표(29)	○이란大統領, 「바니 사드르」취임(4) ○日本政府, 필리핀과 輸出入 및 海外投資에 대한 二重課稅禁止協定 체결(14) ○日本銀行, 公定割引率을 6.25%에서 7.25%로 인상(19) ○ADB, 貸出金利를 7.6%에서 8.1%로 인상(27) ○西獨聯邦銀行, 公定割引率을 6%에서 7%로 인상(28) ○EC, ASEAN과의 5個年 經濟協定 체결(7) ○日本銀行, 公定割引率을 7.25%에서 9.0%로 인상(19) ○IMF, 1980년 2/4분기에 적용할 金利를 인상(28) —SDR 金利: 9.25%→10.25% —SDR純債權國에 대한 支給金利: 8.325%→9.225%
4	○財務部長官으로 부터 模	○金通委, 元利金償還用 特	○「카터」美大統領, 人質事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範豫備軍部隊 表彰 수상 (12) ○李泰浩 銀行長, 브라질 제21차 IDB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8)	別外貨貸出 取扱規程 제정 및 韓國銀行 外貨與信業務利率 일부 개정(3) ○韓國銀行, 內國信用狀 取扱規程 일부 개정(16) ○金通委, 金融機關受信業務 최고金利 일부 개정(17) ○財務部, 先物換去來制度 實施計劃 확정(28)	態에 대한 제2단계 報復措置로 對이란 斷交 선언(7) ○이란·이라크, 상호 宣戰 布告(16) ○中共, IMF에 가입(臺灣 탈퇴)(17) ○EC外相會議, 對이란 共同制裁策 발표(22) ○西獨聯邦銀行, 公定割引率을 7%에서 7.5%로 인상(30) ○ADB, 제13차 年次總會 개최(30)
5	○李泰浩 銀行長, 제 37 차 Berne Union總會 참석차 출국(24)	○政府, 아프리카開發銀行(AfDB)에 정식 가입하기 위해 同銀行에 24백만 「달러」를 出資키로 확정(1) ○政府, 韓·日 大陸棚共同開發區域 제5小區 시추에 착수(2) ○金融團, 主去來銀行의 與信管理協定 일부 개정(9) ○政府, 光州地域 被害復舊 支援施策 발표(28)	○ADB, 美國을 ADB理事會의 議長國으로 선출(2) ○ACP, 짐바브웨를 60번째 ACP「그룹」회원國으로 승인(8) ○OECD, 輸出金融에 대한 金利를 0.25~0.75% 「포인트」 인상(14) ○中共, IBRD 정식 가입(15) ○日本衆議院, 「오오히라」內閣 不信任案 가결(16)
6	○臺灣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 앞 轉貸資金 供與協定 체결(2) ○「무어」美國輸出入銀行 總裁 來訪(4) ○李泰浩銀行長, 제16차 AfDB 및 제7차 AfDF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16)	○韓國長期信用銀行 발족(2) ○經濟企劃院, 당면 經濟綜合對策 발표(5) ○財務部, 1980년도 延拂輸出支援資金을 3,580억원으로 730억원 확대키로 결정(16) ○商工部, 輸出保證保險과 中長期延拂輸出保險에 대한 包括保險制 도입(25) ○金融團, 外貨貸出金利引上調整등 金融團協定 일부 개정(27)	○美FRB, 公定割引率을 12%에서 11%로 인하(12) ○EC, 「베네치아」에서 頂上會談 개최(12) ○COMECON首相會議, 經濟計劃協調體制 강화 및 相互貿易増大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19) ○先進 7개국, 「베네치아」에서 2일간의 經濟頂上會談 폐막(23) ○베트남, 泰國 침공(23)
7	○金 建 專務理事, 浦項製鐵의 美國 「타노마」 鑛山 開發着工式 참석차 출국(4)	○浦項綜合製鐵, 國內 최초로 海外鑛山開發(美國 「타노마」炭鑛)에 착수(9) ○金通委, 外貨貸出의 協調	○IMF, 1980년 3/4분기에 적용할 SDR金利를 인하(1) —SDR金利: 10.25% →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鄭勲沐 理事 취임(5) ○제27차 業務方法書 개정(10) ○金鍾燮 監事, 元裕敏 理事 퇴임(19) ○先受金 管理要領 제정(28) ○金 建 專務理事 퇴임(30)	融資對象 확대(16) ○金通委, 産業設備輸出促進法이 정하는 産業設備輸出的 受注者에 대해서도 輸出金融을 支援키로 輸出金融融資對象 확대(16)	8.25% —SDR純債權國에 대한 支給金利: 9.225% → 7.425% ○EC委員會, EC委員長「젠킨스」의 후임으로 「가스톤 쏬」 룩셈부르크外相을 선출(1) ○ASEAN 銀行家協會, ASEAN金融會社(AFC) 설립 합의(7) ○「카터」美大統領과 華國鋒 中共首相, 東京에서 頂上會談 개최(10) ○美 FRB, 公定割引率을 11%에서 10%로 인하(25) ○ADB, 貸出金利를 8.1%에서 9%로 인상하며 極貧會員國에 대한 讓許貸出을 재개(1) ○世界銀行, 外換變動에 따른 借入金의 위험부담을 均등화하기 위해 通貨「플」制度를 도입(7) ○라틴아메리카 11個國, 라틴아메리카 自由貿易聯合(LAFTA) 해체(13) ○日本銀行, 公定割引率을 9%에서 8.25%로 인하(19) ○UN, 經濟特別總會를 「뉴욕」에서 개최(25) ○美上院, 수출촉진을 위한 貿易商社設立法案 승인(3) ○IMF, 짐바브웨의 會員가입 승인(10) ○中共, 前首相 華國鋒의 後任으로 趙紫陽 취임(11) ○터어키, 軍事革命 발발로 國家安保評議會가 全權을 장악(12)
8	○河國煥 專務理事 취임(1) ○全石斗 監事, 成旭基 理事, 朴炳植 理事 취임(20) ○스웨덴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으로부터 18.1백만「달러」轉貸借款 導入契約 체결(20) ○政府出資 42억50백만원 납입(25)	○金融團, 定期積金 與受信金利 조정(1) ○國家保衛非常對策 常任委員會, 自動車 發電設備 建設重裝備 등의 生産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重化學投資調整 결정(20) ○動力資源部, 油類價格 인상(24) ○政府, 輸出入節次 간소화(30)	
9	○臺灣輸出入銀行長 一行來訪(5) ○職場淨化委員會 설치(5) ○李泰浩 銀行長, 제35차 IMF / IBRD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25) ○덴마크 Den Danske Bank로부터 3백만「달러」轉貸借款 導入契約 체결(30)	○金通委, 金利 및 預金支給準備率 인하(16) ○財務部, 政策金利 및 非金融機關金利 인하(18) ○經濟企劃院, 外國人投資誘致方案 발표(25) ○商工部, 「플랜트」 및 延拂輸出支援資金 1980년 3,580억원에서 1981년 6,000억원으로 확대(27)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10	○韓國銀行出資 300억원 납입(16)	○商工部, 제2차 重化學工業投資調整方案 발표(7) ○韓國銀行, 先物換制度 확대 실시(15) ○國務會議, 輸出用原資材 備蓄限度制 폐지등을 내용으로 한 貿易去來法施行令 改正案 의결(28) ○國家保衛立法會議, 1980년도 追加更正豫算規模를 6.627억원으로 확정(31)	○이란·이라크, 兩國間 全面戰 발발(22) ○美FRB, 公定割引率을 10%에서 11%로 인상(25) ○IMF/IBRD, 제35차 연례 합동總會 폐막(3) ○자마йка政府, 借款供與團과 外債元金償還을 延期하기로 합의(10)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UAE, 原油增産에 합의(15) ○蘇聯, 「코시긴」首相 사임하고 後任에 「티코노프」임명(23)
11	○필리핀 經濟使節團 來訪(11) ○優秀民防衛隊 表彰 수상(17) ○제10차 職制分課規程 개정(18) —資金부에 資金統括課 신설등	○政府, 綜合景氣浮揚對策 발표(8) ○商工部, 1986년까지 建造能力을 650만톤 규모로 확대하는 造船工業育成方案 발표(14) ○經濟企劃院, 1981년 經濟運用計劃 발표(17) —經濟成長率: 4~5% —輸出: 205억「달러」 —輸入: 260억「달러」 ○政府, 石油類製品 및 電氣料金 인상(19) ○國家保衛立法會議, 1981년도 豫算規模 7조 8,511억원으로 확정(29)	○「레이건」, 제40대 美大統領에 당선(4) ○日本銀行, 公定割引率을 7.25%에서 7.15%로 인하(5) ○EC, 23개 工業國會談에 제출할 輸出信用協定을 개정하기 위한 EC共同案 채택(17) ○프랑스 의회, 아르헨티나 및 인도네시아와 二重課稅禁止協定 승인(21) ○世界銀行, BOA總裁인 「클라우센」을 世界銀行總裁로 선임(25)
12	○河國煥 專務理事, 當行支援事業 現地 조사차 출국(10) ○노르웨이 Eksportfinans로부터 41백만「달러」, 轉貸借款 導入契約 체결(15)	○政府, 大清 多目的댐 완공(2) ○韓國銀行, 「스왑」對象通貨에 西獨 「마르크」貨를 추가(11) ○財務部, 1981년도 中長期外貨資金融資 取扱指針 발표(30)	○美上·下兩院合同會議, 1981년도 豫算案 최종 승인(4) ○OPEC總會, 基準油價의 上限을 「배럴」당 36「달러」및 41「달러」로 이원화(10) ○英國輸出信用保證局, 輸出信用保險에 대한 保險料率 인상(22)
81. 1	○中長期延拂輸出保險 包括	○商工部, 綜合商社 指定要	○리비아, 차드와 統合승인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保險 실시(1) ○李泰浩 銀行長, Berne Union 臨時總會 참석 및 이집트 Cairo Far East Bank와의 轉貸資金 供與 協定 체결차 출국(14) ○政府出資 750백만원 납입(16) ○延拂輸出支援資金 3,580 억원에서 5,050억원으로 확대(20) ○이집트 Cairo Far East Bank 앞 轉貸資金 供與 協定 체결(22)	件을 완화(8) ○財務部, 證券市場 自由化 推進計劃 발표(14) ○動力資源部, 인도네시아의 「마두라」 海域 東「자바」 鑛區 공동개발 합의(28)	(5) ○美政府, 이란과 人質釋放 協定 체결(19) ○美國, 「로널드 레이건」 40 代 大統領 취임(20) ○프랑스議會, 아르헨티나 韓國 인도네시아 뉴질랜드와의 二重課稅防止協定 승인(20) ○日本閣議, 對이란經濟制裁措置 解除 결정(26)
2	○제28차 業務方法書 개정(6) ○스웨덴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으로부터 20백만 「달러」 轉貸借款 導入契約 체결(6) ○제11차 職制分課規程 개정(9) 一輸出保險部를 輸出保險 1부와 輸出保險2부로 분리, 개편 一輸出保險2부에 制度調査課 신설 ○協調融資機關을 全金融機關으로 확대(12)	○金通委, 商業어음割引 및 再割引 取扱規程 제정(19) ○韓國銀行, 종래 外換市場 運營委員會에서 결정하던 先物換時勢를 銀行別로 決定 告示토록 변경(26)	○美對外貿易政策委員會, 수출촉진을 위한 輸出貿易商社 設立案 승인(12) ○EC財務相委員會, 石油信用(oil facility) 限度를 30 억「달러」에서 72억「달러」로 증액하는 동시에 信用供與時 회원국의 만장일치제 채택(16) ○「레이건」美大統領, 칠레 軍事政府에 대한 美輸出入銀行의 대출정지조치 해제(20) ○世界銀行, 對開途國 新規貸出金利를 9.25%에서 9.6%로 인상(26)
3	○韓國銀行出資 300억원 납입(21) ○제5차 輸出保險法 개정(27)	○韓國銀行, 商業銀行 再割引比率 조정(6) ○韓國銀行, 企業 및 企業人 所有不動產의 처분 촉진조치 발표(14) ○國務會議,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施行令 의결(27)	○美行政府, 칠레에 대한 公共借款 禁止措置 해제(10) ○日本銀行, 公定割引率을 7.25%에서 6.25%로 인하(18) ○멕시코政府, 사치품輸入 制限措置 실시(25) ○아르헨티나新政府, 經濟政策 발표시 外換市場活動 中止를 명령(30)
4	○李泰浩 銀行長, 제22차 IDB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4)	○韓國銀行, 適格中小企業이 발행한 商業어음割引은 與信規制對象에서 전	○ADB, 貸出金利를 9%에서 9.25%로 인상(3) ○「런던」, 「가스 오일」 先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全石斗 監事, 캐나다 및 美國에 經濟資源協力使節團一員으로 출국(19) ○政府出資 110억원 납입(24)	- 액 제외키로 결정(25) ○財務部, 韓一銀行 民營化計劃 발표(28) ○財務部, 特別消費稅率의 彈力稅率 適用時限 연장(28)	- 物市場인 國際石油去來所(IPE) 개장(6) ○브라질政府, 소련과 經濟·技術協力 協定 체결(17) ○EC, 소련에 대한 부분적 食糧禁輸措置 전면 해제(29)
5	○韓國銀行出資 200억원 납입(23) ○李泰浩 銀行長, 「뱅크론」導入 및 延拂어음賣却契約 체결과 제38차 Berne Union 年次總會 참석차 出국(28) ○政府出資 40억원 납입(30)	○政府, 延拂輸出資金支援 확대(28) - 一輸出銀行 資金支援規模 700억원 확대(5,050억원→5,750억원) - 一新規貸出承認限度 7,500억원으로 확대	○캐나다政府, 소련과 5년간의 穀物販賣協定 체결(26) ○홍콩, 1979년 8월 이후 중지해온 外國銀行에 대한 신규인가 재개(27)
6	○U.B.A.F 등 40개 國際金融機關과 「뱅크론」 2억「달러」導入契約 및 Wells Fargo銀行등 24개 國際金融機關과 延拂어음 2억「달러」賣却契約 체결(1) ○李泰浩 銀行長, Berne Union 運營委員會 委員으로 피선(9) ○鄭勳沐 理事 퇴임(20)	○財務部, 會社債 發行金利 탄력화(1) ○商工部, 自動車部品工業의 생산성향상대책 발표(9) ○金通委, 貯蓄預金金利 인상(23)	○美財務省, 銀行 및 기타 金融機關 보유의 이란 資産을 6월 19일까지 「뉴욕」연방은행으로 移轉토록 명령(3) ○아세안金融公社, 「싱가포르」에 정식 발족(19) ○아르헨티나政府, 外換市場을 金融市場과 商業市場으로 이원화(22)
7	○韓國輸出入銀行 5年史 발간(1) ○淨化 및 司正業務에 관한 「심포지움」개최(16)	○韓國銀行, 企業體 綜合評價表 전면개편(4) ○金通委, 輸出金融支援 대책 강화(17) ○財務部, 外國換管理制度 개선(21)	○世界銀行, 「맥나마라」總裁 後任으로 前BOA總裁인 「클라우센」 취임(1) ○美上院,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基本控除額을 物價上昇率에 연동시키는 계획(Indexing Plan) 승인(16) ○ASEAN, 「아세안」지역내의 投資家 및 事業家の 問題解決을 위한 共同機構(One-Stop Government Agency) 제의(27)
8	○輸銀支援 延拂輸出去來에 대한 正常外 決濟許可業務을 輸銀이 專擔取扱토록 外國換管理規程 개정	○韓國銀行, 海外投資許可 및 事後管理取扱細則 개정(1) ○商工部, 外國人投資 우선	○베네수엘라 政府, 총 600억「달러」規模의 제 6차 國家開發 5개년計劃(1981~85) 발표(28)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9	(1) ○鮮于潤 理事 취임(13) ○正常外 決濟許可業務取扱에 관한 方針 결정(20) ○輸銀利差補填金 支給規定 제정(29) ○「산티아고」事務所 開所(1) ○全石斗 監事, 歐洲地域 通商使節團 一員으로 출국(7) ○李泰浩 銀行長, 제36차 IMF/IBRD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19) ○칠레 Banco de Chile 앞 轉貸資金供與協定 체결(22) ○內國信用狀 取扱規程 개정(25)	유치분야 45개 품목 선정(18) ○經濟企劃院, 제5차 經濟社會發展 5개년計劃(1982~86) 발표(21) —年平均 經濟成長率: 7.6% —1986년 1인당 GNP: 2,170「달러」 ○韓國銀行, 海外投資管理業務 運用要綱 확정(29) ○財務部, 關稅減免對象品目 조정(1) ○金通委, 輸出金融規定 일부 개정(17) ○財務部, 財産稅에 대한 教育稅 附加調整方案 마련(23) ○韓國銀行, 戰略産業支援對象 확정(28)	○프랑스內閣, 主要銀行 및 企業「그룹」에 대한 國有化計劃案 승인(9) ○世界銀行, 9월18일부터 貸出金利를 10.6%에서 11.6%로 인상(17) ○IMF/IBRD 합동開發委, 1982년초까지 對開途國 民間投資에 대한 多角의 部分保證(Multilateral Partial Guarantees)制度의 「가이드라인」설정을 결정하는 한편 協調融資方式의 확대 필요성에 합의(28)
10	○제12차 職制分課規程 개정(13) ○李泰浩 銀行長, Berne Union 運營委員會 참석차 출국(16) ○프랑스 COFACE와 共同 保險協定 체결(21)	○商工部, 輸出保險 引受限度額 증액(8) ○商工部, 造船部門 長期輸出計劃 발표(13) —86년까지 造船關聯輸出 目標 54억 「달러」 —4개 造船所 증설, 造船技術用役會社 설립 등 ○商工部, 石油化學工業育成 基本計劃 확정(31)	○OECD, 11월16일부터 모든 輸出對象國에 적용되는 輸出信用金利를 9.25%로 인상(21) ○美FRB, 公定割引率을 14%에서 13%로 인하(30)
11	○輸出어음保險 商社別 任意 包括保險 실시(11) ○輸出資金 支援對象品目에 대한 基準 外資材依存率 변경(16) ○業務方法書 개정(17) ○「폴렌트」輸出에 대한 支援指針 변경(17)	○韓國銀行, 與受信金利 인하(9) ○韓國銀行, 國民投資基金金利 1% 인하(11) ○商工部, 輸出어음保險 商社別 任意包括保險制 도입 실시(12) ○財務部, 輸出入銀行 貸出	○英國, 北海產 油價 「배럴」당 36.50「달러」로 인상하여 11월1일부터 소급 적용(6)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12	○直接貸出 및 轉貸資金 基本運營規程 개정 (17) ○協調融資 取扱規程 개정 (26) ○直接貸出 取扱規程 개정 (29)	- 基準金利 인상 및 제 2 金融圈 金利 조정 (17) ○金通委, 與受信金利 인하 (28) ○經濟企劃院, 1982년 經濟運用計劃 발표 (15) —經濟成長率: 7% 내외 ○政府, 石油事業法 施行令 개정 (28) ○金通委, 與受信金利 인하 (29) ○財務部, 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 개정 (29)	○美FRB, 公定割引率 13%에서 12%로 인하 (4) ○싱가포르, 國內 外國人銀行에 대해 變動金利CD 발행 허용 (9) ○日本銀行, 公定割引率을 6.25%에서 5.50%로 인하 (10)
82.1	○本店新築을 위한 建築推進班 구성 (5) ○輸出資金의 品目別 融資承認 및 執行限度 설정 (20)	○金通委, 民間信用 限度制 폐지 (7) ○財務部,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例外措置등만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등을 내용으로 하는 延支給輸入對象 品目選定方式으로개선 (11) ○金通委, 與受信金利 인하 (14)	○IMF, 1982년 1/4분기중 SDR金利를 13.99%에서 11.63%로 인하 (1) ○美FRB, 通貨指標 변경 (4) ○IBRD, 신규 融資約定額에 1.5%의 融資開始手數料 부과 결정 (5) ○5大國 財務相 및 中央銀行總裁會議, 「파리」에서 5월 「헬싱키」에서 열릴 예정인 IMF장정위원회의 준비모임을 비공개로 갖고 美 高金利 및 폴란드의 外債問題를 토의 (18)
2	○政府出資 30억원 납입 (5) ○輸出船舶의 國產化率 제고를 위하여 國產機資材 使用去來에 대한 優先支援指針 제정 (12) ○輸出代金金融 保險種目を 신설 (16) ○李泰浩 銀行長, Berne Union 臨時總會 참석차 출국 (20)	○韓國銀行, 貨物先取保證書(L/G)發給규정 완화 (16) ○財務部, 제2金融圈 金利 인하 (22)	○GCC, OPEC내에서의 共同行動 및 油價調整을 내용으로 하는 共同石油政策에 합의 (1) ○「아라비안 라이트」現物油價, 1979년 이란革命 이래 처음으로 30「달러」이하로 하락 (16)
3	○제13차 職制分課規程 개정 (2) —一任員附屬室과 法規室을 文書部로 통합개편 ○政府出資 40억원 납입 (9)	○動力資源部 國內 石油類 價格 인하 (11) ○韓國銀行, 借款元利金 상환용 外貨貸出 확대 (18) ○韓國銀行, 主去來銀行 調	○英國政府, 1982/83년도 豫算案 발표 (9) ○ADB, 貸出金利를 10.1%에서 11%로 인상 (17) ○OPEC, 「비엔나」臨時總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 Bank Negara Indonesia 1946을 Agent로 한 2개 國外金融機關과 60백만 「달러」의 延拂어음賣却契約 체결 (9) ○ BTC(Singapore) 등 36개 國外金融機關과 「뱅크론」 3억 「달러」 導入契約 체결 (12) ○ 자이레商工使節團 來訪 (16) ○ 프랑스 Société Générale로부터 100백만 「프랑」 轉貸借款 導入契約 체결 (18) ○ 輸銀內國信用狀 取扱規程 개정 (25)	- 整決定權, 變更承認權 등의 權限을 主去來銀行制 運營協議會에 위임등을 내용으로 한 主去來銀行의 自律決定幅 확대 (19) ○ 財務部, 제2金融圈 金利 인하 (29)	會에서 基準油價의 동결에 합의 (19)
4	○ 委任專決規程 및 事務引繼規程 개정 (20) ○ 政府出資 50억원 남입 (22) ○ 李泰浩 銀行長, 제9차 AfDF 및 제18차 AfDB 年次總會 政府首席代表로 참석차 출국 (30)	○ 韓國銀行, 商業어음再割引率 조정 (1) ○ 金融圈, 外國換手數料 인하 및 換價料徵收期間 단축 (23) ○ 財務部, 제2金融圈 金利 인하 (24)	○ 英國外相, EC는 아르헨티나의 「포크랜드」群島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1개월간 아르헨티나로부터의 輸入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 (14) ○ 말레이시아 政府, 韓國과의 經濟協力增進을 위해 二重關稅回避協定 체결 (20) ○ 英國, 北海油田埋藏量 16.2억 「톤」으로 추정 (29)
5	○ 餘裕資金 運用方法의 追加指定 승인 (4) ○ AfDB와의 協調融資 및 情報交換을 위한 基本協定 체결 (7) ○ 노르웨이의 Eksport-finans로부터 2억 「노르웨이 크로네」 상당 美 「달러」貨 轉貸借款 導入契約 체결 (11) ○ 덴마크의 Den Danske Bank로부터 10백만 「달러」 轉貸借款導入契約 체결 (14) ○ 國外事務所 業務要綱 개	○ 韓國銀行, 商業어음再割引金利 단일화 (6) ○ 商工部, 電子工業構造 고도화를 통한 輸出基盤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核心戰略育成成品目 선정 (15) ○ 經濟企劃院, 經濟綜合對策 발표 (18)	○ 헝가리, 東歐圈으로서는 루마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IMF에 가입 (6) ○ OECD, 「파리」에서 閣僚理事會 개최 (16) ○ IMF / IBRD, 「헬싱키」에서 IMF장정위원회 및 IBRD개발위원회 개최 (12) ○ OPEC, 「키토」에서 定期總會를 개최하고 基準油價의 동결 및 產油量上限制의 계속 유지에 합의 (20)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6	- 정 (19) ○政府出資 35억원 남입 (7) ○創立記念 延拂輸出 支援制度說明會 개최 (23) ○國外事務所 開設 便覽 발간 (30)	○經濟企劃院, 經濟活性化對策 발표 (28)	○西方 7개先進國, 프랑스의 「베르사이유」에서 經濟頂上會談 개최 (4) ○現物油價,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사태에 따른 中東產油國의 禁輸措置에 대한 우려로 強勢 시현 (11) ○美上院, 兩院合同會議에서 통과된 1983년도 總豫算案을 승인 (22)
7	○輸出保險事務處理規程 및 國外事務所 豫算經理要領 개정 (8) ○産業設備 輸出關聯許可業務 개시 (26)	○財務部, 國民投資基金金利 인하 (11.0~14.5%→10%) (10) ○金通委, 外貨貸出關聯規程 정비 (15) ○金通委, 輸出金融規程 및 輸出金融融資取扱細則 개정, 金融機關與信運用規程 제정 (22)	○OECD, 輸出信用「가이드라인」개정 (23) ○「레이건」美大統領, 9월말로 끝나는 美蘇穀物販賣協定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 (30) ○美FRB, 公定割引率을 11.5%에서 11.0%로 인하 (30)
8	○河國煥 專務理事, 韓·濠經濟協力委員會 참석차 출국 (4) ○先受金 還給保證등의 業務取扱指針 제정 (6) ○國別信用度 評價業務에 관한 指針제정 (7) ○李泰浩 銀行長, 大統領閣下の 아프리카 4개국 및 캐나다 순방에 따른 民間經濟使節團 一員으로 출국 (16)	○政府, 제일은행 및 서울신탁은행 株式中 政府所有株式 매각 공고 (25)	○美國, 美國과 EC간의 鐵鋼貿易協定이 타결되었다고 발표 (6) ○美FRB, 公定割引率을 11%에서 10.5%로 인하 (12) ○77「그룹」, 「마닐라」에서 개막된 77「그룹」조정위원회는 對先進國 交易條件의 개선을 위해 開途國 상호간에 互惠貿易制度 (Trade Preference System)을 채택하기로 합의 (25)
9	○國別與信限度管理 및 運用基準 개정 (4) ○李泰浩 銀行長, 제37차 IMF / IBRD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 (4) ○一流銀行의 기준설정 (17)	○浦項綜合製鐵, 美 「타노마」 炭鑛 채탄시설 준공 (8) ○韓國銀行, 主去來銀行의 與信管理協定 및 施行指針 일부 개정 (17) ○서울市, 漢江綜合開發事業 착공 (29)	○멕시코 政府, 銀行國營化 및 外貨의 國內通用 금지 선언 (1) ○24개 開途國 「그룹」 (G-24),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會晤를 갖고 世界的인 景氣回復政策의 채택, 先進國의 保護貿易障壁의 제거 및 IMF「쿼타」의 배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10	○「코데코 에너지」開發事業 관련 資金管理 駐在員 파견(15) ○페루Corporacion Financiera de Desarrollo S.A. 앞 轉貸資金 供與協定 체결(19) ○政府出貸 35억원 남입(28)	○財務部, 外國人投資許容 業種 확대(총 427개→521개) (8) ○商工部, 1983년도 輸出保險契約 限度額 확정(총 3조 2,054억원)(16) ○政府, 인도네시아 資源開發事業에 대한 韓國參與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韓國·인도네시아 공동성명 발표(19)	- 중을 촉구(3) ○IMF / IBRD 年次總會,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개최(6) ○「헬무트 콜」西獨 基民黨 黨首, 「슈미트」首相 후임으로 새 西獨 首相에 취임(1) ○IMF, SDR 金利를 12.01%에서 8.90%로 인하(4) ○GCC, 產油國은 油價인하를 즉시 중단하고 油價의 폭락을 막기 위하여는 모든 產油國이 共同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15)
11	○「자카르타」事務所 開所(1) ○코스타리카通商使節團 일행 來訪(17)	○現代尾浦 수리造船所 완공(연간 400척 수리 규모)(4) ○韓國銀行, 輸出金融融資 單價 인상(18) ○韓國·나이지리아 合作銀行設立協定 체결(19)	○日本大藏省, 輸出入銀行 日本開發銀行 등 準政府系銀行의 資金調達能力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政府保證附外債發行의 한도액을 1983년도부터 3,000억 「엔」으로 인상(5) ○GCC, 바레인에서 會議를 열어 政治, 經濟, 軍事的인 면에서 회원국간의 결함을 모색(8) ○日本通產省, 輸出保險料率을 1983년 4월부터 인상(19)
12	○제32차 業務方法書 개정(1) ○保險約款 및 관련規程의 개정(1) ○LTCB Asia Ltd.와 1개 國外金融機關과 99백만 「달러」延拂어음賣却契約 체결(6) ○International Westminster Bank 와 20백만 「달러」轉貸借款 導入契約 체결(15) ○韓國外換銀行出資 550억원 남입(16)	○商工部, 韓國·EC 纖維 協商 타결(15) ○研究開發, 導入技術의 企業化事業에 대한 투자를 사업목표로 하는 「벤처캐피탈」社(韓國開發投資) 발족(21) ○建設部, 不動產投機根絶 綜合對策 확정(22)	○GATT, 제8차 閣僚會議 폐막(1) ○EC, EC頂上들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頂上會談을 개최하고 域內貿易障壁의 제거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4) ○제66차 OPEC 定期總會, OPEC 全體產油量上限 18.5백만 「배럴」/ 日로 확대(19)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本店新築을 위한 起工式 거행 (17) ○勞動組合 결성 (23) ○金融勞動組合聯盟 가입 (24) ○抵當 및 保證制度運用에 관한 指針 개정 (27)		
83.1	○輸出資金貸出등의 償還 期間과 債務保證期間에 대한 例外取扱範圍 확대 및 「플랜트」輸出支援資金 中 일부에 대한 金利인하 (6) ○李泰浩 銀行長 퇴임 (6) ○1983년도 選別支援指針 제정 (17) ○朴聖相 銀行長 취임 (27)	○外務部, 韓·日經協 타결 (12) ○財務部, 長期關稅減免對 象品目 조정 (12) ○經濟企劃院, 1983년 經濟 運用計劃 확정 (20) —經濟成長率: 7.5% ○動力資源部, 「에너지」消 費절약등을 내용으로 한 1983년도 主要業務計劃 확정 (27)	○IBRD, 貸出金利를 11.43 %에서 10.97%로 인하 (5) ○國際商業銀行團, 借入國 에 대한 「컨트리 리스크」 정보 제공을 위한 國際金 融機構 설립에 합의 (11) ○에쿠아돌政府, 海外債權 銀行團과 債務調整案에 합의 (12) ○IMF 10개국(G-10) 財務 相 會議, 一般借入協定 (GAB)에 따른 資金供與 約定限도를 증액할 것에 합의 (64억 SDR → 170 억 SDR) (18)
2	○公證 및 領事確認制度 運 用指針 제정 (16) ○현행 4개국 通貨에서 市 場率이 제시되는 20개국 通貨로 輸出契約書上의 決済通貨 확대 (18)	○動力資源部, 油類價格 조 정 (6) ○建設部, 不動產投機抑制 綜合對策 확정 (16) ○韓國銀行, 再割引率 인하 와 流動性調節手段의 金 利體系 조정 및 外貨貸出 規程 제정 (24)	○IDB 總會, 150억「달러」 규모의 제6차 財源補充計 劃(1983~86)에 잠정 합 의 (4) ○民間商業銀行團, 멕시코 와 1983년중 만기도래하 는 外債 200억「달러」의 債務調整協商에서 잠정적 합의에 도달 (9) ○日本政府, 對美·EC輸出 自律규제 결정 (12) ○베네수엘라, 알제리, 쿠 웨이트 石油相, 「과리」에 서 緊急會議 개최 (28)
3	○中小企業의 對開途國 진 출시 融資比率 70%에서 80%로 인상 (9) ○LTCB Asia Ltd.와 6개 國外金融機關과 344백만 「달러」의 延拂어음賣却契	○財務部, 政府工事入札方 式 변경 (10) ○韓國銀行, 輸出支援金融 融資單價 인상 (11) ○商工部, 造船工業振興基 本計劃 확정 (16)	○世界銀行, 借入手數料率 을 0.75%에서 0.25%로 인하 (1) ○OPEC 8개국會議, 「런 던」에서 油價 및 產油量 「쿼터」調整問題 협의를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4	約 체결(14) ○中小企業에 대한 海外投資事業 金融支援制度 說明會 개최(16) ○河國煥 專務理事, 제24차 IDB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18) ○ADB와의 協調融資 可能事業 소개를 위한 關聯業體 招請懇談會 개최(28) ○先受金 管理要領 개정(11)	○韓國銀行 再割引 및 貸出比率 일부 인하(1) ○金融團, 貸出利子徵收方式 개선 결의(8) ○商工部, 輸出基準價格制(「체크 프라이스」制) 전면 폐지(10) ○政府, 油類價 및 電力料金 인하(18) ○商工部, 「나프타」溜分價格 평균 9.01% 인하(28) ○財務部, 海外建設業體의 國產裝備購入에 輸出資金 지원키로 결정(2) ○財務部, 金融團의 社債支給保證 제한(4) ○財務部, 短資會社의 業務運用準則 일부 개정(18)	위해 개최(3) ○英國金融界, EC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유로」手票制度(Eurocheque Scheme)가 1983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9) ○IMF, 1982년 2/4분기중 SDR金利를 전반기에 비해 0.05%「포인트」인상된 8.52%로 상향 조정(4) ○멜다이크, GATT에 가입(19) ○日本大藏省, 證券會社の 海外子會社(現地法人)에 대해 최초로 CD발행 허용(20) ○AfDB, 正會員으로서 美國의 가입을 발표(6) ○인도네시아政府, 제3차 經濟開發計劃의 핵심사업인 「올레핀」系 油化工場建設 등 4대「프로젝트」의 실시를 보류하기로 결정(9) ○美下院, 利子 및 配當所得에 관한 源泉徵收稅法案의 폐지를 의결(17)
5	○直接貸出 取扱規程 개정 및 「콘테이너」에 대한 時限附 支援指針 확정(3) ○朴聖相 銀行長, 제10차 AfDB 및 제19차 AfDB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4) ○直接貸出 基本運營規程 개정(10) ○李鴻俊 理事 퇴임(11) ○韓國Data通信의 DNS會員 가입(26) ○船舶에 대한 据置期間 불허(30)	○商工部, 特別法에 의한 輸出入制限品目 축소(1,973개→1,600개)(2) ○財務部, 1983년 하반기 緊急 및 割當關稅適用對象品目 확정(19) ○財務部, 제2金融團 受信金利 인하(25)	○ADB, 貸出金利를 11%에서 10.5%로 인하(13) ○「레이건」美大統領, 「볼커」美FRB議長의 재임명을 결정(18) ○日本開發銀行, 輸入基盤整備 「리스」融資制度 및 産業協力, 國際交流融資制度를 도입키로 결정(24)
6	○船舶建造資金 執行基準 개정 및 建設重裝備 輸出支援規程 제정(1) ○朴聖相 銀行長, 제40차 Berne Union 年次總會에 참석차 출국(2) ○制度改善 및 民願聽取를 위한 業界懇談會 개최(9) ○Chemical Asia Ltd. 등 46개 國外金融機關과 「뱅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크 론」3억「달러」導入契約 체결(14) ○政府出資 50억원 납입(21) ○政府出資 20억원 납입(23) ○創立7週年記念 制度說明會 개최(23) ○國別與信限도의 상향조정과 GNP規模別 與信限度差異를 2段階에서 3段階로 세분화(25) ○朴京東 理事 취임(30)		○日本輸出入銀行, 「에너지」資源구입에만 적용시켜 오던 輸入融資制度를 大型機械設備나 「컴퓨터」등의 輸入에도 확대 적용키로 결정(27)
7	○LTCB(Tokyo) 등 17개 金融機關과 「뱅크 론」100억「엔」導入契約 체결(5) ○團體協約 체결(16) ○公證 및 領事確認制度 運用指針 개정(21) ○延拂어음 및 L/G分割取得에 관한 業務處理指針 제정(25)	○財務部, 相互信用金庫 同一人與信限度 확대(12) ○財務部, 企業의 資本市場活用度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資本市場機能 擴充方案 발표(18)	○日本大藏省, 「엔」表示 外債發行 기준완화(1) ○「레이전」行政府, 日本의 農産物輸入規制를 GATT에 제소(1) ○멕시코, 1982년 9월 1일 이후 국유화 되었던 民間銀行의 非銀行子會社에 대한 民營化計劃 발표(11)
8	○讓渡擔保 取得指針 제정(31)	○財務部, 外債構造 개선을 위해 短期外資導入 억제책 발표(5) ○財務部, 中小企業技術開發資金 확대 지원 발표(12)	○美FRB, 銀行持株會社를 통한 證券仲介業務 허용 및 非銀行子會社를 통한 證券信用 貸出業務의 허용을 결정(10) ○日本經濟企劃廳, 무역마찰 완화를 위한 對外經濟綜合對策 발표(13) ○멕시코, 60개 國內銀行을 통폐합하여 29개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29)
9	○信用調査要綱 개정(8) ○韓國自動車工業協同組合傘下 中小部品 生產業代表와 懇談會(12) ○Lloyds Bank International Ltd. 외 4개 國外金融機關과 175백만「달러」延拂어음賣却契約체결(13) ○朴聖相 銀行長, 제38차	○金通委, 輸出商品의 계절성을 반영한 融資限度制 신설(1) ○銀行協會, BC(Bureau of Credit)「카드」社 발족(5) ○政府, 1984년도 豫算案 확정(22) ○大韓金融團, 內國信用狀	○브라질政府, 海外旅行者의 1인당 外換保有限度를 1,00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하(14) ○日本大藏省, 赤字國債 償還을 위하여 1985년부터 借換債를 발행하기로 결정(18) ○베네수엘라 政府, 民間部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10	IMF/IBRD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16) ○部門別, 職務別 循環勤務制 實施 강화를 위한 職員任用規程 개정(19) ○中小企業에 대한 대출시 不動産擔保에 대한 融資比率를 상향조정, 職制分課規程 및 委任專決規程 개정(7) ○朴聖相 銀行長, 大統領閣下の 西南亞, 大洋洲 5개국 순방 수행차 출국(8) ○政府出資 30억원 남입(17) ○「드레이퍼」美輸出入銀行 總裁 來訪(31)	取扱手数料率을 0.16%에서 0.11%로 인하(30) ○商工部, 1984년도 中小企業育成施策 확정(4) ○韓國銀行, 中小企業貸出에 대한 韓國銀行 一般資金貸出 A₁限度 지원비율 상향 조정(7) ○財務部, 關稅還給特例法 施行規則 개정(14)	門債務의 元利金상환시 所要外換을 特惠換率에 의거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26) ○OECD, OECD輸出信用「가이드라인」개정(13) ○美輸出入銀行, 신규 OECD輸出信用「가이드라인」에 의거 中間 및 低所得國에 대한 輸出信用金利 인하(17)
11	○Chase Manhattan Asia Ltd. 외 7개 國外金融機關과 223백만「달러」延拂어음賣却契約 체결(16) ○中小企業에 대한 輸銀資金 支援制度 說明會 개최(23) ○Credit Suisse First Boston Ltd. 會長 一行 來訪(23) ○멕시코 貿易廳長 當行 來訪(23) ○「뱅크 론」 100억「엔」 도입(30)	○環境廳, 環境汚染防止基金 신설(2) ○金通委, 輸出支援金融 融資單價 일부 인상(3) ○財務部, 證市를 통한 企業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株式時價發行制 실시(15) ○韓國銀行, 商業銀行 割引限度 일부 확대(17)	○페루政府, 1981년 이후 日本으로부터 도입한 3억「달러」借款의 상환기일 재조정에 日本側과 합의했다고 발표(8) ○멕시코政府, 民間企業들이 海外投資家들에 대한 주식매각형식으로 外債를 상환하는 것을 허용치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10) ○브라질政府, 「파리·클럽」과 1984년말까지 만기도래하는 公的借款 38억「달러」의 債務再調整에 합의(23)
12	○「플랜트」輸出資金 執行基準 개정(1) ○忠南 公州郡 北溪 1里 마을과 자매결연(13) ○스위스 Novinform社와 信用調査 제휴(15) ○Word Processor System 導入 운용(17) ○韓國銀行出資 200억원 남입(20) ○政府出資 90억원 남입(24)	○政府, 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 개정(8) ○金通委, 金融機關의 預金支給準備金에 대한 利子지급 결정과 原油 및 原資材輸入 貸出資金 융자금 단축(15) ○財務部, 총9,000억원의 1984년도 延拂輸出金融 資源규모 확정(21)	○日本大藏省, 「유로 엔」債의 발행규제를 완화(12) ○「파리클럽」, 세네갈, 라이베리아 및 자이레의 公的債務의 재조정에 합의(22) ○日本大藏省, ECU의 國內去來를 허용키로 결정(29)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84. 1	○選別支援指針 제정 (4) ○50억「엔」의 「엔 본드」 발행 (30)	○金融機關代表者會議, 海外建設用役資金 綜合管理 協定 개정 (10) ○金通委, 모든 시중은행의 信託業務 取扱內인가 (19) ○經濟企劃院, 1984년 經濟 運用計劃 발표 (20) —經濟成長率: 7~8% —輸出: 265억「달러」 —輸入: 275억「달러」 ○金通委, 金融機關의 與受 信金利 조정 (21)	○IMF常務理事會, IMF財 源引出限度를 축소 조정 (9) ○나이지리아政府, 외환지 급 優先順位制의 채택을 골자로 한 새로운 外換管 理制 도입 (11) ○라틴 아메리카 經濟委員 會, 서방채권은행에의 債務負擔輕減措置 요구등을 내용으로 하는 「키토」선 언 발표 (14)
2	○擔保 및 保證制度 개선 (7)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取 扱規程 제정 (14) ○朴聖相 銀行長, Berne Union 臨時總會 참석차 출국 (20)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轉 貸資金 貸出取扱規程 개 정 (24) ○제15차 職制分課規程 개 정 (29) —審査 1,2 部 업무의 地 域別分掌	○서울特別市, 地方稅의 課 稅時價標準額 조정 (6) ○商工部, 農機械部品 國產 化計劃 확정 (18)	○IBRD, 최초로 2.5억「달 러」 규모의 10년단기 變 動金利附債券을 「유로」 시장에서 발행 (7) ○EC 및 ACP 64개국, 新5 개년 共同開發計劃案에 합의 (10)
3	○標準與信限度設定 協定書 개정 (8) ○「콘테이너」에 대한 轉貸 資金 支援方針 결정 (9) ○河國換 專務理事, 제25차 IDB 年次總會 참석차 출 국 (21) ○轉貸資金 與信限度設定 協定書상의 基準轉貸利率 및 延拂利率에 대한 方針 결정 (28)	○金融機關代表會議, 外國 換手數料 인상 (2) ○動力資源部, 일부 油價 조정 (7)	○美上院, 輸出認可制度를 더욱 강화시킨 새로운 輸 出規制法案을 통과 (2) ○日本大藏省, 外國換管理 에 관한 省令 개정 (21)
4	○輸出契約書上 決濟通貨의 확대 (6) ○海外建設協會와 業務協約 체결 (18) ○제16차 職制分課規程 개 정 (27)	○政府, 産業設備輸出促進 法 施行令 개정 (10) ○金通委, 저축예금 및 가 계종합예금의 최고預置限 度 인상 (19) ○財務部, 金融自律化 및	○IMF, SDR 追加配分 문 제를 논의하기 위한 잠정 위원회 개최 (12) ○日本大藏省, 단계별 金融 自由化指針 확정 (14) ○나이지리아軍事政府, 貨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一輸出保險1부의 補償業務를 輸出保險2部로 一輸出保險2部 制度調査業務를 輸出保險1部로 이관 등	營業環境 改善對策 발표 (20)	幣改革 단행 (25) ○ADB, 제17차 年次總會 개최 (25)
5	○制度調査課와 補償課의 소속부서 변경 (1) ○朴聖相 銀行長, 제11차 AfDF 및 제20차 AfDB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 (2) ○船舶建造資金 執行基準 개정 (23) ○輸銀內國信用狀 取扱規程 개정 (29)	○金通委, 시중은행, 외환은행 및 지방은행에 대하여 讓渡性預金證書(CD) 發行業務 취급 허용 (17) ○財務部, 金融機關의 담보물에 대한 保險의 共同引受制 완전 해체 (25)	○OECD, 「파리」에서 연례 閣僚會談 개최 (17) ○先進 10개국(G-10), 財務相會議 개최 (19) ○스위스, 銀行秘密公開發案을 국민투표로 부결 (20)
6	○債務讓渡證書의 讓渡金額記載方法 제정 (25) ○延拂輸出 및 海外投資事業에 대한 金融支援制度說明會 개최 (26) ○中小企業에 대한 輸銀資金支援制度說明會 개최 (29)	○金通委, 外貨貸出規程 일부 개정 (7)	○필리핀政府, 經濟안정화를 위한 일련의 緊縮經濟措置 발표 (6) ○西方7개 先進工業國, 제10차 經濟頂上會談 개최 (7) ○ADB, 貸出金利를 10.50%에서 10.25%로 인하 (26)
7	○政付出資 50억원 납입 (5) ○輸出어음保險約款 개정 (12) ○300백만 「달러」「뱅크 론」 導入契約 체결 (13) ○信用調査업무의 電算化 개시 (21) ○外國換業務관계 對顧客手数料의 책정 (25) ○輸銀內國信用狀 取扱手数料 징수방법 제정 (25)	○韓國銀行, 內國信用狀 取扱規程 일부 개정 (5) ○建設部, 海外建設振興 綜合對策 발표 (19) ○大韓金融團, 金融團協定 일괄 폐지 (20) ○韓國銀行, 外國換賣買率 및手数料에 관한 細則 제정 (21)	○世界銀行, 貸出金利를 10.08%에서 9.89%로 인하 (2) ○OECD, 公的輸出信用의 최저金利를 각각 1.2% 「포인트」 인하 (9) ○「레이건」美大統領, 財政赤字 縮小法에 서명 (18) ○中共國營佛山信託投資公司, 정권 수립후 처음으로 證券을 공모 발행 (19)
8	○全石斗 監事 퇴임 (19) ○委任專決規程 개정 (21) ○「컴퓨터 시스템」 도입 (24)	○金通委, 外貨貸出規程 일부 개정 (2) ○財務部, 企業會計基準 개정 (31)	○멕시코政府, 中長期工業化計劃 수립 (2) ○UN産業開發機構, 開途國經濟成長 촉진방향 모색을 의제로 제4차 會議 개최 (2) ○G-77, 開發途上國銀行 (South Bank) 設立問題를 토의하기 위한 實務會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9	○朴聖相 銀行長, 제39차 IMF/IBRD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18) ○産業設備輸出에 따른 搬出確認 및 輸入承認規程 개정(24) ○保險料率 개정(28)	○韓國外換銀行, 通帳式 外貨預金制度 신설(15) ○經濟企劃院, 1985년도 豫算案 발표(20)	- 談 개최(29) ○IMF/IBRD, 미국「워싱턴」에서 제39차 年次總會 개최(24) ○美下院歳入委員會, 一般特惠關稅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26) ○中共政府, 홍콩協定에 英國政府와 가조인(26)
10	○宋茂燮 監事 취임(2) ○1984년도 Berne Union 運營委員會 서울서 개최(15) ○美國商工會議所長 一行來訪(30)	○財務部, 제2金融圈 業務調整계획 발표(24) ○商工部, 中小輸出業體 집중육성계획 발표(26) ○商工部, 輸出競爭秩序確立 강화 방안 발표(27)	○中共政府, 海外銀行과의 합작으로 최초의 民間銀行을 설립, 연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1) ○西獨政府, 외국인의 西獨國內 債券投資에 대한 源泉稅 폐지(3) ○ACP諸國, 제3차「로메」協定을 위한 會談 개시(9)
11	○「플랜트」수출에 대한 資金支援指針 변경(5)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直接貸出 基本運營規程 개정(5) ○貸出金利體系를 基準金利와 貸出實行利率로 구분(5) ○貸出實行利率 책정(6) ○50백만「달러」FRN 발행(21)	○金通委 및 韓國銀行, 은행 與受信 최고金利 일부 조정 및 「콜」金利上限 철폐(3) ○韓國銀行, 內國信用狀取扱規程 개정(7)	○GATT會議, 中共의 GATT會議 「옵저버」자격 인정(6) ○홍콩商品去來所, 홍콩先物去來를 1985년 1/4분기 중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10) ○EC, 수출선박에 대한 補助金支給時限을 1986년까지 연장(23) ○GATT, 「제네바」에서 연례總會 개최(26)
12	○政府出資 50억원 남입(1) ○延拂어음 讓渡方法 개정(5) ○外貨表示支給保證料率 및 延滯貸出金利率 책정(11) ○輸出保險引受 規程 개정(27) ○輸出保險 事故補償規程 개정(27)	○國會, 1985년도 政府豫算 확정(1) ○商工部, 수출선박의 國產化率提高計劃 발표(21) ○財務部, 20개 업종에 대한 外國人 投資許容基準 마련(28)	○이탈리아政府, 外換統制 완화(1) ○世界銀行, 10억「달러」규모의 아프리카基金 설립 계획(4) ○日本政府, 資本市場開放計劃 발표(24) ○OPEC, 제72차 總會를 개최(29) ○日本閣議, 1985년도 豫算案 승인(29)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85.1	○鮮子潤 理事, 「뱅크 론」 1억「달러」 계약체결차 출국(17) ○Chase Manhattan Asia Ltd.로부터 「뱅크 론」 1억「달러」 導入契約 체결(18) ○遊休産業設備의 輸出支援 指針 제정(22) ○海外建設工事に 대한 資金支援指針 제정(22) ○釜山, 馬山, 裡里, 龜尾 地域巡廻 輸出保險制度 説明會 및 懇談會 개최(29)	○財務部, 保險貸出金利 조정(21) ○海運港灣廳, 海運周旋業의 新設登錄要件 및 事後 管理 강화(28)	○世界銀行, 1985년 상반기 중 對開途國 借款資金에 의 적용金利를 9.29%로 인하(4) ○OECD, 최저輸出信用金利를 0.70~1.35%「포인트」 인하여 1월 15일부터 적용키로 결정(11) ○先進5개국, 「워싱턴」에서 財務相 및 中央銀行總裁會議을 개최(17)
2	○제 17차 職制分課規程(6) ○朴炳植 理事, Berne Union總會 참석차 출국(15) ○아이티中央銀行과 轉貸資金供與協定 체결(18) ○支援對象去來의 國產化率을 높여 「플랜트」로 분류된 Oil Rig 등에 대하여도 國產補機用「엔진」사용을 의무화(22)	○金通委, 外貨與受信業務에 관한 規程 제정(7) ○金通委, 金融機關 與信運用 規程 개정(21) ○金通委, 외국銀行 국내支店에 輸出어음再割引 허용(21) ○韓國銀行, 外國換管理業務 取扱總則 개정(22)	○韓國등 10개 開途國, 國際纖維機構(Int'l Textiles and Clothing Bureau; ITCB)를 창설(8) ○수단 中央銀行總裁, 換率引下 및 新外換管理措置 발표(10)
3	○宋茂燮 監事, 海外事務所業務 감독차 출국(5) ○Chemical Asia Ltd. 외 2개 國外金融機關과 126백만「달러」의 延拂어음賣却契約 체결(7) ○貸出審査業務의 效率性提高를 위한 承認條件 履行여부 확인방안 制定(15) ○朴聖相 銀行長, 제 26차 IDB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20) ○朴京東 理事, 아시아·구주國際經濟會議(IER) 참석차 출국(23)	○財務部, 海外旅行經費支給限度 축소등을 내용으로 하는 外換管理規程 개정(4) ○商工部, 中小企業 育成業種을 확대 지정(5) ○韓國銀行, 融資規模 확대(2,000억원→4,000억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輸出産業設備金融 取扱規程 개정(15)	○EC, 公的 ECU金利引上 및 「달러」貨의 中央銀行간 「스왑」거래 허용 등에 합의(12) ○日本大藏省, 非居住者에 대한 「유로 엔」 中長期貸出을 허용(23) ○GATT, 保護貿易主義 傾向의 완화를 위한 15개항의 권고사항 발표(27)
4	○先受金管理要領 개정(8) ○貸出承認節次規程 개정	○商工部, 輸出動向 監視 및 事前豫告制 實施方案	○日本輸出入銀行, 完製品 輸入資金金利를 7.2~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19) ○崔鍾岳 理事, 제 18 차 ADB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21)	발표(1)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不實債權貸損承認節次 개선(4) ○工業振興廳, 輸出用原資材所要量 및 表記單位 전면 개편(17) ○金通委 및 韓國銀行, 金融機關與信利率 등에 관한 規程 및 관련指針 일부 개정(18)	7.5% 에서 7.1% 로 인하하고 통신기기등 貿易摩擦爭點品目에 대해서는 6.8% 의 낮은 金利를 적용키로 하였음을 발표(9) ○프랑스貿易相, 中共과 一般貿易協定 조인(16) ○「파리 클럽」폴란드 에쿠아돌 코스타리카 및 모리타니아가 요청한 債務再調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파리」에서 회동(22)
5	○河國換 專務理事, 成旭基 理事, 제 21 차 AfDB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1) ○崔鍾岳 理事 퇴임(7) ○李鍾桓 理事 취임(8) ○信用保證基金과 業務協約 체결(15) ○제 18 차 職制分課規程 개정(21) ○朴聖相 銀行長, Berne Union 總會참석 및 FNB C 와 FRN 發行 협의차 출국(24) ○鮮于潤 理事, 延拂어음 賣却 계약차 출국(30)	○金通委, 輸出金融「달러」당 融資金額 인상(2) ○韓國銀行, 內國信用狀 取扱規程 일부 개정(2) ○韓國銀行, 金融機關간 社債保證債務 인수 허용을 내용으로 한 金融機關與信運用細則 개정(22) ○商工部, 235 개 品目を 輸入自由化品目으로 추가(28)	○日本大藏省, 은행에 대해 綜合的인 金融子會社 설립을 허용키로 결정(16) ○싱가포르政府, 「아시안 달러」市場을 육성, 강화하기 위한 優待措置발표(16) ○EC 및 中共, 5 개년 經濟協力協定에 조인(21)
6	○朴聖相 銀行長, 鮮于潤 理事, 外貨債券發行을 위한 Road Show 및 계약차 출국(10) ○100 백만「마르크」 DM Bond 發行契約을 DG Bank 외 7 개 國外金融機關과 체결(18) ○제 36 차 業務方法書 개정(26) ○外國政府, 外國人에 대한 直接貸出 基本運營規程 개정(26) ○光州地域 中小企業에 대한 海外投資支援制度 說明會 개최(28)	○韓國銀行, 融資規模 확대(4,000 만원→6,000 만원)를 내용으로 한 輸出産業設備金融 取扱規程 일부 개정(14) ○韓國銀行, 金融機關에 대한 再割引 및 貸出比率 일부 개정(20) ○韓國銀行, 金融機關與信利率 등에 관한 指針 일부 개정(29)	○日本政府, 日本開發銀行의 輸入體制整備融資 조건을 1986년도부터 개정키로 결정(3) ○IMF, 穀物輸入資金 貸與事業을 1989 년 5 월까지 연장(10) ○선진 10 개국(G-10)財務相會議, 外換市場安定화를 위한 制度上的改善이 필요함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채택(21) ○美上·下院合同委員會, 輸出管理法案에 합의(28)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7	○朴聖相 銀行長, ADB주최 國際會議 참석 및 강연, ADB域內 주요 金融人과 업무 협의차 출국 (10) ○政府出資 100 억원 납입 (20) ○貸出取扱規程 개정 (26) ○成旭基 理事, 韓·美政府 間協議會 참석차 출국 (29)	○金通委, 外貨與受信業務에 관한 規程 일부 개정 (4) ○財務部, 信用保證基金履行保證대상처 확대 (11) ○金通委, 輸出金融融資金額 인상 및 融資對象 확대 (13) ○財務部, 中小企業保證CP 賣出金利등 조정 (16)	○英國外務省, 對아르헨티나 輸入規制措置 철폐 (8) ○中南美 14개국, IDB의 子會社인 美洲投資會社 (ICC)의 設立協定에 조인 (9) ○G-77 閣僚會議, 섬유, 열대산품 및 농산품에 대한 關稅障壁 제거에 합의 (26)
8	○鮮于潤 理事, Convertible Euronote Facility 계약차 출국 (10) ○西獨 KfW 와 200백만「마르크」轉貸借款 導入契約 체결 (16) ○臺灣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 앞 轉貸資金 供與協定 체결 (19) ○S.B.India Hong Kong Finance Ltd. 외 3개 國外金融機關과 113백만「달러」의 延拂어음賣却契約 체결 (28) ○제37차 業務方法書 개정 (30) ○新築行舍 竣工 (31)	○財務部 證券管理委員會, 제2金融圈 金利 조정 (7) ○商工部, 輸出節次簡素化 方案 발표 (20) ○韓國銀行, 輸出金融融資取扱細則 일부 개정 (30) ○國會, 1985년도 제1회 追加更正豫算案(2,572억 원) 의결 (31)	○美上·下院, 1986년도 豫算案 확정 통과 (1) ○EC, 16개 품목의 鐵鋼製品 對美輸出을 1985년중 475천 純「톤」이내로 「쿼터」를 제한하기로 美國과 합의 (1) ○페루政府, 경제부흥과 「인플레이션」억제를 위한 일련의 經濟措置 발표 (1) ○日本大藏省, 日本이 가맹한 國際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를 제외한 東京에서 발행되는 外貨債의 利子所得에 대해서도 20% 源泉課稅키로 결정 (12)
9	○成旭基 理事, 大韓貿易振興公社 주최 국제「플랜트 심포지움」에 참석차 출국 (3) ○제19차 職制分課規程 개정 (10) ○國別經濟要覽 발간 (16) ○河國煥 專務理事 퇴임 (18) ○成旭基 專務理事 취임 (19) ○朴聖相 銀行長, 鮮于潤 理事, 「뱅크론」導入契約 체결 및 對이라크 輸出支援方案 수정을 위한 現地	○金通委, 「外貨與受信業務에 관한 規程」개정 (5) ○經濟企劃院, 外債節減努力 強化方案 발표 (6) ○韓國銀行, 輸出産業設備金融取扱規程 일부 개정 (13)	○日本大藏省, 巨額預金金利의 자유화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정 (5) ○世界銀行 常務理事會, 國際投資保證機構(MIGA)의 설립계획 승인 (12) ○歐洲通貨單位의 決濟制度 확립을 위한 ECU銀行協會(ECU Banking Association) 창설 (17) ○西方 先進5개국 財務長官 및 中央銀行總裁, 「뉴욕」에서 緊急회의(G-5회의)를 개최 (22)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10	조사차 출국(20) ○李鍾桓 理事, 韓·加經濟協力委員會 經濟協力使節團 韓國代表로 참석차 출국(1) ○李定寧 理事 취임(2) ○「드레이퍼」美輸出入銀行 總裁 一行 來訪(10) ○자마이카首相 來訪(12) ○成旭基 專務理事, 「뱅크론」 300억「엔」導入 계약차 출국(22) ○朴京東 理事, 미국의 對外經濟政策 決定過程에 관한 「세미나」 참석차 출국(22) ○光州, 大邱, 仁川地域 中小企業에 대한 海外投資說明會 개최(23)	○韓國銀行, 融資取扱銀行에의 中小企業銀行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輸出産業設備金融 取扱規程 개정(8) ○財務部, 外國人投資認可指針 개정(12) ○金通委, 包括輸出金融制度의 도입 및 輸出金融關聯諸規程의 정비(17) ○韓國銀行, 貿易金融規程施行細則 제정(29)	○프랑스 財務省, 輸出어음 期間制限 폐지(8) ○美下院, 纖維類規制法案(「젠킨스」法案)을 통과(10) ○IBRD/IMF, MIGA설립을 위한 서울協約을 채택한 다음 제40차 年次總會 폐막(11) ○濠洲政府, 外資導入規制 완화(31)
11	○멕시코의 Banco National de Mexico 앞 轉貸資金 供與協定 체결(5) ○釜山地域 中小企業에 대한 海外投資 支援制度說明會 개최(12) ○제20차 職制分課規程 개정(15) ○船舶引渡遲延에 따른 貸出期間 延長基準설정(19) ○政府出資 200억원 남입(27) ○100백만「달러」FRN發行契約을 Chase Manhattan Asia Ltd. 외 26개 國外金融機關과 체결(29) ○Chase Manhattan Asia Ltd. 외 3개 國外金融機關과 90백만「달러」의 延拂어음賣却契約 체결(29)	○海運港灣廳, 제10차 計劃造船事業計劃 확정(1) ○財務部 證券管理委員會, 국내기업의 株式關聯 海外證券 발행 허용(12)	○유럽 自由貿易聯盟(EFTA), 핀란드의 正式 會員國 가입 승인(4) ○美上院, 纖維類輸入規制法案(「더몬드」수정안)을 통과(13)
12	○50백만 스위스「프랑」SFr Bond 發行契約을 Swiss Bank Corporation의 15개 國外金融機關과 체결	○國會, 1986년도 豫算案 의결(2) ○政府, 防衛稅法 法人稅法 所得稅法 租稅減免規制法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등 7개국頂上, 南아시아地域協力議會(SAARC)를 정식으로 창설(7)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20) ○朴聖相 銀行長, 鮮于潤 理事, SFr Bond 發行 계약 차 출국(22) ○中長期延拂輸出保險 實施要領 개정(30) ○中小企業振興公團과의 業務協約 체결(30) ○韓國銀行出資 300억원 납입(30) ○韓國銀行出資 300억원 납입(30)	개정(2) ○韓國銀行, 商業어음割引 및 再割引取扱節次 제정(9) ○韓國證券去來所, 債券賣買制度 개편(17) ○韓國銀行, 輸出支援金融事後管理에 관한 監證特例 개정(26)	○47個開途國, 인도 「뉴델리」에서 新「라운드」協商에 대한 對策會議를 개최(13) ○Cartagena Group, 「베이커」案의 취지에 대한 찬성표명등을 내용으로 하는 「몬테비데오」宣言 발표(17) ○IMF, 「바스켓」 構成通貨의 通貨單位數 조정(31)
86.1	○異種通貨貸出 세부지침 제정(11) ○朴聖相 銀行長 퇴임(12) ○柳惇佑 銀行長 취임(13) ○鮮于潤 理事, 延拂어음 賣却契約 체결차 출국(19)	○經濟企劃院, 公共料金 管理方案 마련(7) ○動力資源部, 1986년도 「에너지」需給計劃 발표(11) ○財務部, 제2金融圈 金利 조정(25)	○스페인 및 포르투갈, EEC에 정식 가입(1) ○OECD, 公的輸出信用에 적용되는 최저 金利를 1986년 1월 15일부터 1.05%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9) ○GATT, 新「라운드」협상을 위한 準備委員會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27) ○日本銀行, 公定割引率을 5.0%에서 4.5%로 인하(29)
2	○國產機資材 使用去來에 대한 우선지원 지침 변경(5)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轉貸資金 貸出取扱規定 개정(6) ○수리남 中央銀行과 轉貸資金 供與協定 체결(6) ○李定寧 理事, Berne Union總會 참석차 출국(15) ○貸出實行利率 變更(17) ○柳惇佑 銀行長, 李鍾桓 理事, DM Bond 發行契約 署名式 참석 및 海外事務所 業務現況 파악차 출국(28)	○財務部, 中小企業隘路打開委員會 설치(10) ○動力資源部, 石油類製品의 工場渡價格을 평균 12.93%, 消費者價格은 평균 11.2% 인하(20) ○韓國銀行, 輸出産業設備 金融 取扱規程 개정(28)	○美聯邦地方法院, 均衡豫算法(Gramm - Rudman 法)의 一部條項에 대해 위헌 발표(7) ○西獨聯邦銀行, 일련의 금융개방화 조치를 西獨資本市場小委員會에 제안(13) ○브라질政府, 「인플레이션」진정을 위한 經濟改革措置 단행(28)

年月	當 行	國 內	海 外
3	○定款 개정 (7) ○輸銀內國信用狀 取扱規定 개정 (18) ○釜山出張所, 釜山支店으로 명칭 변경 (18) ○成旭基 專務理事, IDB 年次總會 참석차 출국 (21) ○勞動組合總聯盟 서울地區協議會 가입 (24) ○海外投資情報支援「센터」設置運用指針 제정 (28)	○金通委, 讓渡性預金證書 발행 및 貸出金利 자유화 (6) ○韓國銀行, 輸出産業設備金融 取扱節次 제정 (7) ○財務部, 外國換管理規程 개정 (15)	○日本銀行, 公定割引率을 4.5%에서 4.0%로 인하 (7) ○美FRB, 公定割引率을 7.5%에서 7.0%로 인하 (7) ○日本輸出入銀行, 「달러」表示輸出金融制度 도입 (18)

III. 統計編

1. 要約貸借對照表
2. 要約損益計算書
3. 資本金 및 積立金
4. 資金調達 및 供給實績
5. 總資金 調達現況
6. 資金別・品目別 貸出承認實績
7. 資金別・品目別 貸出執行實績
8. 資金別・品目別 貸出殘額
9. 資金別・品目別 融資對象 契約額
10. 輸銀支援事業의 品目別 輸出履行實績
11. 地域別 貸出承認實績
12. 地域別 貸出執行實績
13. 地域別 貸出殘額
14. 輸出保險基金 要約貸借對照表
15. 輸出保險基金 要約損益計算書
16. 輸出保險基金 現況
17. 輸出保險引受 및 補償實績
18. 種目別 輸出保險引受 및 補償實績
19. 種目別 輸出保險 有效契約額

(단위 : 백만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20,691	47,071	82,666	104,342	141,692	157,722
10,486	24,153	33,886	50,208	122,786	163,187
				1,769	15,316
237	3,263	3,291	5,886	6,330	5,717
				4,980	35,667
3,068	4,078	5,153	6,266	7,062	8,588
21	25	212	133	75	135
67	74	82	104	133	857
5,719		6,162	2,536	5,288	43,551
196	275	407	612	812	530
4	67	79	103	383	1,862
2,219	51	216	254	416	3,322
19,695	468	1,068	707	1,287	19,794
62,403	79,525	133,222	171,151	293,013	456,248
26,307	55,368	94,354	120,571	186,104	247,141
1,863	2,076	1,081	754	2,009	57,525
6,815	1,365	1,075	1,463	1,283	426
4,759	4,409	4,431	3,544	13,243	31,391
206	883	2,429	3,167	4,583	4,812
25	454	1,168	863	655	708
22,422	9,703	10,975	19,692	42,138	78,708
	4,500	17,700	16,200	15,000	18,838
			4,819	27,752	15,687
6	767	9	78	246	1,012
62,403	79,525	133,222	171,151	293,013	456,248

3. 資本金 및 積立金 (I)

(단위 : 백만원)

日 字	資 本 金				積 立 金	
	政 府	韓國銀行	韓國外換銀行	納入累計	年中積立	積立累計 ¹⁾
1975					101	101
1976. 6.17		20,000				
1976. 6.17			30,000			
1976. 6.21	5,355					
1976.12.30	10,000			65,355	1,380	1,481
1977. 7.21		20,000				
1977.10. 5	10,000					
1977.12.31	10,000			105,355	2,263	3,744
1978.10. 2			10,000			
1978.10.30	5,000					
1978.11. 2			10,000			
1978.12. 1			10,000	140,355	6,312	10,056
1979. 3.21	650					
1979. 8.29	1,350					
1979.12.18	2,500			144,855	6,499	16,555
1980. 8.25	4,250					
1980.10.16		30,000		179,105	19,695	36,250
1981. 1.16	750					
1981. 3.21		30,000				
1981. 4.24	11,000					
1981. 5.23		20,000				
1981. 5.30	4,000			244,855	468	36,718
1982. 2. 5	3,000					
1982. 3. 9	4,000					
1982. 4.22	5,000					
1982. 6. 7	3,500					
1982.10.28	3,500					
1982.12.16			55,000	318,855	1,068	37,786
1983. 6.21	5,000					

資本金 및 積立金(II)

(단위 : 백만원)

日 字	資 本 金				積 立 金	
	政 府	韓國銀行	韓國外換銀行	納入累計	年中積立	積立累計 ¹⁾
1983. 6.23	2,000					
1983.10.17	3,000					
1983.12.20		20,000				
1983.12.24	9,000			357,855	707	38,493
1984. 7. 5	5,000					
1984.12. 1	5,000			367,855	1,287	39,780
1985. 7.20	10,000					
1985.11.27	20,000					
1985.12.30		30,000		427,855	19,794	59,574
累 計	142,855	170,000	115,000		59,574	

註 : 1) 各年度末 現在

4. 資金調達 및 供給実績

	1976	1977	1978	1979
〈供給〉				
輸出資金 ¹⁾	47,312	73,479	105,091	146,198 (19,602)
轉貸資金				964
技術提供資金		6,990	6,012	404
海外投資資金	6,066	15,561	16,066	10,985
主要資源開發資金				
合 計	53,378	96,030	127,169	158,551
〈調達〉				
資本金	65,355	40,000	35,000	4,500
政 府	15,355	20,000	5,000	4,500
韓 國 銀 行	20,000	20,000		
外 換 銀 行	30,000		30,000	
國民投資基金借入	10,000	30,000	29,684	30,000
韓銀保有外換		16,732	85	964
國內銀行借入		5,000	15,000	
海 外 借 入		19,873	52,189	48,400
貸出金回收(純)	27,132	20,290	35,205	89,633
其 他 資 產	310	22,658	56,523	69,996
合 計	102,797	154,553	223,686	243,493

註：1) 直接貸出取扱分 포함, () 내는 直接貸出取扱分임.

(단위 : 백만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296,280 (27,607)	504,413 (4,593)	634,486 (21,525)	667,903 (84,534)	831,293 (58,368)	840,124 (20,770)
1,702	1,627	1,958	602		1,747
171	37	611	179		
2,058	11,545	51,334	31,667	14,428	3,624
	6,466	13,260	19,155	4,536	5,059
300,211	524,088	701,649	719,506	850,257	850,554
34,250	65,750	74,000	39,000	10,000	60,000
4,250	15,750	19,000	19,000	10,000	30,000
30,000	50,000		20,000		30,000
		55,000			
30,000	75,000	100,000	175,000	100,000	80,000
1,700	1,552	1,852	692		1,747
80,234	305,418	470,514	460,867	682,257	770,192
63,911	87,355	42,047	70,459	18,486	△39,664
104,008	7,954	20,973	7,737	66,560	50,980
314,103	543,029	709,386	753,755	877,303	923,255

5. 總資金 調達 現況

	1976	1977	1978	1979
〈國內 調 達〉				
資 本 金	65,355	105,355	140,355	144,855
政 府	15,355	35,355	40,355	44,855
韓 國 銀 行 및 外 換 銀 行	50,000	70,000	100,000	100,000
國 民 投 資 基 金 借 入	13,000	38,625	37,299	59,695
外 換 銀 行 借 入		5,000	20,000	20,000
韓 銀 保 有 外 換		16,732	16,818	17,782
剩 餘 金	1,481	3,744	10,055	16,555
充 當 金	221	2,512	3,446	4,926
其 他 ¹⁾	688	1,582	4,485	6,561
小 計	80,745	173,550	232,458	270,374
〈海 外 調 達〉				
銀 行 團 借 款				48,400
延 拂 이 음 賣 却		7,870	6,397	5,677
外 貨 債 券 發 行				
外 資 材 導 入 轉 貸 借 款				
短 期 外 貨 借 入				
小 計		7,870	6,397	54,077
合 計	80,745	181,420	238,855	324,451

註：1) 未支給外換，受入保證金，假受金 등 其他負債計定 임.

2) 殘額基準 임.

(단위 : 백만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79,105	244,855	318,855	357,855	367,855	427,855
49,105	64,855	83,855	102,855	112,855	142,855
130,000	180,000	235,000	255,000	255,000	285,000
90,563	158,349	255,863	429,590	514,749	577,333
50,000	9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6,003	28,945	1,873	1,090		1,708
36,250	36,718	37,786	38,493	39,780	59,574
10,852	10,397	16,992	20,081	26,197	70,911
11,316	19,764	41,408	42,779	98,094	102,785
404,089	589,028	692,777	909,888	1,066,675	1,260,166
131,980	270,860	494,208	776,830	1,001,329	1,248,477
6,383	138,178	243,380	708,026	1,418,588	1,832,196
				57,898	369,933
1,046	23,980	59,064	56,588	42,703	29,900
13,198	16,112	176,716	111,370	45,507	64,400
152,607	449,130	973,368	1,652,814	2,566,025	3,544,906
556,696	1,038,158	1,666,145	2,562,702	3,632,700	4,805,072

6. 資金別・品目別 貸出承認実績(Ⅰ)

	1971		1972		1973	
	件数	金 額	件数	金 額	件数	金 額
〈輸 出 資 金〉						
輪 船			1	374		
巨 船			1	1,047	2	2,145
鐵 道 車 輛			<6>		<8>	
機 械 類 ・ 其 他			1	30		
小 計			3	1,451	2	2,145
轉 貸 資 金						
〈技 術 提 供 資 金〉						
建 設 工 事						
其 他 用 役						
小 計						
〈海 外 投 資 資 金〉						
資 源 開 發	1	651			1	489
製 造 業						
其 他						
小 計	1	651			1	489
主 要 資 源 開 發 資 金						
合 計	1	651	3	1,451	3	2,634

(단위 : 백만원)

1974		1975		1976		1977		1978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1	476	3	33,126	5	78,097	2	3,345	2	84,182
<2>		<5>		<24>		8	100,865	2	22,946
		1	5,497	3	2,580	<36>		<5>	
3	486	3	809	6	1,133	4	1,351	6	12,664
4	962	7	39,432	14	81,810	14	105,561	10	119,792
						2	7,266		
						2	2,355	3	3,786
						4	9,621	3	3,786
		2	32			3	2,410		
				2	8,730	1	16,572	3	2,800
						2		2	15,093
		2	32	2	8,730	4	18,982	5	17,893
4	962	9	39,464	16	90,540	22	134,164	18	141,471

資金別・品目別 貸出承認実績(II)

	1979		1980		1981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輸 出 資 金〉 ¹⁾						
플랜트	4	5,348	7	89,583	9	171,923
船 舶	27 (1) 〈51〉	398,852 (39,204)	12 〈18〉	155,671	25 (1) 〈38〉	371,340 (14,867)
鐵 道 車 輛	1	1,747	1	2,570		
機 械 類 ・ 其 他	4	4,396	7 (2)	4,804 (1,541)	8 (1)	8,967 (1,487)
小 計	36 (1)	410,343 (39,204)	27 (2)	252,628 (1,541)	42 (2)	552,230 (16,354)
轉 貸 資 金	3	5,808	2	5,279	1	2,102
〈技 術 提 供 資 金〉						
建 設 工 事						
其 他 用 役			1	230		
小 計			1	230		
〈海 外 投 資 資 金〉						
資 源 開 發	2	25,240			1	9,562
製 造 業	5	654	2	1,504		
其 他	1	2,293				
小 計	8	28,187	2	1,504	1	9,562
主 要 資 源 開 發 資 金					1	26,982
合 計	47	444,338	32	259,641	45	590,876

註：1) 直接貸出 取扱分 포함, ()内는 直接貸出 取扱分임.

2) < >는 船舶 隻數임.

3) 累計額은 換率變動에 따른 調整分을 포함, 年度別 合計額과는 일치하지 않음.

(단위 : 백만원)

1982		1983		1984		1985		累 計 ³⁾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4	58,561	7	130,019	10	180,117	8	330,316	54	1,188,725
(1)	(14,859)	(1)	(61,994)					(2)	(87,039)
22	505,064	29	467,134	60	939,205	22	423,378	219	4,272,046
(2)	(45,787)	(1)	(27,841)	<97>		<41>		(5)	(194,517)
<43>		<51>						<425>	
						2	5,641	8	19,110
5	7,188	3	6,650	2	743			52	64,077
								(3)	(3,372)
31	570,813	39	603,803	72	1,120,065	32	759,335	333	5,543,958
(3)	(60,646)	(2)	(89,835)					(10)	(284,928)
1	2,246			1	4,137	3	8,012	11	34,720
								2	13,364
1	1,155							7	10,134
1	1,155							9	23,498
3	47,455	2	13,810	1	6,461			16	141,632
1	262	3	498	3	742	2	2,306	19	12,100
								6	75,744
4	47,717	5	14,308	4	7,203	2	2,306	41	229,476
1	6,174	1	5,836	2	1,987	2	5,060	7	55,357
38	628,105	45	623,947	79	1,133,392	39	774,713	401	5,887,009

7. 資金別・品目別 貸出執行實績(I)

	1971	1972	1973
〈輸 出 資 金〉 船 隻 船 鐵 道 車 輛 機 械 類 ・ 其 他		335 793 30	1,563
小 計		1,158	1,563
轉 貸 資 金			
〈技 術 提 供 資 金〉 建 設 工 事 其 他 用 役			
小 計			
〈海 外 投 資 資 金〉 資 源 開 發 製 造 業 其 他	388		
小 計	388		
主 要 資 源 開 發 資 金			
合 計	388	1,158	1,563

(단위 : 백만원)

1974	1975	1976	1977	1978
39			130	35,983
1,312	21,500	42,913	71,730	58,397
	4,943	2,802	332	
217	614	1,597	1,287	10,711
1,568	27,057	47,312	73,479	105,091
			4,640	2,224
			2,350	3,788
			6,990	6,012
752	32		2,395	
			287	2,755
		6,066	12,879	13,311
752	32	6,066	15,561	16,066
2,320	27,089	53,378	96,030	127,169

資金別・品目別 貸出執行実績(Ⅱ)

	1979	1980	1981
〈輸 出 資 金〉 ¹⁾			
폴 렌 트	50,216	37,996	44,965
船 舶	90,468 (19,602)	251,691 (26,818)	455,589 (4,460)
鐵 道 車 輛	1,085	2,982	304
機 械 類 ・ 其 他	4,429	3,611 (789)	3,555 (133)
小 計	146,198 (19,602)	296,280 (27,607)	504,413 (4,593)
轉 貸 資 金	964	1,702	1,627
〈技 術 提 供 資 金〉			
建 設 工 事	404		
其 他 用 役		171	37
小 計	404	171	37
〈海 外 投 資 資 金〉			
資 源 開 發	678	779	11,534
製 造 業	582	1,224	11
其 他	9,725	55	
小 計	10,985	2,058	11,545
主 要 資 源 開 發 資 金			6,466
合 計	158,551	300,211	524,088

註：1) 直接貸出 取扱分 포함. () 내는 直接貸出 取扱分임.

2) 累計額は 換率變動에 따른 調整分을 포함, 年度別 合計額과는 일치하지 않음.

(단위 : 백만원)

1982	1983	1984	1985	累 計 ²⁾
135,340 (1,571)	185,599 (77,780)	89,138	161,340	839,996 (87,039)
492,652 (19,849)	473,114 (6,754)	741,735 (58,368)	675,138 (20,770)	3,798,269 (192,497)
6,494 (105)	9,190	420	3,646	17,106 55,801 (3,350)
634,486 (21,525)	667,903 (84,534)	831,293 (58,368)	840,124 (20,770)	4,711,172 (282,886)
1,958	602		1,747	10,963
611	179			13,364 9,690
611	179			23,054
51,072 262	31,288 239 140	13,680 483 265	2,174 1,450	134,532 11,114 71,445
51,334	31,667	14,428	3,624	217,091
13,260	19,155	4,536	5,059	55,357
701,649	719,506	850,257	850,554	5,017,637

8. 資金別・品目別 貸出残額(I)

	1971	1972	1973
<輸 出 資 金> 船 舶 鐵 道 車 輛 機 械 類 ・ 其 他		335 793 30	335 2,356
小 計		1,158	2,691
轉 貸 資 金			
<技 術 提 供 資 金> 建 設 工 事 其 他 用 役			
小 計			
<海 外 投 資 資 金> 資 源 開 發 製 造 業 其 他	388	291	218
小 計	388	291	218
主 要 資 源 開 發 資 金			
合 計	388	1,449	2,909

(단위 : 백만원)

1974	1975	1976	1977	1978
374	354	306	366	32,886
3,068	23,443	40,420	82,191	64,882
	4,978	7,254	6,870	6,154
	345	1,603	2,531	12,121
3,442	29,120	49,583	91,958	116,043
			4,638	6,862
			1,972	3,664
			6,610	10,526
896	804	523	2,841	2,753
		6,066	19,232	2,755
				32,533
896	804	6,589	22,073	38,041
4,338	29,924	56,172	120,641	164,610

資金別・品目別 貸出残額(II)

	1979	1980	1981
〈輸 出 資 金〉 ²⁾			
輪 船	56,023	94,933	106,372
船 舶	114,938 (19,602)	369,954 (53,452)	779,181 (61,201)
鐵 道 車 輛	6,522	6,844	6,388
機 械 類 ・ 其 他	8,975	12,894 (881)	12,901 (693)
小 計	186,458 (19,602)	484,625 (54,333)	904,842 (61,894)
轉 貸 資 金	964	3,074	4,610
〈技 術 提 供 資 金〉			
建 設 工 事	7,266	8,851	7,500
其 他 用 役	1,984	1,587	863
小 計	9,250	10,438	8,363
〈海 外 投 資 資 金〉			
資 源 開 發	3,279	4,277	14,986
製 造 業	3,337	5,880	5,539
其 他	22,234	3,162	2,797
小 計	28,850	13,319	23,322
主 要 資 源 開 發 資 金			6,465
合 計	225,522	511,456	947,602

註：1) 各年度末 基準

2) 直接貸出 取扱分 포함, () 내는 直接貸出 取扱分임.

(단위 : 백만원)

1982	1983	1984	1985
198,868 (1,571)	291,676 (77,780)	367,090 (75,317)	514,930 (71,375)
1,239,382 (77,687)	1,588,179 (78,143)	2,058,495 (124,021)	2,639,388 (133,432)
5,688	3,936	3,468	6,692
16,184 (290)	17,502 (158)	11,746 (55)	7,966
1,460,122 (79,548)	1,901,293 (156,081)	2,440,799 (199,393)	3,168,976 (204,807)
2,551	2,146	1,675	3,510
5,990	5,091	3,972	3,560
1,073	817	480	0
7,063	5,908	4,452	3,560
66,136	98,173	113,269	119,157
5,393	5,045	4,438	5,061
2,391	2,044	1,632	771
73,920	105,262	119,339	124,989
20,172	40,585	40,679	48,826
1,563,828	2,055,194	2,606,944	3,349,861

9. 資金別・品目別 融資對象 契約額 (I)

	1971	1972	1973
〈輸 出 資 金〉 輪 船 鐵 道 車 輛 機 械 類 ・ 其 他		1,051 3,300 101	72,180
小 計		4,452	72,180
轉 貸 資 金			
〈技 術 提 供 資 金〉 建 設 工 事 其 他 用 役			
小 計			
〈海 外 投 資 資 金〉 資 源 開 發 製 造 業 其 他	2,100		2,450
小 計	2,100		2,450
主 要 資 源 開 發 資 金			
合 計	2,100	4,452	74,630

(단위 : 천「달러」)

1974	1975	1976	1977	1978
			10,190	297,145
1,500	279,734	270,133	295,280	67,070
	16,558	5,770		
1,831	2,135	2,980	4,935	46,364
3,331	298,427	278,883	310,405	410,579
			20,000	
			11,140	12,203
			31,140	12,203
	150		6,400	7,234
		118,400		
	150	118,400	6,400	7,234
3,331	298,577	397,283	347,945	430,016

資金別・品目別 融資對象 契約額(Ⅱ)

	1979	1980	1981
〈輸 出 資 金〉 ²⁾			
플랜트	14,644	223,622	386,047
船 舶	1,013,337 (144,000)	388,288	911,364 (37,900)
鐵 道 車 輛	4,034	5,411	
機 械 類 ・ 其 他	14,040	10,798 (2,820)	25,490 (3,790)
小 計	1,046,055 (144,000)	628,119 (2,820)	1,322,901 (41,690)
轉 貸 資 金	12,000	8,000	3,000
〈技 術 提 供 資 金〉			
建 設 工 事			
其 他 用 役		990	
小 計		990	
〈海 外 投 資 資 金〉			
資 源 開 發	75,999		19,500
製 造 業	1,690	2,879	
其 他	17,945		
小 計	95,634	2,879	19,500
主 要 資 源 開 發 資 金			48,147
合 計	1,153,689	639,988	1,393,548

註：1) 各年度末 基準

2) 直接貸出 取扱分 포함, ()는 直接貸出 取扱分임.

(단위 : 천「달러」)

1982	1983	1984	1985	累 計
126,846 (35,435)	302,552 (130,976)	392,249	612,043	2,366,389 (166,411)
1,199,909 (109,192)	1,090,028 (62,496)	2,052,096	789,264	8,433,483 (353,588)
			10,188	41,961
17,959	17,374	1,600		145,607 (6,610)
1,344,714 (144,627)	1,409,954 (193,472)	2,445,945	1,411,495	10,987,440 (526,609)
3,000		5,000	9,000	40,000
				20,000
4,293				28,626
4,293				48,626
94,699	28,000	11,320		240,618
1,292	1,481	1,233	3,700	19,509
				136,345
95,991	29,481	12,553	3,700	396,472
9,285	9,170	2,402	5,684	74,688
1,457,283	1,448,605	2,465,900	1,429,879	11,547,226

10. 輸銀支援事業의 品目別 輸出履行實績

	1971		1972		1973		1974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플랜트					1	1,051		
船舶							15	42,475
鐵道車輛								
機械類・其他					1	101	2	1,183
合 計					2	1,152	17	43,658

	1979		1980		1981		1982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플랜트	4	70,150	8	81,234	3	60,938	7	281,520
船舶	19	268,732	24	302,909	29	565,650	38	1,053,448
鐵道車輛			1	4,034	1	5,411		
機械類・其他	6	23,396	6	9,360	6	11,418	9	21,269
合 計	29	362,278	39	397,537	39	643,417	54	1,356,237

註：船舶은 隻數임.

(단위 : 천「달러」)

1975		1976		1977		1978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4	15,748
1	36,046	31	243,012	14	149,497	17	174,969
1	16,558	2	2,191	1	3,579		
2	1,086	8	4,677	2	1,436	8	25,440
4	53,690	41	249,880	17	154,512	29	216,157

1983		1984		1985		累 計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19	671,174	6	100,279	7	209,016	59	1,491,110
41	1,005,013	50	1,277,286	73	1,478,884	352	6,597,921
				1	6,098	7	37,871
7	10,002	5	13,312	2	2,309	64	124,989
67	1,686,189	61	1,390,877	83	1,696,307	482	8,251,891

11. 地域別 貸出承認実績

	1971		1972		1973		1974	
	件数	金 額	件数	金 額	件数	金 額	件数	金 額
유 럽					1	1,194	1	103
北 美								
中 南 美			1	1,047	1	951	1	476
中 南 亞	1	651	1	30	1	489	2	383
中 東 亞			1	374				
아 프 리 카								
大 洋 洲								
合 計	1	651	3	1,451	3	2,634	4	962

	1979		1980		1981		1982	
	件数	金 額	件数	金 額	件数	金 額	件数	金 額
유 럽	13	226,796	2	4,749	13	239,546	9	217,964
北 美	5	69,655	7	147,695	8	129,351	7	118,479
中 南 美	6	43,352	2	1,541	7	103,473	4	73,004
中 南 亞	18	93,359	13	46,814	13	83,813	9	108,213
中 東 亞	2	3,128	5	53,177			3	13,156
아 프 리 카	2	3,496	1	1,980	1	23,458	1	77,154
大 洋 洲	1	4,552	2	3,685	3	11,235	5	20,135
合 計	47	444,338	32	259,641	45	590,876	38	628,105

註：累計額は 換率變動에 따른 調整分을 포함, 年度別 合計額과는 일치하지 않음.

(단위 : 백만원)

1975		1976		1977		1978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3	33,126	5	68,756	6	46,165	5	18,567
		1	15,335	1	8,481		
						3	4,049
3	809	8	3,342	5	17,680	2	117
				2	2,128	3	63,652
2	32	2	3,107	7	59,236	5	55,086
1	5,497			1	474		
9	39,464	16	90,540	22	134,164	18	141,471

1983		1984		1985		累 計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12	150,587	30	416,301	11	274,521	111	2,110,308
6	141,409	9	224,055	4	180,059	48	1,209,316
2	5,549	3	35,441	3	11,279	33	321,059
15	283,560	29	316,134	16	193,227	136	1,379,669
5	30,925	3	84,653	2	83,985	26	472,971
2	974	2	43,593	1	2,474	26	284,208
3	10,943	3	13,215	2	29,168	21	109,478
45	623,947	79	1,133,392	39	774,713	401	5,887,009

12. 地域別 貸出執行實績

		1971	1972	1973
유 럽				1,194
北 美				
中 南 美			793	369
東 南 亞		388	30	
中 東 亞			335	
아 프 리 카				
大 洋 洲				
合 計		388	1,158	1,563

		1979	1980	1981
유 럽		34,737	119,136	208,291
北 美		14,236	39,483	97,259
中 南 美		2,047	23,566	78,138
東 南 亞		18,188	68,281	111,102
中 東 亞		35,456	31,845	22,169
아 프 리 카		51,099	12,308	1,279
大 洋 洲		2,788	5,592	5,850
合 計		158,551	300,211	524,088

註：累計額は 換率變動에 따른 調整分을 포함, 年度別 合計額과는 일치하지 않음.

(단위 : 백만원)

1974	1975	1976	1977	1978
103	21,500	40,280	62,030	34,640
		6,250	9,017	68
1,312			6,344	4,909
866	614	3,474	9,122	6,551
39			2,065	25,543
	32	2,820	6,978	55,458
	4,943	554	474	
2,320	27,089	53,378	96,030	127,169

1982	1983	1984	1985	累 計
200,436	243,740	299,087	322,853	1,794,210
194,378	164,198	195,228	163,519	1,036,359
92,502	31,865	19,147	24,971	290,722
139,996	203,224	253,615	239,877	1,162,605
38,211	60,706	33,218	80,731	377,016
24,461	4,194	35,942	9,712	277,074
11,665	11,579	14,020	8,891	79,651
701,649	719,506	850,257	850,554	5,017,637

13. 地域別 貸出残額

		1971	1972	1973
유 럽				1,194
北 美				
中 南 美			793	1,162
東 南 亞		388	321	218
中 東			335	335
아 프 리 카				
大 洋 洲				
合 計		388	1,449	2,909

		1979	1980	1981
유 럽		61,011	165,038	357,199
北 美		13,886	50,146	138,500
中 南 美		10,363	36,092	110,941
東 南 亞		32,715	101,614	201,760
中 東		24,635	50,273	34,908
아 프 리 카		76,664	96,918	88,129
大 洋 洲		6,248	11,375	16,165
合 計		225,522	511,456	947,602

註：各年度末 基準

(단위 : 백만원)

1974	1975	1976	1977	1978
594	21,500	36,255	78,231	58,211
		6,252	7,600	
2,474	1,978	1,532	6,494	10,212
896	1,117	3,478	10,935	16,782
374	354	306	2,301	23,116
	32	2,852	9,797	51,694
	4,943	5,497	5,283	4,595
4,338	29,924	56,172	120,641	164,610

1982	1983	1984	1985
576,919	714,213	953,537	1,233,315
366,237	430,810	604,211	744,433
179,870	214,079	189,856	181,166
266,641	467,790	650,818	888,309
46,021	102,385	46,836	126,496
99,239	91,424	113,210	118,674
28,901	34,493	48,476	57,468
1,563,828	2,055,194	2,606,944	3,349,861

14. 輸出保險基金 要約貸借對照表(I)

	1969	1970	1971	1972
〈資 產〉				
現 金 斗 預 金	340	405	467	549
有 價 證 券		200	305	550
未 受 保 險 料		3	11	11
未 受 利 子	3	9	6	6
假 支 給 金				
國 民 投 資 基 金 預 託 金				
任 職 員 長 期 貸 與 金				
貸 借 保 證 金				
固 定 資 產				
合 計	343	617	789	1,116
〈負 債 斗 資 本〉				
未 經 過 保 險 料 積 立 金	2	7	31	99
支 給 備 金				
非 常 危 險 準 備 金	1	2	7	23
先 受 收 益			12	1
假 受 保 險 料				
未 支 給 金	7	4	5	5
退 職 給 與 充 當 金				
政 府 出 損 金 ²⁾	300	533	604	734
利 益 積 立 金				
修 正 後 前 期 移 越 利 益 剩 餘 金				
當 期 純 利 益	33	71	130	254
合 計	343	617	789	1,116

(단위 : 백만원)

1973	1974	1975	1976	1977
770	126	1	4	4
527	326	382	540	406
8	10	32	21	20
6	38	42	61	95
				1
	1,028	1,150	2,383	4,572
			9	359
2	1	1	3	15
1,313	1,529	1,608	3,021	5,472
50	42	97	234	277
230	230	147	751	883
31	38	53	92	138
			1	
8	31	22	15	34
988	994	1,188	2,289	3,928
6	194	101	△361	212
1,313	1,529	1,608	3,021	5,472

輸出保險基金 要約貸借對照表(II)

	1978	1979	1980	1981
〈資 產〉				
現 金 斗 預 金	162	169	384	394
有 價 證 券	1,089	728	750	1,012
未 受 保 險 料	18	3	86	288
未 受 利 子	257	374	367	707
假 支 給 金	5	4	6	37
國 民 投 資 基 金 預 託 金	7,252	11,452	18,004	30,962
任 職 員 長 期 貸 與 金				
貸 借 保 證 金	618	919	1,032	1,138
固 定 資 產 ¹⁾	63	66	74	81
合 計	9,464	13,715	20,703	34,619
〈負 債 斗 資 本〉				
未 經 過 保 險 料 積 立 金	377	447	1,154	3,136
支 給 備 金	921	227	610	50
非 常 危 險 準 備 金	201	276	468	991
先 受 收 益		23	10	1
假 受 保 險 料	2	3	23	4
未 支 給 金	47	59		
退 職 給 與 充 當 金	9	47	77	129
政 府 出 損 金 ²⁾	7,140	9,640	12,640	17,640
利 益 積 立 金		767	2,993	5,721
修正後前期移越利益剩餘金				3
當 期 純 利 益	767	2,226	2,728	6,944
合 計	9,464	13,715	20,703	34,619

註：1) 電話加入權 포함.

2) 舊法 第35條에 의거 前年度 決算上 利益金을 轉入한 金額(1969~78)

(단위 : 백만원)

1982	1983	1984	1985
336	931	527	549
5,434	5,382	11,251	14,287
28	234	1,629	1,711
377	529	22	
6	15	31	66
33,984	39,838	42,179	54,574
		179	261
1,177	1,671	1,716	1,744
97	87	77	115
41,439	48,687	57,611	73,307
5,253	6,151	8,878	12,606
1,574	1,406	732	674
991	4,296	9,007	17,674
1	6	69	33
15	4	9	363
232	358	525	646
18,590	19,590	19,590	20,590
12,668	14,783	16,876	18,801
	2	△2	△4
2,115	2,091	1,927	1,924
41,439	48,687	57,611	73,307

15. 輸出保險基金 要約損益計算書(I)

	1969	1970	1971	1972
〈費用〉 保險金 還給金 後期移越準備金 2 7 31 99 非常危險準備金 1 1 5 16 代行事業費 22 19 21 23 代行手續料 2 雜損失 減價償却費 2 退職給與充當金轉入額 當期純利益 33 71 130 254				
合計	60	98	187	394
〈收益〉 保險料金 4 11 51 165 回收入 前期移越準備金子 3 7 31 受入利 56 84 129 198 雜收入				
合計	60	98	187	394

(단위 : 백만원)

1973	1974	1975	1976	1977
12	20	207	158	486
280	272	244	985	1,160
8	7	15	39	46
34	51	72	79	166
1		1	4	
1			1	3
6	194	101	△361	212
342	544	640	905	2,073
83	69	148	391	461
		7		38
99	280	272	244	985
160	195	213	270	588
				1
342	544	640	905	2,073

輸出保險基金 要約損益計算書(Ⅱ)

	1978	1979	1980	1981
〈費用〉				
保險金	469	405	312	430
還給金			31	1
後期移越準備金	1,298	674	1,764	3,186
非常危険準備金	63	75	192	523
代行事業費	329	428	640	939
代 hands 手数料				
雜損失				
減價償却費	7	12	14	15
退職給與充當金轉入額	9	39	33	57
當期純利益	767	2,226	2,728	6,944
合計	2,942	3,859	5,714	12,095
〈收益〉				
保險料	629	745	1,924	5,227
回收金	28	39	51	44
前期移越準備金	1,160	1,298	674	1,764
受入利息	1,125	1,776	3,065	5,059
雜收入		1		1
合計	2,942	3,859	5,714	12,095

(단위 : 백만원)

1982	1983	1984	1985
1,987	1,022	1,151	902
	3	8	6
6,827	7,557	9,610	13,280
	3,305	4,711	8,667
1,286	1,621	1,815	2,127
1	3	2	2
20	20	16	31
107	132	194	128
2,115	2,091	1,927	1,924
12,343	15,754	19,434	27,067
4,187	4,635	7,854	11,432
43	424	68	11
3,186	6,827	7,557	9,610
4,926	3,863	3,950	5,962
1	5	5	52
12,343	15,754	19,434	27,067

16. 輸出保險基金 現況

(단위 : 백만원)

	輸 出 保 險 基 金				總 累 計
	政府出損	利益金轉入 ¹⁾	累 計	利益積立金 ²⁾	
1969	300		300		
1970	200	33	533		
1971		71	604		
1972		130	734		
1973		254	988		
1974		6	994		
1975		194	1,188		
1976	1,000	101	2,289		
1977	2,000	△361	3,928		
1978	3,000	212	7,140		
1979	2,500		9,640	767 (767)	10,407
1980	3,000		12,640	2,226 (2,993)	15,633
1981	5,000		17,640	2,728 (5,721)	23,361
1982	950		18,590	6,947 (12,668)	31,258
1983	1,000		19,590	2,115 (14,783)	34,373
1984			19,590	2,093 (16,876)	36,466
1985	1,000		20,590	1,925 (18,801)	39,391

註 : 1) 舊法 第 35 條에 의거 前年度 決算上 利益金을 轉入한 金額

2) 新法 第 36 條에 의거 前年度 決算上 利益金을 別途로 積立한 金額

17. 輸出保險引受 및 補償實績

(단위 : 백만원)

	引 受 實 績			補 償 實 績				回 收 實 績		
				引受年度基準		支給年度基準				
	件 數	保險金額	保險料	件 數	保險金	件 數	保險金	引受年 度基準 回收金	支給年 度基準 回收金	回收年 度基準 回收金
1969	120	1,226	5							
1970	252	2,574	11							
1971	547	4,429	51	17	168					
1972	676	11,950	166	7	56			18		
1973	357	3,642	83	1	22	7	13	4	4	4
1974	403	5,964	69	7	232	2	24	8	8	4
1975	1,392	16,297	148	17	235	18	207	89		8
1976	2,638	47,104	390	51	853	13	158	119	49	
1977	2,710	50,184	461	25	362	25	486	5	172	31
1978	1,615	66,038	628	25	183	40	469			20
1979	1,202	259,140	745	12	261	30	405		12	39
1980	1,231	491,383	1,924	24	1,716	23	312	11	9	51
1981	1,527	1,512,440	5,227	55	1,171	17	430	93		44
1982	1,548	1,437,758	4,186	16	1,576	21	1,987	381	257	43
1983	1,278	979,810	4,635	24	375	33	1,021	11	228	424
1984	1,581	1,252,794	7,854	13	303	46	1,151	5		69
1985	1,814	1,337,649	11,432	3	53	22	903		5	11
合計	20,891	7,480,382	38,016	297	7,506	297	7,566	744	744	744

18. 種目別 輸出保險引受 및 補償實績(I)

	1969				1970			
	引受實績		補償實績		引受實績		補償實績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一 般 輸 出 保 險	60	722			21	533		
輸 出 金 融 保 險	58	492			81	1,177		
輸 出 이 음 保 險	2	12			150	864		
中長期延拂輸出保險								
輸出代金金融保險								
委託販賣輸出保險								
海外投資保險								
海外建設工事保險								
輸出保證保險								
合 計	120	1,226			252	2,574		

	1974				1975			
	引受實績		補償實績		引受實績		補償實績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一 般 輸 出 保 險	6	792						
輸 出 金 融 保 險					1	23		
輸 出 이 음 保 險	397	5,172	1	22	1,390	16,073	18	207
中長期延拂輸出保險					1	201		
輸出代金金融保險								
委託販賣輸出保險			1	2				
海外投資保險								
海外建設工事保險								
輸出保證保險								
合 計	403	5,964	2	24	1,392	16,297	18	207

(단위 : 백만원)

1971				1972				1973			
引受実績		補償実績		引受実績		補償実績		引受実績		補償実績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7	17			1	48						
2	18							1	7		
525	4,371			671	11,479			356	3,635	7	13
				1	419						
13	24			3	4						
547	4,429			676	11,951			357	3,642	7	13

1976				1977				1978			
引受実績		補償実績		引受実績		補償実績		引受実績		補償実績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1	1,076			2	15,362			2	718		
5	855			60	2,172			17	1,458		
2,625	40,899	13	158	2,642	28,440	24	469	1,586	19,546	38	371
5	2,078			4	3,037	1	16	7	31,796	2	98
2	2,196			2	1,173			1	2,434		
								2	10,086		
2,638	47,104	13	158	2,710	50,184	25	486	1,615	66,038	40	469

種目別 輸出保險引受 및 補償實績(II)

	1979				1980			
	引受實績		補償實績		引受實績		補償實績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一 般 輸 出 保 險	1	869						
輸 出 金 融 保 險	37	1,160			8	245		
輸 出 어 음 保 險	1,152	16,546	30	362	863	17,090	23	287
中長期延拂輸出保險	4	29,270		43	11	50,794		25
輸出代金金融保險								
委託販賣輸出保險								
海 外 投 資 保 險	5	6,381			7	7,615		
海 外 建 設 工 事 保 險	3	204,914			4	82,100		
輸 出 保 證 保 險					338	333,539		
合 計	1,202	259,140	30	405	1,231	491,382	23	312

	1984				1985			
	引受實績		補償實績		引受實績		補償實績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一 般 輸 出 保 險								
輸 出 金 融 保 險								
輸 出 어 음 保 險	1,358	60,756	46	1,080	1,634	73,579	19	450
中長期延拂輸出保險	47	714,742		71	73	1,126,281	2	333
輸出代金金融保險								
委託販賣輸出保險								
海 外 投 資 保 險	7	148,762			2	79,428		
海 外 建 設 工 事 保 險								
輸 出 保 證 保 險	169	328,534			105	58,361	1	120
合 計	1,581	1,252,794	46	1,151	1,814	1,337,649	22	902

註：各年度 實績의 計와 累計, 種目別實績의 計와 合計의 不一致는 백만원 미만 金額의 四捨五入에 기인함.

(단위: 백만원)

1981				1982				1983			
引受実績		補償実績		引受実績		補償実績		引受実績		補償実績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803	22,202	16	309	990	24,897	18	882	1,037	22,478	30	581
10	71,989	1	120	23	147,105	1	107	41	579,288	1	118
4	21,561			5	61,042			2	161,812		
21	445,164			12	576,888			1	28,104		
689	951,524			518	627,826	2	998	197	188,128	2	322
1,527	1,512,440	17	430	1,548	1,437,758	21	1,987	1,278	979,810	33	1,022

累 計			
引受実績		補償実績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101	20,137		
270	7,608		
18,181	368,038	283	5,192
227	2,757,000	8	932
16	28	1	2
37	492,403		
43	1,347,256		
2,016	2,487,912	5	1,440
20,891	7,480,382	297	7,566

19. 種目別 輸出保險 有効契約額

(단위 : 백만원)

	1977	1978	1979	1980	1981
一般輸出保險	15,362	14,023	869		
輸出金融保險		1,458	2,619		
輸出어음保險	8,832	6,864	5,470	8,025	7,917
中長期延拂輸出保險	4,718	35,603	60,682	82,068	153,917
輸出代金金融保險					
委託販賣輸出保險					
海外投資保險	3,111	5,754	5,549	6,884	18,170
海外建設工事保險		9,845	29,134	42,496	72,533
輸出保證保險				309,875	1,153,792
合計	32,023	73,547	104,323	449,348	1,406,329

	1982	1983	1984	1985
一般輸出保險				
輸出金融保險				
輸出어음保險	5,975	6,248	23,398	15,035
中長期延拂輸出保險	276,122	796,364	1,366,649	2,255,083
輸出代金金融保險				
委託販賣輸出保險				
海外投資保險	50,106	106,520	121,206	119,177
海外建設工事保險	102,605	106,797	50,933	3,605
輸出保證保險	1,567,116	1,490,649	1,307,238	952,779
合計	2,001,924	2,506,578	2,869,424	3,345,679

註 : 各年度末 基準

좁은 국토에 인구는 많고 자원은 빈약한 나라가 國運을 개척하는 길은 먼저 세계 속에 어깨를 내밀어 당당한 한몫을 차지하는데 있다는 사실은 과거의 세계역사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없이 복지국가를 이룩하거나 물가안정이 없이 선진국대열에 진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金斗煥 大統領閣下 1986년 國政演說抄)

〈政刊委審議畢 76-5-31〉

1986年 6月 30日 印刷

1986年 7月 1日 發行

韓國輸出入銀行 十年史

發行人 柳 惇 佑

編輯人 李 善 浩

發行處 韓國輸出入銀行

印刷・製本 東亞印刷工業(株)
